

2012年 東洋史學會 春季研究發表會

역사상 동아시아 교류의 새로운 모색

■ 일시: 2012년 6월 2일(토) 09:3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7동

주최 : 동양사학회

주관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東洋史學會 2012年 春季研究發表會

▣ 전체 일정

참가자 등록: 9:30~10:00 (인문대 7동)

오 전 발 표: 10:00~12:00 (인문대 7동)

점 심 시 간: 12:00~14:00

오 후 발 표: 14:00~17:00 (인문대 7동)

中國古代史

장소 : 7동 202호

오전사회 : 민후기(연세대) 오후사회 : 김경호(성균관대)

- 배진영(전북대) : 海岱龍山文化의 衰落과 離散
토론 : 김병준(서울대)
- 박재복(경동대) : 殷商시기 商과 夷族의 관계 高찰
-甲骨文에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 이성구(울산대)
- 김정열(동북아역사재단) : 橫北村과 大河口 -최근 조사된 유적을
통해 본 西周時代 지역 정치체의 양상-
토론 : 심재훈(단국대)
- 남영주(영남대) : 漢初 郡國制와 琅邪郡의 정치적 위상
토론 : 김진우(고려대)

中國中世史

장소 : 7동 203호

오전사회 : 신성곤(한양대) 오후사회 : 임대희(경북대)

- 양진성(연세대) : 魏晉南朝에서의 牋
토론 : 김성희(이화여대)

- 홍정아(서울대) : 荊雍지역인의 출사와 僑舊의 갈등
-南郡王 劉義宣 반란을 중심으로-

토론 : 정 면(한양대)

- 김정식(성균관대) : 唐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그 성격
-心喪・解官를 중심으로-

토론 : 김선민(연세대)

- 이완석(고려대) : 당 전기 사절 왕래의 규정과 운용

토론 : 김정희(동북아역사재단)

宋遼金元史

장소 : 7동 201호

오전사회 : 육정임(경희대) 오후사회 : 이석현(연세대)

- 나영남(한국외대) : 契丹의 渤海遺民에 대한 移住政策

토론 : 홍승태(경희대)

- 김성규(전북대) :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토론 : 최해별(이화여대)

- 권용철(고려대) : 大元제국 말기 權臣 바안의 집권과 몰락

토론 : 이근명(한국외대)

- 유원준(경희대) : 『三朝北盟會編』 판본 및 流轉 研究

토론 : 윤은숙(강원대)

- 고명수(고려대) :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투크 정책과 해상무역의 발전

토론 : 조복현(경희대)

明清史

장소 : 7동 214호

오전사회 : 송요후(인천대) 오후사회 : 김선민(고려대)

- 원정식(강원대) : 명 중기 복건 신현과 종족문화의 확산
-縣志를 중심으로-

토론 : 김선혜(숙명여대)

- 한지선(전남대) : 嘉靖年間 東南沿海社會
-密貿易과 嘉靖倭亂을 중심으로-

토론 : 서인범(동국대)

- 윤진영(이화여대) : 康熙年間(1661~1722) 北京의 外國人 宣教師가
본 滿·漢人의 日常

토론 : 송미령(전북대)

- 홍성화(성균관대) : 汪輝祖 『病榻夢痕錄』을 통해서 본 지방재판의 판결원칙

토론 : 이영옥(성신여대)

中國近現代史

장소 : 7동 106호

오전사회 : 손준식(중앙대) 오후사회 : 윤휘탁(한경대)

- 董昕(요녕대, 서울대 방문교수) : 近代中國銀行業領券發行制度的演進与變遷
-以中國銀行上海地名券領券業務爲中心的考察-

토론: 김승욱(서울시립대)

-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 대만과 조선에서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

토론: 문명기(국민대)

- 강진아(경북대) : 만주사변 전후 조선 화교문제의 양상

-在韓中國領事館과 朝鮮總督府 간 교섭을 중심으로-

토론: 김지환(인천대)

- 유연실(전남대)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1949~1958) 인구정책과 여성의 출산조절

토론: 천성림(한남대)

- 임상범(성신여대) : 대국굴기 시대의 앞날 :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 전인갑(인천대)

日本史

장소 : 7동 102호

오전사회 : 이재석(한성대) 오후사회 : 최석완(대전대)

- 최상은(고려대) : 계가레관을 통해서 본 平安時代 -전개와 변용을 중심으로-

토론 : 강은영(목원대)

- 이 영(방송대) : 민중사관을 가장한 식민사관 -일본 왜구 연구의 허구와 실체-

토론 : 윤성익(경희대)

- 박승하(나고야대) : -海賊禁止令과 朝鮮被虜人 沙火同刷還事件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토론 : 신동규(동아대)

- 이세연(동경대) : 高麗陣供養碑의 流轉

토론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 최경순(연세대) : 전국수평사와 일본기독교계의 상호인식

-‘해방의 복음’과 ‘증오의 복음’을 중심으로-

토론 : 강태웅(광운대)

- 최종길(동의대) : 한일회담 반대 투쟁과 한반도 인식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토론 : 박정진(서울대)

目次

○ 海岱龍山文化의 衰落과 離散	배진영	1
○ 殷商시기 商과 夷族의 관계 고찰 :		
甲骨文에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박재복	12
○ 橫北村과 大河口 : 최근 조사된 유적을 통해 본		
西周時代 지역 정치체의 양상	김정열	31
○ 漢初 郡國制와 琅邪郡의 정치적 위상	남영주	45
○ 魏晉南朝에서의 牋	양진성	57
○ 荊雍지역인의 출사와 僑舊의 갈등 :		
南郡王 劉義宣 반란을 중심으로	홍정아	70
○ 唐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그 성격 :		
心喪・解官를 중심으로	김정식	92
○ 당 전기 사절 왕래의 규정과 운용	이완석	113
○ 契丹의 渤海遺民에 대한 移住政策	나영남	139
○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김성규	158
○ 大元제국 말기 權臣 바얀의 집권과 몰락	권용철	188
○ 『三朝北盟會編』 판본 및 流轉 研究	유원준	213
○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토크 정책과 해상무역의 발전	고명수	222
○ 명 중기 복건 신현과 종족문화의 확산 :		
縣志를 중심으로	원정식	234

○ 嘉靖年間 東南沿海社會 :	
密貿易과 嘉靖倭亂을 중심으로	한지선 · 259
○ 康熙年間(1661~1722) 北京의 外國人 宣教師가 본	
滿·漢人の 日常	윤진영 · 277
○ 汪輝祖 『病榻夢痕錄』을 통해서 본 지방재판의 판결원칙 ...	홍성화 · 314
○ 近代中國銀行業領券發行制度的演進与變遷 :	
以中國銀行上海地名券領券業務爲中心的考察	董昕 · 338
○ 대만과 조선에서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	배성준 · 363
○ 만주사변 전후 조선 화교문제의 양상 :	
在韓中國領事館과 朝鮮總督府 간 교섭을 중심으로	강진아 · 382
○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1949-1958) 인구정책과	
여성의 출산 조절	유연실 · 404
○ 대국굴기 시대의 앞날 :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임상범 · 431
○ 계가레관을 통해서 본 平安時代 :	
전개와 변용을 중심으로	최상은 · 449
○ 민중사관을 가장한 식민사관 :	
일본 왜구 연구의 허구와 실체	이 영 · 468
○ 海賊禁止令과 朝鮮被虜人 沙火同刷還事件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승하 · 499
○ 高麗陣供養碑의 流轉	이세연 · 516

○ 전국수평사와 일본기독교계의 상호인식 :

‘해방의 복음’과 ‘증오의 복음’을 중심으로 최경순 .. 532

○ 한일회담 반대 투쟁과 한반도 인식 :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최종길 .. 545

海岱龍山文化의 衰落과 離散

배진영(전북대)

目次

- I. 머리말
- II. 해대 용산문화 유지의 변화 양상
- III. 생존환경의 변화와 해대용산문화의 재편
- IV. 해대 용산문화의 遷徙와 傳播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신석기 말기 예제사회의 정점을 이루던 海岱 龍山文化(기원전 2600~2000년) 사회는 기원전 2000년을 전후로 급속도로 쇠락하고, 이를 대신하여 岳石文化가 출현한다. 그러나 악석문화가 비록 해대용산문화를 일정하게 계승하였지만 해대 용산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던 蛋殼陶의 완전한 소실이나 급속도로 증가했던 해대 용산문화 유지수는 악석문화 시기에 급격히 감소되며 문화적 쇠퇴현상이 지속된다.

이처럼 예제사회의 정점에 있던 해대 용산문화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과정 없이 쇠퇴하지만 한편으로 해대용산문화의 요소가 중원지역에 일정하게 재현되고 있다.

본고는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해대 용산문화의 돌연한 쇠락과 이후 해대 용산문화 요소가 중원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대 용산문화의 쇠퇴와 그 원인을 추적하고 그에 따라 해대 용산문화 세력이 해대 지역 외부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해대 용산문화 유지의 변화 양상

해대용산문화의 쇠락은 유지수의 급감으로 표현된다. 근년 산둥지역의 沂沭河 유역 발

굴조사에 의하면 365곳에 이르던 용산시기의 유지 수가 약석문화 시기에 이르면 42곳으로 감소되었다.¹⁾ 沭河 상류인 莒縣 일대의 경우 용산문화 유지는 70여 곳이 되지만 약석문화 유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²⁾ 日照지구 兩城鎮 일대 조사 결과도 비슷하여 425개 용산문화 유지의 대다수는 초기와 중기에 해당되지만³⁾, 기원전 2300~2000년 사이의 용산문화 유지는 단지 8곳만 발견되어 대폭 감소되며, 약석문화 유지는 단지 6곳만이 보일 뿐이어서 이전 용산문화의 취락분포의 밀집 상황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⁴⁾

이처럼 현재까지 약 1,000여 곳 이상 발견되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던 해대 용산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을 전후로 유지 수가 급감되고⁵⁾ 약석문화와는 일정 공백 기간이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된 약석문화 유지는 300여 곳(산동지역 약석문화 유지는 단지 126곳으로 용산문화의 14%에 불과)을 넘지 않아 이전 시기에 비해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유지의 급감은 당연히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비록 추산에 의한 것이지만 양성진 용산문화의 취락 면적은 873ha에 인구는 63,031명, 주대는 791.6 ha에 인구 57,154명, 한 대는 847.5 ha에 인구 61,190명으로 추산하였다. 즉 용산문화 시대에 이 지구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지만 이후 약석문화와 상문화 시기에는 취락 면적이 대폭 줄어들어, 단지 6개의 약석문화와 20여 곳이 되지 못하는 상대의 도편 유지가 있을 뿐이며 이는 이 시기 인구의 대량 감소를 반영한다.⁷⁾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해대지구에서 용산문화 유지의 전반적 감소가 분명하지만 그러한 감소에는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해대용산문화는 각 지구에서 유지 수량 및 면적 감소와 동시에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공간 분포상 불균형적으로 나타난다. 해대지구는 太沂山을 중심으로 魯(西)北지구와 魯(東)南지구로 나뉘며 노(서)북지구는 대체로 산지와 구릉지대, 노(동)남지구는 저산의 구릉지대에 해당된다. 용산문화시대 고성지도 주로 이 두 지역인 泰山 북측인 魯(서)북지구와 沂山 남측인 魯(동)남지구에 분포하며⁸⁾ 공간분포상의 불균형은 크게는 이 두 지역인 魯동남과 魯서북지역으로 나타난다.

1) 高華中, 『山東沂沭河流域新石器遺址的空間分布』, 莫多聞·曹錦炎·鄭文紅·袁靖·曹兵武 主編, 『環境考古研究』 第4輯, 北京大學出版社, 2007. pp.94~95.

2) 齊烏雲·梁中合·高立兵·賈笑冰·王樹芝·王金霞·趙志軍, 『山東沭河上遊史前文化人地關係研究』, 『第四紀研究』 2006-7. pp.585~586.

3) 于海廣, 『日照地區的史前考古及相關問題的思考』, 『東方考古』 7집. p.19.

4) 中美兩城地區聯合考古隊, 『山東日照地區系統區域調查的新收穫』, 『考古』 2002-5. p.15

5) 王巍, 『公元前2000年前後我國大範圍文化變化原因探討』, 『考古』 2004-1. p.67.

6) 劉莉, 『中國新石器時代-邁向早期國家之路』, 文物出版社, 2007. p.26.

7) 方輝, 『日照兩城地區聚落考古 ; 人口問題』, 『海帶地區青銅時代考古』, 山東大學出版社, 2007. p.22.

즉 쇠퇴현상이 두드러진 양성진 유지가 속한 일조지구는 魯 동남 연해에 위치하고 低山 丘陵에 속한다.⁹⁾ 이들 유지는 대문구문화 만기부터 용산문화 조중기까지 문화가 발달하고 유지수량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기원전 2000년 전후에 유지는 매우 적어지고 적지 않은 지역에 공백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城子崖 유지가 속한 魯 서북지구는 산지 구릉지대에 속하며, 지모는 남에서 북쪽을 향한 구릉, 산전평원과 충적평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구는 비록 유지 총수량이 감소하지만 단 감소 비례는 노 동남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만기에 속하는 유지가 비교적 많고 보편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지역의 성자에, 교장포, 田旺, 丁公 등의 성지는 용산문화 만기에도 사용되었고 지속적인 보수나 이중의 성보나 향토 성장 등으로 중건되었으며 城子崖, 桐林, 丁公 유지가 용산 전시기와 악석문화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¹⁰⁾

따라서 기원전 2000년 전후 魯 동남지구의 용산문화는 쇠퇴 경향으로 유지의 급감과 돌연한 쇠락이 출현한 반면, 노 서북지구의 경우에는 비록 쇠퇴를 경험하였을지라도 노 동남지구와 같이 변화가 극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魯 중남 지구에 속하는 尹家城 유지의 경우에도 용산문화와 악석문화 유존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한편 각 시기별 유지의 해발 고도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沐河 상류 일대의 莒縣의 경우에는 용산문화 시기에 오면 유지 위치의 해발고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목하 상류 대문구문화 시기 유지의 최저 해발은 99.4m(前李家官庄 유지), 용산문화 유지의 최저 해발은 97.48m(夏庄 유지), 악석문화 유지의 최저해발은 108.72m(趙家葛湖 유지)로 나타난다.¹¹⁾ 이처럼 목하 상류를 포함한 魯 동남 지구의 각 문화 시기의 전체적 해발고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대문구문화 유지의 경우 고도 200m 이하 구역 분포 비례가 88.03% 이상을 점하고 200-300m의 구역 내에서 비례는 7.75%이다. 반면 용산문화 유지는 0-100m 고도 내에 분포한 비례가 증대하여 49.69%가 되며 100-200m 내는 40.58%를 점한다. 또한 200-300m, 300-400m 범위 내에는 대문구문화시기에 비해 비율이 감소하여 6.63%와 2.48%로 된다. 악석문화 유지의 분포에도 변화

8) 해대구지리환경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화북평원 일부분의 魯서, 북 평원, 둘째, 魯중남산지 구릉과 셋째, 교동 구릉이다(燕生東, 『全新世大暖期華北平原環境, 文化與海岱文化區』, 『環境考古研究』(3輯), 科學出版社, 2006. p.78.)

9) 일조 양성진 지구는 魯 동남 연해에 위치하고 자연 지모는 低山 丘陵에 속하고 충적평원, 산구와 평원 사이의 기슭, 산록 지대와 침엽림목이 성장하는 저산 구릉으로 나눌 수 있다.(中美兩城地區聯合考古隊, p.10.)

10)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山東二十世紀的考古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2005. pp.218~236.

11) 齊烏雲·梁中合·高立兵·賈笑冰·王樹芝·王金霞·趙志軍, pp.585~586.

가 발생하였는데 0-100m의 비례는 37.73%가 되어 세 문화 시기 중 가장 적고 100-200m 범위 내 비례는 47.17%, 200-300m는 11.325%가 되어 세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최대이며 400-500m 범위내의 비례는 1.89%에 달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유지 분포의 해발고도는 용산시기는 대문구 시기보다 낮았고 악석 시기는 용산시기보다 높았다. 따라서 대문구시기부터 용산시기를 거쳐 악석문화 시기에 이르면 유지 고도는 고 $\Rightarrow$ 저 $\Rightarrow$ 고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¹²⁾

노 동남지역은 용산문화 쇠퇴가 극렬하게 나타나는 곳이며, 해발고도가 낮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노 서북지역의 경우는 노동남지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자에 유지의 동쪽에 분포한 姚官庄 유지의 경우에 용산문화 분포구중에서도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악석문화 시기로 이어지지 않고 쇠락한다¹³⁾는 점에서 용산문화 쇠락과 해발고도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해대용산문화 유지를 통해 쇠퇴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해대지구 용산문화의 쇠퇴 경향은 첫째, 유지의 급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급감은 인구의 대량 감소와도 연관되며, 또한 전성기에 돌연 쇠퇴한다는 점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해대용산문화를 대표하는 蛋殼陶나 高瓶杯, 鬻 및 계급사회를 반영하는 묘장제도와 유물 등은 당시 용산문화가 매우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번영의 모습은 그대로 중간 과정 없이 쇠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강렬하게 나타난다.

둘째, 쇠퇴의 지역별 편차이다. 주로 魯 동남지역에서 강렬한 쇠퇴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지만 魯 서북, 魯 중남 지역에서는 비록 전반적 쇠퇴의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 문화가 지속되고 계승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용산문화 유지의 해발고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도 쇠퇴와 일정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해대용산문화 유지의 변천을 통해 쇠락 현상과 그 경향을 추적해보았다.

Ⅲ. 생존환경의 변화와 해대용산문화의 재편

이 장에서는 해대용산문화의 쇠퇴 현상과 경향에 따른 쇠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대용산문화 쇠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개의 견해가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정론

12) 王成玲·李建雲, 「魯東南地區新石器遺址的時空分布特徵」, 『臨沂大學學報』, 2011-12. pp.95~97.

13) 李伊萍, 『龍山文化-黃河下流文明進程的重要階段』, 科學出版社, 2005. p.112 : 姚官庄 유지는 대체로 용산문화 초기 단계의 중, 만기에 해당된다.(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pp.221~222.)

이 있지는 않다. 그 쇠락 원인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첫째, 외부세력과 투쟁설, 둘째, 내부 투쟁설, 셋째, 황하 改道에 따른 쇠퇴설, 넷째, 기후 변화에 따른 쇠퇴설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외부세력과 투쟁설은 중원세력의 확대에 의한 용산문화 세력집단과의 투쟁설이다. 이는 용산시대 양대 문화구인 해대문화구와 중원문화구는 서로 인근에 위치하여 각기 세력 확대를 위해 魯西, 豫東 지역을 향해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려는 정복전쟁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해대문명은 쇠락하고 반면 중원에서 최고의 왕조국가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관점은 무엇보다도 해대용산문화 쇠락 이후 중원의 문화가 해대지역에 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원지역에 해대용산문화 요소가 광범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내부 투쟁설이다. 해대용산문화에서 보이는 계급사회의 정점에 이르러 약탈과 겸병을 위한 정복전쟁이 더욱 증대하였으며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각 성지의 방어시설의 확보 등을 통해 당시의 격렬한 전쟁 상황이 충분히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내부 갈등과 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부 투쟁의 결과 이루어져야 할 해대용산문화는 보다 더 높은 사회 단계, 예컨대 국가로의 전환이나 혹은 보다 더 높고 체계화된 수준의 유물이나 유적이 출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더 높은 단계의 유물이나 유적의 출현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퇴행현상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내부 투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황하 改道에 따른 쇠퇴설은 해대지구가 황하 하류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과 역대 황하 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재해 발생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⁵⁾ 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해대 전 지역이 황하 개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후변화를 해대용산문화의 쇠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관점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의 대부분은 그 가능성만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 분석이나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한 문명이 쇠락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그러한 여러 원인 중 결정적 요소는 당시 사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대용산문화의 쇠락 원인은 다양한 원인과 상황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겠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도 기원전 2000년 경 출현한 강온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신세 시기안에 포함된 해대용산문화의 기후 환경은 기본적으로는 온난습윤하다.¹⁶⁾

14) 高廣仁・邵望平, 『海岱文化與齊魯文化』, 江蘇教育出版社, 2005. pp.155~156.

15) 靳松安・趙新平, 『試論山東龍山文化的歷史地位及其衰退原因』, 『鄭州大學學報』 1994-4.

16) 당시의 포자가루를 분석한 결과 식물이 비교적 무성하여 소나무, 상수리나무, 느릅나무, 뽕나

그러나 그 기간에서도 여러 차례의 기후 변동이 존재하며 해대지구에도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魯 서북지역에서는 5000~2500년 전부터 기후가 점차 건조하고 추워지면서 植皮 조합 중 소나무의 함량이 증대하고 초목식물이 증대하며 활엽수는 감소하며 이를 대신하여 稀樹초원 혹은 松林-초원 식피가 발육한다.¹⁷⁾ 목하 상류 포자가루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대문구문화 시기와 비교하면 침엽 식물화분의 함량이 활엽 식물 화분을 아주 월등히 초과하여 활엽림 면적이 축소되고 침엽림 면적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冷杉屬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당시는 서늘해지는(溫涼偏濕) 조건하에서 침엽림 위주의 針闊混交林 식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더욱이 용산문화가 끝나는 시기인 기원전 2000년경의 기후, 식피는 또 한 차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춥고 건조한(冷涼乾燥) 기후 조건하의 삼림 초원의 식피가 출현하며 이 기후는 곧장 악석문화 초기까지 지속됨에 따라 용산문화의 온량편습 기후는 거의 끝나가고 냉량건조한 기후가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분석으로 보면, 산둥 목하 상류지역의 신석기시대 만기에서 청동시대 조기의 기후는 溫和偏濕 ⇒ 溫涼偏濕 ⇒ 冷涼乾燥 (⇒ 溫涼偏濕)의 변화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처럼 기원전 3000년 전후로 고온 다습기는 점차 하강단계에 이르러 기후는 서늘해지고 건조하게 되었고(溫涼乾燥) 이에 따라 화북평원의 湖泊沼澤의 면적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전신세 대온난기에 화북평원에는 하천이 많았고 湖沼는 넓게 분포되어 있어, 평원의 내부는 인류 거주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원전 3000년 전후와 기원전 2000년 전후인 용산문화 만기 이후, 특히 용산문화 만기 이후에는 기후 추세가 극렬한 춥고 건조한 방향으로 변하고 강수량도 대폭 감소되었다. 그에 따라 湖沼 면적이 축소되고 河道가 안정되어 이들 지역은 비로소 대규모적인 인간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⁰⁾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용산문화 시대의 해안선에서도

무, 칠나무 등과 같은 온난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 광범하게 존재하였고 호수의 면적도 비교적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연주 서오사와 尹家城 유적의 동물 사체 분석 결과 중 양자악어가 존재하였고, 또 식물 중에는 蓮이 있어 당시 泗水 일대의 식물은 매우 무성하였고 남쪽으로 이동한 동물인 양자악어의 존재는 당시 기후가 현재에 비해 온난다습하였음을 시사한다.(何德亮, 『山東新石器時代的自然環境』, 『環境考古研究』(第3輯), pp.55~56.)

17) 산둥 莘縣, 우성현, 해민현 자료의 포자가루분석을 통해 전신세 이래 노서북 평원지구의 환경 변천을 검토하여 약 5000-2500년 전부터 기후가 변천하였고, 약 2500년 전부터 초원 면적은 더욱 확대되어 기후가 춥고 건조하게 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靳桂雲, 『海岱地區新石器時代人類生業與環境關係研究』, 『環境考古』(第4輯), p.124.)

18) 齊烏雲·梁中合·高立兵·賈笑冰·王樹芝·王金霞·趙志軍, pp.582~583.

19) 齊烏雲·梁中合·高立兵·賈笑冰·王樹芝·王金霞·趙志軍, p.585.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악석문화 초기 이후는 다시 따뜻해진다.

나타나는데 대문구문화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약 20~30km 정도 후퇴하였다.²¹⁾ 이상의 변화에 따라 취락분포도 변화되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하 상류와 노 동남지구의 대문구유지의 분포는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구릉지대에 주로 위치하였는데 대문구문화가 끝나갈 시기에 이르면 점차 구릉지대에서 충적평원으로 왔고 용산문화시기에 이르면 갈수록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해발고도가 용산문화시기에 이르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한편 기원전 2000년 전후에 발생한 강온 현상은 해대용산문화의 재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沂沭河 臨沂 지역의 薛家窯촌 단면 조사에 의하면 당지의 온난 시기는 기원전 2970~2260년경으로 기후는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다. 그러나 기원전 2260~1880년에 이르면 기후가 돌변하여 기온이 약 1.5도 정도가 내려가서 춥고 건조하게 변하는 강온시기를 맞이한다. 또 약 기원전 2260년과 기원전 1940년에 두 차례의 비교적 규모가 큰 대홍수가 발생하였다.²³⁾

한편 이러한 강온 현상의 결과는 魯 동남지구와 魯 서북지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魯 동남지구는 기원전 2000년 전후의 이 강온현상이 쇠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魯 서북지구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었다고 보인다. 이는 지모의 차이, 농업 경영구조와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선 魯 동남지구의 경우는 주로 용산문화 초기와 중기 문화가 번영한 지역으로 대문구문화시기 유지는 142곳으로 약 1700년의 시간을 거친 반면, 용산문화 시기는 유지 수량이 급증하여 483곳에 이르며, 600년 시간을 거친다. 약석문화시기가 되면 유지 수량은 신속하게 떨어져 400여 년 동안 53곳이 발견되었다.²⁴⁾

용산문화시기 이러한 유지 수량의 증가는 인구 대폭 증가로 이어지며, 이러한 인구를 부양할 농업경제가 매우 발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용산문화 시기 농구의 격증과 수확농구가 점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곡물수확량의 대폭 증가와 농업발전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작물 발굴 현황을 통해 볼 때, 일조 양성진 유적이나 목하 유역에서는 도작이 상당히 광범하게 경영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어 稻作과 粟作을 겸하는 혼작식 농업생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벼는 고생산성

20) 燕生東, pp.79~82 : 何德亮, p.58

21) 王青, 『山東北部沿海先秦時期海岸變遷與聚落功能研究』, 『東方考古』 第3輯, p.282.

22) 齊烏雲·梁中合·高立兵·賈笑冰·王樹芝·王金霞·趙志軍, p.585.

23) 高華中·朱誠·曹光杰, 『山東沂沭河流域2000BC前後古文化興衰的環境考古』, 『地理學報』 2006-3, pp.256~257.

24) 王成玲·李建雲, p.95.

25) 대문구문화시기 산둥 목하(沭河) 유역의 9개 유적의 화본과(禾本科) 화분(花粉)을 분석한 결

작물로 기장이나 조에 비해 단위당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내기 때문에²⁶⁾ 기후조건이 맞다면 가능한 한 속작보다는 도작 위주의 농업경영을 통해 당시 인구를 부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작 위주의 魯 동남지구에서 강온 현상의 출현은 벼 생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도작 농업경영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온 현상은 魯 동남지구에서는 강렬한 생존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더욱이 이는 당시 인구 부양과 생존자원 부족 간의 모순으로 인한 식량 부족과 인구 감소 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생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압박은 당시 용산문화의 쇠퇴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그러나 魯 서북 지역에서는 비록 강온현상으로 인한 타격을 받았을지라도 노 동남지역에 비해 강렬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춥고 건조해진 경우 산전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중대한 재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자애를 비롯한 이 지역 유지에서 우물 유적이 상당량 출현하는 것으로 볼 때²⁸⁾, 이러한 재해는 打井 기술의 확보로 극복 가능하였을 것이다. 우물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의 확보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 벼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魯 동남지역처럼 도작 경영이 아닌 耐旱性의 기장, 조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강온현상은 魯 동남지구처럼 강렬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바로 해대 용산문화 쇠퇴 현상이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용산문화 유지가 대부분 해발고도가 낮아졌다는 점도 또한 쇠락과 일정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이 지역은 湖沼와 하천이 수없이 뻗어 있다. 황하와 그 지류는 대량의 토사를 흘려보내 토사의 지속적 퇴적이 하상을 상승시켜 평원보다 높아질 경우 개도와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황하는 기원전 2600년을 전후로 개도하여 서북 평원을 거쳐 황해로 들어갔고 기원전 2000년 전 전후에 다시 개도하여 하북 평원을 거쳐 바다로 들어갔다.²⁹⁾ 춥고 건조한 기후가 시작되면서 온난습윤하던 대문구문화시기에 비해 용산문화 취락유지 해발고도가 이전에 비해 내려왔다는 것은 지적하였다. 기원전 2000년 전후에 더욱 춥고 건조한 기후로 변하지만 한편으로 기원전 2000년 전후(2260년)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대홍수는 결국 해발고도가 낮아진

과, 식물 유물의 부산물 중에 벼, 속(粟), 서(黍) 등의 농작물이 발견되었다.(齊鳥雲, 『從山東沭河上流史前遺址的孢粉分析看當時的人地關係』, 『環境考古研究(第3輯)』, p.90.)

26) 高華中・朱誠・曹光杰, p.259.

27) 高華中・朱誠・曹光杰, p.259.

28)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pp.218~219.

29) 劉莉, pp.17~24.

용산문화 유지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도지역에 위치한 용산문화나 해발고도가 낮은 용산문화 유지 쇠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으로 볼 때, 용산문화 쇠퇴 원인은 기원전 2000년 전후 강온 현상이 주요 역할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생존환경의 변화가 용산문화 쇠퇴를 결정짓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당시 중국 전역의 농업경제의 활성화는 황하의 개도나 홍수와도 연관되어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처한 해대용산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쇠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생존환경의 변화는 인구와 식량자원을 비롯한 생존자원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각 집단 간의 갈등과 약탈 및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자원 약탈과 토지 점령을 위한 갈등과 투쟁은 한 유지 내의 내부 투쟁, 혹은 각 유지 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이외 새로운 생존 환경을 찾아 대규모 이동의 감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해대 용산문화의 遷徙와 傳播

이처럼 해대 용산문화 말기의 생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의 쇠퇴 현상이 뒤따랐다면 해대용산문화의 거주집단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변화된 생존 환경 적응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생존 환경을 찾아 遷徙하였을 가능성이다.

새로운 생존환경에의 적응은 변화된 환경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환경조건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비록 이후 출현한 악석문화가 전성기를 구가한 용산문화의 수준에는 한참 못미친다 할지라도 문화적 연관관계 등으로 통해 볼 때 적어도 용산문화와 일정한 계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2000년 전후 강온 현상의 영향을 강렬하게 받았던 魯 동남지구는 생존환경이 혹독하게 변하여 용산문화의 대거 쇠퇴 이후 악석문화가 거의 이어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던 노 서북지구의 성자애를 비롯한 성지와 유지는 악석문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변화된 생존 환경에의 적응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적응은 취락유지의 해발고도의 변화(상승) 및 우물의 증가로 나타난다. 즉 황하 改道 혹은 홍수를 대비한 취락유지의 해발고도의 상승과 강온현상에 따른 건조에 대비한 우물의 증가는 이러한 적응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성자애 성지를 비롯한 악석문화로 계승된 유지의 경우, 성지는 용산문화 초기

단계에 대부분 수축되지만 중기나 후기에 증진되어 강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증축된 성자에 성지나 내외 세트를 이룬 두 줄의 외벽을 두른 邊線王 성지, 해자와 성장을 두른 丁公 성지³⁰⁾ 등은 모두 당시 생존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부 투쟁이나 각각의 용산문화 세력집단간의 격렬한 투쟁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魯 동남 지역의 생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 지역 거주 집단 간의 투쟁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약탈과 겸병전쟁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존 환경을 찾아 천사하였을 가능성에는 내부로의 이동과 외부로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로의 천사는 해대지구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다만 이 이동의 경우는 생존환경의 열악한 상황 하에서 앞서 지적하였듯이 생존자원의 쟁탈전이나 토지 겸병 등의 투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해대 이외 지역으로의 천사 가능성이다. 이 역시 생존환경의 악화와 개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내부 이동마저도 배제 당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외부 천사의 가능성은 중원지역에서 보이는 해대용산문화 요소의再現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생각된다.

즉 二里頭 문화의 예제 및 풍습 관습이 해대 용산문화로부터 연원하여³¹⁾ 중원에서 해대 용산문화의 예제 시스템이 재현되었고, 해대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중원지역에서도 상당수 보인다. 이리두문화에서 보이는 觚, 爵, 鷄彝, 瓦足皿이 바로 이런 요소이며 이들은 대부분 동방에서 오거나 혹은 동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외에도 해대용산문화 만기의 전형 풍격으로 이루는 長頸壺나 圈足盤, 尹家城 유지에서 보이는 盆形豆 등은 모두 동방의 해대지구로부터 들어온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이리두문화 1기 중 동방 요인은 대부분 용산문화로부터 온 것 위주가 된다. 또 이리두 1기보다 빠른 新砦期 중에서 더욱 많은 해대용산문화의 성분과 요소가 발견되어 신채기와 이리두 1기는 해대용산문화 만기의 약간 뒤 단계가 연대상 일정하게 겹칠 가능성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 문화의 예기 역시 다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대 동방으로부터 온 것이라 볼 수 있다.³³⁾

한편 遷徙는 단지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보인다. 안휘성의 斗鷄臺문화는 당지의 토착문화, 하남용산문화, 이리두문화 요소들을 제외하면 두계대 1기, 2기 유적 중 (기원전 2000년 전후에 해당)에서 비교적 많은 산동용산문화 만기와 악석문화 요소가 발견된다. 이는 해대 용산문화 세력 집단의 일부가 천사하여 이

30)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pp.231~233.

31) 李伯謙, 「二里頭類型的文化性質與族屬問題」, 『文物』, 1986-6, p.45.

32) 樂豐實, 「里里頭遺址中東方文化要素」, 『華夏考古』 2006-3. p.46.

33) 樂豐實, p.52.

곳에 이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³⁴⁾

아마도 해대지구에서 용산문화는 비록 쇠락하였지만 그 세력집단의 이산 과정에서 고도로 발달하였던 문명사회를 이룬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강렬하게 각지로 전파되고 흡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볼 때 해대용산문화의 쇠락과 이산의 상황은 당시의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기후 변화만으로 해대 용산문화가 쇠락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사회의 경제구조, 계급분화, 갈등관계 등 여러 원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극렬한 기후변화가 생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때, 혹은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지속되었을 때 그 사회가 이를 대처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다면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생존환경이 해당 사회의 대처 능력의 한계치를 넘길 경우에 사회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세력은 근거지를 떠나 대규모 이동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대 용산문화의 요소가 다른 지역에 재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³⁴⁾ 高江濤・龐小霞, 「岳石文化時期海岱文化區人文地理格局演變探析」, 『考古』 2009-11, p.49.

殷商시기 商과 夷族의 관계 고찰

— 甲骨文에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

박 재 복(경동대)

目次

- I. 머리말
- II. 甲骨文에 보이는 夷族 方國
- III. 殷商과 夷族 方國의 관계
 - 1. 시공간별 夷族 方國의 분류
 - 2. 殷商과 夷族 관계의 변화양상
- III. 맺음말

I. 머리말

문헌자료에 의하면, 夏·商·周 3代는 中原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이민족들을 東夷, 北狄, 西戎, 南蠻이라고 일컬었다. ‘夷’는 또한 이들 사방 이민족에 대한 범칭으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中原의 동쪽에 있는 夷族의 여러 방국들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었다. 『古本竹書紀年』에 ‘九夷’라고도 하는데, 『爾雅』『釋地』에 “九夷, 八狄, 七戎, 六蠻을 四海라고 이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中原의 ‘九州’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이상화된 일정숫자를 대입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이족 방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西周후기 厲王시기에 속하는 <禹鼎>에 “噩侯 馭方이 南淮夷와 東夷를 거느리고 대규모로 南國과 東國을 정벌하여 歷內까지 이르렀다.”¹⁾라고 하였다. 西周시기에는 이와 같이 東國(혹은 東土)과 南國은 상대적으로 周왕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고, 東夷와 南夷(혹은 淮夷, 南淮夷)는 상대적으로 周왕실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夷族 方國들

1) <禹鼎>(『集成』 5·2834): “亦唯噩侯馭方率南淮尸(夷)·東尸(夷)廣伐南或(國)·東或(國), 至于歷內.”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보면, 산둥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비교적 독립적인 고고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商초기 二里崗 상층문화에 이르러 산둥 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둥지역이 二里崗문화의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商후기에 이르러 대외적으로 商왕조의 영향력이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東方에 대한 영향력은 도리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기존연구에서는 대부분 전래문헌을 토대로 秦漢이후의 東夷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일부 甲骨文과 金文(靑銅器 銘文)을 주요 대상으로 한 논고에서는 東夷와 관련된 글자의 고석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殷商시기 갑골문에서는 ‘東夷’라는 명칭은 아직 보이지 않고 ‘尸(夷)’는 한 방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직 범칭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갑골문에는 ‘夷’이외에도 이족에 속하는 방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한국학계에서 거의 다루지 못했던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商의 동쪽에 활동하였던 ‘夷’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이들에 속하는 夷族 方國들의 명칭과 지리적인 특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갑골문은 주로 商왕실에서 占卜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들이 商의 편향된 입장에서 기술되어 이족집단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殷商과 夷族 방국들 간의 상호 교류와 투쟁이라는 관계 정립을 새롭게 재구성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II. 甲骨文에 보이는 夷族 方國

『尙書』『多士』에 “殷나라 先人들은 典과 冊이 있었다.”²⁾라고 하니, 殷商시기에 이미 ‘冊’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출토문헌으로는 갑골문과 금문만이 보이며, 금문은 글자 수가 많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 族徽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로 갑골문에 보이는 이족 방국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尙書』『多士』: “惟爾知惟殷先人有冊有典, 殷革夏命.”

(1) 尸(夷)方

‘尸’자는 사람이 측면으로 의자에 걸터앉은 형상을 본뜬 것으로, ‘夷踞’라고 하는 ‘夷’자의 본 글자이다. 『廣雅』『釋詁三』에 “夷는 걸터앉다.”³⁾라고 하였으며, 『論語』『憲問』에 “原壤이 걸터앉아서 <孔子를> 기다린다.”⁴⁾라고 하였다. 전래문헌에서 ‘夷狄’이라고 할 때의 ‘夷’자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모두 ‘尸’자로 썼다. 전래문헌에서 ‘夷’는 고대 東夷집단의 범칭이지만 갑골문에 보이는 ‘尸方’, ‘伐尸’, ‘征尸’의 ‘尸’는 東夷집단 중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方國을 지칭한다. 『左傳』『隱公』元년에 “紀人이 夷를 정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夷國은 陽城의 莊武縣에 있다.”⁵⁾라고 하였으니, 곧 지금의 산둥 即墨縣이다. 殷商시기에는 商의 주요 정벌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商과 인접해 있었을 것을 추정된다.

‘尸(夷)方’과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21편인데, 그중에서 18편은 은허 제1기에 속하고, 3편은 제4기에 속한다. 제4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모두 ‘尸(夷)’ 혹은 ‘尸(夷)方’의 정벌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1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대부분 ‘尸(夷)’의 정벌과 관련된 것인데, 그중 일부는 왕이 직접 정벌하는 내용이고⁶⁾, 일부는 왕이 ‘婦好’에게 정벌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고⁷⁾, 일부는 제후인 ‘告’와 회합하여 정벌하는 내용이다. 정벌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夷人’을 희생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5편이 보이는데, ‘祖丁’은 제사 대상이 되고, ‘卯’와 ‘戊’는 희생을 제사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제1기에 속하는 갑골문인 『合集』(20612)에 “尸(夷)方이 도움을 받겠습니까?”라고 한 것과 같이 정벌과 무관한 내용도 발견된다.

(2) 人方

‘人’자는 측면으로 서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說文』『人部』에 “천지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팔과 정강이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무릇 사람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人’을 구성요소로 한다.”⁸⁾라고 하였는데, 갑골문에서는 주로 ‘사람’과 ‘방국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로 ‘人’과 ‘尸’자를 같은 글자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陳夢家是 이 두 글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征人方’ 卜辭의 일은 淮水에 이르러

3) 『廣雅』『釋詁三』: “夷, 踞也.”

4) 『論語』『憲問』: “原壤夷侯.”

5) 『左傳』『隱公元年』: “紀人伐夷.” 杜預 注: “夷國在陽城莊武縣.”

6) 『合集』 6583: “왕이 夷方을 정벌해도 되겠습니까?”(王夷尸(夷)正(征)?)

7) 『合集』 6459: “壬午일에 賓이 짐쳐 물었다. 왕이 婦好에게 명하여 夷方을 정벌해도 되겠습니까?”(壬午卜, 賓貞: 王夷婦(婦)好令(命)正尸(夷)?)

8) 『說文』『人部』: “天地之性最貴者也. 此籀文. 象臂脛之形. 凡人之屬皆從人.”

‘人方’과 ‘林方’을 정별한 것이니, 곧 이들 방국이 모두 ‘淮夷’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⁹⁾ 陳夢家是 人方이 오늘날의 永城이남과 淮河이북의 澮河와 沱河 유역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고 하였으나 帝辛시기 ‘征人方’ 노정에 근거하면, ‘人方’은 산둥 중동부의 ‘濰水’유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人方’과 관련된 갑골은 모두 53편으로, 그중에서 44편은 은허 제5기인 帝辛시기의 ‘征人方’에 관한 내용이며, 그 나머지는 9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제1기에 속한 1편은 人方에게 冊命하는 내용으로¹¹⁾, 당시 殷商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제3기(4편), 제4기(1편), 제5기(3편)에 속하는 갑골들은 모두 人方과 적대적인 관계를 표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은허 제3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之’라는 곳을 경유해 人方을 공격하는 내용과 인방의 舊邑을 敦伐하는 내용 그리고 인방을 정벌해도 좋을지에 관한 내용이다.¹²⁾ 제4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先王에게 제사지내는데, 인방을 희생으로 사용하는 내용이며, 제5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인방을 침범하는 내용과 인방을 선왕에게 제사지내는 내용이다.

(3) 東

‘東’은 『說文』『東部』에 “東은 動이니, 木으로 구성되었다. 官溥가 말하였다. ‘해[日]가 나무[木]의 가운데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무릇 東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東으로 구성되었다.”¹³⁾이라 하였는데, 갑골문의 자형을 근거로 徐中舒는 “전대[橐]의 안에는 실물이 있고 전대의 양끝은 끈으로 묶은 형상을 본뜬 글자로, 橐의 初文이다.”¹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옛 方國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逸周書』『作雒』에 “武王이 殷을 이기고서 東에 管叔을 세우고, 殷에 蔡叔과 霍叔을 세웠다.”라 하고, “周公이 섭정하여 천자를 도우니, 三叔(管叔·蔡叔·霍叔)과 殷·東·徐·奄 및 熊·盈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 하며, 또 “<周公이 동정해서 반란을 평정한 뒤에> 康叔으로 하여금 殷에居하게 하고

9)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1992年, p.305

10) 줄고, 『殷商시기 甲骨文에 보이는 ‘征人方’ 고찰』, 『유교문화연구』제20호, 2012.

11) 『合集』 20249: “□寅일에 점을 쳤다. □가 人方에 冊命하여도 되겠습니까?”(□寅卜: □令(命) 人方?) 본 갑골에서 ‘令’자는 ‘命’의 본 글자로, ‘冊命’할 때의 ‘命’에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전에는 ‘命’과 ‘令’은 통용되었다. 『後漢書』『東夷列傳』李賢의 注에 “『竹書紀年』에 말하기를 (夏)后 泄 21년에 畎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에게 命하였다.”라고 하였고, 『通鑑外紀』 권2에 『紀年』을 인용하여 “帝泄 21년에 畎夷 등에게 작위를 命하였다.”라고 하였다.

12) 『屯南』 2370: “乙卯일에 점쳐 물었다. 왕이 人方을 정벌함에 재앙이 없겠습니까?”(乙卯卜, 貞: 王其正(征)人方, 亡(無)戕?)

13) 『說文』『東部』: “東, 動也. 從木. 官溥說: 從日在木中. 凡東之屬皆從東.”

14)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年, p.662

中旄父로 하여금 東에 居하게 하였다.”¹⁵⁾라고 하였다. 『綴』 218에 “乙丑일 왕이 점칠 때에 攸에서 물었다. 오늘 鎭撫하여 攸·東과 회합해도 재앙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攸’의 위치에 대해 郭沫若은 지금의 永城 남쪽, 宿縣 서북쪽에 있다고 하였고, 王恩田은 滕縣 后黃莊 일대라고 하였으며, 方輝는 鄒平 일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方輝의 학설을 따르기로 한다. 한편, 東은 攸에서 멀지 곳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⁶⁾

‘東’과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6편으로, 3편은 은허 제1기에 속하고 1편은 제4기에 속하며 2편은 제5기에 속한다. 은허 제1기의 갑골문 중에 2편은 殷商이 東과 會합하는 내용이고, 1편은 東에 가서 사냥을 하는 내용이다.¹⁷⁾ 은허 제4기의 1편은 왕이 東에 사냥을 가서 포획할 수 있을지를 점쳐 묻은 내용이다. 은허 제5기의 2편은 帝辛 10년의 ‘征人方’ 卜辭로 東과 會합하는 내용이다.

(4) 夙(宿)

‘夙’은 옛 나라이름으로 전래문헌에는 ‘宿’으로 되어 있다. 상고음에서 ‘夙’과 ‘宿’은 모두 心紐 覺韻에 속한다. 殷商시기 금문 중에 <宿咏鼎>이 있는데, 그 명문 내용 중에 ‘宿’자는 ‘𠂔’의 형태로 되어 있다. ‘𠂔’은 ‘𠂔’의 이체자로, 『說文』 『宀部』에 “宿은 止이다. 宀로 구성되었고, 𠂔은 소리를 나타낸다. 𠂔은 夙자의 古文이다.”¹⁸⁾라고 하였는데, 자형으로 본다면, ‘𠂔’은 ‘宿’의 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고시대에는 ‘宿’과 ‘夙’이 혼용되었기 때문에 『說文』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左傳』 『僖公』 21년에 “任·宿·須句·顓臾는 모두 夙의 姓에 해당된다.”¹⁹⁾라고 하였으며, 『左傳』 『隱公』 원년에 “宋人和 宿에서 會盟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宿은 작은 나라로 東平 無鹽縣에 있다.”²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宿’은 옛 나라의 이름으로, ‘夙’을 성씨로 하고 갑골문에서는 ‘夙’으로 썼으니, 지금의 산둥성 東平縣 동쪽에 있었다.

‘夙(宿)’과 관련된 갑골문은 2편으로²¹⁾, 모두 은허 제1기에 속하며, 夙에 풍년이 들 수 있는지를 점친 내용이다. 내용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殷商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구

15) 『逸周書』 『作雒』: “武王克殷, …建管叔于東, 建蔡叔·霍叔于殷.” “周公立, 相天子, 三叔及殷東徐奄及熊盈以略(畔)” “俾康叔宇于殷, 俾中旄父宇于東.”

16) 줄고, 『殷商시기 甲骨文에 보이는 ‘征人方’ 고찰』, 『儒敎文化研究』제20집, 儒敎文化研究所, 2012년.

17) 『合集』 22043: “庚戌일에 점을 쳤다. 東으로 가서 사냥해도 되겠습니까?(庚戌卜, 往田于東?)” ‘田’은 ‘田獵’을 말한다.

18) 『說文』 『宀部』: “宿, 止也. 從宀𠂔聲. 𠂔, 古文夙.”

19) 『左傳』 『僖公』二十一年: “姓任·宿·須句·顓臾, 夙姓也.”

20) 『左傳』 『隱公』元年: “及宋人盟於宿”, 杜預 注: “宿, 小國, 東平無鹽縣也.”

21) 『合集』 9804: “…夙에 풍년이 들겠습니까?(…宿受年?)”

체적으로 상고할 방법이 없다.

(5) 盧(𡩺)

‘盧’는 『說文』 『虎部』에 “盧는 호랑이가 성질이 부드러워도 않고 미덥지도 않은 것이다. 虎로 구성되었고, 且가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段玉裁의 注에 “不柔不信”을 “포악하고 교활하다.”²²⁾라고 풀이하였다. 갑골문에서의 ‘盧’는 나라이름을 가리키며, ‘𡩺’ 혹은 ‘𡩺’로도 쓴다. 劉士莪·尹盛平·錢伯泉 등은 <史牆盤>에 “狄盧를 길이 두려워하지 않고, 夷童(東)을 정벌하였다.”²³⁾라고 하였는데, ‘盧’는 卜辭에서의 ‘盧’, ‘𡩺’ 혹은 ‘𡩺’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錢伯泉은 또 上古시기의 鄆나라는 지금의 河南省 永城縣 서쪽의 贊陽集에 해당된다고 하였다.²⁴⁾ 『左傳』 『襄公』 23년에 “齊나라 諸侯 莊公이 晉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길로 莒나라를 습격하여 且于의 성문을 공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杜豫의 注에 “且于是 莒國의 邑이다.”²⁵⁾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山東省 莒縣 북쪽에 있다. 옛 盧國은 지금의 山東省 莒縣 일대에 해당된다.

‘盧(𡩺)’과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16편인데, 그중에서 은허 제1기에 2편, 제3기에 9편, 제5기에 5편이 보이고, 제2기와 제4기에 속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제1기에 해당하는 갑골문²⁶⁾ 2편은 모두 작은 파편이라 그 내용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盧’에서 점쳤음을 알 수 있다. 제3기와 제5기의 갑골문은 대부분 ‘盧(𡩺)’를 정벌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殷商시기 盧方의 세력이 비교적 강성하였으며, 그 활동 범위도 춘추시기 ‘且于’가 활동하던 범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 萊

‘萊’는 갑골문에 ‘𣎵’로 쓰여 있다. ‘來’와 ‘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보리(來)’를 내리치는 형상의 會意字로 ‘來’는 또한 소리를 나타낸다. 갑골문 중의 ‘萊’는 ‘萊’라고 읽으니, 옛 나라이름이다. 『尚書』 『禹貢』에 “海岱에는 靑州가 있다.……萊夷는 방목을 하니, 그 광주리에는 산뽕나무에서 나오는 생사이다.”²⁷⁾라고 하며, 『路史』 『國名紀乙』에 “萊는 少昊氏의 후손으로 李의 姓을 가진 나라이다.”라 하고, 『國名紀丁』에

22) 『說文』 『虎部』: “盧, 虎不柔不信也. 從虎且聲.” 段玉裁 注: “剛暴僞詐.”

23) <史牆盤>〔集成〕 16·10175: “永不鞏(恐)狄盧, 𡩺(懲)伐尸(夷)童(東)”

24) 錢伯泉, 『從史牆盤銘文談周武王伐淮夷』, 『文物研究』第二期, 1986년.

25) 『左傳』 『襄公』二十三年: “齊侯還自晉, 不入, 遂襲莒, 門于且于.” 杜豫 注: “且于, 莒邑.”

26) 『合集』 7910: “……왕이 돌아올 乙丑일에, ……? 1월에 盧땅에서.”(……王翼(昱)乙丑, ……? 一月才(在)盧.)

27) 『尚書』 『禹貢』: “海岱惟靑州:……萊夷作牧, 厥篚檿絲.”

“옛날의 萊夷는 지금의 文登縣의 동북쪽 80리에 있는 不夜城이다.”²⁸⁾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면, 옛 萊國은 지금 산둥성 중·동부에 분포하였는데, 초기에는 麥丘邑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商周왕조에 의해 점차 동쪽으로 밀려나 榮城市의 북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春秋』『宣公』7년에 “여름에 공이 齊侯와 회동하여 萊를 정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萊國은 지금의 산둥 萊黃縣에 있다.”²⁹⁾라고 하였다. 『通志』『氏族略』에 “萊氏는 지금의 登州 黃縣 동남쪽 25리에 옛 黃城이 있으니, 이것이 萊子國이다. 襄公6년에 齊나라가 멸망시키니, 그 자손들이 나라의 이름으로 氏를 삼았다.”³⁰⁾라고 하였다.

‘敕’와 관련된 갑골문은 2편으로³¹⁾, 모두 은허 제1기에 속한다. 그 중 1편은 ‘敕’를 잡아도[執] 될지를 점쳐 묻은 것이고, 다른 1편은 왕이 전쟁에서 ‘敕’를 패배시킬 수 있는지를 점친 것이다. ‘敕’와 관련된 갑골이 2편밖에 되지 않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은허 제1기에 敕와 殷商은 서로 전쟁하는 적대관계였으며, 商王이 ‘敕’와의 전쟁에서 패배시킬 수 있을지를 점친 정황으로 볼 때, 敕의 군사력이 막강하여 상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 州

‘州’자는 『說文』『川部』에 “물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곳을 ‘州’라고 한다.”³²⁾라고 하였으니, 시냇물 가운데에 높이 솟아있는 흙을 본뜬 글자로, 여기에서는 방국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左傳』『桓公』11년에 “鄆人이 蒲騷에 진을 치고 장차 隨·絞·州·蓼나라와 楚나라의 군대를 치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州國은 南郡 華容縣 동남쪽에 있다.”³³⁾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湖北省 洪湖市 동북쪽이다. 『路史』『國名紀乙·少昊後偃姓國』에 “州는 지금의 荊南 監利이다. 그러므로 華容은 예전의 州이다.”³⁴⁾라 하고, 또 『左傳』『昭公』3년에 “子豐이 晉國에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내가 듣고서 잊을 수가 없

28) 『路史』『國名紀乙』: “以萊爲少昊李性國.” 『國名紀丁』: “古之萊夷, 今文登縣東北八十里不夜城也.”

29) 『春秋』『宣公』七年: “夏, 公會齊侯伐萊.” 杜預 注: “萊國, 今山東萊黃縣.”

30) 『通志』『氏族略』: “萊氏, 今登州黃縣東南二十五里有故黃城, 是萊子國. 襄公六年, 齊滅之, 子孫以國爲氏.”

31) 『英』593: “물었다. 敕人과 斐人을 잡지 않아도 되겠습니까?”(貞: 弓執敕斐?)

『合集』28239: “왕이 장차 敕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王其夷敕伐?)

32) 『說文』『川部』: “水中可居曰: 州.”

33) 『左傳』『桓公』11年: “鄆人軍於蒲騷, 將與隨·絞·州·蓼伐楚師.” 杜預 注: “州國在南郡華容縣東南.”

34) 『路史』『國名紀乙·少昊後偃姓國』: “州, 今荊南監利, 故華容古州也.”

으니, 너에게 州田을 하사하여 너의 舊勳에 보답한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州縣은 지금 河內郡에 속한다.”³⁵⁾라고 하였다. 지금의 河南省 沁陽縣에 있으니, 商代의 州國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³⁶⁾ 또한 『春秋』 「桓公」 5년에 “겨울에, 州公이 曹에 갔다.”³⁷⁾라고 하였는데, 楊伯峻은 “州는 姜姓의 나라로 淳于에 도읍하였으니, 지금의 山東省 安丘縣 동북쪽에 있는 淳于城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³⁸⁾

‘州’와 관련된 갑골문은 4편으로, 모두 은허 제1기에 속한다. 그 중 2편은 ‘州臣’을 획득할 수 있을 지 없을지를 점쳐 물었고, 1편은 ‘州妾’을 심문해도 될지를 점친 것이며³⁹⁾, 나머지 1편은 파손되어 ‘州’자만 보이지만 문맥으로 보아 ‘州臣’ 혹은 ‘州妾’인 듯하다. 『尚書』 「費誓」에 “경계를 넘어 말과 소를 훔치고 臣妾을 유인하지 말라. 너희는 곧 常刑이 있을 것이다.”⁴⁰⁾라 하고, 『左傳』 「僖公」 17년에 “남자는 人臣이 되고 여자는 人妾이 된다.”⁴¹⁾라고 하였다. 전래문헌에서 ‘臣’·‘妾’은 사역을 담당하는 천한 사람을 일컫지만, 이 갑골문에서는 문맥으로 보아 전쟁포로라는 의미이다. 즉, ‘州臣’은 州나라의 남자 포로이고 ‘州妾’은 州나라의 여자 포로를 의미한다.

(8) 白

‘白’은 夷族에 속하는 方國이다. 『古本竹書紀年』에 “임금 芬이 즉위하였다. 3년 되는 해에 九夷가 와서 받들었으니, 九夷는 곧 畎夷·于夷·方夷·黃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이다.”⁴²⁾라고 하였다. 『逸周書』 「王會」에 “白民乘黃”이라 하였는데, 孔晁의 注에 “白民은 또한 東南夷를 말한다.”⁴³⁾라고 하였으며, 『路史』 「國名紀乙」에 “少昊氏의 후예 중에 姓이 李인 나라로 白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注에 이르기를 “蔡나라 褒信의 서남쪽에 있는 ‘白亭’이 곧 이것이다. 楚나라 平王이 멸하고 아들 建의 아들인 勝을 책봉하여 ‘白公’이라고 하였다.”⁴⁴⁾라고 하였으니, ‘白’은 곧 『左傳』에 보이는 ‘栢’이다. 『左傳』 「

35) 『左傳』 「昭公」 3年: “子豐有勞于晉國, 余聞而弗忘, 賜汝州田, 以胙乃舊勳.” 杜預 注: “州縣, 今屬河內郡.”

36) 陳秉新·李立芳, 『出土夷族史料輯考』, 安徽大學校出版社, 2005年, p.20

37) 『春秋』 「桓公」 5年: “冬, 州公如曹.”

38) 楊伯峻,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1981年, p.103

39) 『合集』 659: “물었다. 州의 여자 포로 德을 심문해도 되겠습니까?(貞: 訊州妾德(德)?)” ‘德’은 여자 포로의 이름이다.

40) 『尚書』 「費誓」: “逾垣牆, 竊馬牛, 誘臣妾, 汝則有常刑.”

41) 『左傳』 「僖公」 17年: “男爲人臣, 女爲人妾.”

42) 『古本竹書紀年』: “后芬即位, 三年, 九夷來御, 曰: 畎夷·于夷·方夷·黃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

43) 『逸周書』 「王會」: “白民乘黃”, 孔晁 注: “白民亦東南夷.”

44) 『路史』 「國名紀乙」: “少昊後李姓國有白”, 注云: “蔡之褒信西南白亭是. 楚平滅以封子建之子勝,

僖公」5년에 “이때에 江·黃·道·柏나라가 齊나라와 화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柏은 나라 이름이다. 汝南 西平縣에 柏亭이 있다.”⁴⁵⁾라고 하였으니, 옛 땅은 지금의 하남 西平縣 서쪽에 있다. 이는 곧 춘추시기 白의 옛 지역이다. 成王시기의 기물인 <豐方鼎>의 명문에 “周公이 東尸(夷)를 정벌하여 豐·白·尊古(薄姑)을 완전히 패배시켰다.”⁴⁶⁾라고 하였으니, 殷商시기의 ‘白’은 산둥 경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白’과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10편인데, 그중에서 은허 제1기에 2편, 제3기에 5편, 제4기에 2편, 제5기에 1편이 보이고, 제2기에 속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제1기에 해당하는 갑골문에 ‘白人’을 희생으로 사용하여 ‘燎祭’를 지내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殷商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3~4기의 갑골문은 대부분 ‘白’에서 사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⁴⁷⁾ 제5기의 갑골 1편⁴⁸⁾과 제1기의 갑골 1편⁴⁹⁾ 그리고 제3기의 갑골 1편⁵⁰⁾은 모두 白에서 점복을 실시한 것으로, 왕에게 열흘 동안 재앙이 있을지 없을지, 비가 내릴지 않을지, 妣庚에게 敕제사를 지내도 될지를 점쳐 묻은 것이다. 즉 제3~5기에는 商王이 白에서 ‘사냥’과 ‘점복’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殷商과 비교적 친근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9) 非

‘非’(혹은 斐)는 갑골문에 ‘𠄎’ 혹은 ‘𠄎’로 쓴다. 『說文』 『非部』에 “非는 違이다. 날개깃을 내리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고, 서로 등진 모습을 취하였다.”⁵¹⁾라고 하였다. 繁文으로 ‘𠄎’라고 쓰니, ‘𠄎’은 나누는 의미가 있다. 『說文』 『門部』에 “關은 開이다. 門으로 구성되고 辟은 소리를 나타낸다.”⁵²⁾라 하고, 古文은 ‘關’으로 쓴다. 楊樹達은 “두 손으로

曰: 白公.”

45) 『左傳』 『僖公』五年: “於是江·黃·道·柏方睦于齊.” 杜預 注: “柏, 國名. 汝南西平縣有柏亭.”

46) <豐方鼎> (『集成』 5·2739): “隹(唯)周公于征伐東尸(夷), 豐·白·尊(薄)古(姑), 咸(咸)伐.”

47) 『合集』 28596: “辛巳일에 점을 쳤다. 왕이 사냥을 갈 때에 白의 동쪽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辛巳卜, 王往田, 從白東?)

『合集』 28843: “白의 동쪽에서 사냥해도 되겠습니까? 白의 서쪽에서 사냥해도 되겠습니까?” (于白東(離)? 于白西(離)?)

48) 『合集』 36794: “癸未일의 점에 白에서 물었다. 왕이 열흘 동안 재앙이 없겠습니까?” (癸未卜, 在白貞: 王旬無猷?)

49) 『合集』 12523: “물었다.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白에서, 이월이다.” (貞: 不雨? 才(在)白, 二月.)

50) 『合集』 27529: “……장차 妣庚에게 敕제사를 지내도 되겠습니까? 白에서.” (…其𠄎妣庚? 在白.)

51) 『說文』 『非部』: “非, 違也. 從飛下𠄎, 取其相背. 凡非之屬皆從非.”

52) 『說文』 『門部』: “關, 開也. 從門辟聲.”

좌우의 문짝을 밀어서 여는 것이니, 곧 ‘關’이라 한다.”⁵³⁾라고 하였다. 나누는 것과 어기는 것은 의미가 서로 통한다. 따라서 ‘非’자의 변문에 의미 부호인 ‘ㄹ’을 더한 것이다. ‘非’는 옛 방국의 이름으로, 姓은 偃이다. 『潛夫論』 『志氏姓』에는 ‘葉’라고 쓰고, 『路史』 『國名紀乙·少昊後偃姓國』에는 ‘裴’라고 썼으니, “裴는 鄭나라 땅으로, 文公이 鄭伯을 만난 곳이니(13년), 말하자면 곧 ‘裴林’이다.(宣公 元年, 襄公 31년). 지금 開封 宛陵에 裴林과 林鄉이 있으니, 어떤 본에는 裴라고 쓰여 있다.”⁵⁴⁾라고 말하였다. 곧 지금의 河南 尉氏縣의 서쪽에 위치한다.

‘非’와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5편으로, 2편은 은허 제1기에 속하고 3편은 은허 제4기에 속한다. 은허 제1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파편으로 내용이 온전하지 않지만 1편은 非에 가도 되는지를 점친 내용이 남아 있고⁵⁵⁾, 1편은 非에서 虎를 포획할 수 있을지를 점쳐 묻은 내용이다. 은허 제4기에 속하는 갑골문 중에 2편은 왕의 행차에 非를 경유해도 되는지를 점쳐 묻은 내용이고, 1편은 非와 싸워 손상시킬 수 있는지를 묻은 내용이다.⁵⁶⁾

(10) 黃

‘黃’은 옛 방국의 이름으로, 姓은 ‘嬴’이다. 『說文』 『黃部』에 “黃은 땅의 색이다. ‘田’과 ‘𣎵’으로 구성되었고, ‘𣎵’은 또한 소리를 나타낸다. ‘𣎵’은 ‘光’의 古文이다. 무릇 ‘黃’에 속하는 것은 모두 ‘黃’으로 구성되었다.”⁵⁷⁾라고 하였는데, 이는 許慎이 와전된 小篆을 근거로 잘못 풀이한 것이다. 徐中舒는 “사람이 環玉을 차고 있는 형상을 본뜬 것으로, ‘大’는 정면으로 서있는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口’ 혹은 ‘曰’은 환옥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나중에 가차되어 황색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璜’자를 만들게 되었다.”⁵⁸⁾라고 하였다. 『古本竹書紀年』 『夏紀』에 “后相이 즉위하니, 2년에 黃夷를 정벌하였다.”라 하고, “2년에 風夷와 黃夷를 정벌하였다.”라 하며, “后芬이 즉위하니, 3년에 九夷가 와서 조회하였다.”⁵⁹⁾라고 하였다. 雷學淇의 『竹書紀年義證』에서 黃·白·赤·玄은

53) 楊樹達, 『釋開闢閉』, 『積微居小學述林』, 中華書局, 1983年, p. 83-84

54) 『路史』 『國名紀乙·少昊後偃姓國』云: “裴, 鄭地, 文公會鄭伯處(十三年), 設卽裴林(宣元年·襄三十一年), 今開封宛陵有裴林林鄉, 一作裴.”

55) 『合集』 8135: “다음날인 癸口일에 非로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翼(昱)癸…不步于裴?)”

56) 『屯南』 5063: “장차 非를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其戕 裴?)” ‘戕’은 중상을 입히는 것이다.

57) 『說文』 『黃部』: “黃, 地之色也. 從田從𣎵, 𣎵亦聲. 𣎵, 古文光. 凡黃之屬皆從黃.”

58)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年, p.1475-1476

59) 『古本竹書紀年』 『夏紀』: “后相即位, 二年, 征黃夷.”(『後漢書』 『東夷傳』注) “二年, 征風夷及黃夷.”(『太平御覽』 『皇王部』) “后芬即位, 三年, 九夷來御, 曰畎夷·于夷·方夷·黃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太平御覽』 『夷部』)

服의 색으로 구별한 것이고, 方과 風 등은 모두 바다에 가까운 ‘夷’이라 하였다. 즉 ‘黃夷’는 夷族집단에 속함을 알 수 있다. ‘黃’의 시조는 少皞 金天氏라고 전해진다. 『古今姓氏書辯證』에 “黃은 嬴姓에서 나왔다. <그 후에> 나라로 姓을 삼았다.”⁶⁰⁾라고 하였다. 何光岳은 “지금의 洮水 北岸에 橫水라는 지명이 있다. 山西省 絳縣 서쪽 30리에 橫과 黃이 서로 통하니, 곧 黃國의 옛 땅이다.”⁶¹⁾라고 하였다. 지금의 河南省 黃川 서쪽에 위치하였던 黃國은 『左傳』 「桓公」8년에 처음 보이며, 『左傳』 「僖公」12년에 “여름에 楚나라가 黃을 멸망시켰다.”⁶²⁾라고 하였다. 『漢書』 「地理志·汝南郡」: “弋陽은 제후국이다.”라고 하였는데, 應劭는 “弋山은 서북쪽에 있다. 옛 황국은 지금의 黃城이다.”⁶³⁾라고 말하였다. 한편, 陳秉新은 “汝南의 黃國은 淮河 남쪽에 위치하여 商都(安陽)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黃과 인접한 黎도 또한 지금의 山西 境內로 汾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卜辭에 보이는 黃은 汾水 유역의 黃으로, 春秋초기에 쫓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黃族의 한 지류는 남쪽의 黃川으로 옮겨가서 나라를 세웠으니, 곧 春秋시기의 黃이다.”⁶⁴⁾라고 하였다.

‘黃’과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9편으로, 8편은 은허 제1기에 속하고 1편은 은허 제2기에 속한다. 은허 제1기에 속하는 갑골문은 黃에서의 사냥, 포획한 포로의 이송,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의 공납, 병기의 사여, 책명, 제사의례, 黃人에 대한 포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허 제2기에 속하는 1편은 黃에 가도 되는지를 점친 것이다.

(11) 角

‘角’은 짐승의 뿔을 본뜬 글자로, 옛 방국의 이름이다. 『說文』 「角部」에 “角은 짐승의 뿔이다. 象形 글자로, 角자는 刀·魚자와 서로 비슷하다. 무릇 뿔에 속하는 것은 모두 角으로 구성된다.”⁶⁵⁾라고 하였다. 羅振玉과 唐蘭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許慎은 小篆의 잘못된 자형을 보고 “角자는 刀·魚자와 서로 비슷하다.”라고 오인하였다. 西周 중·후기에 속하는 <蓼生盥>와 <噩侯馭方鼎>에도 보인다. <蓼生盥>의 명문에 “王이 南淮夷를 정벌하여 角나라와 觶(津)을 치고, 桐나라와 通나라를 쳤다.”⁶⁶⁾라고 하였으니, 곧 角이 西周시기에 南淮夷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60) 『古今姓氏書辯證』: “黃, 出自嬴姓...以國爲姓.”

61) 何光岳, 『東夷源流史』, 江西教育出版社, 1990年, p.41

62) 『左傳』 「桓公」8年: “夏, 楚子合諸侯于沈鹿. 黃隨不會.” 『左傳』 「僖公」12年: “夏, 楚滅黃.”

63) 『漢書』 「地理志·汝南郡」: “弋陽, 侯國.” 應劭曰: “弋山在西北. 故黃國, 今黃城是.”

64) 陳秉新·李立芳, 『出土夷族史料輯考』, 安徽大學校出版社, 2005年, p.28

65) 『說文』 「角部」: “角, 獸角也. 象形, 角與刀魚相似. 凡角之屬皆從角.”

66) <蓼生盥>(『集成』 9·4459): “王征南淮尸(夷), 伐角·觶, 伐桐·通.”

‘角’과 관련된 갑골문은 4편으로, 모두 은허 제1기에 속한다. 그 중 2편은 ‘角’이 殷商에게 親附할 수 있을지를 점친 내용이며, 다른 2편은 角의 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1편은 先이 角의 여자를 보내올지를 점친 내용이고, 다른 1편은 角婦에게 왕의 일을 명하는 내용이다.

(12) 虎方

‘虎’자는 호랑이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여기에서는 ‘虎方’이라는 옛 방국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西周초기에 속하는 <中方鼎二>에 “王이 南宮에게 명령하여 반란을 일으킨 虎方을 정벌한 해이다. 王이 中에게 선도하기를 명하여 南國의 도로를 순시하게 하였다.”⁶⁷⁾라고 하였다. 郭沫若은 “虎方은 南國에 속하며, 마땅히 江淮유역에 있으니, 의심컨대 徐方인 듯하다.”⁶⁸⁾라고 하였다. ‘虎方’과 관련된 갑골문은 은허 제1기에 속하는 1편이 보이는데, ‘虎方’을 屠戮해도 되는지와 ‘太甲’, ‘祖丁’, ‘祖乙’에게 告제사를 지내도 되는지를 점쳐 묻은 내용이다.

(13) 六

‘六’은 옛 나라 이름으로, 姓은 ‘偃’이며, 지금의 安徽 六安市 동북쪽에 있었다. 『史記』『夏本紀』에 “禹임금이 즉위하고서 皐陶를 천거해 政事를 맡겼는데, 皐陶가 죽었다. ‘英’과 ‘六’에 皐陶의 후예를 封하였는데, 아마도 ‘許’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正義에 “帝王紀에 이르기를, 皐陶는 曲阜에서 태어났다. 曲阜는 偃땅이다. 그러므로 황제가 이로 인해 姓을 하사하여 偃이라 하였다.”⁶⁹⁾라고 하였다. 『春秋』『文公』5년에 “가을에 楚나라 사람이 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六國은 지금 廬江 六縣이다.”⁷⁰⁾라고 하였다. 『漢書』『高帝紀』에 “當陽君 英布는 九江王이 되어 六에 都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顏師古의 注에 “六은 縣의 이름인데, 본래 옛 나라로서 皐陶의 후예이다.”⁷¹⁾라고 하였다. 『漢書』『地理志』에 “六은 옛 나라이다. 皐陶의 후예로, 姓은 偃이며, 楚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⁷²⁾라고 하였다.

67) <中方鼎二>([『集成』 5·2751): “隹(唯)王令(命)南宮伐反虎方之年. 王令(命)中先, 省(省)南國貫行.”

68)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 上海書店出版社, 1999年, p.17

69) 『史記』『夏本紀』: “帝禹立而舉皐陶薦之, 且授政焉, 而皐陶卒. 封皐陶之後於英·六, 或在許.” 正義: “帝王紀云: 皐陶生於曲阜. 曲阜偃地, 故帝因之以賜姓曰偃.”

70) 『春秋』『文公』5年: “秋, 楚人滅六.” 杜預 注: “六國, 今廬江六縣.”

71) 『漢書』『高帝紀』: “當陽君英布爲九江王, 都六.” 顏師古 注: “六者, 縣名, 本古國, 皐陶之後.”

72) 『漢書』『地理志』: “六, 故國, 皐陶之後, 偃姓, 爲楚所滅.”

‘六’과 관련된 갑골문은 모두 7편으로, 모두 은허 제1기에 속한다. 그 주요 내용은 재앙, 거북의 공납, 포박 그리고 六에서 점친 내용⁷³⁾ 등이 보인다.

(14) 林

‘林’은 옛 방국의 이름이다. 陳夢家是 “林方은 淮水の 남쪽에 있으니, 마땅히 淮夷의 나라이다. 『水經』에 ‘淮水는 또 동쪽으로 鍾離縣 북쪽을 지나간다.’라고 하였는데, 注에 “『世本』에 말하기를, ‘鍾離는 嬴姓이다.’라고 하였다. 『路史』 『國名紀乙』에 ‘지금 濠가 다스리는 동쪽 6리는 鍾離의 故城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安徽省 鳳陽縣이다. 林方은 마땅히 이 일대에 있었을 것이다.”⁷⁴⁾라고 하였다. 『逸周書』 『史紀』에 “옛날에 有林氏가 離戎의 임금을 불러서 조회하였는데, 이르렀으나 禮로 하지 않고, 머물렀으나 親하지 않았다. 離戎이 도망가자 林氏가 그를 죽이니, 천하가 林氏를 배반하였다.”⁷⁵⁾라고 하였다.

‘林’과 관련된 갑골문은 은허 제1기에 속하는 1편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林에서 여자를 취해도 될지를 점친 것이다. 한편, 제5기 征人方 복사 중에도 ‘林’과 관련된 갑골문이 2점 있다.

Ⅲ. 殷商과 夷族 方國의 관계

1. 시공간별 夷族 方國의 분류

이상과 같이 殷商시기 갑골문에 보이는 夷族 방국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殷商왕조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술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각 방국들에 대한 고증과 활동지역은 대부분 후대의 전래 문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殷商시기의 夷族 방국들의 활동범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로서는 자료적인 한계로 인해 殷商시기 夷族 방국들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토문헌과 고고학 자료 그리고 후대 전래문헌의 방증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73) 『合集』 8306: “六에서… 自가 물었다. …해도 되겠습니까?(…才(在)六, 自貞: …?)”

『合集』 8307: “六에서 □가 물었다. …않아도 되겠습니까?(才(在)六, □貞: …不…?)”

74)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1992年, p.307

75) 『逸周書』 『史紀』: “昔有林氏召離戎之君而朝之, 至而不禮, 留而弗親, 離戎逃而去之, 林氏誅之, 天下叛林氏.”

이들 자료에 나타난 殷商과 夷族 방국들 간의 역학 관계를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殷商시기 갑골문에 보이는 夷族 방국들은 山東省, 河南省 동·남부, 江蘇省 북부, 安徽省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들을 지역과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殷商시기 갑골문에 나타난 夷族집단은 지금의 산둥 지역에 ‘尸(夷)方’, ‘人方’, ‘東’, ‘夙(宿)’, ‘盧(盧)’, ‘敕’가 있었고, 하남지역에 ‘州’, ‘白’, ‘非(斐)’, ‘黃’이 있었으며, 강소지역에 ‘角’, ‘虎方’이 있었고, 안휘지역에 ‘六’, ‘林’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14개 이족 방국들은 갑골문에 기술되어 간략하게나마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이족 방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표 1> 殷商시기 갑골문에 보이는 夷族 方國

구분	方國	分期					소계
		1期	2期	3期	4期	5期	
山東省	尸(夷)方	18			3		21
	人方	1		4	1	47	53
	東	3			1	(2)	4(2)
	夙(宿)	2					2
	盧(盧)	2		9		5	16
	敕	2					2
河南省	州	4					4
	白	2		5	2	1	10
	非(斐)	2			3		5
	黃	8	1				9
江蘇省	角	4					4
	虎方	1					1
安徽省	六	7					7
	林	1				(2)	1(2)
소 계		57	1	18	10	53	139

()안의 수량은 ‘征人方’ 卜辭의 내용으로, 이미 人方에 포함되어 소계에서는 계산하지 않았다.

은허 제1기에는 14개 이족 방국이 모두 보이며, 제2기에는 ‘黃’ 1개국만 보이고 제3기에는 ‘人方’, ‘白’, ‘盧(盧)’ 등 3개국이 보이며, 제4기에는 ‘尸(夷)方’, ‘人方’, ‘東’, ‘白’, ‘非(斐)’ 등 5개국이 보이고 제5기에는 ‘人方’, ‘盧(盧)’, ‘東’, ‘白’ 등 4개국이 확인된다.

본고에 사용된 갑골문은 모두 139편으로⁷⁶⁾, 은허 제1기에 속하는 것은 58편으로 가장

⁷⁶⁾ 陳秉新·李立芳의 『出土夷族史料輯考』(安徽大學出版社, 2005年, p.3~70)에서는 이족 방국과 관련된 갑골문 147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는데, 본고에서는 『甲骨文合集』 등과 같은 갑골문 저록들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여 중복되는 8편을 제외하고 139편만을 엄선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갑골문 저록들에 이족 방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더 있지만 대부분 이들과 중복

많으며 제2기에는 1편만 보인다. 은허 제5기에는 55편이 보이나 이중에서 ‘征人方’과 관련된 44편을 제외하면⁷⁷⁾, 제3~5기는 비슷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량상의 특징은 현재까지 발견된 갑골문 중에서 은허 제1기에 해당하는 갑골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제2기에 해당하는 갑골문이 가장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殷商과 夷族 관계의 변화양상

1930년, 山東省 章丘市 龍山鎮의 城子崖유적을 발굴한 이후로 그동안 산둥성 전역에서 수많은 고고문화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그 고고발굴성파에 의하면, 산둥지역에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後李문화와 北辛문화(중기)→大汶口문화(후기)→龍山문화(말기)→嶽石문화(夏~商초기)가 산둥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점차 河南省 동부, 江蘇省과 安徽省 북부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비교적 공통된 고고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二里崗 상층문화 이후로 이들 동방지역은 商문화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고유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갑골문에 보이는 이족 방국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殷商왕조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은허 제1기

이 시기는 갑골문의 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 내용도 상당히 풍부함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벌, 희생, 포획, 재앙 등과 같이 적대적인 관계와 회합, 책명, 사여, 수렵, 점복, 공납, 부녀, 기원 등과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표출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하였다.

<표 2> 殷墟 제1기 殷商과 夷族 方國간의 관계

구분	方國	적대관계				우호관계								소계
		정벌	희생	포획	재앙	회합	책명	사여	수렵	점복	공납	부녀	기원	
山東	尸(夷)方	12	5										1	18
	人方						1							1
	東					2			1					3
	夙(宿)												2	2
	盧(戲)									2				2
	敕	1		1										2

되거나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은상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별다른 효용이 없어 제외되었다.

⁷⁷⁾ 졸고, 『殷商시기 甲骨文에 보이는 ‘征人方’ 고찰』, 『유교문화연구』제20호, 2012.

河南	州		1	3									4
	白		1						1				2
	非(斐)	1		1									2
	黃			2		1	2	1	1		1		8
江蘇	角					2						2	4
	虎方	1											1
安徽	六			1	2					2	2		7
	林			1									1
소 계		15	7	8	2	5	3	1	2	5	3	3	57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尸(夷)方’, ‘敕’, ‘州’, ‘非(斐)’, ‘虎方’, ‘林’ 등은 殷商왕조와 대체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벌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다수가 ‘尸(夷)方’에 속하는 것이고, ‘敕’, ‘非(斐)’, ‘虎方’ 등은 각각 1점씩 밖에 발견되고 있지 않다. 즉 이시기 殷商의 주요 정벌 대상은 ‘尸(夷)方’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人方’, ‘東’, ‘夙(宿)’, ‘盧(盧)’, ‘角’ 등은 殷商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白’, ‘黃’, ‘六’ 등은 적대와 우호적인 관계가 공존하지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이 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은허 제2기

이 시기에는 ‘黃’과 관련된 갑골문 1편만 확인되고 있는데, ‘黃’에 가도[步] 되는지를 점쳐 묻은 것이다. 은허 제1기의 갑골문 중에서 黃에 가서 수렵할 때에 재앙이 있을지 없을지를 점쳐 묻은 것으로 보아 이 갑골문 내용도 黃에 가려고 하는데, 재앙이 있을지 없을지를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은허 제1기에서는 대체적으로 殷商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黃나라 사람을 포획하는 갑골문이 2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은허 제1~2기에 殷商왕조와 黃은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은허 제3기

이 시기에는 ‘人方’, ‘盧(盧)’, ‘白’이 보이는데, ‘白’에서는 주로 수렵과 점복을 실시하여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人方’, ‘盧(盧)’은 殷商의 주요 정벌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殷墟 제3기 殷商과 夷族 方國간의 관계

구분	方國	적대관계		우호관계		소계
		정벌	희생	수렴	점복	
山東	人方	4				4
	盧(盧)	9				9
河南	白			4	1	5
소 계		13		4	1	18

(4) 은허 제4기

이 시기에 ‘尸(夷)方’, ‘非(斐)’는 殷商의 주요 정벌 대상이었고, ‘人方’은 희생과 관련된 내용 1점만이 확인되어 은허 제3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가 완화된 듯하다. ‘東’과 ‘白’에서는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은상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殷墟 제4기 殷商과 夷族 方國간의 관계

구분	方國	적대관계		우호관계		소계
		정벌	희생	수렴	점복	
山東	尸(夷)方	3				3
	人方		1			1
	東			1		1
河南	白			2		2
	非(斐)	3				3
소 계		6	1	3		10

(5) 은허 제5기

이 시기에 ‘人方’, ‘盧(盧)’, ‘林’은 殷商의 주요 정벌 대상이 되었고, ‘東’과는 회합하여 ‘人方’을 정벌할 정도로 우방에 속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白’에서 점복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殷墟 제5기 殷商과 夷族 方國간의 관계

구분	方國	적대관계		우호관계			소계
		정벌	희생	회합	수렵	점복	
山東	人方	46	1				47
	東			(2)			(2)
	盧(盧)	5					5
河南	白					1	1
安徽	林	(2)					(2)
소 계		51	1	2		1	53

이상과 같이 은허 제1기에서 14개의 이족 방국이 모두 확인되지만 그중에서 ‘夙(宿)’, ‘敕’, ‘州’, ‘角’, ‘虎方’, ‘六’ 등 6개국은 은허 제1기에만 확인되고, ‘黃’은 은허 제1~2기에만 보이며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1기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되는 갑골문의 수량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들 이족 방국들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殷商왕조의 주요 관심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尸(夷)方’과 ‘非(斐)’는 은허 제4기, ‘林’은 제5기에도 확인되며, ‘盧(盧)’는 제3기와 제5기, ‘東’은 제4~5기, ‘人方’과 ‘白’은 제3~5기에 모두 보이는데, 이들 이족 방국들은 殷商시기 전반에 걸쳐 殷商왕조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존하는 갑골문은 절대다수가 殷商의 수도인 殷墟에서 발견되었고, 그것도 갑골점에 사용된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후대의 簡牘이나 종지와 같이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갑골문의 기록은 단지 殷商왕조가 동방의 夷族에 대한 인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갑골문에서 확인된 이족 방국들이 殷商시기 동방에서 활동하였던 이족들을 모두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갑골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동방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족 방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또한 殷商과의 관계처럼 이족 방국들 간에도 서로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맺음말

王國維는 ‘二重證據法’을 처음으로 제창하여 전래문헌과 고고학 출토자료를 동시에 활용해야 중국 고대사의 실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헌사료가 빈약한 殷商시기를 연구함에 있어 전래문헌, 출토문헌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자료의 상호보완은 당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殷商왕조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이민족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기존 중국학계에서는 대부분 중화 중심적인 사고로 이들을 정벌의 주요대상으로만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夷族 방국에 대한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殷商왕조는 수많은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교류와 적대적인 분쟁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夷族 방국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표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던 방국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夷族 방국들은 한편으로는 견제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떤 夷族 방국은 어떤 시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시기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다면, 실제로 동방지역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夷族 방국들은 비교적 공통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殷商과 대등한 관계에서 한편으로는 교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견제의 역할도 하였다. 이들 이족 방국들 중에서 일부는 殷商과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일부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殷商시기 일부 夷族 방국들은 殷商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 夷族 방국들은 殷商왕조의 직접 통치하에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이족 방국들이 씨족 동맹의 공동연맹체제 형태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추후 갑골문과 같은 출토자료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 좀 더 구체적인 당시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내학계에서는 그동안 韓民族의 기원과 東夷에 대한 연구는 주로 秦漢시기 이후의 전래문헌에 국한되거나 동북지역의 고고 발굴 자료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현존 최고의 문자자료인 갑골문에 나타난 夷族 방국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학계에서 東夷에 대한 막연한 개념과 추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先秦시기 東夷에 대한 개념과 활동 범위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秦漢 이후 東夷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橫北村과 大河口

— 최근 조사된 유적을 통해 본 西周時代 지역 정치체의 양상 —

김 정 열(동북아역사재단)

目次

1. 서론
2. 유적 조사 성과와 주요 유물
3. 墓地의 연대와 그 문화적 특징
4. 서주 지배질서와 지역 정치체

1. 서론

西周史 연구의 획기적 변화는 청동기 명문[金文]을 사료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에 근대 역사학이 도입되면서 西周史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金文은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同時性和 수량적 우세로 인해 지금은 서주사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금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그것이 아직도 성장 중인 자료라는 것에 있다. 서주시대 금문의 주요한 載體인 靑銅禮器는 중국의 야외고고학이 성장하면서 매년 적잖은 양이 출토되며,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과학적 발굴을 통해 획득된 청동예기와 거기에서 획득된 금문자료는 청동예기의 연대와 제작기법 등에 관련된 기본정보는 물론 출토된 유적의 자연적·인문적 환경, 출토 유구의 유형 및 성격, 공반 유물의 종류 및 내용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통해 금문이 전하는 내용을 더욱 구체적인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山西省 남부의 臨汾盆地 일대에서 발굴 조사된 橫北村 묘지 유적(이하 ‘횡북촌 유적’)과 大河口 묘지 유적(이하 ‘대하구 유적’)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이 두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 서주시대 公共墓地 유적이며 그 보존상태도 대체로 양호하여, 각각의 묘지를 조성한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두 묘지는 서주 왕실의 후예인 叔虞가 封建되었다고 하는 晉의

묘지 유적, 즉 天馬-曲村 유적(이하 ‘천마곡촌 유적’)에서 불과 2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좁은 지역 범위 내에서 복수의 서주시대 묘지가 함께 조사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게다가 횡북촌 유적과 대하구 유적에서는 각각 ‘棚伯’과 ‘霸伯’을 필두로 한 묘지의 주인공들 및 그들과 서주 朝廷 또는 주변 집단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를 담은 청동예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서주 국가의 지방 통치를 연구할 때 핵심적 과제로 설정되어 온 것은 ‘封建制’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연구는 대개 관련 자료를 귀납하여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封建制像’을 구축하고, 이것을 秦漢 제국체제 성립 이전의 중국 고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국가적 질서 원리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서주의 지방 통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對極에 선 지배의 대상(혹은 지배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론 封建諸侯와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횡북촌 유적과 대하구 유적은, 西周의 주요 제후 가운데 하나인 晉侯의 封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묘지를 조성한 지역 정치체의 수장은 스스로를 棚伯과 霸伯이라 부르면서, 서주 조정 및 그 주요 구성원과 다양한 관계 속에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횡북촌 유적과 대하구 유적의 출토자료를 천마곡촌 유적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포착하고, 그들의 성격과 존재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본다면, 서주시대 山西 남부 지역 일대의 지역사회 구성 및 그에 대한 서주 국가의 통치 방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서주 국가의 지방 통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며 포괄적인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적 조사 성과와 주요 유물

1) 횡북촌 유적

횡북촌 유적은 山西省 運城市 絳縣 서쪽의 橫水鎮 북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북쪽 구역에서 서주~춘추 초기의 묘지가 확인되었다. 묘지의 규모는 남북 약 200m, 동서 약 150m 가량으로 약 300여 기의 무덤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발굴 결과는 아직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M1~M3 등 3기의 대형 무덤에 대한 略報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M3은 이미 도굴되었으나, M1과 M2 등 다른 2기는 비교적

완정하게 보존된 상태이다.

M1은 묘도가 딸려 있는 동서향의 수혈식 토광목곽묘이다. 방향은 대체로 정서향이며 묘도와 묘실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葬具는 1槨 2棺이다. 墓主의 頭向은 무덤과 같은 서향이며, 葬式은 양와신전장이다. M1에는 상당한 양의 부장품이 매장되었다. 부장품은 청동예기와 청동악기 및 車馬具, 玉器, 漆器, 土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 예·악기는 모두 25점인데, 여기에는 鼎 5점, 簋 5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토기는 鬲, 簋, 大口尊, 三足甕, 圈足甕, 淺盤豆 등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13점이나 출토된 三足甕은 서주시대 무덤에서 잘 볼 수 없는 것이다. 청동예기 가운데 모두 8점에서 명문이 확인되었다.

M2 역시 묘도가 딸려 있는 동서향의 토광목곽묘로 방향과 무덤의 구조는 M1과 동일하다. 장구는 1곽 2관이다. 묘주의 두향은 서향이어서 M1과 같으나, 장식은 부신장으로 M1과 다르다. M2의 관과 곽 사이에서도 다량의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부장품은 대부분 청동 예·악기 및 車馬器인데, 청동예·악기는 모두 16점으로 여기에는 鼎 3점, 甬鐘 5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8점에서 명문이 확인되었으며, 5점이 보고되었다.

橫北村 서주묘지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M1과 M2 이외에도 다수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무덤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동서 방향으로 조영되었다. 묘주의 장식은 양와신전장이 약 2/3를 점유하지만 부신장도 1/3에 달한다. 중·대형 무덤은 車馬坑을 갖춘 것이 많고 모두 순장의 관습이 보이며 곽실 아래에서는 腰坑이 확인된다. 특히 중·대형 무덤 29기에서는 묘실 개구부의 동쪽이나 혹은 사방에 장방형, 원형 혹은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구멍 흔적이 발견되며, 특히 동쪽에 2개의 소형 구멍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현상은 이전에 같은 시대의 무덤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대개 柱洞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묘벽을 향해 비스듬히 개착된 斜洞으로, 주동과는 다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하구 유적

大河口 西周墓地는 산서 남부 翼城縣 현 소재지 동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다. 묘지 면적은 약 4만 여㎡에 달하며, 이곳에 약 1,500기 가량의 서주시대 무덤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5월까지 1만 5,000㎡에 달하는 범위에서 무덤 579기와 차마갱 24기가 발굴되었고, 현재 그 결과의 일부가 약보의 형식으로 보고되어 있다. 묘지가 사용된 시간적 범위는 서주 전기~춘추 초기이다.

M1호 무덤은 서향이며, 개구부의 네 모서리에서 斜洞이 각각 하나씩 발견되었다. 사동

은 횡북촌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대하구 유적에서는 현재까지는 M1호에서만 확인되었다. 동쪽 이층대 위에서는 칠을 입힌 목제 인형이 2점 출토되었다. 葬具는 1관 1곽이며, 槨室의 아래에서는 腰坑이 확인되었다. 묘주는 남성으로 추정되며, 頭向은 서향, 葬式은 양와신전장이다.

M1의 광실 내, 관과 곽 사이에서 다량의 청동기와 원시자기 그리고 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청동기의 수량이 많다. 청동기에는 예·악기가 75점 포함되어 있다. 청동예기는 鼎 24점, 簋 9점, 鬲 7점 등이 출토되었으며, 악기로는 鍾과 鐃 각 3점이 발견되었다. 鼎의 수량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청동기 가운데서 명문이 확인된 것은 모두 12점이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10점이다.

M1017의 방향은 역시 서향이며, 묘광의 형태는 M1보다 다소 세장하다. M1017은 실내 작업을 위해 유구가 통째로 옮겨져 아직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장구와 장식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출토 청동기에는 예·악기, 병기와 공구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예기는 모두 54점으로, 鼎 13점, 簋 6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역시 鼎의 수가 이례적으로 많다. 청동예기 가운데 10점에서 명문이 확인되었다.

3. 墓地의 연대와 그 문화적 특징

1) 주요 무덤의 연대와 묘주

우선 횡북촌 유적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조사자에 의하면, 이 묘지는 서주 전 시기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그 하한은 춘추 초기라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 M1과 M2의 연대에 대해서는 부장 청동예기의 형식편년이나 조합관계 그리고 무덤의 구조 등을 두루 관찰하였을 때, 서주 중기의 전단, 즉 昭王~穆王期를 전후한 시기에 영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M1에서 출토된 M1:205 簋는 기형이나 장식문양의 특징으로 보아 서주 중기 후단경의 것이다. M1:205에 주조된 명문에 ‘益公’이라는 인명이 등장하는 것도 참고가 된다. ‘益公’은 서주 전기의 成王경과 서주 중기의 共王~懿王期의 청동기 명문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데, M1:205 簋의 연대는 서주 成王期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여기의 익공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한편, M2:62 簋처럼 몸통 전체를 瓦棱紋으로 장식한 環耳簋는 서주 중기 중에서도 특히 그 후단에 유행했다.

M1·M2에 부장된 청동예기 조합은 食器인 鼎, 鬲, 簋, 酒器인 爵, 觶, 尊, 卣, 水器인

盤, 盃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합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水器인 盤, 盃가 세트를 이루어 조합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李豊의 이른바 ‘제4기’에 시작되는 것인데, ‘제6기’에 이르면 盃는 匜로 대체된다. 李豊의 ‘제4기’는 穆王期 전후이며, ‘제6기’는 서주 말의 宣王·幽王을 전후한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청동예기 조합은 穆王 이후 宣幽期 이전에서 볼 수 있다.

횡북촌 M1·M2는 부장 청동예기의 형태 및 문양으로 보건대 그 하한은 서주 중기의 후단까지 내려가고, 부장 청동예기의 조합이나 무덤의 구조 등도 그와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M1·M2는 서주 중기의 후단에 조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횡북촌 M1과 M2에서 출토된 청동예기 가운데 상당수에서 명문이 관찰되었다. 특히 M1에서 출토된 청동예기 중 M1:212 鼎과 M1:199 簋 등 4점에서 匭伯이 畢姬를 위해 제작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고, M2에서 출토된 M2:58과 M2:103 등 鼎 2점과 M2:76 甗 1점에는 匭伯이 자신을 위해 그것을 제작하였다는 명문이 있다. 따라서 M1과 M2는 각각 畢姬와 匭伯의 무덤일 것이다. M1과 M2 두 무덤의 묘주는 무덤의 위치나 출토 유물의 형식 등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였으며, 출토 동기의 명문으로 보아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匭伯의 ‘匭’자는 ‘친구[朋友]’라는 의미이나, 위의 匭伯 관련 諸器에서는 ‘친구’라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 匭은 서주 중기의 昌鼎에서 晉과 관련된 지명으로 출현하는데, 匭伯 동기가 출토된 횡북촌 유적 또한 서주시대 晉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천마곡촌 유적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昌鼎의 匭은 匭伯의 匭과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匭伯’처럼 ‘地名+伯’으로 구성된 인명은, 그 지명으로 표현되는 邑落의 수장을 표시하는 호칭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한편 대하구 유적의 경우, 조사자는 이 묘지에서 발견된 무덤이 서주 전 시기에 걸쳐 영조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늦은 것은 춘추 초기까지 그 시기가 내려간다고 하였다. 보고는 이처럼 묘지의 전반적인 年代觀을 제시하였을 뿐, 개별 무덤에 대한 편년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장 유물의 사진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된 M1과 M1017 등 2기의 경우에는 그 유물의 기형과 명문을 통해 각각의 조영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M1:14 方鼎은 원각방정으로 뚜껑이 있다. 원각방정의 출토례는 많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 목왕기 이전에 제작된 것이다. M1:18 圓腹鼎은 柱足の 深腹鼎으로 서주 전기~중기 전단에 유행한 것이다. M1:93 簋는 圈足이 없으나 3개의 높은 柱足이 설치된 독특한 기형이다. 이 簋는 河南 洛陽 馬坡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서주 전기의 臣辰父乙簋에서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M1:9 雙耳圈足簋처럼 손잡이에 鳳鳥가 장식된 사

례로는 陝西 扶風 莊白에서 출토된 戠簋나 陝西 長安 花園村 출토 諡簋 등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穆王期를 전후한 시기의 작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河口 M1 출토 청동예기의 하한은 서주 중기의 전단이며, 이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동기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M1이 조영된 시점은 서주 중기 전단, 昭王~穆王期에 해당한다.

M1017:8 簋는 뚜껑이 부착된 環耳圈足簋로, 몸통이 납작하며 뚜껑과 몸통 전체에 瓦稜紋을 장식하였다. 이런 형식의 권족계는 懿王期로 편년되는 乖伯簋나 共王~懿王期로 편년되는 詢簋 등에서 유사한 기형을 볼 수 있다. 서주 중기 후단에 유행한 양식이다. 이簋에는 6행 50자의 명문이 있다. 명문에는 井叔이 霸를 방문한 내용이 보인다. 井叔이 서주 왕실의 重臣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시기는 懿王~孝王期이므로, M1017:8의 井叔도 이 시기의 인물이라 추정된다. M1017:8 簋의 형식편년도 그에 어긋나지 않는다. M1017에서는 이밖에 청동제 甗도 출토되었다. 약보를 통해서는 甗의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이 기종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개 서주 중기 중에서도 그 후단경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M1017의 연대는 서주 중기 가운데서도 그 후단에 속한다.

대하구 유적 M1과 M1017에서도 다수의 有銘 청동예기가 출토되었다. M1의 경우에는 명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10점인데, 이 가운데 M1:4 鼎에 “伯이 보배롭고 존귀한 祭器를 만든다”는 명문이, M1:86 簋에서 “伯이 祭器를 만든다”는 명문이 있다. M1017의 경우에는 명문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다. M1017:2 方鼎에는 “伯이 鬯을 만든다”는 명문이 있고, M1017:14 豆와 M1017:66 罍에서는 각각 “霸伯이 보배로우며 존귀한 큰 제기를 만든다”와 “霸伯이 보배로운 尊을 만든다”는 내용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M1017:6 盃에는 霸伯이 王使인 尙을 맞이하여 접대한 내용이, M1017:8 簋에는 井叔이 霸伯을 방문하여 그의 공로를 치하한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된 명문이 있다.

이처럼 M1017에는 霸伯 관계기가 다수 부장되어 있으므로, 霸伯의 무덤인 것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지만, M1의 경우에는 출토 명문을 통해서 墓主를 特定하기 어렵다. 다만 M1 묘실의 바닥부 평면 크기는 M1017의 그것에 근사하고, M1에서 출토된 청동예기의 수량(67점)은 M1017의 그것(54점)보다 우세하다. 게다가 M1:4 鼎과 M1:86 簋 등 부장 청동 예기 2점에서 모두 이 물건을 “伯이 만든다”고 전하는 명문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M1 역시 霸伯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M1의 조영시기가 M1017보다 앞서는 것을 감안하면 M1017의 先代에 해당하는 霸伯의 무덤일 것이다.

2) 매장습속과 부장품의 특징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의 최상위 계층의 무덤에 부장된 청동예기는 대개 周문화의 중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것과 형태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조합의 변화 역시 주문화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것은 이 두 묘지의 주인공이, 적어도 그 최상위에 속하는 계층은, 周와 동일한 祭儀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그러나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에 보이는 상장습속에서는 전형적인 주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도 볼 수 있다. 그것은 특히 대하구 유적에서 鼎과 簋의 수가 일정한 비례를 이루지 않고 鼎이 이례적으로 많은 청동예기 조합 양상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그와 같은 이질성은 아래에 열거하는 몇 가지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횡북촌이나 대하구를 막론하고 동서향으로 조성된 묘광과 대체로 서쪽을 향한 묘주의 두향은 그 이질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陝西 長安 일대 灃鎬 지역의 張家坡 서주묘지에서 조사된 무덤 590기 가운데 북향의 무덤이 약 58.98%, 남향이 약 10.85%, 동향과 서향이 각각 14.92% 가량인 것이나, 천마곡촌 유적에서 발견된 서주~춘추시대의 무덤 641기 가운데 북향이 362기, 동향이 241기, 서향이 33기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에 보이는 묘주의 두향은 전형적인 주문화의 그것과는 판연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횡북촌 유적에서 전체 무덤의 1/3가량이 부신장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나 묘광 주변에서 ‘斜洞’이 발견되는 것 또한 주문화의 본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장습속만이 아니라 대하구 유적 M1에서 발견된 漆木俑처럼 주문화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부장 유물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하구 유적 M1에서 출토된 청동제 單耳罐과 횡북촌 유적의 M1 등에서 출토된 三足甕이 주목되는 유물이다. 왜냐하면 단이관과 삼족옹 등의 유물은 주문화에서 사용된 바가 없고, 신석기시대 후기 이래 오르도스 일원에서 발달한 토착문화에서 널리 사용된 기종이기 때문이다. 단이관의 분포지역은 북으로는 오르도스 일대에서 남으로는 山西 중·남부 일대까지 확인되며, 삼족옹 역시 오르도스와 섬서·산서 북부 등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위 지역의 청동문화를 대표하는 朱開溝文化 유적에서는 단이관과 삼족옹이 공반 출토된다.

상장습속에서의 차이나 비주문화적인 독특한 유물의 존재는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의 주인공이 周와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 고유한 문화적 요소는 ‘戎狄’의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단이관과 삼족옹을 주요한 기종으로 갖추고 있는 朱開溝文化의 주인공은 후대 戎狄의 전신이 되는 商代의 鬼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倮仲鼎(集成 7.2462)에 “倮仲이 畢媿의 媿鼎을 만든다”라는 명문이 있으므로 倮이 媿姓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陳公柔는 《左傳》 定公 4년에 唐叔에게 分與되었다고 전하는 ‘懷姓九宗’의 ‘懷姓’은 곧 ‘媿姓’이며, 媿姓은 곧 鬼方の 姓이라 주장한 바 있다. 유적과 빈번히 통혼하였다고 알려지는 쫄 공실의 묘지에서 삼족옹이 부

장된 진후 부인묘가 2기 확인되었다는 점도 유력한 방증이 된다.

4. 서주 지배질서와 지역 정치체

1) 西周時代 晉의 時空범위와 棚・霸

晉의 始封者는 成王의 동생인 叔虞이다. 사마천에 의하면, 그가 봉건된 곳은 ‘唐’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들인 燮父 때에 이르러서는 그 이름이 晉侯로 바뀌었다. 이 晉은 그 이름을 冀이라고도 하였다 하나, 이 冀이 晉의 일부인 것인지 아니면 晉과 冀이 同一地에 대한 異稱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서주시대 동안 晉의 사적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지만, 춘추시대에 접어들어 2차례에 걸쳐 絳(전 669)과 新田(전585)으로 도읍을 옮겨갔다.

그런데 漢代 이후에 晉이 이처럼 춘추시대에만 두 차례 도읍을 옮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주시대에도 몇 차례 천도하였다는 견해가 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晉의 초기 역사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唐과 晉, 冀이나 曲沃, 絳 등이 현재의 어느 곳에 비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異說이 등장하였으며, 이들 몇몇 주요 지점의 상호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천마곡촌 유적의 발견과 발굴조사를 통해 이상과 같은 서주시대 晉의 역사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山西 曲沃縣과 冀城縣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천마곡촌 유적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크게 北趙 晉侯묘지와 천마곡촌 ‘邦墓’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晉이 제2대 제후인 燮父부터 10대 殤叔, 혹은 11대 文侯까지 天馬-曲村 일대에 도읍을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晉은 지금은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唐’에 叔虞가 封建되고 이어 아마도 燮父 때에 천마곡촌 일대로 이봉된 후 춘추 전기까지 이곳에 도읍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서주 전기의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天馬-曲村 일대에 晉이 위치하고 있었다면, 橫北村과 大河口의 위치에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횡북촌 유적은 천마곡촌 유적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가량 떨어진 곳에, 대하구 유적 역시 천마곡촌 유적에서 동쪽으로 약 18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위에서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에 대해 시도한 편년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는 서주 전·중기 즈음에서 춘추 초기를 전후한 시점까지, 후자 역시 서주 전 시기에서 춘추 초기까지 사용되었다. 횡북촌 유적과 대하구 유적은

천마곡촌 유적에서 쥘의 무덤이 활발하게 영조되고 있던 시기와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시기에 사용된 것이다.

횡북촌의 棚邑과 대하구의 霸邑이 쥘과 時空的 측면에서 대체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 내용은 사실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쥘과 霸 사이에는 서주 전기부터 혼인을 통한 인적 교환이나 혹은 쥘이 주도하는 약탈관계가 존재하는 한편, 쥘은 서주 중기경 棚을 자신이 방어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도이다.

횡북촌의 봉읍과 대하구의 패읍이 언제 쥘의 영역에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주 후기부터 춘추 초기에 이르는 시기를 전후하여 쥘의 팽창운동이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絳縣에 소재한 棚邑의 횡북촌 유적이 춘추 초기경을 끝으로 멸절된 것과 霸邑의 대하구 유적이 비슷한 시기에 종말을 맞이한 것 역시, 거시적으로 보면, 춘추 초 쥘의 적극적인 확장운동에 따른 결과라고 이해해도 좋다. 즉 쥘이 서주 국가질서의 해체기를 즈음해 본격화한 영역국가화가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의 멸절을 이끈 원인이 되는 것이다.

2) 서주 지배질서 하에서의 棚伯과 霸伯

횡북촌과 대하구 유적에서는 다량의 청동예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에서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명문 자료는 서주 국가의 지방 통치 질서 하에서 棚邑과 霸邑, 혹은 그 수장인 棚伯과 霸伯이 차지한 위치와 그 역할에 관해 적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다.

먼저 대하구 M1에서 출토된 爵 1점의 “曄가 父辛을 (제사하기) 위한 爵을 만든다”는 명문에 주의해 보자. 여기에 등장한 ‘曄’는 燕侯曄이다. 燕侯曄는 成王을 전후한 시기의 燕侯인데, 이 무렵 燕侯는 현재의 北京 房山 琉璃河 인근에 封建되어 있었다. 燕侯曄의 청동예기가 北京에서 멀리 떨어진 山西 翼城의 대하구 M1에서 발견된 이유는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M1:276-1 卣의 “燕侯曄가 姑妹의 보배로운 祭器를 만든다”는 내용의 명문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 명문에서 ‘姑妹’는 서주 금문에서 初見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燕侯의 여성 친족인 것만은 분명하다. 燕侯曄가 여성 친족을 제작한 청동예기가 대하구 유적에서 발견된 까닭은 燕侯와 霸伯 양가 사이에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燕侯曄가 제작한 청동예기 2점이 부장된 대하구 M1은 서주 중기 전단에 조영된 무덤이지만, 燕侯曄와 관계된 2점의 연대는 그보다 다소 올라간다. 따라서 양가의 통혼은 서주 전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霸伯의 관계망은 서주 왕실에서 파생한 유력가문에서 다시 그 외연까지 뻗어나갔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芮이다. 大河口 M1:93 簋에는 “芮公이 霸에게 말 2필과 玉, 金[銅]을 주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簋를 주조한다”는 명문이 보인다. 명문에 따르면, 芮公이 지금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이유로 인해 霸에게 玉, 銅 등의 귀중품을 수여하였다. 大河口 M1:93 簋는 위의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주 전기로 편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서주 전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 이 무렵 芮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은 없다. 지금의 甘肅 동남부의 隴縣 일대에서 陝西와 山西의 경계가 되는 黄河의 만곡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가는 노선 어디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주시대의 芮는 《尚書》 顧命에 芮伯이 성왕의 顧命大臣으로 등장하는 것 이외에는 그 행적을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芮伯 역시 서주 전기에는 燕侯 못지않게 서주 왕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匭伯 역시 霸伯과 마찬가지로 서주 왕실에서 파생한 유력가문과 통혼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은 橫北村 유적에서 출토된 M1:205 簋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된 5행 45자의 명문은 益公이 匭伯인 冉의 공로를 치하하고, 冉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父考를 제향할 簋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명문에 등장하는 益公은 共王~懿王期の 인물로 외방을 정벌하고 王命을 출납하며, 周王이 주관하는 冊命儀禮에 右者로 참여하는 등 西周 조정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익공관계기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集解 7.4601의 畢鮮簋이다. 여기에는 “畢鮮이 皇祖인 益公을 (제사하기 위한) 簋를 만든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을 통해 益公은 畢氏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畢은 《左傳》 僖公 24년에 文王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姬姓의 가계로서 역시 《尚書》 顧命에 芮伯 등과 함께 成王의 고명대신으로 참여한 자이다. 畢氏는 西周 왕실 가계의 일원으로 서주 전기부터 顯族이었다.

益公이 匭伯 冉의 공로를 치하하였다는 명문이 출토된 橫北村 M1은 匭伯의 부인 무덤이며, 그 부인의 이름은 ‘畢姬’이다. 이 ‘畢姬’라는 명칭은 ‘畢 출신의 姬姓 여성’을 의미한다. 이 무덤에서 畢氏를 칭한 益公과 그가 匭伯의 공로를 치하한 내용의 명문을 가진 簋가 출토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畢家와 匭伯 사이의 통혼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匭仲鼎(集解 7.2462)에는 “匭仲이 畢媿의 媿器를 만든다”는 명문이 보인다. 여기에서 ‘畢媿’는 여성의 인명인데, 이 경우에 ‘媿’는 이 여성의 성이며, 畢은 그 여성의 시가이다. 명문에서 匭仲이 媿器를 만들었다 하므로 이 여성은 匭仲의 여식이다. 이것은 匭氏의 여식이 畢家와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준다. 匭과 畢은 적어도 한 차례 서로 각 가계의 여성을 상대방에 시집보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주 왕실에서 파생한 유력가문이 匭·霸와 혼인관계를 구축한 것은 匭邑과 霸

邑을 서주 왕실을 정점으로 한 혈연적 연계망에 편입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𡵓과 覇를 서주 왕실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적잖이 기여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망의 구축에 거리의 원근이라는 요소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𡵓伯과 覇伯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지방에서 그들의 안정적인 존립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한편 益公이 𡵓伯의 공로를 치하[蔑曆]하였을 때 𡵓伯의 반응 또한 주목할 만하다. 명문에 따르면, “𡵓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公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 M1:205 𡵓을 제작하였다. 서주시대에 蔑曆은 대개 周王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蔑曆을 받은 자는 周王의 恩寵을 特筆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따라서 益公이 𡵓伯의 공로를 치하한 周王의 命을 益公이 집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𡵓伯은 그 은총이 王이 아닌 益公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언명하고,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覇伯 또한 𡵓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주 중기의 후단경에 왕조의 유력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M1017:8 簋에서 확인된 “十一月井叔이 와서 절하였다. 이윽고 疇 100, 丹 2, 𡵓虎皮 1로써 覇伯의 정벌에 종사한 공로를 치하하였다. 覇伯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井叔이 사여한 물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배로운 簠를 만든다. 앞으로 만년토록 자자손손 영원히 보배롭게 사용하도록 하라”라는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井叔은 懿王~孝王期の 인물로, 서주 금문에서 때로는 책명의례의 右者로, 때로는 起訴를 수리하여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등장한다. 이밖에 근래 張家坡 유적 M163 서주 중기 무덤에서도 출토된 井叔鐘에서도 井叔이 출현한다.

이 무렵 정숙은 張家坡 유적이 입지한 豐京에 근거를 두면서 서주 조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명문에서 井叔은 覇伯이 정벌에 종사하여 공로를 세운 것을 치하하고 상품을 수여했다. 覇伯이 참여한 이 정벌이 어떤 전쟁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전쟁을 井叔이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왕실의 요청 하에 覇伯이 참여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명문에서 “井叔이 사여한 물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라고 하듯이 覇伯은 전쟁에의 참여와 그 공로에 대한 치하가 井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서주 중기의 후단에 𡵓伯과 覇伯이 각각 畢家, 井叔家와 특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각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서주 왕조의 몰락을 이끈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은 조정 내 유력 가문의 성장이다. 그것은 서주 중기 이후 조정에서 주요한 관직을 점유하고 그에 따라 토지를 세습하게 된 유력가문이 왕실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결국 서주 왕실은 厲王의 亡命과 共和政의 성립을 상징으로 하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주 조정의 유력가문은 그 성장의 과정에서

棚이나 霸와 같은 지역 정치체와 특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계망의 구축은 서주 조정 내의 유력가문을 지지하는 배후세력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棚伯과 霸伯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주 조정을 구성하는 유력가문과 통혼하거나 그들 가운데 일부와 특별한 상호관계를 구축하면서 때로 왕실(어쩌면 유력가문)이 주도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왕조 내부에서 일정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그들과 이 지역에 봉건(혹은 이봉)된 쯔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주 왕실이 지역지배를 위해 채택한 주요한 방식(혹은 체제)가 封建이었다면, 쯔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棚邑과 霸邑이 왕조의 지배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쯔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유적에서 출토된(혹은 발표된) 자료 가운데 이 문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풍부하지 않다. 다만 아래에 드는 M1017:6 盂(이하 ‘尙盂’)의 명문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3월, 왕이 伯考로 하여금 尙의 공로를 치하하게 하고[蔑曆], 苞茅과 芳鬯을 보냈다. (일이) 잘 마무리 되었다. 尙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賓을 맞이하여 인도하였다. 賓은 虎皮를 봉헌하고 璋을 바쳤다. 익일 賓에게 고향을 이르기를, “천자께서 그 臣(尙)의 공로를 치하하신 것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애쓰겠노라”고 하고 璋을 주었다. 賓을 돌려보내는데, (賓을) 인도하여 魚皮 한 짝을 특별히 주고 璋과 馬를 주었다. 다시 玉을 주었다. 賓이 나가자 좋은 음식으로 다시 이끌고, 伯이 다시 玉과 수레를 주었다. 賓이 나가자 伯은 賓을郊에서 배웅하고 다시 賓에게 말을 주었다. 霸伯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王의 하사품을 널리 알려 보배로운 盂를 만든다. 자손들은 만년토록 영원히 보배롭게 사용하라.

尙盂는 서주 중기경의 작품으로, 명문은 周王이 伯考를 霸伯 尙에게 사신으로 파견한 일을 전한다. 伯考가 周王의 명을 받들고 霸伯에게 와서 공로를 치하하고 하사품을 수여했으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霸伯이 盂를 제작하게 되었다.

《周禮》에 따르면 大宗伯은 국가의 주요 의례를 주관하는데, 그가 주관하는 주요 의례에는 吉禮, 凶禮, 賓禮, 軍禮, 嘉禮 등의 5禮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賓禮는 王이 ‘邦國’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儀禮이다. 그런데 《周禮》가 전하는 빈례는 제후 혹은 제후가 파견한 사신이 周王을 알현하는 의례이다. 따라서 周王이 伯考를 파견하여 霸伯인 尙을 치하하게 한 것은 《周禮》의 賓禮와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한편 《儀禮》에는 제후국 사이에 진행된 일종의 외교활동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그것은 聘禮라 하는데, 어떤 제후국[聘國]의 사자, 즉 賓이 군주로부터 수여된 命, 玉圭·

璋, 예물[幣] 등 3자를 휴대하고 방문국[主國]에 使行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의식을 거행한 다음, 주국으로부터 返禮로서 증여된 예물과 반환된 玉圭·璋을 지참하고 귀국하여 복명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尙孟의 명문에는 이 聘禮를 구성하는 절차 가운데의 주요 의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儀禮》에 전하는 빙례 과정은 《左傳》에 聘使가 玉圭와 예물을 휴대하고 主國을 방문하여 聘, 享 등의 의식을 행하는 史料가 적잖이 보이는 것을 통해, 춘추 제후국 사이에서 실제 이루어졌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주 금문에서도 尙孟을 제외한 몇몇 사례에서 ‘賓’에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中甗의 명문이다. 이 中甗에서는 伯買父라는 인물이 왕의 사신을 맞아 賓禮로 대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伯買父란 명칭은 ‘某邑의 伯인 買父’라는 뜻이다. 伯買父 역시 伯 앞의 邑名이 생략된 호칭으로, 이 역시 尙孟의 霸伯과 ‘伯’이라는 호칭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왕의 사신을 맞이하여 그를 賓禮로 대접하는 伯’이라면 尙孟과 中甗 이외에도 서주 금문에서 鬯(집성 10.5407)과 孟爵(집성 14.9104)에서도 볼 수 있다. 鬯(집성 10.5407)에 등장하는 夷伯, 鄧伯 등은 王이나 王姜의 명을 받아 來訪한 鬯과 孟을 빈례로써 맞이하고 선물을 주었다.

춘추시대의 聘禮를 구성하는 구체적 행위 각각에서는, 예물 증여에 있어서의 互酬性, 그리고 빙국과 주국 사이에 나타나는 교차 상호방문 등의 특징을 보이며 이와 같은 상호관계는 일방적·편무적인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賓主의 입장이 교체되는 ‘對等’한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尙孟에서 주왕과 패백 사이에 진행된 빙례가 춘추시대에 제후국 사이에서 진행된 빙례와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과 절차에는 빙국과 주국 쌍방의 ‘대등’한 관계가 이념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甗, 鬯, 孟爵 등에 보이는 賓禮를 관통하는 이념 역시 使者를 빈례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물품을 증여하여 상대방을 존경하는 태도가 보인다.

우리는 일찍이 이처럼 ‘대등한’ 입장에서 周王(의 사신)과 賓禮를 주고받는 지역 정치체가 서주 금문과 문헌에 보이는 ‘邦’이라 보고, ‘邦’은 서주 도움과의 원근과는 상관없이, 天下 어디에나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周도 원래는 하나의 邦이었지만 商 왕실을 타도함으로써 天命의 위탁 하에 천하의 질서를 주관하는 유일한 邦이 되었다. 그리고 그 邦의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가 곧 ‘伯’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僭과 霸 역시 天下에 산포되어 있는 정치체인 邦이며 僭伯과 霸伯은 그 ‘邦’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井叔이 他邦의 사자로서 霸伯을 聘問하고 양자 사이에 賓을 매개로 한 聘禮가 진행된 것은 그 때문이다.

현재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봉과 패가 쯤에게 직접 예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근거리에 위치한 진이 봉과 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주 왕조가 이들과 접촉할 때 진을 매개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서주 조정은 𡩵伯, 霸伯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유력가문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연계망을 통해 이들이 서주 국가에 협력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지방 통치체제 안에 안정적으로 수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봉과 패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역 내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쫓이 𡩵이나 霸 등의 邦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서주의 지방 통치 방식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은 𡩵邑, 霸邑 등 異文化 전통을 가진 지역 정치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侯의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후에게 부여된 職任이 관할 지역의 군사적 동향에 응하여 局地的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며 朝廷의 사신을 맞이하여 해당 지역의 貢賦 징수에 협력하는 등 특정 지역에서 서주 조정의 지배력이 해당 지역에서 관철되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쫓의 封地와 𡩵邑, 霸邑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漢初 郡國制와 琅邪郡의 정치적 위상

남 영 주(영남대)

目次

1. 머리말
2. 琅邪郡에 대한 漢 高祖의 認識
3. 漢初 통치기반 확보와 琅邪郡
 - 1) 呂后 攝政期の 琅邪國
 - 2) 文帝 治世의 琅邪郡
4. 맺음말

1. 머리말

全 中國으로 郡縣制가 실시된 秦代 이래 내지의 一般郡을 ‘內郡’으로, 邊境에 위치하여 蠻夷들이 거주했던 郡현은 ‘邊郡’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郡현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新縣’과 ‘舊縣’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郡縣설치에 관한 문제는 해당지역의 지배구조와 운영실태, 그리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등의 분야에 까지 연구가 이어졌다. 따라서 郡縣설치에 관한 논의는 곧 지역사 연구로 연결되었다. 즉, 郡縣制의 지역적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그 지역을 이해하는 작업으로 귀결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 帝國의 통치 질서로 편입·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고찰은 中國의 전체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¹⁾

그런데 郡縣制의 지역적 전개와 그 실태에 관한 문제는, 內郡 즉 舊郡은 연구자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秦이 전국을 통일한 후 설치한 대부분의 內郡들이 ‘皇帝의 直接的 支配單位’로서의 성격을 갖는 郡縣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

1) 東夷·南蠻·西南夷 등 外夷지역에 郡縣이 설치된 것은 中國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주목 받았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權五重, 『樂浪郡研究』(一潮閣, 1992年); 金慶浩, 『漢代 邊境 支配秩序와 ‘東夷’ 地域-河西·西南夷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史林』, 2005年 vol.24; 李明和, 『秦漢의 南方支配와 地域發展-南方의 郡縣化 과정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1999年 vol.32 참조.

다. 또한 漢初 郡國制가 실시된 시기에도 관심을 두지 못했다. 郡國制에서 郡縣制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中央과 諸侯王國의 대결구도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劉邦이 漢을 건국한 후부터(B.C 206) 文帝가 즉위하기까지(B.C 179) 30여년은 帝國의 기반이 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高祖시기에는 여러 功臣들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정국이 안정되지 못했다. 高祖가 사망한 후에는 呂后에 의한 初有의 外戚政治로 인해 혼란함이 가중되었다. 여후가 사망한 후 皇帝가 된 文帝는 功臣들과 劉氏 一族들에 의해 옹립되었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황제들은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때 中央이 주목한 지역의 하나가 琅邪郡이었다. 漢初 中央은 諸侯王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封地를 분할하였는데, 이때 분할의 중심이 된 지역은 南야군이 속한 齊國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齊國에 속한 모든 郡이 諸侯王國으로 분할되었지만 유독 南야군만은 郡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漢初 郡國制가 전개되는 시기 동안 통치자들이 南야군을 권력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사실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琅邪郡에 관해서는 戰國時代 齊國의 邑이었던 琅邪가 황제들의 순행지였던 사실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經典이 전수·발전된 정황 등 주로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였다.²⁾

본 연구는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南야군의 행정조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漢初 郡國制에서 郡縣制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南야군의 행정체계의 변화를 통해 이 지역의 位相에 대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郡縣制의 지역적 실태를 분석하는 지역사 연구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琅邪郡에 대한 漢 高祖의 認識

琅邪郡은 秦이 전국을 통일 한 후 舊 齊國에 설치한 郡이었다. 戰國時代 동안 齊國은

2) 孫家洲, 『漢代齊地尙巫之風考察』, 『文史哲』, 2003年 3期; 鄭杰文, 『圖騰·八祠·封禪-齊地的原始宗教學說』, 『文史知識』 1983年 3期; 經典의 전수에 관해서는 皮錫瑞, 李鴻鎮, 『中國 經學史』(同和出版社, 1984年)를 참조할 수 있다. 琅邪郡의 학문적인 배경은 魏晉南北朝時代 貴族文化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 지역출신으로 王祥, 王覽 등 琅邪 王氏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있다. 姚曉菲, 『兩晉南朝琅邪王氏家族文化研究』(山東大學出版社, 2010年).

다른 列國과 달리 郡을 설치하지 않았고, 변경지역에 都를 설치하여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秦이 전국을 통일한 후 齊 지역에 郡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행정체제가 이 지역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秦이 멸망한 후 琅邪郡이 속한 齊 지역은 여러 세력들이 차지하고자 하였는데,³⁾ 이러한 경향은 漢이 건국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漢初 高祖는 7명의 異姓諸侯王을 封하였는데, 이들이 분봉된 지역은 7개 國의 22개 郡이었다. 이 때 이성제후왕들에게 분봉된 동쪽 지역 중 유일하게 齊 지역인 臨淄郡, 濟北郡, 膠東郡, 琅邪郡과 京師를 연결하는 東郡이 中央에 속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秦漢시기 동안 여러 세력들이 齊 지역을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高祖가 同姓諸侯王을 봉할 시점에 이르자 대신들이 齊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琅邪郡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한다.

폐하께서는 韓信을 얻고 또한 秦中을 다스렸습니다. 秦은 形勝之國으로서 험난한 산하에 둘러싸여 있으며 제후국들과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후의 군사들이 100만이라면 秦 땅은 2만의 군사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세가 이렇게 유리하므로 제후들에 대한 用兵은 마치 높은 지붕 위에서 기와고랑에 물을 쏟는 것과 같이 저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齊는 동쪽으로 琅邪와 卽墨의 풍요로움이 있고 남쪽으로는 泰山의 험준함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하의 가로막음이 있고, 북쪽으로는 勃海의 이익이 있습니다. …… 그런 까닭으로 이 두 곳은 東秦과 西秦이다. 親子弟가 아니면 齊의 王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⁴⁾ (『史記』 卷8 「高祖本紀」, pp.382-383)

高祖 6年(B.C 201) 楚王 韓信이 반란을 일으킨 후 劉氏들을 諸侯王으로 封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위 기사는 韓信이 일으킨 반란이 평정된 후 田肯이 高祖에게 진언한 내용이다. 漢은 齊 지역의 東南端 지역에 위치한 琅邪의 풍요로움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이전시기부터 여러 세력들이 齊를 주목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전국시대 齊는 齊國의 권력을 차지한 田常의 封邑이었다. 전상은 安平에서 琅邪에 이르는 지역을 자신의 封邑으로 삼았는데, 이 封邑은 齊 平公의 食邑보다도 컸다.⁵⁾ 安平은 현재 山東省 益都縣 西北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齊國의 수도인 臨淄의 동쪽에 위치하였다. 이 食邑에는 秦漢시기 琅邪郡의 일부가 속하였다. 漢代 琅邪郡은 東方의 穀倉으로

3) 齊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劉邦은 참모인 酈食其를 齊王 田廣에게 보내어 투항하도록 설득하게 하였고, 韓信은 독자적으로 齊를 공격하였다. 또한 項羽는 龍且를 보내어 齊王 田橫을 도우려 하였다.(『史記』 卷92 「淮陰侯列傳」, 『史記』 卷94 「田儋列傳」, 『漢書』 卷33 「魏豹田儋韓王信傳」참조)

5) 『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 p.1884.

불렸으며, 특히 稻縣은 稻田이 萬頃에 달할 뿐 아니라 歲收가 매우 많았다.⁶⁾ 따라서 농업으로 인한 이익은 琅邪郡의 경제적 풍요를 형성하는데 一助하였다. 또한 춘추전국시대 山東지역에서 출토된 齊國의 화폐들을 통해 鄒魯군 일대의 경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齊幣 중에서 田齊시기에 주도된 것들이 膠州灣 일대인 海陽, 不其, 靑島, 即墨, 膠縣, 諸城, 膠南과 남쪽의 日照, 海西(日照의 서쪽), 莒縣, 莒南 등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⁷⁾ 화폐의 출토는 연해에 위치한 이 지역이 상업의 중심지로서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음을 반증하는 증거들인데, 이 지역은 秦漢代 琅邪郡의 영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화폐가 유통된 상황은 교통로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鄒魯군 일대에는 南北을 관통하는 3개의 교통선과 1개의 海岸 교통선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⁸⁾ 이 자료를 통해 춘추전국시대 鄒魯군 일대의 활발했던 경제활동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일대를 관통하는 교통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① 山東반도 東部 南北중단선: 黃-招遠-萊陽-即墨-靑島
- ② 山東반도 中部 南北중단선: 平度-安丘-諸城-日照
- ③ 山東반도 西部 南北중단선: 臨淄-益都-穆陵-莒縣-沂南-莒南
- ④ 山東반도 南部 海岸교통선: 海陽-即墨-靑島-膠南-日照

*밑줄은 漢代 琅邪郡 영역에 속한 지역

위 교통선 중에서 ①은 산둥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南北大道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국시대 臨淄와 함께 번성했던 即墨을 지나는 선이다. ②는 臨淄와 더불어 大邑에 속했던 即墨을 남쪽지역과 연결하는 선이다. 당시 即墨은 산둥반도 교통선의 중추가 되는 지역이었다. ③은 戰國時代 中期에 이르기까지 齊國과 莒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며, 戰國時代 中期 이후에는 齊國과 楚國이 接衝하는 지대였다. ④는 산둥반도 南部의 海岸

6) 安作璋, 「兩漢時期山東的社會經濟和農民起義」, 『山東師範大學學報』, 1979年 8期, p.24, 稻縣은 현재 山東 高密縣 西南에 위치한 지역으로 漢代 琅邪郡에 속하였다.

7) 陳隆文, 『貨幣地理研究』(人文出版社, 2006年) pp.159-160.

8) 朱活, 「從山東出土的齊國貨幣看齊國的商業和交通」에는 齊國의 刀幣가 출토된 지점에 근거하여 齊國의 상업 교통망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를 거점으로 齊國 內에는 동서 횡단선 1條, 沿海 교통선 2條, 남북 중단선 3條의 총 6條의 교통선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①東西 횡단선은 西端의 平原부터 禹城-濟南-歷城-平陵-章丘-淄博-臨淄-益都-昌樂-濰縣-平度-萊陽-栖霞-福山-牟平과 東端의 萊城을 관통하는 내국 교통의 척추이다. ②海岸 교통선 2조는 山東 北部의 昌邑-掖縣-招遠-黃縣-蓬萊-福山-牟平과 南部의 海陽-即墨-靑島-膠南-日照를 잇는 선이다. ③南北 중단선 3조는 山東 東部の 黃縣-招遠-萊陽-即墨-靑島, 中部的 平度-安丘-諸城-日照, 西部의 益都-穆陵-莒縣-沂南-莒南을 연결하는 선이다.

교통선으로 黃海 연안 및 膠州灣을 연결하는 교통선이다. 특히 日照는 黃海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靑島와 海路를 통해 연결되었다. 이 선 위에 위치한 琅邪는 산둥 지역의 魚鹽과 吳·越 지역의 물산을 중개하는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⁹⁾ 이러한 낭야의 경제적 풍요는 전국시대를 통해 國都인 臨淄와 제2의 도시라고 할 만큼 번성했던 卽墨과 더불어 齊國의 경제를 뒷받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③의 교통선이 지나는 臨淄-益都-穆陵-莒縣-沂南-莒南 일대는 전국시대 전상의 封邑이었던 安平 즉 益都에서 琅邪郡 일대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춘추시대에는 莒國의 중심부였으며 전국시대에는 산둥반도 서부 무역의 거점이 된 지역이었다.

또한 齊幣가 출토된 지역에는 關市가 설치되었다.¹⁰⁾ 齊國은 膠州灣의 東北과 西南의 교통로 부근인 靑島(不其), 諸城, 莒縣, 그리고 郯城에 關市를 설치하였다. 이 4곳의 關市中 3곳이 낭야군 일대를 지나는 4개의 교통선 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전국시대 낭야군 일대의 賦稅 수입은 田齊 정권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며, 齊國의 경제에서 낭야군이 차지하는 위상을 반증하는 사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漢이 낭야군을 주목한 것은 경제적 조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낭야가 접한 黃海는 巖岸으로 이루어진 해안으로 수심의 얕으며 海岸線이 복잡할 뿐 아니라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¹¹⁾ 漢初에는 이러한 낭야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이 일대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한 존재들을 확인할 수 있다.

韓信의 반란이 평정된 후 齊王 田橫은 高祖에게 臣屬하지 않고,¹²⁾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섬에서 살았다. 고조는 이 소식을 듣고 전횡 형제는 본래 齊 지역을 평정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현자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방치해두고 거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사신을 보내어 전횡을 불러들였지만, 전횡은 자신의 빈객들과 함께 雒陽으로 오는 도중 자살하였다. 전횡의 장례가 끝나자 함께 왔던 빈객들과 섬에 있었던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자살하였다.

위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횡과 그의 무리들이 섬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횡의 무리들이 은거했을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卽墨市 東部 海域의 橫門灣 중에 존재하며 지금도 田橫鎮이라고 부르고 있으며,¹³⁾ 秦漢시기 琅邪郡에 속하였다.

9) 張華松, 「秦始皇經營琅邪論略」, 『濟南教育學院學報』, 1999年 1期, pp.23-25.

10) 陳隆文, 「貨幣地理研究」pp.161-162, 참조.

11) 張華松, 「秦始皇經營琅邪論略」p.25; 山東省膠南市《琅琊臺志》編纂委員會 編, 『琅琊臺志』(齊魯書社, 1997年版), p.32-34.

12) 田氏 一家와 관련된 기사는『史記』卷92「淮陰侯列傳」, 『史記』卷94「田儋列傳」, 『漢書』卷33「魏豹田儋韓王信傳」참조.

이처럼 高祖는 낭야군을 세력기반으로 확충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조건 뿐 아니라 자연지리적 환경까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이성제후왕을 封할 때에는 낭야군이 속한 齊 지역을 中央에 속하게 하였고, 이후 동성제후왕을 封할 때에는 長男인 齊悼惠王 劉肥를 齊王에 封하였다. 이로서 高祖시기 낭야군의 행정체계는 中央에 속한 郡에서 齊王의 封域에 편입되는 변동이 있었다.

3. 漢初 통치기반 확보와 琅邪郡

1) 呂后 攝政期の 琅邪國

잘 알려져 있듯이 高祖가 사망한 후 惠帝가 즉위했지만 모든 政事를 주도한 인물은 呂后였다. 여후는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呂氏 一族들을 諸侯王으로 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功臣들과 劉氏 一族들은 여후의 전횡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漢初 諸侯王國과 漢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여후는 劉氏 諸侯王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⁴⁾ 여후는 이러한 상황에서 功臣들과 劉氏 一族들을 먼저 列侯에 封하였다. 惠帝 7年(B.C 188), 가장 먼저 劉章을 朱虛侯에 封한 후 呂祿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呂后 元年(B.C 187)에 이르러 酈侯 呂台를 呂王에 封하였다. 呂后는 劉氏 一族에 대한 우대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여씨 일족들의 세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呂氏들을 王으로 封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呂氏들을 王으로 봉해질 수 있도록 나선 인물은 劉澤이었다.

지금 여씨들은 바른 뜻으로 뒤에서 밀어주어 앞으로 나가게 하여 高帝가 천하를 취하였는데, 功이 커며 또한 친척들은 태후가 중하게 여깁니다. 태후의 춘추가 높으시고, 여러 여씨들은 약합니다. 태후가 呂産을 왕으로 봉하여 代國의 왕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태

¹³⁾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編, 『山東省志』文物志2 (1996年), 참조.

¹⁴⁾ 漢初 諸侯王國을 敵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례를 呂后 2年(B.C 186)의 법률자료인 張家山 漢簡 247號墓에서 출토된 <二年律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文物出版社, 2006年). 대표적인 예로 <二年律令·捕律> p.29, 간번호 153, “捕從諸侯來爲閒者一人, (拜) 爵一級, 有(又) 購二萬錢. 不當(拜) 爵者, 級賜萬錢, 有(又) 行其購. 數人共捕罪人而當購賞, 欲相移者, 許之.” 이 조항은 제후왕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자를 체포하면 爵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었다. 제후국에 대한 방비에 관한 규정인 <二年律令·賊律> p.7, 간번호 1-2, “以城邑亭障反 降諸侯 及守乘城亭障 諸侯人來攻盜 下堅守而棄去之若降之 及謀反者 皆要(腰)斬. 其父母, 妻子, 同產 無少長皆棄市. 其坐謀反者 能偏捕, 若先告吏, 皆除坐者罪.”

후는 또한 그것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고, 대신들이 듣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경계서 가장 은총을 입고 계시고 대신들도 존경하고 있는 바이니, 어찌 대신들에게 권해서 태후가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史記』卷51 『荊燕世家』pp.1995-1996)

위 기사는 유택의 家臣이었던 田生이 여씨들을 왕으로 봉할 수 있도록 여후의 측근인 大謁者 張子卿에게 유세한 내용으로 呂后 6년(B.C 182)의 일이다. 전생은 여후가 여씨들을 王으로 封하고 싶어 했지만 그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간파하였다. 惠帝가 사망한 후 여후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지만 功臣들과 劉氏 諸侯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전생은 呂氏들을 王으로 봉하지만 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유택을 王으로 봉해야 한다고 장자경을 설득하였다. 유택은 高祖와 함께 陳豨를 격파하고 營陵侯에 봉해진 인물로 당시 大將軍을 맡고 있었고,¹⁵⁾ 유택의 妻는 呂后의 여동생인 呂嬃의 딸이기도 했다. 여후는 자신이 사망한 후 불만을 품고 있었던 劉氏 諸侯들을 비롯한 高祖의 功臣들이 난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택과 같은 군사적 능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呂后 7년(B.C 181) 劉澤은 琅邪王에 봉해질 수 있었다. 아래 <表>는 여후가 劉氏와 呂氏 一族들을 諸侯王으로 封한 정황을 정리하였다.

<表> 呂后시기의 王國 및 諸侯王 변화¹⁶⁾

王國	諸侯王	身分	始封 시기	廢封 시기	기타
呂國 (濟川國)	呂台	呂后兄의 子	呂后 元年	呂后 2年	呂后시기 신설
	呂嘉	呂台의 子	呂后 3年	呂后 6年	
	呂產	呂台의 弟	呂后 6年		呂后 7年, 梁國으로 옮김 (이후 濟川國으로 변경) →呂后 8年, 被殺
	劉太	惠帝의 子	呂后 7年		呂后 8年, 梁國으로 옮김 →呂后 8年, 被殺
燕國	呂通	呂台의 子	呂后 8年	呂后 8年	
魯國	張偃	呂后의 外孫	呂后 7年	文帝 元年	
趙國	呂祿	呂后의 兄子	呂后 7年	呂后 8年	
淮陽國	劉彊	惠帝의 子	呂后 元年	呂后 5年	
	劉武	惠帝의 子	呂后 6年	呂后 8年	
常山國	劉不疑	惠帝의 子	呂后 元年	呂后 2年	呂后시기 신설
	劉義	惠帝의 子	呂后 2年	呂后 4年	
	劉朝	惠帝의 子	呂后 4年	呂后 8年	
琅邪國	劉澤	劉氏 宗親	呂后 7年	文帝 元年	呂后시기 신설

15) 『史記』卷51 『荊燕世家』p.1995.

16) 『史記』卷9 『呂太后本紀』참조, 呂國은 齊王 劉肥의 封域이었던 博陽郡이다. 文帝 元年(B.C 179) 濟南郡으로 변경되었다.

위 <表>와 같이 琅邪國은 呂后의 전횡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유일하게 여씨 일족이 아닌 인물에게 봉해진 諸侯王國이었다. 이 조처는 여후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劉澤과 琅邪郡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는지 파악하게 하는 사실이다. 呂后는 정권을 장악한 초기 呂台를 呂王에 봉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씨들을 王으로 封하지 못했다. 여후는 呂后 6년에 이르러 呂産과 呂通 그리고 자신의 딸인 노원공주의 아들 張偃을 王으로 봉할 수 있었다. 이처럼 劉澤이 田生으로 하여금 呂氏들을 王으로 봉할 수 있게 한 조처는 여후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呂后에 의해 신설된 諸侯王國인 呂國, 琅邪國, 常山國 중, 여후는 齊國의 봉지인 濟南郡을 분할하여 呂台 一家를 呂王에 封하였고, 역시 齊國의 封地인 琅邪郡에는 劉澤을 琅邪王에 封하였다. 이처럼 여후가 齊國의 봉지를 분할한 것은 齊王 一家의 존재가 呂氏 天下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낭야군의 경제적 이점과 지리적 특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여후가 大將軍 劉澤을 琅邪王에 봉함으로서 그에 대한 우대를 통해 여씨들의 군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齊國의 봉지를 삭감할 수 있게 되어 齊王 一家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琅邪郡을 통치기반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여후의 의도가 내포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결과 여후의 전횡이 이루어진 시기 齊王의 封地에 속했던 琅邪郡은 琅邪國으로 행정체계가 변경되었다.

2) 文帝 治世의 琅邪郡

여후가 사망한 후 황제로 즉위한 인물은 高祖의 아들인 代王 劉恒이었다. 文帝는 즉위한 후 가장 먼저 呂后의 전횡으로 인해 혼란했던 封侯 상황을 정리하였다. 文帝가 이 사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것은 그가 高祖의 功臣들과 劉氏 諸侯들에 의해 옹립된 황제였기 때문이었다.

여후가 사망한 후 대신들에 의해 새로운 황제로 거론된 인물은 齊王 劉讓이었다. 그러나 功臣들과 琅邪王 劉澤은 齊王의 外戚이 흉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들은 여후에 의해 외척의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劉澤은 呂氏 정권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여후에 의해 琅邪國에 봉해졌기 때문에, 齊王이 황제가 될 경우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文帝는 封侯에 대한 정리를 통해 劉氏 諸侯王을 비롯한 그 一族들이 자신의 즉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고 우대하였다. 漢初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齊 지역은 文帝 元年(B.C 179), 魯元公主의 湯沐邑으로 바쳐졌던 城陽郡과 呂王의 封地였던 濟南郡, 劉澤의 봉지였

던 琅邪郡을 모두 齊國으로 반환시켰다. 이 때 文帝는 琅邪王 劉澤의 封地를 燕國으로 이동시켰다.¹⁷⁾ 낭야국을 齊國으로 반환한 것은 齊王 一家가 文帝의 옹립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에는 유택에 대한 부담감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후가 사망한 후 齊王 劉讓이 일으킨 반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齊王 一家는 반란을 일으킨 후 군사적으로 열세임을 깨닫고 유택을 반란에 가담시켰다.¹⁸⁾ 兵權을 장악하고 있었던 呂氏 一族들과 高祖의 功臣으로 軍事에 능했던 周勃과 灌嬰 등이 조정에 견제하고 있었기에, 齊王 一家는 유택의 군사적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택은 齊王에게 연금당하고 琅邪國의 병력만 징발 당하고 말았다. 이후 齊王은 여씨 일족을 주살하기 위해 장안으로 진격했지만, 공신들은 齊王 一家를 설득하여 呂氏들의 반란에 함께 대응하였다.

이처럼 劉澤은 여씨 일족들을 王으로 封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여씨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齊王 一家의 반란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행보와 군사적 능력은 文帝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⁹⁾ 文帝 역시 군사적 능력을 갖춘 유택이 琅邪國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文帝 3年(B.C 177), 濟北王 劉興居는 文帝가 匈奴를 방어하기 위해 代지역으로 출병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 大臣들은 유장과 유흥거가 呂氏를 주살하는데 功이 있었기 때문에 劉章은 趙王, 劉興居는 梁王으로 封하겠다고 하였다.²⁰⁾ 그러나 文帝는 이들의 功을 삭감한 후 齊國의 일부를 분할하여 朱虛侯 劉章은 城陽王에 東牟侯 劉興居는 濟北王에 封하였다. 文帝는 여후가 사망한 후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켜 황제권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한 이들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다. 유흥거가 반란을 일으키자 文帝는 匈奴를 진압하기 위해 출병 중이었지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복귀하였다. 유흥거의 반란을 통해 주목할 점은 呂后가 사망한 이후부터 齊王 一家의 반란에 琅邪郡의 유력자였던 王仲이 가담한 사실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도록 하자.

王景의 字는 仲通이며, 樂浪 猨邯人이다. 八代祖인 仲은 원래 琅邪 不其人이다. 道術을 좋아했고 天文에 밝았으며, 呂氏들이 亂을 일으켰을 때, 齊 哀王 劉讓이 병사를 일으킨 것

17) 『史記』 卷10 「孝文本紀」p.418.

18) 『史記』 卷52 「齊悼惠王世家」pp.2002-2001.

19) 文帝는 즉위 후 가장 먼저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代國에서 長安으로 온 후 가장 먼저(B.C 180) 代國에서부터 中尉를 맡았던 宋昌을 衛將軍에, 역시 代國에서부터 郎中令을 역임하였던 張武를 郎中令에 임명하였다. 文帝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중요한 군사권을 맡겼다.(『史記』 卷10 「孝文本紀」p.417)

20) 『史記』 卷52 「齊悼惠王世家」p.2010.

을 모의했는데, 여러 차례 仲에게 물었다. 또한 濟北王 興居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중에게 兵師를 맡기려하자, 仲은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동쪽 바다를 건너 樂浪의 山中으로 달아났고 이로 인하여 家를 이루었다. (『後漢書』 卷76 『循吏列傳』王景傳 p.2464)

위 기사는 後漢시기 浚儀渠를 수리하는 등 치수사업에 공적을 세운 王景에 관한 내용이다. 왕경의 先祖는 文帝 3년 濟北王 劉興居의 반란을 피해 樂浪으로 이주하였다. 위 기사는 왕경의 8代祖인 王仲의 이력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呂后가 사망한 후 齊王 劉讓은 반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琅邪人 王仲에게 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齊王 一家와 지역의 유력자인 王仲 一家와의 관계에 주목하게 하는데, 王仲은 齊王이 의지할 만큼 세력과 군사적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王仲은 齊王 一家의 반란에 다시 연루되었다. 劉興居가 반란을 일으킨 文帝 3년에 이르면 城陽王 劉章은 사망하였다. 유장은 齊王 一家 중 皇帝權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인물로서, 文帝의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은 劉章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유장이 사망함에 따라 불만은 유홍거의 반란으로 표출되었다. 이 때 王仲에게 병사를 맡기려 한 유홍거의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齊王 一家의 영향력은 남아지역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유홍거의 반란이 주목을 끄는 사실은 王仲이 樂浪으로 이주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琅邪郡은 동쪽으로 황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섬들을 통해 은거와 이동이 가능하였다. 王仲이 樂浪으로 이주한 경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琅邪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조건은 한반도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琅邪郡의 지리적 환경은 중앙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文帝가 남아군을 권력기반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신을 옹립하는데 功을 세운 劉氏 諸侯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文帝 16年(B.C 164), 齊王이 後嗣없이 사망하자 齊國을 폐지하였다.²¹⁾ 그리고 齊國의 封域에 속했던 郡을 분할하여 제후왕국으로 封하였다. 臨淄郡은 齊國과 淄川國, 濟北郡은 濟北國, 博陽郡은 濟南國, 膠東郡은 膠東國, 膠西郡은 膠西國으로 분할하였고, 琅邪郡만은 漢에 속하게 하였다.²²⁾ 文帝가 齊國의 封地를 분할한 사건은 漢初 皇帝權에 대해 강하게 대항했던 제후왕들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서, 15여 년에 이르는 初有의 外戚政治인 呂后의 전횡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화된 황제권의 位相을 定立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文帝가 실행한 諸侯王國에 관한 대책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齊國의 봉지에 속했

21) 『史記』 卷52 『齊悼惠王世家』p.2005.

22) 『漢書』 卷14 『諸侯王表』p.395.

던 7개의 郡 중에서 6개의 郡을 제후왕국으로 封했는데, 유독 琅邪郡은 中央에 속하게 한 사실이다. 文帝가 낭야군을 주목한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풍요와 지리적 특성 뿐 아니라, 이 지역이 다른 齊 지역에 비해 중앙에 反하는 지역 세력들의 움직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는 文帝가 황제권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낭야군을 中央에 속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琅邪郡은 文帝 16년에 단행된 齊 지역에 대한 分封로 인해 前漢 末까지 행정조직의 변동 없이 郡으로 유지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漢初 제후왕국은 帝國의 동쪽에 위치하였고 중앙에 속했던 郡들은 서쪽에 위치했던 상황에서, 낭야군은 유일하게 帝國의 東端에 위치한 郡이기도 했다. 前漢시기 齊國에서 封地가 분할된 상황을 아래 <表>로 정리하였다.

<表> 前漢 齊 지역의 分封 상황²³⁾

漢初 齊國 지역												
연대	博陽郡 (濟南郡)		濟北郡	臨淄郡	膠東郡	膠西郡	琅邪郡	城陽郡				
201 ~194	齊國											
~193	齊國											
~187	呂國	齊國										魯元公主 湯沐邑
~181	濟川國	齊國								琅邪國		
~179	濟南郡	齊國								琅邪國	城陽郡	
~178	濟北國			齊國								城陽國
	濟南郡		濟北國									
~174			濟北郡									
~168			齊國									
~164 (文帝16)	濟南國		濟北國		齊國		膠東國		膠西國		琅邪郡	城陽國
~155									膠西國			
~154 (景帝3)	濟南郡		濟北郡		膠東郡		膠西國		北海郡			
~153												
~127			濟北國		齊郡	淄川國	膠東國		東萊郡			
~125					齊國							
~117			平原郡				膠西國		北海郡			
~110												
~108	濟南郡	泰山郡										
~87												
~73												
~16			國除		齊郡	千乘郡	高密國		膠西郡			復續 鴻嘉2年

23) 周振鶴, 『西漢政區地理』pp.259-300, 附. 西漢郡國沿革表에서 齊國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 맺음말

漢初 高祖시기부터 文帝시기까지 각 시기마다 통치자들이 琅邪郡을 지배기반으로 확보했던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漢初 郡國制가 전개되는 시기 동안 낭야군의 행정조직이 변화된 정황과 이 지역이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내포한 의의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郡國制가 실시된 漢初는 중앙집권화의 기초가 놓이는 시기로서 琅邪 또한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高祖 이래 주목되는 지역이었다. 특히 黃海를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자연 지리적 환경은 중앙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에 高祖는 이성제 후왕들이 낭야군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황제권에 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낭야군을 중앙에 속하게 하였고, 이성제후왕을 동성제후왕으로 교체하면서 齊國에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들을 봉하였다.

琅邪郡을 권력기반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呂后시기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여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齊國의 封地를 분할하여 呂氏 一族들을 諸侯王으로 봉하였는데, 이 때 齊國의 봉지에 속한 낭야군에는 大將軍인 劉澤이 諸侯王으로 봉해졌다. 劉澤은 劉氏 宗室에서 呂后에 의해 봉해진 유일한 제후왕이었다. 여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유택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이 조처는 呂后시기 가장 강력한 제후국이었던 齊國을 견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통해 여후는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一助할 수 있었다.

功臣들과 劉氏 諸侯들에 의해 옹립된 文帝가 유명무실화된 황제권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琅邪郡을 중시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文帝는 封地에 대한 분할과 회복을 통해 자신의 옹립에 功을 세운 劉氏 一族들을 우대하였다. 이 때 文帝는 琅邪王 劉澤을 燕國으로 옮겨 봉하였다. 유택의 봉지를 옮긴 것은 낭야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과 황제권에 대한 제후왕들의 도전이 지속되자, 文帝는 16년에 이르러 諸侯王國의 封地를 분할하여 모든 王子들에게 봉하였다. 그렇지만 琅邪郡만은 齊國의 封地에 속한 7개의 郡 중에서 유일하게 郡으로 존재하였다. 이는 漢初 낭야군이 중앙집권화의 직접적 지배 대상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漢初 齊國의 封地를 분할하여 여러 王子들에게 봉한 사건은 漢이 郡國制에서 郡縣制로 이행하게 된 계기이다. 이후 봉지분할에 대한 제후왕들의 불만은 吳楚 7國의 亂으로 표출되었는데, 漢은 제후왕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결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齊國의 封地 중에서 유일하게 琅邪郡을 郡으로 유지한 것은, 향후 이 지역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곳이었는지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魏晉南朝에서의 牋

양 진 성(연세대)

目 次

머리말

1. 箋과 牋

2. 魏, 晉의 牋

3. 南朝의 문서행정과 牋

1) 皇太子, 親王 牋

2) 牋과 기타 상언문서

맺음말

머리말

『文心雕龍』『書記』에 따르면 後漢에 들어와 상언문서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 公府에서는 奏記, 郡에서는 奏牋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¹⁾ 실제로 牋이라는 문서는 후한에 들어와 그 명칭이 처음 확인된다. 正史의 경우 『後漢書』『文苑傳』에 입전된 黃香, 張超의 저작 목록에서 賦, 書등과 함께 牋을 언급하고 있고 후한초의 인물인 班固도 牋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牋이라는 문서가 후한을 분기로 처음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牋은 三國, 兩晉을 거쳐 남조에 들어와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文選』『序』에서는 表, 奏, 牋記와 같은 문서들이 무수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表, 上書, 啓와 나란히 별도의 편목을 설정하여 위진남조시기의 牋文을 수록하고 있다.³⁾ 또한 현

1) 『文心雕龍』(詹鍔 義證, 上海古籍, 2003) 卷5 『書記』, “秦漢立儀, 始有表奏, 王公國內, 亦稱奏書. … 迄至後漢, 稍有名品, 公府奏記, 而郡將奏牋. 記之言志, 進己志也. 牋者表也, 表識其情也”

2) 『後漢書』(이하 중국의 正史는 北京, 中華書局의 標點校勘本을 사용하였다), p.2615. “所著賦·牋·奏·書·令凡五篇”; ____, p.2652. “著賦·頌·碑文·薦·檄·牋·書·謁文·嘲, 凡十九篇”

3) 『文選』(上海古籍, 1997), p.2. “又詔誥教令之流, 表奏牋記之列, 書誓符檄之品, 弔祭悲哀之作, 答客指事之制, 三言八字之文, 篇辭引序, 碑碣誌狀, 衆制鋒起(詔, 誥, 教, 令의 구분, 表, 奏, 牋, 記,

전하는 남조인들의 문집에서도 牋의 題名을 갖는 문서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文選』에 수록된 牋의 경우, 정형화된 서식을 갖추고 있다. 가령 문서의 冒頭와 結句에서는 ‘死罪死罪’라는 관용적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牋이 단순한 文體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일정한 격식을 갖춘 문서로서 위진남조에 걸쳐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 서식이 규정되었다는 것은 곧 그에 상응하는 용도 역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위진남조 시기 牋이라는 제명을 갖는 문서가 공통된 서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牋의 용도도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牋의 서식과 용도는 隋 唐에 그대로 계승되며 清代까지 이어진다.

이를 통해 문서 牋의 확립과 유통에 있어서 위진남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漢代에 처음 등장했던 문서들이 위진남조를 거치면서 그 서식과 용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隋, 唐의 문서행정에 계승되었음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이다.⁴⁾ 가령 조서의 경우 이미 秦漢代부터 그 명칭과 용도가 정비되어 황제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문서로 기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동진, 남조를 거치면서 조서의 서식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때 정비된 새로운 詔書式이 수, 당으로 계승된다. 즉 문서의 명칭은 漢代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그 서식과 용도, 그것이 문서행정에서 갖는 의미에는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정치 상황 및 문서의 작성과 집행을 담당한 정치기구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본고의 牋에 대한 분석 역시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위진남조시기 문서행정에서 사용된 牋의 유래 및 기능에 대한 해명인 동시에 이 시기 정치체제의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과도 관련을 갖는다.

1. 箋과 牋

문서 牋의 존재는 후한조부터 확인되지만 정작 후한 중기에 성립된 『說文解字』에는 ‘牋’字가 없다. 대신 ‘箋’字만 수록되어 있고 ‘드러내어 알리는 글(문서)⁵⁾’로 정의하고 있

書의 사례, 書, 誓, 符, 檄의 종류, 조문과 비예를 위한 저작, 接客과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문체, 3句, 8字로 된 문장, 그리고 篇, 辭, 印, 序, 碑, 碣, 誌, 狀과 같은 온갖 체제들이 무수하게 발생하였다.”

4) 大庭脩, 『魏晉南北朝告身雜考』, 『史林』 47-1, 1964. ; 中村圭爾, 『南朝における詔』, 『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 1990. ; 中村裕一,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1991. ; 양진성, 『南朝의 王言 敕의 정립과 그 운영』, 『중국고중세사연구』 제27집, 2012.

5) 『說文解字注』(上海古籍, 1988), “箋, 表識書也.”

다. 한편 南唐의 徐鉉은 이에 대해 ‘오늘날에는 牋으로 쓴다’⁶⁾라고 주석하였다. 즉 그가 생존했던 남당, 오대시대에 箋과 牋은 통용되었던 것이다. 남조에서도 箋과 牋의 통용이 확인된다. 『玉篇』에서는 箋과 牋 두 글자를 모두 같은 글자로 정의하고 있다.⁷⁾ 또한 『後漢書』 『順帝紀』⁸⁾에서는 孝廉에 응시할 수 있는 文吏의 자격으로 牋奏의 작성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후한 應劭의 『漢官儀』⁹⁾에서도 효렴의 경우 箋奏를 시험한다는 규정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箋과 牋은 실은 같은 글자로 서로 통용되었으며 『說文』에서 말한 ‘箋’은 곧 ‘牋’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후한시기 牋(箋)의 유래 및 용도와 관련해서는 『文心雕龍』 『書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고가 된다.

秦漢이 제도를 세워 비로소 表와 奏가 있게 되었는데 王公의 國內에서도 奏書라고 하였다. … 후한에 이르러서 점차 명칭과 분류가 있게 되었으니 公府에 대해서는 奏記, 郡將에 대해서는 奏牋을 사용하였다. 의사를 기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다. 牋이란 表(드러내다)이니 그 실정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다.¹⁰⁾

秦漢代에는 원래 상언의 용도로 表나 奏를 사용했고 그 상정의 대상에 있어 황제, 왕, 공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후한에 들어와서는 公에게는 奏記를 郡將(太守)에 대해서는 奏牋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심조룡』의 奏牋은 곧 『후한서』, 『한관의』에서 언급된 牋奏(箋奏)를 말함일 것이다. 이러한 牋文의 실례로 후한초 崔駰의 牋을 들 수 있다.

崔駰이 竇憲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牋을 주었다. “오늘 아침 漢陽太守가 吏卒 수십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모두가 어깨에 매를 엮고 개를 모는 자들로 ‘幕府에 가려고 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매와 개로 얻는 것은 꿩과 토끼에 불과하니 이는 소인배들이나 일삼는 것입니다.”(『太平御覽』 卷926 『羽族部』13 ‘鷹’에서 인용된 『後漢書』¹¹⁾)

이는 최인이 그의 상관인 대장군 竇憲에게 막료의 무분별한 등용을 경계하게 위해 작

6) 『說文解字繫傳』(中華書局, 2011), “臣鉉曰, 今作牋”

7) 『玉篇』(이 글에서 인용한 『玉篇』은 中華書局에서 2004년에 重印한 『宋本大廣益會玉篇』을 저본으로 함), “箋, 與牋同”; ____, “牋, 亦作箋”

8) 『後漢書』, p.261. “辛卯, 初令郡國舉孝廉, 限年四十以上, 諸生通章句, 文吏能牋奏, 乃得應選”

9) 『北堂書鈔』(新興書局, 1977) 卷79 『設官部』 31, “『漢官儀』 孝廉先試箋奏”

10) 『文心雕龍』, pp.933~936. “秦漢立儀, 始有表奏, 王公國內, 亦稱奏書. … 迄至後漢, 稍有名品, 公府奏記, 而郡將奏牋. 記之言志, 進己志也. 牋者表也, 表識其情也”

11) 『太平御覽』(河北教育, 1994), p.429. “崔駰與竇憲牋曰, 今日漢陽太守率吏卒數十人, 皆臂鷹牽狗, 云欲上幕府. 夫鷹犬所獲, 不過雉兔, 斯乃細人之事.”

성한 것이다. 동시기의 班固 역시 그의 상관인 두헌에게 謝恩의 목적으로 牋을 작성한 일이 있고 그때 두헌은 역시 대장군이였다.¹²⁾ 최인, 반고, 두헌은 모두 후한초의 인물들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로 볼 때, 속료가 상관에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해 牋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용도는 『문심조룡』의 서술과 일치하지만 그 수신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郡將이란 후한의 경우 군태수¹³⁾인데 최인, 반고의 牋을 수령한 두헌은 대장군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후한때三公을 지낸 太尉 胡廣이 刺史와 二千石 관료로부터 牋記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¹⁴⁾ 즉 반드시 지방관만 牋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호광이 수령한 牋은 公事뿐만 아니라 사적인 의사표명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公級の 고위관도 牋을 수령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에 준하는 대장군이 牋을 수령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그다지 어긋난 관행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한서』 『문원전』에서 牋을 작성한 것으로 언급된 황향은 江夏郡 태수에게 牋을 작성했고 장초는 車騎將軍의 別部司馬 시절에 牋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¹⁵⁾

따라서 현존하는 후한시기의 牋文과 『문심조룡』의 기술을 종합하면 牋은 후한초부터 등장한 문서로서 그 용도는 지방장관 또는 중앙 고위관료의 속료가 상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상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公事에서 사적인 의사표명까지 다양했다. 사안의 陳情이라는 점에서 表, 奏와 용도는 일치하지만 이는 황제에게만 전용하도록 하고 記(奏記), 牋(奏牋)등을 도입하여 문서의 위상에 차이를 둔 것이다.

2. 魏, 晉의 牋

삼국에서의 牋도 후한대와 기본적인 용도는 같았다. 가령 劉表의 속료 劉廙는 유표를 떠나면서 그동안의 배려에 대한 사례를 위해 牋을 지었고¹⁶⁾, 益州牧 劉章의 속료였던 法正이 劉備에게 귀순한 후, 그를 위해 유장에게 항복을 권유할 때 보낸 문서도 牋이었

12) 『藝文類聚』(上海古籍, 2007), 卷84 “後漢班固與竇憲牋曰, 明將軍賜固瑋瑁簪”

13) 『漢書』 卷90 『嚴延年傳』에 대한 唐 顏師古 注, “新爲郡將也, 謂郡守爲郡將者, 以其兼領武事也”

14) 『後漢書』 『胡廣傳』에 대한 唐 章懷太子의 주석에서 인용된 謝承의 『後漢書』 『李咸傳』, “刺史二千石牋記, 非公事不發省”

15) 『文心雕龍』, pp.936~937. “黃香奏牋於江夏, 亦肅恭之遺式矣.”; 『後漢書』, p.2652. “靈帝時, 從車騎將軍朱儁征黃巾, 爲別部司馬.”

16) 『三國志』 『三國志』 『劉廙傳』에 대한 裴松之 注에서 인용된 『劉別傳』, p.615. “廙別傳載廙道路爲牋謝劉表曰 … ”

다.¹⁷⁾ 이를 통해 지방관의 속료가 그 장관에게 陳情의 목적으로 牋을 상정하는 관행이 후한말, 삼국초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三國, 晉의 牋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다.

臣 質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를] 맞이해 주셨기로 모시고 종일토록 연회를 즐겼는데 해가 자취를 감추자 아름다운 불빛으로 [연회를] 계속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虞卿이 趙國에 가고 平原君이 秦에 들어가 千金을 받고 열흘간 술잔을 띄우고 즐기게 한들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文選』「在元城與魏太子牋」¹⁸⁾)

이 牋은 元城令으로 부임하게 된 吳質이 당시 魏國의 太子였던 曹丕에게 환송연에 대한 사례로 작성한 것이다.¹⁹⁾ 내용상으로는 陳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전의 牋과 용도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 수신대상, 작성주체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후한대 牋을 수령하는 존재는 公, 大將軍, 郡太守(郡將) 등이었음은 앞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런데 오질은 공식적으로는 漢朝의 관료로서 縣令이며 조비는 王國의 태자로 양자사이에 행정적인 통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왕국 魏가 건립된 당시, 中尉를 지낸 楊俊도 태자 조비에게 牋을 올려 사직을 청한 일이 있었다.²⁰⁾ 중위 역시 공식적으로는 漢 조정의 관료로 왕국의 태자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牋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왕국의 태자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작성과 전달에 있어서도 기존 관위체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전까지 牋은 주로 통솔관계에 있던 속료가 상관을 대상으로 하여 상정했으나 이제 이러한 범위를 뛰어 넘어 직접적인 통솔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관료들도 牋을 대상자에게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牋의 활용은 왕국 魏에 한정되지 않았다. 조조 사후, 조비가 위국의 왕위에 올랐을 때 孫權은 牋을 보내 이를 축하했고²¹⁾, 東吳의 孫亮이 즉위하자 당시 太傅인 諸葛恪은 齊王인 孫奮에게 牋을 보내 제후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경고했다.²²⁾ 즉 삼국에 들어와 牋은 그 상정의 대상이 왕국의 태자, 왕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17) 『三國志』, pp.958~959. “及軍圍雒城，正牋與璋曰 … ”

18) 『文選』, p.1828. “臣質言，前蒙延納，侍宴終日，燿靈匿景，繼以華燈。雖虞卿適趙，平原入秦，受贈千金，浮觴旬日，無以過也。”

19) 『文選』(李善 注에서 인용된 『魏略』), p.1828. “質遷元城令，之官，過鄴辭太子，到縣與太子牋。”

20) 『三國志』, p.663. “魏國既建，遷中尉。太祖征漢中，魏諷反於鄴。俊自劾詣行在所。俊以身方罪免，牋辭太子”

21) 『三國志』(『孫權傳』에 대한 裴松之 注에서 인용된 『魏略』), p.1127. “及文帝即王位，權乃遣周，爲牋魏王曰 … ”

22) 『三國志』(『孫奮傳』, p.1373. “權薨，太傅諸葛恪不欲諸王處江濱兵馬之地，徙奮於豫章。奮怒，不從命，又數越法度。恪上牋諫曰 … ”

러한 牋의 활용은 당시 한의 조정과 위국 조정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동시에 했던 당시의 특수한 정치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전국의 정무를 주재한 것은 위공(위왕)이지만 이는 황제가 아니므로 황제와 같은 급의 문서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시기 정무의 보고를 위해 황제에게 전용되는 表나 奏를 피해 啓라는 문서가 활용되었음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이다.²³⁾

삼국에서 牋의 활용 역시 이같은 啓의 출현과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본다. 원래 황제를 대상으로 한 陳情에는 表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대상이 왕공, 승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된 문서가운데서 가장 유사한 용도의 문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牋이었던 것이다. 이미 후한초부터 정무를 주재했던 대장군, 삼공에게도 牋이 상정되었던 만큼 같은 급과 권한을 갖는 승상, 왕공에 대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기에 牋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단 행정사무의 보고, 처리에 啓가 활용된 것과 달리 牋의 상정은 실무보다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나 의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牋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사은이나 사례, 안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인 의사교환, 진술에 牋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성자와 수신자가 관위체계에서 직접적인 통솔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삼국시기 牋의 용도와 특징은 兩晉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직접적인 통솔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인사들이 번왕이나 주자사를 상대로 牋을 상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사은이나 개인적인 의사전달에 관련된 것이다.²⁴⁾ 더욱이 東晉때 庾亮은 征西將軍의 위치에 있으면서 車騎大將軍인 郗鑒에게 牋을 보내 王導이 축출을 건의하기도 했다.²⁵⁾ 유력한 權臣의 축출이라는 사안은 관료사회 일반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문서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용례로 볼 때, 삼국 양진에서의 牋은 한편으로는 漢初부터 유통된 개인간의 서간문 書와 기능이 일부 중복됨을 알 수 있다. 즉 牋이 서한의 역할도 수행한 것이다.

단 수령하는 대상의 지위에 따라 그 문건의 명칭을 牋과 書로 구분했고 서식에도 차이를 두었다. 牋의 경우 그 冒頭와 結句에 ‘死罪死罪’라는 관용구를 취한 것에 비해 書는 ‘某白 云云 某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3) 中村圭爾, 『三國兩晉における文書 啓の成立と展開』, 『古代文化』 51-10, 1999.

24) 晉代の 牋은 『藝文類聚』 卷59 『與成都王牋』(陸機 撰), 『晉書』 卷91 『范弘之傳』 참조.

25) 『晉書』, pp.1922~1923.

그런데 이러한 牋의 용도와 서식에는 법적인 강제는 없었다. 『문선』에서 수록된 삼국 시기 인물들의 牋文이 ‘死罪死罪’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그 전체의 형식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陳琳은 君侯인 曹植에게 牋을 보냈지만 吳質은 曹植에게 書를 보낸 것 등이 그것이다.²⁶⁾ 즉 왕, 제후, 왕국태자에게 陳情을 위해 牋을 보내는 것이 관행이지만 書의 형식을 취해야 할지, 牋의 형식을 취해야 할지는 작성자의 기호에 달려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조가 되면 牋의 용도와 서식은 물론, 그 수령대상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도 마련되며 그 기능과 성격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

3. 南朝의 문서행정과 牋

1) 皇太子, 親王 牋

明 徐師曾의 문예이론서인 『文體明辯』에서는 牋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당시(漢代)에는 태자, 제왕, 대신들 모두 牋이라 할 수 있었으나 후세에는 오직 황후, 태자에게만 사용되었다. 이에 천자에 대해서는 表라하고 황후, 태자에 대해서는 牋이라 하였으며 나머지는 [이 용어 또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었다.(『文體明辯』 「牋」 ‘序說’²⁷⁾)

즉 서사증에 따르면 漢代까지 태자, 제왕, 대신 모두 牋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漢 이후로는 오직 황후와 황태자에게만 牋이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후한, 삼국, 양진에서 공, 대장군, 제후왕에게 牋이 상정된 용례를 감안하면 서사증의 해석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사증의 이같은 해석은 남조시기의 牋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宋書』 「禮志」에 수록된 『皇太子監國儀注』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 참고가 된다.

26) 『文選』, p.1823.(陳琳, 「答東阿王牋」) ; ____ p.1908.(吳質, 「吳季重答東阿王書」)

27) 『文體明辯』 「序說」 「牋」, “是時太子諸王大臣皆得稱牋, 後世專以上皇太后太子, 於是天子稱表, 皇后太子稱牋, 而其他不得用矣”

① 尙書僕射 尙書左右丞
 某甲 死罪死罪 某事云云
 參議以爲宜如是 事諾 奉
 行
 某年月日
 某曹上
 ② 右牋儀 準於啓事年月
 右方 關門下位 及尙書官
 署 其言選事者 依舊不經
 它官²⁸⁾

* ①은 牋의 서식을 규정한 牋儀

* ②는 牋儀에 대한 本注

① : 尙書僕射, 尙書左·右丞 아무개 某甲은 死罪하고 死罪합니다. 某事는 이러이러 합니다. 參議에서 는 이와 같이 함이 옳다고 봅니다. 사안을 諾하신다면 奉行토록 하겠습니다.

某年 月 日 某曹에서 올림

② : 이상은 牋儀로 啓事に 준한다. 年, 月의 우측 방면은 門下의 署位로 배정하고 [이와 같이 한 다음] 상서관이 서명한다. 그 [전문(牋文)의 사안] 選事(人事)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구례(舊例)에 따라 다른 관원을 경유하지 않는다.

이 儀注는 劉宋 文帝 元嘉 26年(449) 東巡을 떠난 文帝를 대신하여 감국을 담당한 황태자가 발행, 수령하는 문서의 격식과 용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牋은 정무의 보고와 처리를 위해 황태자에게 상정되는 공식적인 행정문서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전시기의 牋이 개인의 명의로 작성된 것과 달리 의주의 牋은 상서좌복야, 좌승, 우승 3인 공동의 명의로 작성되며, 그 발신은 개인이 아닌 상서기구인 상서의 ‘某曹’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牋文은 대상자에게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門下기구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牋이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정식의 공문서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의례적 차원의 답례나 문안, 사은 같은 개인적인 의사표명을 위해 작성된 牋이 남조에 들어서는 정식의 공문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황태자를 대상으로 牋을 상정한 사례는 서진에서 처음 확인된다. 서진때 太傅였던 羊祜가 당시 황태자였던 惠帝에게 牋을 올려 하례를 올린 일이 있었다.²⁹⁾ 단 이때의 牋은 의례적 차원의 하례였고 공식적인 정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었다. 아마도 황태자에게 牋을 상정하는 관행은 적어도 서진부터 있었고 劉宋에서는 황태자 감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정무의 보고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된 牋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28) 『宋書』, p.381. 본문은 문서의 서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로쓰기가 서식을 특징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세로배열의 형식을 취하였다. 본문의 句讀는 中華書局 標點整理本에 의거

29) 『晉書』, p.649. “故太傅羊祜牋慶太子, 稱叩頭死罪, 此則拜之證也”

表나 奏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황태자에게 정무를 보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신 이전부터 황태자에게 문안, 하례용으로 올린 牋에 정무의 보고서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이 儀注에서 규정한 牋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황태자에게 하례를 목적으로 한 牋의 상정도 여전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행은 남조는 물론 북조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남제의 경우 황태자가 冠禮를 치르면 2품 이상의 高官이 牋을 올려 경하하는 예가 있었고³⁰⁾ 북제에서도 황태자를 책봉하면 대신들이 牋을 상정하여 책봉을 경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³¹⁾ 따라서 황태자의 신변과 관련된 慶事에 牋을 상정하는 관행은 서진을 거쳐 남북조에서도 여전히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조의 경우 牋을 수령하는 대상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었음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자의 姬와 嬪은 외부와 소식을 주고받는 일은 용납되지 않으니 비록 의리상 공경을 극진히 한다고 하더라도 牋과 表를 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 하였다.(『宋書』 卷15 『禮志』³²⁾)

이는 劉宋 明帝 泰始 2년(466) 9월에 있었던 황태자의 생모인 陳貴妃의 처우와 관련한 논의의 일부이다. 이 議를 발의한 사람은 建安王 休仁인데 그에 따르면 비록 황태자의 생모이며 천자의 비빈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牋과 表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議는 그대로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牋을 수령하는 대상에서 황제의 비빈은 제외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유는 달랐으나 황태후, 황후에게도 牋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비빈의 경우와 달리 그들의 지위가 牋을 수령하기에는 훨씬 격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태후, 황후에 대한 하례에는 牋 대신 章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원래 漢代부터 황제에게 하례, 사을 위해 상정하는 문서였다.³³⁾ 즉 남조의 경우 황태후, 황후에게는 황제와 같은 급의 문서가 상정된 것이다. 이는 후한이래의 전통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漢, 晉의 제후왕에 해당하는 親王³⁴⁾에 대해서는 여전히 牋이 상정되었다. 작성자

30) 『南齊書』, pp.145~146. “永明五年十月, 有司奏, 南郡王昭業冠, 求儀注未有前准. 尚書令王儉議, … 國官陪位拜賀, 自依舊章. 其日內外二品清官以上, 詣止車集賀, 并詣東宮南門通牋”

31) 『隋書』 『禮儀志』, pp.174~175. “後齊冊皇太子 … 擇日羣臣上禮, 又擇日會. 明日, 三品以上牋賀”

32) 『宋書』, p.408. “尚書令建安王休仁議稱, 禮云, 妾既不得體君, 班秩視子爲序. 母以子貴, 經著明文. 內外致敬貴妃, 誠如慶緒議. 天子姬嬪, 不容通音介於外, 雖義可致虔, 不應有牋表”

33) 『獨斷』(『蔡中郎集』 所收, 四部備要本, 臺灣中華書局, 1966), “章者, 稱首上以聞, 謝恩, 陳事, 詣闕通者也.”

34) 본고에서 말한 親王은 남조시기 皇族으로서 왕에 책봉된 宗室諸王을 통칭한다. 이러한 용어

는 친왕들의 故吏, 또는 친왕이 장악한 관내에 거주하는 문인들로서 그 용도는 移職에 따른 작별이나 사례, 사은 같은 개인적인 陳情으로 직접적인 공무의 처리와는 관련이 없었다. 더욱이 행정적인 통솔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도 친왕에게 牋을 상정했다. 예를 들어 남제때 何遜은 자신을 秀才로 천거한 建安王에게 사은하기 위해 牋을 올렸는데 이때 그는 어떠한 관직도 없는 경내의 ‘州民’이었다.³⁵⁾ 한편 이와는 별개로 남조 梁末 簡文帝 大寶 元年(550)에 南平王 이하 1천명이 연명으로 당시 湘東王 蕭繹에게 牋文을 올린 일이 있고 그 내용은 내란의 수습을 위해 相國에 올라 정사를 총괄하라는 것이었다.³⁶⁾ 牋文의 작성주체는 남평왕으로 수령자인 상동왕과는 어떠한 통솔관계도 없다. 더욱이 비록 연명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실은 일종의 건의문으로 행정사무의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남조에서 친왕을 대상으로 상정되는 牋은 문서행정의 절차나 관위체계의 위계를 뛰어 넘어 곧바로 전달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친왕과 친분이 있는 문인이라면 누구든지 牋을 통해 의사전달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룬 내용은 공무보다는 친분에 입각한 사적인 의사전달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정작 친왕들이 주재한 지역에서 공식적인 업무의 보고와 처리는 ‘解’를 통해 이루어졌다.³⁷⁾

당시 친왕들이 주자사, 장군의 직함을 띠고 지방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독자적으로 휘하의 속료를 모집함은 물론 조정의 관료들과도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친왕과 문인, 관료들과의 교류가 빈번했고 그 결과 친왕을 대상으로 한 牋의 작성이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전하는 남조시기 문인들의 牋文 대다수가 친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 한다. 즉 남조시기 親王牋의 증가는 남조의 특별한 정치상황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와 개념규정은 金裕哲, 『南朝 國家權力の 支配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35, 주3)의 親王에 대한 정의를 차용한 것이다. 남조에서 親王이 갖는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金裕哲, 1994, pp.35~87 참조.

35) 『何遜集』(李伯齊 校注, 中華書局, 2010) 卷1 「與建安王謝秀才牋」, “州民泥徒何遜死罪, 卽日被板, 以民充年秀才 … 戰荷屏營, 忻惶共色. 不任下情, 謹奉牋以聞”

36) 『梁書』, pp.114~116. “南平王恪·侍中臨川王大款·桂陽王大成·散騎常侍江安侯圓正·侍中左衛將軍張綰·司徒左長史曇等府州國一千人奉牋曰 …”

37) 지방의 군현에서는 解나 書를 통해 주자사에게 안전을 보고하며 주자사는 이러한 보고를 다시 전제하여 중앙의 관련기구(有司)에 보고한다. 즉 지방의 안전은 지방 郡縣의 解(또는 書) -> 주자사의 解 -> 尙書기구의 表라는 수순을 거쳐 황제에 보고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지방에서 주자사를 겸임했던 친왕들은 解를 통해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解의 용례는 『江文通集』 卷7 「蕭上銅鐘芝草衆瑞表」; 『宋書』 「禮志」 ‘皇太子監國儀注’, “某曹關: 司徒長史王甲啓辭, 押, 某州刺史丙丁解騰某郡縣令長李乙書言某事云云 …” 참조.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례로 볼 때, 漢 이후 황후와 황태자에 대해서면 牋이 쓰였다는 서사증의 해석은 남조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남조에서 牋을 수령하는 대상은 황태자, 친왕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주된 용도는 공무의 처리보다는 친분에 입각한 개인적인 의사전달, 또는 의례적인 문안이나 하례였다고 할 수 있다.

2) 牋과 기타 상언문서

漢代 이래로 황제에게 상정되는 상언문서로는 章, 表, 奏, 議의 4종이 있었고 魏, 晉을 거치면서 여기에 啓가 추가된다.³⁸⁾ 남조의 경우 황제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정무의 보고 및 이와 관련한 신료들의 의사표명은 表, 奏, 議, 啓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의례적인 賀禮, 謝恩, 辭職의 경우에는 表, 章, 啓가 사용되었다. 즉 表와 啓는 그 기능이 중복됨을 알 수 있다. 表와 啓 모두 행정과 의례 두 가지의 용도를 겸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牋의 용례로 볼 때, 牋 역시 이들 章, 表, 啓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

그렇다면 牋과 이들 상언문서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원래 용도는 같지만 문서를 수령하는 대상에 따라 牋이나 章, 表등으로 명칭만을 달리하여 부른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劉宋, 南齊, 梁 三朝를 거쳤던 江淹의 『江文通集』³⁹⁾에 수록된 문장들이 참고가 된다. 그의 문집은 다른 남조인들의 문집과 달리 작자 스스로가 생전에 편집한 것들로 문집에 수록된 문장들의 題名 역시 작자 스스로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의 문집에 수록된 문장들은 남조 당시의 문서분류관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의 문집에는 章, 表, 啓, 牋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題名	내용	발신	수신	서식	출전
①『蕭領軍拜侍中刺史章』	侍中 제수에 대한 사례	蕭道成	順帝	“上書皇帝陛下 云云”	『江文通集』 卷6
②『蕭太簿謝追贈父祖表』	父祖 추증에 대한 사례	蕭道成	順帝	“臣公言 云云”	『江文通集』 卷7
③『建平王賜石硯等啓』	벼루, 서책 하사에 대한 사례	建平王(劉宋)	미상(황제)	“臣言 云云”	『江文通集』 卷8
④『被黜爲吳興令辭牋詣建平王』	안부와 하직	江淹	建平王	冒頭 생략	『江文通集』 卷9

38) 漢代 황제에게 상정되는 상언문서의 용도와 서식은 『獨斷』에 자세하다.

39) 이 글에서 인용한 『江文通集』의 卷數는 明 胡之驥가 註한 『江文通集彙註』(中華書局, 2006)에 의거함.

①~③까지의 章, 表, 啓의 경우 작자는 강엄이지만 소도성과 건평왕을 대신하여 대필한 것이므로 작자와 발신자의 명의를 다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章, 表, 啓는 황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형식도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章은 漢代 章의 서식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상기의 章, 表, 啓는 관직의 제수, 추증, 물품의 수여와 관련된 황제의 詔, 敕을 서두에서 인용한 후, 답례를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강엄만의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남조인들의 문장에서도 공통된다.

반면 강엄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建平王牋』의 경우 이러한 형식과 구성에서 자유롭다. 그 내용도 그가 벽지의 吳興令으로 좌천됨에 따라 건평왕과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아쉬움을 서술한 것이다. 즉 경직된 구성과 의례적인 관용구를 사용한 章, 表, 啓등과 달리 牋쪽이 작성자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더 용이한 것이다. 이러한 의사전달은 남제 謝朓의 牋에서도 공통된다.⁴⁰⁾

따라서 친왕을 대상으로 한 牋은 의례적인 하례나 문안의 목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서한(書)의 기능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친왕과 교분이 있는 인사들은 牋을 통해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했던 것이다. 다만 일반 문인사이에서 주고받는 牋과 달리 牋은 친왕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권위를 갖는다. 『문심조룡』에서 ‘牋記의 수준을 따져본다면 그 위로는 表를 올려보고 또 아래로는 書を 굽어보는 형국으로 [牋을 올릴 때] 공경하되 두렵게 하지는 않게 하며 간결하게 하되 멋대로 하지는 하지 않는 것⁴¹⁾’이라 하여 牋의 특징을 규명한 것은 牋의 속성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삼국, 양진, 남조에서 유통된 牋은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갖는 문서였음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정무의 처리를 위한 행정문서, 의전용 문서, 서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牋이 유통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漢 조정을 대신해 정무를 주재한 왕국 魏의 출현,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장악한 친왕의 존재등이 牋의 용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남조와 달리 강력한 친왕이 일소된 唐朝에서 친왕을 대상으로 한 牋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게 된 것도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 한다.

40) 『謝宣城集』(曹融南 校注集說, 上海古籍, 2007) 卷1 『拜中軍紀室辭隨王牋』 참조.

41) 『文心雕龍』, p.941. “原牋記之爲式, 既上窺乎表, 亦下睨乎書, 使敬而不懼, 簡而無傲 …”

또한 牋은 관료사회의 위계나 공식적인 문서행정의 절차를 넘어 대상자에게 곧바로 전달이 가능했다. 牋이 행정사무의 처리보다는 문안이나 특정사안과 관련된 하례, 친분에 입각한 개인적인 의견전달 같은 사안에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위진남조시기 牋이 서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劉宋代가 되면 牋은 황태자에게만 전용되는 공식 정무보고서로 채택되며 남제에서는 그 상정의 대상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둔다. 황태자에게 상정되는 행정문서로 牋의 용례는 유송일대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황태자에게 안전을 보고할 때, 大事에는 啓를 사용하고 小事에는 牋을 사용한다는 唐代의 문서처리 규정⁴²⁾을 감안하면 牋과 관련된 唐朝 문서행정 관행의 기원을 적어도 남조 유송까지 소급할 수 있다. 즉 詔, 敕, 告身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唐朝 문서행정의 관행이 남조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牋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唐代가 되면 牋은 개인적인 서한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며 의례적 절차의 일환으로 상정되는 의식용 문서가 된다. 이러한 牋의 용도는 이후의 통일왕조들은 물론 한반도의 전통왕조인 고려, 조선에서도 답습될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 의례에서도 牋이 사용된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의례용 문서로 활용된 表箋(또는 表牋)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唐이후 의례용 문서로서 牋의 위상 확립, 국제관계에서 牋의 활용, 중국의 牋과 고려, 조선 箋(牋)의 계승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차후의 과제이다.

42) 『唐六典』(中華書局, 2005), ‘太子舍人’條, “太子舍人掌侍從, 行令書, 令旨及表啓之事. 皇太子通表如諸臣之禮. 諸臣及宮臣上皇太子, 大事以牋, 小事以啓.”

荊雍지역인의 출사와 僑舊의 갈등

— 南郡王 劉義宣 반란을 중심으로 —

홍 정 아(서울대)

目次

서론

I. 南郡王 劉義宣 반란의 전개와 원인 분석

1. 劉義宣 반란의 과정과 결과

2. 반란의 根因 - 혼재된 이해 관계

II. 출사 문제를 둘러싼 僑舊의 엇갈림

1. 지역인의 동향 - 隱逸과 出仕

2. 荊雍지역인의 출사와 한계 타파의 노력

결론

서론

兩晉交替期 이후 長江中流域에서는 ‘流民’, ‘舊民’, ‘蠻’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荊州地域民’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간의 갈등과 통합노력은 東晉왕조 1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東晉南朝史를 새로운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바 있는 ‘僑舊體制論’에서는, 고향을 벗어난 이주민들의 독특한 성격과 활동 양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또한 ‘僑民’과 ‘舊民’의 갈등과 융합으로 이 시대가 특징지워지며 그 와중에 나타난 민족과 문화 변용이 隋唐통일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¹⁾

流民이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이 시기의 이주민들은 특별히 ‘僑人(혹은 僑民)’으로 칭해지며 구분되기 시작했다. 『隋書』에 따르면 東晉 元帝 司馬睿가 江左에 寓居하게

1) 朴漢濟, 『東晉·南朝史와 僑民--‘僑舊體制’의 形成과 그 展開』, 『東洋史學研究』 53, 1996. 1, pp.2-3.

되었을 때, “百姓之自拔南奔者, 並謂之僑人.”이라 했고,²⁾ 이들은 ‘新戶’ 혹은 ‘僑戶’로서 본래 土著했던 이들, 곧 ‘舊民’과 구별되었다. ‘僑舊’로 연칭되는 사료 용어는 이른바 正史 25사 가운데 『晉書』, 『宋書』, 『南齊書』, 『陳書』, 『南史』에만 등장하는 東晉南朝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말이었다.³⁾ ‘僑舊’의 문제는 다수의 流民이 유입되었던 長江中流域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들 간의 상호 작용과 관계는 建康을 중심으로 한 揚州 지역 혹은 기타 지역과 완전히 동일하였을까? 아니면, 長江中流域에서만 나타나는 다른 특징이 있었을까? 長江中流域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살아간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은 해당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兩晉交替期 이래 長江中流域으로 유입된 이주민들과 기존 토착민의 관계는 엇갈린 이해로 말미암아 순탄할 수만은 없었는데, 이러한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지역의 안정을 꾀해야 할 책임은 해당 지역에 出鎮한 都督·刺史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來源을 가진 長江中流域 사람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荊州’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을 뿐, 중앙정계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상황이었다. 즉, 중앙정계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長江中流域이었다.

長江中流域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劉宋代에도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한 반란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南郡王 劉義宣의 반란이다. 본고에서는 劉義宣 반란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탐구함과 동시에 長江中流域 지역민, 특히 荊雍지역인의 출사 문제와 그 한계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차의 사람들이 토착민이나, 이주민이나에 따라서, 또한 언제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들 각자의 정치적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劉義宣의 실패와 대비되는 경우들, 예컨대 長江中流域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권 창출에까지 이른 梁武帝 蕭衍의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이 지역에 내재되어 있던 힘의 근원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2) 『隋書』 卷24 『食貨志』, p.673, “晉自中原喪亂, 元帝寓居江左, 百姓之自拔南奔者, 並謂之僑人. 皆取舊壤之名, 僑立郡縣, 往往散居, 無有土著.”

3) 일례로 『宋書』 卷2 『武帝紀』, p.33, “彼土僑舊, 爲所驅逼, 一無所問.”가 있다. ‘僑戶’란 표현은 『金史』에도 ‘土民’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金史』 卷106 『賈益謙傳』, p.2335, “僑戶宜與土民均應差役.”), 또 ‘僑民’이라는 표현은 『清史稿』에도 다수 등장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란 의미로 흔히 쓰인다. 그러나, 正史에서 사료 용어로 ‘僑舊’가 연칭되어 나타나는 것은 東晉南朝時代 뿐이다.

I. 南郡王 劉義宣 반란의 전개와 원인 분석

1. 劉義宣 반란의 과정과 결과

武陵王 劉駿이 宋 文帝 元嘉 29년(452) 江州로 출진하고 孝建 원년(454) 孝武帝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元凶’ 劉邵와의 정권 다툼 가운데 荊州刺史 南譙王(孝武帝 즉위후 南郡王) 劉義宣과 雍州刺史 臧質이 武陵王을 지지하여 長江中流域 전체의 힘을 결집시켰던 것이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孝武帝 등극 직후, 劉義宣과 臧質은 바로 반란을 일으켜 孝武帝의 建康정권에 대항하였다. 이렇게 입장이 급변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가?

이 당시 반란의 우두머리는 劉義宣이었으나, 사실상 주동자는 臧質이었다. 建康에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자, 臧質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劉義宣을 부추겼다. 하지만, 劉義宣이 이미 江州刺史였던 武陵王 駿의 편에 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효무제 즉위 후, 劉義宣은 內任을 고사하고 계속 長江中流域에 남아 있었다. 즉, 劉義宣은 처음부터 스스로 황제가 될 생각을 갖지 않았으며, 長江中流域 최고 책임자로서의 원래 직임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臧質은 雍州에서 江州로 전임되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劉義宣을 부추겨 모반을 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무제와 劉義宣의 딸 간의 淫亂사건이 발생하자 劉義宣의 입장도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다.

臧質이 劉義宣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디 劉義宣이란 인물은 중앙조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혀가 짧아 말을 할 때 더듬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⁴⁾ 또한, 거병에 실패하고 臧質과 헤어져 江陵城으로 돌아간 직후에는 ‘한 고조는 백번 패하였지만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소.’라고 해야 할 것을 ‘항우가 천 번 패하였지만’이라 잘못 말하여 무리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으며,⁵⁾ 심지어 반란에 동참했던 魯爽의 동생 魯秀가 그를 처음 만난 뒤 바로 패배를 예감하며 후회할 정도였다.⁶⁾

이처럼 태생적 단점에 우둔함이 더해진 그가 荊州刺史의 중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劉宋 高祖 劉裕가 세워둔 皇子 出鎮의 원칙과 會稽長公主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文帝는 劉義宣의 사람됨과 재능이 비루하다하여 그를 荊州刺史로 기용하려 하지 않았으

4)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1798.

5)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1806.

6)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1803.

나, 元嘉 21년(444) 문제의 큰누나 會稽長公主가 여러 차례 말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기용하였다.

당시 회계장공주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 일뿐 아니라, 元嘉 17년(440) 彭城王 義康에 대한 구명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본래 능력도 뛰어났던 彭城王 義康은 司徒로서 東府에 머물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生殺의 大事도 ‘錄命’으로 처리가 가능했기에 그 정치권력이 점차 커졌다. 그런데, 文帝가 병이 들자 그 사후 彭城王 義康의 옹립을 꾀하는 이들이 劉湛을 중심으로 결집했다가 발각되면서 오히려 彭城王 義康은 실각하게 되었으며 목숨도 위태로워졌다.⁷⁾ 그러나, 會稽長公主의 구명 노력 덕분에 일단 죽음을 면하고 江州로 좌천시켜 사실상 유폐시키는 정도로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⁸⁾ 會稽公主는 武帝 劉裕의 정실인 武敬臧皇后的 유일한 소생이자,⁹⁾ 황실의 제일 큰 누나로서 황실 가족 문제에 있어서 文帝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會稽長公主의 도움으로 荊州刺史가 될 수 있었던 劉義宣에 대해 文帝는 안심할 수가 없었던지 바로 황제 친필조서를 내려 그를 경계하였다.¹⁰⁾ 文帝가 劉義宣에게 기대한 것은 부하들과 지역민에게 두루 인심을 얻어 황제가 刺史를 잘못 파견했다든가, 다른 이로 교체하라는 등의 의론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다. 비록 劉義宣이 荊州에 出鎮할 때 나이가 어리지는 않았으나¹¹⁾ 어리숙하고 무능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孝建 元年(454)까지 꼬박 10년이나 형주자사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역민의 인심을 획득하였음을 뜻하며, 그 이면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한 州와 府의 막료들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범약함과 무능은 建康 정권층에서도 익히 주지하고 있던 바, 심지어 반란의 초기 劉義宣이 반란을 주동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臧質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득하려는 모습을 太傅 江夏王 義恭이 劉義宣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7) 安田二郎, 『六朝政治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3, 「第5章 元嘉時代政治史試論」, 「一 彭城王劉義康の廢黜事件について」, pp.240-258.

8) 會稽長公主가 죽은 다음해인 元嘉 22년(445) 范曄, 孔熙先, 徐湛之 등을 중심으로 彭城王 義康을 옹립하기 위한 역모가 다시 발각되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徐湛之의 고변으로 역모가 들통이 나면서 『後漢書』의 저자로 후세에 널리 알려진 范曄과 그 집안은 적몰되었고, 역모에서 옹립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彭城王 義康 역시 끝내 賜死되고 말았다.(『宋書』 卷68 「彭城王義康傳」, p.1795)

9) 『宋書』 卷41 「后妃」, 「武敬臧皇后傳」, p.1282.

10) 『資治通鑑』 文帝 元嘉 21년(444)

11) 元嘉 元年(424)에 12살이었으므로(『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1798) 元嘉 21년(444) 荊州 出鎮 때는 32살이었다.

12)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p.1802-1803.

建康 측에서 반란을 획책한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한 臧質은 武敬臧皇后의 친조카이며, 會稽長公主와는 사촌 간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냥에 쓰는 매와 개를 좋아하고, 도박이나 돈으로 점치는 놀이 등에 능했으며, 出仕 후에도 경박하여 급사중에 머물러 있었으나, 會稽長公主의 영향으로 外職인 建平太守로 나갈 수 있었다. 이어 南蠻校尉였던 劉湛이 그를 ‘良守’라 칭찬한 이후에 寧遠將軍 겸 歷陽太守, 竟陵 및 江夏內史, 建武將軍 겸 巴東·建平 2郡太守 등을 두루 거칠 수 있었다.¹³⁾ 彭城王 義康派의 핵심인사였던 劉湛이 그를 칭찬하며 출사로가 열린 것이나, 彭城王 義康을 추대하려고 했던 孔熙先이 역모를 꾀하면서 그의 참여를 확신한 것이나, 그가 평소 范曄 및 회계공주의 아들 徐湛之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臧質은 文帝와 彭城王 義康의 대립구도에서 확실히 親義康派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會稽長公主가 건재하고, 彭城王 義康이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외척이자 핵심파벌의 중심인사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元嘉 17년(440)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元嘉 17년(440) 彭城王 義康이 실각하고, 元嘉 21년(444) 회계장공주도 사망하였으며, 다음 해인 元嘉 22년(445) 范曄, 孔熙先 등이 彭城王 義康을 옹립을 꾀한 역모사건이 발각되면서 彭城王 義康은 끝내 賜死되고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도 모두 적몰되어 버렸다. 고변으로 살아남은 徐湛之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조정 내에서 臧質을 끌어줄 만한 인물이 거의 사라져버린 셈이었다. 비록 徐湛之는 이후에도 계속 文帝의 총애와 신임을 얻었지만, 元嘉 30년(453) 正月, ‘元凶’ 劉劭가 文帝를 시해하면서 그도 살해되고 말았다. 劉劭는 徐湛之를 추종하던 이들을 모두 살해하였는데, ‘徐湛之黨’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들 가운데 臧凝之와 傅僧祐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臧質의 큰아버지였던 臧燾의 손자와 외손자였던 것이다.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이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죽거나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臧質은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建康 조정의 대권을 놓고 벌어진 劉劭와 武陵王 劉駿의 다툼 가운데, 臧質은 이미 자기와 친밀한 이들을 제거한 劉劭를 따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향렬이 낮고 어린 武陵王 劉駿을 따를 생각도 없었다. 그는 武陵王을 ‘少主’로 여겨 江州刺史로 전임된 후 朝廷에 고해야할 刑政慶賞의 일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재정운영에서도 자의적인 결정을 하였다.¹⁴⁾ 결국 臧質은 독자 노선을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南譙王 劉義宣을 앞세워 반란을 꾀하고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라 하겠다.

劉義宣과 臧質의 반란은 한창 모의하고 준비하던 과정 중 뜻을 같이 하기로 했던 豫州

13) 『宋書』 卷74 『臧質傳』, p.1910.

14) 『宋書』 卷74 『臧質傳』 pp.1914-1915.

刺史¹⁵⁾ 魯爽의 실수로 시작되었다. 본래 기병을 하기로 한 시점은 孝建 원년(454) 가을이었으나, 二月에 소식을 접한 魯爽이 술에 취하여 그날로 병사를 일으키고 建康에 있던 동생 魯瑜 및 가솔을 돌아오도록 하였으며, 劉義宣을 황제로 추대할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휘하에 있던 長史 韋處穆, 中兵參軍 楊元駒, 治中 庾騰之 등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을 듯하다고 하여 모두 죽여버렸다.¹⁶⁾ 일이 이쯤 되자 劉義宣과 臧質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저한 대책없이 허겁지겁 시작된 반란의 결과는 예견된 실패였다.

劉義宣의 군은 長江을 타고 내려가며 한때 기세를 높였으나, 建康에서 약 40km 떨어진 歷陽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승기가 꺾여버렸다. 歷陽은 建康의 西門과 같은 중요한 지점으로, 北岸의 橫江 등지에서 南岸의 采石(牛渚) 방향으로 강을 건너 왕래할 수 있는 위치였다. 孝武帝(武陵王 駿)는 豫州刺史로 王玄謨를 파견하여 歷陽의 남쪽에 위치한 梁山洲 내에 주둔하게 하여 방어를 공고히 하고 군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장악하게 하였다.¹⁷⁾ 劉義宣의 군대는 이처럼 중요한 거점을 결국 뚫지 못했으며, 王玄謨의 游擊將軍 垣護之 등의 火攻에 당하여 무너지고 말았다.¹⁸⁾ 이 패배는 곧 劉義宣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자 그를 중심으로 뭉쳤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계기였다. 그렇지만, 劉義宣 반란의 실패는 단순히 한 차례 전투에서의 패배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다른 내재적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2. 반란의 根因 - 혼재된 이해 관계

劉義宣의 반란이 빨리 시작되도록 만든 魯爽은 왜 그렇게 급히 새로운 정권 장출에 매진했을까? 비록 일의 시작은 술김에 벌인 것이라고 해도 곧바로 黃標와 法服을 준비하고 새로운 연호를 칭하며 자기를 따르지 않을 듯한 수하의 인물들을 미리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역시 평소 반란의 의지가 충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빠른 움직임은 劉義宣과 臧質을 당황케할 정도였다. 魯爽은 어떤 인물이기에 建康을 차지한 孝武帝의 신정권에 복속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엿보았던 것일까?

魯爽과 그의 동생 魯秀는 元嘉 28년(451) 夏4월 北魏로부터 劉宋으로 귀순한 인사들이었다. 그의 祖父인 魯宗之는 東晉末 南陽太守와 雍州刺史를 역임하였으나, 劉裕가 서쪽으로 司馬休之를 토벌할 때 달아나 ‘入羌’했다가 곧 사망했다. 즉, 東晉 安帝 義熙 11년

15) 본래 司州刺史였으나, 孝武帝 즉위 후 豫州刺史로 바뀐 상태였다.

16) 『宋書』 卷74 「魯爽傳」, p.1925.

17) 郭黎安, 「六朝建都與軍事重鎮의 分布」, 『中國史研究』 1999. 4, p.74

18)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1805.

(415) 後秦으로 도망했던 것인데, 義熙 13년(417) 9월 後秦이 劉裕에 의해 멸망하면서 그의 가솔들은 北魏로 옮겨갔다. 劉裕가 長安을 점령했을 때, 魯宗之의 아들이자 魯爽의 아버지인 魯軌는 北魏의 寧南將軍, 荊州刺史, 襄陽公으로 長社(河南省 長葛縣)에 있었는데, 비록 劉宋에 귀순할 의사가 있었지만 끝내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竟陵太守였던 魯軌가 劉康祖의 父인 江夏相 劉虔之와 徐湛之의 父인 彭城內史 徐達之를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⁹⁾ 劉虔之는 彭城 呂人으로 劉裕의 심복이었다. 魯宗之는 스스로가 ‘高祖의 舊隸’가 아니었기에 누차 공을 세웠어도 의심하는 맘을 가지고 끝내 도망하게 되었는데,²⁰⁾ 劉虔之는 바로 그 ‘高祖의 舊隸’에 해당하는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劉虔之는 劉裕의 西征 때 江夏相으로서 劉裕의 군을 도우려다가 魯軌의 습격을 받았으나 끝까지 퇴각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다. 또한, 徐達之는 劉裕의 사위로 會稽公主의 남편이었는데, 劉裕는 그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고 일이 잘 되면 荊州를 맡기려 했으나 오히려 그가 魯軌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²¹⁾ 이후 황제가 된 劉裕는 아버지를 잃은 외손자 徐湛之를 친아들인 江夏王 義恭과 함께 항상 곁에 둘 정도로 극히 사랑하였다. 이러한 劉宋의 상황에서 魯軌가 쉽게 투항을 결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 魯爽 때에 이르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魯爽은 어려서부터 무예의 재간이 있어 北魏 太武帝 拓跋燾의 총애를 받았고, 元嘉 26年(449) 魯軌가 죽은 뒤에는 부친의 관작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술로 인해 자주 잘못을 저질렀기에 太武帝 拓跋燾가 그를 주살할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동생인 魯秀는 재주가 魯爽보다 뛰어나 太武帝가 宿衛로 충원하고 잘 대해주었으며, 누차 공을 세운 바 있었지만 그 역시 拓跋燾에게 힐책을 당하면서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었다.²²⁾ 北魏 太武帝 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그들에게 이제 南朝 劉宋은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와는 달리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劉宋 文帝는 이미 魯軌에게 수차례 귀순을 권하면서 司州刺史의 직을 보장한 바 있었다.²³⁾ 이에 魯爽은 太武帝의 南行 때 墳墓의 移葬을 핑계삼아 長社로 갔다가 家屬과 部曲 등 친여 家를 이끌고 汝南(河南省 汝南縣)으로 도망했고, 元嘉 28年(451) 여름 4월 동생인 魯秀를 壽陽(安徽省 壽縣)으로 보내 南平王 鐸을 통해 항복의 뜻을 전했다. 文帝는 기꺼이 그를 환영하며 督司州豫州之陳留東郡濟陰濮陽五郡諸軍事、征虜將軍、司州刺史로 삼은 뒤 督豫州之義陽宋安二郡軍事, 領義陽

19) 『宋書』 卷2 「武帝紀」, p.34. ; 『宋書』 卷74 「魯爽傳」, p.1922.

20) 『宋書』 卷74 「魯爽傳」, p.1922.

21) 『宋書』 卷71 「徐湛之傳」, p.1843.

22) 『宋書』 卷74 「魯爽傳」, pp.1922-1923.

23) 『宋書』 卷74 「魯爽傳」, p.1922.

內史를 더하여 義陽(河南 信陽市)에 주둔하게 하였고, 魯秀를 위시한 다른 이들에게도 官爵과 賞賜를 내려주었다.²⁴⁾

이 때 魯爽의 귀순에 대해 선대의 원한을 지녔던 劉康祖와 徐湛之 역시 반대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劉康祖는 이미 元嘉 27年(450) 가을 北魏와 劉宋의 전투 중에 죽고 말았다.²⁵⁾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했고, 전투에서도 劉宋의 입장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그 尉武 전투에 참여했었던 北魏 측 인사 魯爽과 그 동생 魯瑜 등의 귀순²⁶⁾은 아무리 조정에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개인적 원한을 핑계로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徐湛之 또한 감히 사사로운 원한을 풀 수 없었고, 다만 역으로 그 자신이 세상을 등지고 물러나 고향에 거하기를 청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부정의 뜻을 표하였던 것이다.²⁷⁾

劉宋 정권 하로 들어온 魯爽은 줄곧 司州刺史로 있다가 孝武帝 즉위 후 豫州刺史로 바뀌었을 뿐, 孝建 원년(454)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중앙정계로 진출하지는 못했다. 이는 북에서 내려온 유민집단을 北朝와의 변경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지역을 충실히 하고 개발할 뿐 아니라,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차적인 방어선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북벌의 기지로 이용하려는 東晉 이래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文帝의 신임을 받으면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던 徐湛之의 영향력²⁸⁾도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비록 같은 조정에 출사하고 있다해도 선대의 원한을 지닌 徐湛之와 魯氏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임은 명약관화했다. 文帝를 시해함과 동시에 徐湛之를 죽인 劉邵가 魯秀에게 “내 그대를 위해 徐湛之를 주살했다. 바야흐로 일을 맡긴다.”면서 右軍將軍으로 임명하고 精兵을 내어준 것도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다만, 이 때 魯秀는 劉邵를 따르지 않고 孝武帝 쪽으로 귀순하였다. 이는 형인 魯爽이 이미 南譙王 義宣의 명으로 部曲을 거느리고 襄陽을 거쳐 江陵으로 감으로써 사실상 孝武帝 편에 서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孝武帝 즉위에 공을 세웠음에도 魯秀 또한 豫州刺史로 진보된 형을 대신하여 司州刺史에 임명되었을 뿐 중앙정계로 진출하지는 못했다.³⁰⁾ 그 동생들 중 魯弘은 臧質의 府佐였고, 다른 동생인 魯瑜는 비록 京師에 머무르긴 했으나 魯爽이 부르자 바로 달려온 것으로 보아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고 보기

24) 『宋書』 卷74 「魯爽傳」, p.1923.

25) 『宋書』 卷50 「劉康祖傳」, pp.1447-1448.

26) 『宋書』 卷74 「魯爽傳」, p.1923.

27) 『宋書』 卷71 「徐湛之傳」, p.1847.

28) 『宋書』 卷71 「徐湛之傳」, p.1847.

29) 『宋書』 卷74 「魯爽傳」, p.1925.

30) 『宋書』 卷74 「魯爽傳」, p.1925.

는 힘들다.

결끄러운 관계에 있던 徐湛之가 죽고 자신들이 옹립에 공헌을 세운 孝武帝가 즉위하면서 이들 형제는 그동안 막혔던 출사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른 기회를 엿보지 않을 수 없었다. 魯氏 형제들은 東晉-劉宋 교체기에 몇 대에 걸쳐 남북을 오갔다는 점에서 특수하지만, 劉宋 사회에서는 晚渡士族에 불과했다.³¹⁾ 이에 魯氏 형제들은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南譙王 劉義宣을 추대하여 새로운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만들고 南朝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고, 魯秀는 어리석은 이를 主將으로 선택한 형 魯爽을 원망하며 다시 北行을 택했다가 도중에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반란에 참여한 ‘晚渡士族’은 그들 뿐만이 아니어서 臧質 휘하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확인이 된다. 臧質이 기병했을 때 도운 사람들로써 豫章太守 任蒼之, 臨川內史 劉懷之, 鄱陽太守 杜仲儒 등이 나열되고 있는데,³²⁾ 豫章, 臨川, 鄱陽 모두 江州에 속해있는 지역이므로³³⁾ 江州刺史의 위치에서 반란을 일으킨 臧質의 수하로서 반란에 동조한 것이 일견 당연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관직의 상하관계가 반드시 같은 정치적 노선을 의미하지 않던 이 시대에 이들이 臧質을 선택한 것에는 각자 그럴만한 정황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먼저 杜仲儒는 杜驥의 兄子라고 했으니, 京兆 杜陵人으로 西晉 杜預의 후손이자 杜坦의 아들로 보인다. 杜坦은 바로 ‘晚渡北人’의 문제를 文帝에게 직접 언급했던 인물이었다.³⁴⁾ 杜坦은 ‘晚渡北人’이라는 이유로 ‘儋荒’으로 대우받는 현실을 꼬집었으며,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京兆人, 즉 關中지역을 본으로 하는 高門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본래 京兆 杜氏는 西晉까지 황후를 배출해낸 外戚이자 高門으로 손꼽히는 집안이었다. 魯爽 역시 扶風 魯氏였으니, 역시 高門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했을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자기 지역에서는 大豪族으로서의 명망을 유지하였던 핵심 가문의 인사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 세력기반을 잃고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게 된 셈이었다. 建康 중앙정계로의 출사로가 막힌 상황에서 이들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길은, 자기가 거주하게 된 지역에 파견된 중앙 정계의 인물을 출세시켜서(가능하다면 황제로 만들어서) 새로 구성되는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杜仲儒가 臧質의 기병에 적극 호응했던 까닭은 바로 가문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晚渡北人이 정치적

31) 東晉南朝사회에서 士人の 南渡 早晚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陳琳國, 『論南朝襄陽의晚渡士族』, 『北京師範大學學報(社科版)』, 1991-4 참고.

32) 『宋書』 卷74 『臧質傳』, p.1921.

33) 『宋書』 卷36 『州郡志』, 『江州』 p.1086.

34) 『資治通鑑』 文帝 元嘉 23년(446)

야심을 가진 해당지역의 都督·刺史와 결탁하고자 했던 바였다.

당시 중앙정계로부터 배척되거나, 문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능력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은 ‘晚渡北人’ 뿐이 아니었다. 杜仲儒와 함께 臧質을 따른 豫章太守 任薈之는 武陵王 駿과 南平王 鐸의 휘하를 거쳤으며 文帝로부터 “望은 비록 부족하나, 才能은 남음이 있다.”는 평을 들은 인물이었다.³⁵⁾ 그런데, 東晉南朝사회에서 ‘望’이란 起家부터 시작하여 仕路 전반에 영향력이 큰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任薈之 역시 출사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또한, 劉懷之의 경우, 비록 그의 아버지인 劉粹는 京口에 거주하면서 劉裕와 초기에 인연을 맺고 이후 무수한 전공을 세웠지만, 劉懷之 자신은 庶長子였기 때문에 신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작위를 물려받지도 못했던 이였다. 이런 이들이 모두 반란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것이다.

한편, 孝武帝는 비록 황제의 위를 차지하기까지는 劉義宣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미 황제가 된 이상 더 이상 그를 長江中流域에 두고 그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劉義宣은 10년간 長江中流域을 장악하면서 강한 병사와 財富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威名도 따랐으므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조정에서 내린 제도조차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孝武帝에게 술을 바치면서 자기가 미리 마시고 그 나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³⁶⁾ 이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처사였다. 본래 守宰의 임기가 길어도 6년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劉義宣은 장기간 외직에 있었던 것이라, 이미 元嘉 30년(453) 文帝가 그를 司徒, 揚州刺史로 불러들이고 始興王 劉濬을 형주자사로 임명했으나 劉邵와 劉濬이 文帝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인사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劉邵 또한 荊州刺史 劉義宣을 太尉로 삼고, 雍州刺史 臧質을 丹陽尹으로 삼는다고 명했는데, 높은 관직을 주어 중앙정계로 불러들이려는 조치는 사실상 이들에게서 지역기반을 빼앗으려는 의도였다. 劉義宣이 荊州에서 큰 실정없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휘하 막료들의 역할이 컸는데, 劉義宣이 荊州를 떠나 실권이 없는 內職을 맡게 된다는 것은 劉義宣의 막료들도 長江中流域에서 더 이상 세력을 가질 수 없게 됨을 의미했다. 때문에 그들은 劉邵를 따르지 않고 바로 군대를 일으켜 劉駿(孝武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런데, 孝武帝 역시 황제가 되면서 劉義宣을 揚州刺史로 삼으려 하였으므로, 長江中流域에서 너무 커져버린 劉義宣의 권력을 계속 보장해줄 것으로 믿기는 어려웠다. 바로 그 점을 臧質이 꼭 집어 ‘震主之威’를 지니고 ‘地勝兵強’한 상황에서 결심하지 못하면 화가 이를 것이라고 계속 설득한 바,³⁷⁾ 결국 劉義宣의 막료들도

35) 『宋書』 卷74 「臧質傳」, p.1921.

36)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1800.

자신들의 富貴를 피하며 劉義宣이 모반을 결심하도록 권고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 같은 劉義宣의 心腹으로는 書記와 참모역할을 했던 諮議參軍 蔡超와 司馬 竺超民이 대표적이었다.³⁷⁾

이처럼 조금씩 입장은 달랐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사회구조 속에서 출사에 제약을 받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반란에 동참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晚渡한 僑民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다. 거기에 본래 야심을 가지고 있던 臧質의 획책에 長江中流域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劉義宣 막료들이 동조하면서 劉義宣에게 모반을 권함으로써 劉義宣의 반란은 진행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출사 문제를 둘러싼 僑舊의 엇갈림

1. 지역인의 동향 - 隱逸과 出仕

劉宋代의 長江中流域은 지방분할정책의 영향으로 1인이 통할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衡陽王 義季가 荊州로 出鎮할 때, 文帝는 동생을 荊州로 보내기 바로 직전 湘州를 재설치하여 자신의 둘째 아들인 始興王 濬에게 맡겼다. 이어 長沙, 江夏 2郡으로부터 巴陵郡을 분립하여 湘州에 속하게 하면서 湘州의 세력을 강화했다. 또한, 豫州로부터 淮水 이남 지역을 나누어 南豫州를 설치하고, 거기에 始興王 濬을 보냄과 동시에 湘州에는 셋째 아들 武陵王 駿을 임명하였다. 다만, 武陵王 駿은 부임하지는 않고 領石頭戍事했다가 始興王 濬이 揚州刺史로 임명되면서 南豫州를 이어받았고, 湘州刺史로 그의 뒤를 이은 것은 文帝의 다음 아들 南平王 鑠이었다.³⁸⁾ 즉, 기존의 荊州와 豫州의 지역 규모를 축소하여 각각의 세력을 축소시키면서 湘州와 南豫州에는 文帝가 자신의 아들들을 연속적으로 임명하는 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北朝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 長江中流域은 마냥 약화시킬 수는 없었으며, 때문에 형주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은 인근에 위치한 주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雍州가 차츰 강성하게 되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행해진 조치의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전과 같이 형주에 출진한 1인에게 長江中流域의 전체의 역량이 온전히 집중되기란 힘들었다. 더욱이 기존의 荊州都督區 내에서 荊州刺史 이외의 다른 親王이 다른 州 刺史를

37) 『宋書』 卷74 「臧質傳」, p.1915.

38) 『宋書』 卷74 「臧質傳」, p.1915.

39) 安田二郎, 『六朝政治史の研究』, 「第5章 元嘉時代政治史試論」, pp.246-247.

말는 경우, 都督區의 규모를 축소해 親王 간에 상하질서를 만들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⁴⁰⁾

예전보다 축소된 세력 범위 속에서 劉義宣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의지할 만한 곳은 결국 자기의 직접 관할 지역과 그 지역민 뿐이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起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의 참여 의사와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다양한 충차를 가진 南朝時代의 사회구조상 지역민의 의견 일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 여론의 향배를 주도하는 주류 집단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런데, 앞 절에서 언급된 劉義宣의 반란을 주도한 인사들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관직에 임명됨으로 인해 長江中流域에 들어온 것일 뿐, 본적이 荊-雍에 있던 본래의 舊民도 아니었고, 일부를 제외하면 한 때 流民, 僑民이었더라도 장기간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舊民化한 인사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劉義宣 반란 당시 長江中流域의 지역민들의 움직임은 어떠했는가?

이 문제에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이가 바로 柳元景이다. 劉義宣이 歷陽에서 대립하던 王玄謨에게 항복을 권했을 때, 王玄謨가 항복을 거부하면서 일을 그르칠 이들에게 속아서 진짜 신뢰할만한 이를 믿지 않았다고 劉義宣을 책망하며 예로 든 사람이 곧 柳元景이었다.⁴¹⁾ 王玄謨가 유원경을 특별히 언급한 까닭은 그가 孝武帝의 편에 서있던 대표적인 ‘荊鄧之士’ 곧 長江中流域 출신 인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柳元景은 본래 河東解人이었지만, 증조부 때 襄陽으로 이주하여 자리잡은 ‘北人’이었다.⁴²⁾ 즉, 그의 집안은 僑民이었지만, 이미 襄陽 지역에서 舊民化했던 것이다. 後漢末 三國時代까지 襄陽지역의 토착세력은 流民집단과의 충돌 속에 襄陽 蔡氏처럼 강성했던 宗族일수록 먼저 타격을 받아 사라졌고, 남은 이들은 조금 더 안전한 남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襄陽 인근에는 西晉末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⁴³⁾ 柳元景은 臧質이 雍州刺史로 襄陽에 出鎮했을 때는 그 휘하에서 冠軍司馬, 襄陽太守의 중임을 맡기도 했지만,⁴⁴⁾ 劉義宣과 臧質의 반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줄곧 孝武帝를 따랐다. 臧質-柳元景의 갈등 관계는 孝武帝가 즉위한 뒤 襄陽太守였던 柳元景을 雍州刺史로 삼으려 했을 때 확실히 드러났다. 臧質은 그가 뒷날 荊州-江州的 걱정거리가 될 것을 염려하여 그를 먼 지방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건의했고, 이에 孝武帝는 그를 護軍將軍으로 삼아 石頭를 지키는 일을 관장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⁴⁵⁾ 이는 비록 臧質이 이미 劉義宣을 중심으로 모반을

40) 金裕哲, 『宋齊時代 親王의 정치적 성격과 활동 기반』, 『歷史學報』 제126집, 1990, pp.148-149

41) 『宋書』 卷68 「武二王」 「南郡王義宣傳」, pp.1804-1805.

42) 『宋書』 卷76 「柳元景傳」, p.1981. ; 『宋書』 卷76 「王玄謨傳」, p.1975.

43) 王永平·徐成, 『東晉南朝時期襄陽豪族集團의 社會特徵』,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2期, p.13.

44) 『宋書』 卷77 「柳元景傳」, p.1986.

일으킬 의사를 가지고 벌인 일이므로 孝武帝 휘하의 중요 인물에 대한 견제로도 볼 수 있지만, 柳元景과 평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음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부분이다. 臧質이 雍州刺史가 된 다음 해인 元嘉 29년(452) 文帝가 北伐을 꾀하면서 그에게 潼關으로 나아가도록 한 바 있었으나, 臧質은 近郊에 머물며 나아가지 않고 오직 司馬였던 柳元景만을 경계지역으로 보냈을 뿐이었다. 더구나 이 때 臧質은 출병을 망설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嬖妾을 돌아보느라 군영을 이탈하여 홀로 돌아가기까지 하였다.⁴⁶⁾ 이러한 臧質이었기 때문에 柳元景 입장에서 그를 따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법하다. 柳元景은 北伐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그 공훈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⁷⁾

臧質 휘하에 잠시 있었지만 柳元景은 그전부터 이미 武陵王을 따르고 있었다. 臧質이 雍州刺史가 된 것은 元嘉 28년(451)의 일이었으나, 이미 武陵王이 元嘉 22년(445) 春正月 雍州에 出鎮하여 元嘉 25년(448) 夏4월까지 머무른 뒤였다. 文帝가 자신의 아들을 襄陽에 出鎮시키는 정책을 취하였을 때, 雍州에 나간 첫 번째 皇子가 바로 武陵王 駿이었다. 이 때 그는 柳元景을 威將軍, 隨郡太守로 등용했다.⁴⁸⁾ 또한, 伐蠻 과정에서 元嘉 30년(453) 正月, 江州刺史였던 武陵王이 文帝의 명을 받고 伐蠻 군대를 통수하게 되자,⁴⁹⁾ 柳元景은 실질적으로 다시 武陵王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와중에 文帝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武陵王은 伐蠻에 참여하고 있던 군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특히, 柳元景에게 만 명의 군사를 주어 선봉으로 삼고, 宗慤, 薛安都 등 13軍을 모두 그에게 예속시켰다. 武陵王이 新亭에 도달하기 전 이미 柳元景은 沈慶之와 함께 武陵王에게 빨리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권한 바 있었던 집단의 핵심참모이자, 장수였던 것이다.

臧質이 柳元景과 불화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武將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雍州의 治所가 위치한 襄陽과 그 인근은 北魏와의 접경지역으로 많은 북래유민들이 정착하고 있던 ‘北人’ 집중지였다. 때문에 襄陽을 중심으로한 雍州 여론의 움직임은 ‘北人’ 僑民 계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여론 주도층의 실체는 劉義宣 반란이 진압되고 얼마 후인 孝武帝 孝建 2년(455) 11월 王玄謨가 雍州刺史로 부임했을 때 잘 드러났다.

寧蠻校尉, 雍州刺史로 옮기고 都督을 더했다. 雍州 지역에는 僑寓가 많아 (王)玄謨가 流民을 土斷할 것을 청하였는데, 당시 백성들은 屬籍을 원하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 해, (王)

45) 『資治通鑑』 卷127 宋文帝 元嘉30年(453), p.4225.

46) 『宋書』 卷 74 「臧質傳」, p.1914.

47) 『宋書』 卷77 「柳元景傳」, p.1986.

48) 『宋書』 卷77 「柳元景傳」, p.1981.

49) 『宋書』 卷6 「孝武帝紀」, p.110.

玄謨는 또 九品以上에게 租를 내도록 하여 貧富가 相通하게 하였는데 境內에는 歛歛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民間에서는 玄謨가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그릇되이 말하였다. 이 때는 柳元景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元景의 동생 僧景은 新城太守였으며 元景의 勢로써 南陽、順陽、上庸、新城 여러 郡에 함께 군대를 내어 (王)玄謨를 토벌하자고 명을 정하였다.⁵⁰⁾

이 시점은 柳元景이 孝武帝의 功臣으로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라, 그의 영향력으로 雍州 지방관부에 더 많은 그의 일가가 등용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劉義宣과 臧質의 반란에서 불과 1년 뒤의 일이므로 그간 지역에서 꾸준히 세력을 증진시켜왔던 것 역시 추측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雍州에서의 土斷정책에 반발하여 屬籍을 원하지 않은 僑寓이면서 租를 내게 된 九品以上이란 결국 이 지방 호족집단이었고, 柳元景의 집안 역시 그에 속하였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내놓는 刺史 王玄謨를 실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은 지역민의 의지가 여론에 반영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예라 하겠으며, 또한 그의 토벌을 주도한 이가 바로 柳元景의 동생 柳僧景이었던 것은 그 집안의 영향력을 가늠케 한다. 王玄謨가 雍州에서 환영받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앞서 말한 그의 정책 때문이었으나, 그와 같은 정책은 그가 해당 지역민과 이해관계나 처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孝武帝 조정에서 柳元景이나 垣護之 등은 모두 ‘北人’이었으나, 王玄謨만은 계통이 달라 ‘老僮’으로 불리었던 것⁵¹⁾은 곧 이들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柳元景은 ‘北人’이면서 襄陽에 정착하여 襄陽太守를 지내던 대표적인 지역인사였다. 臧質이 雍州刺史를 지냈으면서도 柳元景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雍州에서 완전히 지역민심을 장악하지 못한 채 江州로 전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柳元景과 함께 孝武帝를 따랐던 또다른 長江中流域 출신 인사로는 宗慤이 있었다. 孝武帝가 新亭에서 즉위하고 柳元景을 侍中, 左衛將軍으로 임명했을 때, 그는 右衛將軍으로 삼는 등 柳元景에 버금가는 공로를 인정받고 있었다.⁵²⁾ 宗慤은 南陽 涅陽人으로 永嘉의 亂 이후 혼란 속에 南陽에서 江陵으로 내려와 대표적인 지역호족으로 자리매김한 宗氏 집안 사람이었다.⁵³⁾ 본래 그의 집안은 숙부인 宗炳를 중심으로 대체로 학문에 매진하였고 出仕가 아닌 隱逸을 선택하고 있었다. 宗炳는 東晉代 殷仲堪과 桓玄 때부터 劉裕에

50) 『宋書』 卷76 『王玄謨傳』, p.1975.

51) 『宋書』 卷76 『王玄謨傳』, p.1975.

52) 『宋書』 卷76 『宗慤傳』, p.1972.

53) 『宋書』 卷76 『宗慤傳』, p.1971. ; 그의 숙부 宗炳와 宗炳의 손자인 宗夫은 각각 “南陽涅陽人”, “南陽涅陽人”으로 기록되었으며 대대로 江陵에 거했다고 한다.(『宋書』 卷93 『隱逸』 『宗炳傳』, p.2278. ; 『梁書』 卷19 『宗夫傳』, p.299)

이르기까지 모두 主簿로 벽소하려했지만 출사하지 않았으며, 劉裕가 또 太尉參軍으로 벽소하려 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 宋이 들어선 뒤에는 太子舍人으로 등용하려 했으나 역시 나아가지 않았다가 元嘉 20年(443) 죽었다.⁵⁴⁾ 隱逸하며 명성을 높였던 숙부와는 달리, 宗愨은 武將으로 軍功을 통해 隨郡太守에 이르렀으며, 柳元景과 마찬가지로 伐蠻 과정에서 沈慶之 휘하로 들어갔다가 孝武帝의 공신이 될 수 있었다.⁵⁵⁾

東晉南朝時代의 문인들에게 隱逸할 것인가, 出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保家를 위해서 출사와 은일이 같은 집안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출사한다면 누구의 휘하에 출사할 것인가 또한 중요했다. 한 개인의 출사가 전체 가문의 번영 혹은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에 주군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다. 이는 혼인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맺어진 가문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이기도 했다. 宗氏처럼 본적이 南陽이면서 江陵(南郡)으로 이주하여 대대로 살고 있던 이들로는 南陽 涅陽 劉氏, 南陽 淸陽 樂氏가 대표적이었으며, 西晉 惠帝 이전까지 南陽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新野 庾씨를 포함하여 이들이 江陵 4大家를 형성하였다.

이들과 같은 지방대족은 출사한다면 주로 刺史에게 벽소되어 州의 속료가 되었다. 지방 행정을 꾸려야하는 刺史에겐 향촌의 호족 관리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방대족들의 협조가 꼭 필요했으며, 이는 隱逸하며 살았던 宗炳에게 끊임없이 출사의 제의가 이어진 원인이기도 했다. 宗炳 그 자신은 비록 출사를 하지 않고 죽었지만 생전에 荊州 지방관계에 계속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江陵 4大家는 적극적인 출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荊州刺史 劉義宣이 荊州를 10년간 장악한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협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宗炳의 아들 宗朔이 南譙王 義宣의 車騎參軍을 지낸 적이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⁵⁶⁾

그러나, 劉義宣이 모반을 꾀했을 때 이들 가문이 계속 그를 지지했는지는 불분명하다. 江陵 4大家 출신인 宗愨이 劉義宣을 따르지 않고 孝武帝 편에 선 것은, 최소한 江陵의 지방세력의 일부가 형주자사 劉義宣에 대해 반대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혹은 설령 이들 가문이 대체적으로 隱逸의 길을 택하여 당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宗愨의 선택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 劉義宣의 반란에 대한 통일적 지지 여론이 부재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臧質과 마찬가지로 劉義宣 역시 荊州를 근거지로 하면서도 江陵의 대표적 지역호족 宗氏의 통합적 지지를 얻지 못

54) 『宋書』 卷93 「隱逸」, 「宗炳傳」, pp.2278-2279.

55) 『宋書』 卷76 「宗愨傳」, p.1971.

56) 『宋書』 卷93 「隱逸」, 「宗炳傳」, p.2279.

한 셈이었다. 長江中流域을 기반으로 하여 반란을 꾀하면서 荊州와 雍州의 대표적인 지역호족 두 사람을 잃고 그들이 孝武帝의 편에 선 결과, 劉義宣의 반란세력은 자기가 관할했던 지역민의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반란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柳元景과 宗慤은 僑民이었지만, 이미 舊民化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晚渡하여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던 杜씨나 魯씨에 비해 지역기반이 조금 더 튼튼했으며, 지역민에 대한 영향력도 보다 컸다. 杜씨나 魯씨가 關中 지역의 高門으로서의 자존심을 앞세워 劉宋 사회에서 2류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며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일거에 원래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면, 柳씨와 宗씨 등은 오히려 오랜 기간을 거쳐 자신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지역에서 차근차근 세력을 만들어가며 출사를 모색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에서 舊民이 되어버린 後者에게 필요한 것은 長江中流域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었고,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자신들을 끌어줄 수 있었던 것은 劉義宣이 아닌 孝武帝였던 것이다.

2. 荊雍지역인의 출사와 한계 타파의 노력

劉義宣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 柳元景은 孝武帝의 조정에서 계속 활약하였다. 그 자신은 중앙정계에서 고관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그의 집안은 조카인 柳世隆 때에 이르면 琅邪 王延之, 吳郡 張緒, 吳興 沈琰 등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柳世隆의 두 아들들은 東晉南朝 최고 문벌가문으로 평가되는 琅邪 王氏 王儉에게 인정받을 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다.⁵⁷⁾ 그러나, 柳氏의 경우를 長江中流域에서 출사를 시작한 인물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의 집안은 前廢帝 때 柳元景이 살해당하고 京師에 있던 인척들도 모두 화를 당하게 된 이후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建康의 高門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長江中流域 출신의 인사들이 일시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建康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문벌귀족들처럼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출사하기는 어려웠다.

중앙정계에서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長江中流域의 지역인사와 기존의 문벌귀족세력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예가 柳元景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南陽 涅陽人 劉湛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劉裕가 荊州에 왔을 때 출사를 시작하였으며,⁵⁸⁾ 彭城王 義康이 豫州에 出鎮하였을 때 나이가 어려 親政을 할 수 없자 그 휘하에서 長史를 맡아 실질적으로 府

57) 牟發松, 『湖北通史-魏晉南北朝卷』,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9, pp.342-343.

58) 『宋書』 卷69 「劉湛傳」, p.1815.

州의 일을 모두 담당한 바 있었다. 또한, 歷陽太守를 거쳐 廬陵王 義眞이 南豫州刺史로 출진하였을 때 다시 그 長史를 맡는 등 豫州 및 南豫州 방면에서 官歷을 쌓아갔다. 그는 관직을 얻게 되었을 때 의례적 사양도 없이 바로 받아들였다고 기록될 만큼 강한 출세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⁵⁹⁾ 少帝 劉義符 때 마침내 중앙정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 劉義隆이 宜都王으로 荊州刺史로 출진했다가 文帝가 되었다. 荊州刺史였던 皇子가 皇帝가 된 것은 荊州 지역 출신인 그에게도 출세에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중앙정계를 장악한 것은 文帝의 핵심 참모에서 중앙 당권자로 변신한 王曇首, 王華 등 琅邪王氏들이었다. 荊州에 출진했던 劉義隆 휘하에서 王曇首는 長史를 맡았고, 王華는 司馬를 담당했다. 둘은 모두 荊州府州의 핵심 막료였으며, 특히 王華는 南郡太守, 行府州事를 맡아 劉義隆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府州의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劉湛이 그들을 ‘代邸之舊’라 표현한 바 있으며, 그의 불평을 통해 중앙정계에서 琅邪王氏과의 경쟁에서 밀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외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⁶⁰⁾ 특히, 둘째아들의 사망으로 인해 建康으로 돌아오겠다는 청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가 중앙정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王華와 王曇首 사망 직후인 것을 보면, 이들 간의 갈등관계는 상당히 심각하였던 듯하다. 王씨들의 입장에서 보면, 劉湛을 굳이 중앙정계에 두기보다는 江陵에 터전을 가지고 있던 南陽 涅陽 劉씨이므로 차라리 해당 지방으로 내려보내어 지역민과의 문제 해결에 이용함으로써 중앙정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를 제거하고 지방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이후 建康정계로 돌아가 세를 확대하던 劉湛은 彭城王 義康의 옹립을 꾀하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어렵게 쌓아올렸던 建康에서의 기반도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다.

중앙정계에 자리잡지 못한 ‘2인자’들은 지방에서 효용가치가 보다 높았다. 이는 劉義隆 휘하에서 南蠻校尉를 지냈던 到彦之나 司馬와 南郡相을 겸했던 張邵도 마찬가지였다. 到彦之도 文帝를 등극시키는데 공을 세운 막료 중 한 사람이었지만, 文帝가 황제가 된 뒤 그가 사망한 元嘉 10년(433)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襄陽, 歷陽 등 외직으로 보냈다. 물론 그 배경에는 荊州刺史였던 謝晦에 대한 토벌이나 北伐 작전 수행과 같은 다른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그가 武將으로 高門 출신이 아니었기에 중앙정계에 머물기 힘들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비록 長江中流域 출신 인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參軍부터 시작하여 南郡太守, 南蠻校尉를 거치면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낸 ‘舊民化’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오히려 長江中流域 士庶의 중망을 얻을 수 있었고,⁶¹⁾ 중앙에서보다 해당 지역에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59) 『宋書』 卷63 「王華傳」, p.1677.

60) 『宋書』 卷69 「劉湛傳」, p.1815.

張邵는 文帝가 中郎將, 荊州刺史였을 때 그 휘하에서 司馬로 南郡相을 겸하면서 모든 일을 주관한 바 있었고, 湘州가 분립되자 刺史를 담당하기도 하였다.⁶²⁾ 이어 元嘉 5년(428) 征虜將軍, 寧蠻校尉, 雍州刺史가 되었으며, 江夏王 義恭이 江陵에 出鎮했을 때 撫軍長史, 持節, 南蠻校尉로 등용되었다.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會稽太守를 지낸 吳郡 吳人 張裕의 동생이자, 武帝 휘하에서 출사를 시작한 확실한 ‘東人’이었다.⁶³⁾ 그런 그가 중앙 정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 확실히 王華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듯하다. 劉湛이 王華에게 배척당해 長江中流域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張邵 역시 王華와의 갈등이 있었다.⁶⁴⁾ 張邵는 王華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믿었는데, 실제로 해를 입히는 커녕 오히려 王華의 추천에 의해 雍州刺史가 되어 권력이 확대되었다.⁶⁵⁾ 雍州는 군사적 요지였고, 寧蠻校尉를 겸했기 때문에 관할 지역 내의 군권도 모두 장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張邵는 湘州에서 雍州로 옮겨갔을 뿐, 王氏들이 장악하고 있던 중앙정계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張邵와 그의 집안은 長江中流域에서 ‘舊民化’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雍州에서 寧蠻校尉였으나 蠻들을 잘 통제하지도 못했고, 江夏王 義恭 휘하로 옮긴 직후 雍州에서 사사로이 재물을 모은 것이 문제가 되어 免官, 削爵되었기 때문이다. 후에 吳興太守로 복직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던 것이나,⁶⁶⁾ 아들 및 조카 등이 長江中流域에서 출사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그의 조카 張暢은 南譙王 義宣의 司空 長史, 南郡太守를 지낸 뒤 吏部尚書로 전보되었는데, 蔡超 등이 그가 人望이 있다고 여겨 그를 건강으로 보내지 않고 南蠻校尉, 冠軍將軍, 丞相 長史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劉義宣의 모반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張暢은 劉義宣의 모반 의도를 알게 되자, 이 일을 급히 조정에게 알리려 했을 뿐 아니라 劉義宣에게도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⁶⁷⁾ 張邵나 張暢은 비록 長江中流域에서 관직을 지냈더라도 ‘舊民化’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東人’의 기반과 집안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長江中流域 출신이거나, 혹은 오랜 기간 이 지역에 출사하여 관직을 기반으로 ‘舊民化’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張暢이 지닌 人望이란, 그의 출신 배경과 北魏의 사절과의 대화에서 밀리지 않았던 그의 능력, 관료로서 자신의 직임을 충실히 했던 그 자신의 태도로부터 획득된 것일 뿐,

61) 『南史』 卷25 「到彦之傳」, p.674.

62) 『宋書』 卷46 「張邵傳」, p.1394.

63) 『南史』 卷31 「張裕傳」, p.803.

64) 『宋書』 卷63 「王華傳」, p.1676.

65) 『宋書』 卷46 「張邵傳」, p.1395.

66) 『宋書』 卷46 「張邵傳」, p.1395.

67) 『宋書』 卷46 「張暢傳」, p.1399.

해당 지역에 대를 이은 어떤 기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柳元景이나 到彦之 등은 출사 후 이름을 알리게 되기까지 약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문벌귀족 집안 자제들이 바로 起家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중앙정계로의 진출 모색은 지난한 일이었다. 그런데, 長江中流域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유리하게 출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관직들에서조차 항상 중앙에서 파견한 이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고, 해당 지방관직도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막힌 출사의 길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劉宋代 長江中流域의 舊民이나 혹은 ‘舊民化’한 이들은 안정을 추구하며 해당지역 都督·刺史에게 협력하였다.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호되고, 순조로운 출사의 루트가 보장이 된다면, 관직에 있는 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지지하고 따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 안정되지 못한 僑民들에게는 더욱 빠른 출사의 루트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이들은 해당지역 都督·刺史를 이용하려 하였다. 劉義宣도 그랬지만 애초에 都督·刺史가 반란의 의지가 없었더라도 그 휘하 집단의 의지 혹은 조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란으로 화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東晉 이래 長江中流域의 움직임은 建康 조정에도 큰 영향을 준 바, 중앙정권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계속해서 주시해야만 하는 곳이었고, 반란의 위험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이어졌던 것이다. 長江中流域의 인사들은 이러한 조정과 都督·刺史의 알력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곤 했던 것이다.⁶⁸⁾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같은 府州에 출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사회적 층차를 가지고 있어서⁶⁹⁾ 서로 입장이 달랐던 토착민과 이주민은 항상 서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합치되기는 힘들었다. 長江中流域의 인사들은 대체로 上下 모두 仕路에서 중앙정계로부터 견제되거나 배제되었던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지녔으며, 출세를 지향하는 공통의 바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長江中流域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은 쉬운 일

68) 거꾸로 都督·刺史가 지역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반란 가능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가령, 南齊 때 雍州刺史 王奐이 寧蠻長史 劉興祖를 미워하였는데,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인 뒤, 그가 산에 거주하는 蠻族을 선동하고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무고하였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南齊書] 卷49 「王奐傳」, pp.849-850.)

69) 예컨대, 雍州의 豪族 집단은 晚渡士人和 三五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간에는 입사 경로 및 사회적 지위 등의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王永平·徐成, 「南朝雍州豪族的問題及其仕途軌迹述論」, 『南京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1期, pp.114-116) 또한, 江陵과 襄陽의 士族을 비교할 경우, 前者는 城市 중심의 생활을 한 것에 비해 後者는 鄉村에도 기반을 두었기에 안정적 경제 기초와 종족관념을 지녔다고 한다.(王永平·徐成, 「東晉南朝時期襄陽豪族集團的社會特徵」,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2期, p.17)

이 아니었다. 하지만, 역으로 長江中流域에는 분출하는 僑民의 에너지가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언제라도 중앙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이다.

서로 다른 長江中流域 사람들의 역량을 하나로 지향점을 가지고 통합해 낸 경우, 그 에너지는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까지 이르렀다. 荊州刺史로 出鎮했다가 皇帝의 位를 계승할 수 있었던 宋 文帝나 孝武帝의 경우 각각 皇子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고, 建康 측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추대된 것이었으나,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荊州’의 人事들이 없었다면 쉽게 황제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梁 武帝 蕭衍의 경우, 그는 雍州刺史로서 荊-雍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성공함으로써 東昏侯 蕭寶卷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다. 蕭衍은 “내가 만약 荊·雍(州)의 병사들로 東夏를 쓸어버린다면, 韓(信)과 白(起)가 다시 나오더라도 계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⁷⁰⁾라고 자신하였다. 이 시점에 이미 군사력으로는 荊州를 압도하였던 雍州였지만, 雍州만으로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실제 東昏侯 蕭寶卷은 蕭衍을 제거하기 위해 劉山陽에게 精兵 3千을 붙여 주고, 荊州 行事 蕭穎胄에게 襄陽을 습격하도록 하였다. 이를 미리 알아챈 蕭衍은 내용없는 편지를 전달하는 심리전을 사용하여 劉山陽과 蕭穎胄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⁷¹⁾ 결국 蕭穎胄와 荊州를 모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荊州와 雍州 두 세력이 힘을 합쳤을 때, 명목상 主君으로 추대된 것은 荊州刺史였던 蕭寶融이었으며 그가 永元 3년(501) 荊州에서 和帝로 즉위하였지만, 사실상 실권은 군대를 통솔하던 蕭衍에게 있었다. 더구나, 東昏侯와의 대립구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江陵에 있던 蕭穎胄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蕭衍에게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었다. 荊-雍 두 세력이 ‘荊州’로 뭉쳤을 때, 서로 꿈꾸는 최종점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당면 목표가 같았기에, 그들이 힘을 합하자 곧 建康의 東昏侯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雍州刺史 蕭衍의 휘하에는 新野人 曹景宗과 같이 襄陽 인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武將을 비롯하여, 京兆 杜陵人 韋叡, 河東 解人 柳慶遠과 柳惔 등 대표적인 ‘晚渡北人’들이 있었다.⁷²⁾ 이는 雍州집단 내부적으로도 蕭衍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계급 갈등이 완화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晚渡北人’과 襄陽 주변에 정착했던

70) 『梁書』 卷1 『武帝紀』, p.4.

71) 『梁書』 卷1 『武帝紀』, pp.4-5. 蕭穎胄는 劉山陽이 자신을 의심하자 그를 죽이고 蕭衍과 연합하게 되었다.

72) 張琳, 「南朝時期僑居雍州的河東柳氏與京兆韋氏發展比較」, 『武漢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0年 2期, pp.231-232. 柳氏와 韋氏는 모두 雍州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발전 정도와 시기 면에서는 차이가 났다. ; 京兆 杜陵人 韋氏가 渡江한 것은 苻堅 정권이 멸망과 관련이 있었으며, 韋氏가 南朝에서 발전한 것은 梁 武帝 때였다고 한다.(宋艷梅, 「永嘉亂后京兆韋氏南遷江左考述」, 『南京曉莊學院學報』, 2009年 5期, p.24 및 p.26)

많은 流民들의 존재를 감안하여 蕭衍의 집단의 주축을 ‘僑民’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荊州 行事 蕭穎胄의 휘하에 있던 宗夬, 樂藹, 劉坦 등⁷³⁾은 이미 江陵지역에 정착하여 世居하며 ‘舊民’이 되어버린 大族들이었다. 결국, 蕭衍을 중심으로 창출해낸 ‘荊-雍’ 단결은, ‘僑-舊’의 일시적 화합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長江中流域 내에서 갈등과 분열의 요소이기도 했던 ‘僑’와 ‘舊’가 어떤 목적으로든 화합하고 단결하였을 때, 長江中流域의 에너지는 이처럼 建康을 압도하며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

東晉南朝史에서 ‘僑’와 ‘舊’는 대체로 北來士族과 吳姓士族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建康 방면과는 달리 長江中流域에서는 ‘僑’와 ‘舊’를 간단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자적으로 舊民은 토착민을 가리킬 터이지만 長江中流域에서는 잦은 전란과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東晉 이전의 豪族 집단이 거의 와해되어 버렸다. 그 때문에 吳姓 귀족, 혹은 강남 호족으로 이야기되는 이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초기에 長江中流域으로 유입된 이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했다. 兩晉交替期에 이 지역으로 유입된 ‘僑民’은 분명 외지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이들이었지만 이들이 한 세대 이상 특정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土着하고 ‘世居’하면서 ‘舊民’이 되어 버렸다. 이들이 중앙조정에서 지방관으로 파견된 또다른 北來僑民 士族 집단과 연합하여 東晉왕조 체제 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東晉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다시 長江中流域에 유입된 이른바 ‘晚渡士族’은 비록 關中, 洛陽 지역에서 이주해와서 스스로 高門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이들조차도 長江中流域에서는 다시 별 기반없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이 지역기반을 마련하거나 출세를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長江中流域에서 ‘僑’와 ‘舊’는, 이 지역의 체계 내로 들어와서 구성원이 된 先後의 차이를 표시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長江中流域의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건, 토착한 이들이건 계층적으로 上·下로 구분이 되건 간에 모두 仕路에서 중앙정계로부터 견제되거나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지녔다. 그 때문에 長江中流域 지역민은 출세 지향이라는 공통의 바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달랐다. 長江中流域 지역민은 토착민과 이주민이 단순히 분류되지 않는 만큼 그 내부적으로도

73) 『梁書』卷19「樂藹傳」, p.303.

다양한 요구와 일치되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荊州刺史 劉義宣의 반란과정과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 ‘僑’와 ‘舊’의 정치적 선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지역적 기반이 미약한 ‘僑’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통한 빠른 출세를 지향하였다. 東晉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長江中流域의 정치 체제는 완비되었지만, 長江中流域은 군사지리적 특수성과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東晉南朝時代 다른 지역에 비해 계속 사회유동성이 컸다. 특히, 이미 고착되어버린 建康의 문벌 사회구조보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열린 땅이었다. 출세를 모색하다 여의치 않거나, 혹은 중앙 정계와 대립할 만한 출신과 능력을 지닌 지도자를 만나거나, 중앙 조정에서 자신들을 압박하는 행위가 나타나거나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長江中流域 지역민의 ‘僑’들은 쉽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원래 ‘僑’였지만 舊民化한 ‘舊’의 입장이 되면 보다 안정적인 출사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층적인 모순의 집결지로서 長江中流域에는 늘 ‘僑’와 ‘舊’의 갈등이 수반되었고, 그들의 가진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개개인과 집단별로 쉽게 합치될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의 차이가 드러났다.

하지만, 자기 기반을 닦아 생존하고자 하는 ‘僑’의 움직임은 長江中流域에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혹은 해당지역 최고 정치권력자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덕망과 능력을 지니고 지역민의 공통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그가 설령 長江中流域 출신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를 정점으로 長江中流域 전체가 강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가령, 雍州刺史 蕭衍은 ‘僑’와 ‘舊’, ‘荊’과 ‘雍’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東昏侯에 맞서고 훗날 梁을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長江中流域 ‘僑舊’가 협력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建康 조정을 압도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즉,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생동하는 다양한 이주민의 열망과 역량이 통일적 지향점을 만나 분출할 때, 그것이 長江中流域의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唐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그 성격

— 心喪・解官를 중심으로 —

김 정 식(성균관대)

目次

머리말

I. 漢・魏晉南北朝시기 官人 父母三年喪의 확대

II. 唐前期 官人父母喪의 喪期와 心喪의 확립

III. 唐前期 官人服喪과 解官제도

結論

머리말

官人の 부모에 대한 三年喪은 漢代이후 儒家적 가치와 문화가 사회 일반에 침투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갔다. 魏晉南北朝시기 통치자들은 儒家의인 이념인 부모에 대한 孝를 선전할 수 있는 父母喪에 주목하였고 이를 제도화하려 하였다. 이에 三年喪의 기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일어났고, 皇室에서도 부모에 대한 三年喪을 행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心喪이 논의 되고 실행되었다.

國家禮制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통치자의 권위를 提高하고자 한 唐朝 皇帝의 입장에서 官人の 父母喪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 때문에 唐前期에는 父母喪 특히 모친상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唐玄宗(685-762 在位712-756) 開元20年(732)에 편찬된 『大唐開元禮』 『五服制度』가 그 결과물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父母喪 시행을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는 喪期・心喪・解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父母喪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제도화된 父母喪은 『大唐開元禮』에 편입되었고, 律・令에 관인의 心喪・解官 등의 내용을 摘示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唐前期는 南學과 北學으로 나뉘어 있던 禮制를 국가의 지원 아래 정비하여 통일하던

시기였다. 玄宗朝의 『大唐開元禮』는 禮의 형식과 절차를 이용해 官人을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편찬된 禮書이다. 唐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실행되던 儒家의 孝관념이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 강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唐前期 官人의 父母喪 확립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권력이 服喪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孝라는 禮敎 관념을 解官이라는 제도와 결합시켜 官人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삼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喪服과 三年喪에 대해서는 기왕의 많은 연구가 있다. 특히 漢·魏晉南北朝의 父母喪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해당시기 父母喪에 대한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皇帝와 士人들 사이의 拮抗관계까지도 밝혀내고 있다.¹⁾ 唐初의 父母喪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²⁾ 다만 唐代 父母喪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父母喪의 禮制史的 의의, 儒家 사상에서의 상징적 의미 혹은 喪服과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만 주목하고 있다. 특히 唐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정은 국가권력과 官人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專論이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漢代 이래로 禮制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官人 父母喪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한다.

I. 漢·魏晉南北朝시기 官人 父母三年喪의 확대

1. 漢代 官人의 父母三年喪

喪服禮와 관련하여 漢文帝(기원전203-기원전157, 在位기원전179-기원전157)는 遺詔에서 36일 短喪制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은 文帝이후 皇室과 官人들이 따라야 하는 常禮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모에 대한 三年喪을 금하고 있지는 않았다. 前漢시기에는 文帝의 遺詔이후 短喪制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前漢末부터는 公卿·刺史·二千石과 같은 高官의 경우 服喪去官을 행할 경우 奏請하여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大臣의 服喪을 금지하는 奪服制까지 시행되어 後漢까지 엄격하게 지켜졌다.

1) 藤川正數, 『魏晉時代における喪服禮の研究』, 東京, 敬文社, 1960 ; 同, 『漢代における禮學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68 ; 洪承賢, 『後漢末 ‘舊君’ 개념의 재등장과 魏晉時期 喪服禮』, 『東洋史學研究』 94, 2006 ; 同,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 『東洋史學研究』 102, 2008 ; 金羨珉, 『兩漢 이후 皇帝短喪制의 확립과 官人三年服喪의 入律』, 『東洋史學研究』 98, 2007.

2) 唐代的 喪服·三年喪에 대한 연구로는 趙瀾, 『唐代喪服改制述論』, 『福建師範大學學報』, 2000-1 ; 同, 『唐代的三年之喪略論』, 『福建教育學院學報』, 2001-2 ; 同, 『唐代喪服制度研究』,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8-2 ; 吳麗娛, 『唐禮摭遺——中古書儀研究』第12-13章『喪服制度』, 北京, 商務印書館, 2002年 등이 있다.

後漢시기에 들어서면 儒家의 禮敎이념이 점차 사회의 중요한 행위규범으로 되어 갔다. 孝를 발현하는 중요한 禮制의 하나인 喪服禮 또한 經典에 근거하여 행해져야만 했고 이에 따라 관인의 부모 三年喪을 위한 去官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관인의 부모 三年喪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었고 관인이 三年喪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服喪해야 했다. 결국 恒帝(132-167, 在位146-167)시기에 들어오면 三年喪에 대한 朝廷과 官人사이의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後漢 조정은 儒家의 禮敎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官人의 父母에 대한 三年喪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去官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염려해서였다. 한편 朝廷官人의 입장에서조차 부모상을 당해 3년을 去官하여 관직의 공백기를 겪게 된다면 終喪후 관직의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3년 服喪기간동안 離職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服喪 기간에 지켜야 할 금기 등 三年服喪의 실천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前·後漢시기 부모를 위한 三年服喪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儒家의 禮敎이념이 국가의 규범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朝廷과 權臣들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官人들은 父母의 服喪을 두고 三年喪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처럼 三年服喪을 주장하는 측과 短喪制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三年喪은 제도화 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禮制로 인식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³⁾

2. 魏晉南北朝시기 官人 父母三年喪期와 心喪

魏晉南北朝는 漢代의 三年喪 守喪의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전란이 빈번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父母喪을 당했다고 3년을 온전히 服喪하기는 어려웠다. 官人의 부모에 대한 三年喪은 晉 武帝(236-290 在位265-290)시기에 이르러 국가에서 보장해 주기 시작하였다. 그 후 太康7년(286) 대신들의 終喪까지도 허락하였다.⁴⁾ 이처럼 晉代에 들어서면 文臣·武將과 士·卒들 나아가 大臣의 三年喪을 보장해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惠帝(259-307 在位 290-307) 元康(291~299)년간 陳準(?-300)·傅咸(239-294) 등은 황제의 명으로

3) 楊樹達, 『漢代婚喪禮俗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p.197-199 ; 丁凌華, 『中國喪服制度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pp.243-244.

4) 모친상을 당한 大鴻臚 鄭默(213-280)은 葬禮를 마친 뒤 옛 제도에 따라 관직을 攝職 해야 했는데 거듭 상언하며 三年喪을 마치려 하였다. 이에 황제는 “改法定令”하여 대신들의 終喪을 허락하였다.

奪情(起復)⁵⁾되어 三年喪을 마칠 수 없었고 이후로 이것이 관례가 되었다. 元康년간이후 대신들의 起復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관직과 봉록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三年喪의 禮를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유가 컸던 듯하다.

이 시기 三年喪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喪期를 정하는 문제였다. 前·後漢시기 三年喪의 喪期는 『淮南子』 『時則訓』이나 『白虎通』 『喪服』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25개월이었다. 국가법령으로는 西晉初에 이미 王肅說을 채택해 東晉시기까지도 계속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東晉의 士人들은 일반적으로 鄭玄說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北魏에서는 太和20년(496) 2월 戰時를 제외하고는 三年喪을 보장한다는 조령을 반포하였다. 또한 太和23년(499) 孝文帝(467-499 在位471-499)가 崩御했을때 27개월에 禪祭를 지내는 것을 볼 때 鄭玄說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宣武帝 延昌2년(513) 偏將軍 乙龍虎(生卒年未詳)의 “복상기간을 마치지 않고 관직을 구한”(冒喪求仕) 사건을 계기로 領軍將軍 元珍(生卒年未詳)과 三公郎中 崔鴻(478-525) 사이에 三年喪期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다.⁶⁾

그러나 三年服喪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을룡호의 服喪을 둘러싼 논쟁을 볼 때 삼년상의 終喪이 25개월인지 27개월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고, 삼년상 기간 중의 閏月에 대한 처리문제 등의 세칙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喪期에 대한 혼란은 三年喪의 제도화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였다.

한편 神龜원년(518) 8월에는 “지금부터 전시라도 모두 起復을 신청할 수 없다.”⁷⁾는 조칙이 반포된다. 喪中에 皇帝의 起復명령을 받는 것은 관인에게 큰 명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居喪 중에 起復에 대한 신청이 빈번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武人수의 증가로 관직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停年格⁸⁾을 실시

5) 奪情·起復·奪服·奪志은 모두 같은 뜻으로 三年喪을 행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6) 을룡호는 부친상으로 27개월의 휴가를 받았고 그는 윤월까지 복상기간에 넣어 계산한 후 3년 終喪을 했다고 판단하여 복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元珍은 현재 행용되고 있는 것은 鄭玄의 27개월설이고 을룡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현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崔鴻은 왕숙의 25개월설에 따라 26개월을 복상하였으므로 문제가 없고 정현설에 따르더라도 25개월의 大祥祭를 지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元珍은『違制律』에 따라 “五歲刑”의 중벌로 처단하기를 주장하였고 이미 26개월을 服喪한 을룡호에게 이 처벌은 가혹하다고 여긴 崔鴻은 돌아가 나머지 복상기간을 채우고 鞭50대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음 을룡호에게 27개월 父喪에 따른 휴가를 주고 있는 것에서 볼 때, 北魏는 정현의 27개월설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晉書』 권9 『孝明帝紀』, p.228 : 頃年以來, 戎車頻動, 服制未終, 奪哀從役……自今雖金革之事, 皆不得請起居喪.

8) 한 관직에서 다음 관직으로 임용할 때 賢愚에 관계없이 대기한 시간의 순서대로 임용하는 제도로써 당시 많은 훈공 무인이 임용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김선민, 앞의 논문, pp.177-178)

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임용후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武官의 起復금지 조치도 이러한 부족한 관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을 것이다.⁹⁾ 이제 儒家의 중요한 禮인 父母三年喪은 국가의 정통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점차 官人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父母喪三年의 기간과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 가운데 하나는 心喪으로 그 연원은 孔子를 위한 제자들의 喪이었다.¹⁰⁾ 하지만 당시 心喪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여기에 西晉 시기 杜預(222-284)는 父母三年喪 終喪을 원하는 武帝를 위해 새로운 心喪의 내용을 내놓는다. 西晉 武帝(재위 265-290)시기 황실에서 三年喪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尚書 杜預는 喪期 2周年 25개월의 心喪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天子·諸侯의 三年喪은 斬衰·齊衰를 막론하고 모두 장례를 마친 후 喪服을 벗고 諒闇¹¹⁾을 하면서 心喪으로 喪期를 끝마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진 心喪은 상복제도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는 官人의 父母喪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II. 唐前期 官人父母喪의 喪期와 心喪의 확립

1. 父母三年喪 喪期の 확정

官人의 父母에 대한 三年喪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논쟁이 되어오던 정현 27개월설과 왕숙 25개월설의 喪期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특히 『大唐開元禮』의 편찬을 앞두고 凶禮의 중요한 한 부분인 三年喪의 服喪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百官들은 정현설과 왕숙설로 나뉘어 논쟁을 펼친다.¹²⁾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中月而禫”에서 “中月”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정현설에서는

9) 『晉書』 권66 『崔亮傳』, p.1480 : 又武人至多, 官人至少, 不可周溥. 設令十人共一官, 猶無官可授, 況一人望一官, 何由可不怨哉? 吾近面執, 不宜使武人入選, 請賜其爵, 厚其祿. 既不見從, 是以權立此格, 限以停年耳.

10) 西晉 이전 漢代 心喪의 근거는 『禮記』 『檀弓』의 공자의 喪에 대한 제자들의 논의이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스승인 공자의 喪을 부모와 같이 지내야 하지만 服은 없다고 하였다. 정현과 공영달은 弔服을 입고 “加麻”라 하는 經(암마로 만든 머리카락 허리에 하는 끈)과 帶(마로 만든 허리띠)을 한다고 하였다. 즉 漢代에는 『禮記』 『檀弓』을 근거로 스승의 상을 心喪으로 마친 것이다.(『禮記正義』 권7 『檀弓上』, p.243 : 請喪夫子若喪父而无服. 鄭玄注: 無服, 不爲衰, 弔服而加麻, 心喪三年. 正義云: “弔服而加麻”, 麻謂經與帶也, 皆以麻爲之, 故云“加麻”也)

11) “諒”을 진실하다(信)·闇은 침묵한다(默)는 의미.

12) 이하의 삼년상에 대한 논쟁은 『通典』(권87 『禮47 喪制之五 禫變』, pp.2386-2389)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中을 間으로 해석하여 “與大祥間一月”이라하여 喪期를 27개월로 보고 있다.¹³⁾ 반면에 왕숙설에서는 『禮記』 「士虞禮」를 근거로 “中月”을 “月中”으로 보아 大祥이 있는 달에 禫祭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喪服을 마친 후 음악을 연주하는 문제인데, 원래 服喪中에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으므로 음악을 연주하는 始點은 終喪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⁴⁾ 27개월 終喪과 관련해서 정현설에서는 28개월에 음악을 연주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식적인 삼년상은 27개월에 끝난다는 것이다.¹⁵⁾ 한편 왕숙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먼저 주 11)의 ①-④의 내용을 근거로 25개월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經書의 뜻에 습한다고 하며 정현의 27개월설에 반대하고 있다.

셋째, 왕숙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禮記』를 근거로 三年喪은 2년이고 25개월에 마친다고 하였다.¹⁶⁾ 이에 대해 정현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禮記』 「間傳」을 근거로 27개월째 되는 달에 禫祭를 시행한다며 왕숙설을 반박하고 있다.¹⁷⁾ 양측의 주장은 모두 문제가 없지만 三年喪의 근본정신인 孝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현설이 孝의 정신에 더 적합한 것

13) 『儀禮注疏』 권43 「士虞禮」, pp.965-966 : 期而小祥, ……又期而大祥, ……中月而禫. (鄭玄注: 中猶間也. 禫, 祭名也. 與大祥間一月, 自喪至此凡二十七月是月也)

鄭玄說	王肅說
大祥 날 素琴을 연주하니, 공자는 거문고를 타고 생황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이러한 음악은 喪을 당한) 슬픔을 줄여주는 음악이니 正樂이 아니다.(祥之日, 鼓素琴, 孔子彈琴·笙歌, 乃省哀之樂, 非正樂也. 『禮記』 「檀弓上」)	①大祥일에 縞冠을 쓰고 이달에 禫祭를 지내며 다음 달에 음악을 연주한다(祥而縞, 是月禫, 徙月樂. 『禮記』 「檀弓上」) ②노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大祥祭를 지내고 저녁에 노래하는 자가 있어 자로가 이를 비웃으니 공자가 “다음 달에 노래하였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였다(魯人有朝祥而暮歌者, 子路笑之, 夫子曰“踰月則其善也. 『禮記』 「檀弓上」) ③공자가 大祥을 지낸지 닷새나 되었는데도 거문고를 타도 소리를 이루지 못하였고 열흘이 되어서야 생가(의 소리)를 이루었다.(夫子既祥, 五日, 彈琴而不成聲, 十日而成笙歌. 『禮記』 「檀弓上」) ④大祥 날 素琴을 연주하고 民에게 끝이 있음을 알렸다.(祥之日, 鼓素琴, 告民有終也. 『禮記』 「喪服四制」) ⑤大祥 날, 素琴을 연주한다(祥之日, 鼓素琴. 『禮記』 「檀弓上」) ⑥공자께서 大祥을 지낸 뒤 닷새째 되던 날에 거문고를 타고, 열흘째 되던 날에 생황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孔子既祥, 五日彈琴, 十日笙歌. 『禮記』 「檀弓上」) ⑦禫祭를 지낸 뒤에는 문안에서 우는 자가 없으니 이는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이다(祥而外無哭者, 禫而內無哭者, 樂作矣故也. 『禮記』 「喪大記」) ⑧맹헌자는 禫祭를 지내고도 악기는 걸어두었으나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았다.(孟獻子禫, 懸而不樂. 『禮記』 「檀弓上」)

14) <『通典』의 父母三年喪 喪期논쟁>

15) 『禮記正義』 권6 「檀弓上」, p.222. 大祥일에 음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禮樂을 보존하려는 노력이지 음악을 연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현설에서는 25개월에 大祥을 행하고 27개월에 禫祭를 지내며 28개월에 음악을 연주한다.

16) 『通典』 권87 「凶禮九 喪制之五 禫變」, p.1387.

17) 『通典』 권87 「凶禮九 喪制之五 禫變」, p.1388 ; 『禮記正義』 권57 「間傳」, p.1811.

이다.¹⁸⁾ 즉 三年喪에서 지내는 練祭·大祥祭·禫祭는 부모에 대한 哀悼의 情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通典』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魏晉南北朝를 거쳐 『大唐開元禮』편찬시기까지 지속되어오던 三年喪의 喪期 논쟁은 마침내 鄭玄의 27개월설로 확정된다.

2. 心喪·解官제도의 확립

隋朝부터는 官人의 父母守喪과 관련해서 心喪의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¹⁹⁾ 令文이 완전하지 않아 당시의 모든 규정을 알 수는 없지만 心喪이 官人의 父母服喪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令文에 따르면, “남의 후사(양자)가 된 자의 (親生)부모를 위한 服”(爲人後者, 爲其父母)·“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改嫁한 어머니를 위한 服”(父卒母嫁爲父後者)·“改嫁한 繼母를 위한 服”(繼母嫁) 등이 心喪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²⁰⁾

心喪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唐 龍朔2년(662) 司文正卿 蕭嗣業(生卒年未詳)의 改嫁한 嫡母²¹⁾에 대한 心喪문제로 인한 官人들의 논쟁이다. 논쟁을 거친 뒤 改嫁한 嫡母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蕭嗣業은 心喪·解官 모두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는데, 이 논의는 당시 父母喪을 당했을 때의 心喪과 解官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아래의 표1]에서 보듯이, 첫째 李博義(生卒年未詳)는 ① 삼년의 斬衰·齊衰에 心喪을 행한다고 한 것은 착오”(三年齊斬, 謬曰心喪)이고, 이는 현재의 令文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李博義 등의 건의는 心喪을 함께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開元7年令에

18) 『通典』에 근거하면 부모에 대한 애도의 정을 깊이하고 孝를 드러내기 위해 원래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늘렸다.

19) 隋·唐의 正史에서는 官人의 父母喪과 관련된 心喪의 내용만이 보이고 스승·皇室·먼친척 등과 관련된 이전의 心喪의 사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唐皇室에서는 高祖시기부터 短喪制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以日易月”의 短喪制가 확립되어 사용되는 것은 唐 玄宗의 遺詔이후부터이다. 다만 玄宗의 短喪制는 13일 小祥, 25일 大祥, 27일 釋服 등 총 服喪기간 27일로 漢朝의 36일과는 차이가 있다.([宋]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권12 『明皇遺詔』, p.73(北京, 中華書局, 2008년))

20) 『隋書』 권71 『劉子翊傳』, pp.1651-1652 : 又“爲人後者, 爲其父母菴” ……是以令云“爲人後者, 爲其父母並解官, 申其心喪. 父卒母嫁爲父後者雖不服, 亦申心喪. 其繼母嫁不解官.”

21) 원문에는 “嫡繼母”라고 하였으나 母子관계의 服喪 규정에 “嫡繼母”에 대한 服은 보이지 않는다. 『唐會要』 권37 『服紀上』(p.675 : 依房仁裕等議, ……嗣業既非嫡母改醮, 不合解官.)의 내용에 근거해 “嫡母”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22)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心喪은 凶服을 벗고 행하는 것으로 斬衰·齊衰服과는 다르지만 心喪三年은 斬衰·齊衰三年服 기간에 相當한다. 그러므로 官人이 斬衰·齊衰三年服을 당해 解官하는 기간에 동시에 心喪의 禮를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²³⁾ 하지만 開元25年令에 이르러서는 斬衰·齊衰三年服에 心喪의 내용이 빠져있어 李博義의 건의가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龍朔2년의 解官·心喪 논쟁

	①斬衰·齊衰三年			總麻三月	無服	예외조항	
		②父在爲母	③父卒母嫁及出妻之子爲母(皆爲生己子)	④庶子爲(父)後(者)爲其母	⑤嫡·繼·慈·養改嫁	斬衰三年 ⑥父爲長子	齊衰杖期 ⑦夫爲妻
龍朔2년 이 전 令	解官·心喪	解官·心喪	解官·心喪		不解官·心喪	不解官	解官·心喪
李博義 등 의 上奏	解官	解官·心喪	解官·心喪	解官	不解官·不心喪	不解官	不解官

둘째, 齊衰杖期服과 관련된 내용으로 ②“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죽은 어머니를 위한 服”에 대해 李博義 등은 “心喪의 제도는 오직 (아버지의 尊에 어머니의 복이)눌려서(壓)(어머니의 服을)낮출(降)때 시행”(心喪之制, 唯施壓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⁴⁾ 이는 心喪의 이론적 근거를 말해 주는 것으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죽은 어머니를 위한 服(父在爲母)”의 경우 杖期服을 행한 뒤에 心喪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우는 것이다.

③“아버지가 돌아가시고 改嫁한 어머니(父卒母嫁)와 아버지에게 쫓겨난 어머니의 아들(出妻之子)의 (親生)어머니를 위한 服”의 경우 당시의 令에는 解官과 心喪을 모두 행하도록 하였고, 李博義 등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²⁵⁾ 한편 親生母가 아닌 嫡母·繼母·慈母·養母²⁶⁾가 改嫁 한 ⑤의 경우 당시의 令에는 不解官하지만 心喪은 행하고 있다. 하지만

23) 『令集解』 권30 「假寧令」, p.740 : 『開元令』云 : 齊衰三年, 斬衰三年…… 并解官, 申其心喪.

24)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 ……心喪之制, 唯施壓降……. 여기서 말한 “降”은 降服을 의미하는데 降服은 아버지의 尊에 눌려서 어머니의 服을 낮추(降)는 것이다. 喪은 喪을 주관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아들(子)은 어머니(母)에 대한 私尊의 情을 눌려서(壓) 낮추기(降) 때문에 그 喪期는 남편(夫)의 아내(妻)를 위한 服喪인 齊衰杖期 보다 길 수 없다. 그러나 아들(子)이 杖期の 服을 벗은 뒤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삼년 중 杖期를 복상하고 남은 기간은 心喪의 禮를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비록 期年服을 입지만 반드시 삼년이 지나야 다시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들(子)의 心喪하는 뜻을 소통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儀禮注疏』 권30 「喪服」, p.658)

25)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4 : 今云母嫁之服, 又云出妻之子. 出言其子, 以明所生, 嫁即言母, 通包養·嫡, 俱當解任, 並合心喪.

26) ① 嫡母는 親生子가 아닌 庶子가 아버지의 부인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고, ②繼母는 嫡母가 죽거나 쫓겨났을 경우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여 얻은 부인의 명칭이다. ③慈母는 첩 가운데 자식이 없는 자와 첩의 아들 가운데 어머니가 없는 자를 아버지가 모자의 관계를 맺도록 명한 경우 첩의 아들은 母子관계를 맺은 어머니를 慈母라 부른다. 『儀禮』 「喪服」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신의 첩에게 아들이라 부르게 명하고, 아들에게는 어머니라 하게 명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와 같아 아버지의 첩이 죽었을 경우 親生母와 마찬가지로 삼년상을 지낸다고 하였다. 이는 아

李博義 등은 解官·心喪 모두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이처럼 唐初의 心喪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隋朝에 비해 그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고 이론적 근거 또한 갖추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²⁸⁾

넷째, 李博義 등은 ⑦“남편의 처를 위한 服”의 경우 현재의 令文에는 解官·心喪을 모두 행하고 있는데, 원래 杖期服은 모두 어머니와 관련 있는 服으로 解官·心喪해야 하지만 “남편의 처를 위한 服”(夫爲妻)만은 성격이 다른데 당시의 令文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不解官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⁹⁾ 또한 당시의 令文에 근거해 ⑥“아버지의 장자에 대한 服” 역시 不解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李博義는 ④ “庶子 즉 첩의 아들(妾子)의 (親生)어머니에 대한 服”은 親生母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解官을 해야 하지만 현재 令文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며 이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⁰⁾ 이 복은 重服은 아니지만 親生母에 대한 服이므로 반드시 解

버지의 命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의 명을 받지 않은 庶母가 자기를 아껴 주었다면 小功服을 한다. ④養母는 아들이 없어 같은 종족의 자식을 데려다가 양자로 한 것을 말한다. 이 네 종류의 母는 모두 親生母와 같다.(『唐律疏議箋解』 권6 「名例」52 “稱期親祖父”條, pp.498-501에 보인다. 그 중 嫡·繼·慈·養母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p.498) 其嫡·繼·慈母, 若養者, 與親同. [疏]議曰: 嫡謂嫡母, 『左傳』注云: “元妃, 始嫡夫人.” 庶子於之稱嫡. 繼母者, 謂嫡母或亡或出, 父再娶者爲繼母. 慈母者, 依禮, 妾之無子者, 妾子之無母者, 父命爲母子, 是名慈母. 非父命者, 依禮服小功, 不同親母. 若養者, 謂無兒, 養同宗之子者. 慈母以上, 但論母, 若養者, 卽并通父. 故加若字以別之, 并與親同.)

27)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 其不解者, 唯有繼母之嫁. 繼母爲名, 正据前妻之子; 嫡于諸孽, 禮無繼母之文. 甲令今既見行, 嗣業理申心制.……竊以嫡·繼·慈·養, 皆非所生, 并同行路. 嫁雖比出稍輕, 于父終爲義絕. 繼母之嫁, 既殊親母, 慈·嫡義絕, 豈合心喪? 李博義는 생모가 아닌 嫡母·繼母·慈母·養母가 改嫁를 한 경우 아버지의 죽음으로 服을 할 수 있는 의리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28) 隋 開皇년간의 令에는 繼母가 改嫁했을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李博義의 上奏에는 嫡母·繼母·慈母·養母 등 非親生母의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隋 開皇년간의 令에서는 解官 하지 않는다(不解官)는 내용만이 보이지만 龍朔2년 이전의 令에서는 解官하지는 않지만 心喪은 행한다고 하였다가 李博義의 上奏에서는 解官도 心喪도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9)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 杖期解官, 又有妻喪之舛.

30)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 又依禮, 庶子爲其母總麻三月. 既是所生無服, 准例亦合解官. 令文漏而不言, 于事終須修附. 『大唐開元禮』의 總麻三月 降服과 『儀禮』 「喪服」에는 이와 같은 “庶子 즉 첩의 아들(妾子)이 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경우 그 (親生)어머니를 위한 服”(庶子爲父後者爲其母)“이 있다.(『大唐開元禮』 권132 「凶禮 五服制度」, p.626)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를 위한 복(父卒爲母)은 齊衰三年 本服인데, 庶子가 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되었을 때 이를 낳은 친생모를 위한 服은 總麻三月인 것이다. 庶子가 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尊者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감히 私親의 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후사가 된 庶子의 생모를 위한 服은 없는 것이다. 다만 「喪服」의 傳에 궁중에서 죽은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3개월간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總麻로 복을 한다고 하였다.(김용천·장동우 共著, 『중국 고대 상복의 제도와 이념 附錄: 「儀禮」 「喪服」』, 『譯註』, 서울: 동과서, 2007, pp.324-325) 이는 집안에 형제는 臣僕

官해야 하는데, 현재의 수에는 이것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해 넣기를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心喪·解官의 논의를 통해 心喪은 부모에 대한 諸喪期를 三年喪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년을 채우지 못하는 母喪의 喪期를 心喪을 이용해 三年(27개월)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儒家의 孝의 이념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心喪제도가 보다 정비되는 시기가 開元년간인데, 心喪의 내용은 開元7年令³¹⁾과 開元25年令에 보이고 『大唐開元禮』에도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心喪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잘完備한 규정이 아래의 開元25년 『假寧令』이다.

무릇 ①斬衰三年·齊衰三年의 喪을 당한 자는 모두 解官한다. ②齊衰杖周의 喪을 당한 자와 ③남의 후사(양자)가 된 자가 그 (親生)부모를 위해 服喪할 경우·④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庶子が 그 (親生)어머니를 위해 服喪할 경우 또한 解官하고 그 心喪을 행한다. ⑤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改嫁한 경우·쫓겨난 처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경우 비록 服喪하지는 않으나 心喪은 행한다. <모두 자기를 낳아 준 자이기 때문이다> 그 ⑥嫡母·繼母·慈母·養母가 改嫁한 경우 혹은 ⑦(嫡母·繼母·慈母·養母)친정으로 돌아가서 삼년이상 (아버지와 의리가)斷絶된 자의 服, 그리고 ⑧아버지의 장자를 위한 服·⑨남편의 처를 위한 服은 모두 解官하지 않되 喪假는 齊衰周服과 같다.³²⁾

이든 죽은 자가 있을 때에는 3개월간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들을 이용해 庶子は 그 친모를 위해 總麻三月 服喪을 하는 것이다.(章景明, 『先秦喪服制度考』,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1, p.157)

³¹⁾ 『令集解』 권40 『假寧令』, p.946 : 『令集解』 권41 『喪葬令』, p.972의 내용을 『唐令拾遺』(권29 『假寧令』, p.740)에서 교감하여 정리하였다. 諸喪, 斬衰三年, 齊衰三年, 齊衰杖期, 爲人後者爲其父母, 并解官(勳官不解), 申其心喪. 諸軍校尉以下·衛士防人以上, 及親·勳·翊衛備身, 假給一百日. 父卒母嫁及出妻之子爲父後者, 雖不服, 亦申心喪. 其繼母改嫁及父爲長子·夫爲妻, 并不解官, 假同齊衰. 開元7年(719)令의 心喪에 대한 令은 李博義 上奏이전의 龍朔2년 당시 행용되던 令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바뀌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夫爲妻 齊衰杖期服의 조항은 李博義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心喪·解官하던것을 不解官하였다. 여기에 무관 가운데 勳官·諸軍校尉以下, 衛士·防人以上, 親·勳·翊衛備身 등은 斬衰·齊衰喪 모두 解官하지 않고 100일의 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武官이 가진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더해진 듯하다.

³²⁾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校證,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附唐令復原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6, 復原清本, p.601 : 諸喪, ①斬衰三年·齊衰三年者, 并解官; ②齊衰杖周及③爲人後者爲其父母, 若④庶子爲後爲其母, 亦解官, 申其心喪. ⑤父卒母嫁及出妻之子爲父後者, 雖不服, 亦申心喪 <皆爲生己者>. 其⑥嫡·繼·慈·養, 若改嫁或⑦歸宗經三年以上斷絶者, 及⑧父爲長子·⑨夫爲妻, 并不解官, 假同齊衰周. 한편 開元20년 편찬된 『大唐開元禮』에도 心喪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⑤의 내용이 빠진 것 외에는 모두 개원25년 令과 같다.(『大唐開元禮』 권3 『序禮下』 “雜制”條, p.13 : 凡①斬衰三年·齊衰三年者, 并解官. ②齊衰杖周及③爲人後者爲其父母, 若④庶子爲其母者, 解官, 申其心喪, 皆爲生己. 若⑥嫡·繼·慈·養改嫁或⑦歸宗三年以上斷絶者, 及⑧父爲長子·⑨夫爲妻, 并不解官, 假同齊衰周也.)

開元25년令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첫째 ①斬衰三年·齊衰三年의 齊衰三年服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服”(父在爲母)은 古禮에는 齊衰杖期로 되어 있어 李博義가 上奏할 당시에는 解官·心喪 모두 행하였으나, 開元25년令에서는 齊衰三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解官만 행하고 있다.³³⁾

둘째, 開元25년令의 解官·心喪에 해당하는 服은 ②齊衰杖周服³⁴⁾과 ③“남의 후사(양자)가 된 자의 그(親生)父母를 위한 服”·④“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庶子の 그(親生) 어머니를 위한 服”이다. 이 가운데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에 따르면 ②齊衰杖周服에서는 ⑨“남편의 처를 위한 服”를 뺀 ②-1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처가 改嫁한 경우 개가한 어머니를 위한 服, 쫓겨난 처의 아들이 쫓겨난 어머니에게 행하는 服”·②-2 “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한 服”·②-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繼母를 따라간 아들의 繼母를 위한 服”이 解官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 ②-1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처가 改嫁한 경우 개가한 어머니를 위한 服, 쫓겨난 처의 아들이 쫓겨난 어머니에게 행하는 服”은 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改嫁한 경우·쫓겨난 처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경우”의 服과 큰 차이가 있다. ②-1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처가 改嫁한 경우 개가한 어머니를 위한 服, 쫓겨난 처의 아들이 쫓겨난 어머니에게 행하는 服”의 경우 齊衰杖周服으로 解官·心喪을 모두 행하고,³⁵⁾ 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改嫁한 경우·쫓겨난 처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경우”는 無服이기 때문에 解官하지는 않지만 心喪은 행하였다.³⁶⁾

②-2 “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한 服”은 斬衰三年服의 “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위한 服”(爲祖後者祖卒爲祖母)과 함께 『儀禮』 『喪服』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각각 『大唐開元禮』 『五服制度』 斬衰三年·齊衰三年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 ②

³³⁾ 唐 上元元年(674) 武則天은 表를 올려 “父在爲母”도 齊衰三年으로 하기를 청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垂拱년간의 格에 포함되었다.(『唐會要』 권37 『服紀上』, pp.675-676) 나아가 開元初 치열한 논쟁을 거쳐 開元20년(732) 『大唐開元禮』를 편찬할 시기 上元년간의 勅에 따라 “父在爲母”을 齊衰三年으로 확정하였다.(『舊唐書』 권27 『禮儀七』, p.1031)

³⁴⁾ 齊衰杖期가 齊衰杖周로 바뀐 것은 玄宗을 避諱한 것이다.

³⁵⁾ 『儀禮』 『喪服』에는 “出妻의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期年服을 한다.”(出妻之子爲母期)고 하여 嫁母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大唐開元禮』 『五服制度』 “齊衰杖周”條에는 嫁母까지 포괄하고 있다.(『大唐開元禮』 권132 『凶禮 五服制度』, “齊衰杖周”條, p.622 : 父卒母嫁及爲出妻之子爲母)

³⁶⁾ 『儀禮』 『喪服小記』의 注文에는 “出妻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자는 出母에 대해서 服이 없다.”(出妻之子爲父後者, 則爲出母無服母期)고 하여 嫁母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에서는 出妻는 물론 嫁母(改嫁한 母)도 아버지의 후계자(爲父後者)인가 아닌가에 따라 齊衰杖周服 또는 無服으로 나뉘게 된다.(『大唐開元禮』 권132 『凶禮 五服制度』, “齊衰杖周”條, p.622 : 父卒母嫁及爲出妻之子爲母皆報. 註 : 父卒爲父後者爲嫁母·出母, 無服)

-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繼母를 따라간 아들의 繼母를 위한 服”의 경우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의 내용에 의하면 데려간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면 繼母에 대해 齊衰杖周服을 하고, 아들을 잘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服을 하지 않는다.³⁷⁾ ③“남의 후사(양자)가 된 자의 그 (親生)父母를 위한 服”의 경우 開皇년간의 令³⁸⁾과 開元7年令³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④“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庶子の 그 (親生)어머니를 위한 服”은 “庶子 즉 첩의 아들(妾子)의 (親生)어머니를 위한”(庶子爲母) 總麻三月服을 解官·心喪하자는 李博義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셋째, ⑥“嫡母·繼母·慈母·養母가 改嫁한 경우” 開元25년令에서는 不解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唐律疏議』 「鬪訟律」에는 이 경우 令에 따라 不解官하고 禮에 근거하여 心喪도 없다는 내용을 明示하고 있다.⁴⁰⁾ ⑦“(생모가 아닌 적모·계모·자모·양모가)친정으로 돌아가서 삼년이상 (아버지와)의 義理를 斷絶한 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非所生母의 服은 親生母의 服인 齊衰三年과 같은데,⁴¹⁾ 이 때 만약 모종의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가(歸宗) 三年이상 母子 관계를 끊었다면 아버지와 義理를 斷絶한 것으로 보아 守喪의 대상이 되지 않아 解官·心喪 모두 행하지 않는다.⁴²⁾ 이 밖에 ⑧“아버지의 장자를 위한 服”·⑨“남편의 처를 위한 服”은 解官하지 않는다는 李博義 上奏 이전의 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開元25년 心喪에 관한 令은 隋朝·唐初이래로 논란이 되어 오던 내용 특히 龍朔2년 李博義 등의 건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隋開皇年間과 龍朔2년의 心喪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心喪은 이제 부모의 三年服喪 특히 어머

37) 『大唐開元禮』 권132 「凶禮 五服制度」, “齊衰杖周”條, p.622 : 註 : 若繼母出嫁, 子從而寄育則服, 不育則不服.

38) 『隋書』 권71 「劉子翽傳」, pp.1651-1652 : 又“爲人後者, 爲其父母菽” ……是以令云“爲人後者, 爲其父母並解官, 申其心喪……”.

39) 『唐令拾遺』 권29 「假寧令」, p.740 : 爲人後者爲其父母, 并解官.

40) 『唐律疏議箋解』 권23 「鬪訟」 345. “告祖父母父母”條, p.1625 : 然嫡·繼·慈·養, 依例雖同親母, 被出·改嫁, 禮制便與親母不同. 其改嫁者, 唯止服期, 依令不合解官, 據禮又無心喪. ……被出者, 禮既無服, 竝同凡人. 其應理訴, 亦依此法. 隋 開皇년간의 令에는 繼母가 改嫁했을 경우에 한하여 解官을 행하지 않았다. 李博義 上奏 당시의 令에는 그 가운데 繼母의 경우에 한정해 解官하지는 않지만(不解官) 心喪은 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李博義 등은 親生母가 아닌 嫡·繼·慈·養母 등 非所生母가 改嫁를 한 경우 解官도 心喪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1) 『唐律疏議箋解』 권6 「名例」 52 “稱期親祖父”條, p.498 : 其嫡·繼·慈母, 若養者, 與親同. 『儀禮』 「喪服」에서는 繼母·慈母만을 親生母와 같이 여겨 齊衰三年服을 행한다고 하였지만 唐律에서는 모든 非所生母로 확대하고 있다.

42) 非所生母는 아버지의 배필이라는 의미 때문에 복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斷絶된것이므로 母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김용천·장동우 共著, 『중국고대 상복의 제도와 이념 附錄: 『儀禮』 「喪服」 譯註』, 2007, p.171 참고)

니의 三年喪 기간을 채우는 제도로 확정되어 行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한 解官은 일반적인 경우 父母喪기간 官職에서 물러나 服喪을 행하며 부모에 대한 애도를 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는 儒家의 禮治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은 唐朝의 정통성과 권위를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⁴³⁾

III. 唐前期 官人服喪과 解官제도

1. 『大唐開元禮』와 開元25년令・『唐律疏議』의 官人服喪규정과 解官

唐朝에서 官人服喪에 대한 내용은 『大唐開元禮』를 비롯한 唐律, 唐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곧 『大唐開元禮』 권132 「五服制度」를 필두로 「序禮」, 「雜制」, 開元25년令 가운데 「喪葬令」, 「假寧令」과 『唐律疏議』의 일부 항목에서도 官人의 父母喪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唐前期에는 官人이 父母喪을 당하면 解官을 해 부모를 잃은 슬픔을 다해야 했다. 唐代 解官제도는 隋・唐初의 논쟁을 거쳐 開元25년令에 완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와 開元25년令의 官人服喪규정과 解官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43) <唐前期 父母守喪관련 心喪・解官의 변화>

		龍朔2년 이전 令	李博義 등 의 주장	開元7年令	大唐開元禮	開元25年令
	①斬衰・齊衰三年	解官・心喪	解官	解官・心喪	解官	解官
②齊衰 杖周	②-1父卒母嫁, 出妻之子爲母	解官・ 心喪	解官・ 心喪	解官・ 心喪	心喪・ 解官	心喪・ 解官
	②-2爲祖後者祖在爲祖母				心喪・解官	心喪・解官
	②-3父卒繼母從爲之服				心喪・解官	心喪・解官
齊衰不杖期	③爲人後者爲其父母			解官・心喪	解官・心喪	解官・心喪
緦麻三月	④庶子爲(父)後(者)爲其母		解官		解官・心喪	解官・心喪
無服	⑤父卒母嫁及出妻之子爲父後者, 雖不服, 亦申心喪 (皆爲生己 者)					心喪
	⑥嫡・繼・慈・養改嫁	不解官・ 心喪	不解官・ 不心喪	不解官・ 心喪	不解官・ 不心喪	不解官・ 不心喪
	⑦嫡・繼・慈・養歸宗經三年以上斷 絶者					不解官・ 不心喪
예외 규정	斬衰三 年	⑧父爲長子	不解官	不解官	不解官	不解官
	齊衰杖 期	⑨夫爲妻	解官・心喪	不解官	不解官	不解官

<표 2>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와 開元25년 令의 官人服喪規定과 解官

	大唐開元禮		儀禮·喪服	解官	解官期間	비고
斬衰三年	①子爲父		①子爲父	解官	27개월	
	②嫡孫爲祖					
	③子爲人後者爲所後父		③爲人後者			
齊衰三年	④子爲母	④-1 父卒則爲母	④-1 父卒則爲母	解官	27개월	
		④-2 父存則爲母				
	⑤爲祖後者祖卒爲祖母					
	⑥繼母如母		⑥繼母如母			
	⑦慈母如母		⑦慈母如母			
齊衰杖周			④-2 父在爲母	解官	15개월	天寶六載부터 出母·嫁母 모두 齊衰三年 (『舊唐書』 권27 「禮儀七」, p. 1036)
	⑧父卒母嫁, 出妻之子爲母		⑧出妻之子爲母			
	⑨爲祖後者祖在爲祖母					
	⑩父卒繼母嫁, 從, 爲之服		⑩父卒繼母嫁, 從, 爲之服			
齊衰不杖期	⑪爲人後者爲其父母		⑪爲人後者爲其父母報	解官	15개월	
總麻三月	⑫庶子爲父後者爲其母		⑫庶子爲父後者爲其母	解官	3개월	

위의 표2]에서 보듯이 解官의 기간은 斬衰·齊衰三年, 齊衰杖周·齊衰不杖期, 總麻三月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三年喪의 기간은 27개월으로⁴⁴⁾ 解官 기간 또한 27개월이다. 다음으로 齊衰杖周·齊衰不杖期 期年喪의 守喪기간은 15개월로 解官기간도 15개월이다.⁴⁵⁾ 마지막으로 總麻三月服은 服喪기간이 3개월로 解官기간도 3개월이 된다.⁴⁶⁾

한편 解官에 해당하는 喪服 가운데 ②“嫡孫의 할아버지를 위한 服”⁴⁷⁾·⑤“할아버지의

44) 斬衰·齊衰 三年喪의 과정은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에 따르면 三月에 葬禮를 치르고 세 번의 虞祭와 卒哭을 마친 뒤 13개월에는 小祥을 지내고, 25개월에는 大祥을 지내며, 27개월에는 禫祭를 지내고 28개월째에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므로 禫祭를 마치는 27개월째에 喪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大唐開元禮』 권132 「五服制度」“綜論節制”條, p.621 : 王公以下皆三月而葬, 葬而虞, 三虞而卒哭. 十三月小祥,……二十五月大祥,……. ……二十七月禫祭……. 踰月, 復平常) 또한 「職制律」, “府號官稱犯父祖名”條에 근거하면 27개월 喪期내에는 官職에 있거나 이를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인다.(『唐律疏議箋解』 권10 「職制」121 “府號官稱犯父祖名”조, pp.806-807 : 疏議] ……但父母之喪, 法合二十七月, 二十五月內是正喪, 若釋服求仕, 卽當“不孝”. 合徒三年, 其二十五月外, 二十七月內, 是“禫制未除”, 此中求仕, 名爲“冒哀” ……)

45) 『大唐開元禮』 『五服制度』에 따르면 11개월 小祥, 13개월 大祥, 15개월 禫祭를 지내고 다음 달에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大唐開元禮』 권132 「五服制度」, p.623 : 周者, 十一月小祥, 十三月大祥, 十五月禫祭. 踰月, 復平常.)

46) 『大唐開元禮』 권132 「五服制度」, p.627 : 改葬總 註 : ……既服除之. 總麻服은 葬禮를 마치고 喪服을 벗는다.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위한 服”·⑨“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를 위한 服” 세 항목은 『儀禮』 「喪服」에 없었던 내용으로 開元20년 『大唐開元禮』가 편찬되면서 解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먼저 ②“嫡孫의 할아버지를 위한 服”에서는 嫡孫에 한해서 할아버지 喪을 斬衰三年으로 상향조정하여 解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齊衰三年의 ⑤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위한 服”와 齊衰杖周의 ⑨“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를 위한 服”은 『儀禮』 「喪服」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解官에 해당하는 喪服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齊衰三年의 ④-2“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服”은 『儀禮』 「喪服」에서는 齊衰杖期服이고 垂拱년간 이전까지는 15개월 解官이었다. 그러나 開元20년(732) 『大唐開元禮』편찬 이후 ④-2“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服”에 대한 解官기간은 27개월로 늘어난다.⁴⁸⁾

마지막으로 天寶6載(747)에 이르면 ⑧“아버지가 돌아가시고 改嫁한 (親生)어머니를 위한 복, 쫓겨난 처의 아들의 쫓겨난 (親生)어머니를 위한 服”까지 齊衰三年服으로 바뀐다.⁴⁹⁾ 出母·嫁母服은 『大唐開元禮』에는 齊衰杖周服으로 解官기간은 15개월이던 것이 天寶6載이후에는 27개월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中央朝廷은 원래는 없던 ②·⑤·⑨ 등 喪服의 항목을 추가하여 官人 解官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④-2·⑧ 등 원래 15개월이었던 喪服의 解官기간을 27개월로 늘리고 있었던 것이다.

官人 服喪과 관련된 解官은 唐律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三年喪의 기간을 正喪(大祥이전 25개월)이전과, 正喪(25개월)이후부터 禫祭(27개월)이전으로 나누어 正喪기간에 “冒哀求仕”한 경우는 도형3년, 正喪에서 禫祭사이의 기간에 “冒哀求仕”한 경우는 도형1년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한편 “詐僞律”에서도 官人 服喪시의 解官과 관련

47) 嫡孫爲祖는 원래 『儀禮』 「喪服」 齊衰不杖期の 항목으로 원래 解官의 대상이 되는 服이 아니었다.(『儀禮注疏』 권31 「喪服」, p.661)

48) 上元元年(674) 武則天은 表를 올려 “父在爲母”도 齊衰三年으로 하기를 청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垂拱년간의 格(685-689)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開元년간에도 두 차례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開元20년(732) 『大唐開元禮』를 편찬할 시기에 “父在爲母”을 齊衰三年으로 확정하였다. “父在爲母” 齊衰三年의 垂拱년간의 格이 언제부터 행용되었을 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垂拱년간 이전까지 “父在爲母”는 齊衰杖期服이었고 解官기간은 15개월이었다.

49) 『舊唐書』 권27 「禮儀七」, p1036 : 天寶六載正月, 出嫁母宜終服三年.

50) 『唐律疏議箋解』 권10 「職制」 121 “府號官稱犯父祖名”條, pp.806-807 : 諸府號官稱犯父母名, 而冒榮居之, 祖父母父母老疾無侍, 委親之官, 即妄增年狀, 以求入侍及冒哀求仕者, 徒一年. <謂父母喪, 禫制未除及在心喪內者> 疏議: “及冒哀求仕者”, 謂父母之喪, 二十五月大祥後, 未滿二十七月, 而預選求仕, 從“府號官稱”以下, 各合處徒一年. 注云“謂父母喪, 禫制未除”, 但父母之喪, 法合二十七月, 二十

된 규정을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¹⁾ 이와 함께 官人의 부모 居喪기간의 행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⁵²⁾

이 시기 국가권력은 喪服의 대상과 기간을 늘렸고 이에 따라 解官의 대상도 확대되고 기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唐律로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官人 측에서는 喪服을 입는 것도 길어지는 解官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특히 국가에서 지급하는 祿俸으로 생활해야하는 6品이하의 하급관인의 경우 27개월간의 解官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권력이나 士人 모두 儒敎國家의 이념인 孝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 喪服이나 이로 인한 解官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2. 官人 父母喪에 대한 解官의 시행과 그 성격

唐初의 皇帝들은 父母喪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父母喪이 儒家정치에 이상을 실현시켜 통치자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皇帝는 모든 백성의 “父”가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孝를 강조하면 이것이 皇帝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통치자의 權威와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

五月內是正喪，若釋服求仕，即當“不孝”。合徒三年，其二十五月外，二十七月內，是“禫制未除”，此中求仕，名爲“冒哀”，合徒一年，若釋去禫服而求仕，自從“釋服從吉”之法。“及在心喪內者”，謂妾子及出妻之子，合降其服，皆二十五月內爲心喪..

⁵¹⁾ 『唐律疏議箋解』 권25 『詐僞』383 “父母死詐言餘喪”條, pp.806-807 : 諸父母死應解官，詐言餘喪不解者，徒二年半。若詐稱祖父母・父母及夫死以求假及有所避者，徒三年，伯叔父母・姑・兄妹，徒一年，餘親，減一等。若先死，詐稱始死及患者，各減三等。 부모 사망시에 다른 친속이 사망했다고(餘喪) 속이고 解官하지 않는 경우 도형2년 반에 처하였다. 다음으로 부모가 사망했다고 속이고 휴가를 구하거나 사역을 빠져나간 경우는 도형2년에 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이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사망하였다고 하거나 병이 있다고 속인 경우는 각각 그 관직을 3등 감하였다

⁵²⁾ 『唐律疏議箋解』 권6 『名例』6 “十惡”條, pp.62-63 : 注: 居父母喪，身自嫁娶，若作樂，釋服從吉。疏議: ……其男夫居喪娶妾，合免所居之一官。『唐律疏議』 “名例律・十惡”의 7번째인 불효죄 조문의注에서는 居喪 기간 혼인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관인이 부모의 居喪기간에 혼인을 하였으면 현재 맡고 있는 관직에서 一官을 免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조문은 各則에 해당하는 “職制律”에 해당 내용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喪을 듣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통곡하여 애통함을 드러내지(擧哀) 않는 자는 流刑2천리에 처한다. 다음으로 服喪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경우에는 도형3년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服喪기간에 슬픔을 잊고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¹⁾에는 도형3년에 처하고, 유희(雜戲)는 도형 1년에 처한다. 또한 우연히 음악을 듣거나 吉事에 참여한 경우에는 杖刑100대에 처한다.(『唐律疏議箋解』 권10 『職制』120 “匿父母夫喪”條, pp.799 : 諸聞父母若夫之喪，匿不擧哀者，流二千里，喪制未終，釋服從吉，若忘哀作樂，<自作遣人等> 徒三年，雜戲，徒一年，即遇樂而聽及參預吉席者，各杖一百。疏議:……樂謂金石絲竹笙歌鼓舞之類。雜戲，謂樗蒲雙陸彈碁象博之屬.)

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목적은 貞觀초부터 시작하여 玄宗시기까지 더욱 심해져 갔던 銓選⁵³⁾으로 뽑는 인원에 비해 관직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⁵⁴⁾

官人 喪服의 강화와 이로 인한 解官의 확대는 儒敎的 禮治를 관철하면서도 銓選의 지원자는 많고 관직은 적은데서 생겨나는 인원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武則天 長安3년(703)과 代宗 廣德2년(764) 반포된 두 차례의 起復禁止令은 당시 官人들의 父母三年喪으로 인한 解官기간 중 起復요구가 빈번했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⁵⁵⁾ 武則天과 代宗시기에 행해진 皇帝의 起復 조치는 부모의 三年喪을 행하기 위해 관직에서 일정 기간을 떠나 있어야 했던 官人에게는 士人들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服喪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皇帝는 쉽게 起復을 허락하지 않았다.

『新唐書』·『舊唐書』에는 官人 205명의 居喪終制·起復에 대한 기사가 보이고, 이 가운데 唐 玄宗까지는 모두 78건의 사례가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3) 吏部 銓選에 대해서는 『通典』 권15 「選舉三」, “歷代制下”條, pp. 359-360쪽; 同上, 권23 「職官五」, “吏部尚書”條, p.632 ; 『唐會要』 권58, 「尚書省諸司中」, “吏部尚書”條, p.1178 ; 同上, “吏部侍郎”條, p.1179 ; 『新唐書』 권45, 「選舉志下」, pp.1177-1178쪽 등에 관련 기사가 있다. 이들 기사에 의하면, 吏部 銓選은 吏部尚書와 侍郎(2인)이 관장하였는데, 상서가 관장하는 것을 尚書銓이라 칭하고, 시랑 2인이 관장하는 것을 각각 中銓·東銓이라 칭하였으며, 乾元 2년(759)에 中銓을 西銓이라 개칭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三銓이다. 侍郎의 정원은 본래 1인이었는데 總章 2년(669) 2인으로 늘어나면서 본래의 시랑이 中銓을 관장하고 증원된 시랑이 東銓을 관장하였다. 貞觀 이전에는 상서가 5·6·7품의 銓選을 관장했으나, 景龍 연간(707-709)에 이르러 상서가 6·7품, 시랑이 8·9품의 銓選을 관장하였으며, 景雲 원년(710)에 宋璟이 이부상서가 되면서 상서와 시랑이 6품 이하의 銓選을 품계 구분 없이 분담하게 되었다.

54) 貞觀6년 文武官 定員은 643명에 불과했고, 外官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定員이 대략 만 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매년 銓選에 참가 하는 인원은 수천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직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武則天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垂拱元年(685) 魏玄同(617-689)은 上書에서 銓選에 지원자가 구름같이 모여들지만 열에 하나만이 선발된다고 하였다. 또한 御使 張鷟은 乾封(666-668)이전에는 銓選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천명을 넘지 않았는데 垂拱년간 매년 지원자가 오만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開元末-天寶初까지 내외관의 定員은 18,805명이었는데 관직을 구하는 인원은 십이만여에 이르러 경쟁률이 9:1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開元18년(730)에는 宰相 裴光庭이 循資格을 제정하였다. 循資格은 待選을 제도화 규범화 한 것이다. 6품 이하 官은 기간을 나누고 조를 나누어 번갈아 가며 銓選에 참여할 수 있고, 번갈아 가며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만 명의 銓選 지원자가 수도에 운집하는 것을 대폭 줄이고 범법자를 제외한 모든 銓選 지원자에게 관료가 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王勛成, 『唐代銓選與文學』, p.114-116 ; 김정희, 『唐代관료의 인사제도와 그 운용』, “古中世 동아시아에서의 法과 權력의 空間”, 中國古中世史學會 제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pp.97-99)

55) 起復은 부모 三年喪 중에 있는 官人이 중요한 國事로 喪服을 벗으라는 皇帝의 命令을 받아 다시 入仕하여 公務를 처리하는 것으로 奪情起復 혹은 起復이라 한다.

<표 3> 唐前期 官人 終喪과 起復⁵⁶⁾

	高祖	太宗	高宗-睿宗	玄宗	합계
終喪	1	7	15	22	45
起復	2	9	13	9	33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官人 服喪의 강화로 解官이 확대된 玄宗시기 終喪한 官人은 22명으로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起復者는 9명이었는데, 이들은 將軍・功臣・人才 등 세 종류로 나뉜다.⁵⁷⁾ 요컨대 皇帝는 官人에게 起復명령을 내려 居喪 중일 지라도 필요하다면 喪服을 벗기고 다시 관직에 복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官人들은 喪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먼저, 唐高宗 龍朔2년(662) 司文正卿 蕭嗣業의 改嫁한 嫡母에 대한 心喪문제로 인한 官人들의 논쟁에서 喪服・解官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 논의에서 蕭嗣業은 心喪・解官 모두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⁵⁸⁾ 그러나 龍朔2년 당시의 俗에는 不解官하지만 心喪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⁵⁹⁾ 孝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때 父子 관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해 心喪 정도는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26명의 官人들은 心喪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⁶⁰⁾ 그러나 대부분의 官人은 心喪에 반대하였다. 心喪은 기간이 25개월이나 되었고 말을 되도록 하지 않는 등 언행도 조심해야 했다.⁶¹⁾ 또한 평상시의 복장도 번거롭다.⁶²⁾ 당시의 관인들은 喪服으로 생기는 이러한 불편함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 하였다. 나아가 부모상을 당해 解官되었다가 起復한 경우에는 朝會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⁶³⁾

⁵⁶⁾ 羅小紅, 『唐代官人服紀制度傳』, 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2, p.23의 표를 참고로 하였다.

⁵⁷⁾ 먼저 王忠嗣(706-750)와 같은 名將들로 이들은 변경방어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三年終制가 불가능 하였다. 다음으로 玄宗의 執政을 도운 陸象先(665-736)・王琚(生卒年未詳) 등의 功臣이었다. 마지막으로 李朝隱(665-734)・王鉷(?-752) 등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었다.

⁵⁸⁾ 文武九品以上の 많은 官人이 참가하였고 改嫁한 嫡母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⁵⁹⁾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⁶⁰⁾ 『唐會要』 권37 『服紀上』, p.675 : 得司衛正卿房仁裕等七百三十六人議, 請一依司禮狀, 嗣業不解官. 得右金吾衛將軍薛孤・吳仁等二十六人議, 請解嗣業官.

⁶¹⁾ 『晉書』 권21 『禮志中』, p.620-621. 두예는 “殷之高宗諒闇三年不言心喪”을 心喪의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며 諒闇을 하면서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諒”을 진실하다(信)・闇은 침묵한다(默)는 뜻이다.

⁶²⁾ 『禮記正義』 권7 『檀弓上』, p.243 : 請喪夫子若喪父而无服. 鄭玄注: 無服, 不爲衰, 吊服而加麻, 心喪三年. 正義云: “吊服而加麻”, 麻謂經與帶也, 皆以麻爲之, 故云“加麻”也. 喪服을 입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25개월 동안 弔服을 입고 經(암마로 만든 머리카락 허리에 하는 끈)과 帶(마로 만든 허리띠)를 하고 있어야 했다.

⁶³⁾ 『唐六典』 권4 『尙書禮部』, “禮部郎中”條, p.119 : 凡凶服不入公門. 遭喪被起在朝者, 各依本品著淺色繩緇, 周已下慘者, 朝參起居亦依品色, 無金玉之飾. 起復者, 朝會不豫. 周喪未練, 大功未葬, 則亦準比例.

起復者를 포함한 “아버지가 죽고 改嫁한 어머니를 위한 服”(父卒母嫁)·“할아버지의 후사(후계자)가 된 자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를 위한 服”(爲祖後者祖在爲祖母)·“쫓겨난 처의 아들의 쫓겨난 어머니를 위한 服”(出妻之子)의 心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을 들을 수도 연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⁶⁴⁾

다음으로 父母喪을 당해 解官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경제적·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당시 父母喪으로 解官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祿俸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解官은 현직에서 떠나는 것으로 官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⁶⁵⁾ 父母喪으로 인한 解官의 경우 최대 27개월로 이기간 동안 관직에서 떠나 있으면서 祿俸을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解官으로 三年 동안 관직의 공백기를 겪게 된다면 황제와 특별한 인척 관계이거나 총애를 받는 자가 아니라면 喪을 마친 후 관직으로의 복귀나 승진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⁶⁶⁾

兩唐書列傳의 父母喪으로 解官을 당한 대부분의 官人들은 황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로 喪服을 마친 후 대부분 새로운 관직을 얻었다.⁶⁷⁾ 사실 이들의 경우 解官으로 생긴 관직의 공백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듯하다. 그러나 6품 이하의 무명 官人 대부분은 解官을 행한 뒤 오랜 기간 동안 다시 관직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 죽을 때까지 관직을 다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⁶⁸⁾

64) 『唐律疏議箋解』 권10 「職制」120 “匿父母夫喪”條, p.799 : 其父卒母嫁, 及爲祖後者祖在爲祖母, 若出妻之子, 並居心喪之內, 未合從吉, 若忘哀作樂, 自作遣人等, 亦徒三年. 雜戲, 徒一年. 樂謂金石絲竹笙歌鼓舞之類. 雜戲, 謂樗蒲雙陸彈碁象博之屬. 「即遇樂而聽」, 謂因逢奏樂而遂聽者, 「參預吉席」, 謂遇逢禮宴之席參預其中者, 各杖一百; 『新唐書』 권46 「百官一」, p.1194 : 凡齊衰心喪以上奪情從職, 及周喪未練·大功未葬, 皆不預宴. 大功以上喪, 受冊涖官, 鼓吹從而不作, 戎事則否.

65) 『唐六典』 권2 「尚書吏部」, “考功郎中”條, p.44 : 諸食祿之官, 考在中上已上, 每進一等, 加祿一季; 中下已下, 每退一等, 奪祿一季. 若私罪下中已下, 公罪下下, 並解見任, 奪當年祿, 追告身; 周年, 聽依本品叙. 일반적인 경우 下中이나 下下の 考課를 받았을 경우 解官하는데, 이 경우 현임관직에서 떠나 그 해의 祿을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나야 本品에 따라 서용될 수 있었다.

66) 예를 들어 魏知古(647-715)의 경우 神龍초 吏部侍郎이었다가 母親喪으로 解官을 하였다가 終喪한 뒤 晉州刺史가 되었다. 吏部侍郎은 京官으로 正四品上이고 晉州刺史는 外官이었다.(『新唐書』 권126 「魏知古傳」, pp.4413) 開元年間の 齊澣(675-746)은 부모상을 당하기 전에는 從四品上의 祕書少監이었으나 終喪한 뒤에는 外官인 汴州刺史에 임명되었다.(『舊唐書』 권190 「齊澣傳」, pp.5036-5037) 당시의 官人들은 京師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刺史·縣令 등 외관의 직을 맡지 않으려는 것을 개탄한 張九齡(678-740)의 기사와 같이 당시 官吏의 평가 면에서 外官보다 京官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唐의 수도였던 長安은 高官이 집중하고 권력이 집중되면서 승진의 기회도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官人들은 中央의 官職을 원하였다. 그러나 齊澣·魏知古의 경우 母親喪기간 解官을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잃은 것이다.

67) 羅小紅, 「唐代官人服紀制度傳」, 附錄: “唐代官人守喪情況表”(pp.39-55)에 의하면 “列傳”에 보이는 대부분의 관인들은 父母喪으로 解官을 행한 뒤에 새로운 관직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8) 예를 들어 묘지명에 따르면 皇甫玄志는 永徽3년(652) 恒州九門縣主簿에 임명되었다가 親喪을 당해 解官을 하였다. 그는 終喪 후 顯慶3년(657)에야 魏州館陶縣主簿의 官職에 임명되었다. 곧 그

結論

魏晉南北朝시기 국가는 儒家 禮治를 이상으로 삼고 父母喪을 점차 강화해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皇室의 父母三年喪을 위해 心喪이 나오고 三年喪의 기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南朝와 北朝에서 보였던 禮制 해석의 차이로 父母三年喪의 기간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고 唐前期 父母三年喪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心喪도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父母喪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唐前期 父母喪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三年喪期가 확정되어야 했다. 三年喪期는 魏晉 이래로 王肅說과 鄭玄說로 나뉘어 논쟁을 거듭하였던 내용이다. 『大唐開元禮』의 편찬을 앞두고 백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둘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鄭玄의 27개월로 三年喪의 기간을 확정하였다.

한편 隋·唐시기 이전의 心喪은 여러 종류의 喪을 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隋·唐초부터 心喪은 官人부모의 喪服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隋開皇年間과 龍朔2년의 心喪논쟁, 開元25년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心喪은 이제 부모의 三年喪 특히 어머니의 三年服喪 기간을 채우는 제도로 확정되어 行用되고 있었다. 나아가 心喪으로 인해 모든 부모상에 해당하는 服喪 기간은 사실상 3년(27개월)이 되었다.

心喪과 연계한 解官은 일반적인 경우 부모의 喪服기간 官職에서 물러나 服喪을 행하며 부모에 대한 애도를 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官人은 부모의 죽음과 함께 官職에서 물러나 喪服과 心喪으로 삼년(27개월)의 기간을 채워야 했다. 한편 국가권력은 官人의 父母喪과 관련된 내용을 禮와 法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中央朝廷은 官人의 父母服喪를 확대하여 解官하는 官人을 늘리려 했다. 父母服喪의 확대로 解官대상은 늘어나게 되고 그 기간은 연장되었으며, 이는 당시 관인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이에 국가권력은 제도적으로 父母喪을 보장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皇帝는 父母服喪과 解官·心喪·起復 등을 官人들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다.

반면, 官人들의 입장에서는 父母喪으로 인한 父母服喪과 解官·心喪·起復 등은 반드시

는 解官기간인 27개월 이후에도 거의 3-4년 동안이나 관직을 얻지 못한 것이다.(『唐代墓誌彙編』天授008 「大周唐故儒林郎行魏州館陶縣主簿皇甫君墓誌銘并序」, p.799) 蓋諱暢은 乾封2년(667) 雍州富平丞에 임명되었으나 親喪을 당해 解官을 하였다. 그는 終喪 후 咸亨3년(673) 6-7년뒤 兗州曲阜令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解官 뒤에도 약 4-5년 동안 官職을 얻지 못한 것이다.(『唐代墓誌彙編』神功013 「大周故處士前兗州曲阜縣令蓋府君墓誌銘并序」, pp.921-922) 開元年間 蕭浮丘는 父親喪을 당하기 전의 관직의 唐州別駕였으나 解官 뒤에는 다른 관직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唐代墓誌彙編』開元364 「唐故唐州別駕蕭君墓誌銘并序」, p.1408)

시 이행해야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27개월의 解官은 경쟁이 치열한 관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었다. 특히 祿俸으로 생활해야 하는 6品 이하의 무명 官人들은 解官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고, 정치적으로도 解官이후 다시 관직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 起復·心喪 역시 解官보다는 덜했지만 官人의 정치적·사회적 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이처럼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시행은 儒家의 禮治의 확대라는 점과 士人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황제권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당 전기 사절 왕래의 규정과 운용

이 완 석(고려대)

目次

1. 서론
2. 외국 사절의 入國과 唐의 사행 관리
3. 京師에서의 외국 사절에 대한 회유와 통제
4. 결론

1. 서론

618년에 건국된 唐은 隋末의 群雄을 제압하고 624년 중국을 통일하였다. 비록 통일국가를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건국 초기의 국제적 지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는 북방 유목민족인 突厥이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은 세력을 키워 630년 돌궐을 멸망시키고 645년에는 薛延陀를 패망시킴으로서 세계제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하였고 계속해서 아시아 대륙의 동서로 제국의 판도와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755년 安史의 亂이 발발할 때까지 당의 국제적 위상은 다른 여러 민족과 국가를 압도하였다. 비록 吐蕃, 西突厥, 契丹 등이 때에 따라 당에 대적한 적이 있었으나 그 戰火가 中原 內地까지 미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적대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당이 국제 사회의 패권을 장기간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민족이 분열하여 전반적인 세력이 당을 압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당이 以夷制夷의 방식으로 이런 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점이다. 즉 당은 대외전쟁에서 이민족의 군대를 거의 항상 동원하여 다른 이민족을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찍이 陳寅恪은 당군의 주력이 蕃將과 그 휘하 부대임을 주장하였는데,¹⁾ 사서에 기록된 번장의 활약상을 보면 이는 수긍 가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다만 번장이 당

1) 陳寅恪,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下編,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56년.

_____, 「論唐代之蕃將與府兵」, 『金明館叢稿初編』, 三聯書店, 2001년.

에게 군사력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데 이에 대해 당이 이들 이민족 군대에게 중원의 풍부한 물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써서 용병으로 활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당이 보유한 고가품인 비단을 이용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130년간의 평화는 ‘비단의 평화’라 명명되었다.²⁾

당 전기가 비단을 통해 얻어진 평화 시기라 한다면 이 비단의 지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史書를 보면 당은 대외 전쟁을 전후로 대량의 비단을 이민족에게 지급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우호세력·용병으로 전쟁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민족에게 주는 일종의 상금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급은 의외로 단락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진 듯 보인다. 즉 그때그때의 국제 정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만큼 한번에 아무리 많은 액수를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대해 이민족이 장기간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개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는 유목민에게서 그 군주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 구성원에 대한 재화의 지속적인 분배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민족 군주는 아마도 당에게서 안정적인 물자 지급을 원하였을 것이다. 대외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은 이민족 수장들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점에서 朝貢으로 대표되는 외교 사절의 내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一歲一貢을 통해 당은 이민족의 호의와 신뢰를 유도할 수 있었다. 즉 이민족은 토산품을 공물로 바치고 그보다 더 큰 값을 지닌 비단을 상시적으로 얻어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당의 입장에서 조공은 단순한 물자 지급 시스템이 아니었다. 조공 사절의 來往을 통해 천자로서의 정통성을 내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료를 검토하여 조공으로 대표되는 외교 사절의 왕래에서 외국에 대한 당의 회유와 통제의 실질적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외국 사절의 入國과 唐의 사행 관리

唐은 외국 사절의 사행을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설치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변경 지역에 銅魚符를 두고 외국 사절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삼았다. 당은 외국에서 당과 통하기 위해 보낸 사절이 입국하는 곳에 모두 동어부를 설비하였다. 동어

2) 김택민, 『唐代 前期의 盛世와 비단 [絹帛] (Pax Serica)』, 『中國學報』 60집, 2009년.

부의 雌雄 각각 12개에 모두 사절을 보내는 나라의 이름을 새긴 후 제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를 지정하여 雄銅魚는 국내에 남겨두고 雌銅魚를 그 나라에 주었다. 예를 들어 사절이 정월에 온다면 제 1번 웅동어를 휴대해야 하고 나머지 달에도 그와 맞는 동어부를 휴대해야 했으며 閏月에는 本月의 것을 휴대해야 했다. 입국하면 당의 지방관이 동어부의 자웅이 부합하는 것을 검사한 후에야 常禮에 따라 대접하였고 서로 맞지 않으면 조정에 상주하였다.³⁾ 또한 당은 고위관원에게 魚符를 나눠주어 그 신분의 貴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⁴⁾ 이러한 면으로 볼 때 魚符의 지급은 사절의 신분을 증명하는 동시에 당의 관리가 지닌 신분적 특권을 사절에게도 보증하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당의 백성은 이동의 자유에 제한이 있어서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발급하는 통행허가증인 過所를 지참해야했고 또한 이동로의 關津에서 계속 검문검색을 받아야 했다. 使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각 京師로 入京하여야 하는 사절에게는 신속하고 지장 없는 이동이 필수적이었고 어부의 발급은 이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의 제도에 사절의 왕래에 최초로 들어간 關에서 짐을 한 번 검사하고 나머지 關에는 하지 않았음을 볼 때 동어부의 발급은 좀 더 원활한 여정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로 사료된다.⁵⁾ 이러한 어부의 발급담당은 門下省의 符寶郎이었으나 발급을 요청하여 외국에 전달하는 관부는 鴻臚寺였다.⁶⁾ 다만 사절의 귀국에는 과소가 발급되었다. 홍려사에서 사절의 소지품을 조사하여 禮部 主客司에 보고하고 이에 근거하여 司門司가 과소를 발급하였다.⁷⁾ 이때의 과소 발급은 사절이 지닌 물품 중에 외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것이다.

동어부의 부합만이 국경 통과 절차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 당은 외국 사절이 국내에 들어서면 최초 도착한 州에서 그 사절단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문서로 만들고 이를 邊牒으로 발급해 주었다.⁸⁾ 이는 사절단의 확실한 신원을 조사한 후 사절단의 증명

3) 『唐會要』 권100, 雜錄, 1795쪽. “故事. 西蕃諸國通唐使處. 悉置銅魚. 雄雌相合. 各十二隻. 皆銘其國名. 第一至十二. 雄者留在內. 雌者付本國. 如國使正月來者. 齎第一魚. 餘月准此. 閏月齎本月而已. 校其雌雄合. 乃依常禮待之. 差謬. 則推按聞奏.”; 『新唐書』 권24, 車服志, 525쪽. “初, 高祖入長安, 罷隋竹使符, 班銀莧符, 其後改爲銅魚符, … 蕃國亦給之, 雄雌各十二, 銘以國名, 雄者進內, 雌者付其國. 朝貢使各齎其月魚而至, 不合者劾奏

4) 『唐六典』 권8, 門下省, 符寶郎, 253쪽. “隨身魚符, 所以明貴賤.”

5)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尚書刑部, 司門郎中, 1201쪽. “蕃客往來, 閱其裝重, 入一關者, 餘關不譏.”

6) 『唐會要』 권100, 雜錄, 1795쪽. “至開元一十六年十一月五日鴻臚卿舉舊章奏曰. 近緣突騎施背叛. 蕃國銅魚. 多有散失. 望令所司復給.”

7)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7~1258쪽. “凡客還, 鴻臚籍衣齎賜物多少以報主客, 給過所.”

8)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尚書禮部, 主客郎中, 1196쪽. “殊俗入朝者, 始至之州給牒, 覆其人

으로 삼아 경사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다만 입국한 사절단 전원이 입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당은 외국 사절을 환영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사절의 入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사절의 입경 인원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절단은 입국후 일단 대기하며 州縣을 통해 홍려시의 입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⁹⁾ 우선 사신의 입조가 거부된 사례를 살펴보면 714년(玄宗 開元 2년) 吐蕃의 사절이 臨洮까지 와서 화친을 청하였으나 玄宗이 토번의 오만함으로 인해 입조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¹⁰⁾ 또 787년(德宗 貞元 3년) 토번이 다시 한 번 입조를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¹¹⁾ 그런데 이 두 사례는 당과 토번 양국의 관계가 험악하였던 때의 일이었으므로 구태여 입조 거부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절단의 입경 인원수 제한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朝賀하고 進貢하러 온 사자의 종자들은 국경에 그 반을 남겨두고 海路로 온 조공사는 廣州에서 수령 1인과 左右 2인을 골라 입조하게 한다.”¹²⁾ 지방 주현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절의 인원수를 제한하였다. 益州長史 章仇兼瓊은 토번의 입조 사절과 관련하여 관례에 따라 입경할 인원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연회를 베풀고 상을 주어 돌려보내자고 상주하였다.¹³⁾ 804년(정원 20년) 福州觀察使 兼 刺史 閻濟美가 일본 葛野麻呂의 사절단 중 23명만을 선발하여 입경을 허가한 기록이 있으며,¹⁴⁾ 777년(代宗 大曆 12년) 揚州觀察使 兼 長史 陳少遊가 일본 小野石根의 사절단 중 60명의 입경을 허가하자고 조정에 청하여 비준을 받았다. 그러나 상경 중에 中書門下의 勅牒으로 인해 다시 인원수가 20명으로 감소되었다.¹⁵⁾ 일본 遣唐使의 규모가 대개 500명가량임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의 사절만이 경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입경을 허락받지 못하고 지방에 남게 된 사절단 인원은 현지에서 사절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주현의 접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당이 兩蕃으로 지칭했던 契丹과 奚는 매해 朝賀할 때 늘 각각 수백 명의

數，謂之邊牒。”

9)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6쪽. “入境州縣…具其名數牒寺, 寺司勘訖…仍牒中書, …別聽進止

10) 『新唐書』 권216上, 吐蕃傳上, 6082쪽. “吐蕃遣宗俄因子到洮水祭戰死士, 且請和。然恃盛疆, 求與天子敵國, 語悖傲。使者至臨洮, 詔不內。”

11) 『資治通鑑』 권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八月條, 7496쪽. “吐蕃尙結贊遣五騎送崔漢衡歸, 且上表求和; 至潘原, 李觀語之以『有詔不納吐蕃使者』, 受其表而卻其人。”

12)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7쪽. “海外諸蕃朝賀進貢使有下從, 留其半於境; 繇海路朝者, 廣州擇首領一人、左右二人入朝”

13) 『全唐文』 권405, 章仇兼瓊, 請令吐蕃入奏奏. “吐蕃白狗國及索磨等諸州籠官三百餘人出奉州。望准女國等例。簡擇許令入奏。餘並就奉州宴賞放還。”

14) 『日本後紀』 권12, 皇統彌照天皇, 延曆24年6月條.

15) 『續日本紀』 권35, 天宗高紹天皇, 寶龜9年10月條.

사절을 보내었다. 사절이 幽州에 이르면 그 중에서 추장 35명을 선발하여 황궁으로 보내 麟德殿에서 황제를 알현하게 한 후 金帛을 사여하고 돌려보냈다. 그 나머지는 유주에 머물러 접대하였는데 대개 이것이 常例가 되었다.¹⁶⁾ 이를 보면 거란과 해의 사절 역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입경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의 제한이 생기게 된 원인은 사절단의 규모가 당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788년(정원 4년) 回紇이 당의 公主를 맞이하기 위해 사절 천여 명을 파견하여 聘物로 3000천 필의 말을 헌납하였다. 이에 德宗은 朔州 및 太原에 회홀 사절단 700여명을 분산하여 머물게 하도록 하였다.¹⁷⁾ 입조한 사절단은 경사에 머물면서 宴會와 賞賜를 받았고 아울러 체재에 드는 비용도 당이 부담하여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여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대종의 치세에는 四夷使者 및 四方奏計로 돌아가지 않고 客省에 남아 있는 자가 항상 수백 명이고 그들의 部曲과 畜産 수천이 팔려있어서 지출하는 稟給의 비용이 매우 많았다. 이에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을 정리하여서 한 해 19200斛을 절약하였다.¹⁸⁾ 이를 보아도 당이 사절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절 입국 시에 인원을 조사하고 지침에 따라 입경 인원수를 제한한 후 변첩을 발급하여 최종적으로 사절의 규모를 확정함과 동시에 지방 주현은 사절이 지참한 공물에 대해 점검을 병행하였다. 즉 외국 사절이 藥物과 滋味를 헌납하려고 입국하면 주현과 사절이 이를 궤에 넣어 봉인하고 사절에 붙여서 그 名數를 기록한 牒을 鴻臚寺에 보냈다.¹⁹⁾ 유목민족의 공물로 유명한 말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주현에서 검열하여 進上하기 부족한 것은 주현에 남겨두었다.²⁰⁾ 이러한 점검과 검열을 거쳐서 외국 사절은 당이 발급한 동어부와 변첩·공물 목록을 지참하여 경사로 출발하였다.

경사로 출발하는 조공 사절은 또한 지방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경할 수 있었다. 659년(高宗 顯景 4년) 일본 건당사가 풍랑으로 南海에 표류하였다가 일부가 살해당하고 지방 주현으로 도망쳐 보호를 요청하자 주현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그들을 洛陽에 입경시켰

16) 『唐會要』 권96, 奚, 1720쪽. “其每歲朝賀. 常各遣數百人. 至幽州. 則選其酋長三五十人赴闕. 引見于麟德殿. 賜以金帛遣還. 餘皆駐而館之. 率以爲常.”

17) 『唐會要』 권6, 雜錄, 72쪽. “凡遣人千餘納聘. 馬三千匹. 上令朔州及太原分留回紇七百餘人. 其宰相大首領至者. 館于鴻臚寺將作監. 回紇使者見于宣政殿. 上召回紇公主及使對于麟德殿. 頒賜有差.”

18) 『資治通鑑』 권225, 唐紀41, 代宗大曆十四年七月條, 7264쪽. “初, 代宗之世, 事多留滯, 四夷使者及四方奏計, 或連歲不遣, 乃於右銀臺門使, 置客省以. (중략) 常有數百人, 并部曲、畜産動以千計, 度支廩給, 其費甚廣. 上悉命疏理, 拘者出之, 事竟者遣之, 當絃者任之, 歲省穀萬九千二百斛.”

19)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6쪽. “若諸蕃獻藥物、滋味之屬, 入境州縣與蕃使苞匭封印, 付客及使, 具其名數牒寺.”

20)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8쪽. “凡獻物, 皆客執以見, 駝馬則陳于朝堂, 不足進者州縣留之.”

다.²¹⁾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도 일본 건당사 藤原常嗣의 사절단이 揚州에서 입경 허가를 받은 후 출발할 때 양주에서 勾當日本國使 王友眞을 파견하여 경사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정원 연간, 劍南西川節度使 韋臯가 토번을 버리고 당에 귀부하기로 결정한 南詔의 사자 3명을 成都에서 경사로 보호하여 보냈고 이로 인해 남조는 당에의 귀부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²²⁾

외국 사절에 대한 또 다른 혜택으로 식량의 공급을 들 수 있다. 조공 사절은 당에 입국하여 체재하는 기간 동안 稟食을 제공받았다. 홍려시 예하 典客署에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였다. 『新唐書』 百官志에서는 “酋渠首領으로 朝見하는 자에게 稟食을 지급”하는 것을 전객서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唐六典』에서도 “客館에 머물게 하고 예의로서 접대”하는 일을 전객서가 담당하도록 규정한 것과 일치한다. 입조한 사절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원칙 하에서 당연히 사절에게는 입국 순간부터 양식이 제공되었을 것이며, 심지어는 사절에게는 귀국을 위한 양식도 지급되었는데 이를 程糧이라고 하였다.²³⁾ 즉 서남방의 외국 사절이 귀국할 경우 入海程糧을 제공하고 서북방의 사절이 귀국할 때는 度磧程糧을 제공하였다. 정량의 명칭은 사절의 귀국 여정의 제반조건에 따라 그 지급량을 계산하였음을 암시한다. 695년(武則天 證聖 元年), 勅으로 외국 사절이 입조하면 그 糧料를 등급에 따라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등급은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南天竺·北天竺·波斯·大食 등의 사절에게는 6개월의 식량을 지급하였고 尸利佛誓·眞臘·訶陵 등의 사절에게는 5개월의 식량을, 林邑에게는 3개월의 식량을 지급하였다. 700년(무측천 聖曆 3년)에는 다시 칙을 내려 東으로는 高麗國, 南으로는 眞臘國, 西로는 波斯·吐蕃 및 堅昆都督府, 北으로는 契丹·突厥·靺鞨까지를 모두 蕃으로 정하고 이 밖은 絕域으로 정하여 그 사절에 대해 式에 의거하여 料를 주도록 하였다. 716년(개원 4년)에는 말갈·新羅·토번에게도 정량이 지급되었다.²⁴⁾ 『新唐書』, 西域傳下의 贊에서 “중국에는 報贈·冊弔·程糧·傳驛의 費가 있고 … 八蕃과 絕域으로 삼고 그 지역과의

21) 『日本書紀』 권26, 天豐財重日足姬天皇, 齊明天皇5年條, 伊吉連博德書.

22) 『新唐書』 권220上, 南蠻傳上, 6272쪽. “後五年, 乃決策遣使者三人異道同趣成都, (중략) 且贈 皇黃金、丹砂。皇護送使者京師, 使者奏異牟尋請歸天子, 爲唐藩輔.”

23)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尙書禮部, 主客郎中, 1196쪽. “路由大海者, 給祈羊豕皆一。西南蕃使還者, 給入海程糧; 西北諸蕃, 則給度磧程糧.”

24) 『唐會要』 권100, 雜錄, 1798쪽. “證聖元年九月五日勅. 蕃國使入朝. 其糧料各分等第給. 南天竺. 北天竺. 波斯. 大食等國使. 宜給六箇月糧. 尸利佛誓. 眞臘. 訶陵等國使. 給五箇月糧. 林邑國使. 給三箇月糧.”

聖曆三年三月六日勅. 東至高麗國. 南至眞臘國. 西至波斯吐蕃. 及堅昆都督府. 北至契丹突厥靺鞨. 並爲人蕃. 以外爲絕域. 其使應給料各依式.

開元四年正月九日勅. 靺鞨新羅吐蕃. 先無里數. 每遣使給賜. 宜準七千里以上給付也.”

거리를 살펴 비용을 지급하였다”라 하였으니 이는 조공 사절에 대해 여행 양식을 지급한 것이 당 일대의 제도였음을 설명해 주는 자료인 것이다.²⁵⁾ 이는 당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나간 이후에도 당에서 지급한 여행 비용이란 점에서 사절에게 준 혜택의 의미가 더욱 크다. 845년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은, 長安에서 출발하여 귀국할 당시 “京師의 牒에 程糧에 대해 언급이 없어 여정에서 스스로 양식을 지참하였다”라고 『入唐求法巡禮行記』에 기록하였다. 엔닌이 발급받은 경사의 첩에 양식 지급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꾸어 생각하면 당시에는 사절이 아닌 자에게는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추정된다.²⁶⁾ 결국 양식의 지급은 사절만의 특권이었다.

아울러 조공 사절의 입국 이후 館驛은 交通運送의 책임을 담당하였다. 당은 “乘傳者日四驛, 乘驛者六驛”이라 하여 驛傳을 이용한 사절의 1일 이동거리를 규정하였다. 9세기의 일이지만 王起가 蒲州에 수령으로 있을 때 매년 외국 사절이 郡府의 逆旅郵傳을 이용하여 백성이 모두 괴로워하였다.²⁷⁾ 또 804년(정원 20년) 12월 21일에는 일본의 16차 견당사 藤原葛野麻呂가 입경 도중 上都의 長樂驛에 도착하여서 숙박하였으며 839년(文宗 開成 4년) 12월 3일에는 17차 견당사 藤原常嗣가 장락역에 도착하여 당의 칙사를 영접하였다. 여기서 장락역은 장안성의 동쪽 7리 밖에 위치한 역으로 장안에서 동쪽으로 가는 主幹驛道의 첫째 역이었다.²⁸⁾ 이런 사례로 보아 당에 입조한 사절은 역시 관역을 이용하여 교통과 숙박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대의 역은 30리를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므로 4역은 120리이고 6역은 180리이니 사절은 하루에 이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59년(현경 4년) 10월 15일, 일본 사절은 乘驛하여 越州를 출발해서 10월 29일에 東京에 도착하였다.²⁹⁾ 그런데 洛陽과 월주의 거리가 『舊唐書』·『通典』에서 모두 2870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³⁰⁾ 14~15일만에 2870리를 주파한 것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190리를 간 것으로 “乘驛者六驛” 즉 180리의 하루 여정과 대략 일치한다. 그런데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양주에 체재 중이던 엔닌이 양주도독부에 天台山 참배를 청원

25) 『新唐書』 권221下, 西域傳下, 6264~6265쪽. “西方之戎, 古未嘗通中國, 至漢始載烏孫諸國, 後以名字見者寔多. 唐興, 以次脩貢, 蓋百餘, 皆冒萬里而至, 亦已勤矣! 然中國有報贈、冊印、程糧、傳驛之費, 東至高麗, 南至眞臘, 西至波斯、吐蕃、堅昆, 北至突厥、契丹、靺鞨, 謂之「八蕃」, 其外謂之「絕域」, 視地遠近而給費.”

26) 黎虎, 『漢唐外交制度史』, 蘭州大學出版社, 1998년, 428쪽.

27) 『冊府元龜』 권689, 牧守部, 威嚴, 8214쪽上. “王起鎮蒲州 每歲蕃使繇於郡府逆旅郵傳 咸苦之.”

28) 石見清裕, 『唐北方問題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년, 340~341쪽.

29)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5年, 秋7越條. “潤十月一日 行到越州之底 十五日 乘驛入京 廿九日 馳到東京”

30) 『舊唐書』 권40, 地理志3, 越州, 1589쪽. “至東都二千八百七十里.”; 『通典』 권182, 州郡典14, 會稽郡, 越州, 4832쪽. “去東京二千八百七十里.”

하자, 양주도독부에서는 이를 경사에 보고하고 다시 회답을 받아 처리하였다.³¹⁾ 이 청원에 관련된 문서가 출발한 날짜는 838년(개성 3년) 8월 10일이고 회신을 받은 날은 9월 13일이어서 문서의 왕복에 33일이 걸렸다. 청원 처리에 걸린 시간을 3일 정도로 잡고 이를 소요시간에서 제외한다면³²⁾ 문서의 왕복에만 순수하게 30일이 걸린 셈인데 이는 편도에만 15일이 소요된 것이다. 장안과 양주의 거리는 2753리로 문서 전달의 속도는 하루 평균 약 180리라 볼 수 있다.³³⁾ 종합해 보면 당대 문서 전달 속도와 사절이 입경한 속도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신속한 배송이 거대 제국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시에 교통 속도에서 가장 한계에 가까운 속도였을 것이다. 공무 상 시일에 맞춰 입경하고 다시 귀국해야 하는 사절의 입장에서는 숙식의 해결 이외에도 이런 신속한 이동을 요긴한 혜택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러한 역전의 이용은 사절에 대한 統制策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唐律에 의하면 당은 입조하는 외국 사절이 途中에서 중국인과 交雜하게 하지 않았으며, 외국 사절이 중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금하였고, 주현의 관원이라도 사안이 없으면 역시 외국 사절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였다.³⁴⁾ 여기서 交雜은 외국인과 사적인 교역과 兵器의 수여, 唐人과 외국인의 결혼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冊府元龜』에서 수록한 836년(개성 원년)의 상주에도 “令式에 의거해 중국인은 외국인과 사사로이 교통하거나 매매하거나 결혼하거나 왕래할 수 없다”라고 하여 중국인은 외국인과 일체의 교류를 갖지 못하도록 영식으로 정해놓았다.³⁵⁾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절은 당에 입국한 뒤 당의 관리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제한되는데 그 목적은 당연히 외국인과 교류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절을 중국인으로 부터 격리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등장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역전의 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관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제한된 소수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인원만 통제하면 중국인과 사절의 교잡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하루에 신속히 180리를 이동함으로 인해 사절에게는 노상에서 중국인과 왕래할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

31) 石見清裕, 『唐北方問題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년, 341쪽.

32) 당대 공문서의 처리기한은 문서를 접수한 후 小事가 5일, 中事가 10일, 大事가 20일이지만 急務의 경우는 이 기한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唐六典』 권1, 尙書都省, 11쪽. “小事五日, 謂不須檢覆者。中事十日, 謂須檢覆前案及有所勘問者。大事二十日, 謂計算大簿帳及須諮詢者。(중략) 其急務者不與焉.”

33) 『舊唐書』 권40, 地理志3, 揚州, 1571쪽. “在京師東南二千七百五十三里.”

34) 『譯註唐律疏議-各則(上)』 권8, 衛禁 31조, ‘越度緣邊關塞’, 2089~2090쪽. “又準主客式 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並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 亦不得與客相見”

35) 『冊府元龜』 권99, 外臣部, 互市, 11727~11728쪽. “又准令式 中國人不合私與外國人 交通買賣 婚娶來往”

을 것이다. 결국 당은 관역을 이용하여 사절의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고 중국인과의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사절로 인해 야기될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였다. 외국 사절과의 교류를 통해 야기될 피해로는 상기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국가의 기밀이 외국 사절에게 누설되는 것 또한 그 피해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률 職制律의 『漏泄大事』 조문에서는 “비밀로 해야 할 중대사를 누설하는 경우 絞首하고”, “중대사는 아니나 비밀로 해야 하는 일은 徒刑 1년 반에 처하며 외국의 사신에게 누설한 경우는 1等を 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율문의 疏議를 보면 “비밀로 할 중대사는 장수에게 명령하고 병사와 맹서하여 정벌·토벌을 꾀하는 것”을 일컬으며 “국가의 사안은 외국이 듣고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여 외국인에게 국가의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이와는 반대로 당은 조공 사절에게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兵部 職方郎中은 홍려시에 의탁하여 사절이 경사에 도착하면 해당국의 山川風土를 신문하고 이를 지도로 그려 황제에게 상주하였다.³⁷⁾ 아울러 사절의 용모와 의복도 그려서 보고하였다.³⁸⁾ 직방낭중은 간접적인 정보 취득 이외에도 직접 외국인을 마주하여 외국의 사정을 탐지하였다.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엔닌이 장안의 사찰에 거주할 당시 직방낭중 楊魯士가 자주 찾아와 相問하고 檢校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상황은 단순히 양로사의 개인적인 사교 활동이라기보다는 직방낭중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³⁹⁾ 641년(정관 15년) 직방낭중 陳大德이 高句麗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산천풍속을 보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관리를 매수하여 가지 못한 곳이 없었다는 기록 역시 직방사의 직무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⁴⁰⁾ 또한 홍려시는 직방낭중 이외에도 외국에서 조공 사절이 올 때 마다 해당국의 土地風俗, 衣服貢獻, 道里遠近을 勘問하여 史館에 보고하였다.⁴¹⁾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은 臣僚의 선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황제의 선에서도 이뤄졌다. 659년 高宗은 일본 사신의 알현을 받으며 사신에게 직접 물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36) 『譯註唐律疏議-各則(上)』 권9, 職制 19조, ‘漏泄大事’, 2128~2129쪽.

37) 『唐六典』 권5, 尙書兵部, 職方郎中, 162쪽. “委鴻臚訊其人本國山川、風土, 爲圖以奏焉; 副上於省.”

38)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尙書兵部, 職方郎中, 1198쪽. “殊俗入朝者, 圖其容狀、衣服以聞.”

39) 黎虎, 『漢唐外交制度史』, 蘭州大學出版社, 1998년, 393쪽.

40) 『資治通鑑』 권196, 唐紀12, 太宗貞觀十五年八月條, 6169쪽. “(陳)大德初入其境, 欲知山川風俗, 所至城邑, 以綾綺遺其守者, 曰: 『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 守者喜, 導之遊歷, 無所不至.”

41) 『唐會要』 권69, 史館上, 1089쪽. “蕃國朝貢. 每使至. 鴻臚勘問土地風俗. 衣服貢獻. 道里遠近. 并其主名字報.”

고종은 우선 인사처럼 일본의 君臣과 國內의 평안 여부를 묻고 이어 사신이 대동한 蝦夷의 종류와 풍속에 대해 자세히 신문하였다. 이는 홍려사에서 시행한 정보 수집 활동과 일치하며 당이 조공 사절을 통해 외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사절은 황제를 알현하고 冬至의 조회에도 참여하였으나 당장 귀국하지는 못하고 661년에야 귀국하였다. 귀국이 지연된 이유는 당에서 “국가에서 내년에 海東之政이 있을 것이니 너희 倭客은 동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칙지를 내려 西京 내의 별도 장소에 유폐되었기 때문이었다.⁴²⁾ 여기서 말하는 ‘해동지정’은 이듬해인 660년의 百濟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사절이 유폐된 이유는 “비밀로 해야 할 중대사”인 백제 공격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660년 9월 19일 일본 사절은 유폐에서 풀려나 西京을 출발하였고 10월 16일에는 東都에 도착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蘇定方이 백제왕과 신하를 포로로 끌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⁴³⁾ 이때 백제 太子 이하 신료의 성명과 인원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日王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아 당이 전해준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당이 사절을 자신들의 정보 공작에 맞춰서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절에 대한 당의 이런 태도는 기우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후 일본이 당에 대항하여 白江 전투를 벌인 사실을 감안하면 사절을 억류해 정보를 차단한 것은 필요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였다. 다만 당에 입국한 사절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통제가 가능하였지만 외국들 간에 왕래한 사절을 통한 정보 교류는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安史의 亂이 발발한지 3년 뒤에야 渤海와의 사신 왕래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安祿山이 東方을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쟁에 대비하였다는 것을 볼 때⁴⁴⁾ 그 정보 취득의 시간적·질적 측면의 효율성은 당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 공격 이전에 일본 사신이 별도의 장소에 유폐되

42)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5年, 秋7越條. “三十日,天子相見問訊之:『執日本國天皇,平安以不?』使人謹答:『天地合德,自得平安.』天子問曰:『執事卿等,好在以不?』使人謹答:『天皇憐重,亦得好在.』天子問曰:『國內平不?』使人謹答:『治稱天地,万民無事.』天子問曰:『此等蝦夷國有何方?』使人謹答:『國有東北.』天子問曰:『蝦夷幾種?』使人謹答:『類有三種.遠者名-都加留,次者-粗蝦夷,近者名-熟蝦夷.今此熟蝦夷,每歲,入貢本國之朝.』天子問曰:『其國有五穀?』使人謹答:『無之.食肉存活.』天子問曰:『國有屋舍?』使人謹答:『無之.深山之中,止住樹本.』天子重曰:『朕見蝦夷身面之異,極理喜怪.使人遠來辛苦.退在館裏,更後相見.』十一月一日,朝有冬至之會. (중략) 事了之後敕旨:『國家,來年必有海東之政.汝等倭客,不得東歸!』遂逗西京,幽置別處.閉戶防禁,不許東西,困苦經年.”

43)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5年, 秋7越條. “『庚申年八月,百濟已平之後,九月十二日,放客本國.十九日,發自西京.十月十六日,還到東京,始得相見阿利麻等五人.十一月一日,爲將軍蘇定方等所捉百濟王以下太子隆等諸王子十三人,大佐平-沙宅-千福、國-弁成以下三十七人,并五十許人.奉進朝堂.急引趨向天子.天子恩敕見前放著.十九日,賜勞.二十四日,發自東京.』”

44) 송완범, 『8세기 중엽 ‘新羅征討’ 계획으로 본 古代 日本의 對外方針』, 『韓日關係史研究』 25집, 191~197쪽.

었다는 것은 다른 외국 사절로부터 격리시켜 정보가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누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3. 京師에서의 외국 사절에 대한 회유와 통제

입경하여 경사에 체류하게 된 외국 사절의 관리·감독은 홍려시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홍려시는 우선 사절의 숙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하였다. 홍려시 전객서의 가장 큰 역할은 “추거수령으로 입조한 자를 객관에 머물게 하고 예로서 대접하는 것 [酋渠首領朝見者, 則館而以禮供之]”이었다. 肅宗 乾元 연간(758~760) 이후 회홀의 사자가 많이 입조하여서 이들이 홍려시에 유숙하였다는 기사가 사서에서 보이고 있는데⁴⁵⁾ 그 기사의 논조가 다소 비판적이다. 이는 사절의 체재비용을 당이 일체 부담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절이 몰려오고 또 체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은 안사의 난 극복을 위해 회홀의 군사 원조를 받아야 했고 이의 보답으로 회홀은 당에게 큰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 788년(정원 4년), 威安公主와 회홀 可汗의 결혼을 위해서 당으로 공주를 모시러 온 회홀 재상과 사절단은 1천여 명에 달했는데 그중 700명이 입조하여서 홍려시에 유숙할 것을 허락하였다.⁴⁶⁾ 821년(穆宗 長慶 원년), 太和公主의 결혼에서도 회홀 사절 573명이 공주를 영접하기 위해 입조하자 이들을 홍려시에 안치하였다.⁴⁷⁾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홍려시의 규모와 그 사절 수용·접대 능력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절이 당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양식은 홍려시에서 제공하였다. 이 역시 전객서의 구체적인 사무였으며 전객서의丞 2명 중 1명이 廚事를 관장하고 1季가 끝나면 이를 會計하였다.⁴⁸⁾ 이는 예부 주객낭중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절에게 제공하는 식료를 사시에 맞춰 홍려시에 보내고 1계가 끝나면 회계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⁴⁹⁾ 또 『당

45) 『舊唐書』 권195, 迴紇傳, 5207쪽. “迴紇恃功, 自乾元之後, 屢遣使以馬和市繒帛, 仍歲來市, 以馬一匹易絹四十匹, 動至數萬馬。其使候遣繼留於鴻臚寺者非一。”; 『新唐書』 권217상, 回鶻傳상, 6120쪽. “自乾元後, 益負功, 每納一馬, 取直四十緡, 歲以數萬求售, 使者相躡, 留舍鴻臚。”

46) 『新唐書』 권217상, 回鶻傳상, 6123~6124쪽. “可汗遣宰相衆跌都督等衆千餘, 衆遣其妹骨咄祿毗伽公主率大酋之妻五十人逆主, 且納聘。衆跌至振武, 爲室韋所鈔, 戰死。有詔其下七百, 皆聽入朝, 舍鴻臚。”

47) 『舊唐書』 권195, 迴紇傳, 5211쪽. “五月, 迴鶻宰相、都督、公主、摩尼等五百七十三人 入朝迎公主, 於鴻臚寺安置。”

48)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7쪽. “丞一人判廚事, 季終則會之。”

49)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尚書禮部, 主客郎中, 1196쪽. “供客食料, 以四時輸鴻臚, 季終句會

육전』 상서예부 선부낭중 조에는 “객관에 있는 외국 사절의 식료는 5등이다. 사절의 設食料, 사절의 設會料는 모두 차등이 있다”의 규정이 있다.⁵⁰⁾ 즉 예부 주객낭중이 선부낭중의 규정에 의거해 홍려시에 식량제공 지침을 하달하면 홍려시가 이에 따라 시행하고 1계 단위로 회계하여 주객사에 보고하였다. 이 행정은 어사가 감찰하여서 사절에 대한 식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다.⁵¹⁾ 아울러 식량 이외에도 홍려시는 사절에게 생활용품의 공급을 담당하였다. 외국 사절단의 正·副使로 5品 이상에게 휘장·담요·자리 등을 공급하고 6품 이하는 천막과 식료를 지급하였다.⁵²⁾ 일본 헤이안 시기의 辭書인 『倭名類聚鈔』 권15, 調度部下, 鞍馬具, 鞞條에 “唐式云 諸蕃入朝 調度帳幕·鞍韉·鞞轡 量事供給”이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보면 장막과 안장·갈개, 재갈·고삐 등 馬具의 지급 式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倭名類聚鈔』 권14, 調度部中, 廚膳具, 油單條에 “唐式云 鴻臚蕃客等 器皿·油單及雜物 並令少府監支造”라 하여 홍려시의 외국 사절들이 사용할 器皿·油單 및 雜物은 모두 소부감이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당이 사절에게 다양한 품목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려시는 사절이 타고 온 가축을 담당하여 객사에 방목하고 사료를 지급하였다.⁵³⁾ 또한 醫藥과 喪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舊唐書』 권44, 職官志에는 사절에게 만약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절이 사망하면 사안을 헤아려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唐六典』을 통해 이 규정을 보충하여 설명하면 “질병이 발생하면 所司가 의사를 보내 탕약을 공급하며”, 사절이 사망하였을 때는 “정·부사 및 3등 이상의 관원 사망 시에는 상주하고, 그 상장에 필요한 물품은 소사에서 헤아려 지급하며, 본국으로 귀환을 원하는 경우 靈柩車를 주어 국경까지 배송한다. 수령으로 4등 이하인 경우 상주하지 않고 다만 수레와 소를 보내 묘소로 운구”하는 것을 그 상세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⁵⁴⁾ 홍려시가 사절의 상장에 관여한 실례를 찾아보면 728년(개원 16년) 발해왕자 大都利가卒하여 絹 300필·粟 300석을 하사하고 有司에게 명하여 祭를 지내고 수레를 주어 본국으로 귀환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⁵⁵⁾ 또한 749년(현중

之.”

50) 『唐六典』 권4, 尙書禮部, 膳部郎中, 129쪽. “蕃客在館 設食料 五等。蕃客 設食料, 蕃客設會料, 各有等差焉.”

51)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7쪽. “御史察食料.”

52)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7쪽. “諸蕃使主、副五品已上給帳、氈、席, 六品已下給幕及食料.”

53)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6쪽. “所乘私畜抽換客舍放牧, 仍量給芻粟.”

54)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6~507쪽. “若疾病, 所司遣醫人給以湯藥。若身亡, 使主、副及第三等已上官奏聞。其喪事所須, 所司量給; 欲還蕃者, 則給輿遞至境。首領第四等已下不奏聞, 但差車、牛送至墓所.”

55)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 褒異2, 11451쪽. “癸未 渤海王子留宿衛大都利行卒 贈特進兼鴻臚卿 賜絹三百疋粟三百石 命有司弔祭 官造靈輿歸蕃”

天寶 8년)에는 “九姓·堅昆의 여러 입조 사신이 사망한 경우 이후로 正使는 100貫을 상장에 충당하고 副使 및 妻는 30관을 감한다. 그 묘지는 州縣에서 구입하고 官에서 그 값을 치른다. 그 묘소는 所由에서 조영한다.”는 칙령이 내려졌다.⁵⁶⁾ 이를 보면 사절의 장례와 매장을 홍려시와 주현에서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홍려시는 사절의 경사 체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생활의 편의를 제공한 이외에 전문적인 외교 업무도 관장하였으니 그 중 중요한 업무는 조공 사절의 황제 알현이었다. 이는 사절이 황제에게 表와 幣를 올리고 宴會와 下賜를 받는 과정 일체를 포함하였다. 비록 隋代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607년(隋煬帝 大業 3년) 일본이 보낸 국서에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 안부를 묻는다”는 표현이 있자 이를 양제가 보고 불쾌하여 홍려경에게 “蠻夷의 글이 무례하니 다시 상주하지 말라”고 하였다.⁵⁷⁾ 이는 홍려시가 사절이 가져온 외교문서를 접수하여 황제에게 올리는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려준다. 당대에 들어서면서 문서의 접수에 더욱 세세한 규정이 생겼다. 『新唐書』百官志에는 “사절의 상주문은 도달한 月日과 내용을 갖춰 각 방위 별로 狀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상주하며 이를 장부로 만들고 副本은 홍려시에 보관한다”고 되어있다.⁵⁸⁾ 문서 접수 및 상주에 관한 홍려시의 업무는 839년(개성 4년) 신라 神武王이 사망하고 文聖王이 계위한 후 다음해에 보낸 告愛의 국서를 홍려시에서 상주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⁵⁹⁾

공헌한 물품을 접수하는 것도 홍려시의 직무였다. 사절이 입국하면 우선 지방에서 사절과 함께 헌상한 물품을 포장하고 봉인하였으며 아울러 그 종류와 수량을 홍려시에 牒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절과 함께 경사로 올라온 공물은 홍려시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검사하고 접수하였다. 헌상된 말은 殿中省과 太僕寺에서 검열하여 우수한 것은 전중성으로 들고 노둔하거나 병든 것은 태복시로 들었다. 헌상된 약물은 홍려시에서 재검하고 少府監이 가격을 감정하였다.⁶⁰⁾ 전중성 尙乘局은 황제의 御馬를 관리하고 태복시는 국가의 수레 및 諸牧을 담당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임무를 지고 있으므로 홍려시와

56) 『唐會要』 권66, 鴻臚寺, 1151쪽. “天寶八載三月二十七日勅. 九姓堅昆諸蕃客等. 因使入朝身死者. 自今後. 使給一百貫充葬. 副使及妻. 數內減三十貫. 其墓地. 州縣與買. 官給價直. 其墳墓所由營造.”

57) 『隋書』 권81, 東夷倭國傳, 1827쪽. “其國書曰『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無恙』云云. 帝覽之不悅. 謂鴻臚卿曰:『蠻夷書有無禮者. 勿復以聞。』”

58)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8쪽. “蕃客奏事. 具至日月及所奏之宜. 方別爲狀. 月一奏. 爲簿. 以副藏鴻臚.”

59) 『唐會要』 권95, 新羅, 1714~1715쪽.

60)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7~1258쪽. “所獻之物. 先上其數於鴻臚. (중략) 獻馬. 則殿中. 太僕寺洩閱. 良者入殿中. 駑病入太僕. 獻藥者. 鴻臚寺驗覆. 少府監定價之高下.”

같이 말을 검사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공물의 가격이 확정되었다. 홍려시는 공물의 점검을 마치고 少府監과 市에 첩을 보내어 공물 가격의 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면 少府監과 市에서 각 관원이 물품을 식별하는 사람과 함께 나와 공물의 가격을 정하였다⁶¹⁾. 이때 市는 아마도 태부시 관할의 여러 市署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唐六典』에 의하면 우선 태부시 쯔의 직무는 무릇 원정과 동지에 각지에서 상공한 지역특산물 가운데 殿庭에 진열할 것은 받아서 올리는 것이어서, 공물의 검사가 태부시의 본래 직장임을 알 수 있다.⁶²⁾ 또한 市令의 임무는 재화의 교역과 도량형을 관장하고 그 진위와 경중을 판별하는 것이며 上·中·下估의 세 가격으로 시에서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을 공평하게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니, 즉 시에서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데 관여하고 있었다.⁶³⁾ 이외에 공물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홍려시가 정하였다. 『白氏六帖事類輯』 권22에서 인용한 唐 主客式은 “외국에서 진헌한 물품 중 만약 값을 정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홍려시에서 헤아려 보답한다.”고 되어있다.⁶⁴⁾ 『新唐書』에도 “鷹, 鶴, 狗, 豹 등으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홍려시에서 보답의 경중을 정한다.”라고 하여 홍려시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⁶⁵⁾ 홍려시는 공물 검사를 마친 후 중서성에 첩을 보내 사절이 가져온 헌물을 보고하였고, 검열을 받아 가격이 정해진 공물은 사절이 황제를 알현할 때 직접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문서와 공물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알현 의식을 거행하였다. 『大唐開元禮』 권79·권80에 의하면 외국 사절은 다음과 같은 알현 의례를 거쳤다. 「蕃主來朝遣使迎勞」·「皇帝遣使戒蕃主見日」·「蕃主奉見」·「皇帝受蕃使表及幣」·「皇帝宴蕃國主」·「皇帝宴蕃國使」의 순서로 행해진 의례이며, 「皇帝受蕃使表及幣」의 注文에 의하면 蕃使의 위로와 알현일 통보의 두 의례는 蕃主의 의례와 동일하였다.⁶⁶⁾ 즉 황제 알현과 연회 의례에만 외국 군주와 사절의 구별이 있을 뿐 그 이전의 의례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군주가 내조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므로 대개는 내조한 사신에 대해 입조의 노고를 위로하고, 알현일을 통보하며, 알현 당일 사절을 만나 표와 폐를 받은 후 다시 연회를 베푸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중 앞의 두 의례는 모두 황제의 사신이

61)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6쪽. “寺司勘訖, 牒少府監及市, 各一官領識物人定價.”

62) 『唐六典』 권20, 太府寺, 太府丞, 542쪽. “凡元正、冬至所貢方物應陳於殿庭者, 受而進之.”

63) 『唐六典』 권20, 太府寺, 兩京諸市署, 542쪽. “京、都諸市令掌百族交易之事; 丞爲之貳. 凡建標立候, 陳肆辨物, 以二物平市, 謂秤以格, 斗以概. 以三賈均市.”

64) 黎虎, 『漢唐外交制度史』, 蘭州大學出版社, 1998년, 326쪽.

65)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8쪽. “鷹、鶴、狗、豹無估, 則鴻臚定所報輕重. 凡獻物, 皆客執以見, 駝馬則陳于朝堂”

66) 각 의례의 자세한 내용은 『大唐開元禮』 권79·권80에 수록된 각 의례 본문을 참조하거나 『通鑑』 권131, 禮典91, 開元禮纂類26, 賓禮에 수록된 각 의례의 본문을 참조.

홍려시 객관으로 가서 실시하였다. 717년(개원 5년) 현종은 일본의 사신이 입조하자 通事舍人에게 홍려시에 가서 宣慰하도록 명하였는데,⁶⁷⁾ 이 때 『蕃主來朝遣使迎勞』의 의례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알현일 통보의 의식 또한 앞의 의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하여 의례 당일 황제의 사자가 객관으로 오면 외국 사절이 영접하여 制書로 알현일을 통보받는 형식이었다. 사절의 황제 알현과 연회에 관한 의식은 한층 복잡하였다. 『皇帝受蕃使表及幣』의 의례를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알현일 전날 御幄을 설치하고 宮懸을 전개하였으며 참석할 관리의 위치를 정해두었다. 알현 당일에는 사절의 위치를 설치하고 典儀·使者·儀仗·樂士들을 배치하고 庭實(공물)을 사절의 앞 위치에 진열하였다. 이어서 사절이 承天門에 도착하면 인도하여 식당 부근에서 대기시키고 황제가 나와서 착석하였다. 이어서 사절이 입장하여 착석하면 中書侍郎이 國書를 받아 황제에게 상주하며 이 사이 유사들이 아울러 幣·馬(공물)를 받았다. 이어 통사사인이 사절에게 황제의 위로를 선포하고 황제에게 回奏하였다. 이후 사절이 퇴장하고 이어서 황제가 퇴장하면서 의례가 종료되었다. 복잡한 의례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이 의례의 핵심은 表와 幣로 표현된 국서와 공물의 수수이다. 그런데 의례에 등장한 국서는 당연히 朝謁의 문서 혹은 외교 현안에 관한 문서를 가리키겠지만 이 때 당이 수령한 공물의 내용과 규모가 과연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이후 다소간의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幣를 『說文』에는 帛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周禮』 天官 太宰 조항의 “六日 幣帛之式”의 注文에 “幣帛, 所以贈勞賓客者”라 하였다. 즉 幣는 織物을 가리키는 말이며 『開元禮』와 『周禮』의 기록으로 볼 때 국가 간에 예물로 수수하는 직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幣와 더불어 馬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이 민족이 바친 공물로 말이 대표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꼭 말만이 공물로 바쳐진 것은 아니어서, 新羅는 조공 물품으로 金銀, 牛黃, 人蔘, 狗, 美女, 朝霞紬 등을 바쳤고 발해는 鷹과 皮革을 공물로 보내었다.⁶⁸⁾

『皇帝宴蕃國使』의 의례를 간략히 설명하면, 외국 사절에 대해 당이 베푸는 宴會와 賜物의 의례로서 연회 하루 전에 御幄·宮懸과 식사 준비가 이뤄지고, 당일에 사절의 자리가 마련되며, 사절이 승천문에 도착하여 식당 부근으로 인도되어 대기하면 황제가 식당에 나와 착석하고 사절 역시 착석하였다. 이어 乾杯와 식사를 하고 난 후 다시 술을 돌리고 樂舞가 있는 후 사자들이 衣物을 외국 사절에게 내렸다. 이후 황제가 퇴장한 후 의례가 종료되었다. 이를 보면 의례 전날에 연회 식당의 설치가 이뤄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연회는 알현과 같은 날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717년(개원 5년), 현종이 “일본국이 멀리 해외에 있는데도 사신을 보내 내조하여 滄波를 넘어 邦物을 헌상하였다. 그

67) 『冊府元龜』 권971, 外臣部, 朝貢4, 11405쪽. “十月日本國遣使朝貢命通事舍人 就鴻臚宣慰.”

68) 권덕영, 『한국고대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2007년, 279~280쪽.

사자 真人莫問 등에 대해 마땅히 이번 달 16일에 中書省에서 연회를 베푼다.”라는 칙을 내린 것을 보아, 알현 이후 연회일도 따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⁹⁾ 이에 연회일을 알려주는 의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皇帝遣使戒蕃主見日』의 의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하튼 이 의례의 핵심은 연회를 통해 酒食을 사절에게 베풀고 아울러 賜物을 내린 것이다. 주식은 대개 典食局과 光祿寺가 담당하였을 것이며, 황제와 百官의 식사 및 국가 祭祀의 祭需와 동일한 것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외국 사신에게는 영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⁷⁰⁾ 사절에게 주는 賜物은 태부시가 담당하였다. 『唐六典』에서는 태부승의 직임을 “무릇 원정·동지에 방물을 공헌하면 마땅히 殿庭에 진열하고 받아서 진공한다. 무릇 연회의 상사 및 別勅으로 6품이하 관에게 상사하는 경우 바로 朝堂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부시 左藏署는 나라의 庫藏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데, 천하의 賦調를 太府卿이 검열하여 좌장고의 창고에 들였다. 右藏署에는 四方에서 공헌하는 金玉·珠佩·玩好物을 모두 수장하였다. 즉 사절의 하사품은 태부시에서 출납하는 것이었다. 사절에 내리는 賜物의 종류에 대해서는 戶部 金部郎中이 규정하였다. 즉 사절에게 사여하는 錦綵는 10段을 비율로 하며 錦 1張, 綾 2疋, 縵 3疋, 綿 4屯을 지급하였다.⁷¹⁾ 사료에 늘 나오는 “賜帛各有差” 등의 표현처럼 사물은 사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복잡하지만 화려한 격식의 의례와 최상의 연회라는 은혜를 통해 당은 외국 사절의 만족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연회에 수반되는 사여를 통해 당은 물질적 이익으로 외국을 조종할 수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사물의 하사는 조공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646년(貞觀 20년), 太宗은 鐵勒係 민족들의 수령들이 대거 당으로 내조하자 융숭히 대접하고 5일에 한번 연회를 베풀어주었다.⁷²⁾ 또한 647년(정관 21년) 철록, 회홀 등의 여러 姓이 대궐에 이르러 태종을 알현하자, 태종이 친히 여러 종류의 錦과 袍를 주었는데 그 양에 놀란 철록 등이 사물을 머리위로 받들어 이고 흠바닥에서 질하며 좋아 소리쳤다.⁷³⁾ 이때 철록 등이 돌아가면서 參天可汗道를 개통하여 68개 驛을 두어 각각 말과 술과 고기를 갖추어 지나는 사신에게 제공하고, 해마다 짐승의 모피를 바칠 것이며 아울러 사신이 表疏

69) 『冊府元龜』 권974, 外臣部, 褒異1, 11445쪽. “十月丁卯 日本國遣使朝貢 戊辰 勅 日本國遠在海外 遣使來朝 既涉滄波 兼獻邦物 其使真人莫問等 宜以今月十六日於中書宴集.”

70) 『唐六典』에 의하면 殿中省 尚食局은 황제의 식사를 담당하였으며 光祿寺 예하 珍羞署 각 관서들은 백관의 식사 및 연회·제사에 필요한 酒食을 담당하였다.

71) 『舊唐書』 권43, 職官志2, 戶部, 1828쪽. “若賜蕃客錦綵, 率十段則錦一張, 綾二疋, 縵三疋, 綿四屯.”

72) 『資治通鑑』 권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年九月條, 6242쪽.

73) 『冊府元龜』 권974, 外臣部, 褒異1, 11442쪽.

를 만들기 위하여 文人을 청하니 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⁷⁴⁾ 이는 이민족이 사절 왕래를 통한 금채의 수령을 매우 반기고 상례화 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음을 간파한 당이 환심과 충성을 사기 위해 행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관 20년에 당 태종이 이민족으로부터 天可汗의 칭호를 받게 된 것은 薛延陀를 무력으로 제거하여 얻어낸 것이지만 그 패권을 유지하고 여타의 유목민의 충성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에는 사절 왕래를 통한 사물의 지급이 큰 역할을 한 것이었다.

조공이라는 충성 표시에 대한 물질적 반대급부는 回賜를 통해서도 이뤄졌는데 『大唐開元禮』 「皇帝宴蕃國主」 의례를 보면 “(외국 군주가 바치는) 贄는 그 나라에 있는 것으로서 一輕한 물품으로 삼는다”라는 注文이 있으며 이는 역으로 회사하는 물품이 조공하는 물품보다 비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은 사절이 지참한 공물의 가격을 세밀하게 산정하였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의 물품을 사여하였다. 일본 『延喜式』 권30, 大藏省, 賜蕃客例 條에 기록된 조공품의 양을 보면 銀 大五百兩, 水織絁・美農絁 각 200疋 細絁・黃絁 각 300疋, 黃絲 500絢, 細屯綿 1000屯, 別送으로 綵帛 200疋, 疊綿 200帖, 屯綿 200屯, 紵布 30端, 望陀布, 100端, 木綿 100帖, 出火水精 10顆, 瑪瑙 10顆, 出火鐵 10具, 海石榴油 6斗, 甘葛汁 6斗, 金漆 4斗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공물의 양이 막대함을 알 수 있다. 또 무측천・현종 시기 인물인 江夏王 李邕이 海州刺史가 되었을 때 일본 사절이 해주에 도착하였다. 사절단의 규모는 500명으로 國信을 지참하여 10척의 배를 타고 왔으며 珍貨가 무려 수백만이었다. 그런데 이옹이 이를 욕심내어 사절을 객사에 연금하고 밤을 틈타 재화를 탈취한 후 배를 가라앉히고 사절에게 풍랑으로 배가 떠내려갔다고 알렸다는 기록이 『太平廣記』에 보인다.⁷⁵⁾ 비록 이옹의 列傳에 이 일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본래 성격이 거칠고 사치스러운데다가 재화에 욕심이 많았으며 汚職으로 인해 주살되었음을 볼 때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이런 기록들을 보면 당이 조공품의 값어치보다 한 등급 더 높게 회사해야했던 사물의 질과 양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또한 『延喜式』에 의하면 발해왕에게 보내는 일본의 물품은 絹 30필, 絁 30필, 絲 200구, 綿 300돈에 불과하며, 신라왕에 보내는 물품은 絁 25필, 絲 100구, 綿 150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74) 『資治通鑑』 권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正月條, 6244~6245쪽.

75) 『太平廣記』 권243, 食, 李邕, 1882쪽. “唐江夏李邕之爲海州也。日本國使至海州。凡五百人。載國信。有十船。珍貨數百萬。邕見之。舍於館。厚給所須。禁其出入。夜中。盡取所載而沉其船。既明。諷所館人白。云。昨夜海潮大至。日本國船盡漂失。不知所在。於是以其事奏之。敕下邕。令造船十艘。善水者五百人。送日本使至其國。邕既具舟及水工。使者未發。水工辭邕。邕曰。日本路遙。海中風浪。安能卻返。前路任汝便宜從事。送人喜。行數日。知其無備。夜盡殺之。遂歸。邕又好客。養亡命數百人。所在攻劫。事露則殺之。後竟不得死。且坐其酷濫也。”

일본이 당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回賜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개 공물의 종류가 다양했던 것에 비해 당의 回賜 품목은 비단이 중심이 되었다. 비단의 가치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화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심지어 화폐로서 유통될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민족들의 비단에 대한 희구는 안사의 난 이후 당과 회홀 간에 발생한 絹馬貿易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희구는 알현·연회 이후 혹은 사절의 귀국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홍려시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27년(문종 太和 元年) “中使에게 명하여 絹 20만 필을 홍려시에 보내어 회홀의 馬價에 충당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때 회홀 조공품인 말에 대한 희사가 홍려시를 통해 지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⁷⁶⁾

당은 조공 등을 비롯한 외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귀중한 비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西突厥의 가한 阿史那彌射와 阿史那步眞은 고종 龍朔 연간(661~663년)에 당의 颶海道 대총관 소해정을 따라 龜茲를 공격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런데 아사나보진이 미사의 부락을 병합하기 위해 소해정에게 미사의 반란을 무고했고 소해정은 거짓으로 칙서를 만들어 황제가 사물 수백만 段을 내리니 미사에게 수령하라고 하였다. 미사가 소해정에게 와서 예에 따라 物을 청하자 소해정이 그를 잡아 죽였다.⁷⁷⁾ 아사나미사는 오랜 기간 당에 협력하여 당이 이민족을 조종하는데 賜物을 이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백만 단의 사물을 내린다는 것에도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712년(睿宗 延和 원년) 奚의 추장 李大輔의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左羽林將軍·檢校幽州大都督 孫儉이 그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패배하자 사자를 보내 실은 勅을 만들어 招諭하러 왔으나 부하 장수들이 멋대로 공격한 것이니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대보는 “만약 칙을 만들어 초유하러 왔다면 어떤 國信의 물이 있는가?”라 물었다. 손검은 이에 군중에서 繒帛 만여 단을 걷어 이대보에게 주고 화친하였으나 퇴각 중 이대보의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사로잡혔다.⁷⁸⁾ 이대보 역시 이전 710년(예종 慶雲 원년)에 사자를 보내 당에 조공하고 두터운 연회와 상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로 당과의 외교 교섭에서 사물이 불가결한 것임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면 이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었고 국서보다 사물이 오히려 황제의 지시와 약속을 보증해 주

76) 『舊唐書』 권195, 廻紇傳, 5213쪽. “大和元年, 命中使以絹二十萬匹付鴻臚寺宣賜迴鶻充馬價.”

77) 『舊唐書』 권194하, 突厥傳下, 5188쪽.

78) 『舊唐書』 권199하, 北狄傳下, 奚國, 5355쪽. “延和元年, 左羽林將軍、檢校幽州大都督孫儉, 率兵十二萬以襲其部落, 師次冷硯, 前軍左驍衛將軍李楷洛等與大輔會戰, 我師敗績。儉懼, 不敢進救, 遣使矯報大輔云: 『我奉敕來此招諭蕃將, 李楷洛等不受節度而輒用兵, 請斬以謝。』 大輔曰: 『若奉敕招諭, 有何國信物?』 儉率軍中繒帛萬餘段并袍帶以與之。 大輔曰: 『將軍可南還, 無相驚擾。』 儉軍漸失部伍, 大輔乃率衆逼之, 由是大敗, 兵士死傷者數萬。儉及副將周以悌爲大輔所擒, 送于突厥默啜, 並遇害。”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물을 포함한 사절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무조건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빈객의 접대에는 일종의 조건과 기준이 존재하였고 그 기준은 홍려사에서 정하였다. 홍려사는 외국 사절이 입경하면 그들의 等位를 정하고 그 등급을 접대 예우 및 官爵 수여·冊封의 근거로 삼았다.⁷⁹⁾ 홍려사가 외국 사절의 등위를 정하는데 참고한 기준은 ‘蕃望’의 高下로 이는 그 나라 國勢의 強弱과 국제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된 등위에 따라 외국의 사신에 대한 접대 수위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우선 朝見 시에 사절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조현에서 그 등위를 판정하여 제3등은 武官 3품의 아래에, 제4등은 5품 아래에, 제5등은 6품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 有官者는 本班에 위치시켰다.⁸⁰⁾ 또한 등위는 사절이 받는 접대의 질과 양을 결정하였다. 『唐六典』에는 “3품 이상은 제3등에 준하고, 4품·5품은 제4등에 준하고, 6품이하는 제5등에 준한다. 관품이 없는 자로 大酋渠首領은 제4등에 준하고 小酋渠首領은 제5등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⁸¹⁾ 제3등의 사절은 3품 이상 관원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생활 용품의 지급이나 상장의 예식에서 드러나는 차등에서 잘 드러나며 또한 『新唐書』에서는 “사절이 도착하여 연회를 할 때 제1등은 3품에 비견하고 2등은 4품에 비견하고 3등은 5품에 비견하고 번망이 높지 않은 경우는 散官에 비견해 半을 감하여 參日에 음식을設해준다.”고 되어 있어,⁸²⁾ 연회에서 음식의 질과 양 또한 등위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사의 근거로서도 번망에 따른 등위가 중요하였다. 731년(개원 19년) 현종이 東都에 行幸하고 돌궐·토번의 사절에게 모두 物 500필을 하사하되 홍려사에 영을 내려 번망의 고하에 따라 차등 있게 분배하라고 칙을 내렸다는 사실에서⁸³⁾ 외국 사절에 대한 상사에도 번망이 그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에서 판정하는 번망의 고하는 외국과 그 사절에게 있어서 직접 당면하는 예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외국 사절의 등위 판정을 번망의 고하에 따른다는 원칙은 명분상의 표면적인 천명으로

79) 『舊唐書』 권44, 職官志3, 鴻臚寺, 1885쪽. “凡四方夷狄君長朝見者, 辨其等位, 以賓待之。凡二王後及夷狄君長之子襲官爵者, 皆辨其嫡庶, 詳其可否。若諸蕃人酋渠有封禮命, 則受冊而往其國。”

80) 『新唐書』 권48, 百官志3, 鴻臚寺, 1258쪽. “凡四夷君長, 以蕃望高下爲簿, 朝見辨其等位, 第三等居武官三品之下, 第四等居五品之下, 第五等居六品之下, 有官者居本班。”

81) 『唐六典』 권18, 鴻臚寺, 典客署, 506쪽. “凡酋渠首領朝見者, 則館而以禮供之。三品已上準第三等, 四品、五品準第四等, 六品已下準第五等。其無官品者, 大酋渠首領準第四等, 小酋渠首領準第五等。”

82)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尚書禮部, 主客郎中, 1196쪽. “客初至及辭設會, 第一等視三品, 第二等視四品, 第三等視五品, 蕃望非高者, 視散官而減半, 參日設食。”

83) 『冊府元龜』 권80, 帝王部 慶賜2, 933쪽. “十九年十一月壬子 幸東都 勅 親王賜物八十疋 (중략) 突厥吐蕃使共賜物五百疋 令鴻臚等據蕃望高下節級分付.”

실제 그 내면에서 작용한 기준은 당과의 관계였다. 718년(개원 6년) 吐火羅의 王弟 僕羅가 올린 상소를 보면 당이 정한 내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복라는 705년(中宗 神龍 원년)에 입조하여 宿衛하면서 4품 中郎將을 수여받았는데, 이때에 石國·龜茲 등등의 왕자·수령이 입조하여 번망에 따라 3품 將軍의 관직을 받자 이에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다.⁸⁴⁾ 이 상소에서 복라는 “조부 이래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나라의 왕이어서 번망이 존귀하고도 무겁고” “大唐에 충성하여 조공을 끊임없이 하였으며” “매 정월에 동참하여 당의 변경을 지켰고” “아울러 복라 자신은 입조하여 숙위하고 있음”을 들어 당에 공을 세운 적이 없는 소국들이 대국 토화라의 親王인 자신보다 높은 관직을 받는 것은 “홍려시가 번망의 대소에 따르지 않고 관작을 수여하기를 상주한” 행위라 비난하였다. 복라의 상소를 보면 홍려시가 등위를 판정하고 관직을 수여할 때 번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려시가 판단한 번망의 근거가 바로 諸國 사이에서의 국제적 지위만 아니라 조공과 숙위 등 당과의 양호한 관계가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소를 접수한 이후 현종은 “홍려시에게 예에 따라 品秩을 정하여 (복라가) 굴욕을 느끼지 않게 하라”는 칙을 내렸다.⁸⁵⁾ 복라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는 토화라가 당에 공적을 세우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한데 비해 석국·구자 등은 토화라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당은 외국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번망을 적용하여 등위를 결정함으로써 외국을 당 중심의 질서 속에 편입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번망 등급의 조정은 당대에 나타난 여러 외교 爭長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舊唐書』突厥傳에는 730년(개원 18년)에는 돌궐 사절과 蘇祿 사절이 연회에서 上席을 두고 쟁장을 벌인 일이 기록되어 있고,⁸⁶⁾ 『舊唐書』廻紇傳에는 758년(건원 원년)에는 회

84) 『全唐文』 권999, 僕羅, 訴授官不當上書. “僕羅克吐火羅葉護部下. 管諸國王都督刺史總二百一十二人. 謝國王統領兵馬二十萬衆. 罽賓國王統領兵馬二十萬衆. 骨吐國王石汗那國王解蘇國王石匿國王悒達國王護密國王護時健國王范延國王久越德建國王勃特山王各領五萬衆. 僕羅祖父已來. 並是上件諸國之王. 蕃望尊重. 僕羅兄 那都泥利承嫡繼襲. 先蒙恩敕差使持節就本國冊立爲王. 然火羅葉護積代已來. 於大唐忠赤. 朝貢不絕. 本國緣接近大食吐蕃. 東界又是西鎮. 僕羅兄 每徵發部落下兵馬. 討論擊諸賊. 與漢軍相知. 聲援應接. 在於邊境. 所以免有侵漁. 僕羅兄前後屢蒙聖澤. 媿荷國恩. 遂發遣僕羅入朝. 侍衛玉階. 至願獻忠殉命. 以爲臣妾. 僕羅至此. 爲不解漢法. 鴻臚寺不委蕃望大小. 有不比類流例. 高下相懸. 即奏擬授官. 竊見石國龜茲并餘小國王子首領等. 入朝元無功效. 並緣蕃望授三品將軍. 況僕羅身侍勒本蕃. 位望與親王一種. 比類大小. 與諸國王子懸殊. 卻授僕羅四品中郎. 但在蕃王子弟娑羅門瞿曇金剛龜茲王子白孝順等. 皆數改轉. 位至諸衛將軍. 唯僕羅最是大蕃. 去神龍元年. 蒙恩敕授左領軍衛翊府中郎將. 至今經一十四年. 久被淪屈. 不蒙准例授職. 不勝苦屈之甚.”

85)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請求, 11722쪽. “勅鴻臚卿准例定品秩勿令稱屈”

86) 『舊唐書』 권194하, 突厥傳하, 5191~5192쪽. “十八年, 蘇祿使至京師, 玄宗御丹鳳樓設宴. 突厥先遣使入朝, 是日亦來預宴, 與蘇祿使爭長. 突厥使曰: 『突騎施國小, 本是突厥之臣, 不宜居上.』 蘇祿使曰: 『今日此宴, 乃爲我設, 不合居下.』 於是中書門下及百僚議, 遂於東西幕下兩處分坐, 突厥使在東, 突騎施使在西. 宴訖, 厚賚而遣之.”

홀 사자와 黑衣大食 주장이 식장의 입장 순서를 두고 쟁쟁한 기록이 있다.⁸⁷⁾ 이에 당은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표면상 이를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실상을 보면 양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존재한다. 돌궐과 소록 쟁쟁사건의 경우 돌궐 사절이 突騎施의 別種인 小國 소록이 본래 자국의 신하였기 때문에 소록 대신 상석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나름 객관적인 국제 질서에 의거한 항의였다. 그럼에도 당은 소록이 연회의 주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양 사절을 식장의 동서로 자리를 나누어 접대하였다. 비록 당시 돌궐이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건국 초기부터 당을 위협해온 세력이며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는 돌궐에 대한 견제심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후대의 사건이지만 894년(昭宗 乾寧 4년) 발해 사절이 신라 사절의 밑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당은 각 국가의 강약에 따라 등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제도에 따라 그리하는 것으로 성쇠에 따라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⁸⁸⁾ 신라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를 보면 당이 정하는 번망이 결코 당시 국가 간의 번망 고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 발해가 비록 당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조공관계를 수립한 지 오래였지만 당과 신라의 우호관계에는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실례로 안사의 난이 발발하였을 때 발해는 당의 응원 사절을 두 차례 억류하며⁸⁹⁾ 사태를 방관하였으나 신라는 西蜀에 몽진한 현종에게 직접 사신을 파견하여 현종의 감격을 샀을 정도였다.⁹⁰⁾ 당과 양국 간의 이런 사정이 번망의 등위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753년(천보 12년)에 일어났다는 일본과 신라의 쟁쟁 사례는 일본에 귀국한 일본 사절이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일본 왕에게 보고한 것으로 외국이 당의 번망 등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⁹¹⁾ 결국 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은연중에 당의 인정을 받는 국제적 지위 확립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87) 『舊唐書』 권195, 廻紇傳, 5200쪽. “乾元元年五月壬申朔, 迴紇使多亥阿波八十人, 黑衣大食酋長閣之等六人並朝見, 至閣門爭長, 通事舍人乃分爲左右, 從東西門並入.”

88) 『增補文獻備考』 권171, 交聘考. “渤海國自謂國大兵強 而入唐朝獻 使臣座於新羅使之下 至是其賀正使王子大封爵進狀謂 許渤海居新羅之上 帝詔以國名先後 此不因強弱而稱 朝制等威令 豈以盛衰而改 宜仍舊慣 准此宣示 王因遣使附表曰 渤海莫慎守中 唯圖犯上 恥爲牛後 覬作龍頭 妄有論陳”

89) 『續日本紀』 권3, 天平寶字二年 十二月戊申條. “平盧留後事徐歸道, 遣果毅都尉行柳城縣兼四府經略判官張元潤, 來聘渤海, 且徵兵馬. 曰, 今載十月, 尙擊祿山. 王須發騎四萬, 來援平賊. 渤海疑其有異心, 且留未歸. 十二月丙午, 徐歸道果鳩劉正臣于北平, 潛通祿山. 幽州節度使史思明, 謀擊天子. 安東都護王玄志仍知其謀, 帥精兵六千余人, 打破柳城斬徐歸道. 自称權知平盧節度, 進鎮北平. 至德三載四月, 王玄志遣將軍王進義, 來聘渤海, 且通國故曰, 天子歸于西京, 迎太上天皇于蜀, 居于別宮, 殄滅賊徒. 故遣下臣來告命矣. 渤海王爲其事難信, 且留進義, 遣使詳問.”

90) 『三國史記』新羅本紀, 景德王15年條, 188쪽.

91) 『續日本紀』 권19, 孝謙天皇紀, 天平勝寶六年正月丙寅條.

和蕃公主의 사례는 당이 설정한 변방 질서와 관련이 있다. 물론 변방 자체가 求婚과 許婚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의 변방을 높이기 위해 당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도 하였다. 즉 634년(정관 8년) 토번이 당에게 구혼한 배경에는 서돌궐과 吐谷渾이 각각 高祖 시기와 정관 초기에 당과의 혼인이 허락된 것이 있었다. 구혼이 거절되자 토번 사자는 귀국하여 토욕혼 왕의 이간으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토번은 토욕혼을 격파하고 당의 변경에 군대를 주둔하여 청혼을 협박하였다.⁹²⁾ 무력으로 구혼을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당의 援護를 원하여 혼인관계를 맺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변방에서 인접국보다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벌인 처사로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과격하게 자국보다 변방이 낮은 국가가 혼인을 했음에도 자국이 당의 공주와 결혼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 사례도 존재한다. 725년(개원 13년), 돌궐은 당에서 온 사신에게 “토번의 개들도 당과 혼인하고 돌궐의 옛 노예인 해와 거란도 당의 공주를 맞아들였는데 돌궐이 여러 차례 청혼하였어도 유독 허락을 못 받았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또한 “여러 번 청혼해도 허락받지 못했음이 진실로 여러 나라에 수치스럽다”하여 외국과의 변방 우열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⁹³⁾ 돌궐이 默啜 시기에 벌인 당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당 역시 諸國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642년(정관 16년) 태종은 설연타의 청혼을 거절하며 신하들에게 “지금 만약 가한에게 공주를 결혼시키어 대국의 사위로 만들면 雜姓 部落이 그 예우를 더욱 숭상하여 黨援으로 깊이 결탁하게 되니 잡성 부락은 무릇 꿇고 설연타에 더욱 복종할 것이다. … 나는 공주를 주지 않고 사신을 뽑아 내가 그를 버렸음을 알릴 것이니 그리하면 잡성 부락이 설연타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⁹⁴⁾ 그러나 당이 내심 이런 목적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구혼 허락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었고 그에 한하여 불허의 이유로 “너는 몇 년간 朝獻을 하지 않았다(爾數年闕朝獻)” 혹은 “성실히 조공하여 빠짐이 없었다(勤職貢而無厥)”라고 하며 조공을 강조하였다. 조공이 당과의 관계 및 국제 사회 변방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외국과 외국 사절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회유·통제책으로서 조공이 갖는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조공 사절이 갖는 특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도 당이 사절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사절은 당에서 소위 조공 무역이외에도 私貿易을 행할 수 있었다. 『新唐書』에 의하면 돌

92) 『冊府元龜』 권978, 外臣部, 和親1, 11325쪽

93) 『冊府元龜』 권979, 外臣部, 和親2, 11333쪽.

94) 『冊府元龜』 권978, 外臣部, 和親1, 11326쪽.

궐 사신이 市坊을 설치하고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 주객낭중이 기록하여 상주하고 그 질과 양의 경중에 대해서는 태부승 1명이 관리하였다.⁹⁵⁾ 또한 사절이 市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할 때 홍려시에서 이를 책임 관리하였다. 『全唐文』에는 “홍려시 안의 토번의 사절이 평소 물정을 잘 알아서 우리의綾錦과 弓箭 등의 물품을 원해서 구입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市에서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여도 遠夷에게 위엄을 보일 수 있고 사사로이 구매하게 하여도 중국에 손해는 없다. 마땅히 그 성품에 따르고 蓄精을 저해하지 말라.”는 判辭가 있다.⁹⁶⁾ 즉 홍려시가 사절을 대신하여 관련부서에 물품의 구매 여부를 문의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사절이 당에서 구입해가는 물품의 경제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사서를 보면 당에 파견되는 사신에게 여비가 사여된 기록들이 있다. 당시 당에 파견된 외국 사절은 당에서 그 체재와 여정을 책임졌으므로 이 여비는 왕복 여정의 경비로만 사용되었을 리 만무하며 아마도 사절의 물품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777년, 14차 견당사를 통해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전 入唐大使에게 金 大100兩을 하사하였고 803년, 16차 견당사가 출발할 때 大使에게 金 200兩, 副使에게 150兩을 하사하였다. 金 대1량을 錢으로 환산하면 13,430文이며 840년대 중국 山東半島의 곡가가 대개 米 1斗에 40문, 粟 1斗에 30~50문임을 감안하면 대략 사절이 소지한 금의 값어치를 알 수 있다.⁹⁷⁾ 『延喜式』에도 입당대사에게 絁 60匹, 綿 150屯, 布 150段을 사여하고 부사에게는 시 40필, 먼 100둔, 포 100단을 사여하며 그 이하 判官·錄事 등등에게도 차등 있게 사물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물론 사절단의 노고에 대한 상급이겠지만 그 사물이 사행 중의 각종 무역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開元 초에 일본의 사절이 文籍을 구매하여 귀환했을 때 사절은 자신이 지닌 재화로 그 값을 치렀을 것이 분명하다.⁹⁸⁾ 그러나 모든 물품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唐六典』 권3, 戶部, 金部郎中條에서는 “官私의 호시에서는 白練·蓄綵만을 사용하며 그밖에는

95) 『新唐書』 권46, 百官志1, 尙書禮部, 主客郎中, 1196쪽. “突厥使置市坊, 有貿易, 錄奏, 爲質其輕重, 太府丞一人涖之.”

96) 『全唐文』 권172, 張鷟1. “鴻臚寺中 土蕃使人 素知物情 慕此處綾錦及弓箭等物 請市 未知可否 一人有慶. 四海無虞. 萬國於是星馳. 八方由其霧湊. 烏孫合種. 咸雁集於鴻臚. 犬族振群. 並蜂歸於蠻邸. 眷彼茅宇. 開此藁街. 卽崇三揖之儀. 爰設九賓之禮. 祇如土蕃使者. 實曰酋豪. 沮渠蒙遜之苗. 禿髮烏孤之族. 占風入謁. 越駝嶺而輸誠. 就日來朝. 隔驢山而納款. 觀鶴綾之絢爛. 彩映冰霜. 觀鳳錦之紛葩. 光含日月. 彎弧六合. 犀角麋筋. 勁箭三同. 星流電激. 聽其市取. 實可威於遠夷. 任以私收. 不足損於中國. 宜其順性. 勿阻蓄情.”

97) 이유진, 「唐 後期, 金銀과 東亞細亞交易」, 『中國學論叢』 27집, 422~424쪽.

98) 『舊唐書』 권196상, 東夷傳, 日本國, 5341쪽. “開元初, 又遣使來朝, 因請儒士授經. 詔四門助教趙玄默就鴻臚寺教之, 乃遣玄默闊幅布以爲束修之禮, 題云「白龜元年調布」. 人亦疑其僞. 所得錫寶, 盡市文籍, 泛海而還.”

모두 교역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권22, 諸互市監條에서는 互市에서 말·낙타·나귀·소 등을 외국과의 교역에서 얻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외국에서는 당에 가축으로 대표되는 토산물을 주고 당은 이에 白練·蕃綵로 값을 치르는 교역 형식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가장 원하는 비단을 구입하는 것은 허가되지 그 종류는 제한시켜 놓았다. 714년(개원 2년)에 반포된 勅에 의하면 “錦·綾·羅·縠·繡·織成·紬·絹絲·犛牛尾·眞珠·金·鐵”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금하였다.⁹⁹⁾ 錦·綾 등도 비단의 일종이지만 禁物로 지정되어 있다. 금·능이 번객에 대한 사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금물로 지정된 비단들은 고급품으로 추정되며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사절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사절 혹은 외국 상인이 조정의 상사 이외로 대량 구매하여 그 격을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입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또한 唐律에 의하면 당에 입국한 외국 사신과 사사로이 교역한 경우 각각 장물을 계산하여 盜에 準하여 論하였다.¹⁰⁰⁾ 이 두 사항을 조합해보면 官을 중개하지 않은 교역과 禁物의 교역이 비록 사절이라도 엄격하게 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717년(개원 5년) 일본이 먼 해외에서 내조한 점을 감안하여 사절이 市에서 교역할 때 금지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칙을 내렸다.¹⁰¹⁾ 이를 보면 교역의 제한 역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조정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조공의 형식을 갖추지만 실제로 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변경에서 행해지는 상황도 존재하였다. 투르판 문서 [72TAM230:46/1(a)] 『儀鳳三(678)年度支奏抄·四年金部符』를 보면 安北都護府와 單于大都護府에 소재하는 諸驛에게 靈州都督府와 朔州에서 賜物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²⁾ 이 사료는 驛이 공물을 받아 중앙으로 보내고 조공한 이민족에 대해 사물을 하사하는 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⁰³⁾ 도호부의 역은 태종과 북방 유목민이 설치에 합의하였던 참천가한도의 66개 역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공의 편의를 위해 역을 설치하였고 위 사료를 통해 역이 그 설치목적에 부응

99) 『唐會要』 권86, 市. “開元二年閏三月勅. 諸錦. 綾. 羅. 縠. 繡. 織成. 紬. 絹絲. 犛牛尾. 眞珠. 金. 鐵. 並不得與諸蕃互市. 及將入蕃. 金鐵之物. 亦不得將度西北諸關.”

100) 『譯註唐律疏議-各則(上)』 권8, 衛禁 31조, ‘越度緣邊關塞’, 2090쪽. “因使私有交易者 準盜論疏議曰 (중략) .因使者 謂因公私入蕃 蕃人因使入國 私有交易者 謂市買博易 各計贓準盜論”

101) 『冊府元龜』 권974, 外臣部, 褒異1, 11445쪽. “乙酉 鴻臚寺奏 日本國使 請謁孔子廟堂 禮拜寺觀 從之 仍令州縣 金吾相知 簡較搦捉 示之以整 應湏作市 買非違禁入蕃者 亦容之.”

102) “擬報諸蕃等物, 並依色數送□. 其交州/都督府報蕃物, 於當府折□□□用, 所/有破除見在, 每年申度支金部. 其安北/都護府諸驛賜物, 於靈州都督府給. 單于大/都護府諸驛賜物, 於朔州給 (이하생략)” 荒川正晴,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년, 285쪽에서 재인용.

103) 大津透는 ‘諸驛賜物’의 대상을 두 都護府가 관할하는 遊牧 羈縻府州 部落의 수령으로 보았다. 大津透, 『日唐律令制財政構造』, 岩波書店, 2006년, 56~57쪽 참조.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역에 지급되어 제번에 보수로 줄 사물의 양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通典』에 의하면 세금으로 거둔 布絹綿 1300만 필이 諸道の 兵賜 및 和糴과 아울러 遠小州의 官料·郵驛費로 지출되었다.¹⁰⁴⁾ 이 1300만 필의 지급 내역을 다시 지급 대상별로 분석하면 諸道の 節度使·群牧에게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邊州·羈縻州인 遠小州에 1년 관료·우역비로 210만 필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10만 필 중 관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 부분만이 우역비라고 상정하더라도 상당액이 우역비 즉 제역의 사물로서 지급되고 있다.¹⁰⁵⁾ 즉 개원·천보 연간에 1년마다 다량의 絹이 조공에 대한 회사로 지급되었다. 747년(천보6년) 九姓, 堅昆 및 室韋가 말 60필을 헌상하니 西受降城使에게 낙인을 찍어 납입하도록 하였다.¹⁰⁶⁾ 즉 사절이 입경하지 않고 공물만 변방에 바친 것으로 서수강성사가 이 말들을 운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回賜는 서수강성의 驛에서 이뤄졌을 것이다.

4. 결론

당 전기 조공 사절의 왕래로 대표되는 외교 교섭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민족 국가의 회유를 들 수 있다. 당에 입조한 외국 사절은 입국한 순간부터 당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절은 당의 관인과 동등한 신분적 대우를 받으며 역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경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여정에서 필요한 숙박소와 식량, 생활용품은 모

¹⁰⁴⁾ 『通典』 권6, 食貨6, 賦稅下, 110~111쪽.

“大凡都計租稅庸調，每歲錢粟絹綿布約得五千二百三十餘萬端疋屯貫石，諸色資課及句剝所獲不在其中，其度支歲計，粟則二千五百餘萬石，三百萬折充絹布，添入兩京庫。三百萬迴充米豆，供尙食及諸司官廚等料，並入京倉。四百萬江淮迴造米轉入京，充官祿及諸司糧料。五百萬留當州官祿及遞糧。一千萬諸道節度軍糧及貯備當州倉。布絹綿則二千七百餘萬端屯疋，千三百萬入西京，一百萬入東京，千三百萬諸道兵賜及和糴，并遠小州使充官料郵驛等費。錢則二百餘萬貫。百四十萬諸道州官課料及市驛馬，六十餘萬添充諸軍州和糴軍糧。

自開元中及於天寶，開拓邊境，多立功勳，每歲軍用日增。其費糴米粟則三百六十萬疋段，朔方、河西各八十萬，隴右百萬，伊西、北庭八萬，安西十二萬，河東節度及群牧使各四十萬。給衣則五百二十萬，朔方百二十萬，隴右百五十萬，河西百萬，伊西、北庭四十萬，安西五十萬，河東節度四十萬，群牧二十萬。別支計則二百一十萬，河東五十萬，幽州、劍南各八十萬。餽軍食則百九十萬石。河東五十萬，幽州、劍南各七十萬。”

¹⁰⁵⁾ 李錦繡와 荒川正晴은 『儀鳳三年度支奏抄·四年金部符』에 나오는 ‘諸驛賜物’을 『通典』에 나오는 ‘郵驛費’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李錦繡, 『唐代財政史稿』, 北京大學出版社, 1995년, 987~988쪽; 荒川正晴,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284~286쪽 참조.

¹⁰⁶⁾ 『冊府元龜』 권971, 外臣部, 朝貢4, 11412쪽. “九姓堅昆及室韋獻馬六十匹 令西受降城使印而納之”

두 당 조정이 제공하였다. 이는 경사에 체재할 때나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는 귀국 식량까지도 당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황제 알현 후 사절에게 베푸는 연회와 상사를 통해 당은 그들의 환심을 샀으며 특히 상사는 사절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적절한 회유책이었다. 또한 공물을 바치고 그보다 더 값어치가 높은 비단 등을 回賜받음으로써 일종의 국가 간 무역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조공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이뿐만이 아니어서 사절이 직접 물품을 교역하거나 혹은 대개 조공에 부수되어 허락받는 호시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회유를 통해 당은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으나 외국 사절에게 시혜적인 태도만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당은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절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 예로 사절을 고립시켜 국가 기밀의 누설을 규제하는 법령과 禁輸品の 설정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사절로 대표되는 외국에 대해 蕃望 等位에 따른 차별대우를 적용하여서 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은연중에 외국에 이식하였다. 이 때문에 주변 외국들은 번망으로 인해 국가 간에 爭長하며 서로 소원해지는 반면, 당과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다.

契丹의 渤海遺民에 대한 移住政策

나 영 남(한국외대)

目次

- I. 머리말
- II. 이주정책의 배경
- III. 발해 이주민의 안치방식
 - 1. 일반 주현의 編戶
 - 2. 頭下軍州의 두하호
 - 3. 幹魯朶의 宮分戶
- IV. 맺음말

I. 머리말

요대 통치자는 발해를 멸망시키는 과정 및 멸망시킨 후에도 발해인들을 대규모로 이주 시켰는데 그 시점은 요 중기의 성종이 州縣制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이주정책은 처음 태조 야율아보기에 의해 비롯되어 태종시기에 대규모로 실시하였고 그 후 성종시기에 이르러 大延琳의 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발해인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러한 이주정책의 배경은 각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반요성향이 강한 발해인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농경을 생활방식으로 하는 발해인을 내지로 이주시켜 안정적인 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보기 이후 거란 통치자들은 상경을 비롯하여 동경과 남경 지역으로 발해유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렇다면 거란 내지로 이주된 수십만의 발해인들은 어떤 형태로 안치되어 통치를 받았는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정주문명의 체제형식이었던 군현제에 익숙해져 있던 발해 농경민들을 부락민들과 잡거시킨다는 것이 거란왕조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거란통치자들은 因俗而治의 방식을 채택하

여 농경민과 부락민을 구분하여 통치하고자 했다. 이로써 발해 이주민들은 대체로 주현제의 관할에 소속되었으며 그 존재방식은 지역에 따라 一般州縣 및 韓魯朶州縣, 奉陵邑, 頭下軍州 등으로 나뉘어 안치되었다. 하지만 발해인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안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遼史』 「地理志」와 「榮衛志」를 통해 발해인의 이주 경로와 주현의 설치에 대한 개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주정책의 배경

요조의 이주정책은 주현의 설치와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주현제의 초보적 실시는 태조 야율아보기가 漢城이라는 私的인 領地를 설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야율아보기는 대외 정복을 착수한 이래 부단히 포로를 잡아오거나 정복지의 인구를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유입된 한족인구에 대해 처음에는 “漢城”을 수축하는 방식으로 安置했는데 潢河 남쪽의 龍化州가 대표적이었다. 용화주는 아보기가 칭제하기 전까지 私州의 성질을 지녔으며 또한 요대 귀족이 건립한 최대 규모의 頭下州였다. 아보기가 칭제한 후에 용화주는 보통 행정주로 바뀌었으며 그것은 거란정권이 지방행정제도를 정립시키는데 있어서 이정표가 되었다.

야율아보기가 처음에 정복지의 포로들을 거란 내지로 옮긴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권화된 유목사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新五代史』에 따르면

제부는 오랫동안 아보기가 교대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자 漢城을 치소로 독립하겠다고 제안하여 諸部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漢人을 이끌고 耕種하고 幽州같은 방식으로 성을 쌓아 한인들을 안주시켰다. 그는 諸部の 大人들이 소금의 공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줄 것을 청했고 이를 위해 소와 술을 가지고 온 제부 대인들에게 주연을 베푸는 과정에서 모두 살해했다.¹⁾

마침내 야율아보기는 이 사건을 계기로 916년에 칭제 건원하여 국호를 거란, 연호를 神冊이라 부르는 국가를 정식으로 건국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廣土衆民”²⁾의 목표를 계속 추진하여 서쪽으로 “突厥, 吐渾, 黨項, 小蕃, 沙諸部를 모두 평정하였고”³⁾ 동쪽으로는 거란의 오랜 讎仇였던 발해를 멸망시켰다.

1) 『新五代史』 卷72 「四夷附錄第一」

2) 『遼史』 卷2 「太祖紀」 “已有廣土衆民之志”

3) 『遼史』 卷1 「太祖本紀 上」 “親征突厥吐渾黨項小蕃沙諸部, 皆平之”

태조는 일찍이 한인들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해를 멸망시키는 과정 중에도 많은 俘虜들을 거란의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예컨대 많은 발해인들은 거란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합락된 성읍 중에서 많은 성읍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⁴⁾ 이에 대해 야율아보기는 장수를 파견하여 그들의 반란을 평정하였고 서둘러 군대를 철수하면서 “대인선을 황도 서쪽으로 보내 성을 쌓고 살게 하였으며”⁵⁾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군민을 거란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당시 “부여부 사람들은 황도 서쪽으로, 압록부 사람들은 황도 남쪽으로 옮겨졌으므로”⁶⁾ 대부분의 발해인들은 西拉木倫河 및 老哈河 유역으로 집중되었다. 동시에 태조는 중국을 南征하는 과정에서도 대량의 한인들을 요동으로 천사시켜 주현을 설립하였는데 이들과 발해인을 잡거시켰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태조 야율아보기는 발해인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주로 上京 臨潢府 주위에 강제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주현 및 두하주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을 공급받고자 했다. 이는 일회성 약탈보다는 장기적 소득원인 농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농경을 생활방식으로 하는 한인과 발해인을 거란 내지로 이주시켜 북방지역의 농업을 개발시켰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곡물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정주문명의 체제방식이었던 주현제를 점차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후 태종시기는 요조의 주현제가 공고해지고 점차 규범화해 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동경도를 중심으로 주현제가 계속해서 확대 실시되었고 태조 이래 혼란했던 지방 행정관리도 규범에 맞게 했다. 당시 주현의 설치에 동란의 서천과 관련이 깊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후 그것을 대신하여 거란의 위성국가인 동란을 세운 바 있다. 발해는 선진화 정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문명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을 모두 전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호구를 약탈하는 방식만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발해의 중심지역이 거란의 본토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 자치를 허용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이 형성되어 大氏가 복벽할 후환이 남을 수 있었다. 따라서 태조 야율아보기는 발해의 고지에 동란을 세워 그의 장자 耶律倍를 人皇王으로 책봉하여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태조의 죽음으로 동란은 존립에 위기를 맞게 된다. 발해의 잔여세력이 계속하여 반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민들이 고려 및 중원과 여진으로 망명해 버렸다. 또한 황후파와 황태자파의 격렬한 권력투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발해고지에 대한

4) 『遼史』 卷74 『康默記傳』, “已下城邑多叛”

5) 『遼史』 卷2 『太祖本紀 下』, “衛送大諲譌于皇都西 築城以居之 賜諲譌名曰烏魯古 妻曰阿里只”

6) 『遼史』 卷37 『地理志 一』, “太祖下扶餘 遷其人於京西” “太祖破鴨渌府 盡徙其民居京之南”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황위계승에 밀려난 야율배가 동란의 발해유민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을 두려워한 태종은 어떤 형태로든 동란을 제어해야만 했다. 마침내 태종은 발해고지의 실질적 지배를 포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야율배가 동란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의 행동을 통제하였고 그 대신 중대성 右次上 耶律羽之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 동란의 서천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야율우지는 天顯3年(928)에 아래와 같이 上表하였고 태종은 이를 기쁘게 가납하여 “동란민을 이주시켜 東平에 채우도록 하였다.”⁷⁾

“발해는 예전에 南朝(중국의 국가들)를 두려워하여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지키며 忽汗城에 거주하였는데 지금……그 遺種이 점차 번식하여 멀리 떨어진 지경에 거주하니, 후환이 될까 걱정된다. 梁水의 땅은 그들의 고향이고 토지가 비옥하며 나무와 철, 소금, 물고기 등의 이익이 있으니 그들이 미약한 틈을 타서 인민을 되돌려 읍기는 것이 만대의 좋은 계책이 될 것이다.……그런 연후에 그 무리를 골라 우리의 왼쪽을 보좌하게 하고 돌궐과 당항, 실위 등이 우리의 오른쪽을 돕는다면 남방(중국)을 앞서서 제압하여 천하를 통일하여 聖祖가 이루지 못한 공을 이루고, 후세에는 끝없는 복을 줄 것입니다.”⁸⁾

이상과 같이 태종이 동란과 발해유민의 통제수단으로 이주정책을 택했던 것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는 “세 사람이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해낼 정도”⁹⁾로 용맹한 발해인들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남방을 제어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 발해인들은 대부분 거란의 동경도 요양지구로 이주되었는데 그 수가 태조시기보다 훨씬 초과하였으며 무려 1府26州9縣이나 설치하였다.

이어서 마지막 대규모의 천사는 성종시기에 이루어졌다. 성종시기는 타민족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활동이 한층 왕성하였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한인 및 발해인 등의 이주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종래 안치되어 있던 俘戶의 호구가 증식하였으므로 국내 각지에 다수의 주현을 새롭게 증설해야만 했다. 여기에는 동란이 서천할 때 발해인 대다수가 요동으로 집중되어 거란 통치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분산시켜야만 했다. 성종이 발해인을 주로 중경으로 천사한 것은 전통적으로 奚人이 밀집되어 있던 중경지역에 타민족을 천사시켜 “奚人, 契丹人, 漢人, 渤海人을 잡거하게”¹⁰⁾함으로써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7) 『遼史』 卷3 『太宗本紀 上』 “詔遣耶律羽之遷東丹民以實東平”

8) 『遼史』 卷75 『耶律羽之傳』

9) 『松漠紀聞』 卷1 “男子多智謀 驍勇出他國右 至有三人渤海當一虎”

특히 太平9年(1030)에 이르러 동경도에 거주하는 발해인의 주현은 재차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해 8월 발해유민 大延琳이 반요의 기치를 들자 동경도에 거주하던 발해유민 대다수가 그를 지지하였고 요조는 1년이 경과한 태평9년(1031) 8월에 비로소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때 성종은 반란의 기반을 끊기 위해 11월에 “조를 내려 발해 舊族 중 공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관직을 내리고 나머지는 來·隰·遷·潤 등의 주로 이주시켜 거주토록 하였다.”¹¹⁾ 이것은 요조가 세 번째 대규모로 발해유민을 천사한 것이지만 그 규모는 전에 이루어졌던 두 차례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성종은 계속해서 동경도의 발해유민을 주로 중경도로 분산시켜 세력을 약화시켰는데 이런 조치는 어느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종족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여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상과 같이 요대 발해인의 강제 이주는 대부분 요 전기에 발생하였던바 주로 태조·태종·성종 세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요조는 기존의 유목왕조와는 달리 그들의 본거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지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한인 및 발해인 등의 농경민에 대한 이주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거란 본토를 충실히 개발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반요성향이 강한 발해인들을 거란 및 한족, 해족 등의 거주지로 이주시켜 다른 민족과 잡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거란 통치자들은 발해인을 내지로 이주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란주민으로 순치시켜 요조의 세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이주정책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발해 이주민의 안치방식

1. 일반 주현의 編戶

요조의 주현은 통치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주현, 두하군주, 알로타주현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주현은 그 비중이 절대적이며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주요 행정단위였다.

『遼史』『地理志』에서는 행정단위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 『契丹國志』卷22 『四京本末』“分奚契丹漢人渤海雜處之”

11) 『遼史』卷17 『聖宗本紀 8』“詔渤海舊族有助勞材力者敘用 餘分居來隰遷潤等州”

태조는 迭剌部の 무리를 이끌고 요런씨를 대신하여 임황(상경 임황부)에서 일어나 황도를 세웠다. 동쪽으로 발해를 병합하여 성읍을 얻은 것이 103개이다. 태종은 晉室을 세워 幽·涿·檀·薊·順·營·平·蔚·朔·雲·應·新·嬀·儒·武·賁의 16주를 얻었다.…… 태종이 황도를 상경으로 하고 유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켰으며 남경을 동경으로 하였다. 성종은 중경을 설치하고 홍종은 운주를 서경으로 승격시켰으므로 5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벌하여 얻은 부호로 州를 요충지에 건설하였는데 그 州 대부분은 원래의 주명을 사용하였다. 거듭 私奴로 投下州를 두었다. 모두 京이 5, 府가 6, 州·軍·城이 156, 縣이 209, 部族이 52, 屬國이 60이었다.¹²⁾

이와 같이 정벌과정에서 주현과 두하주를 건설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경을 중심으로 많은 주현이 설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주현은 부락과 混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 고대 유목민족이 건립한 정권 중에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다.

한편 발해인의 안치와 관련 태조 및 태종, 성종시기로 분별하여 일반주현의 분포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태조가 발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발해주민들을 강제로 거란 내지에 이주시켜 거란의 상경도 및 동경도에 주현을 설치했다. 『遼史』 『地理志』의 기사를 통해 주현의 설치를 표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道名	新設州縣	渤海의 來源地	戶數	비고
上 京 道	長泰縣	龍泉府 長平縣	2000	
	定霸縣	夫餘府 強師縣	1000	성종 통화8년 설치
	保和縣	龍泉府 富利縣	4000	성종 통화8년 설치
	踏縣	未詳	3000	한인과 잡거지역
	宣化縣	鴨渚府 神化縣	4000	성종 통화8년 설치
	長霸縣	龍泉府 長平縣	2000	
	咸寧縣	顯德府 長寧縣	1000	
	懷州	龍泉府		세종연간 설치
	夫餘縣	夫餘府 夫餘縣	1500	세종연간 설치
	顯理縣	顯理府	1000	세종연간 설치
	長寧縣	顯德府	4500	
	義豐縣	鐵利府 義州	1500	
	永安縣	龍原府 永安縣	800	
	長樂縣	遼城 長樂縣	4000	
	臨河縣	豐永縣	1000	
東京 道	肅愼縣	未詳		
	廣州(鐵利州)	鐵利郡		철리주를 철폐 후 개태7년에 재설치
	遼州	東平府		
	永平縣	懷遠府 優富縣		
	歸州	未詳		
中京 道	黔州	未詳		
	盛吉縣	興州 盛吉縣		
	嚴州	未詳		

12) 『遼史』 卷37 「地理志 一」

태조시기에 실시한 주현제는 전쟁과정 중에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엄격하게 통일된 규칙이 없었다. 郡·州·城·縣·寨 등의 명칭이 번거로울 정도로 많았으며 등급이 혼란하여 그 소속이 무질서했다. 아마도 神冊4年(919)에 요양 고성을 터로 건립한 동평군은 분명히 발해의 영향을 받은 행정단위였을 것이며 후에 남경으로 승격되었다.¹³⁾ 또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현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주민 전체를 모두 주현에 안배하지는 못했다. 예컨대 懷州 및 그 아래에 관할되는 夫餘縣, 顯理縣은 모두 태조시기에 발해인을 이주시킨 곳이지만 세종시기에 비로소 현을 설치하였고 臨潢府의 定霸縣, 保和縣, 宣化縣도 성종 統和8年(990)에 이르러 현을 설치하여 應天皇后 및 景宗의 幹魯朵인 長寧宮과 彰愍宮에 각각 예속시켰다. 결국 태조시기에 지방행정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주지는 있었으나 주현의 설치가 없었고 단지 주를 설치하였으나 그 밑에 관할하는 현이 없거나 현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위에 통치하는 주가 없는 등 혼란한 상태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이 출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거란 초기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현제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태종과 세종시기는 요조 주현제가 공고해지고 점차 규범화해 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주현제를 계속 확대 실시하여 요조 동남부 지구의 행정구획을 중점 건설하였고 태조 이래 혼란한 지방 행정관리를 규범에 맞게 했다. 당시 연운16주를 요조 판도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의 결과로 요동지구에 많은 주현을 신설하게 되었다. 즉 동란의 발해인을 대량으로 천사시켜 동평군을 채웠다. 그리고 동평군을 남경으로 승격하였으나 天顯13年(938)에 後晉으로부터 연운16주를 할양받자 幽州를 南京으로 승격시키고 원래의 남경을 다시 동경으로 개칭하였다.

동란국이 남쪽으로 옮겨간 것은 발해의 유민을 대대적으로 이주시킨 것이며 이 때 발해의 주현도 함께 옮겨가면서 어떤 것은 남아있고 어떤 것은 폐지되었다. 예컨대

遼陽縣 本渤海國金德縣地 漢涖水縣 高麗改爲勾麗縣 渤海爲常樂縣

開州 鎮國軍 節度 本濊貊地 高麗爲慶州 渤海爲東京龍原府 有宮殿, 都督慶鹽穆賀四州事.
故縣六: 曰龍原·永安·烏山·璧谷·熊山·白楊 皆廢

盧州 玄德軍 刺史 本渤海杉盧郡 故縣五: 山陽·杉盧·漢陽·白巖·霜巖 皆廢¹⁴⁾

여기에서 무릇 이름이 바뀐 주는 본래 어떤 주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옛 현을

13) 楊福瑞『遼朝追行州縣制過程考述』(『內蒙古社會科學』4期, 2008)

14) 『遼史』卷38「地理志 二」

모두 폐지하였다는 것은 다른 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태종시기 발해인을 동경도로 강제 이주시켜 설치한 주현을 『遼史』 『地理志』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渤海의 來源地	遼 東京道 內 新說州縣	現在 位置
上京 龍泉府	龍州(龍泉府治)	龍州(黃龍府)	吉林 農安縣城
	長平縣, 富利縣, 佐慕縣, 肅愼縣	黃龍縣(龍州屬縣)	吉林 農安縣城
	永寧縣, 豐水縣, 扶羅縣	遷民縣(龍州屬縣)	미상
	永平縣	永平縣(龍州屬縣)	미상
	湖州	湖州	미상
	渤海	渤海	미상
東京 龍原府	慶州(龍原府治)	開州	遼寧 鳳城縣
	鹽州	鹽州	遼寧 鳳城縣 경내
	穆州	穆州	
	賀州	賀州	
南京 南海府	沃州	海州	遼寧 海城縣
	椒州	耀州	海州縣 요주성
	晴州 (晴州의誤記)	嬪州	미상
中京 顯德府	顯州(顯德府治)		北鎮縣
	金德縣(顯州所屬)	遼陽縣	북진현 경내
	永豐縣(顯州所屬)	仙鄉縣	북진현 경내
	鷄山縣(顯州所屬)	鶴野縣	북진현 경내
	長寧縣(顯州所屬)	興遼縣	북진현 경내
	杉盧郡	盧州	개평현 웅악성
	鐵州	鐵州	遼陽縣 남쪽
	興州	興州	미상
	湯州	湯州	미상
	榮州	崇州	미상
東平府	白巖城	巖州	심양시 근처
	蒙州	棋州	창도현 서쪽 경계
	潘州(潘州의誤記)	潘州	심양시
定理府	慕州	慕州	길림 임강서북
安遠府	銅州	銅州	요녕 해성현
	鄧州	鄧州	
	涑州	涑州	소밀성
所屬 未詳	集州	集州	
	麓州	麓州	요녕성 북진
	來源未詳	肅愼縣	
		貢珍縣	
		尙州	
		東州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압록부와 부여부에 속한 여러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요하 이동지역으로 이주되었다. 다만 주현의 설치에 있어서 위치는 다르지만 발해시기의 지명과 요대의 지명이 일치하거나 혹은 새로운 지명으로 바꾼 것으로 그 부류가 일정하지 않다. 한편 尙州와 東州, 肅愼縣, 貢珍縣 등과 같이 주현은 있으나 來源地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은 『遼史』가 杜撰이라는 점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태조와 태종에 걸친 두 차례의 대규모 천사는 요의 상경도와 동경도에 발

해유민을 안치시킴으로써 행정구조가 기본적으로 고정화되었다. 다만 작은 변화가 있는데 세종과 목종시기에 발해인으로 구성된 5개 주현의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顯州 奉先軍 上 節度 本渤海顯德府地 世宗置 以奉顯陵 顯陵者 東丹人皇王墓也. … 應曆元年 穆宗葬世宗於顯陵西山 仍禁樵採. … 統州三縣三: 奉先縣 山東縣 歸義縣 嘉州 遼西州 康州¹⁵⁾

귀의현은 귀부해온 발해인들로 설치된 현이며 그 외 봉선현, 산동현, 강주는 원래의 장락현민, 영풍현민, 솔빈부의 인호를 각각 나누어 설치한 주현이다. 이외 경종 保寧年間에 황룡부의 발해인 燕頗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그 잔당 천여 호를 通州에 안치시켰다.

이후 성종시기에 다시 한 번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요조는 100여년의 발전을 거쳐 국력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각종모순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성종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사회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주현제를 조정하여 완성하는 것이 그 사회개혁의 일환이었다. 이와 관련 성종은 “과거에 칠금산과 토하 근처를 지나가다 남쪽을 바라보니 성곽과 집들이 너무 조밀한 상태이니 도시를 세우도록 의논케 함으로써”¹⁶⁾ 지방 주현제의 불균형한 상황을 조정하고자 했다. 중경도의 구획은 이로써 시작되었으며 주현의 설치도 본격화되었다. 통화25년(1007)에 마침내 중경 대정부를 창건하여 한호 및 발해호를 부단히 이주시켰다. 성종은 開泰8年(1019)에 다시 “寧州의 발해호를 요하와 토하 사이로 이주시켰고” 또한 “태종이 세운 은주 및 은화현에도 開泰年間에 발해호로 이를 채웠다.”¹⁷⁾ 특히 太平9年(1029)에 大延琳의 반란을 계기로 반요 발해인을 분산시키기 위한 강제이주가 단행되었다.

遷州 興善軍 下 刺史 本漢陽樂縣地 聖宗平大延琳 遷歸州民置 來屬 有箭筈山 統縣一: 遷民縣

潤州 海陽軍 下 刺史 聖宗平大延琳 遷寧州之民居此 置州 統縣一: 海陽縣 本漢陽樂縣地 遷潤州 本東京城內渤海民戶 因叛移於此¹⁸⁾

詔渤海舊族有勳勞材力者絃用 餘分居來·隰·遷·潤等州¹⁹⁾

15) 『遼史』 卷38 「地理志 二」

16) 『遼史』 卷38 「地理志 二」 “嘗過七金山土河之濱, 南望有雲氣郭樓閣之狀, 因議建都”

17) 『遼史』 卷39 「地理志 三」 “恩州… 開泰中 以渤海戶實之 初隸永興宮 後屬中京 統縣一”

18) 『遼史』 卷39 「地理志 三」

19) 『遼史』 卷17 「聖宗本紀」

이렇게 성종이 발해인을 중경도로 이주시켜 설립한 주현은 윤주, 은화현, 천주, 천민현, 윤주, 해양현, 래주, 습주 등이 있다. 그 외 상경과 동경 양 지구에도 성종시기에 주현을 설치하였다. 성종시기에 일부 漢戶를 제외하고 이주민으로 州縣을 설치한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고려를 정벌하고 발해 대연림을 평정하여 포로로 잡은 민호였다. 예컨대 상경 임황부의 易俗, 遷遼, 渤海縣은 바로 발해叛民으로 설치한 현이며 동경에 설치한 寧州, 歸州는 統和29年(1011)에 고려를 정벌하면서 잡은 渤海降戶로 설치한 주이다. 마침내 성종시기는 중경도를 중심으로 한 주현의 설치와 동경도 제 주현의 재통합으로 五京制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이후 발해인의 이주 및 주현의 설치와 관련된 기사는 더 이상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토한 발해 이주민으로 구성된 주현의 수를 정리하면 대략 73개에 이른다. 그러나 발해인 이주호의 숫자를 알 수 있는 것이 14개 주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해 이주민의 정확한 통계는 계산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연구자들의 통계를 빌리자면 대략 이주호가 93000호이고 1호당 5구로 계산하면 47만여 구의 발해인이 거란 내지로 이동한 것이다.²⁰⁾ 이를 세분하면 상경도에 3만5천²¹⁾, 동경도에 5만4천여호²²⁾이며 그 나머지 4천여호가 중경도에 이주된 수였을 것이다. 이들은 거란의 편호로 농업생산을 주로 하며 부세를 납부했다. 거란의 賦役은 田賦와 徭役으로 나뉘며 대개 田賦는 畝를 계산하여 징수하였고 徭役은 戶의 物力 高下에 따라 徵調하였다. 부세의 징수는 후당의 양세법에 따라 춘하 두 번에 걸쳐 징수하였는데 원래 한인들이 거주하던 남경도와 서경도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였던 반면 동경도는 대부분 발해의 이주민이었던 관계로 그들을 위무하기 위해 부역의 제도가 대체로 관대하였다. 『松漠紀聞』에 “給以田疇, 捐其賦入, 往來貿易關市皆不徵”²³⁾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동경 발해인에 대한 면세정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해인에 대한 민족차별과 착취정도가 심해져서 발해인의 반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거란은 당제를 답습하여 한인 및 발해인을 주현에 안치시켰고 남면관제를 설치하여 주현민을 관리했다. 오경에 留守司를 설치하였고 그 외에 상경에 鹽鐵使司, 동경에 戶部使司, 중경에 度支使司, 남경에 三司使司, 서경에 計司 등의 재정기구도 설치했다. 州는 節度使州, 刺史州가 있었으며 말단의 행정구획인 縣을 관할하였다. 지방행정은 대개 유수사 관할 아래에 맡겨졌고 南樞密院은 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20) 楊保隆『遼代渤海人的逃亡與遷徙』(『民族研究』4期, 1990)

21) 楊福瑞『遼朝徙民置州考論』(『昭烏達蒙族師專學報』3期, 1990)

22) 楊福瑞『遼朝移民問題研究』(『昭烏達蒙族師專學報』23卷 5期, 2002)

23) 『松漠紀聞』卷1 “阿保機滅渤海 遷其族帳千餘戶于燕 給以田疇捐其賦入 往來貿易關市皆不徵 有戰則用爲前驅”

발해 이주민들은 주로 지방장관의 통제 하에 있게 되었다.

2. 頭下軍州의 두하호

발해유민의 대다수는 이주정책에 따라 일반주현의 編戶로 안치되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거란귀족의 領地인 두하군주에도 예속되었다. 두하군주는 유목사회의 분권적 성격을 인정한 거란의 특수한 지방행정단위로서 일종의 봉건영지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주현의 민호가 국가의 소유라면 두하호는 領主의 사적인 예속민이었다. 頭下라는 것은 보통 諸王·后妃·公主·駙馬·外戚·功臣 및 諸部酋長들의 領地 및 領民을 의미한다. 元代에도 이 두하제가 존속되었으며 『元史』와 『元典章』 등에는 대체로 投下라고 보이지만 양자는 같은 의미의 同音異寫였다.

두하군주와 관련 『遼史』 『地理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두하군주는 모두제왕·외척·공신 및 제부의 수장들이 정벌에 종군하여 포로를 잡았거나 혹은 生口를 배치하여 구성된 각 團集을 주현으로 설치하여 거주케 하였다. 橫帳諸王·國舅·公主가 州城을 창립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성곽을 세웠다. 다만 조정이 주현액을 내려주었고 그 절도사는 조정에서 임명하였으나 자사 이하의 모든 관직은 두하의 부곡으로 충원했다. 관위가 구품이하인 자와 상인의 집안은 각 두하에게 세금을 납부했지만 오직 酒稅만 上京 鹽鐵司에도 課納했다.²⁴⁾

여기에서 두하군주의 설립은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왕·외척·공신 및 제부의 수장들이 각지의 정벌에 종군하여 잡은 生口로 설립하거나 혹은 거란정부가 諸王·國舅·公主에게 賞賜한 俘戶로 설립한 것이다. 예컨대 태종이 天顯5年(930) 2월에 “앞서 포로로 잡은 발해호를 李胡에게 주었다고”²⁵⁾ 하였고 『中州集』에 따르면 “遼人은 중원의 사람들을 노략질하거나 奚·渤海 등 諸國의 生口를 얻으면 貴近인者和 유공자에게 나누어 주었다.”²⁶⁾ 이처럼 요 조정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한인 및 발해인, 해인 등을 거란의 왕실 및 대신에게 상으로 나누어주었다.

한편 요조는 大臣이 자신의 두하군주를 건립하는 것을 윤택하였지만 그 주현액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규모면에서 “많은 것은 1~2주에서 적게는 수백에 이르렀는데”²⁷⁾ “州가 될 수 없는 것은 軍이라고 하였고 縣이 될 수 없는 것은 城이라고 했으며 城

24) 『遼史』 卷37 『地理志 一』

25) 『遼史』 卷3 『太宗本紀 上』 “以先所俘渤海戶賜李胡”

26) 元好問『中州集』 卷2 『李承旨晏』 “遼人掠中原人及得奚渤海諸國生口 分賜貴近或有功者”

27) 『中州集』 卷2 『李承旨晏』 “大致一二州 小亦數百 皆爲奴婢”

이 될 수 없는 것은堡라고 불렀다.”²⁸⁾ 두하의 규모는 그 주인의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皇族 耶律氏와 后妃族 蕭氏의 소유였으며 문헌에 보이는 요조의 두하군주는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42개이다. 『遼史』 『地理志』의 두하군주 항목 외에 五京州縣의 항목과 『聖宗紀』에 기록되어 있는 23개의 두하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道名	州軍名	設置年代	頭下主	來源	戶數
上京	徽州	聖宗朝	秦晉大長公主	媵臣	10000
	成州	聖宗朝	晉國長公主	媵臣	4000
	懿州	太平3年	燕國長公主	媵臣	4000
	渭州	聖宗朝	韓國長公主	媵臣	1000
	壕州	天顯8年	國舅 宰相	俘掠漢民	6000
	原州	太宗朝	國舅 金德	俘掠漢民	500
	福州	太宗朝	國舅 蕭寧	俘掠漢民	300
	橫州	聖宗朝	國舅 蕭克忠	部下牧人	200
	鳳州	未詳	未詳	未詳	4000
	遂州	太宗朝	橫帳	俘掠漢民	500
	豐州	統和13年	(遙輦氏) 耶律阿沒里	俘掠漢民	500
	順州	太宗朝	橫帳	俘掠漢民	1000
	閭州	未詳	羅古王	未詳	1000
	松山州	未詳	橫帳 普古王	未詳	500
	豫州	未詳	橫帳 陳王	未詳	500
	寧州	未詳	橫帳 管寧王	未詳	300
東京	烏州	太宗朝	北大王 撥刺	俘掠漢民	1000
	宗州	聖宗朝	漢臣 耶律隆運	俘掠漢民	未詳
	貴德州	太宗朝	察割	俘掠漢民	未詳
中京	雙州	太宗朝	溫里僧王	俘掠漢民	未詳
	(白)川州	會同3年	安端(太祖의 弟)	俘掠漢民	未詳
	榆州	天顯初年	橫帳 耶律解里	俘掠漢民	未詳
未詳	全州	統和9年	漢臣 韓匡嗣	俘掠漢民	未詳

그 외 『契丹國志』와 『亡遼錄』 등에 각각 23개, 21개의 두하주가 기록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19개의 두하주가 남는다. 또한 불확실한 것까지 열거하면 『遼史』 『地理志』 중에 동경도의 咸州, 중경도의 黔州 등이 있고 또한 『金史』 『地理志』에는 서경도의 撫州를 요의 秦國大長公主가 설립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⁹⁾ 어쨌든 문헌에는 두하보, 두하성 등도 보이지 않지만 요대에 더욱 많은 두하군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두하군주 중에 유일하게 동경도에 있는 麓州는 “下 刺史. 渤海置”하여 발해부호를 천사시켜 설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 두하군주의 구성원은 俘掠漢民 내지는 媵臣戶 또는 部下牧人이라고 밝히고 있던지 來源不詳이라고 하지만 대다수가 전쟁 중에 잡은 포로를 안치한 이상 적지 않은 발해인도 분명히 잡거하고 있었을 것이다. 타민족으로 구성된 두하군주에는 媵臣, 部曲, 農奴 등의 신분으로 영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였는데 첫째 媵臣戶는 陪稼의 노예이다. 잉신호는 대부분 俘虜였으며 그중 상당수가

28) 『遼史』 卷48 『百官志』 “不能州者謂之軍 不能縣者爲之城 不能城者爲之堡”

29) 『金史』 卷24 『地理志 上』 “撫州下 鎮寧軍節度使 遼秦國大長公主建爲州”

한인이었다. 요조의 名臣 韓知古도 淳欽皇后가 시집갈 때 데려간 잉신이었다. 그들은 노비와는 달리 두하 귀족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단독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였으며 신분 변화에도 유동성이 있었다. 둘째 部曲은 部下牧人이다. 방목지로 이루어진 두하군주에는 수백호의 牧戶가 있었는데 이들은 전쟁포로였든지 일찍이 두하 귀족에 의부한 유목민들이었다. 『遼史』 성종기에는 “통화13년에 조를 내려 諸道の 민호가 응력 이래 위협받아 부곡으로 된 자는 주현의 호적에 등록한다”³⁰⁾라는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들 중에는 드물지 않게 귀족들의 억압에 못 이겨 부곡으로 전락된 자들이 있었다. 셋째 포로로 잡혀온 농경민이다. 대부분의 두하군주는 포로로 잡힌 漢人과 발해인으로 조성되었고 그들은 농업 및 각종 수공업에 종사하며 과세의 부담을 지는 농노의 신분이었다.

이러한 부곡, 농노, 노예 등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두하군주를 설치한 자는 바로 요조의 최고지배층이었다. 두하군주는 세습될 수 있었으며 각 영주는 저마다 유력한 私兵을 영유하며 군사상·정치상·경제상으로도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인과 발해인으로 구성된 두하호는 영주를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였지만 국가에도 租稅를 납부해야만 했다. 예컨대 두하호는 “租를 관에 보내고 또한 그 주인에게도 課를 납부했다. 그래서 그들을 二稅戶라고 일컬었을”³¹⁾ 뿐만 아니라 기타 “구품 이하의 관리 및 상인의 집안은 조세를 두하의 영주에게 납부했지만 동시에 酒稅는 上京 鹽鐵司에 課納했다.”³²⁾ 이것은 영주가 두하호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법적지배권은 국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하군주는 私城의 성격보다는 일반주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남추밀원의 감시를 받는 등 점차 제약을 받기에 이른다. 이것은 당연히 황제의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자 힘쓰던 요조의 중앙집권정책에 대해 큰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요 조정은 영주가 모반에 가담하던지 혹은 후사가 끊어지던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 구실삼아 두하주를 끊임없이 중앙에 몰수하여 남추밀원 관할의 주현으로 개편하였다. 예를 들어 貴德州는 “태종시기에 察割이 포로로 잡은 한인으로 설치하였으나 후에 반란을 일으켜 죽음을 당하자 몰수되었다.”³³⁾ 그 외 雙州, 川州, 榆州, 烏州도 그 영주의 모반으로 관에 몰수되었다. 이와 같이 요 중기에 이르러 각종 원인 때문에 두하군주는 점점 관에 수용되거나 혹은 알로타 주현에 포함되었고 그 중의 발해민호는 기타 두하호와 함께 국가의 일반민호 내지는 궁분호로 바뀌었다.

30) 『遼史』 卷13 「聖宗本紀 四」“詔諸道民戶應曆以來脅從爲部曲者 仍籍州縣”

31) 『中州集』 卷2 「李承旨晏」“輸租于官 且納課給其主 謂之二稅戶”

32) 『遼史』 卷37 「地理志 一」“官位九品之下及井邑商賈之家 徵稅各歸頭下 唯酒稅課納上京鹽鐵司”

33) 『遼史』 卷38 「地理志 二」“太宗時 察割以所俘漢民置 後以弑逆誅 沒入焉”

3. 韓魯朶의 宮分戶

요대 알로타는 거란족의 특수한 제도이다. 앞서 살펴본 두하군주가 귀족의 私領地였다면 알로타에 예속된 주현은 황실의 두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알로타는 『遼史』 『營衛志』에서 “居有宮衛 謂之韓魯朶” 내지는 『遼史·國語解』에서 “韓魯朶 宮也”라고 말하고 있어 궁위 또는 행궁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초의 알로타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守陵, 出征, 生産 등의 임무가 더해졌다. 문헌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營衛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설치했을 따름이다. 并과 營 이복은 바람이 거세고 추위가 혹독하여 햇볕을 따라 이주함으로써 매년 편안하게 거주한 적이 없고 황폐한 넓은 벌판은 만 리에 이르니 도적들이 틈을 타서 침략을 일삼았기 때문에 영위의 설치가 일반적으로 되었고 그 형세는 이와 같았다. 요가 비로소 커지자 그 설립 제도는 세밀해졌고…… 마침내 나라를 세우자 그 규모는 매우 중요해졌다.³⁴⁾

태조는 迭剌部 출신으로서 可汗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원래의 부를 5원6부로 나누어 황족에 통합하자 친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韓魯朶法을 제정하여 주현을 쪼개고 丁戶를 나눔으로써 즐기는 강하고 가지는 약하게 하였다. 이는 다음 황제에게 그대로 계승되었고 대를 이어 宮衛를 건립하였다. 궁위는 황제가 들어오면 宿衛하였고 출행하면 扈從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능침을 지켰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5경2주의 각 제할사가 격문을 붙여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기다림 없이 주현과 부족을 징발하면 십만 기군이 바로 갖추어진다.³⁵⁾

이처럼 알로타의 창립이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었지만 점차 경제적 의의 또한 무시할 수 없었으며 宋人의 눈에도 “매 궁마다 모두 戶口 및 錢帛이 있었고 포로의 주인에게 私費를 공급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內藏과 같이”³⁶⁾ 비추어졌다.

태조 야율아보기는 칭제 건국한 후에 “行營를 宮으로 삼고 豪健한 자를 천여 명을 선발하여 腹心部를 설치함으로써”³⁷⁾ 산알로타를 창건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로타제는 더욱 더 발전하여 역대 황제마다 모두 자신의 알로타를 설치하였다. 요대 9명 황제가 각각 하나의 알로타를 설치하였고 섭정을 했던 두 명의 태후 즉 應天太后(태조황후)와 承天太后(경종황후)가 각각 하나씩 설치하였다. 그 외에 권세가 극성했던 성종의 동생인 秦晉國王 耶律隆慶과 태후와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재상 韓德讓(후에 耶律의 성과

34) 『遼史』 권31 『營衛志 上』

35) 『遼史』 卷35 『兵衛志 中』

36) 余靖『武溪集』 卷18 『契丹官儀』 “每宮皆有戶口錢帛 以供虜主私費 猶中國之內藏也”

37) 『遼史』 卷46 『百官志 二』 “以行營爲宮 選諸部豪健千餘人 置爲腹心部.”

隆運의 이름을 하사받음)도 諸宮의 예에 따라 각각 1宮과 1府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12宮1府로 구성되었다.

			正戶	蕃漢轉戶	騎軍
太祖	算斡魯朶	弘義宮	8000	7000	6000
太宗	國阿輦斡魯朶	永興宮	3000	7000	5000
世宗	耶魯盃斡魯朶	積慶宮	3000	8000	8000
應天皇太后	蒲速盃斡魯朶	長寧宮	7000	6000	6000
穆宗	奪里木斡魯朶	延昌宮	1000	3000	2000
景宗	監母斡魯朶	彰愍宮	8000	10000	10000
承天皇太后	孤德斡魯朶	崇德宮	6000	10000	10000
聖宗	女古斡魯朶	興聖宮	10000	20000	5000
興宗	窩篤斡魯朶	延慶宮	7000	10000	10000
道宗	阿思斡魯朶	太和宮	10000	20000	15000
天祚帝	阿魯盃斡魯朶	永昌宮	8000	10000	10000
耶律隆慶	赤實得本斡魯朶	敦睦宮	3000	5000	5000
耶律隆運		文忠王府	5000	8000	10000

이상의 알로타에는 다수의 부락과 주현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遼國之法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국의 법: 천자의 자리에 오르면 궁위를 설치하는데 …… 무릇 주가 38개, 현이 10개, 제할사가 41개, 석열이 23개, 와리가 74개, 말리가 98개, 득리가 2개, 갑살이 19이며 그 정호가 8만이며 번한전호가 12만3천으로 공히 20만3천호이다.³⁸⁾

여기에서 주현은 농경민의 행정단위이고 석열, 와리, 말리, 득리, 갑살은 유목민의 행정단위이다. 그리고 제할사는 군사기구로서 전시에 兵馬를 모으는 책임을 맡았다. 따라서 알로타의 인적 구성은 주현 알로타호, 부족 알로타호와 행궁 알로타호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주현 알로타호를 蕃漢轉戶라고 불렀고 부족 알로타호는 契丹正戶라 불렀다. 이외에 거란 황제의 四時捺鉢을 수행하는 행궁 알로타호가 있었는데 그들을 소위 宮分戶라고 불렀다.³⁹⁾ 蕃漢轉戶는 주로 포로로 잡아온 한인과 발해인 등으로 조성되었고 알로타 총호수의 60.5%나 차지하면서 거란정호와 함께 생산 및 군사적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편호와 달리 宮籍에 등재시켜 별도로 관리한 宮分戶는 一般宮戶와 著帳戶가 있었다. 일반궁호는 諸部에서 선발한 豪健한 者 내지는 자발적으로 投附해 온 者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禁衛가 되어 황제의 신변 및 행궁의 안전을 지켰는데 대부분은 귀족의 신분

38) 『遼史』 권31 「營衛志 上」

39) 武玉環『遼代斡魯朶探析』(『歷史研究』 2期, 2000)

에 상응했다. 도종 “淸寧9年(1063) 7월에 重元이 大逆을 시도한 도당과 함께 도종의 행궁을 습격했을 때 宮分人이었던 急里哥, 霞抹, 乙辛, 只魯 등이 숙위관과 함께 이들을 격퇴했던”⁴⁰⁾ 것도 궁호가 천자를 扈從·宿衛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예이다. 반면 저장호와 생산노예는 범죄자의 家屬들 내지는 제알로타에서 데려온 자들로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著帳戶: 本諸幹魯朶析出 及諸罪沒入者. 凡承應小底·司藏·鷹坊·湯藥·尙飲·盥漱·尙膳·尙衣·裁造等役 及 官中 親王祇從 伶官之屬 皆充之⁴¹⁾

그들은 대부분 황족 및 외척, 관리의 집안 출신으로 모반 내지는 중죄를 지은 자와 연관되어 황제와 황태후 등의 宮帳에서 각종 賤役을 맡았다. 마치 중원왕조의 환관과 비견할만한데 應曆年間에 목종이 신변의 服役者들을 대거 살육하자 그들의 증오가 폭발하여 應曆19년(969)에 近侍, 小哥, 盥人, 花哥, 庖人, 辛古 등 6명이 황제를 살해한 바도 있다.

다시 말해 알로타는 궁호가 중심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속해있는 부락과 주현이 외곽단체로 구성된 것이다. 알로타 가운데 궁호는 주로 대외정벌로 잡은 포로이거나 신하가 진현한 人戶였다.⁴²⁾ 포로로 잡힌 인호는 대부분 한인과 발해인이었고 죄를 지었거나 스스로 희망하여 궁적에 오른 인호는 주로 거란인과 이에 준하는 제부족을 말한다. 이들은 천자를 近侍하거나 衛從하였지만 때로는 공신과 명가에게 분배되기도 했고 궁주가 사망한 후에는 후비를 호종하여 봉릉읍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알로타에 소속된 주현과 부락은 각지에 산재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알로타를 세운 궁주와 특수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생전에 황제의 四時捺鉢 즉 行宮의 소재지였거나 사후에 능침으로 삼은 지역이었다.

알로타의 호구가 주현을 나누고 부족을 갈라서 이루어진 만큼 발해인의 주현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발해 이주민으로 설치된 주현 중에 一例로 태조 및 태종의 알로타에 소속된 주현을 살펴볼 수 있다.

算幹魯朶 太祖置 國語心腹曰算 宮曰 幹魯朶 是爲弘義宮. 以心腹之衛置 益以渤海俘 錦州戶. …正戶八千 蕃漢轉戶七千 出騎軍六千…州五 錦·祖·嚴·祺·銀 縣一 富義

國阿輦幹魯朶 太宗置 收國曰國阿輦 是爲永興宮 初名孤穩幹魯朶 以太祖平渤海俘戶 東

40) 『遼史』 卷22 「道宗本紀 二」

41) 『遼史』 卷31 「營衛志 上」

42) 『遼史』 卷49 「禮志 一」

京懷州提轄司及雲州懷仁縣 澤州灤河縣等戶置 州四懷・黔・開・來 縣二保化・灤河⁴³⁾

상기 주현 중에 銀州, 嚴州, 富義縣, 懷州, 開州, 來州, 保和縣은 발해이주민으로 구성된 주현이다. 이와 같이 13개 알로타 중에 발해이주민의 주현이 포함된 것은 弘義宮, 永興宮, 積慶宮, 長寧宮, 延昌宮, 彰愍宮, 崇德宮, 興聖宮, 敦睦宮 등 모두 9개이다.⁴⁴⁾ 이들 주현 및 부족 알로타호는 각지에 산재하면서도 평시에 해당 알로타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담당한 동시에 유사시에는 천자의 친군인 궁위기군을 편성하는 의무도 짊어지고 있었다. 다만 부락민은 전시에 기군을 편성하여 전투력의 주체가 되었고 주현민은 경제적 부담을 지는 등 황실 및 기군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다.

한편 알로타에 예속된 주현민들을 통해 발해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 및 기타생산에 종사하며 조정에 부세를 납부하였다. 도종 壽昌5年(1099) 10월에 요 조정은 “遼州의 기군을 구출하기 위해 거둬 租賦를 일 년간 면제하였다.”⁴⁵⁾ 여기에서 遼州는 발해유민을 이주시켜 설치한 주로서 長寧宮에 예속되어 조정에 田租를 납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인 路振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靈河를 따라 靈・錦・顯・霸 등 4州가 있었는데 비단을 생산하였으며 州民들은 田租를 납부하지 않고 다만 蠶織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을 太后絲蠶戶라고 일컬었던”⁴⁶⁾ 것은 그들이 황실을 위해 田租 대신에 수공업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 택주도 광산업을 맡아 매년 官炭을 납부했다.⁴⁷⁾ 둘째, 徭役을 맡았다. 대공정이 沈州觀察判官을 맡고 있을 때 “요동 지역의 폭우로 인해 농사를 망치게 될까봐 북추밀원은 하천이 넘치는 것을 막도록 정장들에게 제방을 완성케 하였던바”⁴⁸⁾ 심주는 敦睦宮에 예속된 주이며 그곳의 발해호는 제방을 수리하는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셋째, 황릉을 奉守하였다. 알로타주현 중에 일부분은 황제와 후비 등의 陵寢에 봉사하

43) 『遼史』 卷31 「營衛志 上」

44) 제알로타에 소속된 발해인 주현(『遼史』 권31 「營衛志 上」)

宮名	발해인 소속 주현	宮名	발해인 소속 주현
弘義宮	銀州, 嚴州, 富義縣	彰愍宮	同州, 保和縣, 宣化縣
永興宮	懷州, 開州, 來州, 保和縣	崇德宮	潞州
積慶宮	顯州, 康州, 山東縣	興聖宮	慶州, 隰州
長寧宮	遼州, 顯州, 奉先縣, 歸義縣, 定霸縣	敦睦宮	沈州, 岩州
延昌宮	韓州		

45) 『遼史』 卷26 「道宗本紀 六」 “賑遼州饑 仍免租賦一年”

46) 路振『乘軺錄』 “沿靈河有靈・錦・顯・霸四州地 生桑麻貝錦 州民無田租 但供蠶織 名曰太后絲蠶戶”

47) 『遼史』 卷105 「馬人望傳」 “歲澤州官炭”

48) 『遼史』 卷105 「大公鼎傳」 “時遼東雨水傷稼 北樞密院 大發灤河丁壯以完堤防”

기 위해 봉릉읍으로 전환하였다. 요대에 祖州, 懷州, 顯州, 乾州 및 慶州 등 5개의 봉릉읍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회주, 현주 및 그 관할의 奉先縣, 山東縣, 慶州는 모두 대량의 발해 이주민을 포괄한 봉릉읍이었다. 조주와 회주는 각각 태조와 태종의 봉릉읍인데 “조주 성내에도 祇侯의 번·한·발해(인)이 삼백인 있었다.”⁴⁹⁾ 또한 현주는 동란왕의 봉릉읍이며 후에 세종도 여기에 매장되었고 건주는 경종의 봉릉읍이다. 그리고 홍종이 성종의 봉릉읍인 “경주를 건설하면서 변한의 守陵 3천호를 두었다는”⁵⁰⁾ 기사는 상당수의 발해호가 능침에 봉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작전에 출정하였다. 알로타호는 “유사시에는 공격을 임무로 삼고 쉬는 동안에는 사냥과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는다. 하루도 진을 치고 주둔하지 않는 적이 없고 어디에서나 侍衛하지 않는 적이 없다. 게다가 정병하면 정장들은 군사에 종사하기”⁵¹⁾ 때문이다. 통화12년(994) 8월에 “성종이 조를 내려 황태비에게 서북로 烏古 등의 部兵 및 영흥궁의 分軍을 통솔하여 서쪽 변경을 순찰하도록”⁵²⁾했는데 永興宮 分軍의 태반이 발해인이었고 그들은 조정을 따라 작전을 출정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발해유민들은 거란의 내지로 이주되어 일부는 알로타에 소속되어 황실의 경제적·군사적 임무를 맡았다. 알로타는 추밀원에 소속되지 않고 황제가 직접 통할하였는데 行宮部署院이 알로타의 군사·민정·행정 등의 일을 총괄하였다. 그래서 발해인, 한인 등으로 구성된 주현알로타호는 황실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일정한 인신의 자유가 있었으므로 생산노예 내지는 저장호보다 그 지위가 높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때로는 임의대로 賞賜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가 비교적 엄중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거란은 因俗而治를 바탕으로 각 민족의 정황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거주토록 하였다. 민족별로 구분하면 거란과 해 등이 거주하는 유목지역은 부족제도, 한인과 발해인이 거주하는 농경지역은 주현제도, 그 외 여진 및 서북계족의 거주지는 속국,

49) 『遼史』 卷37 『地理志 二』“祇侯蕃漢渤海三百人”

50) 『遼史』 卷37 『地理志 二』“置蕃漢守陵三千戶”

51) 『遼史』 권31 『營衛志 上』“有事則以攻戰爲務 閑暇則以畋漁爲生 無日不營 無在不衛” “有調發則丁壯從戎事”

52) 『遼史』 卷13 『聖宗本紀 四』“隣西北路烏古等部兵及永興宮分軍 撫定西邊”

속부제도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그렇다면 거란 통치자들은 왜 자신의 고유한 부락제와 성격이 다른 주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본고는 이러한 원인을 발해인의 이주정책을 통한 주현제의 실시를 살펴보았다. 바로 이주정책과 주현제의 실시는 상호 표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던 관계로 그 배경과 원인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거란은 일찍이 중원제도의 장기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조는 기본적으로 주현제의 방식을 통해 거란에 대해 기미통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거란인은 이미 중원의 지방관리 방식인 주현제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둘째, 경제적 원인으로 농경을 생활방식으로 하는 한인과 발해인을 거란 내지로 이주시켜 북방의 농업을 개발시켰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곡물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정주문명의 체제방식이었던 주현제를 점차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회성 약탈보다는 장기적 소득원인 농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피정복민족 특히 반요성향이 강한 발해인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주현을 설치하였다. 발해의 중심지역이 거란의 본토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 자치를 허용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이 형성되어 大氏가 복벽할 후환이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거란 통치자들은 발해인을 내지로 이주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란주민으로 순치시켜 요조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결국 중앙은 북남면관제도, 지방은 군현제와 부락제가 병존하는 이중체제가 구현되었던 것이다.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김 성 규(전북대)

目次

머리말

1. ‘宋使 儀禮’ 각 의례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징
 2. ‘宋使 儀禮’에 보이는 여러 특징들
- 맺음말—정리와 전망—

머리말

‘전연의 맹(1004년)’ 이후, 송·거란(요) 양국이 평등 관계를 전제로 120여 년간에 걸쳐 680여 회나 사절을 정기적으로 교환한 것은 중국사에서 전무후무한 외교 방식에 속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교류와 접촉이 어떠한 방식과 제도적 장치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송-거란 관계사에서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¹⁾

필자는 前稿²⁾에서 이 문제의 일환으로 송조가 거란사절을 어떠한 격식과 예법으로 맞이했는지를, 『禮閣新編』에 실린 ‘契丹使 儀禮’로 통칭되는 3개의 의례, 즉 ‘契丹使見儀’, ‘契丹使宴儀’, ‘契丹使辭儀’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³⁾ 이 새로운 의례들은 필적하는

1) 이와 직결된 기존의 연구로서는 聶崇岐, 『宋遼交聘考』, 『宋史叢考 下』, 華世出版社, 1986; 傅樂煥, 『宋遼聘使表稿』, 『遼史叢考』, 中華書局, 1984; 曹顯征, 『遼宋交聘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論文, 2006 등을 소개해 둔다.

2) 김성규,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 『역사학보』 214, 2012(게재 예정)

3) 『禮閣新編』에 실려 있는 거란사 관련 의례는 원래 ‘契丹國信使副元正聖節朝見宴’과 ‘契丹國信使副辭’의 2가지이다. 그러나 전자는 ‘朝見’(謁見)과 ‘宴會’ 부분을 합쳐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2개로 분리되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3가지 의례로 구별하였다. 또 ‘契丹使見儀’, ‘契丹使宴儀’, ‘契丹使辭儀’는 모두 이들 의례의 약칭에 해당한다. 이하 본문에서 ‘契丹使 儀禮’라고 하면 上記한 3개의 의례 모두 또는 일부를 지칭한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송 왕조가 변모된 국제관계라는 현실적 요청에 따라 ‘禮’와 ‘數’의 면에서 기존의 여타 외국에 대한 것과는 다른 ‘敵禮’⁴⁾로서 제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거란 측은 송의 사절을 어떠한 방식으로 맞이하였을까, 이 문제 역시 당연히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이지만 그 동안 본격적인 연구는 皆無에 가까운 상태이다.⁵⁾ 본고는 前稿의 반대 입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송의 사절을 두고 거란이 禮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며, 이 점에서 前稿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다.

거란 역시 자신이 송에 파견한 것과 비슷한 회수로 自國을 찾아오는 송의 사절을 위해 그 지위에 어울리는 의례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관련한 예를 거란 측이 어떠한 절차로 제정했는지를 추적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표 1>의 5가지 의례는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었다. 본문에서는 이를 ‘契丹使 儀禮’와 구별해 ‘宋使 儀禮’라 칭하기로 한다.

<표 1> 『遼史』 권51 禮志4에 보이는 ‘宋使 儀禮’

구별	儀禮 名	본문에서의 약칭
I	宋使見皇太后儀	「見太后儀」(혹은 「宋使見太后儀」)
II	宋使見皇帝儀	「見儀」(혹은 「宋使見儀」)
III	曲宴宋使儀	「宴儀」(혹은 「宋使宴儀」)
IV	賀生辰正旦宋使朝辭太后儀	「辭太后儀」(혹은 「宋使辭太后儀」)
V	賀生辰正旦宋使朝辭皇帝儀	「辭儀」(혹은 「宋使辭儀」)

그런데 <표 1>에서 보이는 대로 송의 使者는 거란 측의 황태후에 대해서도 황제와 똑 같이 알현 등의 禮를 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점이 ‘宋使 儀禮’를 ‘契丹使 儀禮’와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을 이룬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거란 측 의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I~V의 개별 의례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다만 양자(‘황제 의례’와 ‘황태후 의례’) 간에는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아 지면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황제 의례’가 보다 본질적이라는 점에서 서술의 중심은 II, III, V에 둘 것이다.

또한 거란측이 제정한 의례의 성격은 당·송과 같은 중국 왕조 측의 의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이해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宋使 儀禮’의 분석에 있어서 ‘황제 의례’를 한편으로는 ‘황태후 의례’와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契丹使 儀禮’와도 비교해 상호의 異同과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지면 등의 문제로 그 비교의 대상은 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 중심이 될 것

4) ‘敵禮’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는 김성규, 「3개의 ‘트라이앵글’ :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에 관한 試論」, 『역사학보』 205, 2010. 참조.

5) 앞에서 소개한 曹顯征의 연구는 ‘接伴使’와 ‘館伴使’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룬 회소한 연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다.

종래 송-요 관계사의 연구는 주로 정치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현재 이方便의 연구는 한계에 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본고가 시도한 ‘禮’라는 시점의 도입은 거란인의 의례에 대한 관념은 물론, 북방 민족의 자기중심적 세계관, 중국 왕조와의 경쟁의식, 그리고 이원적인 거란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본 연구는 禮 중에서도 ‘외교 의례’에 국한한 소재를 다루지만, 이를 통해서 거란사의 특징으로 잘 알려진 소위 ‘정복왕조’로서의 二元的인 측면과 특수성이 禮制에도 잘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宋使 儀禮’ 각 의례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징

1) 「見儀」의 주요 내용과 특징

본 장에서는 ‘宋使 儀禮’의 내용을, 해당 각 부분의 원문을 정리한 <표>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표 2>는 宋使가 입국해 처음으로 치르는 궁중 의례⁶⁾인 「見儀」(II)의 원문을, 비교를 위해 「見太后儀」(I)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宋使는 거란 태후를 먼저 알현하고 이어 거란 황제를 알현한 것으로 생각된다.⁷⁾

<표 2> ‘宋使 儀禮’ 중의 「見太后儀」와 「見儀」

順	기 본 내용	「見太后儀」	「見儀」
①	황 제 (태 후) 의 升 殿	宋使賀生辰,正旦.至日,臣僚味爽入朝,使者至幕次.臣僚班齊,皇太后御殿坐.(I -(1))	宋使賀生辰,正旦.至日,臣僚味爽入朝,使者至幕次.奏班齊,聲警,皇帝升殿坐.宣徽使押殿前班起居畢,捲班出.(II -(1))
②	臣 僚 의 起 居 와	宣徽使押殿前班起居畢,捲班.次契丹臣僚班起居畢,引應坐臣僚上殿,就位立.其餘臣	契丹臣僚班起居畢,引應坐臣僚上殿,就位立,其餘臣僚不應坐者,並退於北面侍立.(II -(2))

6) 잘 알려져 있듯이 거란에서는 황제가 계절과 필요에 따라 ‘行在’를 옮기는 ‘捺鉢’이라는 관습이 있으므로, 外國使의 入朝 장소도 그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그 행재로는 上京을 비롯해, 中京, 東京, 燕京, 神恩泊, 長泊, 木葉館, 九十九泉, 清泉淀, 北安州 등이 확인되며, 宋史도 이들 지역에서 거란의 황제와 황태후를 알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傅樂煥, 『宋人使遼語錄行程考』, 『遼史叢考』, 中華書局, 1984 참조.

7) 예를 들어 治平4년(1067)에 거란에 다녀와 남긴 陳襄의 『神宗皇帝即位使遼語錄』에는, “臣等兩番使副入見, 臣襄致國書于其母, 面傳聖辭, 置酒三瓊, 又詣其君帳前, 臣坦致國書于其君傳.”고 보여, 陳襄은 入見 時에 먼저 태후를 만나고, 이어 황제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宋使는 거란에 入境한 이후 황제 및 황태후에 알현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歸途에 올라 송의 領內로 回歸할 때까지 모두 거란 측의 接伴使와 送伴使 등을 통한 접대를 받고 있지만, 황제와 황태후 관련 의례 검토에 국한한 본고에서는 이 문제들을 모두 검토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就位 (殿上殿庭에서)	僚不應坐者,退於東面侍立.(I-(2)) 漢人臣僚東洞門入,面西鞠躬.舍人鞠躬,通某以下起居,凡七拜畢,贊各祇候.引應坐臣僚上殿,就位立.(I-(3))	次引漢人臣僚北洞門入,面殿鞠躬.舍人鞠躬,通某官某以下起居,皆七拜畢,引應坐臣僚上殿,就位立.(II-(3))
③	使·副의 입장	中書令,大王西階上殿,奏宋使并從人膀子訖,就位立.其餘臣僚不應坐者,退於西面侍立.次引宋使副六人於東洞門入,丹墀內面殿齊立.(I-(4))	引首相南階上殿,奏宋使并從人膀子,就位立.臣僚並退於南面侍立.教坊入,起居畢.引南使副北洞門入,丹墀內面殿立.(II-(4))
④	國書進呈	閣使自東階下,受書匣,使人捧書匣者皆跪,閣使搢笏立,受書匣.自東階上殿,欄內鞠躬,奏封全訖,授樞密開封,宰臣對皇太后讀訖.(I-(5))	閣使北階下殿,受書匣,使人捧書匣者跪,閣使搢笏立.受於北階.上殿,欄內鞠躬.奏封全訖,授樞密開封,宰相對皇帝讀.(II-(5))
⑤	宮殿과의 問安 교환	引使副六人東階上殿,欄內立.使者揖生辰節大使少前,使者俛伏跪,附起居訖,起,復位立.次引賀皇太后正旦大使,附起居,如前儀.皇太后宣問南朝皇帝聖躬萬福,舍人揖生辰大使并皇太后正旦大使少前,皆跪,唯生辰大使奏來時聖躬萬福,皆俛伏,興.引東階下殿,丹墀內面殿齊立.(I-(6))	訖.舍人引使副北階上殿,欄內立.揖生辰大使少前,俛伏跪,附起居.俛伏興,復位立.大使俛伏跪,奏訖,俛伏興,退.(II-(6))
⑥	예물의 搬入出	引進使引禮物於西洞門入,殿前置擔牀.控鶴官起居,四拜,擔牀於東便門出畢,揖使副退於東方,西面,皆鞠躬.(I-(7))	
⑦	사절단의 례 (알현예)	舍人鞠躬,通南朝國信使某官某以下祇候見,舞蹈,五拜畢,不出班,奏聖躬萬福,再拜,揖班首出班,謝面天顏訖,復位,舞蹈,五拜畢,贊各上殿祇候,引各使副西階上殿就位.(I-(8)) 勾從人兩洞門入,面殿鞠躬,通名,贊拜,起居,四拜畢,贊各祇候,分班引兩洞門出.若宣問使副跋涉不易,引西階下殿,丹墀內舞蹈,五拜畢,贊各上殿祇候,引西階上殿,就位立.(I-(9))	引北階下殿,揖使副北方,南面鞠躬.舍人鞠躬,通南朝國信使某官某以下祇候見,起居,七拜畢,揖班首出班,謝面天顏,舞蹈,五拜畢,出班,謝遠接,御筵,撫問,湯藥,舞蹈,五拜畢,贊各祇候.引出,歸幕次.閣使傳宣賜對衣,金帶.(II-(7)) 勾從人以下入見.舍人贊班首姓名以下,再拜,不出班,奏聖躬萬福,贊再拜,稱萬歲.贊各祇候.引出.舍人傳宣賜衣.(II-8)
⑧	宴會 再入場	契丹舍人,漢人閣使齊贊拜,應坐臣僚并使副皆拜,稱萬歲.贊各就坐,行湯,行茶.(I-(10))	使副并從人服賜衣畢,舍人引使副入,丹墀內面殿鞠躬.舍人贊謝恩,拜,舞蹈,五拜畢,贊上殿祇候.引使副南階上殿,就位立.(II-9) 勾從人入,贊謝恩,拜,稱萬歲.贊有敕賜宴,再拜,稱萬歲.贊各祇候.承受官引北廊下立.((II-10))
⑨	퇴장宴會	供過人出殿門,揖臣僚并使副起,鞠躬.契丹舍人,漢人閣使齊贊,皆拜,稱萬歲.贊各祇候.先引宋使副西階下殿,西洞門出,次揖臣僚出畢,報閣門無事.皇太后起.((I-(11)))	御床入,大臣進酒,皇帝飲酒.契丹舍人,漢人閣使齊贊拜,應坐并侍立臣僚皆拜,稱萬歲.贊各祇候.卒飲,贊拜,應坐臣僚皆拜,稱萬歲.贊各就坐行酒.親王,使相,使副共樂曲.若宣令飲盡,並起立飲訖.放璫,就位謝.贊拜,並隨拜,稱萬歲.贊各就坐.次行方齒地坐臣僚等官酒.若宣令飲盡,贊謝如初.殿上酒一行畢,贊廊下從人拜,稱萬歲.贊各就坐.若傳宣令飲盡,並拜,稱萬歲.贊各就坐.殿上酒三行.行茶,行穀,行膳.酒五行.(II-11)
⑩	퇴장		候曲終,揖廊下從人起,贊拜,稱萬歲.贊各祇候.引出.曲破,臣僚并使副並起,鞠躬.贊拜,應坐臣僚并使副皆拜,稱萬歲.贊各祇候.引使副南階下殿,丹墀內舞蹈,五拜畢.贊各祇候.引出.次引衆臣僚下殿出畢.報閣門無事.皇帝起,聲蹕.(II-12)

『見儀』는 신료들의 식장 정렬이 완료되면 황제가 上殿하고(①), 이어 臣僚가 禮를 표시(즉 起居)한 후 上殿하거나 殿庭에서 侍立한 가운데(②), 宋의 正使와 副使⁸⁾가 입장(③)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閤使가 사·부로부터 받은 國書를 황제에게 進모한 (④) 뒤에는, 사·부가 上殿하여 거란 황제와 송 황제 간의 安否를 대신 교환하고(⑤) 다시 下殿한다.

이어 사·부는 殿 앞에 서서 황제에 대해 자신의 (拜와 致謝 중심의)謁見禮를 비로소 올리고 퇴장한다(⑦). 거란사절 중 사·부 이외의 수행원(즉 ‘勾從人’)이 처음으로 식장에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이며, 이들도 사·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알현예를 치르고 퇴장한다(⑦). ④와 ⑤가 비록 宋使를 매개로 하지만 황제 간 또는 국가 공식적 차원의 行禮라는 점에서 ‘공식(내지 국가) 의례’라고 부른다면, ⑦은 송의 사절 개인(또는 단체)에 의미가 맞추어진 ‘사절단 의례’라는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⁹⁾

그런데 이로써 『見儀』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일단 퇴장한 사절단은 다시 한번 식장으로 입장한다. 이는 宴會를 하기 위한 것으로, 『見儀』는 이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제1부에서 제2부로 전환된 셈이다. 여기서도 사·부가 먼저 입장해 賜宴에 감사를 표한 후 上殿하고(⑧), 그 후 나머지 사절단원이 들어와 예를 취한 후 ‘廊下’에 선다(⑧). 이때는 모든 사절이 거란이 사여한 복장을 입고 입장하며, 그 복장은 제1부 종료 후 식장 밖에서 받은 것이다.

연회는 그 진행 방식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술이 최소한 ‘5行’ 돌며, 황제와 殿上의 신료가 먼저 마시면 ‘方茵地坐臣僚¹⁰⁾’와 ‘廊下의 從人’이 이어 마시고, ‘飲盡’의 命이 있을 때는 모두 기립해서 마신 후 璣을 놓고 감사의 표시로 ‘隨拜稱萬歲’하는 원칙이다. 또 ‘3行’ 뒤에는 ‘茶’, ‘醖’, ‘膳’ 등이 제공된다(⑨). 이로써 연회가 끝나면 사절단을 포함한 侍宴 신료는 모두 퇴장한다(⑩)

『見儀』는 식장으로의 입·퇴장 및 行禮 등이 사절단의 신분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점 때문에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화시키면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제1부: 입장과 정렬(①,②,③) — ‘공식 의례’(④,⑤) — ‘사절단 의례’와 퇴장(⑦)

제2부: 재입장(⑧) — 연회(⑨) — 퇴장(⑩)

8) 이하 본문에서는 양자를 함께 표기할 때 ‘使·副’로 약칭한다.

9) 이 ‘공식(내지 국가) 의례’와 ‘사절단 의례’라는 두 가지 부분은 거란의 사절이 송을 방문해 거행하는 궁중 의례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며, 필자는 前稿(『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에서도 이를 ‘공식의례’와 ‘사절단 의례’라고 구별하여 칭하였다.

10) 현재로서 필자는 ‘方茵地坐臣僚’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方茵’은 아마도 ‘사방이 네모난 자리(깔개)’로 보이며, 따라서 殿上 또는 그 밑의 특정한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가?

이 같은 전개 방식은 『見太后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참여자의)입장과 정렬(①,②,③) 및 ‘공식 의례’(④,⑤)는 거의 비슷하며, ‘사절단 의례’와 퇴장 등도 그러하다. 가장 큰 차이는 『見儀』에 없는 ‘禮物’ 관련 부분(⑥)이 『見太后儀』에는 있다는 점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양자 간에는 宴會 관련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見儀』에 비해 『見太后儀』에서는 연회의 절차가 간단하며 음식도 술이 빠진 대신 ‘湯’과 ‘茶’가 제공되는데, 이는 황태후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온 차이일 것이다. 또 『見太后儀』에서는 사절단의 재입장 과정이 없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見太后儀』에서 사·부는 알현예를 마친 후 『見儀』와 달리 퇴장하지 않고 곧바로 上殿하는 반면, ‘勾從人’(수행원)들은 그대로 퇴장하여 다시 입장하지 않는다. 즉 이때의 연회에는 사·부만이 참가하며, 이 부분 역시 『見太后儀』에서 연회가 약식으로 치러진 것을 말해준다. 『見儀』에서 보이는 ‘敎坊’¹¹⁾이 없는 점 또한 그러한 성격과 상통한다.

한편 이 『見儀』를, 반대로 송조를 찾아온 거란사가 중심이 된 ‘契丹使 儀禮’ 중의 ‘契丹使見儀’와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식장으로의 ‘재입장’ 有無라고 할 수 있다. 즉 『契丹使見儀』는 소소한 부분을 무시하면,

입장과 정렬 — ‘공식 의례’ — ‘사절단 의례’와 퇴장 — 송 측 관료와 황제의 퇴장

으로 정리되어, 결국 ‘宋使 儀禮’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제2부의 연회가 없이 제1부만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宋과 거란에서는 모두 『宴儀』를 별도로 마련해 상대국 使者를 위로하지만, 거란 측에서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見儀』단계에서 별도로 宴會를 추가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술을 즐기고 接客을 좋아하는 거란족의 豪爽한 기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²⁾ 그밖에도 존재하는 양자 간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2) 『宴儀』의 주요 내용과 특징

『見儀』를 마친 宋使는 머지않아 거란 측이 준비한 『宴儀』에 참가한다. 이 『宴儀』는 황제가 주관하는 것에 한정되며 황태후와는 관련이 없다. 唐代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

11) 송의 경우 敎坊은 太常寺에 속한 음악을 敎習하는 기구이나, 거란의 그것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岸辺成雄, 『宋代敎坊の變遷と組織』, 『史學雜誌』 54-4, 1944; 黃風岐, 『契丹族의音樂』, 張暢耕 主編『遼金史論集』(第6輯),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을 참조.

12) 曹顯征은 전개한 『遼宋交聘制度研究』의 곳곳에서 거란 민족의 이 같은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정된 외국사를 위한 궁중의례는 모두 ‘朝見—연회—朝辭’를 기본으로 하지만, 거란의 ‘황태후의례’에서 『宴儀』가 없는 것은 중요한 차이점이며, ‘宋使 儀禮’가 모두 6종류가 아니라 5종류로 구성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표 3>은 이 때문에 거란 황제가 臨하는 『宴儀』만을 『見儀』의 방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3> ‘宋使 儀禮’ 중의 『宴儀』

順	구분	宋使宴儀
①	황제와 신료의 입장	昧爽,臣僚入朝,宋使至幕次.皇帝升殿,殿前,教坊,契丹文武班,皆如初見之儀.(Ⅲ-1)
②	臣僚(使・副 포함)의 入場과 起居와 就位	宋使副綴翰林學士班,東洞門入,面西鞠躬.舍人鞠躬,通文武百僚臣某以下起居.七拜,謝宣召赴宴,致詞訖,舞蹈,五拜畢,贊各上殿祇候.舍人引大臣,使相,臣僚,使副及方茵朵殿應坐臣僚並於西階上殿,就位立.其餘不應坐臣僚並於西洞門出.(Ⅲ-2) 勾從人入,起居.謝賜宴,兩廊立,如初見之儀.二人監瓊,教坊再拜,贊各上殿祇候.(Ⅲ-3)
③	宴會	入御床,大臣進酒.舍人,閣使贊拜,行酒,皆如初見之儀.次行方茵朵殿臣僚酒,傳宣飲盡,如常儀.殿上酒一行畢,兩廊從人行酒如初.殿上行餅茶畢,教坊致語,揖臣僚,使副并廊下從人皆起立,候口號絕,揖臣僚等皆鞠躬.贊拜,殿上應坐并侍立臣僚皆拜,稱萬歲.贊各就坐.次贊廊下從人拜,亦如之.(Ⅲ-4)
④	退場	歇宴,揖臣僚起立,御床出,皇帝起,入閣.引臣僚使副 ¹³⁾ 東西階下殿,還幕次內賜花.承受官引從人出,賜花,亦如之. (Ⅲ-5)
⑤	再入場	簪花畢,引從人復兩廊位立.次引臣僚,使副兩洞門入,復殿上位立.皇帝出閣,復坐. (Ⅲ-6)
⑥	再宴會	御床入,揖應坐臣僚,使副及侍立臣僚鞠躬.贊拜,稱萬歲,贊各就坐.贊兩廊從人,亦如之.行單茶,行酒,行膳,行果.殿上酒九行,使相樂曲.(Ⅲ-7)
⑦	下殿과 退場	聲絕,揖兩廊從人起,贊拜,稱萬歲,贊各好去.承受引出,曲破.殿上臣僚,使副皆起立,贊拜,稱萬歲,贊各祇候.引臣僚使副東西階下殿.契丹班謝宴出.漢人并使副班謝宴,舞蹈,五拜畢,贊各好去.引出畢.報閣門無事.皇帝起.(Ⅲ-8)

『宴儀』는 황제가 上殿하는 것에서부터 거란 문무관의 起居까지 ‘모두 初見之儀와 같다’(①)고 하므로 참여자의 입장 방식 등 그 시작 부분은 『見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사·부의 식장 진입이 ‘翰林學士班’의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②), 『見儀』에서처럼 거란 신료들의 입장이 완료된 상태를 기다린 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틈에서 섞여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색다르다. 이 때문에 ‘文武百僚’의 起居와 賜宴에 대한 감사, 그리고 致詞 등은 모두가 신료의 전체 대표에 의해 주도되며(②), 사·부가 이를 단독으로 행하는 장면은 없다. 사절단의 ‘勾從人’만이 그 뒤에 별도로 입장한 것은 그들의 지위가 훨씬 낮게 평가된 것을 반영한다.

殿上 宴會의 진행 과정은 ‘宋使 儀禮’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歇宴’이라는 말처럼(Ⅲ-④) 연회가 도중에 잠시 중지되고 참석자들이 일단 퇴장하기 때문에 연회는 사실상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이미 검토한 『見儀』와 기본적으로 구도를

¹³⁾ 原文에는 ‘使副’ 2자가 없으나, 필자의 판단과 ‘중화서국’ 本 校勘記에 의해 ‘使副’를 추가하였다.

같이한다. 특히 이 중 제1부의 연회는 “모두 初見之儀와 같다”(③)고 하므로 그 방식이 『見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殿上에서 ‘餅茶’가 제공되며 敎坊이 ‘致語’하고 口號하는 것 등이 새로운 요소이다(③). 퇴장은 ‘황제 — 신료와 사·부 — 從人’의 순이다.

퇴장한 사절단 중 사·부는 ‘幕次¹⁴⁾內’로 돌아가고, 또 從人은 ‘밖’으로 나가지만, 모두 꽃을 받아서 머리에 꽂고 식장에 다시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황제의 동향은 알 수 없으나 여타 송의 일반 신료들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입장은 ‘從人 — 신료와 사·부 — 황제’의 순으로 제1부의 퇴장과 역순이다(⑤). 殿上의 연회 방식은 제1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연회는 술이 모두 ‘9行’이 돈 뒤 파한다(⑥). 제2부 의식의 참여자들은 ‘從人 — 契丹班 — 漢人 및 使·副班 — 황제’의 순으로 퇴장한다(⑦).

한편 이상을 송조에서 제정된 ‘契丹使 儀禮’의 대응 부분(『契丹使宴儀』)과 비교하면, 여기서도 ‘再入場’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을 이룬다. 『宋使 宴儀』에서는 ‘式中의 퇴장’을 사이에 두고 제1부와 제2부에서 연회를 각각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행하지만, 『契丹使宴儀』에서는 ‘式中의 퇴장’ 없이 한차례의 연회로 의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行酒의 회수는 『宋使宴儀』가 제1부에서 “모두 初見之儀와 같다”고 하므로 ‘5행’, 제2부에서는 ‘9행’이 각각 돈 셈이지만, 이에 대해 『契丹使宴儀』에서는 기사가 소략해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9행’으로 생각된다.¹⁵⁾

사·부를 포함한 의식 참가자들이 꽃으로 몸을 치장하는 점도 『宋使宴儀』의 특색이다. 국가의 慶事에서 관리들이 꽃을 꽂는 ‘簪花’라 불리는 관례는 오히려 송의 궁중 의례에서 성행하였고,¹⁶⁾ 거란에서도 그 예가 보인다.¹⁷⁾ 따라서 이것이 외국사 관련 의례의 경우, 송조의 禮制(즉 『契丹使宴儀』)에 보이지 않는 반면, 거란 측이 제정한 禮制(즉 『宋使宴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에 반하는 것이다. 외국사 관련 의례에서 송조가

14) 당·송 및 요·금에서 明代에르는 중국, 또는 고려와 조선 등 동아시아 각 왕조에서 연출되었던 외교 의례에서는 식장 주변에 일종의 임시 대기소로서 ‘幕次’ 또는 ‘次’가 준비되어 있었음이 폭 넓게 看取된다.

15) 거란에서는 宋使를 상대로 한 각종의 의례에서 最多 13잔에서 最少 3잔까지 다양한 음주 예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曹顯征, 전거 『遼宋交聘制度研究』). 이를 송 측에서 마련한 음주 예법과 서로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항이나 본고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16) 張勝海, 『帝子設宴納賓賢, 賞花釣魚賦太平 — 中國古代曲宴初探』, 『學術探索』 2005년3기; 豊島悠果, 『高麗の宴會儀禮と宋の大宴』, 『『宋代中國』の相對化』, 宋代史研究會研究報告第9集, 汲古書院, 2009.

17) 예를 들어 『遼史』 권53 禮志6 嘉儀下 進士賜章服儀에 “皇帝御殿, 臣僚公服引進士入, 東方面西, 再拜, 揖就丹墀位, 面殿鞠躬. 閣使稱有敕, 再拜, 鞠躬. 舍人宣敕各依等甲賜卿敕牒一道, 兼賜章服, 想宜知悉, 揖再拜. 跪受敕訖, 再拜. 退, 引至章服所, 更衣訖, 揖復丹墀位, 鞠躬. 贊謝恩, 舞蹈, 五拜. 各祇候, 殿東亭內序立. 聲喏, 坐. 賜宴, 簪花. 宣閣使一員, 閣門三人或二人勸飲終日. 禮畢.”이라고 보인다. 『遼史』 권52 禮志5 嘉儀上의 皇帝受冊儀와 冊皇太后儀도 참조.

이를 왜 배제시켰고, 또 거란은 왜 반영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양국의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상대적으로 연회가 더 많이 개최되며 그 위에 ‘簪花’가 추가되는 사정을 함께 감안하면 ‘宋使儀禮’가 ‘契丹使 儀禮’보다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宴儀』의 나머지 부분은 그 흐름과 내용이 송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3) 「辭儀」의 주요 내용과 특징

宋使가 거란의 國都를 떠나기 임박해 치르는 「辭儀」는 거란의 태후와 황제 모두를 상대로 하며, <표 4>는 그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宋使 儀禮’ 중의 「辭太后儀」와 「辭儀」

順	대구분	「辭太后儀」		「辭儀」
①	황제(태후)의 升殿	臣僚, 使副班齊, 如曲宴儀. 皇太后升殿坐, (IV-1)		臣僚入朝如常儀. 宋使至幕次, 於外賜從人衣物. 皇帝升殿. (V-1)
②	臣僚의 起居와 就位	殿前契丹文武起居, 上殿畢. (IV-2)		宣徽, 契丹文武班起居, 上殿, 如曲宴儀. (V-2)
③	사절단의 입장(朝辭禮)	使副	宰臣奏宋使副, 從人朝辭膀子畢, 就位立. 舍人引使副北洞門入, 面南鞠躬. (IV-3)	中書令奏宋使副并從人朝辭膀子畢, 臣僚並於南面侍立. 教坊起居畢. 舍人引使副六人北洞門入, 丹墀北方, 面南鞠躬. (V-3)
			舍人鞠躬, 通南朝國信使某官某以下祇候辭, 再拜, 不出班. 奏聖躬萬福, 再拜, 出班. 戀闕, 致詞訖, 又再拜. 贊各上殿祇候. 舍人引南階上殿, 就位立. (IV-4)	舍人鞠躬, 通南朝國信使某官某以下祇候辭, 再拜, 起居, 戀闕, 如辭皇太后儀. 贊各祇候, 平身立. 揖使副鞠躬. (V-4)
		從人	引從人(IV-5)	宣徽贊有敕, 使副再拜. 鞠躬, 平身立. 宣徽使贊, 各賜卿對衣, 金帶, 疋段, 弓箭, 鞍馬等, 想宜知悉. 使副平身立. 揖大使三人少前, 俛伏跪, 措笏, 閣門使授別錄賜物. 過畢, 俛起, 復位立. 揖副使三人受賜, 亦如之. 贊謝恩, 舞蹈, 五拜. 贊上殿祇候, 舍人引使副南階上殿, 就位立. (V-5)
			贊姓名, 再拜, 奏聖躬萬福, 再拜, 稱萬歲. 贊各好去, 引出. (IV-6)	引從人(V-6) 贊謝恩, 再拜, 起居, 再拜, 贊賜宴, 再拜, 皆稱萬歲. 贊各祇候, 承受引兩廊立. (V-7)
④	宴會	殿上揖應坐臣僚并使副就位鞠躬. 贊拜, 稱萬歲. 贊各就坐. 行湯, 行茶畢, 揖臣僚并南使起立. 與應坐臣僚鞠躬. 贊拜, 稱萬歲. 贊各祇候, 立. (IV-7)		御床入, 皇帝飲酒. 舍人, 閣使贊臣僚, 使副拜, 稱萬歲, 皆如曲宴. 應坐臣僚拜, 稱萬歲. 就坐, 行酒, 樂曲, 方齒, 兩廊皆如之. 行餞, 行茶, 行膳亦如之. 行饅頭 (V-8)
⑤	퇴장과 下殿	xxx		畢, 從人起, 如登位使之儀(V-9) 曲破, 臣僚, 使副皆起立, 拜, 稱萬歲, 如辭太后之儀. 使副下殿, 舞蹈, 五拜. 贊各上殿祇候, 引北階上殿(V-10)
⑥	공식受領	國書	引使副六人於欄內拜跪, 受書匣畢, 直起立(IV-8)	欄內立. 揖生辰, 正旦大使二人少前, 齊跪, 受書畢, 起立, 揖罄折受起居畢, 退. (V-11)
⑦	의례受傳答語	受傳答語	揖少前, 鞠躬, 受傳答語訖, 退. (IV-9)	xxx
⑧	퇴장	於北階下殿. 丹墀內面殿鞠躬. 舍人贊各好去, 引出. 臣僚出. (IV-10)		引北階下殿, 丹墀內並鞠躬. 舍人贊各好去, 引南洞門出. 次引殿上臣僚南北洞門出畢, 報閣門無事. (V-12)

『辭儀』에서 일반 참여자의 식장 入場과 정렬 방법은 ‘(曲)宴儀’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①,②). 그러나 사절의 입장은 일반 신료의 그것이 끝난 뒤에 中書令(『辭太后儀』에서는 宰臣)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③)『(曲)宴儀』보다 『見儀』에 준함을 알 수 있다.

『辭儀』는 사·부가 황제에게 ‘朝辭’, 즉 귀국 길을 앞두고 그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의 예를 표하면, 황제가 그들에게 賜與物을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③). 이어 ‘從人’이 입장해 같은 예를 표하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여물이 제공되지 않는 점이 주의를 끈다.

다음으로 宴會가 이어진다(④). 이미 확인한대로 『見儀』에서의 연회는 사절단이 퇴장했다가 재입장한 뒤에 거행되지만, 여기서는 사·부가 賜物을 받은 뒤 곧바로 上殿하며, ‘從人’은 兩廊으로 이동해 연회가 續開된다. ‘從人’이 식장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衣物을 받은” 것은(①)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見儀』에서 사절단은 도중 퇴장하여 ‘賜衣’를 입고 들어오는 반면, 『辭儀』에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착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사·부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宋使 儀禮’에서 사·부 등이 式中에 퇴장하는 주된 이유는 幕間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거나 簪花(『宴儀』)를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회 자체는 ‘曲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에 ‘饅頭’를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V-8). 그런데 사·부는 일단 下殿해서 舞蹈와 5拜를 한 뒤 다시 한번 上殿하며, 이에 비해 ‘從人’은 설명은 없지만 정황상 그대로 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부는 『辭儀』에서 上殿을 두 번째 하고 있으며, 『見儀』나 『宴儀』와 달리 퇴장 하지 않는 점이 색 다르다.

사·부의 再上殿은 거란 측으로부터 國書를 전해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辭儀』의 최종 단계를 이룬다. 『見儀』에서의 국서 전달이 의식의 전반부에서 실행된 반면, 여기서는 말미에 놓여 의식의 大尾를 장식하는 효과를 보인다.

한편 『辭太后儀』에서는 『辭儀』와 비교해 ⑤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從人’이 朝辭를 마친 후에 곧바로 퇴장하기 때문에, 그에 이어지는 연회에는 사·부만이 참가하며, 또 연회가 끝나면 사·부는 下殿하지 않고 그대로 殿上에서 國書를 수령한다. 연회 방식은 『見太后儀』와 똑같이 약식으로 진행되며 ‘從人’은 동참하지 않는다. 이밖에 『辭太后儀』에서는 사절단에 대한 賜與物의 제공이 보이지 않고, 국서 수령 후에는 ‘受傳答語’라고 한 점에서 사·부와 태후 간에 모종의 대화가 있음이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見儀』와 다른 부분이다.

한편 『宋使辭儀』는 『契丹使辭儀』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의식의 흐름에서 볼 때 전자는 ‘朝辭와 사여물 수령 — 연회 — 국서 수령’의 순인데 비해, 후자는 ‘연회 — 朝辭와 사여물 수령 — 국서 수령’의 순을 이룬다. 송과 거란은 모두 자국의 국서를

『辭儀』의 마지막 단계에서 使臣에게 수여하지만, 그에 앞선 ‘연회’ 및 ‘朝辭와 사여물 수령’에서는 서로 순서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의를 끄는 것은 『契丹使辭儀』에서 사절단의 퇴장과 재입장이 되풀이되는 점이 다. 이미 검토한 것처럼 의식 도중에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宋使辭儀』의 『見儀』와 『宴儀』에서만 확인되고 『契丹使辭儀』에서는 없는 부분이지만, 『辭儀』의 경우는 반대로 『宋使辭儀』에는 그것이 없고 『契丹使辭儀』에서 두 번이나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契丹使辭儀』에서는 ‘연회’가 끝나면 사절단은 일단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 ‘朝辭와 사여물 수령’을 이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시 퇴장했다가 이번에는 사·부만이 들어와 국서를 수령하는 것이다.

2. ‘宋使 儀禮’에 보이는 여러 특징들

이상 ‘宋使 儀禮’의 전개 과정을 거란 황제가 주관하는 3가지 의례(『見儀』, 『宴儀』, 『辭儀』)의 내용상 특성을 중심으로, 황태후 관련 의례와의 차이를 지적하고, 나아가 ‘契丹使 儀禮’와도 비교해 양자의 특징을 짚어보았다. 본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송사 의례’에서만 확인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1) 의례의 구도¹⁸⁾와 관련한 이중성과 특수성

(1) 皇帝(太后)의 面位와 使·副의 入場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主와 客의 관계에서 주인이 동쪽에 서고 客은 그 반대쪽에 서는 ‘主東客西’와, 君臣 간에는 군주가 남쪽을 바라보고 신하는 북쪽을 바라보는, 말하자면 ‘君北臣南’이 기본적인 자리 배치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원칙이 송의 궁전 의례에서 비교적 융통성 있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필자는 前

¹⁸⁾ 거란에서는 수도인 上京을 중심으로 궁전이 존재하며, 여기서 ‘宋使 儀禮’도 연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로 거란의 궁전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는 사료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따라서 ‘송사 의례’의 무대=식장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 본문은 식장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지 않으며, 또 논점의 대부분이 궁전 구조의 양상이 어떠한지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유감스럽지만 궁전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은 채로 論을 진행하기로 함을 밝혀둔다. 송이 제정한 ‘거란사 의례’에서는 의례가 崇德殿 - 長春殿 - 崇德殿으로 장소를 바꾸어 진행되지만, ‘송사 의례’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宋人の 使行語錄의 하나인 『路振乘輅錄』에는 武功殿과 文化殿 등의 이름이 보여 거란의 궁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름이 보이기도 하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稿에서 확인하였다.¹⁹⁾ 즉 唐代에는 외국사를 포함한 당의 신료들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식당에 진입한 이후 줄곧 황제와 ‘君北臣南’의 面位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²⁰⁾ 송대에는 식당으로의 출입구가 동쪽과 서쪽에 존재하는 구조인 관계로 입장當初의 신하들의 면위는 西面이나 東面, 또는 ‘東西相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신료들은 곧바로 北面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北面하여 황제와의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君北臣南’의 기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거란 측이 제정한 ‘宋使 儀禮’ 중에도 이와 비슷한 구도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見太后儀』에는 신료들이 ‘東洞門²¹⁾’을 통해 들어오며(I-(3)), 또 송의 使·副도 역시 東洞門으로 입장하는 것이 확인된다(I-(4)). 따라서 이들은 처음에는 西面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해 太后가 어떠한 방향으로 식당에 임하고 있는지를 직접 나타낸 설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南面이외의 다른 面位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서령과 閤使 등이 殿에 오를 때 이용하고 있는 西階와 東階는(I-(4), (5)), 唐이나 宋의 중국 왕조처럼 남면하는 殿에 부속된 東西 양 측의 계단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²²⁾ 따라서 동쪽에서 입장한 宋使는 처음에는 일단 西面하지만, 式中 수시로 北面하게 되며, 上殿할 때도 南에서 北의 방향으로 올라가 황태후와 對面하게 된다.

『宴儀』도 ‘君主南面’의 구도를 기본으로 한다. 사·부의 入場이 東洞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은 『見太后儀』와 같다(III-(2)). 또 ‘재입장’의 경우는 臣僚와 使·副가 ‘兩洞門’을 통해 입장하므로(III-(6)) 이는 의식 참여자가 동서 양방향에서 입장해 서로 대면하는 구도를 말한다. 계단도 ‘동계’와 ‘서계’를 이용하는 형식이므로(III-(5), (8)), 여기서 황제가 남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이다.

그런데 이 두 의례를 뺀 나머지 ‘宋使 儀禮’는 이상과 매우 이질적이며, 언뜻 보아 그 구도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점이 있다. 이들 3개의 의례에서는 송의 使·副나 거란 측의 일부 신료가 ‘北洞門’을 통해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식 참여자들이 殿을 오르내릴 때도 그 계단은 南階나 北階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중국 왕조의 전통적인 의례 구도인 ‘황제 남면’을 전제로 이해할 경우 매우 기괴한 형태가 된다. 이대로라면 使·副는 황제를 전혀 볼 수

19) 김성규, 전제,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

20) 김성규,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중국고중세사연구』 제27집, 2012.

21) ‘宋使 儀禮’에서는 식당으로의 출입문을 ‘洞門’이라 표현하고 있다. 보통의 문과 구조상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통해 儀式 참여자들이 출입한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22) 김성규, 전제,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와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없는 殿의 後面에서 식장으로 입장하며, 또 上殿과 下殿 역시 뒤쪽의 계단을 이용해 황제와의 관계가 매우 어색해진다.

필자는 여기에 ‘宋使 儀禮’, 즉 거란이 제정한 외국사에 대한 궁중 의례의 특징이자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다른 아닌 군주의 기본 면위가 중국의 그것과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거란의 군주가 ‘중원 왕조’와 달리 보통 ‘南面’보다 ‘東面’을 選好한 결과이며, ‘宋使 儀禮’의 「見儀」와 「辭太后儀」, 그리고 「辭儀」는 이처럼 황제와 태후가 해당 의식에서 ‘東面’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비로소 의식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明言한 설명의 하나로,

遼俗, 東向而尙左, 御帳東向, 遙輦九帳南向, 皇族三父長北向, 東西爲經, 南北爲緯, 故謂御宮爲橫帳云(『遼史』 권45 百官志1, 北面諸帳官 遙輦九帳大常袞司)

고 보인다. 이것은 거란에서 ‘東-西’의 軸을 더 근본적으로 여기고, ‘남-북’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말하며, 따라서 황제는 東向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君主南面’을 중시하는 중국 측 의례와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의식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5> ‘宋使 儀禮’ 중의
황제와 太后的 面位

의례 名	面位
「見太后儀」(I)	南面
「見儀」(II)	東面
「宴儀」(III)	南面
「辭太后儀」(IV)	東面
「辭儀」(V)	東面

따라서 결국 ‘宋使 儀禮’에서는 황제와 황태후가 <표 5>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 座位를 잡고 있으며, 그 속에서 使·副 내지 기타 일부 신료가 北쪽에서 식장에 들어온 결과 첫 면위가 南面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표 5>중의 3가지 의례(II, IV, V)는 황제와 황태후가 좌측에서 자리를 잡고 東面하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使·副는 그 좌측(절대적인 위치는 북쪽)에서 입장하는 모양이 된다. 다만 이와 달리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見太后儀」와 「宴儀」에서는 ‘南面’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해결의 단서를 찾기 힘들다.

(2) 의식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

東洞門으로 입장해 들어와 西面하거나 또는 北洞門에서 들어와 南面하게 된 사·부에 對해, 여타의 의식 참여자들은 어떠한 面位를 하고 있었을까? ‘宋使 儀禮’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비로소 그 온전한 구도가 파악되며, 따라서 여기서는 「見太后儀」(I)와 「見儀」(II)를 예를 들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見太后儀」에서는 태후의 殿上 着席 이후, 의식과 관련해 나타난 신료들의 두 가지 움직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契丹臣僚班’의 움직임으로, 이들은 ‘漢人臣僚’

보다 먼저 식장에 들어와 독자적으로 起居한 다음 “착석할 자들은 上殿해 자리에 나아가 서고, 그 밖의 신료로 착석하지 않는 자들은 물러나 ‘東面侍立’한다”고 되어있다(I-(2)~(3)). 또 하나는 이어서 ‘漢人臣僚’가 東洞門으로 들어와 西面한 뒤, 이들 중에도 착석할 사람은 上殿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물러나 ‘西面侍立’하는 것이다(I-(4)). 이미 전술한 것처럼 使·副는 이 상태에서 東洞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漢人臣僚는 사·부와 같은 방향인 東洞門에서 들어와 함께 西面하는 자세이고, 이에 대해 ‘契丹臣僚班’은 입장 방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일부가 ‘東面侍立’하므로 西洞門으로 들어온 뒤, 漢人臣僚 및 使·副와 對面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宋使 儀禮’에서 식장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위치가 민족 별로 다르게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비추어진다. 거란 치하의 華北에는 잔류한 漢人 중 관료가 된 자가 있고, 이것이 거란 조정에서 거란과 한인 관리의 구별을 만들었지만, 나아가 조회에서는 민족별로 班을 달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의 사절인 사·부가 한인 신료와 같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들의 동일한 人種的 胎生이 고려된 것처럼 보여 흥미롭다. 사·부와 한인 신료는 그 밖에도 『宴儀』에서 “契丹班이 謝宴하고 나가면, 漢人 및 使副班도 謝宴하고 舞蹈한다(III-(8))”는 예 것처럼, 의식의 진행 과정 중에도 같은 그룹에 속해서 行禮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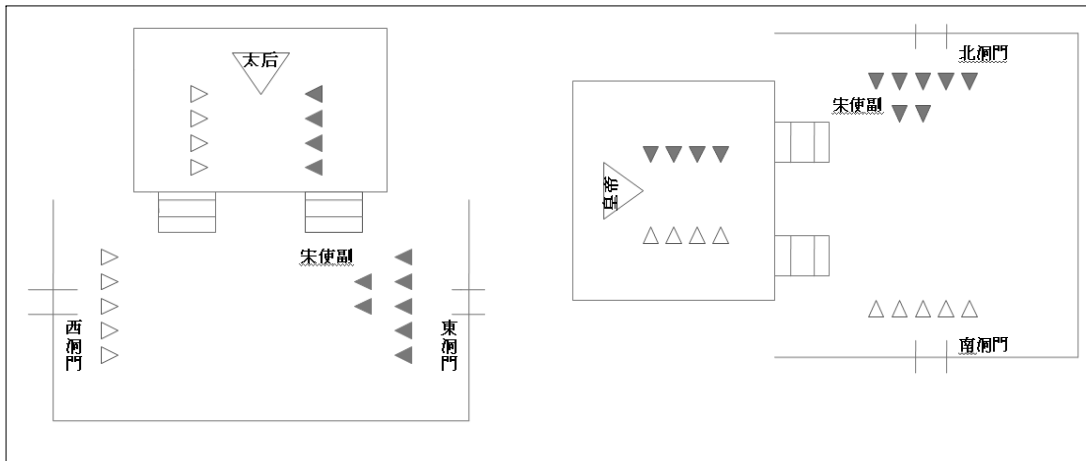
‘宋使 儀禮’의 이중적인 면모는 해당 의식을 주관·운영하는 실무 관리들의 성격에서도 엿보인다. 殿上 연회에서 “契丹舍人和 漢人閣使가 일제히 贊拜한다”(I-(10)와 II-(11))거나, “契丹舍人和 漢人閣使가 일제히 皆拜를 贊한다”(I-(11))는 장면은 그러한 점과 관련이 있다. 즉 이 무렵 거란 측의 궁중 의식은 唐·宋의 관제에 준하는 소위 ‘南面官制’에 따라 閣門使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의식의 인도 역을 하는 舍人和 閣使가 각기 ‘契丹人’과 ‘漢人’으로 구성된 점이 주의를 끈다. 이들이 座中을 향해 동시에 절을 하라고 호령한 것은 아마도 연회에 참가한 자들 중에 거란어나 한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란 측의 거란인 신료는 물론 한인 신료도 거란어에 익숙해 있을 사정을 감안하면, 漢人閣使를 배치한 것은 주로 송의 사절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상의 관리 배치는 당이나 송 등 중국 측 의례에는 없고, 거란 측의 외교 의례에서만 발견되는 또 하나의 이중 구조로 보인다.

이상과 유사한 구도와 특징들이 『見儀』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는 황제가 ‘東面’하는 입장이므로, 거란인 신료와 송의 사·부를 포함한 한인 신료가 남과 북에서 대면하는 것을 기본 구도로 한다. ‘거란 신료’가 ‘北面’하는 것은 남쪽(南洞門)에서 입장한 결과로 보이고(II-(2)), 그 다음 입장한 ‘한인 신료’는 반대로 북쪽(北洞門)에서 입장하며(II-(3)), 이어 송의 사·부²³⁾도 같은 방향에서 들어온다(II-(4))²⁴⁾. 또한 『見儀』에서는 ‘契丹舍人’과

‘漢人閣使’가 함께 등장한다(Ⅱ-(11))

아울러 필자는 契丹史에서 유명한 ‘南面官’과 ‘北面官’이라는 호칭에 대해 그 유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그것이 朝會에서 임하는 신하들의 방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²⁵⁾

<표 6> 「見太后儀」(左)와 「見儀」(右)에서 의식 참여자들의 기본 위치(의식 개시 직후)



(3) ‘階’의 이용을 통해본 使·副의 動線

‘宋使 儀禮’의 특성은 의식 참여자들이 식장에서 보인 階段의 이용 방식에서도 그 일

²³⁾ 원문(Ⅱ-(4))에는 ‘南使副’라고 되어 있다.

²⁴⁾ 원문(Ⅱ-(3)과 (4))에 따르면 ‘한인 신료’와 송의 사·부는 모두 입장한 뒤에 바로 ‘面殿’(즉 西面)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들이 북쪽에서 입장한 형세 상 입장 당초에는 자연스럽게 南面하고, 그 후 식의 전개에 맞추어 西面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부가 南面하는 모습은 Ⅱ-(7)에서도 보인다.

²⁵⁾ 南面官과 北面官에 대한 호칭은『遼史』권45 百官志1에 “契丹舊俗，事簡職專，官制朴實，不以名亂之，… 至于太宗，兼制中國，官分南北，以國制治契丹，以漢制待漢人。國制簡朴，漢制則沿名之風固存也。遼國官制，分北，南院。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南面治漢人州縣，租賦，軍馬之事。因俗而治，得其宜矣。”라는 기사와, 『契丹國志』권23 ‘建官制度’에 “其官有契丹樞密院及行宮都總管司，謂之北面，以其在牙帳之北，以主蕃事，又有漢人樞密院，中書省，行營都總管司，謂之南面，以其在牙帳之南，以主漢事。”라는 기사에 근거한 설명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전자는 南·北面의 호칭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고, 후자도 ‘南’과 ‘北’이라는 점에서는 이유가 있지만, ‘面’이라는 字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南面’과 ‘北面’이라는 의미를 가장 충족하는 것은 한인과 거란 관료들의 조정에서의 面位이며, 이것이 ‘남면관’과 ‘북면관’의 호칭의 연원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란에서는 북면관과 남면관 간에 착용하는 복장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그 변천과 관련해서는『遼史』(권56 志25 儀衛志2 輿服2 漢服)에 “重熙五年尊號冊禮，皇帝服龍袞，北南臣僚並朝服，蓋遼制。會同中，太后，北面臣僚國服。皇帝，南面臣僚漢服。乾亨以後，大禮雖北面三品以上亦用漢服。重熙以後，大禮並漢服矣。常朝仍遵會同之制。”라고 보인다.

단이 드러난다. 황제나 태후가 앉는 식장의 殿에는 東과 西 양쪽에, 또는 南과 北 양쪽에 계단이 붙어 있어, 사·부와 신료들이 이를 이용해 수시로 上殿과 下殿을 거듭한다. 여기에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唐의 외국사 관련 의례에서는, 東階와 西階가 부속된 食장(太極殿)에서, 외국사는 물론 일반 신료들도 거의 모두가 西階만을 이용하는 현상이 있음을 필자는 앞서 지적하였다.²⁶⁾ 하지만 이에 비해 송조가 정한 ‘거란사 의례’에서는 ‘階’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契丹使와 일반 신료들이 東階를 이용한 예가 많고 西階와 관련한 설명은 거의 보이지 않음을 필자는 역시 지적하였다.²⁷⁾

‘宋使 의례’에서는 <표 7>처럼 사·부가 모두 18회, 각 의례 평균 4~5회 꼴로 ‘階’를 오르내린다. 그리고 여기서는 ‘君主南面’을 취하는 儀禮(『見太后儀』와 『宴儀』)에서는 東階와 西階가, 그리고 ‘君主東面’을 취하는 儀禮(『見儀』, 『辭太后儀』, 『辭儀』)에서는 南階와 北階가 이용되고 있지만, 唐이나 宋처럼 어느 한쪽의 ‘階’만이 사용되지 않고 東·西와 南·北의 계단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단의 이용 방식에는 어떤 원칙이 배후에 있는 것일까? 한쪽 계단이 上殿만을 위해 사용되고 또 다른 한쪽은 下殿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君主南面’과 ‘君主東面’에 속하는 각 의례들이 각기 자신만의 원칙이 별도로 있는 것이라면 그 원칙을 이해하는 데에 편리하겠지만, 우선 그러한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宋使 儀禮’에서의 계단 이용은 무원칙으로 까지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필자는 거기에 일정한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7> ‘門’과 ‘階’로 보는 使副의 動線 一覽

『見太后儀』	東洞門(入場)-東階(上殿)-東階(下殿)-西階(上殿)【西階(下殿)-西階(上殿)】-西階(下殿)-西洞門(退場)
『見儀』	北洞門(入場)-北階(上殿)-北階(下殿)-退場(方向不明)-入場(方向不明)-南階(上殿)-南階(下殿)-退場(南洞門?)
『宴儀』	東洞門(入場)-西階(上殿)-東西階(下殿)-兩洞門(入場)-上殿(方向不明)-東西階(下殿)-出(兩洞門?)
『辭太后儀』	北洞門(入場)-南階(上殿)-北階(下殿)-퇴장(南洞門?)
『辭儀』	北洞門(入場)-南階(上殿)-下殿(方向不明)-北階(上殿)-北階(下殿)-南洞門(退場)

어느 계단을 이용할 것인가의 핵심은 다름 아닌 ‘上殿의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검토한대로 ‘宋使 儀禮’에 속하는 각 의례들은 ‘공식(국가) 의례’와 ‘사절단 의

26) 김성규, 전계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27) 김성규, 전계,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

례'로 구성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전자와 직결된 上·下殿은 '君主南面'에서는 東階가, '君主東面'에서는 北階가 반드시 이용되었고, 반대로 후자, 즉 '황제'와 관련이 직결되지 않는, 따라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각각 西階와 南階가 이용되었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見太后儀』에서는 사·부의 첫 上殿과 下殿이 東階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황제-태후간의 안부를 교환하기 위한 '공식 의례'에 해당하지만, 그 후의 두 번째 上殿은 자신들(즉 사·부)을 위로하는 宴會를 위한 것으로 西階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때의 下殿 역시 西階를 통해 이루어진 후 사·부는 西洞門으로 퇴장한다. 여기서는 사·부가 東洞門으로 입장하고 퇴장은 西洞門으로 하는 구도도 명확히 파악된다.²⁸⁾ 또 殿上에 있던 사·부가 일시 殿庭으로 내려와 禮를 표해야 하는 상황(즉 <표 7>의 【】 부분)에서도 상전과 하전은 모두 西階가 이용된다.

한편 '君主南面'의 예에 속하는 『宴儀』에서는 첫 上殿을 西階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연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두 차례나 진행되는 下殿이 모두 '東·西階'를 이용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만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로 보이지만, 이것은 殿上에 있는 다수의 侍宴 신료가 下殿을 신속히 하기 위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또한 여기서는 입장과 퇴장도 兩洞門을 통해 이루어진다.

'君主東面'을 취하는 나머지 3개의 '宋使 儀禮'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見儀』는 그 진행 방식이 『見太后儀』와 대동소이하므로 상전과 하전을 각각 '東階'를 '北階'로, '西階'는 '南階'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 내용은 완전히 같은 꼴이 된다. 다음에 『辭太后儀』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예와는 달리 '南階(上殿) - 北階(下殿)'의 형태로 上殿한 다음 下殿의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송의 使·副가 일단 연회를 위해 上殿하지만 그 후 國書를 수령한 상태로 下殿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辭儀』에서는 먼저 연회를 위해 上殿하지만, 그 후 다시 北階를 이용해 上殿하고 또 下殿한 것은 國書 수령을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계단의 이용 방식은 필자가 제시한 원칙에 부합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宋使 儀禮'에서는 동쪽과 북쪽의 계단이 서쪽과 남쪽보다 훨씬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부 이외의 자로, 殿上에 있던 閣使가 東階 또는 北階를 통해 上·下殿한 것도 宋 황제의 國書를 사·부로부터 수령해 거란 황제에 전하기 위함이

28) 『宴儀』에서는 上殿하지 않는 신료가 西洞門으로 퇴장한다고 보여(III-(2)), 이 역시 서쪽 문이 퇴장용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29) 『見太后儀』에서는 勾從人이 兩洞門으로 입장해 兩洞門으로 퇴장하는 데(I-(9)), 이 역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인다.

고(I-(5),II-(5)), 반대로 中書令과 ‘大王’이 西階를 이용하거나(I-(4)), 首相이 南階를 이용한 것(II-(4))은 그들의 신분이 臣僚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란에서는 西階(‘군주동면’에서는 南階)의 이용이 주를 이룬 점에서 唐의 전통 혹은 영향이 일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東階(‘군주동면’에서는 北階)가 중시되어 제한적으로 이용된 것은 그들의 東方 숭상 정신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이에 반해 송에서 동쪽 계단을 西階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전술한 대로 그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이 점에서는 거란의 계단 이용과 크게 상반된 것을 알 수 있다.

2) 國書, 問安, 그리고 禮物

(1) ‘授受 관계의 불균형’이 의미하는 것

‘宋使 儀禮’에서는 式中에 거란-송 양국이 여러 차례 물품을 주고받는다. 여기에는 사절 단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상대방의 황제 내지 국가에 제공되는 물품이며, 이 대목이야말로 의식의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5종류로 된 ‘宋使 儀禮’에서 쌍방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정리한 <표 8>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授受 관계의 불균형’이라고 할 만한 측면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반대 측인 송조가 정한 ‘거란사 의례’의 ‘授受 관계’를 정리한 <표 9>를 함께 보면, 거란-송 간의 授受物인 國書, 禮物, 問安은 쌍방향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표 8>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무런 수수물의 교환이 없는 『宴儀』와 예물의 수여 대상이 사절 단원으로 되어 있는『辭儀』를 제외한, ‘朝見’과 ‘朝辭’의 禮를 태후와 황제의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먼저 태후의 경우를 보면 태후는 使·副와 國書를 서로 교환하며 그 이외에 禮物은 받기만 할 뿐 宋使에게 그것을 주지는 않는다. 또 이때는 宋使를 介在한 군주 간의 安否 교환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見太后儀』에서는 宋使가 태후에 問安하는 내용은 없고 반대로 태후가 宋帝의 안부를 묻기만 할뿐이다.³⁰⁾ 다만 宋使는 『辭太后儀』에서 ‘受傳答語’라고 하여 태후로부터 某種의 ‘答語’를 들으며, 이를 宋使의 問安에 대한 회답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問安’은 한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와 같이 한 쪽만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문안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30) 『見太后儀』에서처럼 사자가 안부를 묻는 장면 없이 상대방 군주의 문안을 일방적인 묻는 것은 『大唐開元禮』에서도 보인다.

고 보기 힘들다.

한편 황제 관련 의례의 하나인 「見儀」에서는 거란황제가 宋使와 국서를 태후 의례와 똑같이 양방향적으로 교환하지만, 예물은 수여만 할 뿐 받지는 않고 있다.³¹⁾ 또 여기서는 쌍방 간에 問安이 행해진 명확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宋使가 ‘奏’를 한 것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도 송 측의 그에 대한 회답은 없다.

이상을 정리하면 宋使는 ‘宋使 儀禮’에서 태후이건 황제이건 상대와 모두 국서를 교환하지만, 그 밖의 중요한 상징물인 禮物와 問安의 경우, 예물은 태후에게 주기만 한 반면 황제에게는 받기만 하고, 반대로 (宋帝에 대한)문안은 태후에게서 받기만 한 반면 거란 황제에게는 그것을 직접 물은 것(즉 奏)으로 여겨진다.

<표 8> ‘송사 의례’에 보이는 거란-송의 授受 관계
*화살표는 수여 방향을 나타냄.

의례명	송사절단	거란황제(또는 태후)
「見太后儀」	國書 ← 禮物	→ → 問安
「見儀」	國書 奏 ←	→ → → 對衣,金帶
「宴儀」	xxxxxxx	xxx
「辭太后儀」	← 受傳答語 ←	→ 國書
「辭儀」	← ←	→ 禮物(別錄賜物) → 國書

<표 9> ‘거란사 의례’에 보이는 송과 거란 간의 授受 관계 *화살표는 수여 방향을 나타냄.

의례명	거란 사절단	송 황제
「見儀」	國書 禮物 問安 ←	→ → → 問安 → 賜物
「宴儀」	xxxxxxx	xxx
「辭儀」	← ←	→ 賜物 → 國書

그렇다면 이 불완전하고 기형적으로까지 보이는 수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단순한 ‘생략’으로 본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민감한 국가 간의 의례에서 그 같은 생략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는 이를 직접 설명하거나 해결의 단서가 될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따라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시도하면 태후 의례와 황제 의례의 이중적 면모를 갖는 ‘宋使 의례’가 그 상대국인 송조가 제정한 ‘거란사 의례’와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 내용을 교묘하게 절충 내지分割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을 해본다. 즉 위의 검토 결과 태후 의례와 황제 의례가 ‘수수 관계’에서 각각이 ‘거란사 의례’의 ‘반쪽’ 정도를 이룬다는 점에서, 거란 측에서는 이

31) 여기서 제공된 ‘對衣’와 ‘金帶’마저 정식의 예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두 의례를 합친 전체가 송 측이 운용하는 ‘거란사 의례’에 대략 相當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奇異하고 보통은 있기 어려운 형태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宋使가 특히 예물을 거란의 태후와 황제에게 각각 ‘거란사 의례’ 수준으로 양쪽에 제공하면 부담이 배가되며, 게다가 거란의 回賜가 송에 비례하지 않는 현실에서³²⁾ 송의 收支가 전혀 맞지 않게 되므로 그 가능성은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³³⁾

이러한 추측을 허용한다면 예물을 중심으로 하는 ‘宋使 儀禮’의 收受 관계는 아마도 태후 의례를 배제할 수 없는 거란 측에서 송조의 입장을 고려해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송조도 이를 양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추측을 거듭한다면 거란 측이 한번만 받게 되는 예물은 황태후에게 돌리고, 반면 宋使에 대한 回賜는 황제가 베푸는 모양으로 양자를 분리시킨 것은, 태후에 대한 황제의 ‘孝’와 국가 간의 ‘義’를 모두 지키는 방법으로 강구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연의 맹’ 이후 다액의 세폐를 제공하게 된 송조와 그것을 획득한 거란 사이에서는 쌍방 간에 교환하는 사절에 대한 예우와 그 이면에 놓인 예물의 제공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타협을 했을 것은 물론이다.

(2) 禮物 進呈의 방법

여기서 ‘宋使 儀禮’의 예물 수수 방법을 唐·宋의 그것과 비교해 두고 싶다. 당에서는 외국사가 준비한 예물을 알현일 당일에 미리 使者의 식장 자리 앞에 배열해 둔 상태에서, 식이 시작되면 (1)國書가 進上되고, (2) 有司가 그 부하를 데리고 殿庭의 예물을 받아들며, 다시 얼마 후 (3)황제가 外國使에게 그 國主의 安否를 묻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³⁴⁾ 이때 예물에 대해서는 당 측이나 외국사 어느 쪽도 그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國書가 進上되는 동안 한편에서 이를 ‘有司’가 들고 식장 밖으로 퇴장하므로, (2)는 사실상 (1)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별도의 과정으로 구별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또 예물의 배열은 使者의 자리 배정 원칙과 마찬가지로 ‘以西爲上’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³⁵⁾ 서쪽에 더 가치 있는 물품을 놓은 셈이다.

32) 거란은 사·부에게만 예물을 수여한 반면, 송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번이나 使者에 賜物을 제공하고 있다.

33) 이 문제는 단지 의례상에서만이 아니라 양국이 사절단을 送迎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지급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송 측의 부담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34) 『大唐開元禮』 권79 賓禮 「皇帝受蕃使表及幣」에 “其日, 典儀設使者位於懸南, 重行北向, 以西爲上. 庭實位於客前, 典儀位於懸東北, 贊者二人在南差退, 俱西面. ……侍郎受書, 置於案, 回詣西階. 侍郎取書升奏, 持案者退. 初侍郎奏書, 有司各帥其屬受幣·馬於庭. 典儀曰, 再拜. 贊者承傳, 使者以下皆再拜. 舍人前承制, 降詣使者前, 問蕃國主. 使者再拜, 對訖又再拜. 舍人回奏, 又承勅問其臣下. 使者再拜對.”라고 있다.

35) 위의 注 참조. 이 기사에 의해 使者는 물론 禮物의 진열에서도 좌측이 ‘上’임이 암시된다고

한편 ‘거란사 의례’에서는 예물이 거란사·부의 뒤를 따라서 송의 將兵(天武官)에 의해 반입된다. “天武官이 禮物을 들고 나누어 東·西向해 들어와, 東을 首로 하여 殿庭에 排列한다”고 하므로,³⁶⁾ 예물은 東·西 門을 통해 동시에 들어와 唐과는 달리 동쪽에 더 가치 있는 물품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물 배열의 차이가, 이미 전술한 儀式中에 西階를 주로 이용한 당의 입장, 또는 그 반대로 東階를 더 사용한 송의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예물은 國書가 進呈된 후와, 거란사·부가 宋帝에게 問安을 올리기 위해 上殿하기 전, 의 사이에 밖으로 반출되므로, 의식이 ‘(1)국서 → (2)예물 → (3)문안’ 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唐과 같다. 단 여기서도 예물은 당의 例처럼 式中에 특별한 주목 없이 도중에 반출되는 것을 되어 있다.³⁷⁾

이상에 비해 거란 측이 제정한 ‘宋使 儀禮’에서는, ‘(1)국서 進上 → (2)문안 → (3)예물 進獻’의 순으로 宋使가 움직이므로, 중원 왕조의 그것과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宋使는 예물을 ‘공식 의례’의 마지막 단계, 즉 ‘사절단 의례’가 시작되기 전에 거란 측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 예물은 引進使의 인도로 “西洞門에서 들어와 殿前에 擔牀을 놓고, 控鶴官이 起居四拜한 후에 擔牀을 메고 東便門으로 나간다”(I-(7)). 즉 여기서의 예물은, 미리 식당에 그것을 배열해 둔 당은 물론, 使·副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송과도 달리, ‘국서 진상’과 ‘문안’이 다 끝난 뒤에 비로소 반입되는 것이다. 아울러 ‘宋使 儀禮’는 예물이 西洞門에서 들어와 東便門³⁸⁾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 그 이동 방향이 당과 송에 비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당에서는 식당 구조 상 아마도 남쪽 문에서, 그리고 송은 東·西 兩門에서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지만, 그 搬出 방향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당과 송, 그리고 거란에서 예물은 搬入의 시점과 방법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것이 의식 도중에 반출되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생각되지만, 다시『大唐開元禮』 권79 賓禮 「皇帝宴蕃國主」에도 “蕃主入門, 舒和之樂作, 蕃主至位, 樂止. 其有獻物, 則從入陣於蕃主之前, 以西爲上……”이라고 보여, 여기서는 ‘蕃主’의 경우이기는 하나 ‘以西爲上’의 원칙이 확실히 보인다. ‘蕃使’도 이와 다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예물이 ‘蕃使’와 달리 미리 殿庭에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蕃主가 식당에 입장할 때 비로소 위에서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³⁶⁾ 『禮閣新編』 권83 新禮16 「契丹國信使副元正聖節朝見宴」에 “赴東西接引契丹使副. 舍人引契丹使副, 自外捧書匣入起居, 當殿立. 天武官擡禮物分東西向入, 以東爲首, 于殿庭排列訖, 舍人喝天武官起居, 兩拜, 隨呼萬歲, 訖, 奏聖躬萬福訖, 喝各祇候(如牽馬, 天武官則不拜, 只應諾)……樞密使已下近前進呈書訖, 退歸侍立……擡過禮物, 候出絕, 舍人與館伴使副等引契丹使副至殿東階下. 閣門使揖引同升. 當御前立. 國信大使跪傳國主問聖體……”라고 있다. 또 여기서는 “말을 끄는 경우라면 天武官은 拜하지 않고 단지 應諾만 한다”고 하므로, 예물이 말에 의해 운반되어 퇴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³⁷⁾ 위의 注 참조.

³⁸⁾ ‘송사 의례’의 式場에서는 동쪽 방향에 ‘洞門’이 있음을 보았지만, 여기서는 이 쪽에 ‘便門’으로 불리는, 아마도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작은 문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다.

3) 通譯의 문제와 의례상의 禮法

(1) 通譯 문제

당시 언어가 달랐던 거란 측과 宋使는 의례 석상에서 어떻게 소통하였을까? 여기에서도 이와 관련한 ‘宋使 儀禮’의 특징을 당·송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파악해보자.

『개원례』에 의하면 외국사³⁹⁾는 上殿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謁見 儀式 내내 殿庭에서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황제가 그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황제는 자신의 의지를 ‘制’나 ‘勅’ 등의 王言으로 通事舍人을 통해 전하며,⁴⁰⁾ 외국사도 자신의 회답을 通事舍人을 매개로 迴奏한다. 전달자로서의 通事舍人이 이 과정에서 외국사에게 唐의 언어⁴¹⁾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외국어를 구사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개원례』에는 통역이 介在한다는 기술은 없다. 황제가 외국사가 파견된 해당국 군주의 안부를 묻는 절차가 있고, 또 通事舍人이 해당국의 언어까지 이해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통역이 필요 없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 세밀한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는 『개원례』가 통역 관련 설명을 일체 생략했다는 것도 수궁이 가지 않는다. 당에서도 의식을 위한 예행연습이 사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통사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혹은 궁중 의례에서는 통역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의 관례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宋代가 되면 一轉하여 외교 의례에서 통역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 ‘通事’라고 불린 그들은 ‘거란사 의례’에서 엄연한 송 측의 官吏로 등장해 때로는 사절단을 인솔하기도 하지만, 주된 활동은 식장에서 使·副를 비롯한 거란사절단 각 개인이 행하는 發言을 통역하는 일이다.⁴²⁾ <그림 3>은 通事가 개입해 契丹使가 代行하는 송-거란 황제 간의 問安 교환을 돕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송에서도 황제가 외국사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지만, 至近한 거리에서 통역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마치 대화에 가까운 의사를 주고받는 점이 당과 대비된다.⁴³⁾

‘거란사 의례’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거란사절단 중에 통역 요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즉 거란 사절에는 ‘使·副’와 ‘舍利已下’ 이외에 ‘差來通事已下從人’도 一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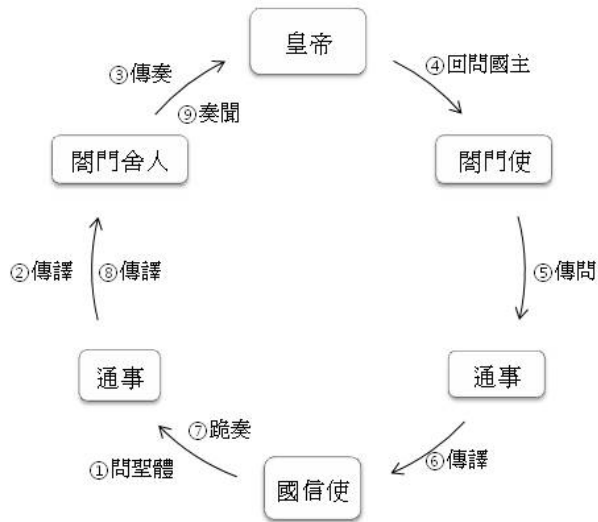
39) 『개원례』는 외국의 사절을 ‘蕃主’와 ‘蕃使’로 구별해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외국사는 이 중 ‘蕃使’를 뜻한다.

40) 김성규, 전제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41) 이를 ‘漢語’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이렇게 사용하기로 한다.

42) 『見儀』I-(9)에 “次通事及舍人引舍利已下分班入, 不通, 便引合班, 贊喝大起居(其拜及舞蹈並依本國儀). 其奏聖躬萬福, 並是通事當殿鞠躬傳奏,”라 고 보인다.

43) 다만 이것은 거란의 경우에 해당하며, 송에서도 기타 외국사에 대한 대우는 달랐다.



<그림 3> 송·거란 황제 간의 안부 교환 개념도

형성해 의식에 참여한다. 다만 ‘契丹 본국에서 差出되어온 通事’로 여겨지는 이들이 식장에서 그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식 중의 통역은 모두 송 측의 通事가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差來通事’는 궁중 의식에서보다 거란사절이 송에 체류 동안 日常에서의 통역 등에 봉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송사 의례’에서는 通事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거란사 의례’에서는 사절단이 자신을 소개하거나 황제에 致謝를 할 때면 “通事가 殿 앞에서 鞠躬 傳奏”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송사 의례’에서는 이 과정이 없는 채로 行禮가 이어진다. 問安을 교환하는 단계에서는 通事는 물론, 다른 관원들의 역할도 보이지 않아 황제가 宋使와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까지 보인다. 國書 전달에서도 通事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단순하다. 宋의 국서는 ‘閣使 → 樞密 → 宰相 → 황제’ (II—(5))의 순으로 거란 측에 전달되지만, 이에 비해 거란 측의 국서는 宋使가 “書를 跪受한다”(V—(11))고만 되어 있어 통사는 역시 개입하지 않으며, 그 밖의 과정은 설명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의해 ‘宋使 의례’에서는 별도로 통역을 맡은 전문 관리가 식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에 불편은 없었을까? 자신들이 해마다 宋에 몇 차례씩 파견하는 사절에는 通事를 포함시키면서, 자국 내에서 치르는 의례에서 이를 배제시킨 것은 왜일까?

이 문제의 단서를 거란의 이중적인 관료 구성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이미 前述한 대로 거란의 신료들은 朝會에서 거란인과 한인이라는 인종별의 班列을 형성하고, 의식을 주관하는 관리도 ‘漢人閣使’를 ‘契丹舍人’과 함께 식장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언어적인 분업이 존재했을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으며, 여기에 通事 문제와의 상관성이 엿보인다. 특히 閣使는 주로 殿上에서의 의식에 관계하며, 이를 ‘漢人閣使’가 맡았다면 宋使와 거란 황제 사이에서 사실상 통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확인은 되지 않지만 殿庭에서도 舍人 중에 漢인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들도 통사의 기능을 겸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식장에는 거란 관리와 漢人 관리가 병존하며 이것이 자체적으로 언어 문제를 조정하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송사 의례’에서는 ‘거란사 의례’만큼 通事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예법의 종류와 특징

‘宋使 의례’에서는 宋의 사절이 거란의 황제와 태후를 향해 수시로 禮를 표하며, 그 예법도 다양하다. 거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당·송의 그것과 비교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 보자.

唐의 외국사 관련 儀式에서는 ‘再拜’와 ‘俛伏’이 주된 예의 표현 방식이며,⁴⁴⁾ 따라서 이와 비교할 때 <표 10>에 보이는 다양한 예법들은 적어도 외교 의례에 한해서는 그 대부분이 송대에 비로소 도입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거란사 의례’에 보이는 사절단의 예법과 횟수

	「見儀」	「宴儀」	「辭儀」
使·副	跪(3) 揖躬(1) 大起居(1) 謝(2) 舞蹈(3) 拜(3)	舞蹈(1) 拜(4)	跪(3) 常起居(1) 揖躬(1) 致詞(1) 舞(1) 拜(7)
舍利已下	跪(1) 大起居(1) 舞蹈(1) 拜(1)	舞蹈(1) 拜(7)	跪(1) 奏聖躬萬福(1) 拜(7)
差來通事以下從人	跪(1) 奏聖躬萬福(1) 拜(5)	拜(4)	跪(1) 奏聖躬萬福(1) 拜(7)

<표 11> ‘송사 의례’에 보이는 사절단의 예법과 횟수

	「見太后儀」	「見儀」	「宴儀」	「辭太后儀」	「辭儀」
使·副	跪(2) 俛伏(2) 起居(2) 鞠躬(2) 舞蹈(2) 奏聖躬萬福(1) 謝(1) 拜(18)	跪(3) 俛伏(4) 起居(2) 鞠躬(2) 舞蹈(4) 謝(2) 拜(32)	鞠躬(1) 舞蹈(2) 謝宴(1) 致詞(1) 拜(19)	跪(1) 鞠躬(5) 奏聖躬萬福(1) 致詞(1) 拜(9)	跪(2) 俛伏(2) 起居(2) 鞠躬(4) 舞蹈(2) 謝恩(1) 拜(15)
勾從人以下	起居(1) 鞠躬(1) 拜(4)	奏聖躬萬福(1) 謝恩(1) 拜(8)	起居(1) 謝(1) 拜(2)	奏聖躬萬福(1) 拜(4)	謝恩(1) 拜(5)

44) 김성규, 전제 『『大唐開元禮』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한편 <표 10>과 <표 11>사이의 예법의 종류를 비교하면 상당수가 유사하여 양자 간에 영향 관계가 추정된다. 다만 唐의 의례에서 多用된 ‘俛伏’이 ‘宋使 의례’에서 보이고 ‘거란사 의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宋使 의례’의 唐禮로부터의 영향도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표 10>과 <표 11>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외형적으로 같은 예법이라 해도 이를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양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를 축원하는 ‘奏聖躬萬福’을 使·副 기준에서 볼 때 ‘거란사 의례’에서는 이를 행하지 않지만 ‘송사 의례’는 행한다. 또 같은 ‘송사 의례’ 안에서도 使·副의 ‘奏聖躬萬福’은 태후에게만 행하지 황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반면 使·副를 제외한 나머지 사절단은 ‘거란사 의례’와 ‘송사 의례’ 양쪽에서 ‘奏聖躬萬福’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들 의례들이 그것을 하거나, 또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舞蹈’도 송과 거란의 사절이 폭넓게 이용한 예법이다. 이것은 ‘거란사 의례’에서는 使·副를 중심으로 ‘舍利已下’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上位의 사절이 이용하였다. 舞蹈는 이들에 의해서 적어도 『見儀』와 『宴儀』자리에서 예외 없이 연출된다. 알현의 ‘기쁨’을 표현하기에 가장 인상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하직을 고할 때는 자리의 성격이 달라서인지 차이가 발견된다. ‘거란사 의례’의 ‘舍利已下’는 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宋使 의례’의 『辭太后儀』에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宋使 의례’의 『辭儀』는 무도가 보여 거란 황제에 대한 의례에서는 시종일관 무도가 宋使에게 요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거란사 의례’의 『辭儀』에서는 ‘무도’가 보이지 않고 다만 ‘舞’라고만 보인다. 즉 송조로부터 賜物을 ‘跪受’한 뒤에 ‘拜舞’했다는 것으로 이는 무도와는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舞’가 단독으로만 쓰인 예는 이곳이 유일하며 이것이 ‘蹈’가 누락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를 단순한 ‘舞’로 본다면 ‘거란사 의례’에서는 『見儀』와 『宴儀』와는 달리 작별을 고하는 『辭儀』에서 원칙적으로 무도는 실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점은 ‘송사 의례’중 ‘태후 의례’와도 동일하지만, 그러나 ‘황제 의례’에서는 무도를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황제(또는 태후)에게 고마움을 밝히는 ‘謝’는 의식마다 용어와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致詞’, ‘謝宴’, ‘謝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거란사 의례’와 ‘송사 의례’를 비교할 때, 전자에서는 使·副만이 『見儀』와 『辭儀』에서 1~2회 그것을 표하지만, 후자에서는 사·부를 포함해 다른 사절도 수시로 그것을 밝힌다. 특히 여기서는 사·부가 모든 의례에서 ‘謝’를 표하고, 그 밖의 사절도 황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는다.

이상의 비교 검토를 통해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송이 제정한 ‘거란사 의례’보다 거란이 제정한 ‘송사 의례’ 쪽이 더 엄격한 예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拜’의 방식이다. 모든 의식에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예법인 拜는 사·부 기준으로 ‘거란사 의례’에서 총 14拜가 실행되는 데에 비해, ‘宋使 의례’에서는 황제에 대해서만 무려 66拜나 실시된다. 나머지 사절의 경우는 ‘송사 의례’에서 ‘勾從人以下’가 황제에 대해 총 15拜 한 것에 비해, ‘거란사 의례’에는 ‘舍利已下’가 15拜, ‘差來通事以下從人’은 16拜 각각 실시해 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쪽의 拜가 적은 것은 송-거란 간의 의례가 이미 검토한대로 사·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부 간의 拜數에서 보이는 과도한 차이는 ‘宋使 의례’가 형태적으로 더 엄격한 臣禮를 반영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⁴⁵⁾

물론 위의 <표>에 제시한 ‘拜數’는 각 의례의 전체 합을 나타낸 것이고, 또 이를 한 번에 연이어 실행한 것도 아니다. 총 32拜로 단일 의식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見儀』를 예로 들어 전개 과정을 보면, 먼저 宋의 사·부는 입장해 자신을 소개하는 알현의 자리에서 ‘起居7拜—出班謝—舞蹈—5拜—舞蹈—5拜’ 식으로 17拜를 이어간다. 사실 여기서는 ‘起居’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拜數가 변할 수 있다. 다양한 의미를 갖는 ‘起居’는 궁중 의례의 경우는 “問安 인사를 올리는 인사 등을 포함한 禮”를 말하며,⁴⁶⁾ 송대의 사료에 “常起居는 兩拜하고, 大起居는 7拜한다”⁴⁷⁾고 하므로, 위의 ‘起居7拜’를 ‘起居 뒤에 다시 7배한다’고 새기면 그 拜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7拜하는 起居’의 의미로 이해해 두고 싶다. 또 위의 <표>에는 ‘起居’와 ‘大起居’가 곳곳에 보이며, 이를 <표>의 拜數에는 算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산할 경우 더 늘어난다. 아울러 여기서 보이는 ‘무도에 이어 5拜’하는 방식은 실은 ‘宋使 의례’ 전체에서 확인되는 고정된 패턴으로 보인다. 『見儀』에서는 舞蹈가 모두 4차례 실행되므로, 따라서 20拜가 이어지는 셈이다. ‘거란사 의례’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拜’를 연이어 하는 ‘5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 『見儀』에서 일시 퇴장했다 재입장한 사·부는 殿庭에서 도합 6拜를 추가하는 禮를 피로한 후, 殿上의 연회 과정에서 다시 拜를 4번 산발적으로 표하고 나서 下殿해 5배를 하고 퇴장한다. 이미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송사 의례’의 『見儀』에는 ‘거란사 의

45)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란의 일반적인 궁중의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면적인 비교는 될 수 없지만, 필자가 이 점에 유의해 약간의 검토를 한 결과 거란 측의 궁정 의례에서 拜數가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은 너무 많은 차가 있고, 특히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외교의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46) 김성규, 전제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

47) 『宋史』 권116 禮19, 賓禮1 常朝儀.

례’에 없는 ‘재입장과 연회’ 과정이 있고, 이 때문에 禮가 추가된 이유로 전체적으로 拜의 수가 늘어난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부분을 빼더라도 두 의례 간의 拜數의 비율은 17 : 3이 되어 여전히 큰 것이 된다.

아울러 ‘宋使 의례’에서는 태후와 황제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건, 『見儀』의 拜數가 『辭儀』때가 되면 반감하고 있다.

맺음말—정리와 전망—

‘宋使 의례’에는 ‘거란사 의례’와 비교해 공통된 요소를 다수 내포하면서도, 동시에 차이점 역시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차이점은 거란 왕조가 처한 정치적 내지 사회적 배경의 이질성을 반영한 것이 많으며, 본문의 고찰 결과 다음의 사항이 특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였다.

① ‘宋使 의례’에서는 의식이 ‘君主 東面’ 下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거란 민족의 嗜好를 반영한 것으로 ‘君主 南面’을 기본으로 하는 중원 왕조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이것이 의식이 진행되는 식장의 기본 배치와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君主 東面’은 총 5개의 ‘송사 의례’ 중 3개의 의례에서 유지되며, 나머지 의례는 ‘南面’을 유지한다. 같은 ‘송사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면위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② 한편 송의 사절은 거란의 황제(또는 태후)가 ‘남면’할 때는 東門을 통해, 또 東面할 때는 北門을 통해 각각 식장에 입장하며, 거란 측의 漢人 관리도 이에 준한다. 이에 대해 契丹人 관리는 ‘군주 남면’에서는 西門에서, 또 ‘군주 동면’에서는 南門에서 각각 입장해, 결과적으로 송의 사절을 포함한 漢人 관리와 對面하는 面位를 이룬다. 이는 의식 참여자들이 식장에서 민족(인종) 별로 정렬하는 측면이 있음을 반영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契丹의 역사에서 이름 높은 ‘남면관’과 ‘북면관’의 호칭 유래가 이 같은 ‘面位’와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한다.

③ ‘宋使 의례’에서는 의식의 진행에 관여하는 실무 관리 중에 漢人과 契丹人이 동시에 배치된 것이 보이며, 이 또한 관리들이 언어적 분업을 위해 민족 별로 식장에 배치된 것을 생각하게 한다.

④ 殿에 부속된 階에 주의할 때, 唐에서는 의식 참여자들이 거의 西階만을 이용하고, 또 宋에서는 주로 東階가 이용된 반면, ‘宋使 의례’에서는 東·西의 階와 南·北의 階가 모두 이용되어, 一見 무질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 上殿

의 목적이 황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東階(‘군주 南面’의 경우) 또는 北階(‘군주 東面’의 경우)가 이용되고, 이에 반해 그 목적이 그 밖의 것일 때는 ‘西階’ 또는 ‘南階’가 이용되는 원칙이 존재함이 발견된다.

⑤ 외국사가 군주를 알현하는 전통 시대 동아시아의 의례의 場에서 해당국 사이에 國書와 禮物, 그리고 황제간의 問安을 교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거란사 의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宋使 儀禮’의 경우는 이 같은 교환이 송-거란 사이에 이루어지기는 해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宋使는 국서를 거란의 황제와는 물론 태후와도 교환하지만, 예물은 황제에게 받기만 하고 태후에게는 獻呈하기만 하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그것이다. 이 기이한 구조에 대해 필자는 ‘태후 의례’와 ‘황제 의례’라는 이중적인 면을 갖는 ‘宋使 의례’가 宋側에서 제정한 ‘거란사 의례’와 收支 관계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절충 내지 분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 한편, 의식의 전개 과정에서, 그 핵심을 이루는 외국사에 의한 國書와 禮物의 進上 및 황제와의 問安 교환이 이루어진 順次를 보면, 당과 송에서는 “국서 진상 → 예물 진상 → 問安 교환”으로 이어지지만, 거란이 제정한 ‘宋使 의례’에서는 “국서 진상 → 문안 교환 → 예물 진상”의 순이 된다. 또 예물이 식장에 반입되는 시점도 달라, 唐에서는 그것을 외국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식장에 陳設하고, 또 송에서는 그것이 使·副의 입장과 거의 함께 뒤따라 들어오지만, 이에 대해 ‘宋使 의례’에서의 예물은 ‘국서 진상’과 ‘문안’이 다 끝난 뒤에 비로소 반입된다.

⑦ ‘宋使 의례’에서는 式中에 通事(통역)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唐과 동일하지만, 한편 같은 시기의 송 측의 ‘거란사 의례’와는 대비된다. ‘宋使 의례’의 이 같은 측면은 의식을 진행하는 관리 중에 거란인 이외에 한인이 함께 참가한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식장에는 거란 관리와 漢人 관리가 병존하며 이것이 자체적으로 언어 문제를 조정하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송사 의례’에서는 ‘거란사 의례’만큼 通事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⑧ 의식 중에 사용된 禮法은 ‘宋使 의례’와 ‘거란사 의례’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공유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자 쪽이 외국사에게 더 엄격한 예를 요구한다. 拜의 數를 보더라도 사·부 기준으로 ‘거란사 의례’에서 총 14拜가 실행되는 데에 비해, ‘宋使 의례’에서는 황제에 대해서만 무려 66拜가 실시되는 것은 그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末尾이지만 ‘宋使 의례’에 보이는 사절단의 구성과 관련해 附言해 두고 싶다. ‘宋使 의례’에서 송의 사절은 ‘使·副’ 이외에는 ‘從人’(혹은 ‘勾從人’)이 유일하게 확인될 뿐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설명 부족으로 人的 구성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⁴⁸⁾ 그런데 ‘使·副’는 이에 대해 6인이 참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 수가 상당히 많다. ‘宋使副6人’(I

-(4), V-(3))이라 보이는 것이 그것이며, 그 內譯은 ‘大使3人’과 ‘副使3人’임을 알 수 있다 (V-5). 그렇다면 正使와 副使가 보통이라면 각각 1명씩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컨대 이는 송에서 거란 측에 파견되는 정기 사절이 일시에 거란 측에 도착해서 의식에 참여한 결과였다. 이 ‘一時’는 특히 익년의 正旦 賀禮 참여를 위한 年末 쯤에 해당하며, 특히 여기에는 거란 황제와 황태후에 대한 生辰使와 賀正使의 正使와 副使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하례에 참여하는 사·부의 수는 정식으로 8인까지 늘어나지만, 때로는 ‘宋使 의례’의 내용처럼 6인일 때도 있고, 이 점에서 ‘宋使 의례’는 사·부 6인의 상황을 반영한 의례로 보인다. 이러한 宋使 파견의 특성은 송 측에서 실제로 파견한 使·副의 實數에 비추어도 사실에 부합한다.⁴⁹⁾

그런데 ‘賀正使’ 이외에 ‘生辰使’가 正旦에 거란에 함께 도착한다는 것은 거란 황제와 황태후의 생일 시점이 당연히 正旦무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경우는 ‘生辰使’를 실제의 ‘생신일’과 관계없이 파견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례는 다르지만 金의 경우 송 측의 사절을 영접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례를 통합해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고,⁵⁰⁾ 거란에서도 이러한 점이 작용해 그것이 ‘송사 의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황제와 황후의 생일까지 날을 바꾸어 正旦에 그 의례를 함께 거행한다는 방식은 우리의 시각으로는奇怪하게까지 보이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관념이 약하고⁵¹⁾ 또 경비 절약이라는 현실을 더 중시한 북방 민족에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송조가 거란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앞에서 추론한 송—거란 간의 收受 관계와 그 收支 문제는 한층 복잡한 측면이 얹혀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의론을 멈추어 둔다.

여기에 ‘宋使 의례’의 또 하나의 특성이 있으며, 正旦에 生辰使가 함께 등장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로써 『見儀』와 『見太后儀』의 冒頭に 있는 “宋使賀生辰·正旦”(I-(1), II-(1))의 문장도 비로소 그 의미가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아울러 ‘宋使 의례’의 내용에서 볼 때, 宋의 使·副 6~8인은 그것이 황제의 의례이건 황태후의 의례이건 구별 없이 모두 동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宋측에서 운영된 ‘거란사 의례’에서는 당연히 발견되지 않는다. 중

48) 이에 비해 ‘거란사 의례’에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교적 그 면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49) 聶崇岐, 『宋遼交聘考』, 『宋史叢考 下』, 華世出版社, 1986와 傅樂煥, 『宋遼聘使表稿』, 『遼史叢考』, 中華書局, 1984를 참조.

50) 李輝, 『宋金交聘制度研究』, 第4章, 『金朝聘使制度』, 復旦大學博士論文, 2005 참조.

51) 위와 같음.

국 측의 예법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제의 체면에 직결되는 문제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란사 의례’에서는 사·부가 1인씩에 불과하며, 이 사절들은 正日과 生辰日 등 본래의 해당일에 맞추어 송조를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다.⁵²⁾ 또한 송에서는 황제의 정단과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외교 의례로서 ‘거란사 의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契丹이 황태후를 위한 축하사를 파견해 옴에도 불구하고 송조는 거란처럼 그들을 위한 공식적인 궁중 의례를 별도로는 준비하지 않았다. 공식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란사의 활동이 어떠한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이를 포함한 거란 사절단, 또는 송 사절단의 상대국 체류 중의 動向이 ‘儀禮’의 場을 벗어난 곳에서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자의 향후 과제이지만, 이 문제를 追究하는 데에서도 본고는 당연히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⁵²⁾ 聶崇岐와 傅樂煥의 앞의 연구서 참조.

大元제국 말기 權臣 바얀의 집권과 몰락

권 용 철(고려대)

目 次

1. 머리말
2. 바얀의 政界 진출
3. 엘테무르 집권 시기의 바얀
4. 바얀의 專權과 그의 몰락
5. 맺음말

1. 머리말

大元제국의 전성기로 일컬어지는 世祖 쿠빌라이 카안(재위 1260~1294)과 成宗 테무르 카안(재위 1294~1307)의 치세 이후, 大元제국은 帝位 계승분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황제(카안)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계승분쟁 과정을 통해 실권을 잡은 權臣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얀(伯顏, Bayan) 역시 그러한 權臣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大元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順帝 토곤테무르 카안(재위 1333~1370)이 즉위하는 데 공훈을 세웠고, (後)至元 6년(1340)에 쫓겨날 때까지 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즉, 바얀의 정치적 집권 및 몰락 과정에 대한 고찰은 大元제국 중기와 말기 조정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바얀의 집권과 그의 몰락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고찰은 大元제국 말기의 정치적 동향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John W. Dardess의 선구적인 연구에 한 章으로 할애되어 있다.¹⁾ 그의 연구는 바얀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의 정책들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바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모습

¹⁾ John W. Dardess, *Conquerors and Confucians: Aspects of Political Change in Late Yüa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pp.53~74.

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또한, Dardess는 바얀의 몰락이 유교 정치(Confucian Politics)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바얀의 집권과 몰락이 大元제국 말기의 잦은 權臣 교체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는 그리 주목하지 않고 있다. 한편, Dardess의 연구 이후에 이루어진 邱樹森의 연구는 大元제국 말기의 정치적 동향을 풍부한 사료와 함께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順帝의 일생을 중심에 두고 있는 탓에 바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張建新的 연구이다.³⁾ 張建新은 바얀의 일생과 그 행적을 중심으로 大元제국 중기와 말기의 정치적 동향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바얀을 중심에 둔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바얀에 대해서 민족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균형있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바얀의 행적과 그 시기의 정치적 동향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들에는 일부 재고의 여지가 있고, 바얀의 집권과 그의 몰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世祖, 成宗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많은 반면, 그 이후 시기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소략한 편이다.⁴⁾ 게다가 大元제국이 몰락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帝位 계승 분쟁과 조정의 파벌투쟁 상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順帝는 大元제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정치적 무능력자로 묘사되어지곤 했다. 물론, 계승분쟁과 그로 인한 파벌투쟁으로 인해 조정의 정치가 혼란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成宗 사후에 잇달아 일어났던 계승분쟁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탐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順帝의 무능력만을 부각시켜 大元제국의 멸망을 설명하는 것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大元제국의 복잡한 계승분쟁 과정 속에서 바얀이 政界에 등장하여 專權을 행사하는 權臣이 되고 이후 몰락하기까지의 행적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얀의 등장, 그의 집권 및 몰락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여

2) 邱樹森, 『妥權貼睦爾傳』, 吉林教育出版社, 1991.

3) 張建新, 『蔑兒吉剌伯顏研究』, 香港大學中國文史 碩士學位論文, 1999.

4) 武宗 시기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玠爽, 『14世紀 初 元朝支配體制的 再編과 그 背景』,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李鳴飛, 『元武宗改革諸問題淺探』,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이 있다. 仁宗 시기를 다룬 연구로는 姚大力, 『元仁宗與中元政治』, 『內陸亞洲歷史文化研究 - 韓儒林先生紀念文集』, 南京大學出版社, 1986이 있다. 明宗과 順帝 시기를 각각 다룬 藤島建樹의 연구들(藤島建樹, 『元の明宗の生涯』, 『大谷史學』 12, 1970; 藤島建樹, 『元の順帝とその時代』, 『大谷學報』 49-4, 1970)은 『元史』와 같은 기본적인 사료들을 중심으로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고찰하였지만, 文集이나 筆記 사료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존재한다. 한편, 군주권과 재상권의 동향을 중심으로 大元제국 중기의 정치 상황을 살핀 연구로는 傅光森, 『元朝中葉中央權力結構與政治生態』, 國立中興大學歷史學系 博士學位論文, 2008이 있다.

大元제국 말기 政治史의 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2. 바얀의 政界 진출

世祖를 끝까지 괴롭혔던 카이두(海都, Qaidu)와의 전쟁은 成宗 시기에서야 비로소 마무리되었다.⁵⁾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던 인물은 바로 世祖의 증손자인 카이산(海山, Qaishan)이었다.⁶⁾ 카이산은 카이두와의 전쟁과 이후의 北邊 鎮撫 과정에서 양성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成宗 사후에 벌어졌던 계승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⁷⁾ 武宗 카이산 카안(재위 1307~1311)은 大都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즉위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동생 아유르바르와다(愛育黎拔力八達, Ayurbarwada)를 황태자에 임명하고 자신을 따랐던 諸王, 신료들에게 王號 혹은 관직 등을 수여하는 논공행상을 실시하며 자신의 정권을 만들어 나갔다.⁸⁾ 바얀은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政界로 진출할 수 있었다.

바얀은 15세 되던 해에 成宗의 명을 받아 카이산의 宿衛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따라 카이두와의 전쟁에도 참가해서 여러 번의 戰功을 세웠다. 이에 카이산은 大德 11년(1307)에 카라코룸에서 諸王, 駙馬들을 모아놓고 大事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바얀에게 바아투르(拔都兒, ba'atur)라는 칭호를 하사하였다.⁹⁾ 바아투르는 ‘영웅’을 뜻하는 몽골어로서, 이 칭호는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고 아주 명예로운 지위에 올랐음을 상징하기도 했다.¹⁰⁾

5) 카이두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田村實造, 『アリクブカの亂と海都の叛亂 - その歴史的意義について -』, 『中國征服王朝の研究(中)』, 東洋史研究會, 1971; 村岡倫, 『カイドウと中央アジア - タラスのクリルタイをめぐる -』, 『東洋史苑』 30・31, 1988; 村岡倫, 『オゴデイ=ウルスの分立』, 『東洋史苑』 39, 1992; Michal Biran, *Qaidu and the Rise of the Independent Mongol State in Central Asia*, Richmond Surrey: Curzon, 1997; 류병재, 「카이두 올로스 성립에 있어 탈라스 코릴타의 역할」, 『몽골학』 18, 2005 등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陳得芝, 「元嶺北行省建置考(下)」,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 12・13, 1989, pp.1~9; 劉迎勝, 『察合台汗國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6, pp.247~309 참고.

6) 카이산의 出鎮에 관해서는 松田孝一, 『カイシャンの西北モンゴリア出鎮』, 『東方學』 64, 1982 참고.

7) 武宗 즉위의 상세한 정치적 내막은 李珣夷, 앞의 논문, 93~103쪽; 薛磊, 『元代宮廷史』, 百花文藝出版社, 2008, pp.148~157 참고.

8) 武宗의 王號 수여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野口周一, 『元代武宗期の王號授與について - 『元史』諸王表に關する一考察』, 『アジア諸民族における社會と文化 - 岡本敬二先生退官記念論集』, 國書刊行會, 1984를 참고.

9) 『元史』 卷138, 伯顔傳, p.3335.

이후, 카이샨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바얀은 吏部尙書(大德 11년) → 尙服(院)使(至大 元年(1308)) → 御史中丞(至大 元年 11월) → 尙書平章政事(至大 2년(1309) 11월)를 거치며 차례차례 고위관료로 승진했다.¹¹⁾ 특히 尙書省은 원래 世祖 시기에 이미 폐지되었던 관료기구였지만, 武宗이 정권을 이끌기 위해서 다시 설립한 핵심관료기구였기 때문에 바얀이 尙書平章政事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정권의 핵심부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尙書省이 설립되었던 至大 2년 8월이 아닌 11월에 뒤늦게 바얀이 尙書平章政事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尙書省 건립을 직접 주도했던 세력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尙書平章政事가 된 이후에도 바얀이 정책 입안이나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¹²⁾

그러나 宿衛를 담당하는 몽골제국의 케식(怯薛, keshig)에 속한 인물이 케식長의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중앙 조정의 관직에 임용될 때는 그 官品이 從5品 이상이었던 점을 상기해보면,¹³⁾ 처음부터 正3品 관직인 吏部尙書에 拜受된 바얀은 武宗의 비호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政界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武宗이 자신의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직 수여의 남발은 신료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다음 기록에서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至大 元年 7월 癸未) 樞密院의 신료가 말하기를, “世祖 시기에는 樞密院의 신료가 6명이었는데, 成宗 시기에 1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은 두어진 사람이 32명이니, (인원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¹⁴⁾

世祖 황제 시기에는 사람을 임용할 때 반드시 格을 따랐는데, 지금은 選法이 무너진 채로 爵을 내리고 있습니다. …… 世祖 황제 시기에는 省·臺가 각각 달리 관원을 뽑았는데, 지금은 그 官職을 침탈하면서 서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¹⁵⁾

위 두 기록을 통해서 武宗 시기 (尙書)省, (樞密)院, (御史)臺의 관료 임용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선발 방법도 일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武宗의 인재 등용을 비

¹⁰⁾ Jack Weatherford,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 Queens: How the Daughters of Genghis Khan Rescued his Empire*, New York: Crown Publishers, 2010, p.9.

¹¹⁾ 『石田集』 卷14, 敕賜太師秦王佐命元勳之碑(李叔毅 點校本, 中州古籍出版社, 1991, p.249).

¹²⁾ 武宗 시기 尙書省의 주요 官員에 대해서는 李鳴飛, 『元武宗尙書省官員小考』, 『中國史研究』 2011-3 참고. 그러나 李鳴飛는 바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바얀이 상서성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¹³⁾ 片山共夫, 『怯薛と元朝官僚制』, 『史學雜誌』 89-12, 1980, p.18.

¹⁴⁾ 『元史』 卷22, 武宗本紀1, p.501.

¹⁵⁾ 『歸田類稿』 卷2, 時政書(李鳴, 馬振奎 校點, 『張養浩集』, 吉林文史出版社, 2008, p.100).

관했던 신료들은 世祖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成憲’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武宗은 신료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尙書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나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尙書平章政事 바얀은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至大 4년(1311) 정월에 武宗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황태자로서 監國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아유르바르와다와 황태후 다기(答己, Dagi)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武宗 사망 이틀 후에 尙書省을 없애고 그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대거 숙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武宗 정권의 기반을 해체하고 난 이후, 3월에 아유르바르와다가 정식으로 즉위하였다. 仁宗 아유르바르와다 카안(재위 1311~1320)은 즉위한 이후 前代의 정책들을 폐기하고 世祖 시기의 成憲을 회복하는 것을 정국 운영의 초점으로 삼았다. 자칫하면 바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買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이전에 武宗 황제께서 멸망한 宋 太后的 湯沐地를 모두 大崇恩福元寺에 귀속시키라고 명하였는데, 平章政事 바얀은 계속 불가하다고 하였다. 황제께서는 진노하셨으나 바얀의 抗論은 그치지 않았다. 이후 仁宗 황제께서 鈔法 때문에 前代의 재상들을 詰責했는데, 公(買奴)이 말하기를, “바얀이 先朝에 犯顔하면서까지 諫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盡忠이라 일컬을 수 있으니 죄를 더해서 견책하지는 마십시오”라고 하니 황제는 바얀을 풀어주었다.¹⁶⁾

위 기록을 통해 볼 때, 바얀은 尙書平章政事였음에도 불구하고 武宗의 정책들을 모두 따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얀의 영향력이 尙書省에서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임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尙書省의 핵심 관료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양에 보내졌던 반면, 바얀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仁宗은 바얀에게 관직을 내리지 않다가 延祐 3년(1316)에 그를 周王常侍府의 常侍로 임명하였다. 仁宗은 武宗의 장남인 코실라(和世琿, Qoshila)를 황위계승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그에게 周王이라는 왕호를 하사한 이후에 雲南으로 보냈고, 周王常侍府를 두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雲南으로 보내려 했던 것이다.¹⁷⁾ 이에 불만을 품은 周

16) 『金華黃先生文集』 卷24, 宣徽使太保定國忠亮公神道第二碑(王頤 點校, 『黃潛全集』, 天津古籍出版社, 2008, p.653).

17) 武宗은 동생 아유르바르와다를 황태자로 삼으면서 그 이후의 帝位는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兄弟叔姪, 世世相承’으로 표현될 정도로 조정 내에서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된 아유르바르와다는 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고자 조카인 코실라를 중앙 조정으로부터 먼 곳으로 쫓아내

王 진영은 雲南으로 가던 도중에 군사 반란(關陝之變)을 일으켰으나 내부 분란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周王 코실라는 北邊 알타이 산맥 以西로 도망쳤으며,¹⁸⁾ 仁宗은 곧바로 자신의 아들 시데발라(碩德八剌, Shidebala)를 황태자로 세웠다.¹⁹⁾ 하지만 바얀은 關陝之變이 일어난 다음 해인 延祐 4년(1317)에 南臺御史中丞에 임명되었고, 이는 바얀이 常侍로서 周王 코실라를 호위하는 직임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돌아와서 仁宗이 내리는 관직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중앙 조정을 향한 반란 움직임에 대해 周王 진영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아래 기록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明宗(周王 코실라)이 潛邸에 있을 때 武格을 글을 講說하는 秀才로 선발했고 雲南으로 出鎮할 때 武格이 동행했다. 明宗이 陝西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武格이 간언하기를, “태자께서 북쪽으로 가시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는 임금의 명이고 집안에 있어서는 숙부의 명이니 지금 만약에 京師를 향하여 한 발의 화살이라도 쏘게 되면 史官은 반드시 태자를 반역자로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좌우에서는 武格의 말을 싫어하여 “武秀才의 어머니가 京師에 있으니 마땅히 돌려보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武格은 京師로 돌아왔다.²⁰⁾

武格은 周王의 군사 행동에 반대했고, 결국 쫓겨나듯이 大都로 돌아왔던 것이다. 또한 훗날 至正 연간에 중서우승상을 역임하게 되는 베르케부카(別兒怯不花, Berke Buqa)도 周王 이 雲南으로 出鎮할 때 따라갔다가 大同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왔고, 이에 仁宗이 그를 불러서 宿衛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²¹⁾ 그리고 周王常侍府의 常侍였던 투글룩(禿忽魯, Tuglug)이라는 인물은 關陝之變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仁宗은 그를 陝西行省 左丞相에 임명했던 사례도 있다.²²⁾ 바얀도 이들과처럼 도중에 周王 진영에서 이탈하면서 다시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元史』에 따르면 南臺御史中丞(延祐 4년, 1317) → 南臺御史大夫(延祐 5년, 1318) → 江浙行省平章政事(延祐 6년, 1319) → 陝西行臺御史大夫(延祐 7년, 1320) → 南臺御史大夫(至治 2년, 1322)²³⁾ → 江西行省平章政事(泰定 2년, 1325) →

버렸던 것이다.

18) 赤坂恒明, 『ホシラの西行とバイダル裔チャガタイ家』, 『東洋史研究』 67-4, 2009, pp.36~38; 沈昊成, 『몽골帝國期 東部 중앙아시아 驛站 교통로의 변천』, 『東洋史學研究』 118, 2012, 125쪽.

19) 『元典章』 卷1, 詔令에 실린 仁宗의 赦罪詔, 建儲詔를 참고(陳高華, 張帆, 劉曉, 黨寶海 點校, 『元典章』, 中華書局·天津古籍出版社, 2011, pp.23~25).

20) 『元史』 卷199, 隱逸, 武格傳, p.4480.

21) 『元史』 卷140, 別兒怯不花傳, p.3365.

22) 杉山正明, 『大元ウルスの三大王國 - カイシヤンの奪權とその前後(上)』,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34, 1995, p.128.

河南行省平章政事(泰定 3년, 1326)의 순서로 관직에 拜受되고 있다.²⁴⁾

仁宗이 즉위하면서 武宗 정권의 핵심을 구성했던 신료들은 처형되거나 유배를 당했고, 5년 후에 일어난 關陝之變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나마 남아 있었던 武宗系 인물들마저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바얀은 이에 연루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비록 중앙의高官은 아니지만 從1品에 해당되는 行臺御史臺夫 혹은 行省平章政事の 직함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泰定帝 이순테무르 카안(재위 1323~1328)은 武宗系와 仁宗系 신료들을 고루 등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武宗系 신료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고,²⁵⁾ 바얀은 大都와 거리가 가까운 河南行省의 平章政事를 맡게 되면서 훗날 일어나는 兩都內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3. 엘테무르 집권 시기의 바얀

致和 원년(1328) 7월에 泰定帝가 上都에서 사망하면서 帝位를 둘러싼 계승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武宗系 신료였던 엘테무르(燕鐵木兒, El-Temür)가 大都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祖宗의 正統이 武宗의 혈통에 있음을 천명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쿠데타에 대한 모의는 泰定帝 생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래 기록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

任速哥는 은밀히 平章政事 速速과 모의하기를, “先帝의 원한을 孤臣이 朝夕으로痛心했으나 이를 갚을 수가 없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武宗 황제의 아들 2명이 계신데, 長子 周王이 正統이시나 너무 멀리 朔方에 계셔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次子 懷王께서는 人望을 받고 계시고 가까운 金陵에 계시니 傳命이 용이합니다. 만약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여 大計를 도모할 수 있다면 先帝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速速은 옳다고 여겼다. 이때 엘테무르가 마침 僉樞密院事여서 병권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었고 任速哥, 速速 2명과 결탁하였다.²⁶⁾

23) 바얀이 두 번째로 南臺御史大夫가 된 해를 至治 3년(1323)으로 적은 기록도 있다(『至正金陵新志』 卷6下, 官守志2, 題名, 行御史臺; 洪金富 點校, 『元代臺憲文書匯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3, p.561).

24) 『元史』 卷138, 伯顏傳, p.3335.

25) 張建新은 泰定帝 시기에 武宗系 신료들이 중앙 조정으로부터 더욱 소외되었다고 주장했지만(張建新, 앞의 논문, p.78), 泰定帝는 알타이以西로 도망간 周王에게 사신을 보내고 英宗에 의해 쫓겨난 武宗의 차남을 大都로 다시 오게 하여 懷王에 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武宗系 신료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26) 『元史』 卷184, 任速哥傳, p.4236.

이들은 南坡之變²⁷⁾으로 인해 시해된 英宗 시테발라 카안(재위 1320~1323)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 하에 武宗의 차남 懷王 토크테무르(圖帖睦爾, Tog Temür)를 황제로 옹립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大都에서 엘테무르의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懷王 토크테무르를 大都까지 무사히 데려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泰定帝 사후 上都에 머물러 있는 세력들이 선수를 치기 전에 武宗의 혈통을 이은 懷王을 황제로 추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토크테무르는 英宗에 의해 海南으로 쫓겨났다가 泰定帝가 즉위하면서 懷王이라는 王號를 수여받고 建康(金陵이라고도 칭함, 현재의 南京)에 있다가 다시 江陵으로 주거지를 옮긴 상태였다. 엘테무르는 懷王 옹립 계획을 河南行省平章政事 바얀에게 은밀히 알렸고, 이에 바얀은 “이 분(懷王)께서는 우리 군주(武宗)의 아들이시다. 내가 일찍이 武宗 황제의 두터운 은총을 입고 심복으로서 대우를 받아 지금 爵位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에 하나라도 내가 부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바라지 않는데 大義에 임하는 것에 어찌 감히 관망하고만 있겠는가?”²⁸⁾라고 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엘테무르가 바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바얀은 武宗이 황제가 되기 이전부터 北邊에서의 전투에서 활약하면서 그때의 戰功으로 인해 정계에 진출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仁宗, 英宗 시기가 지나면서 武宗과 함께 北邊에서 전투를 몸소 경험하고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여 관직을 보유한 인물들이 정치적 견제로 인해 대부분 몰락했지만, 바얀은 살아남아 있었다. 둘째, 바얀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군사적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懷王을 江陵에서 大都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河南行省이 관할하는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도중에 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懷王을 扈從할 군사력이 필요했다. 또한 엘테무르는 上都 진영과의 전쟁에 집중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남쪽의 상황까지 세세히 돌볼 여유가 없었다. 엘테무르는 바얀이 大都 이남을 어느 정도 장악해주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바얀은 엘테무르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군사적으로는 民丁의 징발 및 驛馬의 증치, 무기 보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바얀의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平章政事 曲烈과 右丞 베키테무르(Beki Temür, 別吉帖木兒), 參政 투베테이(Tübetei, 脫別台) 등을 비롯한 반대파들을 모두 죽이고 河南行省을 장악했다.²⁹⁾ 河南行省의 주요 관원 중에서는 左

27) 南坡之變의 자세한 정치적 내막에 대해서는 蕭功秦, 『英宗新政與“南坡之變”』, 『元史論叢』 2, 中華書局, 1983; 王頌, 『元英宗朝政治與南坡之變』, 『暨南史學』 1, 暨南大學出版社, 2002; 劉曉, 『“南坡之變”芻議 - 從“武仁授受”談起』, 『元史論叢』 12, 內蒙古教育出版社, 2010 등을 참고.

28) 『元史』 卷138, 伯顏傳, p.3336.

29) 『石田集』 卷14, 敕賜太師秦王佐命元勳之碑, pp.247~248.

丞 韓若愚만이 바얀의 노선을 따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³⁰⁾ 이렇게 바얀이 하남행성의 동료 관원들까지 모두 죽인 것은 行省官의 직권을 뛰어넘는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었다.³¹⁾ 더 나아가 바얀이 制를 위조하여 汴梁路總管이었던 울룩테무르(Ölög Temür, 月魯帖木兒)를 河南行省參知政事에 임명하고 함께 병력을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울룩테무르가 “皇子께서 북쪽으로 돌아오고 계신데, 參政은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고 물어 보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거절했다는 기록³²⁾은 바얀이 行省의 人事까지 장악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懷王은 河南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얀을 河南行省左丞相으로 승진시키면서 그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렇게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킨 바얀은 별도로 용사 5,000명을 모아 懷王을 직접 호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山東河北蒙古軍都萬戶府左手萬戶 이수테르(也速迭兒, Yisüder)에게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른 이수테르를 河南行省參知政事에 임명하였다. 이수테르는 이후 懷王을 大都로 호송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더 나아가 병력을 이끌고 내전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³³⁾ 즉, 엘테무르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바얀은 군사, 경제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특히 懷王을 안전하게 大都로 호송하여 무사히 황제[文宗]에 즉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文宗 토크테무르 카안(재위 1328~1329. 1, 1329. 8~1332)이 무사히 즉위한 이후, 엘테무르가 중심이 된 大都 진영은 上都 진영과의 ‘兩都內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³⁴⁾ 하지만 文宗은 즉위조서에서 宗戚과 臣僚 등이 황제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을 수 없고 周王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를 언급하며 자신이 즉위할 것을 간청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황제가 된 것이고, 이에 大兄³⁵⁾(즉, 周王)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양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³⁶⁾ 이는 자신보다 帝位에 대한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周王

30) 『元史』 卷176, 韓若愚傳, p.4112.

31) 李治安, 『元代行省制度』, 中華書局, 2011, p.212.

32) 『危太樸文續集』 卷7, 故榮祿大夫江澗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月魯帖木兒公行狀(『元人文集珍本叢刊』 卷7, 新文豐出版公司, 1985, pp.568~569).

33) 『道園學古錄』 卷24, 曹南王勳德碑(王頌 點校, 『虞集全集』, 天津古籍出版社, 2007, pp.1026~1027).

34) ‘兩都內戰’의 상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張金鈺, 『元兩都之戰及其社會影響』,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0-5, 2006, pp.111~112;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10, 262~267쪽 참고.

35) 大兄은 몽골어 예케 아카(yeke aqa)를 한자로 번역한 것인데, 아카는 ‘長者’ 혹은 ‘尊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였다. 이에 대해서는 金浩東,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2006, 245~246쪽 참고.

36) 『元文類』 卷9, (天曆元年) 即位改元詔(商務印書館本, 1958, p.114).

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文宗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즉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엘테무르를 中書右丞相에 임명하였고, 이전에 맡고 있던 知樞密院事의 직함도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文宗은 엘테무르에게 太平王이라는 王號까지 하사하여 권위를 더욱 높여 주었고, 뛰어난 공을 세워야만 받을 수 있는 다르칸(答刺罕, darqan)³⁷⁾ 칭호까지 수여하였다. 이전의 權臣들도 생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위를 엘테무르는 단번에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文宗은 “朝廷의 政務와 물수한 田宅을 사여하는 일을 엘테무르와 논의하지 않고 상주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³⁸⁾고 할 정도로 엘테무르를 신뢰하며 그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엘테무르 휘하의 左·右 欽察衛에 더하여 龍翊衛를 두고, 이를 통할하는 都督府를 天曆 2년(1329) 正月에 세워 이를 엘테무르가 총괄하게 하면서 엘테무르가 보유한 군사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³⁹⁾

반면, 바얀에 대한 文宗의 처우는 엘테무르와 사뭇 달랐다. 물론, 文宗은 大都로 무사히 들어오자마자 바얀을 御史大夫에 임명하고,⁴⁰⁾ 엘테무르와 바얀에게만 三職署事를 겸할 수 있게 허락하여⁴¹⁾ 그들이 자신의 즉위에 커다란 공을 세웠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文宗은 유독 엘테무르에게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바얀과 엘테무르가 함께 논공행상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고 하는 監察御史의 간언이 나왔을 때에도 文宗은 “바얀의 공은 짐이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 御史는 이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⁴²⁾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후 文宗은 바얀과 亦列赤를 함께 御史大夫에 임명한다는 ‘공식적인’ 聖旨를 반포했다.⁴³⁾ 이미 御史大夫인 바얀에게 다른 實權을 주지 않고, 御史臺를 독단적으로 관할하지도 못하게 하는 조치였다.

게다가 文宗은 天曆 2년(1329) 正月에 엘테무르를 御史大夫에 임명하였다.⁴⁴⁾ 비록 1달도 채 안되어 엘테무르는 다시 中書右丞相이 되었지만 文宗 특테무르 카안이 굳이 엘테무르를 잠시나마 御史大夫로 삼았던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아래 기록을 보면 그

37) 다르칸은 뛰어난 功勳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特權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한 칭호로 이에 대해서는 韓儒林, 『蒙古答刺罕考』, 『中國文化研究所集刊』 1卷 2期, 1940(韓儒林, 『穹廬集』, 上海人民出版社, 1982에 재수록); 惠谷俊之, 『答刺罕考』, 『東洋史研究』 22-2, 1963 참고.

38) 『元史』 卷32, 文宗本紀1, p.716.

39) 『元史』 卷138, 燕鐵木兒傳, p.3331.

40) 『元史』 卷32, 文宗本紀1, p.707.

41) 『元史』 卷32, 文宗本紀1, p.718.

42) 『元史』 卷32, 文宗本紀1, p.722.

43) 이 聖旨를 통해 文宗은 자신을 호종하여 大都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데에 바얀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聖旨의 원문은 『憲臺通紀』(王曉欣 點校, 『憲臺通紀(外3種)』, 浙江古籍出版社, 2002, pp.72~73)에 기록되어 있다.

44) 『元史』 卷33, 文宗本紀2, p.727.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다.

엘테무르가 丞相의 印을 해지하고 宿衛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황제가 그에게 강요하며 말하기를, “卿은 이미 省院(中書省과 樞密院)에 있는데 오직 御史臺에만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후의 명을 기다려라”라고 했다.⁴⁵⁾

즉, 文宗은 엘테무르가 丞相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그를 御史大夫로 임명하여 엘테무르가 받아보지 못했던 御史臺 관직을 주었는데, 中書省과 樞密院⁴⁶⁾을 장악한 엘테무르가 御史臺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御史大夫 바얀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고, 엘테무르와 함께 논공행상의 반열에 오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文宗이 즉위하자마자 바얀과 엘테무르의 연합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균열이 더욱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周王의 황제 즉위였다.

사실, 文宗은 兩都內戰이 끝난 이후 자신의 近侍인 핫산(哈散, Hassan)과 사디(撒迪, Sadi)를 周王의 行在所로 보냈고 이에 朔漠의 諸王들이 모두 周王에게 京師로 南還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周王의 謀客 중에 史彬然이라고 하는 사람은 周王에게 카라코룸에서 먼저 즉위하여 조서를 천하에 반포한 이후에 大都로 갈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⁴⁷⁾ 이에 周王은 大都를 향해 출발했다. 이때부터 周王은 大都로, 文宗은 周王의 行在所로 지속적으로 상호 사신을 보내면서 서로간의 정세를 살폈다. 하지만 周王이 보낸 사신이 京師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 天子께서 정말로 북쪽에서 오고 계신다”⁴⁸⁾고 하며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文宗은 ‘임시 天子’라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결국 天曆 2년 正月 28일에 周王이 카라코룸 북쪽에서 즉위하니 그가 明宗 코실라 카안(재위 1329. 1~1329. 8)이다. 明宗은 자신에게 와 있던 文宗의 近

45) 『元史』 卷138, 燕鐵木兒傳, p.3331.

46) 엘테무르는 보유하고 있던 知樞密院事의 직함을 이미 그의 숙부인 東路蒙古元帥 不花帖木兒에게 넘겨주었고(『元史』 卷32, 文宗本紀1, p.717), 추밀원은 여전히 엘테무르와 그의 가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47) 『梧溪集』 卷6, 題武州守張公奉先遺藁後(『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95, 書目文獻出版社, 1998, p.559).

48) 『元史』 卷31, 明宗本紀, p.695.

49) 그리고 文宗 즉위에 대한 논의를 정할 때에 回回라는 사람은 이미 “변칙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은 평상시와는 다르고, 神器(帝位)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니니, 皇弟(즉, 文宗)께서 마땅히 섭정하여 다른 변고를 막아야 합니다”(『潛溪後集』 卷8, 元故榮祿大夫陝西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康里公神道碑銘(羅月霞 主編, 『宋濂全集』, 浙江古籍出版社, 1999, p.271))라고 말하여 文宗의 지위를 섭정으로 분명히 한정짓고 있다.

侍 사디를 京師로 보내어 자신의 즉위를 알리게 했고, 1달 뒤에 大都에서는 明宗의 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엘테무르와 바얀에게 있어서 明宗의 즉위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자칫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권력 기반이 明宗에 의해 해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天曆 원년 11월에 四川에서는 行省平章 낭기야다이(Nanggiyadai, 囊加台)가 중앙 조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⁵⁰⁾ 엘테무르와 바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낭기야다이가 반란을 일으킨 목적은 周王을 황제로 추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엘테무르와 바얀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⁵¹⁾ 四川에 있었던 낭기야다이는 이후에도 明宗의 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반란을 확장시켰고, 불안감을 느낀 엘테무르와 바얀은 이 사건을 속히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大都 조정에서는 낭기야다이를 토벌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그에게 明宗의 즉위 소식을 전해주었고, 낭기야다이는 순순히 항복했다. 아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四川行省은 서남쪽에 떨어져 있어 平章政事 낭기야다이가 이로 인해 병력을 모아 自守했다. 조정에서는 병력을 정비하여 그를 죽일 것을 논의했는데, 公(王結)이 말하기를, “蜀(四川)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을) 알지 못할 것이 염려되니 사신을 보내 깨우치십시오. 만약에 명을 어기면 그때 병력을 일으켜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낭기야다이가 來朝했다.⁵²⁾

반란이 진압된 이후, 文宗은 중서성과 어사대의 分官들이 옥새를 받들어 북쪽으로 직접 가져오라는 明宗의 칙령⁵³⁾에 따라 엘테무르 등에게 옥새를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그리고 “寶璽가 이미 북쪽으로 올라갔으니 이제부터 국가의 政事는 사람을 보내 (明宗의) 行在所에 보고할 것이다”⁵⁴⁾라고 하면서 양위의 질차를 확실하게 밟아나갔다. 明宗은 공식적인 즉위 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文宗이 보낸 中書左丞 올테무르(躍里帖木兒, Yol Temür)⁵⁵⁾에게 즉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50) 『山右石刻叢編』 卷36, 傅傑碑(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 編, 『歷代石刻史料彙編』 11, 北京圖書館出版社, 2000, p.525).

51) 『宋學士文集』 卷59, 故翰林侍講學士中順大夫知制誥同修國史危公新墓碑銘(羅月霞 主編, 앞의 책, p.1461).

52) 『滋溪文稿』 卷23, 元故資政大夫中書左丞知經筵事王公行狀(陳高華, 孟繁清 點校本, 中華書局, 1997, p.385).

53) 『滋溪文稿』 卷15, 元故浙僉東海右道肅政廉訪司事甄君墓碑銘, p.247.

54) 『元史』 卷33, 文宗本紀2, p.731.

55) 文宗 시기 올테무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小田壽典, 『1330年の雲南遠征余談』, 『內陸アジア史研究』 1, 1984, pp.17~19 참고.

(明宗) 황제가 中書左丞 올테무르에게 말하기를, “짐이 上都에 도착하면 宗藩 諸王이 반드시 모두 와서 모일 것이니 평상시의 朝會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諸王 차아타이(察阿台, Ča'atai)도 지금 짐을 따라 멀리서부터 오고 있으니 有司에서는 朝會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다. 卿은 中書省의 신료들과 함께 이를 논의하라”라고 하였다.⁵⁶⁾

明宗은 자신이 上都에 도착하면 諸王들이 모두 모인 朝會에서 공식적인 즉위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히고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했다. 특히 諸王 차아타이(明宗이 망명했던 차가타이 울루스의 군주 엘지기데이(燕只吉台, Eljigidei)로 추정된다)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다.

엘테무르는 天曆 2년 4월에 明宗의 行在所에 도착하여 옥새를 바쳤다.⁵⁷⁾ 이에 明宗은 엘테무르가 받았던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고, 엘테무르는 중서성과 추밀원, 어사대에 관료를 임명할 것을 주청하였다. 明宗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료 체제를 형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엘테무르와의 마찰이 발생했다. 아래 기록을 살펴보자.

엘테무르 등이 아뢰기를, “中政院이 中書省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황제께 상주하여 관직을 除授했습니다. 移文이 오자 制敕을 요구했고, 이미 요구한 바대로 制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大體에 합당하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금지시키고 政權을 하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⁵⁸⁾

中政院은 明宗의 常侍였던 尚家奴가 관할하는 官司였는데, 엘테무르가 맡고 있는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明宗에게 관직 除授를 상주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불만을 엘테무르가 표출했다는 것은 明宗의 侍臣과 엘테무르 사이에 권력을 둘러싼 마찰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明宗은 동생 文宗을 황태자에 임명하였고, 文宗은 바얀을 太子詹事로 삼아 자신을 보좌하게 했다. 文宗은 明宗을 맞이하기 위해 大都를 떠났고, 바얀 역시 그와 동행하였을 것이다. 天曆 2년 8월 1일에 明宗은 옹구차두(王忽察都, Onggučadu)라는

⁵⁶⁾ 『元史』 卷31, 明宗本紀, p.696.

⁵⁷⁾ 17세기의 일부 몽골문 史書에서는 코토토 카안(明宗)이 天曆 2년 4월 3일에 체첸투 호수에서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明宗이 옥새를 받은 것을 공식적인 즉위 의식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朱風, 賈敬顏 譯, 『漢譯蒙古黃金史綱』, 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p.44(몽골문 원문은 p.187); 烏雲畢力格, 『《阿薩喇克其史》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9, p.104(몽골문 원문은 p.274).

⁵⁸⁾ 『元史』 卷31, 明宗本紀, p.699.

곳에 도착했고, 이튿날에 皇太子가 된 文宗이 明宗을 알현했다. 關陝之變이 일어난 지 13년 만에 이루어진 형제 상봉이었고, 諸王과 大臣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그런데 4일 후인 8월 6일에 明宗이 갑자기 사망했다. 明宗은 엘테무르에 의해 독살된 것이었고,⁵⁹⁾ 文宗은 바얀을 中書左丞相에 임명하여 太子詹事로서 자신을 보호해 준 공적에 보답함과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皇太子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리고 四川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낭기야다이를 기어코 죽인 후, 文宗은 다시 황제가 되었다. 明宗을 독살하고 文宗이 다시 황제에 즉위하는 과정 속에서 바얀과 엘테무르의 연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⁶⁰⁾

文宗이 다시 즉위하면서 엘테무르와 바얀은 각각 中書右丞相, 中書左丞相의 직함을 보유한 權臣이 되었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둘 사이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文宗은 至順 元年(1330) 2월에 바얀을 中書左丞相에서 知樞密院事로 바꾸어 임명하고, 엘테무르를 그대로 中書右丞相으로 삼으면서 앞으로는 中書左丞相을 두지 않겠다는 詔書를 내렸다.⁶¹⁾ 이에 엘테무르가 홀로 丞相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는 형국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엘테무르의 위세는 文宗의 비호 아래에 점점 커져갔지만, 바얀은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다.⁶²⁾ 文宗은 엘테무르를 제어하지 않았고, 바얀은 이에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高麗史』에 보인다.

이전에 (忠惠)王이世子로서入朝했을 때,丞相 엘테무르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아들처럼 여겼다. 그래서 忠肅王이 왕위를 사양하니 황제에게 아뢰어 (忠惠王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때 太保 바얀은 엘테무르가 정권을 독차지한 것을 싫어하여 忠惠王에게 무례하게 대하였다.⁶³⁾

위 기록에서 엘테무르에게 눌러 있었던 바얀의 심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바얀

59) 『牧隱文藁』 卷17, 海平君諡忠簡尹公墓誌銘(金龍善 編,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3, pp.610~611).

60) 張建新은 바얀이 明宗의 侍臣이었기 때문에 明宗 독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바얀을 회유하기 위해서 文宗이 그에게 태자첨사 및 중서좌승상의 직위를 수여했다고 보고 있다(張建新, 앞의 논문, p.92). 하지만, 바얀이 明宗을 끝까지 보필하지 않았다는 점과 四川에서 明宗 즉위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 낭기야다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점 등은 張建新의 주장에 의문점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61) 『元史』 卷34, 文宗本紀3, pp.752~753.

62) 이에 반해 文宗이 엘테무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바얀을 활용했다는 주장(呂治昊, 『元代 아스人(Asud)의 擡頭와 政治的 役割』,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34~35쪽)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文宗 스스로가 엘테무르에게 부여한 권력이 너무나 컸다.

63) 『高麗史』 卷36, 忠惠王世家, 忠肅王 後元年.

은 엘테무르가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엘테무르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忠惠王까지 미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兩都內戰과 明宗 독살 이후 엘테무르와 바얀의 ‘합동 독재(joint dictatorship)’⁶⁴⁾가 명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엘테무르에게 다방면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엘테무르의 ‘독재’가 실행되고 있었다. 文宗의 즉위에 역시 커다란 공을 세운 바얀은 권력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엘테무르와 바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엘테무르를 비호해 주었던 文宗이 至順 3년(1332)에 사망한 이후에는 그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결국 바얀이었고, 이제 그가 정권을 독차지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4. 바얀의 專權과 그의 몰락

文宗이 사망하면서 그 뒤를 이을 황제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엘테무르는 文宗의 아들 엘테구스(燕帖古思, El-Tegüs)를 지명했는데, 엘테구스는 文宗의 지시로 엘테무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⁶⁵⁾ 엘테무르는 자신과 친밀한 엘테구스를 황제로 옹립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文宗의 皇后는 아래와 같은 文宗의 유언을 언급하면서 明宗의 장남인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 Togon-Temür)를 지목하였다.

지난 날 晁忽叉의 일은 짐에게 있어서 평생의 큰 실수였다. 짐이 일찍이 中夜에 이를 생각해보았는데 후회막급이다. 엘테구스가 비록 짐의 아들이고 짐이 총애하지만, 지금의 大位는 明宗의 大位이다. 너희들이 짐을 아끼는 것처럼 원컨대 明宗의 아들 토곤테무르를 소환하여 大位에 등극시켜라.⁶⁶⁾

晁忽叉는 明宗이 독살되었던 장소인 옹구차두를 일컫는 것인데, 위 유언은 엘테무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었다. 엘테무르를 총애했던 文宗이 실제로 이러한 유언을 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文宗의 皇后는 이 유언을 이용해 엘테무르를 압박했다.

⁶⁴⁾ Hsiao Ch'i-Ch'ing(蕭啓慶), "Mid-Yüan Politics", Herbert Franke &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547.

⁶⁵⁾ 『元史』 卷35, 文宗本紀4, p.790. 이 기록에 나오는 皇子 古納答剌이 至順 3년에 엘테구스로 개명하였다.

⁶⁶⁾ 『庚申外史』 卷上(任崇岳, 『庚申外史箋證』, 中州古籍出版社, 1991, pp.7~8).

엘테무르는 文宗이 재위하고 있었던 至順 元年에 토곤테무르를 황제에 등극시키고자 했던 음모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토곤테무르를 고려로 쫓아낸 적이 있었다.⁶⁷⁾ 그 이후에 고려와 遼陽에서 토곤테무르를 받들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엘테무르는 재빨리 토곤테무르를 廣西의 靜江으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엘테무르는 자신이 독살한 明宗의 장남 토곤테무르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文宗의 皇后가 토곤테무르를 지원하면서 엘테무르는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7살 된 明宗의 차남인 이린친발(懿璘質班, Irinčinbal)을 황제(즉, 寧宗)로 즉위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寧宗이 즉위한 지 53일 만에 사망하면서 정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엘테무르는 다시 엘테구스를 즉위시키려고 했으나, 寧宗 즉위 이후 皇太后가 된 文宗 皇后는 엘테구스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廣西에 있던 토곤테무르를 소환하여 즉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들이 즉위하는 것마저 미루고 文宗의 유언을 따른다는 이유로 토곤테무르의 즉위를 밀어붙인 것은 결국에는 엘테무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토곤테무르는 大都로 소환되었고 도중에 엘테무르가 토곤테무르를 만나 현재의 政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토곤테무르는 엘테무르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엘테무르는 토곤테무르의 태도를 보고 난 이후 그를 즉위시키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엘테무르가 살아있는 동안 토곤테무르는 즉위할 수 없었고, 엘테무르가 사망하고 난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황제가 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順帝 토곤테무르 카안이다.

그렇다면, 文宗이 사망하고 順帝가 즉위하는 동안에 바얀이 취한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寧宗이 즉위한 이후 바얀이 徽政使에 임명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⁸⁾ 徽政使는 徽政院使를 일컫는 것으로, 徽政院은 太后의 재산을 관할하는 太后 직속 관청이었다. 원래는 皇太子를 보좌하기 위한 기관으로 世祖 시기인 至元 19년(1282)에 詹事院을 설치했는데 皇太子가 사망하면서 詹事院의 錢糧, 選法, 工役을 모두 太后에게 속하게 하고 詹事院을 徽政院이라 개칭하여 이를 관할하게 했던 것이다.⁶⁹⁾ 이후 皇太子를 임명하면 詹事院을 다시 세웠지만, 徽政院은 太后의 관청으로 그대로 남아 독단적인 세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泰定 원년(1324)이 되면 徽政院이 혁파되는데, 寧宗이 즉위한 이후에 바얀이 徽政使에 임명된 것을 보면 文宗 皇后가 皇太后로 그 지위가 상승하면서 다시 徽政

67) 이 사건에 대해서는 喬志勇, 『元至順元年只兒哈郎等“謀變”案探微』, 『元史及民族與邊疆研究集刊』 23, 上海古籍出版社, 2011 참고.

68) 『元史』 卷37, 寧宗本紀, p.812.

69) 『元史』 卷89, 百官志5, p.2243.

院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⁷⁰⁾ 결국 다시 설치된 徽政院의 院使로 임명된 바얀은 당연히 皇太后와 자주 접촉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게다가 엘테무르를 견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바얀 역시 皇太后와 뜻을 같이 하고 있었고, 엘테무르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가문에 대한 견제에 힘을 합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順帝는 바얀을 中書右丞相에 임명하였다.⁷¹⁾ 이는 文宗 시기 엘테무르의 지위를 바얀이 물려받았음을 의미하며, 즉위한 지 이틀 만에 이러한 조치가 행해졌던 것은 順帝와 皇太后 모두 바얀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엘테무르가 사망했다고 해서 엄청난 권위를 누려온 엘테무르 가문의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이에 順帝는 엘테무르의 동생 사둔(撒敦, Sadun)을 中書左丞相에 임명하였고 엘테무르의 딸을 황후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엘테무르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바얀과 사둔에게 양분되면서 政局은 긴장상태로 접어들었다.⁷²⁾ 하지만 바얀이 中書右丞相이 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수여받은 王號에 있어서도 바얀이 앞서 나갔다. 順帝는 元統 元年(1333) 10월에 사둔을 榮王에 봉했고, 11월에는 바얀을 秦王에 봉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둔과 바얀이 모두 一字王號를 받으면서 그 위세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엘테무르도 생전에는 一字王號를 받지 못했고 元統 2년(1334) 6월에야 비로소 德王으로 追封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사둔과 바얀이 생전에 一字王號를 받은 것은 宰相의 위신이 상당히 커졌음을 상징했다. 그런데 사둔이 수여받은 榮王과 바얀이 수여받은 秦王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榮王은 사둔에게 처음으로 수여된 王號였지만, 秦王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秦王은 世祖의 셋째 아들인 망갈라(忙哥剌, Manggala) 가문에 봉해졌다가 폐지된 王號였는데,⁷³⁾ 이를 부활시켜 바얀에게 수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였다. 禮部에서는 이에 대하여 “秦은 大國이기 때문에 宗王이 아니면 (王號로 삼는 것이) 불가합니다. 지금 승상의

70) 『元史』順帝本紀에는 元統 元年(至順 4년, 1333) 12월에 皇太后를 위해 徽政院을 설치하고 官屬 366명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元史』卷38, 順帝本紀1, p.819), 필자는 이미 寧宗이 즉위했을 때부터 徽政院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한다.

71) 『元史』卷38, 順帝本紀1, p.817.

72) 元統 2년(1334) 4월에는 엘테무르의 아들 탕기스(唐其勢, Tanggis)와 바얀의 동생 마자르타이(馬札兒台, Majartai)가 함께 御史大夫에 임명되면서(『元史』卷38, 順帝本紀1, p.821) 세력이 양분되고 있다. 결국 엘테무르 가문과 바얀 가문이 中書省은 물론이고 御史臺도 양분하게 되었다. 또한 樞密院의 경우에는 엘테무르의 동생 다리(答里, Dari)가 知樞密院事を 맡고 있었는데, 마자르타이가 가지고 있던 직함을 모두 겸하면서 知樞密院事에까지 임명되었던 것을 보면(『元史』卷138, 馬札兒台傳, p.3340) 中書省, 樞密院, 御史臺가 모두 엘테무르와 바얀 가문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3) 이에 대해서는 松田孝一, 『元朝期の分封制 - 安西王の事例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88-8, 1979, pp.46~49 참고.

식읍은 高郵인데, 高郵는 驛의 명칭이고 秦淮는 秦의 땅이 아니니 마땅히 淮로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淮王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건의했지만, 바얀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禮部의 논의는 묵살되었다.⁷⁴⁾ 바얀은 “나는 淮東에 秦郵라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秦郵에서 취하여 秦王이라 했고, 이는 西秦이 아닌데 무엇이 불가하겠는가?”⁷⁵⁾라고 하며 자신이 수여받은 秦王은 망갈라 가문의 秦王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⁷⁶⁾ 秦王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바얀이 秦王에 봉해지면서 그의 지위는 皇室의 강력한 諸王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얀과 사둔이 국정을 이끌었던 ‘긴장 속의 평화’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둔이 사망하고 엘테무르의 아들 탕기스가 中書左丞相을 물려받으면서 “天下는 본래 우리 집안의 天下인데, 바얀이 어떤 자인데 그 지위가 우리 위에 있는가?”⁷⁷⁾라고 하며 바얀이 中書右丞相이라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것이다. 결국 탕기스는 쿠데타를 모의하여 諸王 콩코테무르(晁火帖木兒, Qongqo Temür)를 옹립하기로 결의하고 元統 3년(1335, 後至元 元年) 6월에 궁궐로 침입했다. 그러나 이 음모는 이미 발각되어 바얀은 궁궐의 방비를 엄하게 하고 있었고, 탕기스와 그의 동생 타라카이(塔剌海, Taraqai)는 궁중에서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그리고 타라카이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바얀은 황후마저 폐하여 出宮시켜 開平의 민소에서 독살하였다. 또한 바얀은 친히 30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탕기스가 매복시켜 놓은 병사들을 죽여 급한 후환을 없앴고,⁷⁸⁾ 콩코테무르는 자살로써 생을 마감했다. 이로서 탕기스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엘테무르 가문은 政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⁷⁹⁾

엘테무르 가문이 몰락하면서 권력의 추는 급속하게 바얀에게로 기울어졌다. 順帝는 바

74) 『滋溪文稿』 卷8, 元故中奉大夫江浙行中書省參知政事追封南陽郡公諡文靖字允魯公神道碑銘, p.126.

75) 『庚申外史』 卷上, p.18.

76) 『大明一統志』 卷12, 揚州府, 古蹟에는 明代의 高郵州에 秦郵亭(秦代에 설치한 郵亭)이 있었고, 이것이 漢代에 高郵縣으로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다(臺聯國風出版社印行本, 1977, p.857). 또한, 『(嘉慶)高郵州志』 卷1, 建置, 沿革에도 秦代에 郵亭을 설치했고, 이를 秦郵라고 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中國地方志集成本, 江蘇古籍出版社, 1991, p.70).

77) 『元史』 卷138, 燕鐵木兒傳, p.3334.

78) 『山居新語』 卷1(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2006, p.205).

79) 이와 관련하여 바얀이 文宗을 옹립하기 위해 河南行省에서 일으켰던 쿠데타보다 이 음모를 진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는 기록(『至正集』 卷71, 恭題太師秦王所藏手詔(『元人文集珍本叢刊』 卷7, 新文豐出版公司, 1985, p.319))이 보이고 있고, 그만큼 바얀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테무르가 사라지면 바얀이 쉽게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 Dardess의 주장(John W. Dardess, 앞의 책, p.55)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얀이 계속 中書右丞相을 맡게 하면서 中書左丞相은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엘테 무르가 홀로 中書右丞相을 맡으며 전권을 장악했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었다. 또한 順帝는 文宗의 遺詔를 따라 자신을 大都에 이르게 한 것과 탕기스 등의 음모를 처단한 공적을 내세워 바얀에게 다른 칭호까지 사여하였다.⁸⁰⁾ 그리고 皇太后를 太皇太后로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시켰다. 中書參知政事 許有壬이 “황제와 皇太后께서는 母子 관계이십니다. 만약 太皇太后로 올리시게 되면 황제께서는 孫子가 되는 것이니 이는 禮法이 아닙니다.”⁸¹⁾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그녀를 太皇太后에 봉했다. 결국 太皇太后와 中書右丞相 바얀이 어린 順帝를 등에 업고 國政을 장악하게 되었다.

바얀은 大元제국의 전성기였던 世祖 시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中書平章政事 체릭테무르(徹里帖木兒, Čerig Temür)가 과거제 관련 시설에 지원되는 물자를 케식의 衣糧으로 지급하자고 하면서 과거제 폐지를 주장한 것에 바얀이 동조를 표했다. 世祖 시기에는 과거제도가 실시되지 않았고 케식에서부터 고위 관료를 충원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中書參知政事 許有壬을 비롯한 신료들이 이에 반발했고, 심지어 許有壬은 御史 30명이 바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면서 바얀의 기세를 제압하며 과거제가 오히려 選法을 해치고 있다는 바얀의 말에 차근차근 반박했다.⁸²⁾ 이에 바얀은 御史臺의 표적이 되었던 체릭테무르를 몰아내면서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면서도 과거제도는 결국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世祖 시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연호 개정이었다. 世祖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至元이라는 연호를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발은 존재했다. 당시에 監察御史였던 李好文은 “이전의 연호를 답습하는 것은 古來에 듣지 못했던 일이고, 그 명칭을 답습하면서 실질을 따르지 못하니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世祖 至元 연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의 폐단 10여 가지를 언급했다.⁸³⁾ 李好文이 언급했던 폐단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실 李好文의 말은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바얀이 집권한 시기에는 여러 차례의 계승분쟁 및 내분으로 인해 世祖 시기보다 케식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과거제도를 통해 政界에 진출하고자 하는 몽골인, 색목인, 漢人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世祖 시기와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는데 단지 연호만을 답습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⁸⁰⁾ 王敬松은 順帝의 다른 칭호 사여는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바얀이 順帝의 조서 작성에 개입하여 다른 칭호를 “自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王敬松, 『談元朝與右相有關的兩次詔赦』, 『元史論叢』 13, 天津古籍出版社, 2010, p.163).

⁸¹⁾ 『元史』 卷182, 許有壬傳, p.4201.

⁸²⁾ 『元史』 卷142, 徹里帖木兒傳, pp.3404~3405.

⁸³⁾ 『元史』 卷183, 李好文傳, p.4216.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얀은 자신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곳곳에서 자신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바얀은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고, 이에 자신의 권위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집권 시기 말기인 後至元 5년(1339)이 되면 바얀의 官銜은 무려 246字에 달했다.⁸⁴⁾ 이렇게 긴 官銜을 한번에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필요한 官銜을 수시로 취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바얀의 욕구가 얼마나 컸고 그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南村輟耕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王爵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薛禪 두 글자는 사람들이 모두 이름으로 쓸 수 있는데, 世祖 황제의 廟號가 된 이후로는 감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太師 바얀의 공덕이 高重하므로 薛禪이라는 이름을 수여해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御史大夫 테무르부카(帖木兒不花, Temür Buqa)가 또한 그 心腹이었는데 은밀히 省臣을 부추겨 그 청을 윤택할 것을 아뢰게 하였다.⁸⁵⁾

‘현명한’이라는 뜻의 몽골어 세첸(sečen)을 한자로 음寫한 薛禪은 世祖의 몽골식 廟號인데, 이 칭호를 바얀에게 수여하자는 건의는 그에게 世祖의 권위를 부여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順帝는 세첸 대신 ‘元德上輔’라는 호칭을 바얀에게 주면서 겨우 안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는 그만큼 바얀의 권위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얀의 心腹이었던 御史大夫 테무르부카가 이를 은밀히 부추겼다는 기록은 이 논의가 원칙적으로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바얀은 大元제국에서는 前例가 없었던 大丞相에 임명되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⁸⁶⁾

이러한 바얀의 정책 노선을 두고 그를 反漢주의자, 몽골식 가치를 고수하는 보수주의자 등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反漢주의’ 혹은 ‘보수주의’로 단정할 수 있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바얀이 비록 과거제도를 폐지하기는 했지만, 바얀 집권 시기에 조정에서의 經筵은 계속 거행되었고⁸⁷⁾ 上都에 있는 孔

84) 『山居新語』 卷2, pp.213~214. 이 기록에 나온 至正 5년은 (後)至元 5년의 誤記이다.

85) 『南村輟耕錄』 卷2, 權臣擅政(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2008, p.29).

86) 『元史』 卷40, 順帝本紀3, p.853.

87) 張帆, 『元代經筵述論』, 『元史論叢』 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p.139. 그리고 後至元 연간에 알린테무르(阿隣帖木兒, Alin Temür)가 大司徒知經筵事を 역임하고, 그 아들인 샤르반(沙刺班, Šarban)이 奎章閣侍書學士 兼 經筵官이 되었다는 기록(『山居新語』 卷2, p.210)을 통해서도 바얀 집권 시기에 經筵이 폐지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順帝에게 經筵을 다시 시행할 것을

子廟의 碑文 작성을 漢人 유학자들에게 맡길 것을 바얀이 주청했다는 기록⁸⁸⁾은 그가 漢인들의 문화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몽골 諸王에 대한 처벌은 그를 反漢주의자(혹은 민족차별주의자)라고 칭하기 어렵게 만든다. 『元史』 바얀 열전에는 바얀이 順帝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벌한 諸王으로 郯王 체첸투(徹徹篤, Čečegtü), 宣讓王 테무르부카, 威順王 쿤첵부카(寬徹普化, Kōnčeg Buqa)가 기록되어 있고,⁸⁹⁾ 『南村輟耕錄』에는 바얀이 剌(郯의 誤記)王 체첸투와 高昌王 테무르부카가 무죄인데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⁹⁰⁾ 위 기록에 등장하는 郯王, 宣讓王, 威順王, 高昌王은 모두 文宗이 즉위한 이후에 많은 사역을 받았고, 郯王은 북방 초원 일대를 관할했고 宣讓王과 威順王은 줄곧 湖廣 일대를 다스렸으며, 高昌王은 文宗의 충애를 받아 知樞密院事가 되었고 天曆 2년(1329)에는 中書左丞相, 太子詹事, 御史大夫를 모두 역임했던 인물이다.⁹¹⁾ 즉, 바얀은 엘테무르 집권 시기에 세력을 키웠던 대표적인 몽골 諸王들을 자신의 政敵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견제했던 것이다.⁹²⁾ 결국 몽골 諸王들을 임의로 처벌한 것, 世祖의 몽골식 廟號를 사용하려 한 행위 등은 자신의 권력에 계속 집착하는 바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바얀이 보수주의자 혹은 복고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바얀의 최고 관심사는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에 있었다.⁹³⁾

世祖 시기로 되돌아간다는 명분은 그럴 듯 했지만, 바얀 자신이 그 명분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그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順帝의 권위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世祖의 몽골식 廟號를 바얀에게 수여하라는 건의 이외에도 聖旨의 제목에서나 쓸 수 있는 金書를 바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⁹⁴⁾ 바얀의 생

바얀이 직접 주청했다는 기록(『元史』 卷138, 伯顏傳, p.3337)도 보인다.

88) 『至正集』 卷44, 上都孔子廟碑, p.216.

89) 『元史』 卷138, 伯顏傳, pp.3338~3339.

90) 『南村輟耕錄』 卷8, 岷江綠, p.103.

91) 『道園學古錄』 卷24, 高昌王世勳之碑(王頤 點校, 『虞集全集』, 天津古籍出版社, 2007, p.1017). 하지만, 高昌王 테무르부카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얀이 高昌王 테무르부카를 죽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高昌王 테무르부카가 바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집권한 토포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羅賢佑, 『元代畏兀兒亦都護譜系及其地位變遷』, 『民族研究』 1997-2, pp.77~79 참고.

92) 그러므로 엘테무르가 秦王이라는 왕호를 가지고 수많은 직함을 겸하면서 郯王 체첸투를 죽이고 거슬리는 사람들을 모두 없앴다고 한 杉山正明의 설명(스기야마 마사아키, 임대희 · 김장구 · 양영우 譯,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1999, 352쪽)은 엘테무르와 바얀을 혼동한 것이다.

93) Dardess는 바얀의 ‘反유교주의’가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한정된 개념이었다고 보았다. John W. Dardess, 앞의 책, p.60.

94) 『南村輟耕錄』 卷2, 權臣擅政, p.30.

일 때 百官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御史中丞 耿煥이 인파에 밀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는 일화,⁹⁵⁾ 바얀이 집권한 이후로 臺憲官은 모두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임명되었다는 기록,⁹⁶⁾ 바얀의 무리인 乞失과 者延不花가 大都, 河南, 江淮, 腹裏 등지를 奪占하고 保定, 雄州, 霸州 등지의 官民이 소유한 田土 및 房産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기록⁹⁷⁾ 등이 보이고 있어 바얀의 권위가 너무나 비대해져 있었고, 이에 빌붙어 국가에 해를 끼쳤던 무리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順帝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다.

바얀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順帝를 즉위시키는 데에 공을 세웠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엘테무르 가문을 제거하고 그가 단독으로 집권하는 데에는 順帝의 지지가 명분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文宗 사망 이후에 엘테무르가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바얀도 順帝의 지지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얀은 順帝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順帝는 바얀의 조카인 톡토(脫脫, Togto)를 활용하여 바얀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사실, 바얀은 자신의 조카인 톡토를 後至元 4년(1338)에 御史大夫에 임명하면서⁹⁸⁾ 御史臺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톡토는 바얀의 교만함이 너무 심하여 그 화가 가족에게 미칠 것을 염려했고, 톡토의 스승이었던 吳直方은 톡토에게 ‘大義滅親’을 강조했다. 이에 톡토는 자신을 믿지 않았던 順帝를 설득하여 바얀을 몰아내기 위한 모의를 계획했다. 바얀은 톡토가 오로지 漢人들과 우호를 맺고 있는 것을 항상 의심했고 조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자신을 수비하는 병력을 더욱 늘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後至元 6년(1340) 2월, 바얀이 柳林으로 사냥을 나간 사이에 톡토는 성문을 닫고 바얀을 河南行省左丞相으로 좌천시킨다는 順帝의 조서를 반포했다.⁹⁹⁾ 바얀은 이렇게 河南으로 쫓겨가다가 3월에 病死했다.

大丞相의 지위까지 취하면서 엄청난 권위를 보유했던 바얀의 몰락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톡토를 위시한 조정 내의 세력들이 바얀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바얀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그 이유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順帝의 의사 표현이었다. 20대에 접어든 順帝가 궁정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95) 『山居新語』 卷2, p.210.

96) 『草木子』 卷4下, 雜俎篇(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2006, p.82).

97) 『至正條格』 卷26, 條格, 田令, 豪奪官民田土(韓國學中央研究院 編, 『至正條格 校註本』, 휴머니스트, 2007, 64쪽).

98) 『憲臺通紀續集』 命脫脫爲御史大夫(王曉欣 點校, 『憲臺通紀(外3種)』, 浙江古籍出版社, 2002, pp.95~96).

99) 『元史』 卷138, 脫脫傳, pp.3341~3342.

것이다.¹⁰⁰⁾ 그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바얀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좌천되어 그 명령에 순순히 따른 것은 順帝의 권력을 향한 의지가 토크의 치밀한 계획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바얀은 토크가 자신을 몰아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크는 ‘大義滅親’을 몸소 실현했지만, 바얀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바얀을 몰아낸 이후인 後至元 6년 6월에 順帝는 文宗의 廟主를 철폐하고, 太皇太后 및 그녀의 아들인 太子 엘테구스까지 모두 쫓아냈다.¹⁰¹⁾ 順帝가 즉위할 당시 “萬歲 후에 엘테구스에게 傳位하여 武宗, 仁宗의 故事와 같이 한다”¹⁰²⁾는 논의를 뒤엎고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이들을 과감히 쫓아냈던 것이다. 또한, 後至元 7년을 至正 元年(1341)으로 개정하면서 ‘更化’¹⁰³⁾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至正 元年 이후의 聖旨에서 文宗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¹⁰⁴⁾ 이는 엘테무르와 바얀을 포함하여 자신의 아버지 明宗을 죽게 한 사람들에 대한 앙갚음이었다. 바얀의 축출로 인해 文宗 즉위를 통해 세력을 구축했던 權臣들의 시대가 막을 내렸던 것이다. 이후에도 順帝는 權臣들 사이의 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구축해 나갔고, 이는 그가 결코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군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엘테무르 - 바얀 - 토크로 이어지는 權臣의 교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順帝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얀의 貶黜과 그의 病死는 새로운 權臣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제 조정에서 초원에서의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를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사라졌다. 엘테무르와 바얀은 武宗의 近侍로 출발하여 北邊에서의 전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政界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順帝는 당연히 초원의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고, 새로 권력을 잡게 된 토크 역시 漢人들의 문화에 더욱 익숙해져 있었던

¹⁰⁰⁾ 여기에서 高麗 출신 奇氏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출신인 奇氏는 順帝의 총애를 받았지만, 바얀은 고려 출신의 여자는 절대로 황후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녀를 배척하고, 쿵그라트 종족 출신의 바얀쿠두(伯顏忽都, Bayan Qudu)를 後至元 3년(1337)에 황후로 세웠다. 그러던 중, 後至元 5년(1339)에 奇氏가 바얀쿠두 황후보다 먼저 順帝의 아들을 낳았다. 順帝로서는 文宗의 아들 엘테구스를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었다. 그러므로 아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奇氏를 황후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요인도 바얀 축출의 이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은숙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윤은숙, 『고려의 北元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 - 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研究』 15, 2010, 192 쪽). 단, 奇氏가 제2황후가 된 것은 바얀 축출 이후의 일이므로 後至元 3년에 제2황후가 되었다는 윤은숙의 서술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¹⁰¹⁾ 『元史』 卷40, 順帝本紀3, p.856.

¹⁰²⁾ 『元史』 卷38, 順帝本紀1, p.816.

¹⁰³⁾ 順帝 至正 연간의 ‘更化’에 대해서는 王明軍, 楊軍, 鄭玉艷, 『試論元朝末年的“至正更化”』, 『松遼學刊(社會科學版)』 1998-4를 참고.

¹⁰⁴⁾ 蔡美彪, 『八思巴字碑刻文物集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p.231.

사람이었다. 그리고 順帝가 文宗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없애버리면서 大元제국의 정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大元제국 말기의 權臣이었던 바안이 政界에 등장하여 집권하고 몰락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바안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의 독단적인 모습 및 민족차별의 성격을 가진 정책 자체에만 주목했고, 정작 바안이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成宗 사후에 벌어졌던 복잡한 계승분쟁 과정 속에서 바안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文宗의 총애를 받아 집권했던 엘테무르와 바안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엘테무르가 주도했던 文宗 옹립에 바안이 커다란 도움을 주면서 둘 사이에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졌지만, 文宗이 엘테무르를 더욱 총애하면서 그에게 매우 커다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明宗 독살 이후에 엘테무르와 바안 사이에는 틈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바안이 順帝 즉위 이후 엘테무르 가문을 제거하고 專權을 행사하는 발단으로 작용하였다.

엘테무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順帝가 즉위하면서 바안은 엘테무르 가문을 뒤엎고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政界의 고위관료로 진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결국 文宗 옹립이었는데 바안은 文宗 옹립의 주도자였던 엘테무르의 가문을 제거하면서 스스로를 정치적 고립에 빠뜨린 셈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안의 명분은 世祖 시기로의 회귀였지만, 권력에 대한 바안의 불안감과 집착이 더욱 커지면서 자신이 세운 명분마저 어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이 順帝를 자극했고, 바안은 권력 유지의 모든 명분을 상실한 채 順帝와 자신의 조카인 토포가 계획한 정변에 의해 축출되었다. 바안을 축출한 이후, 順帝는 文宗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흔적을 지우면서 복잡했던 계승분쟁을 종식시켰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훗날『元史』의 편찬자들이 엘테무르와 바안의 열전을 姦臣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바안에 대해서는 많은 한문 사료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武宗의 혈통을 다시 황제에 옹립한다는 엘테무르와 바안의 정치적 명분을『元史』의 편찬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姦臣으로 폄하되지 않고 ‘정당한

權臣'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집권이 大元제국 말기 政治史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三朝北盟會編』 판본 및 流轉 研究

유 원 준(경희대)

目 次

1. 『회편』과 徐夢莘
2. 『회편』의 특성
3. 판본과 연구 성과

1. 『회편』과 徐夢莘

『三朝北盟會編』¹⁾(이하 『會編』으로 약칭함)은 남송 徐夢莘²⁾(1126~1207)이 편찬한 編年體 史書로서, 북송 말에서 남송 초까지인 政和 7년(1117년)부터 紹興32년(1162년)까지 총 45년 동안 송·거란·금 등 세 왕조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외교·군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三朝’는 宋의 徽宗·欽宗·高宗 등 세 황제를 말하며 ‘北盟’은 북쪽 왕조와의 盟約을 말한다.

서몽신은 29세에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관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부임하기 직전

1) 樓鑰은 서몽신의 묘지명을 쓰면서 『三朝北盟集編』이라고 하였고, 趙希弁의 『郡齋讀書附志』에 서도 마찬가지로 『三朝北盟集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李心傳의 『繫年要錄』에서는 『會編』이라고 하였고, 王應麟의 『玉海』 권47에서는 묘지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集編’이라고 하였을 뿐 다른 서목에서는 모두 ‘會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판본에는 제목을 ‘會編’이라고 해놓고도 서문이나 서목에는 ‘集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會’와 ‘集’은 어의상 큰 차이가 없으나 여러 저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할 경우 ‘集’이 좀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서몽신은 처음에는 ‘會編’이라고 했지만 책을 다 완성하고 서문을 쓰면서 ‘집편’으로 바꿨던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集補’를 편집해 내용을 보완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陳樂素, 『三朝北盟會編考』, 臺北, 文海出版社, 1973, p.12)

2) 徐夢莘의 자는 商老이고 현 江西省에 속하는 臨江軍 清江縣 출신이다. 선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서몽신의 일생에 대한 논문으로는 『宋史』 권438과 樓鑰의 『攻媿集』 권108의 墓誌銘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陳樂素의 『徐夢莘考』(『國學季刊』 4-3, 북경대학)가 대표적이다. 陳樂素의 『三朝北盟會編考』, (臺北, 文海出版社, 1973, pp.148)의 내용 역시 『徐夢莘考』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송사』 권438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고 오류도 많지만 서몽신에 관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후대의 글은 거의 대부분 그것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본고 역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진락소의 논문을 참고한 것임을 밝혀둔다.

부친상을 당해 임용되지 못하였고, 후에 廣西 鬱林州 司戶參軍으로 임용되었으나 오래잖아 다시 모친상을 당해 귀향하고 말았다. 후에 湖北 江陵府 司戶가 되었다. 孝宗 乾道 4년(1168)에 江西 南安軍 教授가 되었고, 다시 湖南 潭州 湘陰縣 知縣이 되었다. 淳熙 7~8년(1180~1181)에 廣西 轉運司 主管文字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賓州 知州가 되었으나 부임과 동시에 파직되어 귀향하였는데 이 때 나이가 58세였다. 20여 년 동안 남북을 오가며 지방관을 역임한 서몽신의 관운은 그다지 순탄한 편은 아니었으나 그 점이 『회편』 편찬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賓州에서 돌아온 뒤 몇 년 동안 아내를 잃고 자식이 죽는 참기 힘든 고통이 연이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불우한 환경 역시 역사 속에서 운명의 흐름을 찾는데 더욱 집중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고종이 사망한 그 이듬해인 淳熙 15년(1188) 3월, 洪邁가 서몽신에게 실록 수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 일이 있는데,³⁾ 그것은 아마도 『회편』이 상당부분 완성되었고, 그것을 史館에서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서몽신은 直祕閣에 제수되어 실록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회편』에 인용된 서적 가운데 100여 종은 당시 史館에도 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慶元 2년(1196), 조정은 臨江軍에 명하여 100여 종을 모두 초록하여 상주하도록 시켰다.⁴⁾

서몽신은 65세이던 光宗 紹熙1년(1190)에 강서 동향 친구이자 동갑내기인 楊萬里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다시 荊湖北路 安撫司 參議官이 되었다. 그리고 5년 뒤인 紹熙 5년(1194)에 『회편』 250권의 편찬이 전부 완료되었다. 『회편』 편찬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樓鑰이 지은 서몽신의 墓誌銘⁵⁾에 따르면 “양만리가 서몽신을 조정에 적극 추천하여 廟堂에서는 서몽신을 내지의 군현 관리에 임용하려 했는데, 서몽신은 議幕직을 원하였다”고 했다. 이는 아마 『회편』 편찬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적은 직무를 맡아 편찬 작업을 완성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이 해 말에 탈고하였다. 이종동생인 吏部侍郎 彭龜年이 韓侂胄에게 글을 올려 서몽신은 자신이 맡고 있는 按撫使에 배속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 향리에 은거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향리에 은거한 뒤 서몽신은 또 『北盟集補』 50권을 지어 『회편』의 부족을 보완하였다. 陳振孫의 『書錄解題』에 따르면 靖康년간, 建炎·紹興년간 각 25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⁶⁾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없어졌음은 물론 그 『집보』를 보고 인용한 책도 없어 그

3) 王應麟, 『玉海』 卷48.

4) 다음 해에 實錄의 전반이 완성되었고, 다시 5년이 지난 嘉泰2년(1202)에 모두 완성되었다.

5) 樓鑰, 『攻媿集』 卷108, 「徐夢莘墓誌銘」.

6) 陳振孫, 『書錄解題』 卷5 雜史類.

내용이 어떤지 알 길이 없다. 그밖에도 樓鑰의 지은 묘지명에는 『讀書記忘』·『集醫錄』·『集仙後錄』 각3冊, 『會錄』 4冊도 있다고 했지만 다른 書目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집에 그냥 보관하였을 뿐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저작 연도와 내용 모두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회편』이 온전히 전해진 것 만으로도 서몽신에게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몽신의 선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 집안은 당시 사학 분야에 두드러진 업적을 낸 것으로 유명하였다. 동생 徐得之의 『春秋左氏國紀』,⁷⁾ 徐得之의 큰아들인 徐筠의 『漢官攷』,⁸⁾ 작은아들 徐天麟의 『漢會要』⁹⁾ 등도 모두 명저이다. 서몽신은 寧宗 開禧3년(1207) 8월에 향년 82세로 사망하였다.

2. 『회편』의 특성

『회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서다. 우선 『회편』은 上海古籍出版社 영인본을 기준으로 할 때 총 3권, 250권, 3589葉, 150여만 字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남북송교체기라는 격동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45년이란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군사·외교적 분야에 집중된 기록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사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¹⁰⁾

둘째, 『회편』은 송·거란·금 등 세 왕조 사이에서 벌어졌던 군사·외교적 각축전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 발해·奚 등 당시 북방 제 민족에 관한 소중한 자료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게다가 중원왕조와 주변국가와의 군사·외교적 관계를 서술할 때 넘기 힘들었던 華夷觀의 벽을 넘어서 송·거란·금 세 왕조의 입장과 견해가 가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담고 있다. 따라서 『회편』은 12~13세기 동아시아사의 복원을 위한 핵심 사료가 된다.

셋째, 『회편』은 외교 사신들의 비망록 등 당시의 생생한 구어체 사료를 그대로 담고 있어, ‘날 것’ 그대로의 1차 사료에서만 엿볼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감을 보여준다. 『구당서』와 『구오대사』 등에서만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정제된 정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구어체 사료의 보고이다.

7) 字는 思叔이며, 『春秋左氏國紀』는 20권이지만 30권이라는 설도 있다.

8) 字는 孟堅이며, 『漢官攷』는 6권이다.

9) 字는 仲祥이며, 『漢會要』는 西漢70권, 東漢40권이다.

10) 靖康 1년의 분량이 총 47권 반, 정강 2년이 27권, 소흥 31년이 24권으로 가장 상세한 편이다.

넷째, 『회편』은 漢族 중심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서다. 북송이 망하고 徽宗과 欽宗 두 명의 황제가 포로가 되어 금으로 압송된, 그래서 중원왕조의 입장에서 비할 데 없이 굴욕적인 사건인 ‘靖康의 변’이 『회편』 서술의 중점이기 때문이다.¹¹⁾ 『회편』에는 북송 정권의 부패와 무능, 최소한의 명분과 체면조차도 지킬 수 없었던 무기력한 송의 군사력, 화의를 청하면서 보여준 비굴한 모습이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회편』은 중국인이자면 누구나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들의 치부를 여실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鑑戒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작이지만, 그런 만큼 중국인에게서 외면당해온 사서이기도 하다. 중국 측에서 『회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도 그 때문이다.

『회편』의 이러한 특징을 당연히 서몽신의 편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몽신이 태어난 靖康 1년(1126)에 북송의 수도 개봉이 두 차례 금군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함락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徽宗과 欽宗을 비롯한 북송의 황실과 고위 관료 3천여 명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송은 중원왕조 가운데 처음으로 황하와 회수 일대를 북방민족에게 내주었고, 장강 하류지역마저도 금군에게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였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불공대천의 원수에게 화의를 구걸해야 하는 현실은 화이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해 온 사대부에게 엄청난 자괴심을 안겨주었다.

북송 멸망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서몽신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서몽신은 자라면서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뿌리가 바로 국난 때문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통한 기억의 뿌리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민족에 의한 북송의 멸망,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전란이 끝난 뒤 남송 정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과거의 서적은 모두 흩어졌고 새로운 사서를 편찬할 여유도 없었다. 개인 저술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러 책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출판하기에는 부담이 많았고, 그나마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다 이견도 많아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몽신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구했고, 오랜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의 나이 69세에 마침내 『會編』을 완성하였다.

역사는 기록이며, 기록에는 기록자의 견해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록은 그 자체로 해석이며, 역사학은 해석된 기록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서몽신은 당시로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며 이해 당사자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남북송 교체

¹¹⁾ 陳樂素는 정강의 변에 대하여 “宋人所不能遺忘之痛，亦漢民族史上最大恥辱之一”이라고 언급하였다.

라는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는 역설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¹²⁾ 서몽신은 制·勅·詔·誥·書·奏·疏·記·序·碑志·傳·行狀 등 당시 사건과 사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료를 편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기록으로 하여금 사실을 말하게 하였다.’¹³⁾

이처럼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사료를 가감 없이 배치하다보니 『회편』에는 거란·금과의 전쟁과 외교 교섭 과정에서 등장했던 3개국 인사들의 개인적 면모도 숨김없이 나타나 있다. 특히 명분과 현실, 기대와 욕망 등 송조 지배층의 인간적 갈등, 죽음을 앞두고 보여준 기개와 비굴함 등 다른 사서에서는 보기 힘든 화장기 없는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다.

3. 판본과 연구 성과

『會編』은 남송 3대 황제인 光宗 紹熙 5년(1194)에 완성되었다. 이때는 남송 건국의 주역인 高宗은 물론 2대 황제 孝宗까지 사망한 뒤여서 남북송 교체에 따른 정치적 책임문제 등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기였다. 또 주전파들이 득세하면서 岳飛에게 鄂王을 추증하고 秦檜의 封爵을 삭탈하던 때여서 모처럼 진취적 기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편찬이 끝나고 2년 뒤인 寧宗 慶元 2년(1196)년에 사관들이 『회편』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상주하자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會編』을 필사하게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抄本이다. 그리고 徐夢莘 사후에 그 아들 徐簡이 嘉定 3년(1210)에 다시 필사하여 四明 樓鑰에게 기증하였는데, 이것이 두 번째 초본이다.

12) 당시로서는 북송말의 상황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몽신은 가급적 임의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사료를 병렬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저자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서몽신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던 張浚의 경우 그의 공적에 대한 많은 기록과 함께 趙哲·曲端을 살해한 일, 呂祉를 지나치게 신뢰한 잘못 등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기록하였다. 또 秦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도 불구하고 그의 정강년간에 행했던 좋은 처신에 대해서 기록하는 등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呂好問이 張邦昌의 명령을 수행한 일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사료의 취사선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3) 서몽신은 『회편』의 서문에서 “그 문장은 원본의 옛 표현을 따르고, 그 사실은 여러 사람의 설을 모으되 사적인 견해에 따라 감히 가감하지 않았으며 함부로 잘잘못을 논하지 않았다(其辭則因元本之久, 其事則集諸家之說, 不敢私爲去取, 不敢妄立褒貶)”고 하였다. 물론 이런 태도는 사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후로도 清代 중엽까지 별도의 판각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필사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오탈자가 늘어가고 제책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은 장서가들의 목록에서 잘 드러나는데, 脉望館에서는 25本으로, 絳雲樓에서는 75冊으로, 四明天一閣에서는 16本, 竹垞行笈에서는 26本, 知聖道齋에서는 30本으로 각기 다르게 나누고 있다.

현전하는 필사본 역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북경대학 도서관에서는 宋本을 필사한 舊抄本을 비롯해 殘卷 상태인 4종의 抄本을 포함하여 5종의 明抄本을 소장하고 있다. 劉堅과 蔣紹愚 등은 『會編』에 수록된 글 가운데 6종의 문집 관련 글을 추출하여 校點하고 『近代漢語語法資料匯編·宋代卷』을 편집한 바가 있다. 이 때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의 舊抄本을 비롯하여 四庫全書本, 袁祖安本, 許涵度本 등 모두 4종류의 판본을 사용하였다. 蔣紹愚의 校記에 따르면 북경대학 소장 舊抄本은 원래 翁方綱 소장본인데, 宋本을 직접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完·慎·敦·擴’ 등의 글자가 들어갈 자리에 모두 ‘廟諱’나 ‘御名’이라 써서 避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翁方綱은 何焯本에 근거해 교감하면서 抄本이 틀리고 何焯7本이 맞을 경우 붉은 글씨로 고쳤고, 둘 다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붉은 글씨로 旁注하였다 한다.¹⁴⁾

陳樂素는 현 傳本 중에서 季振宜가 소장하고 있던 明抄本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초본은 5권을 한 책으로 묶어 전질 50책으로 나누었고, 각 페이지는 10줄씩, 한 줄에 10자씩 넣고 있다. 그런데 寧宗 이전 황제는 모두 避諱하였으며, 廟號는 모두 행을 바꾸거나 빈칸으로 비워두었다. 그러므로 이 명 초본 역시 송대 초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여타의 판본보다 시기적으로 이른다. 하지만 일부가 망실되었다.

따라서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 가운데 季振宜가 소장하고 있던 明抄本과 함께 필사미상의 抄本에 何焯本에 근거해 翁方綱의 교감이 추가되어 있는 舊抄本이 참고할 가치가 가장 크지만 북경대학 도서관 측에서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이용하기 힘들다.

둘째는 ‘四庫全書本’이다. 鄧廣銘의 서문에 의하면,¹⁵⁾ 『사고전서』를 편수할 당시 편수관들은 吳城·江聲 등이 校勘한 초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 때 편수 총재를 맡았던 于敏中은 總纂官인 陸錫熊에게 서신을 보내어, “『會編』은 대대로 대단히 많이 인용되어 왔으니, 함부로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 반박할 것이 있으면 ‘제요’에서 밝히기로 하고, 초록한 대로 편수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다만 멀리 떨어져서 결정할 것이 아니니,

14) 劉堅·蔣紹愚 主編, 『近代漢語語法資料匯編·宋代卷』, 北京, 商務印書館, 1992. pp.95~96.

15) 鄧廣銘, 『三朝北盟會編』, 『影印本序』, 上海古籍出版社, 1987.

혹 서로 만나게 되면 한 두 책을 갖다 놓고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¹⁶⁾라고 한 바 있다.

吳城 등의 校勘本을 최대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회편』의 성격상 刪改를 피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가장 집중적으로 刪改가 이루어진 편이다. 따라서 사고전서본은 가장 손쉽게 구해 볼 수 있는 판본이기는 하지만¹⁷⁾ 판본으로서의 가치는 가장 떨어진다.¹⁸⁾

셋째는 ‘袁祖安本’이다. 청 光緒 4년(1878), 袁祖安은 사친사람 方功惠의 소장본을 입수하여 四川에서 木活字本 500부를 간행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인행본으로서 통상 活字本, 또는 排印本이라고 한다. 하지만 원조안이 저본으로 삼은 方功惠의 소장본 자체가 좀이 슬고 손상이 많은데다 교감 또한 정밀하지 못해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臺北의 文海出版社는 1962년 이 원조안본은 영인 출판하여 한중 수교 전까지 사고전서본과 함께 전공자들이 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영인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다가 27권 6葉이 誤落되어, 뒤에 따로 조판 인쇄하여 첨부하였다.

넷째는 許涵度本이다. 四川사람 許涵度는 袁祖安本에 訛脫字가 많은 것을 보고 『사고전서』 편수 때 저본으로 사용했던 필사본을 입수하여, 편수관들이 삭제하거나 고쳐 넣은 글자를 일일이 복원하는 한편, 그것들을 본문 속에 작은 글씨로 注치리 하였다. 또 본문 자체의 와탈자에 대해서는 각 권말에 교감기로 덧붙여서 刻印하였다. 단 허함도가 편수하는 과정에서 사고전서본에 들어 있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교감 자체가 틀린 경우도 일부 있다.

허함도본은 원조안본보다 내용이 정확하고 판각도 정치하며, 특히 사고전서본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許涵度본은 1987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상하 두 권으로 축소 영인하여 보급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는 大化書局本이다. 1977년, 臺北 大化書局에서 標點本으로 간행한 것인데, 王德毅의 ‘前言’과 함께 陳樂素의 『徐夢莘考』와 ‘引用書目一覽’, ‘徐夢莘年表’, ‘三朝北盟會編大事年表’ 등이 부록으로 붙어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가장 최신의 판본이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나 대화서국본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왕덕의의 서문

16) “『北盟會編』歷來引用極多, 未便輕改. 或將其偏駁處於提要中聲明, 仍行鈔錄, 似亦無妨. 但此難於遙定, 或俟相晤時取一二冊面爲講定何如?”

17) 현재 전자입력본은 사고전서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迪志文化出版公司, 1999).

18) 사고전서본에서 刪改된 내용은 許涵度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청조가 생각하는 북방민족에 관한 사료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송대와 청대 女眞語音의 변화를 고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에는 『회편』이 어떤 서적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 저본의 유래와 표점 작업 참여자 등 정작 대화서국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¹⁹⁾

단 대화서국본이 대략 袁祖安본과 일치하는 면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1939년 8월 開封의 海天書店에서 간행한 『會編』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대화서국에서 해천서점본을 저본으로 활용하였거나 아니면 대화서국본이 사실상 해천서점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천서점본은 ‘사고전서’에 근거해서 排印하였다고 하므로 좀 더 명확한 대조작업을 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저본 문제와 함께 교점 작업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화서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실정이다.²⁰⁾

그리고 鄧廣銘·劉浦江은 1998년 『三朝北盟會編研究』에서 표점본을 곧 출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간되지 않은 상태인데, 작업이 지연된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회편』에 대한 연구는 그 사료적 가치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다. 『회편』의 일부 내용이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경우 찾아보기 힘들고 중국에서도 陳樂素,²¹⁾ 李偉國,²²⁾ 鄧廣銘, 劉浦江²³⁾ 등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 가운데 陳樂素의 『三朝北盟會編考』^{④·⑤}는 최초의 연구 성과물이자 가히 1930년대 중국 학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진락소는 『회편』의 저자, 주요 특징, 판본, 인용서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宣和乙巳奉使行程錄’ 등에 대한 교정과 보주 작업 등을 통해 『회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분석하였다.²⁵⁾ 이 논문은 금의 침략으로 멸망한 북송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일제의 중국 침략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던 사

19) 왕덕의 교수의 연구 목록에도 『회편』 교감에 관한 것은 실려 있지 않다.

20) 그밖에도 京都대학에서도 초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朴英綠은 漢語史 전공자인 太田辰夫가 『中國語史通考』(江藍生·白維國 譯, 重慶, 重慶出版社, 1991)에서 예문으로 활용한 경우를 보고 허함도본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판본이 아닐까 추정하는 바 있다.(朴英綠, 『삼조북맹회편』연구를 위한 導論, 『삼조북맹회편연구논집』, p.7)

21) 『三朝北盟會編考』^{④·⑤}, 『歷史語言研究所集刊』 6本 2·3分(分冊), 南京,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南京, 1935·1936.

22) 李偉國, 『三朝北盟會編』抄摘辨析, 『文獻』 59기, 中國國家圖書館, 1994.

23) 鄧廣銘·劉浦江, 『三朝北盟會編』研究, 『文獻』 75기, 中國國家圖書館, 1998.

24) 『三朝北盟會編考』는 상편이 1935년, 하편이 1936년에 『歷史語言研究所集刊』 6本の 2, 3 분책으로 나뉘어 출간되었다. 1973년, 이 두 편의 논문을 합한 단행본이 臺北의 文海出版社에서 영인 출판되었다. 이 영인본은 『集刊』에 실린 것을 그대로 복사한 상태에서 본문에 새로 쪽수를 달았기 때문에 목차와 본문의 쪽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영인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아 일부 글자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다. 영인본을 출간한 1973년에는 대륙에 거주하던 학자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저자를 ‘傅樂素’로 표기하였다.

25) 진락소는 인용된 모든 문헌의 인용 위치를 표시해 두었을 뿐 아니라, 각종 上奏 및 공문의 색인을 달아 두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학자의 구국의식과 열정이 반영된 노작이기도 하다.

『會編』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2005년 12월 충주대학(현 한국교통대학) 중문과의 김진호, 박영록, 임병권, 장미경 등 네 명의 중국어문학 전공자가 모여 윤독을 시작한 것이 그 효시다. 그 뒤로 어문학, 역사학, 정치학, 문화학 등 여러 방면의 전공자들이 모여 지금까지 7년 동안 총 90회의 윤독회를 지속하면서 번역작업을 하고 있고, 2009년에 『삼조 북맹회편연구논집』을 출간하였다.²⁶⁾ 그밖에도 몇 편의 논문이 있지만 모두 어법 전공자들의 연구 성과로서 중국사와의 관련성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편』에 대한 연구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다. 우선 다양한 판본을 정밀하게 교감하고 표점 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판본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관계사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동아시아사적 시각에서 12~13세기의 역사를 규명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는 만큼 어려움이 크지만 그에 비례해서 성과물도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26) 충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三朝北盟會編研究論集』, 차이나하우스, 2009, pp.229.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톡 정책과 해상무역의 발전

고 명 수(고려대)

目次

1. 서론
2. 오르톡상인 관리기구의 설립·변천과 그 배경
3. 官本船무역 시행과 오르톡상업의 확대
4. 결론

1. 서론

1276년 몽골은 南宋을 정복하여 南海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동남아·인도양 해역에 위치한 여러 나라(南海諸國)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해역세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그 배경 아래 몽골정부가 해상무역 진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약 1세기에 걸쳐 유라시아 동서 해상무역은 공전의 번영을 구가했다. 많은 학자들은 몽골시대 출현한 미증유의 해상 교통·교역의 번영상을 팩스 몽골리카(*Pax-Mongolica*)라고 지칭하며 그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몽골시대 해상무역 번영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몽골정권이 남해제국에 대해 추진한 외교정책과 해상무역 진흥 정책의 내용·성격·성과를 분석해야 한다.¹⁾ 이러한 연구에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몽골시대 해상무역의 주역으로 활약한 오르톡(斡脫)상인에 대한 몽골정부의 관리·운영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이 몽골시대 해상무역 발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오르톡상인은 몽골지배층과 계약을 맺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고리대업, 징세청부, 원거리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영리활동을 행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자본주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몽골지배층의 이윤획득에 기여한 일종의 어용상인이다. 그들은 몽골

¹⁾ 쿠빌라이 시기 몽골의 南海諸國에 대한 외교정책에 관해,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번영 -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史叢』 72, 2011 참조.

제국 성립 초기부터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몽골지배층의 재정운영과 경제정책 수립·집행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여러 학자들이 그들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놓았다.²⁾ 그러나 그 결과물의 대부분이 ‘오르톡’의 명칭과 기원, 오르톡상인과 몽골지배층의 관계, 오르톡상인의 영리활동, 몽골정권의 오르톡상인 관리제도에 집중되어 있고, 몽골시대 해상무역 발전의 요인으로서 오르톡상인의 활동과 성과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쿠빌라이 정부는 본래 몽골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특권만을 소유한 채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행하던 오르톡상인을 처음으로 정부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어 남송 정복 후 본격적으로 해양진출에 착수하고, 해상무역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할 아래 두어진 오르톡상인을 무역활동의 주체로서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쿠빌라이 시대 수립된 오르톡상인 정책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후계정권에게 답습되었다. 따라서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톡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은 몽골시대 해상무역 변영의 요인으로서 오르톡상인의 역할과 성과를 해명하는 주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톡상인 정책에 관해 村上正二, 愛宕松男, 修曉波, 엔디콧 웨스트(Elizabeth Endicott-West)등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는 대체로 오르톡상인 관리기구 설립·변천의 과정과 배경, 오르톡상인에 대한 특권 부여와 제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오르톡상인에 대한 정책 수립·변천의 구체상과 그 정치적 배경을 당시 몽골의 정세변동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해 여러 부분에서 연구의 공백과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오르톡상인에 대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와 그것이 몽골시대 해상무역의 변영에서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우선 쿠빌라이 정부가 설립한 오르톡상인 관리기구의 변천 과정과 그 정치적 배경을 정권 내부의 정세변동과 연계하여 면밀하게 고찰해보려 한다. 다음으로 쿠빌라이 정부가 오르톡상인을 활동의 주체로 삼아 시행한 대표적 해상무역 진흥 정책인 官本船무역 정책의 규모와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톡상인 정책의 내용·성격·성과를 규명하고, 그 정책의 전반을 관

2) 오르톡상인에 관한 대표적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村上正二, 『元代の幹脱錢に就いて』, 『史學研究』 7-8, 1937; 村上正二, 『元朝における泉府司と幹脱』, 『東方學報』 13-1, 1942; 愛宕松男, 『幹脱錢とその背景-十三世紀モンゴル=元朝における銀の動向-』(上)·(下), 『東洋史研究』 32-1·2, 1973·1974; 修曉波, 『元代幹脱政策探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員學報』, 1994-3; 修曉波, 『元代幹脱經營海外貿易的原因及影響』, 『元史論叢』 7, 1999; Thomas T. Allsen,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2-2, 1989; Elizabeth Endicott-West, “Merchant Associations in Yuan China: The Ortogh” *Asia Major*. 3rd Series, 2-2, 1989.

류하는 기초를 확인하며, 그것이 몽골시대 해상무역 발전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 오르톡상인 관리기구의 설립·변천과 그 배경

‘오르톡’(ortoq)은 ‘동업(자)’를 뜻하는 투르크어 ‘오르타’(ortaq)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한자로 韓脫이라고 표기되며, 몽골황실이나 귀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고리대업, 징세 청부, 원거리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영리활동을 행한 후, 그 이익의 일부를 자본주인 몽골지배층에게 상환하고 나머지를 취하는 상인집단을 가리킨다. 이 명칭은 일찍이 투르크인들이 그들과 교역했던 소그드상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13세기 몽골의 중앙아시아 정복을 계기로 몽골초원과 동아시아에 전래된 후 최종적으로 몽골지배층과 결탁하여 여러 형태의 영리활동을 영위한 중앙아시아·서아시아 출신 무슬림(回回)상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몽골지배층으로부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특권을 부여받은 일종의 어용상인으로 이해된다.

1260년 카안에 즉위한 쿠빌라이는 국가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오르톡상인을 諸色戶計 분류 방식에 따라 韓脫戶로 분류하여 정부의 관할 아래 철저하게 배속시켰다. 이어 至元 4년(1267) 12월 韓脫總管府를 설치하여³⁾ 황실·제왕이 오르톡상인에게 대출하는 상업자금의 운용을 통합 관리하게 하고, 至元 9년(1272) 8월 각 지역에 알탈총관부의 출장소인 韓脫所를 설립하여⁴⁾ 오르톡상인에 대한 일원적인 상업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알탈총관부 설립 후 줄곧 총관을 역임한 다시만의 神道碑에 그 대출 규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王(다시만)은 어렸을 때부터 世祖를 섬겼다. 처음에 현재 太師 淇陽王 伊徹察喇와 함께 奏記를 관장했으나, 후에 홀로 第一宿衛 奏記를 관할했다. 韓脫總管府를 감독하는 일을 겸하여 나라의 假貸 업무를 주관했는데, 한 해 출납액이 항시 수십만 錠[錠]에 달했다. 이자는 매월 8釐를 취했는데, 실로 민간에서 이자로 3分을 취하는 것보다 3/4이 가벼웠다. (그 자금을) 諸蕃과 교역하는 海舶에게 대여했다.⁵⁾

위 기록은 쿠빌라이 시기 알탈총관부가 오르톡상인에게 민간으로부터 취하는 3%의 이

3) 『元史』 卷6 本紀6 世祖3, 117쪽.

4) 『元史』 卷7 本紀7 世祖4, 142쪽.

5) 『牧庵集』 卷13 皇元高昌忠惠王神道碑.

율보다 3/4 낮은 약 0.8%의 이자로 상업자금을 대출해 주었음을 전한다. 이 같은 저리출자는 분명 오르톡상인의 영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위 글에서 알탈총관부의 한 해 출납액이 매년 ‘수십만 錠’에 달한다는 내용은 몽골의 강남 획득(1276) 후 中統鈔 발행액이 대략 100만 錠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⁶⁾ 알탈총관부가 운용하는 대출자금의 액수가 국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쿠빌라이 정부는 알탈총관부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 오르톡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거액의 상업자금을 대출하여 그들의 상업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쿠빌라이 정부는 1276년 남송을 정복하여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종래 고리대업, 징세청부, 내륙무역에 종사하던 오르톡상인이 자신들의 상업 활동 무대를 강남과 남해 방면으로 대폭 확대시키고, 해상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남송시대 이미 강남과 남해제국 간에는 원거리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쿠빌라이 정부는 남송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강남의 경제기능을 보전하고,⁷⁾ 강남 획득 후 남송시대 번영했던 해상무역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 조건 아래 많은 오르톡상인이 해상무역에 적극 참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위 기록에서 알탈총관부가 거액의 상업자금을 낮은 이자로 “諸蕃과 교역하는 海舶에게 대여했다”라는 구절은 종래 고리대업, 징세청부, 내륙무역에 머물러 있던 오르톡상인의 주요 영리활동 업종이 몽골의 강남 획득 후 해상무역 방면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오르톡상인의 상업활동 영역이 강남과 남해 방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알탈총관부의 기능과 관할범위 역시 전면 확대·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쿠빌라이 정부는 至元 18년(1281) 알탈총관부를 승격시켜 泉府司로 삼고⁸⁾ 황실·제왕의 상업자금을 오르톡상인에게 대출하는 중전의 사무와 더불어 각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칙령과 패자를 발급하는 업무도 담당케 했다.⁹⁾ 알탈총관부와 천부사는 모두 쿠빌라이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재무관료 아흐마드의 집권 시기에 설치되었다. 본래 무슬림상인 출신인 아흐마드는 집권 시기 오르톡상인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그들을 활동 주체로 삼아 국가전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重商主義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므로 알탈총관부와 천부사는 아흐마드를 위시한 무슬림 재무관료 집단이 오르톡상인의 무분별한

6) 『元史』 卷93 志42 食貨1 鈔法, 2372쪽.

7) 쿠빌라이 정부의 강남에 대한 보전·개발 정책에 관해, 고명수, 『쿠빌라이 시기 몽골의 南宋 정복과 江南지배 - 보전·개발·발전의 관점에서』, 『東洋史學研究』 116, 2011 참조.

8) 『牧庵集』 卷13 皇元高昌忠惠王神道碑. 『元史』 『世祖本紀』에는 至元 17년(1280) 11월에 泉府司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元史』 卷11 本紀11 世祖8, 227쪽) 高榮盛은 두 기록에 제시된 천부사 설치시기의 차이를 설치 결정과 구체적 실행의 시간적 차이로 이해했다. (高榮盛, 『元代海外貿易研究』, 四川人民出版社, 1998, 146쪽)

9) 『칸의 후예들』, 419~420쪽; 441쪽 참조.

영리추구 행위를 통제하는 한편, 자신들과 연계한 그들의 상업활동을 정부의 관할 아래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몽골정부 안에는 황태자 친킴과 한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인관료들이 결탁하여 형성된 일군의 세력집단이 아흐마드를 위시한 서역인 재무관료 집단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아흐마드의 경제정책이 重農主義를 지향하는 한법개혁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므로, 천부사는 이내 반대세력 정치공세의 표적이 되었다. 실제로 천부사는 몽골의 내부 정세변화와 연동하여 폐지와 복치를 반복했다. 이에 관해 『元史』 『世祖本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至元 22년(1285) 8월] 乙未, (황제가) 조칙을 내려 泉府司를 다시 세워 從2品으로 삼고, 答失蠻(다시만)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다. 일찍이 和禮霍孫(코르코순)이 泉府司에 소속된 상인에게 관청이 음식을 지급하고, 군사를 보내 방위하여 백성들이 실로 고통스럽고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폐지할 것을 아뢰었다. 이때에 이르러 答失蠻이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을 아뢰었다.¹⁰⁾

위 글은 천부사가 코르코순의 건의에 따라 폐지된 후, 至元 22년(1285) 다시만의 주청에 의해 다시 설치되었음을 전한다. 『元史』 『世祖本紀』 至元 21년(1284) 4월 乙酉條의 “(中書)省이 泉府司를 戶部에 편입시켰다”¹¹⁾라는 기록을 통해 그 시기에 천부사가 폐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至元 18년(1281) 세워진 천부사가 至元 21년(1284) 4월 폐지되었다가 至元 22년(1285) 8월 다시 설치된 것이다.¹²⁾

천부사는 몽골정부의 재정을 관할하는 중앙관청이다. 따라서 그 폐지·복치의 연유는 마땅히 그 시기 몽골의 정세변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이 쿠빌라이 시기 오르토상인 관리기구의 설립·변천과 그 정치적 배경에 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 몇몇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단순한 오류도 눈에 띈다. 村上正二는 1284년 泉府司가 폐지된 원인을 당시 정계에 등단하지도 않은 盧世榮의 실각에서 찾았고,¹³⁾ 1285년 8월 泉府司

10) 『元史』 卷13 本紀13 世祖10, 278쪽.

11) 『元史』 卷13 本紀13 世祖10, 265쪽.

12) 『元史』 『世祖本紀』 至元 20년(1283) 5월 기사에 “立幹脫總管府”라는 구절이 있다. 愛宕松男은 이 때 설립된 幹脫總管府가 泉府司와 별개의 관청으로서 아흐마드 피살 후 위촉된 오르토상인 세력이 일시적으로 부활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愛宕松男, 『幹脫錢とその背景-十三世紀モンゴル=元朝における銀の動向』, 149쪽) 반면 修曉波는 아흐마드 실각 후 코르코순이 오르토상인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함에 따라 오르토상인 세력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고, 위 기록의 幹脫總管府를 泉府司가 축소·강등된 관청으로 보았다. (修曉波, 『元代幹脫政策探考』, 30~31쪽)

13) 村上正二, 『元朝における泉府司と幹脫』, 『モンゴル帝國史研究』, 風間書房, 1993, 75쪽. (原掲

북치의 배경이 盧世榮의 집권에 있다고 언급한 엔디콧 웨스트도 그 해 4월 이미 노세영이 실각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¹⁴⁾ 愛宕松男과 修曉波는 천부사 북치의 배경이 당시 집권자 코르코순의 퇴진과 관련 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 그 구체적 정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¹⁵⁾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내용에서는 천부사 폐지·북치의 배경을 쿠빌라이 정부 내 정세변동과 연계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려 한다.

천부사의 폐지는 至元 19년(1282) 3월 아흐마드가 피살되고 서역인 관료 집단이 실각한 사건과 관련 있다고 여겨진다. 상술했듯이 일찍이 쿠빌라이 정부 안에는 아흐마드를 위시한 서역인 재무관료 집단과 친킴과 결탁한 한인관료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러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몽골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려는 아흐마드의 실무적 노선은 유학적 정신에 입각하여 漢人·漢地·漢文化를 보호하기 위해 한법을 적극 시행하려는 한인관료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두 집단은 줄곧 여러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따라서 아흐마드의 암살을 계기로 서역인 관료집단이 실각한 사건은 종래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국의 주도권을 친킴과 한인관료 세력이 탈취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흐마드 암살 사건의 배후에 친킴과 한인관료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¹⁶⁾ 아흐마드 암살 직후 친킴의 지지를 받아 정부 최고위직인 中書右丞相에 임명된 코르코순은 항시 한인관료와 함께 서역인 재무관료 집단의 반대편에서 그들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집권 직후 그는 아흐마드가 설치한 관청과 관원을 대부분 폐지하여 그의 정치적 성과를 철저하게 부정했다. 그 과정에서 아흐마드가 오르토크상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천부사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천부사는 至元 21년(1284) 11월 코르코순이 정계에서 퇴진한 후 다음해(1285) 8월 다시 설치되었다. 코르코순의 실각과 천부사의 복치는 친킴과 한인관료 세력의 집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요인으로 우선 정부 내에 온존해 있었던 서역인 관료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상정해볼 수 있다. 칭기스칸 시기부터 몽골정부에 입사하여 여러 방면으로 제국의 확대·발전에 기여한 서역인 관료 집단은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러 카안을 비롯한 몽골 지배층과 권신 아흐마드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아

『東方學報』 13-1, 1942)

¹⁴⁾ Elizabeth Endicott-West, "Merchant Associations in Yuan China: The Ortogh," p. 138

¹⁵⁾ 愛宕松男, 「幹脫錢とその背景-十三世紀モンゴル=元朝における銀の動向」, 150~151쪽; 修曉波, 「元代幹脫政策探考」, 30쪽.

¹⁶⁾ 片山共夫, 「アーマッドの暗殺事件をめぐって-元朝フビライ期の政治史」,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1, 1983 참조.

강대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至元 20년(1283) 兵部尙書 董文用의 다음 발언은 아흐마드가 피살된 후에도 그의 친당이 단번에 제거되기 어려울 만큼 정부 안에서 확고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이전 阿合馬가 집권했을 때 상인과 같은 천한 계층이 모두 (그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가 실각하여 (사람들이) 그 일당을 모두 제거하려 했는데,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여, 阿合馬로 하여금 여전히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이 (그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았습니다.¹⁷⁾

이와 같이 아흐마드 실각 후 정부 안에 잔존해 있던 서역인 관료 집단은 반 아흐마드 세력의 집권과 정치적 공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항의지를 표출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아흐마드와 같은 유능한 서역인 재무관료를 중시하고, 친킴과 한인관료 세력의 한법적 정책노선에 반대하는 쿠빌라이의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쿠빌라이는 재무관리와 재정수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흐마드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여 그의 정치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반대세력의 공세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었다. 아흐마드에 대한 쿠빌라이의 신임은 그가 일찍이 淮西宣慰使 昂吉兒에게, “대체로 보아 宰相이라는 자는 天道에 밝고, 地理를 잘 살피고, 人事에 정성을 기울이는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그 직무를 맡기에 적합하다. 阿里海兒와 麥朮丁 등도 역시 재상이 될 수 없다. 回回人 중 阿合馬야말로 재상을 맡을 만하다”¹⁸⁾라고 한 언급이나 至元 7년(1270) 4월 中書右丞相 安童이 아흐마드가 中書省 관료들과 의논하지 않고 국정을 독단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쿠빌라이가 “어찌 阿合馬가 짐이 그를 매우 信用한다는 이유로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다는 말인가. 卿과 의논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¹⁹⁾라고 한 발언, 그리고 “阿合馬가 죽은 후 조정의 신료들이 財利에 관한 일을 말하기를 회피하여, 모두 世祖가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만족시키려하는 뜻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²⁰⁾라는 기록에 잘 드러난다. 또한 “[至元 21년(1284) 10월] 和禮霍孫이 科擧시행을 청하여 中書省에서 의논하라고 명했으나, 마침 和禮霍孫이 파직되어 사안이 마침내 잠잠해졌다”²¹⁾라는 기사도 쿠빌라이가 科擧시행과 같은 한법정책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음

17) 『元史』 卷148 列傳35 董文用, 3498쪽.

18)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4561쪽.

19) 『元史』 卷126 列傳13 安童, 3082쪽.

20)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4564쪽.

21) 『元史』 卷13 本紀13 世祖10, 269~270쪽.

을 시사한다. 쿠빌라이가 코르코순을 2년 7개월 만에 파직하고 그 자리에 아흐마드의 정책을 계승한 재무관료 盧世榮을 등용한 사실을 통해 그가 아흐마드 실각 후에도 여전히 서역인 재무관료 집단의 실무노선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집권 후 노세영은 아흐마드의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계승·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흐마드 실각 후 파면되었던 그의 친당을 대거 복직시켰다.

(至元 22년 2월) (노세영이) 또한 아뢰기를, “천하에서 錢穀을 운반하는 데 뛰어난 자들은 모두 이전 阿合馬의 門이었습시다. 지금 (그들을) 부패하고 참람하다는 죄목으로 서책에 기록하려 하는데, 그들을 어찌 모두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들 중 재능이 뛰어나 쓸 만한 인재를 선발하려 하나 신이 죄인을 기용한다는 말이 있을까 두렵습시다”라고 하였다. 世祖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쓸 만한 자를 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전 河間轉運使 張弘綱, 撒都丁, 不魯合散, 孫桓을 모두 河間·山東等路都轉運鹽使로 삼았다. 그 외 채용된 자들도 매우 많았다.²²⁾

물론 천부사는 至元 22년(1285) 4월 노세영이 실각하고, 4개월 후인 그 해 8월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노세영 실각 후 中書省 右丞相, 右丞, 參知政事에 임명된 安童, 麥朮丁, 郭佑·楊居寬 등은 이전 한인관료와 함께 아흐마드 세력을 비판했던 경력이 있지만, 집권 후 코르코순과 같이 서역인 재무관료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단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세영 실각 후에도 정부 안에는 그의 집권 시기에 재기용된 옛 아흐마드의 친당이 다수 포진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천부사의 복치는 노세영 실각 후 친김과 한인관료 세력이 득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역인 재무관료 집단과 그들의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쿠빌라이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복치된 천부사는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당시 쿠빌라이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던 해상무역 육성 사업 전반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쿠빌라이 정부는 남송을 정복한 다음 해(1277) 泉州를 비롯한 동남해안 주요 무역도시에 市舶司를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관리토록 하고, 至元 22년(1285) 官本船무역을 시행하여 해상무역에 직접 참여했다. 관본선무역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몽골정부가 오르톡상인에게 선박과 상업자금을 지급하여 해상무역을 영위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정부와 오르톡상인이 7: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부사가 복치된 후 관본선무역은 선박과 상업자금을 천부사에서 지급하고, 그 실제 관리를 각 지역에 설치된 시박사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4567~4568쪽.

至元 23년(1286) 8월 쿠빌라이 정부는 모든 시박사를 천부사에 예속시켰다.²³⁾ 이로써 그 때까지 이원적으로 처리되었던 관본선무역과 그 외 모든 해상무역 사무를 천부사의 관할 아래 통합하여 해상무역 육성 사업을 일원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출자하여 관본선무역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오르투상인의 해상무역 활동은 동남아·인도양·서아시아를 포괄하는 광대한 해역을 무대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3. 官本船무역 시행과 오르투상업의 확대

쿠빌라이 정부는 至元 13년(1276) 남송을 병합한 후 일찍이 泉州, 廣州, 明州를 중심으로 크게 흥성한 남송시대 시박무역의 운영방식을 채용하여 해상무역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시박사를 통한 관세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官本船무역을 시행하여 해상무역에 직접 참여했다. 至元 21년(1284) 11월 中書右丞에 임명되어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 盧世榮은 이듬해(1285) 정월 조정에 관본선무역 시행을 제안했다.²⁴⁾ 전술했듯이 그 기본 방식은 정부에서 무역활동에 필요한 선박과 자본을 오르투상인에게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상무역을 영위하게 한 후, 그 수익을 정부와 오르투상인이 7: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唐宋시대 중앙정부가 시박사를 설치하여 민간상인의 무역활동을 감독·지원 하면서 오로지 관세수익만을 거두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가 직접 해상무역에 참여하는 관본선무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수한 무역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해상무역 진흥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쿠빌라이는 노세영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여 관본선무역을 시행했다. 동시에 민간상인의 해상무역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을 모두 매입했다. 관본선무역에 관한 “(정부가) 무릇 권세가들로 하여금 모두 자신의 돈을 이용해 해외로 나아가 교역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家産의 반을 몰수하게 했다”²⁵⁾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그 시기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몽골지배층의 경제적 성장을 억제하고, 몽골정부가 해상무역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상업이윤을 독점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관본선무역은 시행 즉시 몽골지배층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노세영은 中書右丞에 등용된 지 5개월 만인 至元 22년(1285) 4월 監察御使 陳天祥의 탄

23) 『元史』 卷14 本紀14 世祖11, 292쪽.

24)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4566쪽.

25) 『元史』 卷94 志43 食貨2 市舶, 2402쪽.

해를 받아 실각하고, 그 해 11월 주살되었다. 그 후 쿠빌라이 정부는 제왕·귀족·부호들에 대한 무역활동 금지령을 거두어들였다. 또한 至元 22년(1285) 8월 민간상인의 무역활동 금지령도 해제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해상무역 활동을 보장했다.²⁶⁾

쿠빌라이 정부는 노세영 실각 후 몽골지배층과 민간상인의 해상무역 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관본선무역을 폐지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그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다음 내용에서는 쿠빌라이 정부가 관본선무역에 투자한 자금의 규모가 당시 몽골정부의 경제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살펴보려 한다.

至元 22년(1285) 쿠빌라이 정부는 中統鈔 10만錠을 관본선무역 자금으로 출자했다.²⁷⁾ 그해 정월 노세영이 조정에 올린 글에 “天下의 歲課鈔 932,600”²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전년 몽골정부의 조세수입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쿠빌라이 정부가 전년 조세수입의 약 1/9에 달하는 자금을 관본선무역에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至元 26년(1289) 2월 尙書省 신료가 올린 글 중 “行泉府에서 통할하는 배는 1만 5천척입니다”²⁹⁾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그 시기 관본선무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至元 24년(1287) 강남에 설치된 行泉府司는 당시 강남에서 大都로 곡물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해운과 관본선무역 업무 전반을 관할하고 있었다. 따라서 행천부사에 소속된 1만 5천척의 선박은 대부분 해운과 관본선무역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元史』 『食貨志』에 至元 19년(1282) 쿠빌라이가 “上海總管 羅璧, 朱清, 張瑄 등에게 명하여 平底海船 60척을 만들어 강남의 稅量 46,000여 석을 大都로 운반해 오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³⁰⁾ 이는 당시 일반 해운선 한 척이 적재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대략 767(46,000/60)석이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14세기 초반 武略將軍海道漕運都萬戶府副萬戶에 임명되어 몽골의 해운 업무를 담당한 曹南金의 墓誌銘에 至大 4년(1311) 그가 800척의 선박으로 세곡 1,748,640석을 운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³¹⁾ 이에 따르면 그 시기 해운선 1척이 적재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대략 2,186(1,748,640/800)석이다. 위 두 기록에 근거하여 13세기 말~14세기 초 조선업의 발달에 따라 선박의 세곡 적재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기 선박 1척의 세곡 적재량이 대략 1~2천석이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元史』 『食貨志』에 따르면, 위 상서성 신료의 주청문이 제출된 至元 26년 강남에서 적

26) 『元史』 卷13 本紀13 世祖10, 279쪽.

27) 『元典章』 卷22 戶部8 市舶 合并市舶轉運司.

28) 『元史』 卷205 列傳92 姦臣, 4565쪽.

29) 『元史』 卷15 本紀15 世祖12, 320쪽.

30) 『元史』 卷93 志42 食貨1 海運, 2364쪽.

31) 『金華黃先生文集』 卷35 武略將軍海道漕運副萬戶曹公墓誌銘.

재하여 대도로 운반된 세량은 935,000석이다.³²⁾ 따라서 그 해 운용된 해운선의 수는 1천척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쿠빌라이 시대 최대 해운량이 至元 27년(1290) 1,595,000 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³³⁾ 당시 행천부사에서 해운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2천척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기 행천부사가 관할하는 1만 5천척의 선박 중 약 1만 3천척 이상이 관본선무역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쿠빌라이 시기 보통 海舶 1척을 만드는 데 대략 중통초 100錠이 소요되었다.³⁴⁾ 그러므로 행천부사가 1만 3천척의 배를 구비하는 데 들인 비용은 중통초 130만錠에 이른다. 이와 같이 쿠빌라이 정부는 관본선무역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정부 주도 아래 해상무역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관본선무역은 쿠빌라이 정부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었을 것이다. 정부는 관본선무역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70%를 취했을 뿐 아니라, 엄격한 추분징수 제도를 수립하여 시박사에서 별도로 관본선무역을 행하는 오르투상인으로부터 많은 관세수익을 거두었다. 관본선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전체 국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至元 28년(1291) 집권자였던 상가가 실각하여 행천부사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한 신료가 그에 반대하면서 “국가가 자본을 내어 舶商이 海南으로 나가 寶貨를 무역하여 얻는 이익이 億萬數에 달합니다”³⁵⁾라고 한 발언을 통해 그 시기 관본선무역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남송정복 후 쿠빌라이 정부는 몽골의 황실·제왕·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상무역 진흥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 때 해양지리와 무역업무에 정통한 오르투상인을 해상무역 활동의 실제 담당자로서 적극 활용했다. 그들의 상업활동이 국가의 재정수입과 직결되었으므로 쿠빌라이 정부는 그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 목적을 그들의 상업활동을 보호·육성하는 데 두었다. 이는 아흐마드 피살 후 친킴·한인관료 세력에 의해 폐지된 천부사를 즉각 복치하여 오르투상인을 지속적으로 보호·지원케 하고, 관본선무역을 시행하여 그들의 상업활동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확인된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오르투상인의 해상무역 활동은 쿠빌라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관리·보호 아래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오르투상인의 광범위한 해상무역 활동과 그들에 대한 쿠빌라이 정부의 보호·육성 정책은 동서 해상무역의 눈부신 번영 즉, 팍스

32) 『元史』 卷93 志42 食貨1 海運, 2366쪽.

33) 『元史』 卷93 志42 食貨1 海運, 2366~2367쪽.

34) 『永樂大典』 卷15949 運.

35) 『吳文正公集』 卷32 元榮祿大夫平章政事趙國董忠宣公神道碑.

몽골리카의 주요한 성립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⁶⁾

4. 결론

본 논문은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투크상인에 대한 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정책의 내용·성격·성과를 규명하고, 정책 전반을 관류하는 기조를 확인하며, 그것이 몽골시대 해상무역 발전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쿠빌라이 정부는 오르투크상인을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편입시키고, 斡脫總管府를 설치하여 그들의 영리활동을 통합 관리하게 했다. 남송정복 후 오르투크상인의 활동 범위가 강남·남해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쿠빌라이 정부는 알타이총관부를 泉府司로 승격시키고, 오르투크상인을 무역활동의 주체로 삼아 해상무역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천부사는 아흐마드 실각 후 정권을 장악한 친킴·한인관료 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해상무역을 육성하려는 쿠빌라이와 서역인 관료집단의 의지에 따라 1년 4개월 만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쿠빌라이 정부는 市舶司를 천부사에 예속시켜 오르투크상인의 해상무역 활동을 일원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본선무역을 시행하여 그들의 활동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오르투크상인의 해상무역 활동을 보호·육성하려는 쿠빌라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몽골시대 동서 해상무역은 공전의 번영을 구가했다. 그러한 점에서 오르투크상인의 해상무역 활동과 그들에 대한 쿠빌라이 정부의 관리·보호 정책은 13~14세기 팩스 몽골리카 성립의 주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36) 몽골시대 해상무역의 번영상에 관해,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번영 -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255~262쪽 참조.

명 중기 복건 신현과 종족문화의 확산

— 縣志를 중심으로 —

원 정 식(강원대)

1

新縣의 등장은 주변부로 인식되던 지역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중심지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지를 가시화시키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성벽, 관청 건물, 군사시설, 학교, 제사시설, 시장, 도로망 등이며,¹⁾ 현지 역시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지 편찬은 현이 신설된 후 새로 질서를 만들고 기존의 지역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 차별화된 단위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는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현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지방관에게는 통치 자료의 확보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이자 지역 신사들에게는 역사 사실을 보존하고 지방관의 횡포를 통제하며 고향과 종족의 명예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²⁾

한편, 종족의 핵심적 이념은 ‘敬宗收族’이며 그 출발점은 ‘孝悌’라고 할 수 있다.³⁾ 경종은 효의 표현이고 수족은 제의 표현으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⁴⁾ 예컨대 민국년

1) 元廷植, <明代 福建 新縣의 社會·文化的 變化 - 縣城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35, 2011. 이하 기출 논저에 대하여는 ‘元廷植, 2011’식으로 표기함.

2) 이하 명·청대 지방지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주가 없는 것은 元廷植, <前近代 中國의 地方志 編纂 : 明清時代 福建의 縣志 編纂을 中心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4권1호, 2001 참조.

3) 중국에서 종족은 동일 남성을 시조로 삼는 다수의 개별 가족으로 구성된 부계 혈연 집단으로, 지속적인 선조 제사, 계보 확인, 상호 부조 등을 통해 유지되며, 족원의 생명, 재산, 기득권 등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종족문화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를 모두 포함한다. 이념적으로 유교 국가에서 중시하는 대표적인 가족 윤리인 효제와 관련된 모든 문화 현상이 중국 종족 문화의 구체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元廷植, <明清時代 閩南社會와 宗族 發達 : 永春縣 桃源劉氏를 中心으로>, <<近世 東아시아의 國家와 社會>>, 서울 : 지식산업사, 1998, pp.286-294; 李相勳, <宋明儒學에서 家族倫理의 實現과 方法 - 孝悌의 概念을 中心으로>, <<中國學報>> 46, 2002.

4) 孝가 수직적인 결합원리이고 友가 수평적 결합원리로서 “효우”는 종족결집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清水盛光의 “親和主義와 從屬主義”도 결국 孝友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

간에 간행된 영춘현 도원유씨의 족보에서는 割股 행위, 대종사 건설, 족보 찬수, 분묘 회복 및 무연고 분묘의 보수, 불타버린 소종사 재건, 아들로 하여금 후사가 없는 堂弟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祀田을 보충한 것, 계모나 嗣父母와 같은 인위적 부자관계를 중시한 것 등을 모두 효라고 칭송하였다. 효가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덕목이라면 효제[또는 효우]의 “悌”[또는 “友”]는 형제를 출발로 한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형제 또는 족원에 대한 구휼, 보호, 배려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 족보에서는 이를 “仁心”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효우”의 외연적 확대는 인척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선행·善待로도 나타났고 이를 “仁厚忠誠” 등으로 표현했다.⁵⁾ 이는 모두 유교의 핵심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현이 국가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설치된 것처럼 현지도 국가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란 점에서 국가 교학인 유교의 핵심적 내용이며 종족 문화의 핵심인 효제 역시 현지 서술의 핵심 주제임은 당연할 것이다. 현지는 建置, 田賦, 官歷, 選舉, 人物, 藝文, 秩禮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편찬되어 국가의 이념적 지향과 지방정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은 종족의 역사를 표방하는 族譜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⁶⁾ 또 현지에 족보의 서문이나 발문과 같은 종족과 직접 관련된 문헌이 수록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청대 장학성과 같은 이가 지방지에 씨족, 성씨와 같은 항목을 설정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⁷⁾ 이는 종족 형성이 확대되고 종족 문화가 확산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지방지가 종족 문화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전제로 종족 문화의 확산이나 종족 형성에 현지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현지에 반영된 종족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 종족 형성의 과정에 현지가 미치는 영향의 일단을 이해하고자 한다.

해할 수 있다. 清水盛光, <<支那社會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39, 第4篇 참조.

⁵⁾ 元廷植, 1998, pp.286-293.

⁶⁾ 방지는 스스로 “政教精神所寄焉”이라고 하고 그 편찬 목적은 “資治, 教化, 存史”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족보 정신의 실질 및 편찬 목적과 평행하거나 심지어 겹치는 것이다. 방지는 “강역을 구별하고 풍토를 기록하며 仁賢을 밝히고 치적을 드러내며 물산을 헤아리고 故事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족보의 광범위한 내용과도 서로 통하는 것이다. 章鐵牛, <族譜與方志>,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長春) 1988-2, p.88.

⁷⁾ <http://www.jxcnt.com/whzhuanti/sz/mqld/1.htm>; 章學誠, <<章學誠遺書>>, 北京: 文物出版社, 1985; 章學誠 著, 葉瑛 校注, <<文史通義校注>>(北京: 中華書局, 1994), 卷6, 和州氏族表序例(上·中·下); 同. 卷7, 永清縣志士族表序例; 장학성 지음, 임형석 옮김, <<문사통의교주>>, 서울: 소명출판, 2011 참조..

2

현지와 족보는 그 편찬 목적에 있어서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첫째, 무엇보다 각종 족보의 서문에는 국사, 지방지, 족보는 모두 국가, 지방, 종족의 역사라거나, 국가에는 史가 있고 지방에는 誌가 있고 종족에는 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가지라는 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예컨대

나라에는 史가 있고 부현[郡邑]에는 誌가 있으며 家에는 譜가 있는데, 命名한 것은 비록 다르지만 이를 만든 뜻은 그리 다르지 않다.⁸⁾

대개 譜라는 것은 世系를 籍錄한 책이다. 그 안에 수록된 바 品行의 褒嘉予奪은 微文이 있으니 史와 비슷하고, 그 안에 모아 둔 곳의 閭里邱墓는 勝景이 있으니 또한 誌와 같다. 이 譜는 참으로 史, 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다.⁹⁾

나라에 史가 있고 家에는 乘이 있는 것은 옛날의 뜻[志]이다. 살펴보니 사람들은 史의 重함을 알고 乘을 具文視하면서 乘에 史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¹⁰⁾

라고 하였다. 이는 현지를 편찬하는 사람이나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이나 모두 같은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지와 족보는 그 분류나 내용 구성에서도 유사성이 적지 않다. 지방지는 “강역을 구별하고 풍토를 기록하며 仁賢을 밝히고 치적을 드러내며 물산을 헤아리고 故事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족보의 광범위한 내용과도 서로 통하는 것이다.¹¹⁾ 현지 내용의 분류를 기준으로 족보의 내용을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 범례, 그림·지도 : 族譜序, 凡例, 目錄, 圖 등
- 2) 지리, 연혁 : 原姓, 姓氏源流 등
- 3) 선거, 공명 : 文武科甲誌, 封諡, 歷代封贈(文武官蹟, 文武科第, 援例貢監, 援例吏員, 給賜職銜, 鄉飲賓, 文藝, 中等以上畢業生, 褒章, 閨媛, 節孝, 堂構)傳敘, 題名錄(職員, 誥贈, 薦辟, 進士, 舉人, 貢生, 監生, 生員, 鄉賓, 孝子, 貞烈) 등
- 4) 예제, 제사 : 祠堂序, 祝文, 始祖祀租田條段, 祠圖, 祭産 등
- 5) 인물, 열전 : 傳, 世系序次列傳, 世系圖, 像贊, 譜傳 등
- 6) 예문, 문헌 : 引, 跋, 壙誌, 論, 贈言, 文, 詩, 墓誌銘, 記, 條規, 章程, 帖照, 判詞, 印

8) <<香山曹氏宗譜>> 卷1, <重修增補序>(康熙29年序)

9) <<香山曹氏宗譜>> 卷1, 11a, 乾隆19年序

10) 何子祥, <修家譜序>, <<何氏族譜>>

11) 章鐵牛, <族譜與方志>,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長春) 1988-2, p.88.

照, 讞語, 勅命, 誥命, 冠帶帖文, 匾額, 雜著, 譜論 등

7) 기부자 명단 : 樂捐芳名

셋째, 현지의 내용 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인 종족 관련 문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에는 인물지, 선거지, 봉음지, 예문지 등에 종족의 열전과 관련된 내용을 흔히 볼 수 있지만 명대의 지방지에 비하여 청대 지방지에 직접적으로 종족과 관련된 족보서문, 가규 서문, 묘지명 등이 많이 수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康熙58年<<平和縣志>>권8, 選舉下·恩綸에는 칙서, 칙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동 卷11, 藝文志下·著書總目에는 가족·종족 관련 문헌으로 李世浩의 <<李氏家規>>, 張一棟의 <<家範通考>>, 張惟方的 <<家訓>>을 목록만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道光<<平和縣志>> 卷6, 藝文志에는 귀유광의 <平和李氏家規序>를 수록하고 있으며, 족보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가전, 묘지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乾隆<<汀州府志>> 卷5 封蔭志에는 칙서, 칙명을 수록하는 것에 더하여, 동 卷39, 藝文1에는 李世熊의 <家譜後序>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귀화현의 후신 명계현의 경우, 民國<<明溪縣志>> 卷13, 藝文志에는 謝紹謀(清)의 <謝氏重修家譜序>와 揭鑫斯(清)의 <鄞山葉氏六修宗譜跋>이 수록되게 되었다. 이는 청말, 민국초에 간행된 지방지에 성씨나 씨족 항목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지어 볼 때,¹²⁾ 사회적으로 종족의 중요성이 지방지의 구성에도 변화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가훈, 가규, 가규서, 칙서, 칙명, 묘지명 등은 일반적으로 족보에 수록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당 종족의 위상을 과시하고 다른 종족들의 분발을 촉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지와 족보를 비교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正史의 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현지의 열전은 鄉賢, 名宦, 隱逸, 節婦, 道學, 忠烈, 武功, 義勇, 孝友, 女德 등으로 세분하여 효제·효우로 표현되는 유교적 가치를 지닌 인물의 사적을 수록한 예가 많다. 이것은 각 현의 입장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실현, 즉 국가 질서의 침투 정도를 과시하고 그 지방의 사회와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개인이나 종족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지에 수록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뿐만 아니라 종족의 영광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열전의

12) 명 홍무간 盧熊이 편찬한 <<蘇州府志>>에는 氏族이 1門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것은 正德<<姑蘇志>>와 乾隆<<吳縣志>>에 계승하였다. 다만 모두 이전과 같이 넣었을 뿐 어떤 증보도 없었다. 明末 王志堅이 重修한 <<蘇州府志>>에는 이를 제거하여 현재 통행되는 <<蘇州府志>>에는 이것이 없다. 天啓間 程楷이 重修한 <<平湖縣志>>의 10門 중에 하나가 氏族이며, 清代 章學誠의 <<和州志>>에 氏族表를 넣고, <<永清縣志>>에 土族表를 넣었으며 <<湖北通志稿>>에 族望表를 넣었다. <http://www.jxcnt.com/whzhuanti/sz/mqld/1.htm>. 또 민국 연간에 간행된 <<閩縣鄉土志>>의 版籍略三(大姓)과 <<侯官縣鄉土志>>의 版籍略三(氏族)도 대표적인 종족 관련 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13) 陳其南·邱淑如, <方志‘氏族志’體例的變遷與中國宗族發展的研究 - 附清光緒‘鄉土志’總目錄>, <<漢學研究>> 3-2, 1985.

서술은 유교적 가치를 확인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예컨대 건륭<<고전현지>>의 편찬을 주도한 고전현학 교유 溫廷選은, ‘명·청 교체기에 충신·의사·정부·열녀가 해와 같이 밝고 서릿발처럼 곳곳하였는데, 지금 편찬해 두지 않는다면 세월이 흐른 후 아름답고 훌륭한 행적들이 사라져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읍지가 오랫동안 없는 것은 바로 지방 장관[有司]의 책임이지만 교육을 담당한 사람의 근심이기도 하다”고 하는 지현의 말을 듣고, 지현을 도와 자료를 수집하고 현의 여러 인사들과 의논하여 경비를 확보하는 등 지방지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¹⁴⁾ 이렇게 지방지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과 비용의 확보 등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현창하여야 할 가치 있는 사실과 인물을 인멸시키지 않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교육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지 편찬이 기본적으로 통치 자료의 정리와 보존이란 성격을 갖지만, 인물들의 사적을 수록하여 유교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자료로서의 성격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보존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유교적 가치 가운데 특히 경중수족의 핵심 요소인 효우, 효제가 지방지의 열전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우선 지역사회와 종족의 생존을 돌보고 종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례를 빈번히 지방지의 효우전, 향현전, 향행전에 수록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饒登雋은 영안현학 학생으로 부모를 지극한 효도로 섬겼으며, 만력 연간 두 차례나 큰 기근이 오자 당감해 준 소작료[田租]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죽을 끓여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해 주었다. 아울러 종족이 사는 마을에서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하거나 떼거리가 없거나 장례치를 수 없는 사람은 모두 돌봐주었다.¹⁵⁾ 또 호부랑 嚴九岳의 아들이고 태학생인 嚴應璩는 종족에게 토지를 기부하여 蒸嘗田을 넓혀주었고 기근이 들자 값싸게 곡물을 내다 팔았으며, 그래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죽을 끓여 주었다. 흉년으로 소작료를 내지 못하고 몰래 달아나자 3년 치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고, 흉년으로 수확이 없게 되자 저당 문서, 빚 문서와 같은 新舊諸券을 모두 불태웠다.¹⁶⁾ 楊名教는 태학생으로 예를 지키고 의를 헤아려서[秉禮度義]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죽원 가운데 세량을 못내는 사람의 세금 수백 민을 완납해 주었으면서도 조금도 은덕을 베푼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았다.¹⁷⁾

이러한 서술은 대부분의 열전에서 “효우→성공”과 같은 서술 구조를 통해 효우의 실천을 장려하였다. 예컨대 도광<<평화현지>> 효우전에 실린 曾祺의 전기를 보면, ‘통판 증

14) 乾隆<<古田縣志>><序(溫廷選)>.

15) 雍正<<永安縣志>>(2004년) 卷9, 人物·鄉行, p.199.

16) 雍正<<永安縣志>>(2004년) 卷9, 人物·鄉行, p.198.

17) 雍正<<永安縣志>>(2004년) 卷9, 人物·鄉行, p.197.

장의 아들로 천성적으로 우애가 있다. 배다른 동생 6인을 모두 자기 어머니가 낳은 것처럼 보았으며 마땅히 가져야 할 재산조차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여러 동생들과 함께 누렸다. 또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소종사를 세웠으니 사람들이 長厚君子라고 했다. 광동 애주 관관에 임명되었고 70여세를 살았다.’¹⁸⁾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지방지의 서술을 통해 효우와 같은 이념을 칭송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것인 동시에 “효우→성공”과 같은 서술 구조를 통해 효우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은 지방지 열전의 대부분이 그러하였다. 아울러 도광년간 ‘효우’가 열전의 한 부분으로 새로 분류되고 서술된 것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효우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명·청대 지방지의 열전에서 점차 효우를 강조하는 쪽으로 서술의 중점이 이동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평현 효우 陳雍의 전기가 그 예다. 진웅에 대한 기록은 가정 <<장평현지>>권8 仕宦에서는 “거인리인이며 용암현학의 공생으로 호부섬서사 주사에 임명되었다. 근면하게 모두 3년간 관직에 있었는데 고과평가가 최고였다”¹⁹⁾고 하여 관리로서의 높은 평가와 “循謹”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력원년 <<장주부지>>권27 장평현 국조 향현전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진웅, 자 상화, 거인리인. 선덕 초 세공으로 국자감에 들어갔다. 호부 섬서청리사 주사에 임명되었으며 재직함에 청렴했다. 항상 산동 최징의 명을 받고 가서 털끝 하나 가지지 않았으며,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여 고과평가가 최고였다. 본부 원외랑으로 승진했으며 관청에서 순직했다. 웅은 사람됨이 천성적으로 효우했다. 모 楊氏의 상을 당하여 예도를 넘을 정도로 몹시 슬퍼했다. 재임 시에 누차 편지를 보내 아들과 조카들에게 공부하고 현 아문[縣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타일렀다. 자신의 토지를 형의 아들에게 주었다. 종제가 가난하여 혼인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은 쓰지 않고 절약하여[克己] 도와주었다. 죽는 날 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예전의 청백풍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²⁰⁾

“청렴”을 강조하여 청백리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가정현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 “효우”의 행위가 추가되면서 鄉賢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만력 <<장주부지>>권24, 篤行傳에서는

진웅, 장평인. 선덕 초 세공으로 국자감에 들어갔다. 호부 섬서청리사 주사에 임명되었으며 재직함에 있어서 청렴했다. 항상 산동의 세금징수의 명을 받고 가서 털끝 하나 가지지 않았으며,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여 본부 원외랑으로 승진했으며 관에서 죽었다. 웅은

18) 道光<<平和縣志>>卷6, 孝友·明, p.243.

19) 嘉靖<<漳平縣志>>卷8 仕宦, p.1113.

20) 萬曆元年<<漳州府志>>卷27 漳平縣·國朝鄉賢傳, 40a, p.573.

천성이 효우하다. 모 양씨의 상을 당하여 예도를 넘을 정도로 몹시 슬퍼했으며 자신의 토지를 형의 아들에게 주었다. 종제가 가난하여 혼인할 수 없게 되자 돈을 기부하여[捐資] 도와주었다. 邦人이 모두 그가 德讓하다고 했다.²¹⁾

이라고 하여 “재임 시에 누차 편지를 보내 아들과 조카들에게 공부하고 현 아문[縣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타일렀다.”는 구절이 빠지고, “쓰지 않고 절약하여[克己]”란 구절이 “돈을 기부하여[捐資]”로 바뀌는 등, 청백리를 강조하는 표현을 줄여 청렴 사례와 효우 사례의 균형을 맞추어 독행전에 수록되었다.²²⁾ 그리고 이 문장은 도광<<장평현지>>의 효우전에서는 순서만 바뀌 다음과 같이 수록했다.

진용. 거인리인. 천성이 효우하다. 모 양씨의 상을 당하여 예도를 넘을 정도로 몹시 슬퍼했으며 자신의 토지를 형의 아들에게 주었다. 종제가 가난하여 혼인할 수 없게 되자 연자하여 도와주었다. 방인이 모두 그가 덕양하다고 했다. 선덕(1426-1435) 초에 세공으로 국자감에 들어갔다가 호부섬서사 주사에 제수되고, 산동의 최경이 되어서는 털끝만큼도 사사로이 갖지 않았다.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본부 원외랑으로 승진했다. 관청에서 순직했다.²³⁾

이제 진용은 청백리 측면보다는 효우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전기에서 보여주는 흐름은 “천성이 효우하다. 모 양씨의 상을 당하여 예도를 넘을 정도로 몹시 슬퍼했으며 자신의 토지를 형의 아들에게 주었다. 종제가 가난하여 혼인할 수 없게 되자 연자하여 도와주었다.”고 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국자감에 들어감 및 호부주사에 제수, 승진, 관에서의 죽음”이란 결과로 구성되어 “효우하면 성공적인 관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형식이 되었다. 그리고 효우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을 당해서 몹시 슬퍼하는 것, 자신의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형제나 그 자식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천성이 효우하다”는 구절은 그의 효우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긴 하지만 天性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효우와 천성을 결합시킴으로써 효우가 누구나 추구해야 할 기준임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명 중기의 ‘관리로서의 높은 평가’가 청 중기에는 ‘효우함의 상징’으로 서술이 바뀐 것은 종족의 발달에 따라 가족 윤리와 종족 활동이 점차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적 장례나 시묘살이 등과 관련된 사례를 지방지에 수록함으로써 유교이념, 특히

21) 萬曆<<漳州府志>>卷24, 篤行傳, 15b-16a.

22) <<閩書>>卷120, 英舊志에는 “宣德初 以歲貢入胄監 除戶部主事 陞本部員外郎 爲人孝友 居官清慎.”이라고 하여 孝友와 清慎 양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력장주부지와 맥이 같다.

23) 道光<<漳平縣志>>卷8, 人物志·孝友, pp.242-243.

효제를 확산시키려는 편찬자들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우선 주민들의 장례 의식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부자간의 가치 차이와 실천의 차이로 서술되었다. 예컨대 영안현의 생원 賴豫는 어려서 모친이 사망했지만 아버지가 장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매장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관을 성곽 밖에 안치하고 있었다. 뢰예는 장성하여서 수차례 매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모친의 관이 매장되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여겨 항상 의복과 음식을 검루하게 했고 말하는 것도 그 슬픔을 드러내면서 아들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여겼다. 가정 35년(1556) 홍수가 나자 종과 함께 관을 큰 나무에 묶고 끌어안고 통곡하며 떠나지 않다가 결국 나무가 뽑혀서 익사했다. 이에 지현 陸策과 훈도 李一潮가 상부에 이 사실을 알리니 안찰사 李公이 “효행은 칭송할만 하다”고 하여 향현사에 입사하도록 했으며, 지부 彭公은 그의 집에 “효자 뢰예의 집[孝子賴豫之門]”이란 題를 내렸다.²⁴⁾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장례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문화적 갈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풍수에 따라 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면에서 지역의 전통적 인식을 대변하며, 아들은 속히 매장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되 홀로 불효자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목숨을 걸고 모친의 관을 구하려다 익사했다는 것에서 유교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관은 그의 행위를 칭송하고 향현사 입사와 제문 하사를 통하여 효도의 장려, 즉 유교적 가치의 확산을 꾀했다. 이러한 유형의 서술은 지방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장례를 둘러싼 세대간의 이념과 가치의 차이는 서서히 유교적 장례의 실시의 확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교화, 국가 이념이나 정책의 침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지방지에서는 그 변화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장평현의 진사 증여단[가정 11년 진사]이 “부모상을 당해서는 古禮에 따라 상을 치렀다.”²⁵⁾고 했는데 이 기록 자체가 화장이 일반적인 장평현에서 유교적 상례의 실행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가정<<장평현지>>의 習尙에서 “상례와 제례는 대부분 불교식으로 했으며 관례와 혼례는 전해 내려오는 습속대로 했다. 고례를 행하는 자는 적었지만 간혹 사대부가는 이를 행한다.”²⁶⁾고 했는데, 지도층인 신사층이 유교식 장례를 도입함으로써 서서히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렇게 신사층이 상례와 같은 유교적 의례를 실행하게 된 것은 국가 권력의 의지가 신사층을 통해 관철되어 갔음을 의미하며,

24) 萬曆<<永安縣志>>卷7, 人物志·孝義, p.84; 雍正<<永安縣志>>, p.209.

25) 道光<<漳平縣志>> 卷8, 人物志·理學, pp.235-236.

26) 嘉靖<<漳平縣志>> 卷4, 習尙, p.1028.

이는 신사층의 증가와도 관련 있다. 예컨대 “현 설치 초기(1471년 현 설치)에는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꺼리고 공부해 벼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최근(가정<<장평현지>>는 1549년 간행됨)에는 文風을 쫓아가니 각향의 자제로서 공명에 뜻을 둔 사람이 과거공부를 열심히 해 고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²⁷⁾

侍墓는 수년간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 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자신과 종족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과시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현지에서는 시묘에 관한 실천 사례를 수록하는 것은 그 확산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장평현의 陳原吉은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례를 마치자 묘 옆에서 오두막을 짓고 3년간 거기서 슬퍼하며 지냈으며,²⁸⁾ 영양현학의 늑생 陳思齊는 부모 장례 후 묘 옆에서 오두막을 짓고 시묘하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부모를 그리워했다.²⁹⁾ 또 영안현의 李杏[在城人, 가정 4년 거인, 사천안찰사 첨사 및 참의 역임]도 아버지의 상을 치름에 몹시 슬퍼해 뼈만 남을 지경이었으며 헤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3년간 시묘한 것이³⁰⁾ 그 사례다. 더욱 흥미있는 사실은 시묘의 실천은 종족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예컨대 영안현의 생원 張正先은 부모 사후 시묘 살이 3년을 하고 사당을 세웠으며, 후에 퇴락하자 백여 금을 기부하여 式廊을 증설하고 또 腴田을 설치하여 제수를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한 것이³¹⁾ 그것이다.

정절과 계사 관념은 가족을 유지하고 종족내의 불화를 막고 계승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교적 가족 윤리의 중요한 항목인데, 이 역시 현지에서 수록하여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영안현의 정열 李壽娘에 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랑은 생원 陳釗의 처다. 진쇠가 아들 없이 죽었으니 그녀의 나이 23세다. 그녀는 집에서 수절하고 내실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3년간 조석으로 슬퍼하며 상례를 다했다.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魏氏가 이어서 죽었다. 그녀는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를 효도로 공경하고

27) 嘉靖<<漳平縣志>>卷4, 習尚, p.1028.

28) 乾隆3年<<龍巖州志>>卷11, 人物志下·孝友, p.278; 道光<<漳平縣志>>卷8 人物志·孝友, p.243.

29) 同上

30) 萬曆<<永安縣志>>卷6, 選舉志, p.65; 萬曆<<永安縣志>>卷7, 人物志, pp.81-82; 順治<<永安縣志>>(陳廷樞 修, 陳行忠·曾省 纂, 福建省地方志編纂委員會 整理, 北京: 方志出版社, 2004)卷7, 人物志, p.233; 雍正<<永安縣志>>卷9, 人物·先憲, pp.294-295(1989年 鉛印本); pp.188-189(2004年 鉛印本).

31) 雍正<<永安縣志>>(2004년) 卷9, 人物志·孝義, pp.210-211.

예를 다했다. 모두들 다른 곳으로 시집가도록 권하자 울면서 “제가 듣기로 열녀는 두 지아비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남편의 형제가 모두 죽고 할아버지도 후사가 없으니 陳氏의 대가 끊어져 저 한 몸에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만약 천행을 만나면 진씨 자손을 후사로 세워서 제가 죽더라도 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할머니 曾氏는 堂에 있으면서 서로 목숨을 의지하고 있으니 어찌 차마 순간이라도 떨어지겠습니까?”라고 하며 거절했다. 이에 죽기로 서약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오로지 시할머니를 섬기며 새벽과 밤에 함께 일어나고 같이 잤다. 후에 시할머니가 천수를 다하고 돌아갔으니 부양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힘이다. 시아버지가 죽자 죽인은 그녀가 고생스럽게 정절을 지키는 것을 불쌍히 여겨 당질 陳興仁을 아들로 세워 진씨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가정 41년(1562) 通學이 그녀의 행위를 가록하게 여겨 學政에게 칭해 “褒節” 두 자를 주어 현창했다. 만력 21년(1593) 지현 蘇民望이 편액을 만들어줘 칭찬했으며 그 집을 짓도록 했다. 순안어사 진 아무개가 현에 와서 이 사실을 상주해 특별 예우를 더하게 했다. 현재(만력 22년, 1594년) 85세이다.³²⁾

서술의 흐름은 수절 → 孝養 → 후사 세움[立嗣] → 포상하고 장려함[褒獎]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주목할 것은 이수랑이 수절의 근거로 든 이유는 不事二夫와 繼嗣였다. 즉 “열녀는 두 지아비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지하다시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유교에서 역대로 강조되어 온 핵심 가치다. 또 “남편의 형제가 모두 죽고 할아버지도 후사가 없으니 진씨의 대가 끊어져 저 한 몸에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만약 천행을 만나면 진씨 자손을 후사로 세워서 제가 죽더라도 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계사 관념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불사이부와 계사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가 16세기 후반 영안현에 상당히 퍼졌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이수랑뿐만 아니라 수절하면서 효도로 봉양한 賴啓娘과 莊昭, 黃眞勝의 순사한 처 진씨, 죽음으로 정조를 지킨 진씨녀나 여섯 여자 등 많은 정절 관련 사례가 지방지에 수록되어 있는데³³⁾ 이 역시 유교 문화의 확산을 엿보게 한다.

신사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와 문화를 이끄는 지도층이 되었다. 예컨대 영안현의 林祥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형에게서 컸지만 공생으로서 長沙 經歷을 역임했으며, 그의 둘째 아들은 거인이 되고 셋째 아들 林騰蛟는 가정 22년 제2등으로 거인이 되고 가정 26년에는 진사가 되었다. 이 임상 가족의 다음과 같은 사례는 유교적 예의와 그 과정에서 닦여진 인품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엿볼 수 있다. 즉

32) 萬曆<<永安縣志>>卷7, 人物志 貞烈, pp.88-89.

33) 萬曆<<永安縣志>>卷7, 人物志 貞烈, pp.87-88.

禮義를 중시하고 躬行을 숭상했다. 향촌에 거해서는 平易하고 和厚해 사사로이 사람들을 부리지 않았다. 성신함이 평소에 드러나고 향려에서 바른 것을 드러내니 비록 巨奸大猾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교화되었다. 거주하는 향은 일시에 모두 기술자[工匠]와 장사를 중시하던 습속이 바뀌어 너도나도 글 배우기로 나섰다.³⁴⁾

라고 한 것이다. 즉 예의라는 국가 이념을 수용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문으로 등장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문학의 길로 나가는 풍조를 만들었다. 이에 상층사회에서부터 유교적 교양을 배우고 그 가치와 의식을 실행하는 예가 보였는데, 대전현에서 “世家가 자못 文禮를 갖추고 詩書를 많이 배웠다”고³⁵⁾ 하는 것도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지현과 교유의 교육 진흥 노력이나 종족의 신사충 배출 노력 등과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신사충 성장으로 이어졌다.

신현에서 신사충이 성장하고 유교 교육이 확산되면서 앞에서 든 장평현 이외의 신현에서도 유교적 의례, 유교적 가치 그리고 국가 질서가 확산되고 종족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귀화현에서는 “화장을 숭상하고 改葬을 가벼이 여기며 귀신 섬기기를 좋아해 해당 귀신의 종교 시설[庵]에 토지를 헌납하는 예가 많았으나”³⁶⁾ 현이 설치된 이후 “상례는 읍 사대부가 사이에서는 주자가례[家禮]를 본받아서 하고 불교 방식을 쓰지 않으며 鼓樂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다.”³⁷⁾고 했다. 또 만력 연간 대전현에서도 상례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땀나무를 모아서 화장을 하는데 이를 登遐라고 한다.”고 해 화장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최근(만력<<대전현지>>는 1611년 간행됨)에 세가는 자못 글 읽기와 예의를 갖추고 대부분 시서를 공부하며 일반 백성들은 또한 본업에 힘쓴다.”라고³⁸⁾ 하여 ‘세가’ 즉 신사 가족 중에서는 유교적 의례나 유교적 교양이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안현에서도 羅允元이 아버지가 죽자 불교식을 사용하지 않고 장례와 제례를 모두 고례에 따랐다고 했다.³⁹⁾ 이렇게 각 신현에서 신사들 중 관습화되어 있던 불교식 상례를 버리고 유교식 상례를 실행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아직 유교식 상례가 크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단초는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대부분의 사례가 신사들의 행위라는 것은 종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신사가 가진 위상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족 내에서

34) 萬曆<<永安縣志>>(蕭民望 修, 蕭時中 纂, 福建省地方志編纂委員會 整理, 北京: 方志出版社, 2004) 卷7, 人物志·儒林, pp.82-84.

35) 萬曆<<大田縣誌>> 卷4, 輿地志·土風, 19a.

36) 萬曆重修<<歸化縣志>>(稀見中國地方志匯刊) 卷1, 輿地誌, 29a-b, p.742.

37) 萬曆重修<<歸化縣志>>(稀見中國地方志匯刊) 卷1, 輿地誌, 29b-31a, pp.742-743.

38) 萬曆<<大田縣誌>>卷4, 輿地志·土風, 19a.

39) 雍正<<永安縣志>>(2004年) 卷9, 人物志·大年, p.235.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종사 건설, 족전 확보, 족보 편찬, 대외 교섭 등 각종 활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전파되어 비신사층에까지 확대되어 하나의 풍조를 만들어갔다. 예컨대 謝宏凱[평화현 신안리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직접 농사지으며 어머니를 공양했다. 사당、의전、學租를 설치해 후손에게 물려주고 불교식 의례를 사용하지 않고 화장을 배척했다.⁴⁰⁾ 또 청대 들어 평화현의 李元錄은 일찍이 자신의 집을 종사로 내놓았으며 또 祀田을 창설하여 제사 비용을 댔으며 상장례는 몸소 담당했다.⁴¹⁾

종족 문화는 자신의 종족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종족의 범위를 넘어 영향력이 확산되었는데, 지역 방위를 통해서도 지역 사회와 관계를 확대시킨 것이 그 사례이다. 즉

郭仁顯[대전현 45도인]은 강직하고 방정하며 의를 좋아하고 효우가 향리에서 모범이 되었다. 가정 초년 흉년이 들어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 식량을 약탈하니 향리 중의 무뢰배[惡少]도 이를 본받고자 하여 몰래 결당했다. 인현이 그 모의를 알고 거주민들을 등록시켜 보갑을 편성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했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등록부에 따라 호명하되 응하지 않는 자는 벌하였으며, 경보가 있으며 협조하도록 하니 감히 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비축된 곡식을 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니 마침내 한 사람도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른 종족도 대부분 이것을 모방하니 지방은 이에 의지하여 안정되고 향인이 고맙게 생각했다.⁴²⁾

라고 하여 효우한 품성을 가진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성망을 받고 있으므로, 그가 엄격하게 보갑을 조직하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도 이를 모방하였다는 사실에서 효우를 기초로 한 종족이 결집하여 전란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조직의 경험이 다른 종족으로 확대되어 갔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영안현의 高璘은 가정 연간 산구가 일어나자 貢川의 백성이 보를 축조하여 스스로 지킬 것을 논의하고 당도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보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와 함께 “百順堂”을 건축하고 공동의 토지를 설치하여 조상을 제사했다⁴³⁾고 하여 향촌방위라는 지역사회의 일과, 종족활동이라는 족내 활동이 함께 연계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향촌 사람들 가운데 그 선조의 묘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자 李一叢이 이를 사서 돌려주고는 다시는 팔지 못하도록 타일렀으며, 친족이 빈곤하면 후하게 돌봐주었다⁴⁴⁾는

40) 康熙<<平和縣志>>卷9, 人物·閭巷, 36a-b, p.180.

41) 康熙<<平和縣志>>卷9, 人物, 38b, p.181.

42) 民國<<大田縣志>>卷6, 列傳, 15b-16a, p.712-713; 同, 廈門大學出版社, 2009, p.348.

43) 道光<<永安縣志>>(2004年) 卷7, 人物志·補遺, p.363.

44) 道光<<永安縣志>>(2004年) 卷7, 人物志·補遺, p.364.

기록에서도 같은 효제를 바탕으로 종족을 유지시키고 결집시키는 서술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종족의 모여살기[聚族而居]가 일반화된 복건에서 지역의 문제는 종족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또 인접 지역의 불안정이 자기 지역의 불안정으로 쉽게 전이되는 유동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자기 종족이나 지역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웃 지역이나 종족의 안정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종족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종족으로 확산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문지에 수록된 족보 서문이나 발문, 가규의 서문 등은 직접적으로 종족문화의 확산이나 종족 형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하에서는 복건에서 종족 형성의 사례를⁴⁵⁾ 위에서 든 道光<<平和縣志>>에 수록된 歸有光[1507-1571. 江蘇 昆山 사람, 가정 44년(1565) 진사, 南京太僕寺丞 역임]의 평화이씨 家規에 대한 서문을 중심으로 종족문화의 확산과 종족 형성 사례를 검토하겠다. 이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주의 남정이씨는 남정현이 나뉘어 평화현이 설치됨에 따라 지금은 평화현 사람이 되었다. 서산에 거하기 때문에 복건 사람들은 西山李氏라고 한다. 대대로 명족으로서, 그 선조 중에서 서산거사가 있어서 실제로 처음으로 가문을 일으켰다. 그 5세손으로 文林郎·太常典簿·寧波教授가 된 李世浩⁴⁶⁾에 이르러서 그 종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이르러서 거사를 遞遷하게 되자 文林君이 차마 [거사의 신주를 폐기]할 수 없어서 義로써 시조의 廟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는 진강 蔡介夫[蔡淸, 1453-1509] 선생에게서 수학하여 古道를

45) 정진만은 종족의 내부 구조에 따라 繼承式 종족, 依附式 종족, 合同式 종족으로 나누고, 종족 형성의 출발점인 계승식 종족은 재부 및 사회지위의 공동계승으로 형성되고, 족내의 빈부 분화나 유력 족인의 주창으로 의부식 종족으로 바뀌거나 창건되고, 흩어지거나 쇠퇴한 종족이 공동 사업을 통해 합동식 종족이 된다고 하였다. 鄭振滿, <<明清福建家族組織與社會變遷>>,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2.

46) 李世浩는 淸寧里人으로 正德15年 歲貢生이 되고, 寧波府 教授를 역임했는데(康熙<<平和縣志>>卷8, 選舉上, 15b; p.135). 평화현 설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張浩然도 같은 해 세공생이 되었다. 그는 아들 文察로 인하여 太常寺典簿에 봉해졌고 둘째아들 文餘로 인하여 天府通判에 추증되었다(康熙<<平和縣志>>卷8, 選舉下, 2b; p.145). 또 李文察은 이세호의 아들이며 가정5년 세공생으로 磁州知州를 역임하였으며(康熙<<平和縣志>>卷8, 選舉上, 16a; p.135), 李文餘는 가정43년 거인, 가정44년 진사로 工部主事를 역임하였다(康熙<<平和縣志>>卷8, 選舉上, 4b-5a; 9a; pp.129-130; p.132). 이들은 모두 평화현지에 열전이 있다.

돈행하고 의전을 만들어 종족을 구휼하였다. 또 浦江鄭氏·吳興嚴氏를 본받아서 李氏家規 69조를 만들었으니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만하다. 나는 군이 가규를 만든 것은 차마 그 시조를 체천할 수 없는 마음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조의 묘가 세워지니 종자를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종자를 세우니 종법에 근거하여 족을 결합하고 宗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 대저 義가 나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종은 족으로써 씨를 얻었으니, 대개 천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까닭은 오로지 이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써 능히 오랫동안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있었으나 종법이 폐지되니 천하에는 근본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儒者는 혹 진한 이래로 世卿이 없어서 대종의 법은 다시 세울 수 없고 단지 소종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종이 없는 것은 가지와 잎은 있으나 줄기가 없는 것이고, 소종이 있고 대종이 없는 것은 줄기는 있으나 뿌리가 없는 것이다. 무릇 예를 잃으면 재야에서 이것을 구하는데, 종자의 법은 비록 格畧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격령이 금지할 바는 아니다. 사대부가는 이씨의 風을 듣고 서로 숭선하여 본받아서 행하니 거의 옛것이 점차 회복되는 것과 같다. 문림군의 아들 文餘가 가정 44년 진사로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그 책을 내게 보여주기에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서문을 쓴다.⁴⁷⁾

여기서 말하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련된 연혁, 시천조의 등장, 족원의 증가, 시천조로부터 5대가 넘어 遞遷해야 할 시점의 도래, 종족 설립의 주체인 신사의 등장, 문화적 선진지역에서의 교육, 고도의 실천, 의전을 만들어 종족을 구휼한 것, 가규를 만든 것, 5대가 넘자 묘를 만들어 제사 지낸 것, 불천위 제사를 ‘義’로 인식한 것, 사대부가는 이씨의 가풍을 듣고 서로 숭선하여 본받아서 행한다는 것 등은 종족 형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종족 형성 과정이나 종족문화의 확산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족규 서문의 첫 문장에서 평화이씨는 원래 남정이씨였으나 평화현이 신설되면서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즉 남정현은 원 지치2년(1322) 용계현, 장포현, 용암현을 떼어서 남승현을 설치하고 현치를 南勝에 두었다. 그러나 지원3년 李志甫[李勝]의 난을 계기로 小溪 琯山로 현치를 옮겼으며, 다시 지정14년(1356)년 지리적으로 치우치고 풍토병이 많은 것을 이유로 쌍계 북쪽으로 현치를 옮기고 남정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정덕 13년(1518) 蘆溪寇亂을 계기로 왕수인이 평화현을 설치하면서 청녕리와 신안리를 평화현에 떼어줌에 따라서 남정이씨는 평화현에 속하게 되었다. 남정이씨의 주요 거주지인 관계 서산지역[侯山]은 소계의 남정현치에 가까워서 문화적으로 급성장한 일족이었고 이후에도 평화현의 주요 성씨로 유지되었다.

서산이씨의 시천조인 서산거사는 이름이 祝延(1338-1407)이며 佛保, 仲生, 再得 3명의

47) 歸有光, <<震川集>> 卷2, ; 道光<<平和縣志>> 卷6, 藝文志, p.307, <平和李氏家規序>.

아들이 족보에 수록되어 있다. 불보(제2세, 1363-1413)도 아들 3명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둘째인 嶠[제3세, 호는 난실, 이름은 原道, 자 本立, 宣德7년壬子舉人]는 거인으로 서산이씨 최초의 과거합격자였다.⁴⁸⁾ 이 종족은 급속히 분절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표 평화현 성씨·토보 및 공명 획득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張氏와 더불어 평화현 최고의 명족으로 성장하였다.

가규서문의 중심 인물인 이세호는 평화현지에서도 주요 인물로 열전에 수록하고 있다. 이미 만력원년의 장주부지에서는 가정현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李世浩. 字는 碩遠이다. 정덕15년(1520)에 南靖學의 공생으로 南海訓導를 받았으며, 敎諭가 되고 寧波 敎授로 승진하였다. 가는 곳마다 士人의 마음을 얻었다.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아들 文察로 인하여 太常寺典簿를 받았다. 세호는 敦樸하고 옛것을 좋아하였는데 젊어서 蔡虛齋의 문하에서 유학하였으며, 성장해서는 陽明과 甘泉을合一한 學을 강의하였다. 家規를 만들고 宗法을 바르게 하였다. 鄉約을 찬수하고 聚賢堂을 건설하고 義倉을 설치하였다. 곡진하게 종족을 화목하게 하여 사랑을 널리 뿔으며 선함을 내려줘 풍속을 선하게 만드니 무릇 그 배운 바에 어긋나지 않았다. 嘉靖志⁴⁹⁾

이 내용은 일반적인 족보의 열전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 있는 사실은 가정현지(만력원년<<장주부지>>)의 이세호전은 110자임에 비하여 청 강희<<평화현지>>에서는 337자로 3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에서도 “일찍이 西銘의 吉壤을 구입하여 衆과 이를 공유하였으며, 族人들이 기쁘게 모여들어 흠을 날라서 토성을 쌓고 그곳에 이사하여 거하였다. 宗祠를 만들었으며 大宗과 小宗을 연결시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족을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이 토성은 正德年間 賊寇가 사방에서 일어나므로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도모하여 “西山李”선현인 李世浩과 李延淳이 전 종족의 자손을 이끌고 축조한 西山城이다.⁵⁰⁾ 강희<<평화현지>>에는 그밖에도 <封文林郎太常寺典簿李世浩勅命 嘉靖18年>, <文林郎太常寺典簿李文察勅命 嘉靖18年>⁵¹⁾ 등을 수록했으며, 도광<<평화현지>>에는 위에서 든 369자에 달하는 <平和李氏家規序>를 수록하였던 것이다.⁵²⁾

48) 康熙<<平和縣志>>卷8 選舉上, 7b; p.131.

49) 萬曆元年<<漳州府志>>卷28, 國朝鄉賢傳, 27a-b, p.592.

50)

<http://zzsmzj.zhangzhou.gov.cn/cms/html/mzzjj/2012-04-16/759156829.html>.

51) 康熙<<平和縣志>>卷8, 選舉下·恩綸, 9a-b, p.149; 道光<<平和縣志>>卷5, 封蔭志, p.261.

52) 그밖에도 평화현지 예문지에는 <奏進樂書乞興正樂表>(李文察), <樂書序>[이문찰이 쓴 악서에 대한 명 예과급사중 周采의 서문], <李文察辭貢金傳>, <樓雲公家傳>[이호원의 아들 李文察의 전기],

종족 형성의 전제는 크게 사회경제적 측면과 종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귀유광의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종족 인구가 증가하여 이들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이 제고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명청대 보전현 <<농서이씨종보>>에서

혹은 <<가례>>에 따라 四親을 각 室로 나누어 서쪽을 上으로 했으나 선조는 단지 묘소에서 제사지내도록 하니 사람들이 도리어 이를 의아해 했다. 노유들이 예를 논의하였지만 정론에 이르지 못했다. 참으로 사람의 지극한 정은 멈추게 할 수도, 하나로 통일할 수도 없다. 지금 白水塘의 祠는 위로 10여세를 제사지내니 <<가례>>의 뜻에 맞춰보면 마땅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족에 속한 사람은 많고 또 소원해져서 이것을 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인심이 흩어져 묶을 방법이 없으니, 宗祀를 지켜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면면세세토록 은택이 무궁하게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⁵³⁾

라고 하였다. 국가 권력이 규정한 <<가례>>를 부정하고 대종을 결성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스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족에 속한 사람은 많고 또 소원해져서” 대종이 아니고서는 흩어진 인심을 묶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는 주자가례에 따른 제례에 대하여 “사람들이 도리어 이를 의아해 했다.”는 것과 대종 제사가 “사람의 지극한 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이다. 특히 종족의 인구가 증가하여 서로 소원해지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영춘현 도원유씨에서도 족보를 만들어 갈 때 인구 증가에 따른 소원의 문제가 중요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이 최대 ‘4대 봉사’라는 국가 규정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시점인 5대째 나타났으며, 이것을 계기로 종법적 갈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국가 규정에 따라 체천할 것인가, 계속 제사를 지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일반인의 경우 2, 3대 제사로 완결되므로 전자의 선택이 편리하고 현실적이다. 하지만, 4대 제사가 가능했던 신사 집안은 이제까지 지내던 제사를 갑자기 그만두기에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다. 이미 홍화부나 천주부와 같은 선진 지역의 일부 신사 집안에서는 5대 이상이라도 사당을 만들어 계속 제사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모방하기 시작했다.

종족을 결집하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사이다. 종족 활동의 중심인 족보 편찬이나 종사 건설은 문자를 사용하고 유교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아울러 종족에 대한

<李素園先生傳>[진사 李贊元의 전기], <射圃碑記>(이원호의 아들 李文餘의 글), <李節母許太孺人墓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⁵³⁾ 莆田縣<<隴西李氏宗譜>>卷1(鄭振滿, 1992, pp.174-175).

이해와 지도력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평화이씨에서는 문림랑·태상전부·녕파교수 이세호가 그런 인물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일찍이 채청에게서 종족 관련 지식을 배우고 죽인들을 이끌고 서산성을 만들었으며 그것으로 집을 옮겼다. 그리고 종사를 건축하고 대종과 소종을 연합하고 전체 종족을 화목하게 하였다. 벼슬을 그만둔 후 귀가하여 이씨가규를 만들고 취현당을 건축하고 의창을 만들어 죽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악풍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은 종족에서 출발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의 안정에 앞장서길 기대하게 만들었다.⁵⁴⁾

신사는 종족 활동의 참여를 통해 종족 내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가정 연간 보전현 공계(碧溪) 황씨의 족보에서는 사당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당을 세우지 않으면 조상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백숙과 형제는 세시와 복랍에 관리[衣冠]라도 모일 곳이 없으므로 갑자기 서로 거리에 있으면 옷을 벗거나 벌거숭이로 지나가도 길거리 사람과 다름없게 된다. 불초한 자제가 이런 것을 보고 익숙해져서 하루아침에 터럭만한 이해라도 생기면 노하고 원망하고 원수삼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사당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당이 아직 있었다라면 宗家の 지파가 시절마다 관리의 모임을 갖게 되고 부형이 서로 훈계하는 것을 들으니 참으로 그 마음이 방탕하지 않을 것이고, 장차 면대하여 꾸밈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거의 치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당 흥폐의 분명한 효과이다. ⁵⁵⁾

주목되는 것은, 사당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사당의 모임에서, “불초한 자제”가 모르는 사람끼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노의 위험성을 깨우치거나 “백숙과 형제”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스스로 절제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누구를 입사시킬 것인가는 종법제가 붕괴된 현실에서 종족의 중심이 누구이고 종족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張岳 [1492-1552, 혜안현인, 정덕12년 진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기에 “別子가 祖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족으로 대부가 된 사람을 말하지만 공

54) 康熙<<平和縣志>>卷9, 人物, 10a-b, p.167.

55) <<碧溪黃氏宗譜>> 丙輯, <族議重建祠堂書>

족으로 대부가 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와 서인의 선조로 본디 자손에게 덕을 베풀어서 백세라도 잇을 수 없는 자는 또한 이에 의부할 수 있다. 내가 채씨족보를 보니 그는 常侍君 부자를 칭송하길 뛰어난 공적과 굽힐 줄 모르는 기개와 절조가 후대까지 빛나고 온갖 노력으로 그 종족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채씨 자손이 당한 심한 근심과 괴로움 및 슬픔은 백세라도 잇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잇을 수 없으면 마땅히 제사지내야 하고 제사지내면 마땅히 종을 세워 그 제사를 주재하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해야 한다. 순중은 조상을 존중하고 종족을 합하여 오래되고 무궁한 계책으로 삼고 스스로 상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미루어 종에 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명실의 자취를 족보에 기록하여 대비하고 곧 선후와 본말을 모두 다 얻기를 바랐다. 만약 그 사종이 함께 세우면 친함이 다하고 번갈아 옮기니 예가가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내가 특별히 ‘대중이 세워져서 안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분명히 밝혔고, 채씨 족보에서 이처럼 세울 수 있었음을 보았기에 말한다.⁵⁶⁾

여기서 <<예기>>의 “별자가 조가 된다”를 새롭게 해석하여, “사와 서인의 선조로 본디 자손에게 덕을 베풀어서 백세라도 잇을 수 없는 자” “뛰어난 공적과 굽힐 줄 모르는 기개와 절조가 후대까지 빛나고 온갖 노력으로 그 종족을 온전하게 한 자”를 과거의 “공족으로 대부가 된 사람”의 위치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혈연적 기준 대신 권력이나 재력으로 종족 활동에 공이 큰 사람, 결국 신사나 부자를 종족의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명실의 자취를 족보에 기록하여 대비하고 곧 선후와 본말을 모두 다 얻기를 바랐다.”고 하여 기록을 통해 그 정당성을 후세에도 보증하도록 하였다.

종족 안에서 신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종자의 위상은 하락하였다. 일찍이 송대 학자들은 대종과 소종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여 종자권을 기초로 종법식 통치체제를 증진하고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종자가 정치적 지위나 경제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연히 종자의 위상은 약화되어 “지금 종법이 서지 않았다”, “지금 종자법이 서지 않았다”의 상태가 되었다. 가정 33년 동안현 소씨종족이 종자와 종손이 있지만 제복조차 갖출 힘이 없어 “각 방의 자손”이 공동으로 그 위치를 계승하였던 것도⁵⁷⁾ 그 사례이다. 이제 종족의 중심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특히 신사가 차지하기 시작했다.

신사는 종족 문화를 도입하고 변형시키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이세호는 “진강 채개부, 즉 채청에게서 수학하였다”고 하였는데, 진강은 천주의 부곽으로 복건에서 가장 문운이 발달한 곳이며, 일찍이 송이래 종족이 발달하였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세호가 종족을 건설하는 데 천주 지역의 종족 문화의 영향도 컸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유명인사에게 수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종족문화가 평화현 지역으로 퍼져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

56) 張岳, <<小山類稿>> 卷11, 序1, pp.199-200.

57) 鄭振滿, 1992, pp.178-179.

다. 또 과거 응시나 각종 사업을 위해 북경, 남경, 소주 등지를 여행하는 중에도 종족 문화의 수용 및 교류가 이뤄졌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장악은 “惠安司訓 薛有孚가 그 선세의 보첩을 꺼내 내게 보여줬다.”⁵⁸⁾ “정덕 경진년 겨울에 南臺 照磨 純中이 이것을 꺼내 나에게 보여줬다. 무릇 교수로부터 이제까지 또 백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장성하여 늙고 태어나고 죽으며 성쇠를 거듭하고 오고 간 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족보를 이어서 편찬하지 않으면 장차 상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순중은 ‘저는 장차 이것을 이어서 완성하고자 합니다.’라고 한 것”⁵⁹⁾ 등이 그것이다.

이세호는 “‘옛 도’를 도답게 행하였다.”고 한다. ‘옛 도’는 문맥으로 보아 앞에서 서술한, “부모상을 당해서는 고례에 따라 상을 치렀다.”거나 “상례와 제례는 대부분 불교식으로 했으며 관례와 혼례는 전례 내려오는 습속대로 했다. 고례를 행하는 자는 적었지만 간혹 사대부가는 이를 행한다.”에서 말하는 “고례”와 상통하다고 생각된다. 도의 구현체가 예라고 할 때, <<주자가례>>는 인의나 효제와 같은 인도(人道)를 가례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에는 현 설치 이후 家禮가 민간사회에도 서서히 퍼져나갔음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영양현(1566년 설치)의 경우 현이 설치된 직후인 만력 원년(1573)에 간행된 <<漳州府志>>에서는 “처음 현치가 설치되었으나 민풍이 변하지 않았다”⁶⁰⁾고 하였으나 강희원년(1662)에 간행된 <<영양현지>>에서는 “혼례, 상례, 장례, 제례는 주자가례를 모방하여 한다.”⁶¹⁾고 하여 현 설치 후 예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화현(1519년 신설)도 비슷하여, 승정10년(1636)에 간행된 <<평화현지>>에 따르면

예전에는 현에는 내지와 외지의 구분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교화와 훈증(薰蒸)으로 집집마다 음악을 연주하고 글을 읽으며, 현성에서부터 大坪, 小坪, 大溪와 西山, 小溪, 雲霄, 西林 等處는 모두 文公家禮를 따른다. 다만 귀신을 숭상하고 불교를 따르고 소송을 일삼으며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없지는 않다.⁶²⁾

고 하였다. 현이 설치된 지 백 여 년이 지나면서 아직 불교나 귀신 숭배와 같은 전통적

58) <<小山類稿>> 卷14, pp.260-261, <瓊山薛氏祭田記>.

59) <<小山類稿>> 卷11, 序1, pp.199-200.

60) 萬曆元年(1573)<<漳州府志>> 卷31, 寧洋縣·輿地志·風俗, p.665.

61) 康熙元年(1662)<<寧洋縣志>> 권1, 輿地志·風俗, p.55.

62) 康熙58年<<平和縣志>> 권10, 風俗志·民風, 1b; p.192, 朱統鉤縣志. 朱統鉤은 장주부 통판으로서 승정년간 평화현의 서리지현으로 있으면서 승정10년(1636)<<평화현지>>를 간행하였다. 그는 현지 편찬 이외에도 구적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등의 공적을 세웠으며, 평화현의 士民들은 이를 기려 사당을 건설하였다.

인 풍속이 남아있지만 <<주자가례>>를 따라 관혼상제를 치르는 지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례가 종족문화의 핵심인 효제의 구체화이며 가례의 확산이 종족문화 확산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풍속의 변화는 종족문화의 확산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세호가 “의전을 만들어 종족을 구휼하였다.”고 전술한 바와 같이 종족 문화가 확산되면서 각종 목적의 족전이 설치되었으며 그 출연자, 명칭, 목적, 내용, 수혜 대상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족전은 제사를 위한 토지인 제전이다. 대부분의 신사들은 제전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제사를 유지시키는 데 앞장섰다. 제전을 비롯한 족전을 설치하여 제사를 비롯한 각종 종족 활동의 경제적 기초를 확보하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예컨대 영안현 상생 賴壽源은 일찍이 종족이 커졌으나 세시 제사에서 鼎에서 취할 것이 없음을 보고 제일 먼저 제사용으로 쓸 토지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가난한 선비들에게 주도록 했다.⁶³⁾

이세호는 포강정씨·오홍엄씨를 본받아서 <이씨가규 69조>를 만들었다. 포강정씨나 오홍엄씨는 모두 명대 전국의 모범이 되는 종족이었다. 평화이씨종족이 따르고자 했던 모델이 당시 널리 인식되고 국가권력에서도 선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대 종족의 표준의 존재가 명대 종족 발전에도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가규의 제정도 이뤄진 것이다. 가규는 가족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이미 5대를 넘어서 종족이 결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족규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모범으로 삼은 포강정씨·오홍엄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복건의 선진지역에서는 유력 종족이 족규를 만들어 실시하였다. 예컨대 명 가정초년 보전 계림방(桂林坊) 임씨(林氏)는 “개선사(開先祠)”를 건설한 후 족신 임준이 “임씨족범(林氏族範)”을 제정하여 사 안에 써놓고 “세시 제사에 이를 읽도록 하여 족인에게 은혜가 미치도록 하였다.” 임준은 임씨족내의 현관으로 가정 초 형부상서로 치사하였으며 그가 제정한 이 가범은 교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임달이 비석에 새겼으니 “멀리 오랫동안 전하라[垂久遠云]”고 하는 뜻이 있다.⁶⁴⁾ 임준의 위상이나 보전현과 같은 문화적 선진지역의 것이 다른 지역의 종족에게도 전파되고 모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의 형성은 그 제사를 위한 안정적인 물질적 기초가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전과 더불어 종사이다. 이세호는 시천조를 체천하지 않고 시조묘를 설립하였다. 시조를 제사지내는 사례는 복건에서 오래된 종족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미 오래된 종족에서는 혼

63) 道光<<永安縣志>>(2004年) 卷7, 人物志·補遺, pp.362-363.

64) 鄭振滿, 1992, pp.125-126.

한 일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홍치 2년 현재, 보전현의 명족은 대부분 국가의 규정과 달리 전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례>>에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정도였다. 귀유 광도 시천조를 사당[廟]에서 제사지내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족을 결집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義라고 보고 이세호의 종족 건립 활동을 칭송했다. 이미 시천조에 대한 제사와 종족 결집은 해야 할 당위 곧 옳은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천조를 제사지낼 전사의 확산은 시간문제였고 신현에서도 그러했다.

명 전기 복건 연해의 사당은 대다수가 신사충이 창건한 것으로 이것은 신사가 향유하는 묘 설립 특권과 관련 있다. 건사 활동 중에서 모여 사는 족인에 대한 신사의 통제가 강화되었고, 유력 집안을 중심으로 한 종족이 발달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 연간 보전 공계 황씨의 <族議重建祠堂書>에서 건사의 목적이 조상을 제사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족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당연히 사당을 창건하는 초기에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영락연간 남안 英山洪氏, 선덕 연간 용계현 太江蘇氏의 예가 그렇다. 그러나 족인들 사이의 분화, 그리고 종족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당, 족보 등의 정치적 작용도 부단히 강화되었다.⁶⁵⁾ 이에 신현의 신사들도 사당 건축에 앞장섰다. 예컨대 영양현의 廖天瑞(만력 25년 거인, 강서 신창지현)가 자신이 사는 집을 내놓아 종사를 건축하여 족인이 의롭다고 여겼다고⁶⁶⁾ 하고 하는 것이나 이세호가 종사를 건축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족보는 종족 형성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세호 열전이나 평화이씨의 가규서문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吏部尚書 王鼎廷이 쓴 <西山李氏家譜序>에는 족보를 수차례 편찬하였다고 한다. 즉 선조에 대한 譜牒이 전해지다가 원말의 전란으로 불타버렸다는 것, 증손 이교[족보에서는 孫입]가 다시 족보를 만들었으나 정통년간에 전란으로 다시 불탔다는 것, 그리고 6세손 厚가 편찬을 시작하고 동생 敬宗이 보충하여 편찬했다는 것이 그것이다.⁶⁷⁾ 적어도 현 설치 역사가 오래된 남정현에 인접한 서산이씨로서는 평화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꾸준히 족보를 편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강희<<평화현지>>에서 이세호가 대중과 소종을 연합시켰다[聯宗]는 서술로 보아, 분절되었던 지파들을 통합한 족보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필자가 확인한 <<平和琯溪西山李氏族譜>>(李敬宗 編纂, 清 宣統年間 抄本)에 이세호의 직계 선조와 후

65) 鄭振滿, 1992, pp.125-126.

66) 乾隆3年<<龍巖州志>>권11, 人物志下·文苑, p.279.

67) 현재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陳支平 主編, <<閩臺族譜彙刊>>(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제3책에 수록된 <<平和琯溪西山李氏族譜>>(李敬宗 編纂, 清 宣統年間 抄本). 이 족보는 서산 리림시조 6세 昂(潛軒公, 1465-1507; 西山梨林始祖) 계통이 만든 것으로 이세호의 계보는 확인할 수 없다.

손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4

신현이 국가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설치된 것처럼 현지도 국가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제 일의 과제였으므로 국가 교학인 유교의 핵심적 내용이며 종족 문화의 핵심인 효제도 현 지 서술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현지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은 종족의 역사를 표방하는 族譜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현지에 족보의 서문이나 발문과 같은 종족과 직접 관련된 문헌이 수록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현지와 족보를 비교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正史의 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현지의 열전은 鄉賢, 名宦, 隱逸, 節婦, 道學, 忠烈, 武功, 義勇, 孝友, 女德 등으로 세분하여 효제·효우로 표현되는 유교적 가치를 지닌 인물의 사적을 수록한 예가 많다. 이것은 각 현의 입장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실현, 즉 국가 질서의 침투 정도를 과시하고 그 지방의 사회와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개인이나 종족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지에 수록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뿐만 아니라 종족의 영광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열전의 서술은 유교적 가치를 확인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지를 통해서 보존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유교적 가치 가운데 특히 경종수족의 핵심 요소인 효우, 효제가 지방지의 열전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종족의 생존을 돌보고 종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례를 빈번히 지방지의 효우전, 향현전, 향행전에 수록하여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대부분의 열전에서 “효우→성공”과 같은 서술 구조를 통해 효우, 효제의 실천을 장려하였다. 또 명·청대 지방지의 열전에서 점차 효우를 강조하는 쪽으로 서술의 중점이 이동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진웅의 전기가 명 중기의 ‘관리로서의 높은 평가’가 청 중기에는 ‘효우함의 상징’으로 서술이 바뀐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종족문화가 확산되고 종족이 발달함에 따라 가족 윤리와 종족 활동이 점차 강조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현지에는 유교적 장례나 시묘 등과 관련된 사례나 정절과 계사 관념을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교이념, 특히 효제 관념을 확산시키려는 편찬자들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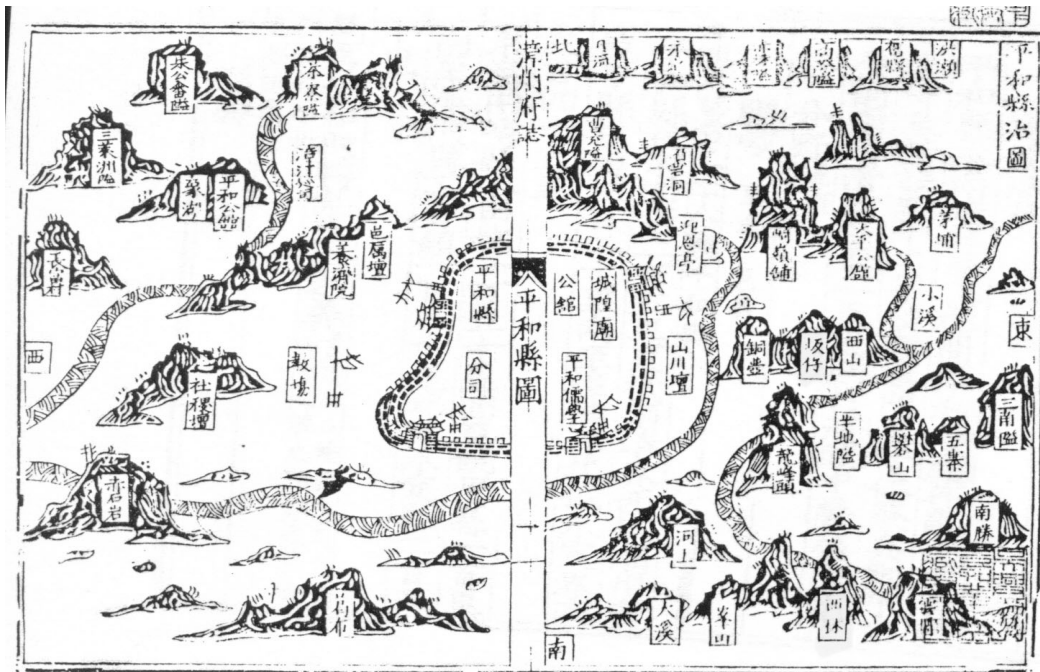
이러한 유교적 의례의 실천은 지도층인 신사층에서부터 시작되어 민간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특히 유교적 의례를 먼저 실천한 신사층은 점차 지역사회와 종족 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하여 지배층으로 정착해갈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종족을 결집하는 사

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사이다. 신사는 구휼이나 지역방위활동과 같은 공적을 세워 종족과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자지식이나 유교적 지식을 활용하여 족보 편찬, 종사 건설, 제사 관장과 같은 종족 활동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제고하였고 나아가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담당하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족인들 사이의 분화나 종족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은 사당, 족보 등을 활용하여 그 위상을 부단히 강화시켰다.

종족 문화는 자신의 종족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종족의 범위를 넘어 영향력이 확산되었는데, 지역 방위를 통해서도 지역 사회와 관계를 확대시킨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종족의 모여살기[聚族而居]가 일반화된 복건에서 지역의 문제는 종족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또 인접 지역의 불안정이 자기 지역의 불안정으로 쉽게 전이되는 유동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자기 종족이나 지역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웃 지역이나 종족의 안정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종족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종족으로 확산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지에 수록된 족보 서문이나 발문, 가규의 서문 등은 직접적으로 종족문화의 확산이나 종족 형성과 관련 있다. 대표적으로 도광<<평화현지>>에 수록된 귀유광의 ‘평화이씨 家規에 대한 서문’에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련된 연혁, 시천조의 등장, 족원의 증가, 시천조로부터 5대가 넘어 遞遷해야 할 시점의 도래, 종족 설립의 주체인 신사의 등장, 문화적 선진지역에서의 교육, 고도의 실천, 의전을 만들어 종족을 구휼한 것, 가규를 만든 것, 5대가 넘자 묘를 만들어 제사 지낸 것, 불천위 제사를 ‘義’로 인식한 것, 사대부가 이씨의 가풍을 듣고 술선하여 본받아서 행한다는 것 등 종족 형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열전에도 聯宗, 사당 건설, 토성 건립, 제전 확보 등 종족 문화와 종족 활동 관련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종족관련 내용이 현지에 수록된다는 것은 종족 형성의 과정이나 종족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종족 문화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수용되고 전파되는 사례가 많지만, 현지라는 문헌을 통해서도 그것이 전파되고 그 활동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도 평화현치도(만력 원년)>



<표 평화현 성씨·토보 및 공명 획득자>

	土堡의 數					功名 獲得者										
姓氏	동 (20)	남 (17)	북 (9)	서 (3)	합	縉 紳	韋 布	閭 巷	進 士	舉 人	貢 生	援 例	例 監	掾 吏	合	
張	3.5	2	1		6.5	6	6	1	9	11	17	7	9	1	67	
李	2		1		3	14	4	1	5	13	21	2	6	1	67	
曾	1			2	3	5	2	3		6	1	12	9	7	45	
吳	2	1			3	7			7	12	5	3	2	1	37	
林	11	3			14		2		2	7	4	4	11	2	32	
陳	6.5	5	2		13.5	2		4	1	4	4	2	9	5	31	
朱	2	1		1	4	1	2	2		2	5	4	5	4	25	
葉	1	2	3		6				2	4	3	4	7	3	23	
黃	20여	4	1		25여	1	2				4	2	8	1	18	
楊	2			1	3						3	2	9	3	17	
賴	1	2	1		4		3			1			9	2	15	
何	0.5	10여			10.5여								11		11	
方		1			1		1	2	1	3	2	2			11	
蔡	2	2			4	1			1	3	3		1		9	
謝					00			2		2	2				6	
許					00			1		3	2				6	

龔					00			1			3			1	5
江	1	1.5			2.5				1	1	2				4
盧					00	1					2	1			4
王					00							1	1	2	4
高		1.5			1.5					1			1	2	4
杜					00	1				1	2				4
周	1				1								3		3
游			1		1					1			2		3
鄭			1		1								1	2	3
柳					00		1				2				3
徐					00	1					1		1		2
查					00					1		1			2
蘇	1				1									2	2
莊	2				2							2			2
顏					00				1	1					2
武					00						1				1
沈					00								1		1
鄧					00						1				1
藍					00								1		1
潘					00						1				1
魏					00								1		1
俞					00									1	1
歐					00						1				1
石					00							1			1
湯					00								1		1
柳					00					1					1
郭		1			1										00
胡	1				1										00
羅		1			1										00
翁			1		1										00
曹		1			1										00
溫	1				1										00
范		1			1										00
洪	1				1										00
多姓	15	10	6		31										
	77.5	50	18	4	149.5여	40	23	17	30	78	92	50	109	40	478

근거 : 康熙 <<平和縣志>> 卷2, 建置, 土堡 및 列傳에 근거하여 작성함.

嘉靖年間 東南沿海社會

— 密貿易과 嘉靖倭亂을 중심으로 —

한 지 선(전남대 사학과 역사문화센터)

目次

1. 緒論
2. 沿海社會의 구조
3. 朱純事件과 互市
4. 嘉靖倭亂과 沿海社會의 龜裂
5. ‘禦倭’와 ‘以海爲田’
6. 結論-嘉靖倭亂이 남긴 것

1. 緒論

본 연구는 가정연간 명조의 해상의 치안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질서에 대해 무역을 요구했던 연해사회의 움직임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嘉靖年間 倭寇의 문제는 민족주의의 정서 속에서 韓·中·日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였다. 왜구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 왜구의 활동원인과 성격, 및 민족구성이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고 보았다.¹⁾ 중국에서도 반외세적 분위기 속에 연구가 진행되어 왜구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漢奸이 결합한 형태라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²⁾ 1980년대에 들어서 자본주의 맹아론이 부각되자 왜구는 중

1) 田中健夫, 「‘前期倭寇’‘後期倭寇’というよび方について」, 『日本歴史』 404, 1982 및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

2) 吳重翰, 『明代倭寇犯華史略』 商務印書館, 1939; 陳懋恒, 『明代倭寇考略』, 人民出版社, 1957; 李光壁, 『明代禦倭戰爭』, 上海人民出版社, 1956. 왜구의 활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郝毓楠, 「明代倭變端委考」, 『中國史研究』 1981-4, 孫玉琴, 「關於明代“倭寇”-中國資本主義萌芽的一些問題」, 『中國經濟史研究』, 1991-3; 陳學文, 「論嘉靖期的倭寇問題」, 『文史哲』, 1983-5; 李金明, 『明代海外貿易史』, 社會科學出版社, 1990; 萬明, 『中國融入世界的步履—明與清前期海外政策比較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국민이 대부분으로 중국의 상품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私貿易에 종사한 자들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증가했다.³⁾ 또한 明末清初期가 온을 매개로 세계가 연결되던 시기였음에 주목하여 왜구 역시 상업의 시대에 활동한 무역중개자로서 이해되기도 했으며, 민족구성이 복합적이었던 특징을 고려하여 국적이 불명한 해양의 ‘境界人’⁴⁾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왜구의 폭력성과 상업성을 강조하며 半商半盜의 집단⁵⁾으로 파악하는 등 왜구의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왜구의 연구들은 嘉靖年間の 무역과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가정연간의 왜구나 밀무역의 문제를 단순히 ‘정체성’ 문제로 제한시켜 버린 측면도 있다. 하지만 嘉靖末 隆慶初 명조가 포르투갈의 마카오 거주를 인정하고 月港을 개방한 사실을 고려하면, 가정왜란기는 전근대 해상질서의 수립을 위해 진통을 거듭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주목한 연구가 없지는 않다. 村井章介는 왜구 등 해양을 매개로 일본·조선·중국지역의 연해거민과 국가 간의 모순과 충돌을 중대한 역사요소라고 지적하며 연해에서 생활하는 기층민들의 활동이 1567년 월항의 개방을 가져왔다는 관점을 제시했다.⁶⁾ 그의 주장은 왜구 등 海民의 역사적 추동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긴 하지만, 국제질서 변화의 원인에 대해 기층민의 입장을 강조할 뿐, 실제로 기층민들이 어떻게 제도변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嘉靖倭亂期는 이후의 海禁이나 무역시스템의 성격을 규정한 중요한 시기로서 ‘禦倭’라는 국가적 과제와 ‘以海爲田’이라는 지역의 요구, 두 가지 상충하는 문제가 부딪히며 이에 대한 조종과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립에 미친 영향이나 동력에 대한 문제는 ‘왜구’나 ‘해민’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해금이라는 국가질서 변화의 동력이 지역질서를 모색하려는 연해사회의 ‘지방화’⁷⁾에 있다고 보고 연해라는 공간을 주목하고자 한다. 전근대의

3) 林仁川, 『明末清初私人海上貿易』,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 唐力行, 『商人與中國近世社會』(中國社會史叢書), 浙江人民出版社, 1993; 王守稼, 『明代海外貿易政策研究-兼評海禁與弛禁之爭-』, 『史林』1986-3; 范中義, 『論嘉靖年間倭寇的性質』, 『明史研究』第8輯, 2003.

4) 村井章介, 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1998.

5) 윤성익, 『明代 倭寇論에 대한 재고찰』, 경인문화사, 2007.

6) 村井章介,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 東京, 山川出版社, 1997.

7) ‘지방화’라는 말은 국법의 지배나 규제가 아니라 자각 속에 이루어진 ‘지역사회’의 개념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러한 경향이 더욱 커져갔음을 설명한 것이다. 지역사회란 한 지역의 여론이 아래의 하층민으로부터 상층의 지배계급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명청시대에는 신사·무뢰·아행과 상인·서리 등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를 형성했으며, 특히 명 말에 이르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사층은 국가권력과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중앙권력에 대해 원심력으로 작용했다(오금성, 『國法과

바다가 왜구나 해적 등 인간들이 활동하는 무대였다면, 연해지역은 이들이 내지와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해 가는 공간으로 무뢰-상인-어민-아궤-신사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했다. 또한 이 지역은 국가의 지배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연해 사회의 요구와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紳士나 지방관, 연해군관들의 현실인식에 대한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가정연간 밀무역의 전개와 倭亂의 과정을 ‘연해질서’의 형성→구축→균열→회복의 과정으로 살펴보고 연해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의 목표인 해외무역을 지속하거나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2. 沿海社會의 구조

명 중기 對外貿易 요구는 正德年間 廣東지역의 抽分制 확립에서 상당부분 관철된 측면이 있었다. 당시 광둥연안에는 포르투갈, 말라카 상인들의 입항과 무역이 허가되었고, 貢期에 상관없이 추분이 진행되어 사무역이 이루어졌으며, 추분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에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광둥지역에서 진행된 사무역의 허가는 ‘祖宗之法’의 원칙을 강조하는 嘉靖帝의 신료들에게 극복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正德帝의 奇行과 부정에 대한 불만에 비례하는 것이었다.

특히 가정 초 포르투갈의 屯門 점거 시도로 발생한 西草灣 사건과 일본의 다이묘 細川 씨와 大內씨 사이에 조공의 순서를 문제로 발생한 爭貢사건은 市舶의 존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가정제는 兵科給事中 夏言 및 제 관료들의 “閉關絕貢”의 건의를 받아들여 寧波市舶을 폐지하고 일본에 絶貢을 선언하였으며 다만 광둥시박은 말라카와 안남 등지의 조공을 받지 않도록 했다.⁸⁾ 그러나 가정 연간의 시박의 폐지는 오히려 밀무역의 발전을 자극한 셈이었다.⁹⁾ 정덕연간 福建과 광둥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무역은 가정 연간에 이르러 江蘇·浙江 연해까지 확대된 것이다.

연해사회의 성립 과정은 가정 32년(1553) 무렵 浙直 海防總兵을 맡았던 萬表의 『海寇議』에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만표는 밀무역의 발생과 확대과정을 ① 연해민들이 鄉宦들에 의탁하여 밀무역하는 시기, ② ‘通番’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結黨하지 않은 시기, ③ 强者를 중심으로 연합과 경쟁이 일어난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절강 지역에 통번하는 자가 출현한 것은 ‘20여년전’이라고 하였다.¹⁰⁾ 만표가 언급한 20여년 전

社會慣行』, 지식산업사, 2007, 제2장 참조).

8) 『明世宗實錄』 권106, 가정 8년 10월 己巳, 4b-5a.

9) 徐光啓, 『海防遇說』, 『明經世文編』 卷491, p.5436下.

은 『海寇議』의 저술시기가 대략 가정왜란 초기에 해당되므로 약 1532~3년 무렵에 해당된다. 1526년 서초만 사건이후 광둥에서 쫓겨난 포르투갈 상인들은 海寇 鄧獠를 따라 雙嶼에 들어왔으며¹¹⁾ 1938년 무렵 복건인 金子老가 寧波 쌍서항에 거한 것을 필두로 복건인 李光頭(李七 혹은 李貴), 許二¹²⁾ 등이 절강유역까지 이르러 활동했다.¹³⁾ 許棟이 王直, 葉宗滿, 徐惟學 謝和 등 휘주와 절강 사람들을 규합하고 밀무역에 참여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들이 쌍서지역을 중심으로 私市를 열고 연해민을 끌어들이며 무역하자 이곳은 밀무역의 최대 기지가 되었다. 원래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섬이었던 쌍서는 상주인구만 3천여 명에 달하였다¹⁴⁾고 할 정도였으며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밀무역은 ‘通番’, ‘接濟’, ‘窩藏’의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¹⁵⁾고 본다. 하지만 밀무역은 크게 네 파트의 협조로 이루어졌다.¹⁶⁾ 먼저 ‘통번’하는 자이다. 이들은 밀무역의 최외곽에 존재하며 바다를 통해 省界를 넘나들고 해외 諸 番으로 건너가 무역했다. 통번의 무리들은 명 중기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유리된 실업 유수들로 구성되며 밀무역에 필요한 노동력과 폭력을 제공했다. 통번인의 범주에는 항해를 돕는 안내자, 해외도항과 무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통번의 무리들은 각각 선박을 마련한 뒤 점차 “서로 모여 집합하여 각각 무리를 맺고 强者에게 의지”하였으니, “혹 50척 혹 1백척으로 무리를 이루고 당을 나누어 강과 항구에 나누어 정박”¹⁷⁾하면서 세력을 확대시켜 갔다. 다른 하나는 ‘접제’의 역할을 담당한 연해 奸民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연해와 도서를 활동영역으로 하였다. 연해민들은 어업과 뿔감의 채취를 명목으로 연해의 도서로 나가 광둥·복건 등지의 통번하는 무리나 제 번들과 결합하여 무역을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연해 무역거점을 마련한 통번의 무리에게 식량과 고기, 물 등을 공급하고 심지어 자식들을 통번에 종사하게 하며 밀무역을 지원했다. ‘접제’를 담당했던 이

10) 萬表, 『海寇議』(叢書集成初編3229), p.1.

11) 陳尙勝, 『‘懷夷’與‘抑商’』, 山東人民出版社, 1997, p.110.

12) 萬表에 따르면 許二는 徽州 출신으로 雙嶼항에 주둔하였다가 朱紘이 쌍서를 공략할 때 달아났다는 기록이 있다. 胡宗憲은 『浙江倭變記』에서 가정 27년 敵首 許棟이 사로잡혔다고 했다. 또한 潮州 饒平 黃岡人 許二는 가정 32년 9월 양자 허조광에게 살해되었다는 기록도 있다(戴裔煊, 『明代嘉隆間的倭寇海盜與中國資本主義萌芽』,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p.9). 許棟은 가정 27년 사로잡혔다는 기사는 처형했다는 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달아났다가 가정 32년 사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13) 鄭廣南, 『中國海盜史』, 上海華東理工大學出版社, 1989, p.185.

14) 張天澤, 『中葡早期通商史』, 香港, 中華書局, 1988, p.78

15) 戴裔煊, p.25 ; 陳文石, 『明嘉靖年間浙福沿海寇亂與私販貿易的關係』, ; 張維華, 『明代海外貿易簡論』, 上海人民出版社, 1956.

16) 한지선, 『明末 浙江地域의 密貿易과 沿海社會』, 『歷史學研究』 46, 湖南史學會, 2012.

17) 萬表, 『海寇議』, p.1.

들은 關官에게 뇌물을 바치며 작은 선박에 화물을 실어나르기도 하고 鄉宦에게 투탁하는 형태로 무역에 관여했다. 그리고 자본과 상품을 대는 ‘窩藏’의 역할이 있었다. 이들은 퇴직한 관리 혹은 관리의 친인척, 서리, 혹은 유력상인도 포함되었다. 와장중에서도 沿海大姓들은 연해의 백성들이나 밀무역자들의 사실상의 內主로서 통번하는 자들에게 자본과 상품을 제공하며 밀무역을 비호했다.¹⁸⁾ 대개 이들은 신사의 旗와 號를 빌려주기도 하고, 혹은 세를 내세워 뜻이 세게 이상 되는 불법선박을 거리낌 없이 운행하는 등 배후에서 밀무역을 경영하기도 했다.¹⁹⁾

通番, 接濟, 窩藏 이외에도 연해관원들 역시 주목해야 할 밀무역의 주축이었다. 연해관원들은 대개 연해대성의 위세로 인해 밀무역을 묵인한 것처럼 보이지만²⁰⁾ 이들 역시 밀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명 중기 연해위소의 병력은 급감했고 기강은 문란해졌다. 위소의 군관들은 뇌물이 횡행하고 종종 劣跡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였다. 주환이 “절강지역의 군관·관료들이 바다의 상인과 결합하거나 다투며 더불어 교역하고 물건을 보낸다”²¹⁾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연해 군관이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직접 무역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把總 張思維는 왕직과 “拜伏顧頭하며 기꺼이 신복이 되어 부르기만 하면 즉시 오는”²²⁾ 정도의 친분을 나누었고, 뇌물을 받거나 장물을 챙기면서 연해의 사시를 방조하였다. 특히 把總 이하 哨官, 隊長 衛所 그리고 部卒에 이르는 자들은 해당지역 출신인 경우가 많아 연해지역의 밀무역 관행에 익숙한 경우가 많았다.

밀무역의 구조에 대해서 張彬村은 ①해상 밀무역 상인, ②내지 밀무역 상인, ③정부 종사원으로 구분했다.²³⁾ 그는 해상밀무역 상인과 내지의 밀무역 상인을 밀무역 세력으로 보고 정부 종사원을 이를 방해하는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그에 따르면 삼자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3자 사이에 균형을 잃게 되면 서로 새롭게 분배를 결정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균형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18) 片山誠二郎, 『明代海上密貿易と沿海地方郷紳層-朱純の海禁政策強行と挫折の過程を通しての一考察-』, 『歴史學研究』 164, 1953, pp.24-25.

19) 屠仲律, 『屠侍禦奏疏·禦倭五事疏』, 『明經世文編』 권282, p.2979.

20) 片山誠二郎, p.28.

21) 朱純, 『璧餘雜集』(四庫全書存目叢書78 集部), 권9,

22) 萬表, 『海寇議』, p.2.

23) 張彬村의 구분에 따르면 ① 해상 밀무역 상인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활동하며 중국과 외국의 상품을 운반하며, ② 내지의 밀무역 상인은 해상 밀무역 상인의 상품을 중국 시장에 팔고 중국의 상품을 집산하여 해상 밀무역 상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③정부 종사관원은 정부의 각 계층의 관리로 해금을 관철하는 경찰력을 담당하는 자이다.(張彬村, 『16世紀舟山群島的走私貿易』, 『中國海洋史論文集』第1輯, 臺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84. pp.75-76)

보았듯이 정부 종사원은 오히려 밀무역의 적극적인 협력자이기도 했으며 또한 삼자 간의 균형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취약한 상태였다. 그 근본적 원인은 무역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무역 자체가 연해 관원과 연해 대성의 지원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밀무역 네트워크는 개별적인 뇌물과 친분에 의해 이루어졌고 거래는 불평등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금이 강화될수록 관원과 유력세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연해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明史』 『日本傳』에서 “私市는 처음 상인들이 주관하였으나 통번의 금지가 엄해지자 마침내 貴官家에게 옮겨왔다”²⁴⁾고 한 것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片山誠二郎이 지적한 대로 당시의 밀무역은 와장의 대성들이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본을 대고 출신지·관력 등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 관료들의 정치역량을 등에 업고 연해 위소 관원들의 방조·묵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 예컨대, 복건 同安縣 사람으로 광둥지역에서 按察僉事를 지내고 낙향한 林希元은 그 집안 사람들이 밀무역에 가담하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林府’라고 일컬으며 규제하지 못했다.²⁵⁾ 또한 謝遷이 내각대학사를 지내며 절강의 大姓이 된 餘姚 謝氏 역시 밀무역에 관여했다. 1547년 여름 謝氏 장원의 焚掠 사건은 밀무역을 진행하던 사씨 일가의 전횡으로 발생했다. 사씨 일가는 중국의 화물과 番貨의 값을 제멋대로 매겼으며 해금이 강화되자 오히려 이를 핑계로 약속한 화물을 넘기지 않은 채 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러한 사씨일가의 일방적 태도에 반발한 무리들이 사람을 모아 謝氏의 장원을 약탈하고 사씨의 일가 9명을 살해했다.²⁶⁾ 이 사건은 여요 사씨 일가가 謝遷의 지위를 이용해 밀무역을 진행하여 벌어진 것으로 거래 자체가 무역을 주도하는 향관에 의해 무역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²⁷⁾

하지만 연해대성이 장악한 밀무역의 주도권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연해대성들은 밀무역의 성립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법적 규제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오히려 연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그들의 입지는 축소되고 경찰력을 가진 연해관원의 영향력이 더 커져갔다. 연해관원들의 연해무역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는데, 이것은 개인의 출신, 관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巡撫, 巡視, 海道, 備倭 등으로 파견된 관원들은 중앙의 의지를 굴절시키고 여과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영합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강력하게 중앙의 의지를 반

24) 『明史』(中華書局, 1974), 권322, 烈傳 220, 『日本』, “撤市舶而濱海奸人, 遂操其利, 初市猶商主之, 及嚴通番之禁, 遂移之貴官家”

25) 원정식, 『明清時代 福建의 商人和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13, 2000, II 장 참조.

26) 『明世宗實錄』 권350, 嘉靖28년 7월 壬申.

27) 張彬村, pp.89~90.

영하기도 했다.

3. 朱紈사건과 互市

해상의 충돌과 병탄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하자 명 중앙에서는 연해지역의 치안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해금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의 연해 통제 의지는 가정 26년(1547) 주환에게 절강순무 겸 福興, 建寧, 漳州, 泉州 등 처의 해방군무를 제독하게 하면서²⁸⁾ 현실화되었다. 주환의 해금은 밀무역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연해민의 해상활동을 막아 ‘접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박의 크기와 형식을 제한하고 保甲을 강화하여 연해민의 생계를 빙자한 어업 행위까지 제한했다. 그리고 밀무역의 弊源은 자본과 선박을 빌려주는 향관들에게 있다고 여기고 이들을 內主로 지목했다. 특히 林希元 등 大姓들의 밀무역 가담행위에 대해 ‘某府’를 칭하여 출입에 꺼림이 없다²⁹⁾고 하며 “鄉官의 渡船을 금지하지 않으면 海道는 깨끗해질 수 없다”³⁰⁾는 원칙으로 이들의 밀무역 활동을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가정 27년 4월 주환은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쌍서를 공격하게 하여 都司 盧鑑이 九洋山에서 적을 대파했다. 그리고 許棟과 일본인 稽天 등을 잡아들이고 쌍서지역의 입항지를 메워 정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가정 28년 2월 詔安의 走馬溪에서는 李光頭 등 96명을 잡아들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주환의 입지는 좋지 않았다. 쌍서의 전투가 보고된 지 약 1달 뒤인 가정 27년 7월 巡按御史 周亮과 給事中 葉鏜은 “한 사람이 2성을 아울러 관할하게 하여 복건 내의 供應이 불편하다”, “복건·절강에는 해도의 專官이 있으니 都御使를 둘 필요가 없고 혹시 설치하더라도 각 성에 한명씩 설치해야한다”³¹⁾고 하며 주환을 巡視로 강등시킬 것을 주장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희원이 배후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³²⁾ 왜구의 內主가 되는 절강과 복건의 대성들은 주환의 강력한 해금으로 무역하지 못하는데다 종종 “大姓通倭”³³⁾, “衣冠의 도적”³⁴⁾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주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조정

28) 『明世宗實錄』, 권325. 嘉靖26년 7월 丁巳.

29) 원정식, p.112.

30) 朱紈, 『閱視海防事』, 『明經世文編』, 권205, p.2158上

31) 『明世宗實錄』, 권338, 嘉靖 27년 7월 甲戌.

32) 片山誠二郎, p.29.

33) 『明史』, 권322,

34) 『明史』, 권205. 烈傳93, 『朱紈傳』, p.5405.

에 상소를 올렸다. 주환 사건을 주도했던 周亮은 복건출신으로 금사중 葉鏜 등을 움직여 여론을 움직였다. 이와 함께 해금원칙론을 주장했던 夏言 등도 1548년 10월 혁직되어 사형에 처해지자 주환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환이 탄핵된 직접적인 사건은 1549년 주마계 사건이었다. 주환은 당시 千總이라고 속인 李光頭 등 96명이 교통 내용하니 海道副使 柯喬와 都指揮使 盧鏜에게 참하도록 명령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복건 도적의 蟠結함이 이미 깊어 사로잡힌 후에 奸究切齒하니 變亂을 또한 예측할 수 없는”³⁵⁾ 상황이었다고 한다. 즉, 그는 島夷들을 구인하는 대담한 간민들이 100여명에 이르자 장래의 근심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³⁶⁾ 이에 대해 절강의 巡按御史 陳九德은 양민들을 “專殺啓釁”³⁷⁾했다는 죄명으로 주환을 탄핵했다. 이후 가정제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금사중 杜汝禎과 순안어사 陳宗夔 역시 이들은 말래카 상인이며 매년 연해무뢰의 무리가 그들과 왕래해 왔고 僭號·流劫한 일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두여정의 심문을 받은 柯喬와 盧鏜도 말래카인들이 와서 장사할 뿐 포르투갈인이 겁락을 행한 것은 아니며 연해민을 擅殺했음을 시인하였다. 이에 주환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법대로 처벌할 것이 결정되자 주환은 자결하기에 이르렀다.³⁸⁾

두여정과 진중기의 보고에 따르면 주마계 사건 당시 사로잡은 포르투갈인은 말래카 상인으로 이들은 매년 연해 무뢰배를 불러들여 외국의 화물을 판매해 왔다. 해금이 강화된 가정 27년 여름 다시 그들이 입항하자 月港·浯澳 등처의 지방관들은 그 사람들과 화물을 구금하지 못하면 조정에 보고해야 했는데, 오히려 뇌물을 받고 정박을 허가하여 내지 백성들과 교통·집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정이 드러나자 로당은 그들을 포위 공격하고 말래카인들과 중국인들을 잡아들였다. 로당과 가교는 증거를 감추기 위해 사로잡힌 해구들을 首從, 內外의 구분 없이 참수에 처하였다.³⁹⁾ 이러한 내막은 『中國志』에도 확인할 수 있다. 로당은 이윤을 미끼로 포르투갈인 4명을 말래카왕으로 위장시키고 이들이 가진 화물을 상인으로 받고자 말래카왕을 잡았다고 전공으로 보고하려 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중국인 96명을 모두 참살했다고 한다.⁴⁰⁾

주마계의 과오는 로당과 가교가 주도한 것임이 밝혀졌지만 이것은 주환의 엄격한 海禁에 대한 압박이었다. 주마계의 살육에 대해 漳州·泉州의 豪右들은 “주환이 사로잡은 자들은 모두 양민이지 賊黨이 아니다”라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주환은 줄곧 “脅從

35) 『明世宗實錄』, 권347 嘉靖 28년 4월 庚戌.

36) 『明世宗實錄』, 권350 嘉靖 28년 7월 壬申.

37) 『明史』, 권81, 志57, 「食貨5·市舶」, p.1981.

38) 『明史』, 권205, 烈傳 93, 「朱紘傳」, p.5405.

39) 王士騏, 『皇明馭倭錄』(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53), 권5, 10a-b.

40) 博克舍, 『十六世紀中國南部行記』, 北京, 中華書局, 1990, pp.135~137.

被虜한 자들은 모두 양민이라고 하지만 지금 禁海의 경계가 분명한데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어떻게 협조하여 따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⁴¹⁾”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주환에 대해 ‘밀무역의 首·從을 구분하지 않고 擅殺·濫殺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연해지역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시에 대해 중앙의 통제 의지가 한발 물러섰음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가고·로당 등의 행적은, 연해무역을 허가해줌으로써 뇌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앙의 의지를 실현하려 했던 주환에게 부응하여 전공을 세울 것인지를 사이에 있었던 연해 군관들의 입지를 보여준다. 특히 로당은 주환사건과 縱敵의 혐의로 두 차례나 파직을 당하기도 했지만 가정왜란기에는 왜구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무장이었다. 로당 등 대개의 연해 무관들은 사시에 대해 관대했으며 일부는 통번인들과 협조하여 치안을 유지하기도 했다. 허둥 이후 陳思盼 집단이 강성해지자 把總 張四維의 주선아래 절강순안어사 海道副使 李文進, 寧波府 通判 唐時雍등은 왕직과 결탁하여 이를 제압하기로 약조하였고, 寧波 출신의 柴德美는 관과 상호 협공함으로써 진사해 집단을 소멸시켰다. 또한 가정29년(1550) 절강 海道副使 丁湛의 명을 받은 왕직은 盧七 집단의 1천여명을 죽이고 30여척의 선박과 포로 7명을 잡아 定海衛에 넘기기도 했다. 이와 같이 주환사건 이후 연해 관원과 왕직은 상호 협조가 이루어졌고 밀무역도 다시 재개되었다. 왕직은 해상 집단의 연맹체를 구성하여 폭력화하기보다는 관에 의지하여 이들을 각개 격파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이는 互市를 인정받아 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⁴²⁾ 왕직이 인정받고자 했던 호시는 바로 私市의 형태로서⁴³⁾ 왕직은 해금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연해 관원들과의 공조 속에서 사시를 열 수 있었다. 당시 연해에서 이루어진 사시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번박의 출입에 검험함이 없고 鴻關의 무리는 소주·항주까지에 섞여 들어와 공공연하게 활동하여 꺼림이 없다. 연해 지역민은 혹 먹을 것을 보내고 혹 쌀과 술을 보내며 자녀를 헌납함이 끊이지 않는다.⁴⁴⁾

위 사료는 절강 연해에 사시가 형성되자 연해민들은 식량과 술 자녀를 바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반영한다. 주환사건 이래 연해군관과 지방관들은 음으로 양으로 밀무역을 방조하며 통번의 무리들이 소주·항주의 연해 대도시까지 이르러 활동하였다. 『

41) 朱紘, 『明典刑以消禍患事疏』, 『璧餘雜集』 권2, p.46.

42)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四部叢刊廣編24), 『九邊四夷·日本』, p.11000.

43) 鄭若曾, 『籌海圖編』(中華書局, 2007) 卷12, 『開互市』, pp.847~848.

44) 萬表, 『海寇議』, p.2.

『籌海圖編』에서도 毛海峯·徐碧溪·徐元亮 등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던 왕직의 船隊는 “關을 들고 나는데 막힘이 없었다”⁴⁵⁾고 한다. 왕직은 수차례 해구토벌에 공을 세우며 연해 관원들의 협조 아래 烈港 등지에서 다시 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4. 嘉靖倭亂과 沿海社會의 龜裂

그러나 왕직의 사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552년 가정왜란이 시작되자 밀무역과 왜구의 결합과 구인 문제가 다시 주목되기 시작했다. 만표는 왜변의 시작을 “黃巖의 변과 霽衢의 도륙”으로부터 라고 하며 그전의 왜구가 단순히 법이 이완된 틈을 이용한 것과 달리 “指揮를 요참하고 知府와 百戶를 참살하고 방옥을 불태우며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고 연해백성 수만을 살해”한 적대적 행위로서 간주했다.⁴⁶⁾

연해지역의 대규모 약탈과 도륙이 있었던 것은 俞大猷 등이 왕직의 사시를 토벌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⁴⁷⁾ 만표는 황암의 변 이후 왜구들의 연해지역에 대한 약탈과 대량살상의 참화가 일어나자 이완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종의 성법을 변화하여 海市를 열어 난을 종식하자고 주장하는 자는 훗날의 근심이 전혀 없는 것이며 또한 治亂의 근원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개 (왜란의 원인은) 법이 이완됨에 있는 것이지 법을 엄격히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호시가 한 번 열리기만 하면 절강 전체가 위협해질 것이다.⁴⁸⁾

만표는 왜란의 근원이 ‘법의 이완’ 즉, 해금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법을 더 엄격히 집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海市는 연해지역에서 조

45) 鄭若曾, 『籌海圖編』 卷11上, p.675.

46) 萬表, 『海寇議』, p.2.

47) 嘉靖倭寇의 발생한 배경에는 가정 31년(1552) 3월 王忬가 절강 순안어사로 보임하며 해금을 강화했다는 주장이 있다. 왕여는 해금강경론자로서 절강과 복건 연해의 군무제독으로서 俞大猷·湯克寬·尹鳳·盧鏜 등을 적극 기용하여 연해 도서의 사시 소굴을 토벌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왜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여의 보임 역시 이해 3월 절강의 왜구문제가 보고된 것에 기인했음으로 보아 해상의 치안불안의 문제는 왕여의 보임 이전에도 문제되었다고 보인다. 私市는 지방 관료들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것으로 해적 사이의 경쟁과 폭력으로 인해 치안문제는 취약한 상황이었다.

48) 萬表, 『海寇議』, p.3.

공 없이 열렸던 私市를 가리킨다. 당시 왜구들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연해의 사시를 금했기 때문으로 파악하며 사시를 열어주는 것이 치안의 근본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 만표는 왜란의 원인이 해금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오히려 호시를 열면 더 큰 위험이 따른다고 여겼다. 그리고 왜구를 다스리는 방법은 ‘접제’를 근절시키는 것, 즉 연해민의 교통을 차단하면 “왜구가 식량과 물을 구하지 못하므로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해금을 엄격히 함으로써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으로 주환의 해금론을 계승한 것이었다. 황암의 변은 종래의 ‘호시’주장에 대한 반대의 논거가 되었고 다시 해금 강화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엄격한 해금을 주장했던 王忬가 절강 순안어사로 임명되었다.

한편 朱紘이 “의관의 도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복건지역의 밀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임희원 역시 “乙卯(1555) 여름 眞倭寇 1백 60여 명이 興化 黃石(黃巖)으로부터 해안을 올라와 島涯의 입구에 주둔”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임희원은 “都指揮, 指揮, 千戶, 百戶 등 무장 30명이 살해되고 군민으로 살해된 자는 1만으로 헤아린다”⁴⁹⁾고 하며 왜란이 내지로 확대되고 폭력적으로 치닫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임희원의 이러한 반응은 가정왜란이 발발하자 정작 밀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신사들 역시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왜변은 연해의 주요 유력세가의 집이 침탈당하는 등 신사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배의 질서에 균열을 초래했다. 내지로 깊숙이 진입한 왜구들은 주로 화물이 둔적한 창고 등을 주된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장기간 동안 진행된 약탈은 상업과 여행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임희원은 왕여 등의 해금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왕여와 유대유 등에 대해 “통번의 간호들의 연해 소굴을 공격한 것은 計가 아니다”⁵⁰⁾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의 배경에는 왕여 등이 접제를 근절하기 위해 “奸豪를 잡아 다스리고 支黨을 해체”⁵¹⁾하려고 하자 연해 대성의 불만을 산 것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왕여의 정책은 내지에서 왜구를 막는 수세적인 입장이었고 해상의 水寨와 전함은 폐쇄해졌다. 때문에 통번의 무리들은 도서의 수체에 이르러 이곳을 거점으로 여러 섬을 분략하며 더욱 창궐했다. 또한 유대유 등이 그들의 소굴을 토벌하면 흩어진 여러 도적들이 내지로 들어와 溫州·台州·寧波·紹興·杭州·嘉興·蘇州·松江·楊州 일대까지 노략하여

49) 林希元, 『上巡按二司防倭揭帖』, 『明經世文編』 권165. “乙卯夏倭寇一百六十, 自興化黃石登岸, 入駐鎮東海口, 巡海分巡參將等官, 駐劄福清, 募漳泉打手勦捕, 殺死都指揮指揮千百戶武舉三十員, 軍民以萬計”

50) 王史驥, 『倭患考源』(北京圖書館古典珍本叢刊 10) p.360.

51) 王史驥, 『倭患考源』, p.360.

오히려 왜환이 확대되기도 했다.

임희원이 왜구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긴 하나 가정왜구 가운데 眞倭는 많아야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또한 왜변이 시작된 후에는 오히려 왜구를 따르는 從敵현상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가정 33년 8월 서해가 柘林에 이끌고 도착한 왜수의 수는 84명에 불과했으나 그 후 奸究의 鄉民이 그 당에 투신하고 해구가 계속 이르자 무리는 1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⁵²⁾ 을묘여름 왜구 160명이 해안을 올라왔지만 관군과 격돌한 이후에도 오히려 220명으로 증가했다는⁵³⁾ 것은 종적 현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간 해상전략가로서 호종헌의 막우로 활동한 鄭若曾 역시 이러한 사정에 대해 “빈해의 백성들은 ‘以海爲生’하여 고기잡이와 채집으로 생활하니 금할 수 없는 바가 있는데 왜구와 쉽게 섞인다”⁵⁴⁾고 하며 연해민들의 활동으로 왜구를 진압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연해의 폭력적 상황이 진행되자 연해대성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應天 일대의 왜구 기록을 담고 있는 『松寇紀略』에 따르면 왜구의 피해는 수로를 따라 瓜州, 楊州, 無錫, 江陰, 蘇州, 松江 등지와 절강의 영파, 소흥, 가흥, 湖州 등 처까지 확산되었다.⁵⁵⁾ 대개 왜구가 지나치는 곳은 大戶·小戶 할 것 없이 가산은 거의 다 손상되고 불타는 피해가 지속되었으므로 밀무역을 지원하는 연해 대성에 대한 원성도 적지 않았다. 가정 36년 복건순무로 보임했던 阮鶚이 八澳4姓 巨魁 何邦琪 등 200여명을 잡아들이고 각 집안의 위금화물을 찾아내 법에 따라 처리하자 “土民들이 통쾌”⁵⁶⁾하다고 칭송하기도 했다. 해상의 치안불안이 지속될수록 연해대성들의 무역의 입지는 좁아져 갔다.

왜란을 진압해야하는 지방관원들의 입장에서는 연해민 모두를 왜구로 간주할 수도 없고 왜구진압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폭력적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명조정에서는 왜란의 주체가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토벌해야한다’라는 주장과 ‘시박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⁵⁷⁾ 이러한 팽팽한 논쟁의 결과는 어느 쪽에서 왜구 진압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달려있었다.

52) 徐宗魯, 『松寇紀略』, (玄覽堂叢書續集 15冊), djvu p.111.

53) 林希元, 『上巡按二司防倭揭帖』, 『明經世文編』 권165. “乙卯夏倭寇一百六十, 自興化黃石登岸……軍民以萬計, 不能得其要領, 反增二百二十人而去.”

54) 鄭若曾, 『鄭開陽雜著』(文淵閣四庫全書 584 史部), 권1, 20a-b, p.454上.

55) 徐宗魯, 『松寇紀略』, djvu, pp.122~124.

56) 王史騏, 『倭患考源』, pp.362~363.

57) 『明世宗實錄』 권411, 嘉靖 33년 6월 庚辰, 3a-b

5. ‘禦倭’와 ‘以海爲田’

명정부는 33년 왜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總督을 설치하고 張經을 임명했다. 또한 절강순무로는 李天寵을 임명했다. 총독은 강남·강북·절강·산둥·복건·호광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직책으로 동남연해 군사 작전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張經은 해금과 조공의 원칙론을 강조하며 시박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였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접제를 차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시박의 재개를 통한 이권을 정부가 갖도록 하자는 것으로 연해민들의 사시 요구와는 다른 선상에 있었다. 당시 장경은 왜구 토벌에 신중을 기하자 徐階, 李本江 등 절강인들에게 “養寇不戰”이라는 불평을 들었다.⁵⁸⁾ 가정34년(1555) 시랑의 신분으로 연해지역의 독찰에 나선 趙文華는 영파 근처의 慈谿 출신으로 절강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장경에 대해서 “군량을 축내 백성에게 재앙이 되며 적을 두려워하여 기회를 잃는다” “왜구들이 약락을 다하고 가면 나머지 왜구들을 토벌하고 전공으로 삼는다”며 자주 비난하였다.⁵⁹⁾ 이 무렵 장경은 王江涇에서 1천 900여명을 참수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는 嚴嵩-趙文華의 지지를 받았던 호종헌의 공으로 돌아갔고, 결국 장경과 이천충은 죽임을 당했다. 이후 호종헌은 이천충을 대신해 절강순무가 되었고 다시 해방총독의 지위까지 올랐다. 호종헌은 徐海 등의 해구들을 이간질하여 각개 격파하였고,⁶⁰⁾ 호시를 미끼로 일본의 왕직을 불러들여 제거했으며 그 잔당까지 모두 소탕했다.

호종헌이 왕직을 체포한 뒤 황제의 호종헌에 대한 신임은 매우 깊어졌다. 호종헌의 대두에는 조문화의 적극적인 지지가 배경이 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투를 넘어 기존의 해금강경론이 후퇴하고 완화론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기점이기도 했다. 즉 장경, 이천룡 등이 조공과 해금 원리주의자로서 연해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기조로 한다면 호종헌은 연해민들의 무역에 대한 절실함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해상무역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에는 반대했다.

1557년 唐順之는 이임에 앞서 당시 총독이었던 호종헌과 회동하여 禦倭經畧 7事を 정하여 상주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일본에 대한 호시를 허가하고 貢期의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즉, 왜구의 목적이 무역에 있는데 공기를 10년에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며, 근본적인 해방의 방법은 무역을 허가하는데 있다고 보았다.⁶¹⁾ 그는 가정 39년

58) 『明史』 卷205, 烈傳93, 「張經傳」, p.5407.

59) 『明史』 卷205, 烈傳93, 「張經傳」, p.5407, “糜餉殃民畏賊失機 欲俟倭飽颺勦餘寇報功……如文華指且謂蘇松人怨經”

60) 鄭廣南, p.102~203.

세 시박을 회복시킬 것을 제안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기도 했다.⁶²⁾ 또한 趙文華는 왜구가 바다를 의지해서 생활하는 연해민들의 생계를 막는 해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며 연해 거민의 생업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³⁾ 이들의 주장은 연해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연해민의 생업을 풀어주고 공기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사시를 허가하자는 요구와 다름없었다.

호중헌과 당순지의 해금 완화론은 이후 복건 순무 譚綸에게도 계승되었다. 답륜은 台州府의 知府와 복건 안찰사부사 등을 역임한 자였다. 특히 戚繼光 등과 月港 24장의 난을 평정하는 등 복건 해방의 상징적 인물로서 왜구문제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금지하면 할수록 그 값이 더욱 높아져 달려가는 자는 더욱 많아지니 私通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탈이 그 뒤를 따릅니다……지금의 계획은 일본의 私通을 불허하고 기타 예컨대, 고기잡고 채집하는 것과 미곡을 무역하며 광동에서 후추 소목을 들이는 것, 장주에서 백당의 종류를 유통하는 것은 모두 (허가함) 마땅합니다.⁶⁴⁾

위의 사료에 따르면 답륜도 왜란의 원인을 해금이라고 보고 복건 연해민이 바다에 의지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그 무역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연해의 어업, 채집, 미곡 무역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동남아 일대의 후추·소목을 수입하는 연해민들의 통상까지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趙文華·胡宗憲의 요구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있음이 주목된다.

하지만 가정왜란의 원인은 연해무역과 어업행위로 말미암아 폭력적 사태로 비약된 것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즉, 연해지역의 관원들은 以海爲田과 禦倭라는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양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했다.

이에 대해 당순지는 해방의 강화 즉 해상지배의 확대를 주장하며 해도로 나가 순찰했던 국초의 제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순지가 주장한 해방론은 “總兵·副總兵이 바다 안에 항상 거하며 각 총들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海面을 나누어 정하여 남북으로 초소를 돌며, 주야로 돛을 달고 순회하여 멀리는 洋山·馬蹟의 제 섬까지 이르러야”⁶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구의 首級에 대한 보상도 들어오는 자를 막을 때 더 많이

61) 唐順之, 『條陳海防經畧事疏』, 『明經世文編』 권260.

62) 『明史』 卷81, 志57, 『食貨5·市舶』, “巡撫唐順之議復三市舶司” p.1982.

63) 『明世宗實錄』, 권442, 가정 35년 12월 癸卯, 3b.

64) 譚綸, 『譚襄敏奏議』(文淵閣四庫全書429 史部), 권2, 46b, pp.632下~633上.

보상해서 육지에 오르기 전에 바다에서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호종헌 역시 “해방을 말하려만 반드시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⁶⁶⁾는 것을 원칙으로 해방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논의는 ‘접제’의 단절을 위해 연해민의 항해활동을 제한하는 해금주의자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도서지역까지 巡哨를 강화하여 왜구를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호종헌과 당순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담륜의 오른팔로서 왜구초토에 큰 공을 세운 척계광은 복건과 광둥 등 연해 도서에 수채를 건설하고, 인근에서 수군으로 익숙한 사람들을 모아 훈련시키며, 각 수채마다 크고작은 선박 60척, 수병 2천 500명을 배치하여 水兵把總으로 하여금 절제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⁶⁷⁾ 또한 임희원은 왜구가 연안에 오르면 참담한 피해를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순안어사에게 왜구가 “바다에 있으면 선박이 작아 우리의 적이 되지 못하나 연안에 오르면 적이 우리보다 강하다”⁶⁸⁾고 하며 바다에서 방어할 것을 권하였다. 임희원의 주장은 결국 무역을 원하면서도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자했던 연해사회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연해사회의 연해와 도서에 수채를 건설하고 해도를 나누어 순초하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었다. 38년 복건의 순무로 보임했던 劉燾가 병량을 청하였으나 재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양식이 부족하고 병사는 피로하여 재능을 펼 수 없다”⁶⁹⁾고 하며 1년만에 사직한 것은 당시 명 중앙의 병향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왜구 토벌이 쉽지 않은 데서 오는 좌절감이 묻어있다. 병향의 문제는 譚綸 등이 수차례 언급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⁷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按察使副使를 지낸 후 퇴직하여 강음에 돌아와 있던 설갑은 陳宗夔를 위한 贈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섬의 오랑캐들이 도둑질하여 가옥을 태우고 관리를 살상하니 소주와 송강으로부터 복건·광둥에 이르는 빈해 수 천리가 그 근심을 입지 않은 곳이 적다……해금을 관대히 하고 시박을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무역하게 하면 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위로는 군대와 나라의 수요에 응할 수 있고 아래로는 飛輓(운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이는 일의 쉬운

65) 唐順之, 『條陳海防經畧事疏』, 『明經世文編』, 권260.

66) 『籌海圖編』, 권12上, p.763.

67) 戚繼光, 『經略廣東條陳戡定機宜疏』, 『明經世文編』, 권346. “福建設水兵把總一員, 充爲南灣東路, 廣東設把總一員, 充爲南澳西路, 仍以參將一員, 統領駐衛大城, 其參將把總必須會於閩浙習服舟師條約實心已試之人, 每寨各造大小船隻六十號, 各用水兵二千五百人”

68) 林希元, 『上巡按二司防倭揭帖』, 『明經世文編』, 권165.

69) 王史騏, 『倭患考源』, p.364.

70) 譚綸, 『譚襄敏奏議』(文淵閣四庫全書429 史部), 권2, 46b, pp.632下~633上.

것이다. 어려움을 버리고 쉬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기꺼이 하지 못하는 것은 선박(의 운행)을 막는 금령이 중하여 당사자가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한다. 왕년에 금령이 나오고 臣이 직접 해상에서 금지를 범한 선박을 혁파하니 일이 크게 엄격했으나, 금지를 범한 선박은 여전했다……(왜구가 발생하는 것은)‘珠犀貨具’의 물건은 중국이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染繒·糲粟으로 얻을 수 있다. 빈해의 백성들은 斥鹵의 땅에 의지할 수 없어 금지(海禁)를 범하니 죄에 걸리지 않으면 죽음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利源의 소재이며 막을 수 없는 것이다.’⁷¹⁾

설갑의 인식에 따르면 해금을 실시하여도 왜구가 그치지 않은 것은 연해 백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연해민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금을 관대하게 하고 시박을 통하게 하여 무역을 허가해야 했다. 설갑은 이것이 ‘군대와 나라의 수요에 응할 수 있고 아래로는 飛輓(운반)의 비용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여겼다. 즉 그의 주장은 당시 요구되는 치안비용, 즉 군량이나 성채 수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금완화와 무역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⁷²⁾

薛甲은 지역인사들과 교제하며 왜구문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인다. 왜구토벌 중에 전사한 江陰知縣 錢鎔도 그를 찾아가 왜구에 대한 방책을 묻기도 했다. 또한 그는 陳宗夔에 대해서 자신의 군읍이 비교적 안전했던 것은 陳公의 공이 크다고 언급하며 상찬했다. 陳宗夔는 적극적인 해방을 주장했던 척계광·유대유 등과 함께 왜구의 초벌에 자못 공이 많았던 자이기도 하지만, 가정 29년 주환을 擅殺의 혐의로 탄핵하기도 했었다.⁷³⁾ 즉, 설갑의 해금 완화를 수반한 시박의 재개 요구는 당시 연해사회가 지향하던 것이었으며, 왜구와 연해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연해 무장들과도 공유된 것이었다.

요컨대, 연해지역의 해금 완화의 요구는 단순히 무역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왜구 토벌의 경험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다. 수년간 왜구와의 전투가 진행되면서 ‘적을 따르는’ 연해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의 폭력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여 내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방을 건설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연해사회의 바다를 생계로 삼아 무역을 요구하는 연해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등 연해 무역에 관여한 제 계층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어왜’의 입장과 ‘이해위전’의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해상질서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1) 薛甲, 『藝文類稿』(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集部 110), 권6, 『贈陳憲副少岳序』, 15a-16b, p.137.

72) 한지선, 『明代 海禁政策 研究』, 전남대 박사논문 p. 112

73) 『明史』, 권205, 列傳 第93, 『朱純』, p.5405.

6. 結論-嘉靖倭亂이 남긴 것

月港의 開放이 가정왜란의 성과라는 것은 확실하다. 때문에 월항의 개방을 海禁의 완전 혹은 부분적 해제로서 보기도 하고, 林仁川은 명 전제통치에 타격을 주어 해금을 개방하게 되고 사회 생산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했다.⁷⁴⁾ 그러나 해금 정책에 관한 檀上寬의 논고에 따르면 월항이 개방된 이후 오히려 해금은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 갔으며 오히려 이 시기의 해금은 ‘재확인’의 수준이었다고 한다.⁷⁵⁾ 그렇다면 가정왜란을 이해하는 방법 역시 밀무역해제를 위한투쟁의 과정, 왜구에 대한 배타적 질서의 확립과정 두 가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다시 왜구 해구의 활동이 상업적인가 폭력적인가의 논란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본고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합일점을 모색하면서도 사료상 나타나는 해방건설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과 개방의 성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했다. 즉 밀무역과 가정왜란의 과정을 새로운 연해질서의 탄생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연해무역을 장악하는 존재를 연해질서를 수립해가는 주체로서 설정해보았다. 해금이 강화되자 연해사회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연해대성 즉 신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폭력과 약탈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정왜란이 전개될수록 밀무역 주도권은 경찰력을 가진 연해 관원들로 옮겨오게 되었다. 연해관원들은 ‘이해위전’의 연해사회 네트워크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밀무역의 수혜를 받았지만 지역의 치안을 유지해야할 의무도 있었다. 가정왜란이 발발하자 중앙에서는 연해지역에 대해 ‘접제’를 차단하는 형태의 강경한 해금론을 구사했다. 즉, 내지 중심의 방어를 기본으로 밀무역을 차단하는 동시에 사시가 열리는 연해 항구를 공격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강력한 해금을 기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무역과 생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오히려 왜구를 내지로 끌어들이며 피해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왜구진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왜구의 내지 진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연해의 관원들은 연해의 주요 항만에 수채를 건설하고 바다에 초선을 띄워 해도를 나누어 관리하여 적의 내항을 바다로부터 막아낼 것을 주장했다. 즉, 가정 말기 연해 관원들이 요구하는 지향점은 도서의 항만 해로를 중심으로 하는 해방건설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방론의 기조는 해금의 완화, 호시의 허용, 시박의 설치 등을 통

⁷⁴⁾ 林仁川, p.72~80.

⁷⁵⁾ 檀上寬, 『明代海禁概念の成立とその背景—遼禁下海から下海通番へ—』, 『東洋史研究』 63-3, 2004, pp.26~27.

해 연해 무역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연해민의 ‘以海爲田’을 인정함으로써 생계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데 있었다.

가정왜란은 곧 접제의 단절, 朝貢과 却貢을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했던 종래 해금정책의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연해와 도서의 해도를 중심으로 치안과 해방을 강화한 해금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즉 연해의 관원들은 ‘어왜’의 과정에서 연해와 도서지역까지 포함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명조의 해방체제를 재정립함으로써 ‘이해위전’의 연해질서를 모색해 갔던 것이다.

康熙年間(1661~1722) 北京의 外國人 宣教師가 본 滿・漢人의 日常

윤진영(이화여대)

目次

- I. 序論
- II. 日常에 나타난 滿・漢 境界의 喪失
 - 1. 空間의 性格 變化
 - 2. 消費對象(食・服食)의 共有
- III. 行動樣式의 劃一化와 滿・漢의 接點
 - 1. 社會的 關係의 認識
 - 2. 社會的 關係의 形成 및 維持
- IV. 結論

I. 序論

北京市 旅行發展委員會의 주임인 魯勇의 발언(2011. 4.)에 따르면, 지난해 北京을 방문한 外國人의 수는 약 500만 명이다. 이것은 오로지 개인적 방문만을 헤아린 것으로, 외교・경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死活을 걸고 北京에 왔던 外國人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專制君主制가 붕괴되기 이전, 힘든 여정을 거쳐 北京에 왔던 外國人들 대부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적을 이룬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宣教師이다.¹⁾

1)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김성규 옮김,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대항해 시대 중국과 유럽은 어떻게 소통했을까』, 서울 : 휴머니스트, (2009), p.50. 본고에서 언급한 外國人 宣教師는 가톨릭 선교사를 의미한다. 사실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는 1795년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은 1807년이 되어서야 중국 땅(마카오)을 밟았다. 신교도들은 宗教改革을 통해 종교상의 가르침에 관한 개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中國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반응이 늦었다. 네덜란드 칼뱅주의자들은

특히 清代 外國人 宣教師는 滿洲族皇帝의 호의와 지지에 따라 선교활동을 행하는 동시에 天文・地圖製作・通譯 등 국가중대사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이들은 淸과 清代 中國人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²⁾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 저서들은 宣教師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했던 일정 수준의 학문적 소양과 現地에서의 체험 및 관찰을 충실히 담아내었기에 수준도 평가도 높았다. 이에 따라, 이 시기 中國에 관한 外國人 宣教師의 기술은 清代史 연구에 주된 사료 또는 비교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어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淸이 단순히 漢化된 異民族王朝가 아닌 支配民族 고유의 성격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王朝라는 것을 감지하였다는 것이다.

外國人 宣教師의 기술 속에 자주 언급되는 Mantchew Tartars(滿洲族)와 Chinese(漢族)의 구분, 그리고 滿洲族과 그들의 中國 統治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위의 관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滿洲族 君主는 자신의 백성이 中國 商人과의 交易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와 명이 자신의 순종에 표한 멸시에 분노하며 遼東으로 진입하였다. 이로부터 滿洲族과 명, 양측에게 여러 차례의 승리와 패배를 안겨준 긴 전쟁이 시작되었다.”(『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3쪽.) “北京의 提督은 滿洲族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九門提督으로도 불리는 그는 手下에 있는 병사들을 포함한 管轄地域의 모든 이를 확실히 챙기는 동시에 民政도, 특히 治安을, 심혈을 기울여 돌본다. 이에 무수히 많은 漢人과 滿洲族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 강도사건도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은지 오래다.”(『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 114쪽.)

17세기와 18세기에 동아시아와 교역을 통해 개인적인 부를 얻으려고 한 반면,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노력은 적었다. 그와 반대로 신교도들로부터 자극받은 구교도들은 자신들의 정신과 관습을 개선하는 목적 하에 선교사 파견에 적극 임하였다.

2) 대표적인 저서들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보낸 서신들을 수집해서 편집한 『Lettres edifiantes et curieuses』(1711~1729); Jean Baptiste Du Halde(1674~1743)의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1735); 뒤알드가 주요 편집자로 참여한 『The Chinese traveller』(1775); Jean-Baptiste Grosier(1743-1823)의 『A General Description of China』(1788); Jean-Joseph-Marie Amiot(1718-1793)와 북경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의 문명・역사・언어・철학・문학・예술・과학・군사훈련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일람표 『Mémoires concernant l'histoire, les sciences, les arts, les moeurs, les usages, &c. des chinois: par les missionnaires de Pékin.』(1776-1814); Giovanni Foresi(?~?)가 저술한 중국황제들의 評傳 『Del mappamondo istorico tome settimo, parte prima』(1716); Joseph Jouve(1701-1758)가 Joseph-Anne-Mary de Mailla(1669~1748)의 저서에 근거해서 滿洲族의 중국 정복 역사에 관해서 저술한 『Histoire de la conquête de la Chine par les tartares manchéoux. . . Par M. Vojeur de Brunem B. & P. D. M.』(《滿族韃靼征服中國史》, 1754); Louis Le Comte(1655~1728)가 예수회 선교사이자 천문학자였던 Ferdinando Verbiest(1623-1688)의 중국에서의 활동에 관하여 저술한 『Memoirs and observations . . . made in a late journey through the empire of China』(1697); Alexandre de Rhodes(1591~1660)가 본인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각국에서의 선교활동을 회고한 저서 『Divers voyages de la Chine, et autres royaumes de l'orient』(1681)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견해는 淸을 滿洲族의 정체성이 유지된 滿洲族王朝³⁾ 보는 최근 清代史 연구의 관점과⁴⁾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歐美學界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청사연구(New Qing History) 영역에서⁵⁾ 宣教師 기술이 중요한 資料로 이용되는 것을 가끔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Joanna Waley-Cohen의 18世紀末 中國의 西洋 科學技術 이용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⁶⁾ 여기서 그녀는 外國人 宣教師의 滿洲族 皇帝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滿洲族 皇帝들의 과학기술, 특히 군사기술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읽어 내는 한편 이것과 滿洲族의 中國 統治方式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⁷⁾

3) 최근 清代史 연구자들, 즉 新淸史 연구자들은 滿洲族의 정체성이 清代에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이 淸帝國의 정책·문화·군사 활동의 성공과 실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淸을 漢化된 王朝(淸朝)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4)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한 清代史 연구들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Pamela Kyle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2002);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2001); ———, *Manchu Widows and Ethnicity in Qing China*(2011); Philippe Forêt, *Mapping Chengde: The Qing Landscape Enterprise*(2000); Jonathan S. Hay, *Shitao: Painting and Modernity in Early Qing China*(2001); Laura Hostetler, *Qing Colonial Enterprise: Ethnography and Cartography in Early Modern China*(2001); Susan Mann,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1997); James P. Millward,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1998); Evelyn S.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1998); Angela Zito, *Of Body and Brush: Grand Sacrifice as Text: Performance in Early Modern China*(1997); Edward J. M. Rhoads,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China*(2001); Patricia Berger,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2003); Peter Pe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2005), Joanna Waley-Cohen, *The Culture of War in China: Empire and Military in the Eighteenth Century*(2006) 등.

5) 유장근,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189~190. 신청사연구는 알타이학과(Altaic School) 및 내륙아시아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알타이학과는 만주지역에서부터 중국 서부, 히말라야, 이란 북부, 그리고 흑해 동북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내륙아시아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의 언어와 지리적 유사성을 통해 세계사의 새로운 양상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세계화와 러시아의 동방진출과 관련해서 내륙아시아 세계에 주목한 이들, 내륙아시아 연구자들은 그곳을 통치했던 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신청사연구자이면서 내륙아시아 연구자인 이들이 많다. 이것은 신청사연구가 부각되는 지금에 와서 알타이 지역을 중심을 놓고 청대사를 연구한 데이비드 파르쿠하르(David Farquhar)나 조셉 플레처(J. Fletcher)라든가, 일본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와다 세이(和田清), 우라 렌이치(浦廉一), 이마니시 순쥬(今西春秋), 미타무라 다이스케(三田村泰助), 미야자키 이치사다(宮琦市定) 등이 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6) Joanna Waley-Cohen, "China and Western Technology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8, No. 5, (December, 1993)

7) 이외에도 外國人 宣教師의 기술을 통해 滿洲族의 중국 통치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주시한 연구로는 Mark C. Elliott의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3, Aug., 2000)와 劉小萌의 『清代北京旗人社會』(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등이 있다.

지금은 歐美學界 외에도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滿洲族의 정체성에 주목하거나 外國人 宣教師의 기록을 통해 滿洲族의 中國 統治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 滿洲族皇帝가 그린 帝國의 靑寫眞을 고찰함으로써 滿洲族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고찰한 연구, 康熙年間に 편찬된 『大清會典』을 통해 滿洲族의 中國 支配를 분석한 연구, 언어정책으로 少數民族 支配者의 현실을 고찰한 연구, 滿洲族의 中華主義 및 civilization 수용에 대한 고찰, 乾隆初期에 시행된 京師旗人의 滿洲로의 이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의의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⁸⁾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위의 연구는 淸을 漢化된 王朝라는 틀에 끼워 맞춰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보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滿洲族의 정체성이 통치방식 또는 多民族共同體의 지배에 미친 영향을 필요이상으로 평가하거나 淸代 中國을 전반적으로 다룬 宣教師 資料로부터 滿洲族에 관계된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淸의 성격은 滿洲族 또는 漢族, 즉 하나의 民族性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滿洲族의 통치방식이 구체화된 시기인 康熙年間の 北京, 특히 日常에 관한 外國人 宣教師 자료를 통해 滿洲族이 통치한 中國社會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거주공간의 분리와 차별대우 속에서 滿洲族과 漢人은 실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어떤 社會規範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日常에 나타난 여러 현상의 분석이 산만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淸代 中國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支配民族과 彼支配民族의 공존과 갈등의 윤곽을 그려보는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는 일부 측면만 부각된 宣教師 資料의 다양성을 활용하는⁹⁾ 계기가 될 것이고 현상 설명에만 주력해 온 日常과 文化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¹⁰⁾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8) 송미령, 「康熙帝의 淸 帝國 구상과 滿洲族의 정체성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歷史學報』제196집, (2007); 이영옥, 「대청회전(大清會典) 명문화된 만주인의 중국지배」, 『史叢』제71집, (2010); _____, 「만주족의 그늘-만주 구문(manju gurun)의 언어정책, 1599-1796」, 『中國學報』제57집, (2008); 이해경, 「청인(淸人)이 만난 두 ‘보편’ 문명 -중화와 시빌라이제이션-」, 『哲學思想』제32집, (2009);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제72집, (2011)

9) 宣教師 資料를 이용한 최근 연구로는 明末부터 阿片戰爭 이전까지 福建省 福安 지역에서 基督教이 지역 종교로 정착하는 과정을 추적한 Eugenio Menegon의 『Ancestors, Virgins, and Friars: Christianity as a Local Religion in Late Imperial China』(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0)가 있다. 이 연구는 宣教師 資料를 이용해서 淸代 中國社會의 문화수용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이로부터 宣教師 資料가 작게는 淸代 中國社會의 단면을 분석하는데 크게는 淸의 성격 및 구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잠재적 요소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0) Mark C. Elliot, *Manchu Widows and Ethnicity in Qing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41, No. 1, (1999) ; Qinghuaguo, *The Chinese Domestic Architectural Heating System [Kang] : Origins, Applications, and Techniques*, Architectural History, Vol. 45, (2002) ;

여기서 주로 살펴볼 자료는 프랑스 예수회 신부 Jean Baptiste Du Halde가 편집·출판을 담당한 『The General History of China』¹¹⁾, Louis Le Comte의¹²⁾ 『Memoirs and observations . . . made in a late journey through the empire of China』, 1710년 마카오에 도착해서 1724년 廣州를 통해 귀국할 때까지 13년간 北京의 皇宮에서 생활한 이탈리아 신앙 전파를 위한 성회 修士 Matteo Ripa(1682-1721, 馬國賢)의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그리고 도미니크회 선교사 Domingo Frenández de Navarrete의 『An account of the empire of China』으로,¹³⁾ 프랑스 출신 예수회 宣教師 자료의 비중이 큰 편인데, 이것

Susan Mann, *Widows in the Kinship, Class and Community Structures of Qing Dynasty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6, No. 1, (2011) ; 宋眞榮, 『明清 通俗文化의 두 얼굴 -通俗小說과 勸善書-』, 『中國語文學志』제13집, (2003) ; 황윤하, 『清代 北京竹枝詞 研究 -市井風俗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尙基淑, 『中國 清代的 歲時風俗 考察』, 『中國小說論叢』제17집, (2003) 등. 이상의 연구를 보면, 清代 中國社會의 日常 또는 文化에 관한 연구는 차츰 진행되는 중임을 알 수 있다.

¹¹⁾ 『The General History of China』는 중국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늦은 영국 측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原著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의 내용을 충실히 번역한 英譯本으로 原著보다 유명하다. 原著는 뒤 알드가 예수회 선교사들이 예수회로 보낸 자료들을 편집한 것을 북경에서 10년간 예수회 首長으로 봉직했던 P. Contancin 신부가 1년간 수정작업을 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전4권으로 구성된 『The General History of China』에는 중국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 예수회 선교사들이 寧波에서 北京으로 갈 때 이용하는 行路, 중국인들이 中國에서 泰國로 갈 때 이용하는 陸路, 중국의 省들에 관한 지리적 기술, 중국 전제왕조들의 역사, 중국에 관한 영역별 기술, 만주와 몽고의 지리 및 역사, Jean Francois Gerbillon(1654~1707, 張誠)의 『韃靼紀行』, Jean-Baptiste Régis(1663~1738, 雷孝思)의 조선의 지리에 관한 관찰보고서, 중국인의 조선에 관한 기록, Beering 선장의 시베리아 여행, 西藏의 지리 및 역사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이 저서는 방대한 양과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기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저자 대부분이 康熙帝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프랑스 출신 예수회 宣教師들이었다는 점에서(뒤의 <부록1> 참조) 주목받았다.

¹²⁾ Louis Le Comte(1655~1728, 李明)는 프랑스 보르도 출신으로 1671년에 프랑스 예수회에 입회했다. 1687년 루이 14세의 명을 받은 르콩트는 Jean de Fontaney(1643 - 1710) 인솔의 선교단에 합류하여 중국으로 향한다. 그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1688) 천문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강희제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한다. 이에 따라, 르콩트는 중국의 정황 및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1691년 프랑스로 돌아가기까지 山西省과 陝西省 등지에서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다. 르콩트는 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이자 천문학자였던 Ferdinando Verbiest(1623-1688, 南懷仁)의 중국에서의 활동 및 중국에 관하여 기술한 『Memoirs and observations . . . made in a late journey through the empire of China』을 출간했다.

¹³⁾ 崔韶子 著, 『東西文化交流史研究 -明·清時代 西學受容』, 三英社, (1987) p.67. 1746년, 1747년, 1748년 福建巡撫 周學健의 강력한 禁教 조치에 따라 박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학건은 1746년 福寧府에서 도미니크會 소속 宣教師 Pedro Sanz(白多祿) 등의 활동으로 남녀신도 2,600여 명이 생긴 것에 대하여 정부 측의 上諭(46년 6월에 내림- 外國人 宣教師는 마카오에 보내 기일이 되면 승선 귀국시키고 신자 남녀는 不可化誨者에 한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

은 康熙帝 측근에 있던 여러 宣教師들 중에서도 프랑스 출신 예수회 宣教師의 활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康熙年間 宣教師와 그 기술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中國을 바라보는 西洋人の 觀點의 변화이다. 18世紀 後半에 이르게 되면, 西洋人は 中國을 존중하던 전과 달리 中國을 사물화해서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와 같은 觀點의 차이는 他者인 西洋人の 기술을 통해 清代 社會를 분석할 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다.

II. 日常에 나타난 滿・漢 境界의 喪失

1. 空間의 性格 變化

滿洲族 통치자는 거주공간의 분리를 통해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의 경계를 가시화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首都인 北京에 가장 잘 나타나있다. 北京을 京師로 정한 후¹⁴⁾, 滿洲族 통치자는 宮闕・殿・祭壇・廟・王府・皇族 및 官僚의 邸宅을 대거 개축하거나 개칭하였다. 하지만 明代에 형성된 內・外城의 구조만은 그대로 유지해서 滿・漢의 분리와 통제에 이용하였다. 順治 元年(1644), 皇帝는 官僚를 포함한 모든 漢族에게 外城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였다.¹⁵⁾

外國人 宣教師는 이러한 滿・漢의 분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北京의 內・外城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紙面을 할애하였다. 정사각형 형태인 北京은 2개의 구역,

던)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결국 그는 뜻대로 사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乾隆年間에 이르기까지 中國에서 -특히 中國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도미니크회 세력이 꽤 컸으며, 정보망 또한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프랑스 예수회 자료 이외의 자료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¹⁴⁾ 吳建雍・高村雅彦 譯, 『清朝前期の北京における都市の空間構造』, 『東アジアの傳統都市』, 山川出版社, (2001) p.46. 1664년 淸은 元・明 이전 두 王朝의 예를 따라 北京을 首都로 정하였다. 웅대한 都城 설계사상은 일반적으로 『周禮・考工記』의 ‘고대 國都 조영에 관한 사상적 설계에서 시작해서 실제 지리적 특징에 이어지도록 창의적으로 체현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급속화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北京은 옛 원칙과 다른 공간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구조가 기본적인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한편 北京이 首都로 지정되었을 때, 淸太祖 努爾哈赤・淸太宗 皇太極 때의 도읍인 興京과 盛京은 舊都과 留都가 되었다. 明朝의 南京은 江寧府로 개칭하였다.

¹⁵⁾ 劉小萌 著, 『清代北京八旗社會』,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p.25. 入關 당시, 대부분의 八旗(王公 및 官兵을 포함해서)가 北京으로 이주하였다. 이때 滿洲族 통치자는 북경 근처 500리 내에, 즉 동쪽으로 山海關, 서쪽으로 太行山, 남쪽으로 何間, 북쪽으로 萬里長城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圈地를 시행하였다. 圈點당한 토지는 총 16만 6천 여 頃에 이르렀는데, “旗地”라고 불렸다. 康熙 8년(1669)에는 일반인의 토지 圈點이 금지되었는데, 이것은 거주 공간 분리를 통한 滿・漢 분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였다.

즉 內城과 外城으로 분리되어있는데, 이 중 內城은 淸이 들어설 때 새롭게 改·補修된 공간으로 滿洲族만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언급했듯이, 順治 元年(1644) 10월, 順治帝는 即位詔書에 ‘都城의 병사와 백성은 나눠서 거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漢人은 東·中·西 3개의 시가지로 이전하였다. 順治 5년(1648), 淸 朝廷은 滿·漢, 두 民族이 함께 살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八旗에 투항한 漢人 제외한) 漢人 官僚와 商人에게 南城(外城)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滿·漢의 공간상 분리는 居住民의 위상 역시 분리시켰다.¹⁶⁾ 이것은 新舊로 대비되는 환경의 차이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內城은 新城 또는 滿城(The Tartar City)이란 명칭으로 불렸으며, 滿洲族皇帝의 거주지인 皇宮 역시 이 內城 안에 있다. 반면 老城 또는 舊漢城으로 불리는 外城에는 漢族이 살았다. “... (北京의) 두 번째 구역인 老城은 舊漢城으로도 불린다. 이는 다른 도시로 추방당한 漢族 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했었기 때문이다. ... 新都市(內城) 내에 있는 住宅, 新都市 인근의 都市 및 土地 모두가 세금 영구면제와 함께 滿洲族에게 분배되었기에 漢族은 빈 공간, 즉 舊도시에 살 수밖에 없었다.”¹⁷⁾ 위와 같은 정책의 시행에 따라, 內城에 살던 漢族은 外城으로 이주하기 전에 旗人에게 평균 銀4兩 정도의 손해를 보고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거주 공간(內·外城)의 분리에 이어 통행 또한 제한되었다. 漢族은 오로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만 內城에 출입할 수 있었으며, 밤에 內城에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밤에 內城에서 발견된 漢族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¹⁸⁾ 거주공간의 분리, 거주환경의 차이, 그리고 제한된 통행, 모두 集團(民族)의 차별과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실은 滿洲族 통치자가 少數 支配民族·多數 被支配民族이란 구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것이 淸代 空間의 성격에서 集團性의 강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의 통제를 통해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의 數的 불균형과 이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本 王朝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공간인 官廳과 官舍에 대한 통제로 이

16) 吳建雍·高村雅彦 譯, 『淸朝前期の北京における都市の空間構造』, 『東アジアの傳統都市』, 山川出版社, (2001) p.46.

17)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 p.112. 르꽁트 역시 滿洲族이 북경의 중심부로부터 漢族을 밀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ETTER III To his highness the Cardinal of FURSTEMBERG. ‘Of the Cities, Houses, and Chief Buildings of China’, 『Memoirs and observations . . . through the empire of China』, pp.55~56. “정사각형 형태의 北京은 이전에는 둘레가 4League이었다. 그러나 北京에 정착한 滿洲族이 漢族을 성벽 밖으로 밀어내면서 漢族은 넓이보다 길이가 긴 형태의, 즉 불규칙한 모양의 옛 마을들을 토대로 하는 마을을 새로이 세워야 했다. 北京은 이런 식으로 두 도시로 나뉘었다. 하나는 滿城(Tartar's)으로 불렸으며, 滿洲族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었다. 또 다른 하나는 漢城(The Chinese)으로 불렸으며, 滿城보다 인구가 많았다. 두 도시 모두 둘레가 최대 6League(1League = 3,600보)로, 皇帝의 特命에 따라 측정되었다. ...”

18) 張清常 著, 『北京街巷名稱史話』,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4) p.226.

어졌다. 다음은 순환근무와 官舍 제공에 대한 설명이다.

官廳에 들어가면,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또는 제출할 청원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크고 개방된 공간이 나온다. 이 장소 옆에는 관청의 관리가 공부하는 방들이 있다. 관료가 행정업무를 보는 곳은 이 공간 뒤에 있는 또 다른 中庭 끝에 있다. 관료가 업무를 보는 殿 근처엔 방문객들이 대기하는 殿이 두 개 더 있다. 산뜻하게 정리된 이 殿들 안에는 각종 가구가, 특히 의자가, 많이 있다. 官廳은 보통 이러한 구조로 되어있다.

官廳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 외에) 北京에 六部가 있는 것처럼 여섯 品等으로 구분된 하급 관리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서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 이들은 보통 자신의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로, 그들의 생활 역시 그 지역 상식에 따른다. 그러나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는 다르다. 황제는 이들을 쉽게 이동시키지 않지만, 이들은 늘 파직 당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¹⁹⁾

여기서 滿洲族은 本 王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官廳을 실용적이고 단출한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또한 중요 관리자인 官吏가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 통치자에 헌신하도록 순환근무를 권장하고 官舍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官吏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공간인 官廳 또는 官舍에 대한 애착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官舍에 대한 무관심은 실내장식의 빈약함으로 이어진다. 宣教師들이 보았을 때, 官吏는 집의 내부를 장식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 “그들의 집에는 벽걸이 장식도 거울도 없다. 그 어떤 허례허식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官僚의 대저택은 사실 皇帝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저택은 업무에서의 실수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발령으로 인해 회수되는, (皇帝로부터) 일시적으로 위탁받은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官僚는 집을 호화롭게 치장하는데 많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²⁰⁾ 서술하였는데, 이로부터 官僚의 검소함이 국가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려하게 장식된 自宅과 대비된다. 宣教師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여자와 아이들만이 거주하는 內殿을 들고 있다.²¹⁾ 이와 같은 공간의 집단에 의한, 사회계급에 의한 구분과 통제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함에

19)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147.

20) 上同, p.149.

21) 上同, p.148. “... 이 殿은 이전에 본 殿들보다 훨씬 멋지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 남자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여자와 아이들을 외부와 분리시키기 위해 이 殿의 대문은 항상 닫아둔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깨끗하고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당신은 이곳에서 정원, 나무, 호수, 그리고 눈을 매료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바위와 미로와 같이 생긴 구불구불한 산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작은 공원을 만들어 수사슴과 암사슴을 키우는가 하면, 연못을 조성해서 물고기와 물새를 기르기도 한다. ...”

따라 개인적 富의 축적이 발생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갔다.

漢人의 거주공간인 外城의 상업중심지로의 발전이 그 계기가 되었다. 北京 外城이 중국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변화한 상점 거리가 內城과 外城 사이의 宣武門, 正陽門, 崇文門 부근에 형성되고, 帝國 전역에서 모여든 商人들을 수용하기 위한 會館이 번창하였다.²²⁾ 이러한 北京 外城의 商業地區化는²³⁾ 인구밀도 상승과 위생 악화를²⁴⁾ 초래하였지만, 일부 漢人에게 富의 축적을 가능케 하였다. 즉, 清代 社會에서 출신성분에 의한 富의 완전독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²⁵⁾ 따라서 경제력 및 그에 따른 훌륭한 거주공간의 소유는 집단의 범주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淸은 富의 축적에 성공한 個人이든 신분 높은 이이든 그들 모두가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있는) 통치자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집에 과한 소비를 금하는 엄격한 규제를 하였다.²⁶⁾ 이러한 규제의 평등한 적용은 個人的 경제력 확대 가능성과 함께 집에 集團의 측면보다 個人的 측면이 커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음에서 外國人 宣教師는 清代 中國人의 집에 관한 설명을 통해 당시 中國人의 집에 무엇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外國人 宣教師는 중국인이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그들의 집도 대체로 단순한 구조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건축자재에도 반영되어서 山東省과 江南省에서 채

22) 이블린 S. 로스키/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를 청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p.50. ; 劉小萌著, 『清代北京旗人社會』, 北京 :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p.256. 1744년에는 이곳에 600개 또는 700개의 상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漢人의 城인 外城은 旗人들을 위한 오락의 중심이기도 했다. 外城을 內城과 연결하는 북쪽의 작은 문들인 二柵을 제외하고, 인기 있는 유흥구역은 外城에 있었다. 흥등가는 外城에 있었는데, 前門과 和平門 사이에 있던 珠市口(진주 시장) 북쪽의 거리에 발달하였다.

23)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 p.114. “... 부자와 상인들이 계속해서 북경으로 밀려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보고 또는 말을 타고 다녔다. 이에 따라 거리에서 말과 가마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4) Louis Le Comte, 『Memoirs and observations . . . made in a late journey through the empire of China』, London : B. Tooke & S. Buckley, (1697), 『LETTER III To his highness the Cardinal of FURSTEMBERG. ‘Of the Cities, Houses, and Chief Buildings of China’』, 『Memoirs and observations . . . through the empire of China』, p.59.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Le Comte는 북경의 열악한 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북경에 사는 이들은 진흙 또는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진흙과 먼지는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골치 아프게 한다. 진창은 그들의 비단장화를 더럽히고, 먼지는 그들의 옷에 달라붙는다. 이러한 까닭에 말과 가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환경은 벽장 속에 옷을 던져 넣게 만든다. 먼지와 진흙에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벽장 안은 먼지를 피해 숨겨 놓은 물건들로 넘쳐난다. 중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거리에 물을 살포해서 먼지를 가라앉히려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먼지가 남아 위생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

25) 오히려 滿洲族은 특권이란 명분하에 안정적이지만 제한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따라 비약적인 경제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26)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146.

취한 많은 양의 대리석이 오직 운하·교량·개선문·기념비·포장도로·성문의 문턱·탑의 토대의 건설에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의 건축과정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素朴美가 느껴지는 단순한 구조의 집 외에도 보는 이를 압도시키는 호화로운 집 등 다양한 수준의 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과 지붕부터 설치한다. 그들은 따로 토대를 세우지 않으며, 집 대부분에 목재를 사용한다. 어떤 공간에는 목재만이 사용되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벽은 일반적으로 벽돌 또는 점토로 세워진다. 상품을 쌓아두기 위한 樓를 추가한 상인의 집 외에 중국의 집은 보통 1층으로 되어있다. 또한 대개의 집은 흙통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두꺼운 기와로 덮여있다. 중국인들은 기와의 불룩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놓은 다음, 두 개의 기와가 만나는 곳에 새로운 기와를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놓는다. ... 돈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용하는 회반죽 외에도 석회를 사용해서 기와를 연결한다.

... 서민들은 앞면을 제외한 다른 벽들에 굵지 않은 벽돌을 이용한다. 일부 서민들은 담금질한 흙만으로 집을 짓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의 집에는 석회석과 흙으로 만들어진 율타리 외에는 벽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나 신분 높은 사람들은 모든 벽에 인위적으로 깎은 광이 나는 벽돌을 사용한다. ... 시골마을의, 특히 일부 省의, 집들은 돈이 없는 관계로 흙으로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집의 지붕은 거의 평평해 보일 정도로 완만하게 만들어졌다. 지붕은 판벽널(창틀)과 장선(들보)을 연결하는 작은 갈대에 의해 지탱되며, 흙이 섞인 갈대로 되어있다. 어떤 省에서는 지붕에 신탄재(숯이나 땔나무로 쓰이는 나무) 대신에 숯, 갈대, 짚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서민들은 작은 굴뚝과 화로를 함께 이용하거나 굴뚝 없이 화로를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 부엌에 석탄을 때우면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²⁷⁾

위의 기술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인은 창고가 필요한 商人 외에 1층짜리 집에 살았다고 한다. 기둥과 지붕을 기본구조로 하는 단층집의 건축을 쉽고 千篇一律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은, 특히 기와를 이을 때, 복잡하였으며, 건축주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사용되는 자재도 여러 가지였다. 부유한 이들은 石灰와 같은 고급재료를 써서 집의 내구성을 높였지만, 시골에 사는 이들 또는 가난한 이들은 최소한의 자재로 집의 형태만을 갖춘 채 생활을 영위하였다. 집의 차이는 기본설비인 火爐에²⁸⁾ 대한 언급에

27) 上同, pp.144~146.

28) Ripa,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New York : Wiley & Putnam, 161 Broadway, (1846) p.62. 지역 경제의 발달정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모습도 제각각이었다. 리파의 설명에 따르면, 조악한 설비와 연료 부족으로 인해 난방에 곤란을 겪고 있던 일부 지역민들과 달리 북경인들은 뛰어난 난로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근처에서 나는 석탄양이 풍부해서 연료공급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 북경인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예는 炕(온돌) 문화도 한 몫하였다. 炕은 신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의 집이 대체로 단순한 구조일지라도 크기와 外觀, 耐久性和 便宜 등의 측면에서 다양했으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경제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정한 소득을 약속받은 滿洲族의 집은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宣教師들은 “貴族 또는 부유한 이의 집에 宮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용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집은 일반적인 집보다 높게 지어졌다. 그리고 균형 잡힌 지붕에는 여러 가지 장식의 달려있다. … 누구나 권세 높은 官吏 또는 皇子가 거주하는 곳이 광대하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²⁹⁾ 언급하였는데, 이로부터 출신성분에 따른 富의 차이가 경제력 소유에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실제로 康熙年間 北京 상위계층의 집에는 보통 4~5개의 中庭이 있으며, 각 中庭마다 수많은 방이 딸려 있다고 한다.³¹⁾ 또한 그들 집에는 皇宮처럼 세 개의 입구가 있고, 그 중 가장 큰 가운데 입구로는 신분 높은 이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로부터 신분 높은 이들의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滿洲族의 富와 漢族의 富에 自生力이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권에 의해 경제적 자생력이 거세된 滿洲族은 富를 축적하는 또는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 漢族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공간에 個人性이 강조되면서 漢族이 滿洲族의 공간을 침범하는 계기, 즉 集團(民族)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리가 무색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³²⁾

발을 신고 생활하는 滿洲族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Qinghuaguo, *The Chinese Domestic Architectural Heating System [Kang] : Origins, Applications, and Techniques*, Architectural History, Vol. 45, (2002), p.34.)

29)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146.

30) 馮爾康·常建華 著, 『清人社會生活』, 沈陽出版社, (2001) p.16. 간혹 물려받은 富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財産을 불린 “百萬長者”라고 불리는 王侯도 있었다.

31) 허윤실·김 명·최경란, 『한국과 중국의 전통 주거 내 창호에 관한 비교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제11집, (2010) p.555. 明·清代 사합원은 대부분 中庭을 중심에 두고 각 건물을 회랑과 주랑으로 연결하였다고 한다.

32)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 제72집, (2011) pp.271~272. 乾隆年間에 이르러, 旗人의 생계는 국가재정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졌다. 淸은 초기부터 旗人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의 투입과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군비는 국가 총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 약 60%는 녹영에, 40%는 八旗에 투입되었다. 녹영군의 수가 팔기병 수의 세배였음을 고려하면 청 전체 인구의 겨우 2%에 불과한 旗人에게 실질적으로 연간 국가수입의 20~25%를 지출한 것이다. 淸은 八旗의 유지와 旗人의 복지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지만, 旗人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어갔고, 18세기 중기부터는 지방과 조정에서 기인의 생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인은 기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토지를 편법을 통해 한인에게 저당 잡혔고, 결국 상실하였다. 이것은 공간이 통치자가 부여한 집단성을 상실하고 개인성을 가지기 시작한 위의 상황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日常 속에서 특히 공간의 최소 단위인 집에서

2. 消費對象(食·服食)의 共有

清代 공간의 중점은 集團(고정적인 것)에서 個人(유동적인 것)으로 옮겨갔고, 이러한 변화는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을 물리적·정신적으로 단절시키고 차별하고자 한 滿洲族 통치자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外國人 宣教師가 日常에서 발견한 허물어진 滿·漢 경계의 일부일 뿐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그럼, 滿·漢 경계의 상실은 日常의 어떤 부분에서 광범위하고 급진적으로 나타났을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生活必需品인 飲食과 衣服에서다. 먼저 清代 食文化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P. Bouvet(1656-1730, 白晋)가³³⁾ 滿洲族 總督으로부터 받은 접대에 관한 기술이다.³⁴⁾

總督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서 나를 맞이하였다. 그는 主賓인 내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일상적인 인사를 주고받은 후, 나머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차를 접대 받았다.

손님들이 모두 모이자, 초대한 손님의 수에 맞춰 서로 마주보게 두 줄로 정렬한 식탁들이 준비된 殿으로 자리를 옮겼다. ... 총독은 내게 말을 건네는 동시에, (두 손으로 공손히) 술(wine)이 가득 찬 은잔과 포크 대신 사용하는 작은 상아빛 젓가락 한 쌍을 나의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총독은 모든 손님들에게 이 같은 대우를 하였다. 손님들 역시 총독에게 나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 ...

... 손님들은 그들의 탁자가 두 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³⁵⁾ 즉 사이드테이블(결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³³⁾ 부베 신부는 프랑스 망(Mans)에서 망의 지방법원 자문위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1673년 프랑스 예수회에 입회한 그는 뛰어난 수학적·학자적 재능에 의해 중국으로 파견되는 첫 번째 프랑스 예수회원 그룹의 일원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이 그룹은 1688년에 中國에 도착한 후 바로 北京으로 갔다. 새로 도착한 다섯 선교사(Bouvet, Gerbillon, Le Comte, Tachard, Visdelou) 중 다른 동료 신부들은 지방으로 보내졌지만, 부베와 제르빌롱은 北京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다. 1693년부터 1699년까지 부베는 잠시 유럽에 돌아가 있었다. 이 시기와 1706년 中國 典禮 문제에 대한 淸帝國의 특사로 廣東으로 간 여행을 포함해서 皇帝의 신하로 여기저기 짧게 여행 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부베는 37년간 帝國의 궁정에서 일하며 北京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처럼 皇帝와의 친밀한 관계에 따라 그는 中國 地方 都市에 살던 예수회원과 다른 시각, 즉 滿洲族 지배자의 관점으로 中國을 볼 수 있었다.

³⁴⁾ 外國人 宣教師 대부분이 장기체류에 따라 중국 음식 및 食文化에 대해 해박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사절단은 식자재를 공급받는 이외에는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중국 음식을 제한적으로밖에 접해 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外國人 宣教師의 清代 食文化에 관한 관찰은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³⁵⁾ 중국인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보통 고기류와 間食이 차려진 두 개의 상을 대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통관 文鳳先이 며느리를 맞을 때, 세 명의 조선 使臣에게 보낸 상차림이다. “한 상은 여러 가지 어육이고, 또 한 상은 여러 가지 당병과 과자였는데, 수록 진미를 모두 갖추었고 지극히 정결하였다. 그 가운데는 오색 물을 들인 것도 있고, 잡탕류가 가장 많았다. ...”(『稼齋燕行

이 덧붙여 있었다. 각각의 보조탁자에는 고기와 과일로 이뤄진 피라미드가 16개나 있었다. 이 음식더미는 약 1피트 반 정도였으며, 그림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것은 장식용으로 일행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 음식더미는 곧 치워졌다. 이 음식 피라미드는 연회 끝 무렵에 손님의 하인·가마꾼·희극인과 같이 연회에 참석한 다른 이들에게 분배된다고 한다. 다른 탁자에는 재를 짓는 작은 도구들과 함께 작은 향로·향 한 박스·향기로운 물 그릇·마노로 만든 관 또는 빨을 얹은 작은 대가 놓여있었다. ... 이외에도 탁자의 한 구석에는 식욕을 돋우기 위한 향료 및 절인 야채로 가득한 작은 자기 접시 3개가 놓여있었다.

... 연회의 서막은 소량의 술(wine)이 따라진 작은 잔 2개와 함께 시작하였다. 의례의 주관자는 (연회의 주최자인) 총독을 위해 마실 것을 (손님인) 우리에게 청했다. 중국인들은 殿의 중앙에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근엄하게 “나리, 마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외쳤다. 그 후 그들은 잔을 비웠다. 그들은 두 번째로 “청컨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십시오.”라고 외쳤다. 이 행위는 연회 내내 반복되었다. 술을 마실 때도 탁자 위로 새 음식접시가 날라져올 때도, 새 요리가 날라져올 때마다, 연회의 주관자들은 무릎을 꿇고 작은 젓가락을 들어 새 요리를 맛보길 청했다. 잘게 썰어진 고기 스튜와 다양한 종류의 식용 식물 및 콩으로 만들어진 탕으로 구성된 주요 요리들은 고깃국과 함께 내어졌다. 고깃국은 넓고 깊은 자기그릇에 담겨있었다.

중국인은 손님의 식탁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치수의 자기접시들을 많이 쌓아놓는다. 하인들은 요리와 함께 그 접시들을 내어왔다. 주방 소속 하인들은 요리를 옷칠된 쟁반 위에 올려놓고 차례대로 날랐다. 마지막으로 날라진 네 번째 접시는 앞서의 요리와 좀 다른 것으로, 특별한 종류의 탕과 과일을 얹은 과자(pie)가 담겨있다. 마침내 모든 것은 찻그릇으로 마무리되었다.³⁶⁾

부배는 접대 순서와 음식을 자세히 묘사하였다.³⁷⁾ 茶로 시작한 식사는 後食을 포함한 네 개의 요리를 거친 후, 茶로 마무리되었다³⁸⁾. 이때 滿洲族 總督은 主料理로 고기 스튜

錄』, 1712년 1월 14일)

³⁶⁾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p.196~199.

³⁷⁾ 부배가 참석한 滿洲族 總督이 주관한 宴會는 淸皇室의 공식적인 宴會와 성격이 달랐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淸皇室에서는 滿洲宴會와 漢人宴會를 구분했다. 전자는 다시 비용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었으며,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滿洲宴會는 이미 죽은 황제의 조상을 위해서 차리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제공되는 최고 등급의 滿洲宴會는 (식탁 하나에 은 4.43냥의 비용이 드는) 4등급 연회로, 새해 첫날, 皇帝의 생일과 혼례 그리고 동지에 제공되었다. 조선의 사절, 蒙古 출신의 부마,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 등은 5등급의 滿洲宴會로 대접받았고, 다른 조공 사절은 6등급의 연회(식탁 하나에 은 2.26냥)로 대접받았다. (이블린 S. 로스키/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황실의 사회사』, (2010) p.77.) 이처럼 淸皇室의 연회는 滿洲族을 중심으로 하는데, 부배가 참석한 연회는 漢人의 식습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이 연회가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의 연회를 통해 滿洲族이 일반적으로 漢人의 음식과 식사예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관찰해 볼 수 있다.

³⁸⁾ 茶가 중국의 식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손님을 접

· 다양한 채소와 콩으로 만들어진 湯 · 고깃국을, 後食으로 湯과 과일이 들어간 파이 형태의 과자를 대접하였다. 부배가 소개한 요리들은 주요 식자재인 고기와 야채가 고루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湯 종류이다³⁹⁾. 또한 總督은 그림과 꽃으로 장식한 요리, 술, 그리고 香爐를 제공했는데, 이로부터 清代 食文化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들 중 하나인 식사 접대에, 특히 宴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요리의 맛뿐만 아니라 외양을 중시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식사 과정은 부배가 難色을 표할 정도로 엄숙하였다.⁴⁰⁾ 그러나 식사 과정에서 행해진 까다로운 儀禮는 사실 漢人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구속을 싫어하는 滿洲族은 평상시에 이러한 儀禮를 생략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民族의 기질에 따라 식사 관습이 달랐듯이, 음식의 종류에도, 특히 기호식품, 民族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宣教師들은 “滿洲族 요리사들에게는 입맛을 맞추는 기술이 있다. 그들은 최상의 湯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최고로 평가되는 식용 돼지의 비계 · 돼지 · 닭 · 오리 등을 우려낸 국물을 이용한다. 작은 고기조각 조차 이 고기국물에 넣고 끓여낸다.”라고⁴¹⁾ 소개하면서, 滿洲族 요리사의 양념 조제 기술을 극찬하였다.⁴²⁾ 음료의⁴³⁾ 취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康熙帝가 즐겨 마신 肇慶(Chao King)의 술은 건강에 좋다고 소문났으나, 양고기에서 추출한 증류주인 이 술은 두통을 유발시킬 만큼 강했으며, 滿洲族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애용되었다고 한다. 건디기 힘들만큼 강한 냄새로 유

대할 때는 반드시 차를 내온다. 차를 대접하는 방법은 술을 대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당 한 하나씩이며 마시는 대로 따른다. 그런데 차는 반드시 뜨거워야 하므로 찻잔에서 조금만 식어도 도로 항아리에 붓는다. 차는 천천히 마시는데, 한 잔을 마시는데 거의 한 담배참이 걸린다. 차는 손님을 대접할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마신다.”(『稼齋燕行錄』 산천 풍속 초록)

³⁹⁾ 중국인이 湯을 즐겨 먹었다는 것은 『稼齋燕行錄』 산천 풍속 초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잣집에서 잘 차린다고 해도 기껏해야 돼지볶음과 잡탕(熱鍋湯, 면양고기 · 돼지고기 · 쇠고기 · 달걀 등을 합쳐 끓인 잡탕) 정도다.”

⁴⁰⁾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200. “나는 매우 골치아파보이는 격식을 여러 차례 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 나는 이러한 연회에 여러 번 초대되었지만, 내게 영광스런 자리를 만들어 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였다. …”

⁴¹⁾ 上同, p.200.

⁴²⁾ 이블린 S. 로스키/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p.75. 滿洲族은 자신들의 요리사를 두었으며, 順治 · 康熙 · 雍正 年間에는 滿洲의 풍미가 궁중의 식탁을 지배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北京에서 淸 朝廷에 대한 봉사를 통해 선교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던 宣教師들은 적지 않은 기회에 滿洲族의 음식을 접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⁴³⁾ 김혈조, 「연행 과정의 食生活」, 『韓國實學研究』 제20집, (2010) pp.121~122. 다수의 연행록에 따르면, 중국의 차 및 술의 종류는 방대하다. 일반적인 차 이외에 작설차, 생강, 橘餅, 국화차, 楊梅茶, 紫陽茶, 黃封酒 등이 있었다. 이들은 종류에 따라 뜨겁게 혹은 청량음료로 만들어 마셨다. 酒類의 종류 또한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술 이름만 해도 白燒露, 臨安酒, 薊州酒, 佛手露, 史蒯公, 黃封酒, 椰子酒, 壯元紅 등이 있으며, 기타 연행록에는 이외에 老酒, 黃酒, 司空酒, 葡萄酒, 五加皮酒 등의 이름이 보인다.

명한 山西省의 汾酒 역시 주로 滿洲族에게 애용되었다⁴⁴⁾. 즉, 음식에 민족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음식을 윤곽을 잡아주는 소스 및 술과 같은 기호식품에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滿洲族 總督이 漢人의 관습에 따라 접대를 행했듯이⁴⁵⁾,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의 食文化의 경계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모호해졌다. 이것은 특히 北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北京이 帝國 전역으로부터 각종 식자재가 몰려드는 곳이었으며, 滿洲族의 전통 식자재와 음식이 사라져갔다는 것도 여기에 원인을 제공을 하였다.⁴⁶⁾ 즉, 北京에 사는 滿洲族과 漢族은 같은 환경 안에서 공통된 식자재를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환경이 본래 거주지가 北京이었던 漢族보다 이주해 온 滿洲族에게 더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自民族의 관습과 문화에 자부심을 불어넣기를 위한 滿洲族 통치자의 심기를 거슬리는 일이었다.

服飾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可視化와 그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인 服飾에는 個人 또는 集團을 선동하는 경향이 컸고, 때문에 滿洲族 통치자는 自民族의 정체성에 위협적인 服飾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外國人 宣教師의 묘사에 의하면, 北京人들은 여름에는 땀에 잘 들러붙지 않는 실크로 만들어진 衣服을 입었고, 겨울에는 새틴⁴⁷⁾·검은 담비가죽·여우가죽으로 깃을 댄 상의를 입었다.⁴⁸⁾ 그리고 깃을 다는 외에도 상의 안감에 양가죽을 덧댄으로써 防寒을 하였다. 이때 上流層 사람들은 양가죽 대신 滿洲(Tartary)에서 수입한 검은 담비가죽 또는 검은 담비가죽으로 가두리를 친 질 좋은 여우 가죽을 사용하였

44)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202.

45) 사실 旗人만 漢人의 식사예절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清代 中國에는 음식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예절이 있었지만, 특히 祖上 숭배와 관련한 식사예절이 엄격했다. 祖上에 제사 지낼 때 신선한 음식을 올린다는지, 皇帝가 하사한 음식을 祖上에게 제사지낸 후 먹는다는지 하는 예절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음식으로 조상을 기리는 예절은 淸皇室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던 것이었다. (馬爾康·常建華 著, 『淸人社會生活』, 沈陽出版社, (2001) pp.185~186.)

46) 劉小萌 著, 『清代北京旗人社會』,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p.640~641.

47) 광택이 나고 보드라운 견직물의 일종.

48) 이탈리아 신앙 전파를 위한 성회 修士 Matteo Ripa(1682-1721, 馬國賢)는 북경인의 여름 및 겨울 의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북경의 계절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이다. 이에 중국의 상류층은 사시사철 의복에 변화를 준다. 여름이면 먼 셔츠·가벼운 馬褂(the Ko-poo)·리넨 조끼·袍子(旗袍, ppow-zoo)라고 불리는 리넨 가운·길이가 짧은 외투를 입고 겨울이면 안감을 댄 袍子와 솜을 덧댄 외투를 입는다. 대부분의 겨울 의복에는 솜이 덧댄 후, 어민(북방 족제비의 흰색 겨울털)·흑담비모피털·여우 털을 붙인다. 더욱 추운 날씨에는 여우 가죽으로 안감을 댄 袍子와 외투를 입는 외에도 양가죽으로 속조끼를 입고, 그 위에 솜을 넣은 헐렁한 가운을 입는다. 눈이 올 때면, 물개가죽으로 된 긴 망토를 덮어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춥다고 한다.”(Ripa,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Chapter IX)

고, 가난한 이들은 비단과 면을 사용하였다고 한다.⁴⁹⁾ 이 외에도 겨울상의에는 검은 담비 가죽·여우가죽·양가죽 등 다양한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죽을 즐겨 착용하던 滿洲族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中國에서 滿洲族의 服飾이 常用되기까지는 滿洲族 통치자의 영향이 컸다. 1636년 이후 服飾에 관한 규정을 만든 홍타이지는 漢人의 服飾, 言語, 生活樣式의 채택했기 때문에 遼, 金, 元이 쇠퇴했다고 보고 수시로 八旗 王公과 滿洲族 관료에게 滿洲族의 中國 정복이 말 타기와 활쏘기에 기초했음을 훈계하면서 滿洲族의 생활양식에 적합하지 않은 明의 소매가 넓고 통이 큰 겉옷을 비난하였다.⁵⁰⁾ 즉, 淸은 服飾에 반영된 民族色을 강조함으로써 滿洲族의 정체성을 自他에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服飾의 규제는 支配民族 정체성 지키기뿐만 아니라 上下垂直的 社會秩序의 유지에도 이용되었다. 이것은 皇帝와 官僚의 衣服에 지정된 색상에서 잘 드러난다. “皇帝와 皇族은 黃色을 사용한다. 관료들은 黑色·藍色·紫色 의복을 즐겨 입는다. 일부 관리들은 의식이 있는 날, 赤色 새틴으로 된 의복을 착용한다. 서민들은 대체로 藍色 또는 黑色 면으로 된 옷을 입는다.”

한편 淸은 服飾을 자기인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서 더 나아가 彼支配民族의 服飾에 滿洲族의 특징을 더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 및 그들의 순종을 확인받고자 하였다. 辮髮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滿洲風 머리모양인 辮髮의 강요에는 民族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여지가 많았고, 실제로 이것은 滿洲族의 中國 統治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였다.⁵¹⁾ 결국 淸은 服飾을 통해 彼支配民族의 정서를 통제하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彼支配民族의 服飾에 감응하여 자신들의 服飾을 바뀌나갔다. 이것은 滿洲族 女性의 服飾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미니크회 선교사 Domingo Frenández de Navarrete은 滿洲族 女性을 다음과 같이 설

49) 봄과 같은 환절기에는 어민(Ermine, 북방족제비의 흰색 겨울털)을 안감으로 덧댄다.

50) 이블린 S. 로스키/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p.67. 滿洲族에 귀순한 명나라 사람 천밍샤는 淸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明의 服飾制度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한 탓에 1654년 탄핵을 받아 처형되었다.

51)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142.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머리에 많은 기름을 발라왔다. 그러나 滿洲族의 정복 후, 머리를 滿洲風(after the Tartarian fashion)으로 밀어야 했다. 이 머리모양을 받아들이 수 없었던, 즉 정복자들에게 복종할 수 없었던 몇몇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다. 중국의 새 주인은 국민의 다른 관습은 그대로 두어도 머리모양만큼은 그들과 같이 바꾸길 원했다. 이제 중국인들은 원하는 만큼 기름을 수 있는 머리 뒷부분과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머리를 밀고 다닌다.” 『湛軒燕記』(1766년 2월 4일)에도 辮髮이 滿洲族 고유의 풍습으로 중국인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辮髮이 滿洲族의 中國 통치에 있어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淸은 몽골, 티베트, 위구르 또는 중국 동남부 소수민족에게는 변발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滿洲族에게 漢族은 服飾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上下를 분명히 인식시켜야만 하는 위협적인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하고 있다. “滿洲族 女性은 목이 긴 장화를 신고, 말을 탈 때 남자들처럼 가랑이를 벌리고 타는데, 이에 발이나 말 탈 때 자세가 눈에 띈다. 그들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으로 매우 수수하다. 소매는 다소 넓고 손을 덮으며, 옷자락은 땅에 끌린다. 머리모양 또한 어떤 머리장식도 없이 쪽을 진 것으로 단순하다. 우리 유럽 여성들이 모자를 쓰는 것처럼 모자를 쓸 때조차 수수하다.”고 하였다.⁵²⁾ 여기서 滿洲族 女性의 服飾이 대외활동에 염두에 둔 기능성에 치중해있으며,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덕중의 滿洲族 女性의 服飾에 대한 評도 이와 비슷하다.⁵³⁾ “길에서 胡女 한 명을 만났다. 모두 검은 長衣를 걸쳐서 발꿈치에 치렁치렁하였다. 아랫도리에는 검은 바지를 입어서 남자 바지 같았으며, 당혜를 신었고 버선은 푸른 베로 만든 것이었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귀에 쌍구슬을 걸었고, 손가락에는 하얀 쇠가락지를 끼고 있었다. ...”⁵⁴⁾ 이러한 묘사들은 확실히 清代 女性이 집착하는 美와 부합하지 않는다.

Le Comte의 서신을 보면, 清代 女性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美에 걸고 있으며,⁵⁵⁾ 男性이 외모에 무신경한 것을 보충하려는 듯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⁵⁶⁾ 그는 中國 女性에게 化粧이 일

⁵²⁾ Navarrete, Domingo Frenández de., 『An account of the empire of China [from: A. and J. Churchill. A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London, (1732), Book I. CHAP. X. A further Account of the Grandeur of the Emperor, and his Court, p.24.

⁵³⁾ 燕行錄 저자는 滿洲族 女性의 服飾뿐만 아니라 滿洲族 女性, 그 자체에 종종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것은 滿洲族 女性과 服飾이 비슷한 蒙古 女人에 대한 비난 속에 잘 나타난다. “蒙古人 계집들도 또한 온 자가 있다고 하지만, 마침 보이지 않는다. 듣건대, 그 의복 제도는 胡女와 같으며, 머리는 우리나라 여인들과 비슷하다. 다만 멋대로 다니며 사람을 보고 피하지도 않으니, 禽獸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계사년 1월 1일조, 221면)

⁵⁴⁾ 路逢一隊胡女. 則皆掛黑長衣. 至踵而止. 下着黑袴如男袴. 納唐鞋襪子. 亦以青布造作. 毋論老少. 皆耳掛雙珠. 指着白鐵環. 而以黑帽羅?頭. 或編髮作環. 如我國之制. 不?頭者. 或當腦粧以鉛鈿. 狀如圓鏡. 絡以眞珠. 厚塗眞粉. 兒女頭髮三條. 相?結於頭後. 亦?以黑羅矣. 최덕중, 『연행록』, 임진년 12월 5일조, 연행록선집3, 199면.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2005), 185쪽에서 재인용.

⁵⁵⁾ Susan Mann, *Widows in the Kinship, Class and Community Structures of Qing Dynasty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6, No. 1, (2011) pp.37~38. 清代 女性이 美에 집착했던 이유는 外觀의 아름다움이 좀 더 나은 삶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女性의 男性에 대한 尊屬性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측면일 것이다. 1934년, 전형적인 女權 伸張論者로 교육받은 Liu Jihua는 ‘中國 女性의 貞操觀念에 대한 역사’라는 논문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과 복종이 강화된 것은 宋代부터라고 하였다. 당시 朱子學者들, 특히 周敦頤와 張載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성(아내)은 정당한 지배자인 남편에게,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에게, 충성하고 순결을 지켜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清代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滿洲族 女性은 여전히, 특히 미혼 여성이, 재산상속에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再婚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측면에서 보다 나은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漢人의 文化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美를 신봉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적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知人을 통해 그들이 매일아침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안색의 퇴색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白色魚粉(White meal)을 얼굴에 문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⁵⁷⁾

美를 추구하는 中國 女性의 열정은 宣教師들이 보았을 때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纏足에서 극대화된다. “中國人들은 작은 발로부터 가장 큰 性的 매력을 느꼈다.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유모는 아기의 발을 촌촌히 동여매서 발이 커지지 않도록 한다. 中國 女性, 특히 신분 높은 女性은 이처럼 幼兒期에 가해진 압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纏足を 한 이들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불안정하며, 外國人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관습의 힘이다.” 사실 纏足の 유행은 男性의 지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고대부터 유래한 관습에서도⁵⁸⁾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출신 신앙 전파를 위한 성회 修士 Ripa는 纏足の 유래와 中國 男性의 纏足에 대한 애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중국 여성)의 터무니없는 시기심은 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을 하도록 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그들을 집안에 구속시켰다. 나는 중국인들로부터 고대 황제들 중 한 명이 이러한 술책의 첫 발견자라고 들었다. 그는 일부러 작은 발을 가진 여자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고 암시하였다고 한다. 황제의 이러한 의견은 삼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들은 자신의 딸이 그와 같은 유행에 따르도록 했다고 한다. 즉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상상속의 美를 추구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女兒들은 3개월이란 이른 시기에 발을 꼼꼼히 동여맨다. 그러면 발의 성장이 멈추는데, 이로 인해 다리를 절거나 절뚝거리지 않고는 걸을 수 없게 된다. 만일 그들이 빨리 걸으려고 시도할 때면, 매 걸음이 위험하다. 심지어는 느리게 걸을 때조차 몸을 떠받치기에 발이 너무 작아서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기 불가능하다. 이에 중국 여성들은 오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척대며 걷는다. 결혼에 대해 말하자면, 결혼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볼 수 없기에, 우리 유럽인들이 신부의 초상화를 약혼자에게 보내는 것처럼, 신부의 발 치수를 정확히 재서 약혼자에게 보내는 것이

⁵⁶⁾ Le Comte, Louis., 『Memoirs and observations . . . made in a late journey through the empire of China』, LETTER V. To the Marquis de TORSI,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Of the peculiar Character of the Chinese Nation, its Antiquity, Nobility, Manners, and its good and bad Qualities”, p.126.

⁵⁷⁾ 白色魚粉은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p.139.)에서도 언급된다. “중국인들은 매일 아침 미백을 돕고 안색을 개선해주는 일종의 도료로 세안을 한다. 그러나 이 도료는 이내 피부를 망쳐서 주름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다.”

⁵⁸⁾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139. 선교사들은 중국인에게 여성들에게는 고통을, 보는 이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전족의 기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어떤 중국인도 전족의 기원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전족의 배경에 대해 아내를 집에 붙들어 두기 위한,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고대 중국인들의 발명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관습이다. 이것은 실로 상식에서 벗어난 취향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여자와 성교는 하지 않으면서 여자의 발만을 애지중지하는 의사를 알고 있다.⁵⁹⁾

이처럼 纏足은 女性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美로 취급받았지만, 滿洲族 女性은 滿洲族의 관습을 유지할 것을 고집하는 통치자의 규제 속에서 漢人의 慣習인 纏足을 선뜻 따를 수도 고통을 쉽게 견딜 수도 없었다. 이에 많은 滿洲族 女性들이 纏足을 한 女性처럼 기우뚱거리며 걸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신인 ‘馬蹄底鞋’을 신고 다녔다. 이 신은 纏足을 하지 않은 발에 맞는 크기로, 5~15센티미터 높이의 신발 밑창 가운데 작은 굽을 고정시킨 것이다. ‘馬蹄底鞋’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배 모양의 신발’은 滿洲族 女性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신을 살 여유가 가난한 旗人 女性은 일반 신에 밑창을 덧붙여서 이것을 대신할 정도였다.⁶⁰⁾ 이것은 纏足이 현실적으로 漢人 女性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은 보여주는⁶¹⁾ 한편 소비대상과 관점의 공유가 얼마나 큰 과급력을 가졌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공감대는 地域과 社會階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까지 확대·형성된다.

(a) 중국인들의 피부색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중국(The Southern Parts of China)에 사는 이들이 모든 중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곳에, 특히 廣東・福建・雲南에, 만연한 더위는 匠人이나 농부의 피부를 올리브색 또는 갈색으로 만들어버린다. 다른 省에 사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럽인들만큼 하얗다.⁶²⁾

(b) 學者와 文人, 그리고 보통 서른 쯤 되는 젊은이들은 매우 좋은 피부를 갖고 있으며, 아름다운 안색을 띄고 있다. 학자와 문인 중에서도 좋은 가문 출신은 새끼손가락의 손톱

⁵⁹⁾ Ripa,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New York : Wiley & Putnam, 161 Broadway, (1846), CHAPTER X. Women's Feet, p.70.

⁶⁰⁾ 마크 C. 엘리엇 지음/이훈·김선민 옮김, 『滿洲族의 淸帝國』, 푸른역사, (2009) pp.371~373. 이와 같은 滿洲族 女性의 漢族 服飾의 애용은 후에 淸皇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乾隆帝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欽定大清會典事例』 권1114, 1759년 上諭) “내가 이번에 秀女(후궁 간택에 나선 후보자)들을 살펴보니, 漢人의 복장과 장식을 흉내 낸 소녀들이 있었다. 이것은 진실로 滿洲族의 관습이 아니다. 내 앞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면, 그들이 집에서 얼마나 멋대로 입고 꾸미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 이것은 비록 작은 문제지만, 만약 이에 대해서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나쁜 물이 들어 풍습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우리 滿洲族의 풍습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 이를 가져다가, 八旗의 고위 관료들로 하여금 旗人들을 깨우치도록 하라.” 이블린 S. 로스키/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황실의 사회사』, (2010) pp.68~69쪽에서 재인용.

⁶¹⁾ 『熱河日記』 1780년 8월 10일. 박지원은 흑정과의 대화 중 전족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다. 이에 흑정은 本朝에서도 금지하고, 남자들도 따르지 않는 전족을 여성들이 굳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지원이 그 이유를 묻자, 흑정은 “만주 계집들과 한 가지로 보일까봐 그런 게요.”라고 설명했다.

⁶²⁾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138.

을 1인치 또는 그 이상 길러서 그것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장식한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계층이 아님을 드러낸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짧은 코, 작은 눈, 균형 잡힌 입, 분홍빛 입술, 검정 머리카락, 긴 귀, 좋은 혈색을 지녔다. 이들의 얼굴에는 균형이, 가장 가치 있는 생기가 있다.⁶³⁾

(a)를 보면, 清代 中國人の 외양은 居住地域의 氣候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淸의 영토 확장에 의해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Le Comte 역시 中國人の 피부색은 대체로 유럽 인처럼 하얗지만,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피부색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들(中國人)의 피부색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만큼 흰 살결이 자연스럽다. 북쪽 지방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중국인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잦은 여행에도 불구하고 日光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챙 없는 모자 외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the Indies)에 사는 포르투갈인처럼 황갈색 피부를 가졌다. 廣東, 福建, 雲南에 사는 이들 또한 과도한 열과 노동 시 반쯤 벗는 습관에 의해서 짙은 피부색을 하고 있다.”⁶⁴⁾ 清代 中國人은 피부색으로 地域民의 구분할 때처럼 사회계층의 구분할 때도 공통적 기준, 즉 勞動의 有無와 보편적 美의 기준과의 일치를 적용하였다. (b)를 보면, 中國人이 勞動과 거리가 먼 신체적 특징(좋은 피부와 새끼손가락 손톱의 장식)을 통해 學者·文人·신분 높은 이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貴婦人の 외양은 보편적 美의 기준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기준은 定着生活을 영위하며 文을 중시하는 漢人の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滿·漢人이 공간상의 분리를 넘어서 일상적으로 같은 대상과 문화를 소비하고, 그 대상과 문화에 대해 같은 관점을 갖고, 이때 滿洲族이 漢族의 문화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滿洲族 상위를 추구하는 滿洲族 통치자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民族性, 즉 滿洲族의 정체성이 성공적인 중국 통치에 미친 영향을 再考하게 한다.

Ⅲ. 行動樣式의 劃一化와 滿·漢의 接點

康熙年間 北京의 日常에는 의도된 삶(民族과 身分에 따라 부여된 차별적인 삶과 滿洲

63) 上同.

64) Le Comte, Louis., 『Memoirs and observations . . . made in a late journey through the empire of China』, London : B. Tooke & S. Buckley, (1699), LETTER V. To the Marquis de TORSI,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Of the peculiar Character of the Chinese Nation, its Antiquity, Nobility, Manners, and its good and bad Qualities”, p.127.

族의 偶像化) 외에도 富의 축적, 漢人 服飾의 유행, 滿洲族과 漢人의 食文化 共存과 같은 예기치 않은 공감대가 존재하였다. 漢人 文化의 폭넓은 공유는 滿洲族의 中國 統治, 특히 滿·漢 분리 정책에 허점이 있었으며, 滿洲族과 漢族의 日常에 공통분모가 생성될 여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滿洲族과 漢族의 日常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행동양식의 획일화에 의한 가치관의 보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서는 滿·漢 분리의 경계가 모호해진 배경에 접근하기 위해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 모두에게 요구된 行動樣式(또는 禮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당시의 禮法이 어떤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앙 전파를 위한 성회 修士 Ripa의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元旦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중국의 새해는 新月이라 불린다. 중국인은 우리들(유럽인)이 陽曆으로 해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陰曆으로 해를 계산한다. 즉, 중국인은 2월 5일에 해당되는 물병자리의 15° 근처에 있는 新月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 그들은 1년을 12달, 그 중에서도 한 달은 29일, 또 다른 달은 30일로 계산하며, 5년마다 한 달을 추가함으로써 태음년(the lunar year)을 정정한다. 이러한 정정으로 陽曆으로 해를 계산하는 이들과 같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하루를 밤12시부터 다음날 밤12시까지, 12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와 같다.

황제는 새해가 오면, 북경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새해선물로 사슴고기·산토끼·꿩·물고기·사슴의 힘줄을 하사한다. 올해 역시 각자의 몫을 정확히 나눠 가지라는 명령과 함께 새해선물이 하사되었다. 사슴의 힘줄이 무엇이나 하면, 건조식품의 일종으로 작은 묶음들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저장된다. 때문에 사슴 힘줄을 먹을 때면, 제일 먼저 물속에 넣어 부드럽게 만든 후에 요리해야 한다. 이 사슴 힘줄 요리는 중국인들의 요리 가운데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요리이다. 즉 廣東 근처에 있는 섬들의 바위틈 또는 산 속에서 발견되는 제비둥지를 요리한 것 다음으로 평가받는다. 최고로 평가받는 요리의 재료인 제비둥지는 유럽의 둥지들처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일종의 하얀 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체로는 맛이 없다. 그러나 고깃국과 조미료가 첨가되면, 중국이 미각에 맞는 맛이 난다. 이 두 요리 다음으로 평가받는 요리는 신선한 개들을 요리한 것이다. 실제로 개들은 중국인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사육된다.

중국의 새해 시작은 우리들의 축제(가톨릭국가의 사육제)를 연상시킨다. 각종 유희와 여흥·향연·연극의 상연으로 축하되기 때문이다. 모든 관청은 명절 전에 문을 닫는다. 특히 황제의 옥새로 봉해져서 명절 후 며칠이 지날 때까지 다시 열지 않는다. 또한 모든 집은 판지 위에 우상(神像)을 그려서 문에 붙인다. 이때 중국 전역에서 소비되는 폭죽 양은 깜짝 놀랄 정도다. 1년 12달 동안 유럽 전역에서 소비하는 화약 양보다 이때 중국에서 소비되는 화약 양이 더 많다는 사실을 해가 바뀌는 밤 동안 확인할 수 있다.⁶⁵⁾

⁶⁵⁾ Ripa,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CHAPTER X. The New Year, pp.67~68.

여기서 리파는 元의 명칭, 유럽과 다른 중국의 曆法, 皇帝가 外國人 宣教師들에게 하사한 새해선물, 그리고 새해 풍경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名節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그는 특히 禮法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는 中國人이 日常을 유지하는데 있어 禮法에 의지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선달 그믐날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 앞에, 나이 어린 형제는 나이 많은 형제 앞에, 하인들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관습이 요구하는 예법인 표현하기조차 지루한 절을 올린다. 이러한 의식은 남편과 아내,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준수된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禮를 바치는 것처럼 후손들도 고인이 된 선조들의 초상 앞에 禮를 바친다. 중국인은 이러한 고대의 관습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의 숭배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이것은 때때로 미신적인 것과 함께 행해지는데,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기에 완전히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⁶⁶⁾ Ripa의 기술 속에서 清代 中國人은 나이, 성별, 그리고 계급에 따라 上下의 구분을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位階秩序는 禮法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학습되고, 이 과정에서 中國人의 행동양식과 가치관은 획일화되었다.

1. 社會的 關係의 認識

주지하다시피, 北京의 日常은 位階秩序 확립에 중점을 둔 禮法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日常이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였음에 따라 禮法의 종류도 많았지만, 中國人은 특히 인사·방문·접대, 즉 社會生活에 관한 禮法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은 인사말 및 다양한 인사방식에 관한 서술이다.

도시에 사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 사는 중국인들도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데 유념하며 산다. 중국인들은 늘 존경과 정중함이 가득한 인사말을 건넨다. ... 특히 당신이 중국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의 고마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 그는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미사여구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일반적인 인사는 가슴 근처에서 拱手를 취하는 것이다. ...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를 만났을 때는 두 손을 맞잡고 들어 올렸다가 땅에 닿을 만큼 내리는 동시에 몸을 낮춰 절을 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그들 모두 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 같은 행동은 두 번 또는 세 번 행해진다. 이방인이 오면, 그에게 여행 동안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묻는다. ... 장성한 남자에게는 온갖 번영이 얼굴이 가득하다고 인사말을 건넨다.

66)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p.67~68.

관리들은, 특히 品位가 다른 관리들의 경우, 거리에서 서로 마주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마주치게 될 경우, 서로의 품위가 같으면, 모두 가마에서 일어서지 않고 맞잡은 손을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내림으로써 인사를 마친다. 품위가 다른 경우엔, 직위가 낮은 관리가 가마 또는 말에서 내려 상관에게 절을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또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취하는 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다.⁶⁷⁾

위에서 宣教師들은 中國人이 -일상에서·윗사람을 만났을 때·오랜 만에 만났을 때·이방인을 대할 때·성인 남성을 대할 때 등-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인사를 건넨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사실은 清代 社會가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간의 上下關係 외에도 다양한 上下關係를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며, 禮法이 다양한 社會關係의 원만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外國人 宣教師들은 이러한 태도를 두고 사소한 일에도 美辭麗句를 남발한다고, 즉 禮法의 준수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지적하였지만,⁶⁸⁾ 이와 같은 비난은 文化的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견해차로 볼 수 있다.

禮法의 上下關係 강조는 특히 官吏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官吏들은 상대방의 職位에 적합한 禮法을 사용하는데 민감했으며, 이 때문에 서로를 대하는 자리에 큰 心的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滿洲族 지배자가 의도한 바이다. 즉, 물리적 억압 없이 확고한 지배-순종 관계 형성을 위한 淸에게 上下 구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上下가 분명히 나타나는 禮法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다. 禮法의 이러한 측면은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 즉 官吏와 백성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의와 겸양의 태도를 단련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버지로 여기는 통치자에게 최고의 숭배를 바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언급은 官吏와 백성이 禮法을 통해 강력한 지배-복종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확인해준다. 이것은 다음 에피소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 巡撫가 은퇴할 때, 사람들은 일제히 그에게 찬사를 바친다. 대부분의 은퇴한 관료들은 귀향길에서 약 3리그 정도의 길이로 정렬된 탁자들을 목격할 수 있다.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비단보로 덮인 탁자 위에는 보통 향로, 촛대 또는 작은 초들, 고기·콩·과일 접시·술 및 차가 차려진다.

관료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절한다. 이때 어떤 이들은 눈물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늉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고마움의 표시를 바치기 위해 관료에

67) Ripa,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CHAPTER X. The New Year, pp.176~177.

68) 年初·생일·명절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격식을 차렸다.

게 말에서 내릴 것을 청한다. 그들은 은퇴한 관료에게 술과 장거리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선물한다. ... 이러한 격식의 하이라이트는 관료의 낡은 장화를 벗긴 뒤 새 장화를 선물로 주는데 있다. ... 관료의 낡은 장화는 유물처럼 보관된다.⁶⁹⁾

(b) 중국인들은 은퇴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일날에도 (관료에게) 예우를 표한다. 관료의 생일날이 되면, 도시의 저명인사들은 관료의 저택으로 인사드리러 간다. 이때 그들은 예물과 金花로 장식된 찬합을 가지고 간다. 여덟 칸 또는 열두 칸으로 구성된 찬합에는 여러 가지 설탕조림이 들어있다. 관료를 포함한 도시의 저명인사들은 殿에 모여서 생일의식을 행한다. 즉, 이곳에서 생일을 맞은 관료가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는다. ... 관료의 생일의 축하하는 가장 흔한 격식으로는 술잔을 높이 들고 (관료를 위한) 소망을 외치는 것이 있다. ... 같은 방식으로 들고 온 설탕조림을 바친다.⁷⁰⁾

宣教師들은 -귀향길에 오른 巡撫에게 자신의 아쉬움을 표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수많은 禮物·새 장화를 선물하고 헌 장화를 보관하는 禮法·官僚의 생일이 최대관심사인 名士들 등- 이러한 격식들을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중국인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지배자의 권위에 순응함을 일상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지배자 또한 禮法이 지닌 온화한 이미지를⁷¹⁾ 이용해서 갈등을 형성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한, 특히 漢人에 대한, 本 王朝의 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⁷²⁾ 이와 같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를 인식하는 그리고 납득할 만한 행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禮法이고 그 첫 단계가 인사였다.

다음에서 宣教師들은 “統治者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저녁식사시간 전에 가야한다. 또 인사 전에 음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주한 채로윗사람 앞에 서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는 방문한 사람에게 조금이라고 술 냄새를 맡으

69)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p.178~179.

70) 上同, p.179.

71) “친구들, 그것도 친밀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지독한 수치심을 줄 수도 있는 표현인 너 또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즉, 하느님이 그의 종에게 베풀어준 은혜 또는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베풀어준 은혜처럼 당신이 나를 위해 한 수고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늙은 아버지 또한 어린 아들에게 그러한 표현을 쓴다.”

72) 이블린 S. 로스키/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p.26. 順治帝와 康熙帝는 漢人 지식인을 포섭하기 위해, 儒敎 군주를 자처했는데, -漢語를 공부했고, 儒敎 經典을 과거시험의 교재로 이용했으며, 科擧制를 관료 선발의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유교적 내용의 조칙을 반포했으며, 滿洲族의 婚姻과 葬禮 풍습을 개혁하여 중국의 풍습에 맞추도록 했다. 효도는 皇帝權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는 漢人의 社會規範이었던 禮法의 적극적 수용 배경에도 적용될 수 있다. 淸皇帝의 儒敎 군주 이미지 만들기는 성공적으로 滿洲族에 대한 漢人의 지지를 고취시켰기 때문에 滿洲族에게 禮法을 통해서 彼支配民族의 日常을 통제하는 계획 또한 매우 기대할 만한 것이었을 것이다.

면, 매우 불쾌해 한다.”라고⁷³⁾ 서술하였는데, 禮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충분히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이 주목된다. 이처럼 清代 禮法은 滿洲族의 체제 유지와 中國人의 안정적인 社會生活에 큰 도움이 되었다.⁷⁴⁾ 하지만 禮法의 普遍的인 적용과 日常化는 滿洲族이 그 들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漢人의 價値觀과 文化를 수용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2. 社會的 關係의 形成 및 維持

인사가 自身과 他人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방문은 他人에 대한 적응, 즉 他人과의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中國人들이 社會關係를 어떻게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 맺기가 滿洲族의 중국 지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外國人 宣教師 또한 中國人들에게 방문이 關係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중국인들이 지키는 예의들 중 하나는 특별한 날이면, 서로를 방문하는 것이다. 즉, 생일⁷⁵⁾, 元旦, 여러 명절들과⁷⁶⁾ 같이 방문이 필수인 날들이 있다. 이러한 날, 학자는 스승을, 관료는 의지하는 이를 방문한다. 이

73)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p.180~181.

74) 劉小萌 著, 『清代北京旗人社會』,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pp.642~643. 清代 禮法은 민족색이 뚜렷한 관습과 달리 출신민족에 따라 특별히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다. 滿洲族 역시 禮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滿洲族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친구와 연장자가 먼저 앉고 먼저 식사하도록 배려하는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北京 旗人社會는, 특히 貴族과 官吏의 집안은, 禮儀를 매우 중시하였다고 한다.(談遷: 《北遊錄·紀聞下》 제356쪽 재인용.) 이것은 漢人의 위사람 존중 관념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清代 禮法의 보편화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 모두가 수긍하는 (敬老思想이 강한) 禮法은 滿洲族에게는 통치에, 漢人에게는 日常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75) Domingo Frenández de Navarrete, 『An account of the empire of China』, Book II. CHAP. VI. of the Chinese Ceremonies and Civilities, p.72. 특히 Navarrete는 중국인의 생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중국인은 많은 면에서 우리(유럽인)를 능가한다. 그 중 하나는 훌륭한 신분의 사람도, 하찮은 신분의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이도 모두 자신의 나이와 태어난 日時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것뿐만이 아니다. 부모·형제·친척의 나이와 태어난 日時도 정확히 기억한다. 이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들(유럽인) 중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준 신에게 감사하며 신을 따르는 이도 없으며, 자신의 나이를 제대로 기억하는 이도 없다. 이와 같은 이들을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선교사가 중국인의 관습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묘하게 접목시키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하게 취급되는 생일로부터 여성은 소외된다. “여성도 자신의 생일을 지키긴 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녀들과 함께 축하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언급은 중국 여성에게 사회관계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76) 尙基淑, 『中國 清代의 歲時風俗 考察』, 『中國小說論叢』 제17집, (2003) p.132. 清代 名節은 漢族 文化와 滿洲族 文化가 통합된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漢人의 풍습을 적극 수용한 측면이 크다. 이것은 康熙年間の 공식적인 명절의 내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록 1> 참조.)

외에도 아들의 탄생, 결혼의 성사, 승진, 喪, 여행의 전송 등과 같은 경우에 방문은 생략될 수 없다.”⁷⁷⁾

때문에 本人의 능력 외에도 上級者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서 出世의 기회를 찾은 官吏들은⁷⁸⁾ 방문과 이에 관한 예법에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對面을 회피했던 것과 달리 (上級者에게 특별한 날 또는 名節과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방문에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Navarrete의 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장 큰 名節인 새해가 다가오면, 郡主들과 朝廷大臣들은 皇帝에게 新年 祝賀를 바친다. 北京의 高位 官吏는 代理人을 보내 각 지역에 新年 祝賀를 전한다. 代理人을 파견해서 禮를 표하는 것은 生日과 婚禮 때도 마찬가지다. 각 省은 3년에 한 번씩 代理人을 皇帝에게 보내 省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한다.”⁷⁹⁾ 여기서 官吏들은 本人이 직접 또는 代理人을 파견해서 本人의 立地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방문의 중요성은 의사표현에만 있지 않았다. 清代 中國人の 社會關係는 실질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 즉 禮法을 통해 완성된다. 다음은 방문 절차에 대한 서술이다.

중국인의 방문은 짐꾼 편에 金花가 달린 붉은 두루마리로 된 방문장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⁸⁰⁾. 두루마리에는 보통 상대방의 신분에 어울리는 공손한 인사말과 본인의 姓名을 적는다. 예를 들면, ‘나라의 다정하고 진정한 친구가 삼가 경의를 표하고 경례하기 위해 뵙고자 합니다.’와 같은 말을 적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나 평범한 사람일 경우에는 평범한 종이를 사용하지만, 상대방이 喪中일 경우에는 흰 종이를 사용한다.

특히 官吏들은 代理人을 통해 방문장을 받는데 만족을 느낀다. 이는 직접 방문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방문장을 받은 이는 받은 날로부터 삼일 사이에 그가 받은 것과 비슷한 형식의 두루마리, 즉 초청장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방문을 받는 경우, 집주인은 첫 번째 中庭의 殿 앞까지 손님을 맞으러 간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집주인은 두 번째 中庭의 殿 앞에서 손님을

77)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184.

78) 오금성 외 지음, 『明清時代 社會經濟史』 「관료제도」, 이산, (2007) p.32. 차혜원은 明清時代 정치체계의 특징으로 강력한 황제권력,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행정조직, 그리고 관료제 피라미드를 지적하고 있다. 즉, 官吏에게는 관료선발을 주재하고 官吏의 경력과 진로를 결정짓는 최고 인사권자인 皇帝를 포함한 上級者 및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79) Domingo Frenández de Navarrete, 『An account of the empire of China』, Book II. CHAP. VI. of the Chinese Ceremonies and Civilities, p.72.

80)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II, p.190. 서신을 보낼 때도 관례에 따라야 한다. “윗사람에게 서신을 쓸 때면, 두루마리처럼 말린 흰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보통 두 번째로 말려진 곳에서부터 글을 적기 시작한다.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형식적이다. 글씨 크기 또한 신경 써야 하는데, 글씨가 작을수록 큰 경의를 나타낸다. 줄과 줄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의 신분과 특징에 어울리는 칭호를 적어야 한다. ... 만약 서신을 보내는 이가 喪中이라면, 本人의 이름 위에 가늘고 긴 푸른 종이를 올려놓아야 한다.”

맞는다. 이때 집주인은 양산과 큰 부채를 든 하인 두 명을 대동하고 서 있다. 손님이 가마에서 내리면, 집주인은 부채를 치우고 적절한 거리에서 경의를 표한다. 이때부터 복잡한 절차가 시작된다. 이러한 中國人들의 절차는 길며, 지켜야 할 세부사항이 많다. 절의 수·해야 할 말·사용해야 할 호칭·무릎 꿇는 방법·오른쪽 또는 왼쪽을 잡아야 할 차례·손님을 안으로 청하는 방법·이에 대한 겸양의 표현·의자에 앉길 청하는 방법 등. ...⁸¹⁾

방문과 관련한 禮法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방문장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방문장으로는 상황에 따라 붉은 종이 또는 흰 종이가 사용되었다. 방문장은 방문을 신청하는 이의 社會的 地位와 教養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방문장을 받은 이에게 방문을 거절할 구실을 만들 여유를 주기도 하였다. Ripa는 “중국인들은 특히 年初에 친구와 知人에게 붉은 종이가 된 방문장을 보내고 방문하길 즐긴다. 이때 방문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방문장은 연인 또는 다른 친구들과 여가를 보내길 바라는 주인이 집에 있더라도 하인을 통해 방문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돌려보낼 여유를 준다.”라고⁸²⁾ 하였는데, 여기서 방문장이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對人關係를 회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禮法에 位階秩序 유지라는 嚴格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형성이라는 寬大성이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滿洲族 지배자는 禮法이 가진 이와 같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支配民族과 被支配民族 또는 계층 간의 位階秩序를 확립하고 긴장된 관계를 해소하는데 적절히 이용하였다⁸³⁾.

하지만 清代 社會關係 및 社會秩序의 禮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⁸⁴⁾ 비례해서 滿洲族의 漢人 文化 수용 역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의 배경도 영향을 미쳤다. 淸은 天命論과 華夷論에 바탕을 둔 中華主義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의해 統治에, 특히 다민족공동체의 통합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滿洲族 지배자들은 역으로 儒敎의 禮治에 바탕을 둔 정책을 채택하여 내부를 안정시켰으며, 이것은 淸의 전성기에 두드러졌다. 물론 康熙帝가 滿洲族의 궁지와 문화적 저버린 것은 아니었으나, 治國의 한 방편으로 儒

⁸¹⁾ 上同, pp.185~186.

⁸²⁾ Ripa,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CHAPTER X. Visiting Card, p.70.

⁸³⁾ 이것은 서민들의 생활을 규범화한 『淸通禮』의 편찬으로 이어진다.

⁸⁴⁾ 중국인의 까다로운 예법은 朝鮮人의 관점에서(『稼齋燕行錄』, 1713년 2월 3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금 후 이원영이 왔기에 이우고 대청으로 나왔다. 나를 의자에 앉히고 앞에 탁자 하나를 놓고는 이원영이 탁자 한쪽 머리에 앉는데, 그의 의도는 나와 마주보고 앉지 않으려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청한 뒤에 비로소 의자를 옮겨 마주보고 앉는다. 이곳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는 손님과 주인이 보통 한 탁자를 놓고 서로 마주앉는 것이나, 존귀한 손님에 대해서는 마주앉지 않고 탁자 모서리에 앉으니, 이를 打橫이라 한다.”

家 君主로서의 이미지 만들기가 필요하였다.⁸⁵⁾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淸은 滿洲族의 禮法 수용과 의존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문과 관련한 禮法에는 방문장 및 초청장을 보내는 절차, 손님을 맞고 떠나는 보내는 절차 외에 禮物을 보내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中國 全域에서 통용되는 관습으로 특히 처음으로 방문할 때, 생일 또는 新年을 축하하러 갈 때 반드시 준수된다.⁸⁶⁾ 선물은 보통 방문장과 함께 보내는데, 이때 禮物을 보내는 이의 姓名, 선물의 목록 및 수량이 적힌 붉은 종이도 첨부한다. 禮物 목록은 종류별로 적혀지며, 禮物의 수량은 보통 네 가지,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열두 가지로 정해진다.⁸⁷⁾ 그러나 모든 禮物을 받아들이는 것은 禮儀가 아니었다. “中國人들은 禮物 목록을 읽은 후, 받아도 될 만한 것만을 취한다. 그 즉시 선물을 보낸 이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서신 또는 감사장을 보내야 한다.”라고⁸⁸⁾ 하였는데, 여기서도 禮法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는 교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宣教師들은 中國에서 禮法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는 중요한 관계형성 방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행한 儀禮를 똑같이 행해야 한다.”고 언급에 잘 드러나 있다. 때로는 받은 선물과 같은 가치를 지닌 禮物 또는 銀貨를 보낸 이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답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禮物은 오직 생일 禮物뿐이었다. 중국인에게 생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⁸⁹⁾

85) 정석범, 『康雍乾시대 ‘大一統’ 정책과 시각 이미지』, 『美術史學』제23집, (2009) pp.12~14. ; 林金樹, 『中國古代思想史：明清卷』, 南寧：廣西人民出版社, (2006) pp.70~71. 이 점은 그가 皇子들에게 늘 만주문화를 근본으로 삼고 漢문화를 수단으로 삼으라고 훈계한데서 잘 드러나며 진정한 大一統은 漢族의 문화와 滿洲의 무공이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러한 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6) Domingo Frenández de Navarrete, 『An account of the empire of China』, Book II. CHAP. VI. of the Chinese Ceremonies and Civilities, p.71. Navarrete는 중국의 예물을 바치는 관습을 소개하면서 페르시아의 관습도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로부터 그가 은연중에 중국인의 이러한 관습이 고대의 관습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페르시아인들은 -특히 왕에게- (중국인들과) 같은 관습을 지킨다. 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Seneca도 예물 없이 왕을 찾아뵙는 Parthian(페르시아 사람의 옛 말)은 없다고 했다. 즉 페르시아인들은 이러한 관습을 절대로 어길 수 없었다.”

87) 上同, p.71.

88) 『The General History of China』II, p.190.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물 목록에서 취하기로 한 선물 옆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한다. 이 목록을 다시 돌려주면, 선물을 보내는 이는 표시된 것들만 사서 보낸다. 그러면 선물에 대한 감사장을 보낸다.

89) Domingo Frenández de Navarrete, 『An account of the empire of China』, Book II. CHAP. VI. of the Chinese Ceremonies and Civilities, pp.71~72. Navarrete는 중국인의 과도하게 생일을 챙기는 태도에 대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은 최대한의 준비 없이 자신의 생일을 맞는 중국인은 없다. 어린아이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모두의 생일을 알고 지낸다. 특히 관료의 생일은 관할구역에 사는 모든 이가 알고 있다. 총독 또는 최고 통치자의 생일 또한 省에 사는 모든 이가 알고 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옛 관습이지만, 친하지 않는 이를 제외하고 생일을 챙기는 것은

이처럼 外國人 宣教師가 中國人의 방문 또는 禮物에 관한 禮法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이방인인 우리는 당연히 지역물품이 아닌 외국의 것을 선물해야 했다. 이때(선물을 준비할 때) 상당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된다. 선물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기준이다. 일은 이런 식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관습의 준수는 S. Francis Xavier가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지역의 초기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법(예물), 즉 비단 옷, 가마, 하인으로 주님의 일터가 발전되고 개선된다면, 그 일꾼들인 우리의 처지도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른 고통도 매우 컸다. 철저한 종교인이자 부지런한 선교사인 F. John Balat는 개종이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본, 에티오피아, 중국, 통킹, 그리고 코친차이나에 무수히 많은 금화(Ducats, 옛 유럽국가들이 사용한 金貨)를 소비한 것을 한탄했다. 그래도 예물들이 지속되었을 때, 특히 내가 보았을 때 매우 큰 가치를 지닌 선물들이 지속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명령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⁹⁰⁾

도미니크회 선교사 Navarrete의 설명에 의하면, 外國人 宣教師들은 教會의 정착과 선교 사업을 위해 선교지역 官吏 또는 有力者에게 賂物을 바쳐야 했다. 이것은 Xavier 신부의 경우처럼 성공적이기도 하였고 Balat 신부의 경우처럼 실패로 끝나기도 하였지만, 外國人 宣教師들은 이로부터 中國人들의 관계형성 방식에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淸 역시 이러한 禮法의 변질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禮法의 순기능과 社會的 慣性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단속을 통해 바른 禮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썼었다.

淸代 中國人은 방문에 이어 접대를 통해 우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접대는 한 명을 대상으로 個別化(自他認識)와 의도적인 의사표현을 행한 인사·방문과 달리 한 명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立地를 확보하는 親社會的 행위로 그에 관한 禮法은 주로 宴會에서 두드러졌다.⁹¹⁾ 다

중국에서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파라오도 자신의 생일을 축하했고, 유대의 Herod왕도 그러했다. Constantine대제도 같은 의례를 행하였다. 중국인들의 과도하게 생일을 챙기는 태도에 대해서 S. Augustine의 말을 적용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자신과 자식의 생일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인의 생일의 의미를 기리는 태도를 칭찬한 것과는 모순되는 의견이다. 즉, 외국인 선교사에게 중국인의 가치관이 훌륭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접목될 때만 인지도 모르겠다.

90) 上同, pp.71~72.

91) 馮爾康·常建華 著, 『淸人社會生活』, 沈陽出版社, (2001) pp.188~189. 淸代 官僚社會, 商業界, 民間에서는 손님을 청해 식사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즉, 이것은 宴會와 接待가 사람들에게 중요시

음은 外國人 宣教師가 宴會의 종류, 초대 과정, 그리고 招待狀 순서로 康熙年間 北京人의 일반적인 宴會를 소개한 것이다. 清代 중국의 宴會에는⁹²⁾ 크게 두 종류, 12접시 또는 16접시의 요리로 구성되는 一般宴會와 24접시의 요리로 구성되는 特別宴會가 있다.⁹³⁾ 부잣집의 잘 차린 식사가 돼지볶음과 잡탕이라는 것을⁹⁴⁾ 감안해본다면, 최소 12접시의 요리를 대접해야 하는 宴會가 中國人들에게 얼마나 큰 행사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준비 또는 진행과정 또한 까다로워서 招待狀도 宴會 전날, 宴會 當日 아침, 宴會 준비를 마쳤을 때, 세 차례나 발송해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회 절차는 크게 접객, 희극 공연, 식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 接客	宴會 主催者는 손님들을 연회장으로 안내하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 후, 그는 銀 또는 값비싼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잔이나 磁器 잔에 술을 따라올 것을 명하였다. 그는 그 잔을 권 채로 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절을 올리기 위해 대청을 돌았다. 인사를 마친 후,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이 많이 내려준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술잔을 치켜들었다가 땅에 부었다. 다시 채워진 술잔은 집주인의 식탁 위에 놓인다. ... 그러면 손님들은 저마다 술잔을 채워서 집주인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소란을 피운다. 집주인은 일상적이고 예의바른 말로 이를 제지하면서, 우리들의 포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작은 상아 젓가락을 식탁 위에 놓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 뒤에 집주인은 첫 번째 손님을 호화스런 꽃무늬 비단 카펫 위의 자리로 이끌면서 그곳에 앉기를 청하였다. 물론 손님은 염치없이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그 같은 영광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림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의 관습에 따르자면, 上席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특히 외부인들 중에서도 연장자에게 돌아간다.⁹⁵⁾
(b)	모두가 식탁에 자리하고 나자, 연회장으로 호화로운 의복을 입은 戲劇人 4~5명이 들어

되는 일종의 교제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풍성함과 접시의 아름다움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宴會는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接待 禮法은 점차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順治 初년에는 北京人이 宴會를 열어 손님을 접대할 때 호화롭다 해도 단 1兩의 銀子가 지출되었으며, 만약 극단의 공연을 관람하더라도 6兩이 추가될 뿐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술 1병, 볶은 두부 한 접시가 손님 접대에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康熙 中葉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北京 官吏의 宴會에 닭요리, 게 요리는 보편적으로 나오고, 河北 滌河의 붕어, 黃羊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매우 많은 양의 銀子가 소비된다.

92) 清代 中國人의 宴會는 康熙年間に 이르러 꽤 사치스러워졌는데, 그 핵심은 어디까지나 요리의 질과 양으로, 일반적으로 요리 접시의 수와 가격에 따라 宴會의 등급(또는 종류)을 구분한다.

93) 중국인들의 연회는 저녁 또는 저녁 무렵에 시작해서 자정에 마친다. 보통 4~5시간이 걸린다.

94) 서민들은 보통 밥 또는 죽으로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 반찬은, 시골집의 경우, 맛이 몹시 짜서 물에 적서 소금기를 씻어내고 먹어야 하는 김치 한 접시뿐이다. 부잣집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여러 종류의 요리를 먹는 것은 아니다.(『稼齋燕行錄』산천 풍속 총록)

戲劇 公演	왔다. 그들은 식탁 가운데서 서서 초와 향로가 놓인 탁자를 향해 이마를 조아려 네 차례 절을 하였다. 그 후 그들 중 한 명이 上席의 손님에게 50~60개 정도의 연극명이 적힌 책자를 건네주면서 고를 것을 청하였다. <u>上席에 앉은</u> <u>손님은 세 번 정도 사양했지만, 결국 일행이 즐길만한 연극을 정하였다.</u> 이후 희극인이 선택된 희극을 소개하였고, <u>모두들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동의를 표하였다.</u> ... 희극은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만으로 진행되었다. ... 손님 외에 희극에 호기심을 느낀 이들과 하인들은 中庭에서 이를 쳐다보았다. 초대된 귀부인들 역시 연회장 밖에서 희극을 관람하였다. 희극 외에도 부인들은 대나무로 된 격자창과 비단 커튼 뒤에서 연회의 모든 것을 보고 들어야만 했다. ...⁹⁶⁾
(c) 食事	식사는 술로 시작하였다. <u>무릎을 꿇은 집주인은 잔을 들고서 큰 소리로 술을 권하였다.</u> 이와 동시에 손님들은 잔을 쥐고서 이마를 들어 올렸다가 식탁보다 낮게 몸을 구부려 절을 하였다. 3~4차례 만에 잔을 비운 집주인은 다시 한 번 술을 권한 뒤, 자신의 잔이 비워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술잔을 뒤집어놓았다. 두 세 차례 술잔이 오가는 동안 요리가 나왔다. 식탁 중앙에 탕(ragou) 그릇이 놓이자, <u>집주인은 술을 권한 방식대로 음식을 권했다.</u> 요리 접시들이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절차가 행해졌다. ... 이 요리들은 술안주로 적당했지만, <u>모두들 주의해서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셨다.</u> ... 여섯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의 요리 뒤에는 살코기 또는 생선으로 만들어진 스프가 나왔다. 손님들은 격식 없이 젓가락으로 스프 안에 있는 작은 덩어리들 또는 파이 조각들을 건져먹었다. 식사 중간에 끊임없이 차가 대접되었다. 중국인들이 마시는 음료들 중 가장 일반적인 음료인 차는 술만큼이나 데워져있었다. 이처럼 뜨거운 차를 마시는 중국인들의 습성 때문에 식은 차를 다시 부어넣고 새로운 차로 내주는 하인들이 늘 연회장에 대기하고 있다. ... <u>집주인은 마지막으로 과일을 대접하기에 앞서 손님들에게 잠시 여유를 주기 위해 정원 또는 다른 장소로 안내한다.</u> 이 막간에 희극인들은 식사를 하며, 하인들은 탁자를 치운다. 다른 하인들은 20접시 또는 24접시로 구성된 코스처럼 20접시 또는 24접시로 구성된 후식들을 내온다. 이 후식들은 설탕조림, 과일, 젤리, 햄, 말린 오리고기 등이었다. 정말로 진미라고 안 할 수 없다.⁹⁷⁾

接客·자리 배치·公演과 食事의 진행 등 어느 한 순간도 禮法에 따르지 않는 때가 없는데, 이는 宴會가 宴會 主管者가 소속된 共同體를 그대로 옮겨온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宴會에는, 位階秩序와 그에 따른 관계구도·낮은 사회계층과 女性의 소외 등, 宴會 主管者가 소속된 共同體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禮法, 그리고 社會秩序와 通念이 잘

95)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p.192~193.

96) 上同, pp.193~194.

97) 上同, pp.194~195.

드러난다. 이것은 主管者, 손님, 그리고 下人의⁹⁸⁾ 행동과 위치에 관한 상세한 서술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滿洲族은 宴會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앞서 부메 일행을 宴會에 초대한 滿洲族 總督은 滿洲族이 사용하는 찻그릇(a dish of Tartarian Tea)을 사용하는 동시에 양손으로 찻그릇을 쥐고 바닥에 닿을 만큼 절을 하는 漢族의 禮法을 따랐다. 즉, 滿洲族 역시 보편적 관계형성 방식, 즉 禮法에 따랐다. 동시에 자신들의 慣習과 漢人의 慣習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음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저녁식사는 접견실에 준비되었다. 접견실 안에는 서로 마주보도록 두 줄로 배치된 식탁들이 있었다. 宴會는 일부는 滿洲族의 慣習, 일부는 漢人의 慣習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宴會에서 따라야 했던 골칫거리 格式을 차리지 않아도 됐다.”⁹⁹⁾ 이러한 滿洲族의 漢人 慣習의 수용은 강력한 政策도 생활방식의 변화(遊牧生活 → 定着生活)와 主體性이 강한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변화를 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IV. 結論

康熙年間 外國人 宣教師는 西洋文物에 큰 관심을 가졌던 皇帝의 후원 속에서 首都와 地方을 무대로 선교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北京에 체재한 宣教師들은 皇帝의 필요와 그에 해당되는 능력(工學的·醫學的·藝術的·天文學的 능력)에 따라 皇帝와 朝廷의 크고 작은 일에 빈번하게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滿洲族과 滿洲族의 통치방식을 이해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따라, 北京의 宣教師들은 주요 선교대상으로 주시해오고 있던 漢族과 함께 滿洲族을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찰은 지도제작 및 통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國人이라는 신분에 의한 행동의 제약 때문에 일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많다. 이와 같은 北京의 宣教師가 가진 현실적 감각 및 관찰의 중점을 고려해서 본고는 그들이 본 滿·漢의 日常으로부터 滿洲族 統治者の 의도를 포함해서 清代 社會의 성격을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外國人 宣教師가 지켜본 康熙年間 北京社會는 滿洲族과 漢族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단계에 있었다. 여기에는 滿洲族 統治者の 이분화된 이미지(理想的 支配者和 普遍的 統治者)의 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실효성은 적지 않은 측면에서 의심된

⁹⁸⁾ 연회가 끝나면, 요리사, 회극인, 하인은 손님들로부터 돈이 들어간 붉은 종이봉투를 받는다. 액수는 집주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즉, 연회를 준비한 이들 또한 보수를 챙김으로써 연회로 인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와 배분은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

⁹⁹⁾ 『The General History of China』Ⅱ, pp.186~187.

다. 普遍的 統治者의 이미지는 滿洲族과 漢族에게 중첩되었고, 漢族은 理想的 支配者의 이미지로부터 소외되었는데, 이것은 日常 속에서 滿洲族의 漢族 文化 수용과 漢族의 自文化 유지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滿洲族 지배자의 의도에 역행하는 支配民族과 彼支配民族의 공감대 형성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는데, 여기에 동일한 行動樣式(禮法)에 의한 日常의 통제, 즉 社會生活의 영위도 영향을 미쳤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동일한 관점의 적용, 즉 관점의 공유는 가시화가 쉽고 과급력이 큰 外樣과, 특히 服飾, 그에 관한 가치관에서 팽창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滿洲族과 漢族의 공감대에서 漢族의 文化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현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편화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통치를 행하고자 한 滿洲族 統治者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물리적 억압 없이 다수를 차지하는 漢人과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 普遍性을 쉽게 버릴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치열한 상호작용은 淸이 단순히 滿洲族 또는 漢族의 文化에 기대거나 滿·漢의 대립구도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부록 1> Jean Baptiste Du Halde가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1735)을 저술할 때
참고한 예수회 기술들의 출처

성명	중국방문시기	국적	성명	중국방문시기	국적
Gabriel Magbelaens ¹⁰⁰⁾ 1609-1677 安文思	1640년	포르투갈	John Baptist Regis ¹⁰¹⁾ 1663-1738 雷孝思	1698~1738년	프랑스
Martin Martini ¹⁰²⁾ 1614-1661 衛匡國	1642~54년 1659~61년	이탈리아	Joseph Henry de Premare ¹⁰³⁾ 1666-1735 馬若瑟	1699년	프랑스
Philip Couplet ¹⁰⁴⁾ 1623-1693 柏應理	1656년	프랑스	Peter Jartoux ¹⁰⁵⁾ 1668-1720 杜德美	1701년	프랑스
Ferdinando Verbiest ¹⁰⁶⁾ 1623-1688 南懷仁	1659~88년	벨기에	Joseph-Anne-Mary de Mailla ¹⁰⁷⁾ 1669-1748 馮秉正	1701~48년	프랑스
John de Fonteney ¹⁰⁸⁾ 1643-1710 洪若翰	1687~1703년	프랑스	Julian Placidus Hervien ¹⁰⁹⁾ 1671-1746 赫荅璧	1701년	프랑스
Francis Noel ¹¹⁰⁾ 1651-1729 衛方濟	1687~1708년	프랑스	Peter de Goville ¹¹¹⁾ 1668-1758 戈維里	1701년	프랑스
Joachim Bouvet ¹¹²⁾ 1656-1730 白晋	1688~1730년	프랑스	Lewis Porquet ¹¹³⁾ 1671-1752 卜文氣	1701년	프랑스
John Francis Gerbillion 1654~1707 張誠	1688년	프랑스	Alexis Gollet ¹¹⁴⁾ 1664~1741 郭中傳	1701년	프랑스

Lewis le Comte ¹¹⁵⁾ 1655~1728 李明	1688~91년	프랑스	Claudius Facquemini ¹¹⁶⁾ 1669~1735? 彭加德	1703년	프랑스
Claudius Visdelou 1656~1737 劉應	1688년	프랑스	Cyr Contancin ¹¹⁷⁾ 1670~1732 龔當信	1706년	프랑스
Vincent de Tarte 1669~1724 湯尚賢	1688년	프랑스	Antony Gaubil ¹¹⁸⁾ 1689~1759 宋君榮	1722년	프랑스
Dominique Parrenin ¹¹⁹⁾ 1665~1741 巴多明	1698년	프랑스	Francis-Xavier Dentrecolles ¹²⁰⁾ 1662~1741 殷弘緒	1741년	프랑스

100)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로 1640년에 중국에 와서 Adam Shall을 보좌했다.

101)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698년에 중국으로 가서 40년간 과학 및 선교 활동을 했으며, 지도 제작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102)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로 지도제작자이자 역사가로 활동했다. 1642년 마카오에 도착해서 중국어를 익힌 후, 1643년 杭州, 浙江으로 건너가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선교 사업을 전개했다. 1655~58년 사이에 잠시 로마에 귀국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사망 시까지 항주에 머물렀다.

103) 1698년 3월 부베와 함께 암베르프르호에 승선하여 1699년 중국에 도착했다.

104)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656년 Michał Boym이 이끄는 선교단에 참여해서 중국으로 갔다. 1665~70년 박해기간에는 광둥에 피신해있었으며, 1681~93년에는 在中 예수회 선교단의 대리인으로 로마에 파견되었었다.

105)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01년에 중국에 왔으며, 皇輿全覽圖 작성 작업을 도왔다.

106) 벨기에 예수회 선교사로 1659년 마카오에 도착해서 천문학자 및 수학자로 활동하며 죽을 때까지 중국에 체재했다.

107) 마일라는 1669년 프랑스 이제르(Isère) 마일락城(Maillac)에서 태어나 1748년 북경에서 사망한 예수회 선교사이다. 1686년에 예수회에 입회한 마일라는 1701년 선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중국으로 향했다. 그는 1703년에 모로코에 도착했으며, 한동안 廣東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머물렀다. 마일라는 강희제의 명에 따라 동료 예수회 선교사들과 -Jean-Baptiste Régis, Roman Hinderer 등- 함께 지도제작을 위해 河南, 浙江, 福建, 臺灣의 섬들을 조사했는데, 이 일로 강희제로부터 관직을 수여받는다. 건륭제는 79세의 나이로 북경에서 사망한 마일라를 위해 그의 장례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처럼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마일라는 40년 가까이 중국에 머물면서 갖게 된 중국 史書에 대한 깊은 조예와 중국 각 지역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지도들이 첨부된 중국의 역사와 관습에 관해 서술한 『Histoire générale de la Chine, ou Annales de cet Empire; traduit du Tong-kien-kang-mou par de Mailla』(Paris, 1777-1783)을 출간한다. Joseph Jouve는 이 저서를 참고해서 특별히 만주족의 중국정복 역사에 중점을 두고 기술했다.

<부록 2> 『康熙順天府志』 卷之二 地理・風俗, 36~38쪽.

1월(正月)	元旦, (백성) 모두 盛服하고서(잘 차려 입고서), 焚香하여 天地에 공경을 표하고(禮를 올리고), 옷어 른게 절을 하고, 친지와 벗에게 명함을 건네고 서로 절을 주고받는데, 이를 ‘拜年(세배)’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등을 나뭇가지에 연결해서 대마루에 다는데,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에 등을 단다. 밤에 불 을 켜는 것을 ‘天燈’이라고 한다. 8일에서 17일에 이르기까지(기간), 상인들은 저잣거리에 모여 장사를 하는데, 花燈, 百貨(여러 財貨), 그리고古今의 기이한 물건까지 없는 게 없이 서로 교역을 한다. 이를 ‘燈市’라고 한다. 예전엔 東華門 밖에, 지금은 正陽門 밖 琉璃廠에 분산되어 있어 있는데, 하늘이 宮(궁궐, 宗廟)를 도 와 번성하게 한다. 이는 대보름(元宵) 전후로 易금부(金吾)에서 금한다.
2월	음력 2월 보름(花朝)에 이를 때까지, 적은 푸르름을 엮고 나무를 심어, 봄소식(花信)을 전하기 시작

- 108)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687년에 중국에 왔다가 1703년에 귀국했다.
- 109)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01년에 중국에 왔다.
- 110) 벨기에 예수회 선교사로 1687년에 중국에 와서 1708년에 귀국했다. 淮安에서 선교 사업을 펼쳤으며, 南京 및 마카오 예수회 선교단에서 사무를 보았다.
- 111)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01년에 중국에 와서 江西에서 선교 사업을 전개했다.
- 112) Henri Cordier, 『Bibliotheca Sinica』 II, Paris, (1904~1922) p.1056. ; 부배 신부는 프랑스 망(Mans)에서 망의 지방법원 자문위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1673년 프랑스 예수회에 입회한 그는 수학적, 학자적 재능이 뛰어나 중국으로 파견된 첫 번째 프랑스 예수회원 그룹의 일원으로 선발되었다. 이 그룹은 1688년에 중국에 도착한 후 바로 북경으로 갔다. 새로 도착한 다섯 선교사(Bouvet, Gerbillon, Le Comte, Tachard, Visdelou) 중 다른 동료 신부들은 지방으로 보내졌지만, 부배와 제르빌롱은 북경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다. 1693년부터 1699년까지 부배는 잠시 유럽에 돌아가 있었다. 이 시기와 1706년 중국 전례 문제에 대한 만주제국의 특사로 광둥으로 간 여행을 포함해서 황제의 신하로 여기저기 짧게 여행 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부배는 37년간 제국의 궁정에서 일하며 북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처럼 황제와의 친밀한 관계에 따라 그는 중국 지방 도시에 살던 예수회원과 다른 시각, 즉 만주제국의 눈으로 중국을 보았다.
- 113)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01년 중국에 와서 주로 江南에서 활동했다. 雍正帝의 박해로 마카오로 추방되었으나, 1741년 다시 浙江・江南으로 돌아온다.
- 114)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寧波에 와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727년 廣東으로 추방된다.
- 115) 프랑스 보르도 출신으로 1671년에 프랑스 예수회에 입회했다. 1687년 루이 14세의 명을 받은 르콩트는 Jean de Fontaney(1643 - 1710) 인솔의 선교단에 합류하여 중국으로 향한다. 그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1688) 천문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강희제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한다. 이에 따라, 르콩트는 중국의 정황 및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1691년 프랑스로 돌아가기까지 山西省과 陝西省 등지에서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다.
- 116)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03년에 중국에 와서 崇明島에서 선교 사업을 펼쳤다.
- 117)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06년에 중국에 도착했다. 杭州에서 선교 사업을 펼쳤으며, 京報를 번역하여 본국에 송신하기도 했다.
- 118)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22년에 중국에 왔다.
- 119)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698년에 북경에 도착했다. 한어와 만주어에 능숙했던 페레닌은 서양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강희제의 호의를 얻어서 그의 측근에서 물리, 의학, 유럽의 역사를 강의했다.
- 120)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로 1741년에 중국에 왔다.

	한다. 풍류와 운치를 아는 이들이 시를 지어 서로 주고 받는다.
3월	3일, 바람과 햇살(경치)이 좋을 때, 술을 신고서 교외로 놀러간다. 예로부터 속옷을 정리한다(빨래한다)는 遺風(敎化)가 있다. 淸明(양력으로 4월 5~6일)에는 남녀가 墓를 깨끗이 하러 외출한다. 술잔과 찬합을 들고 가며, 紙錢을 매단다. 절하고, 술을 땅에 부어 제사 지내고, 곡하고, 墓의 잡초를 제거해서 흙을 복돋우고, 紙錢을 墓 꼭대기에 세워서 芳樹(방향이 있는 나무)를 취하고, 園圃(채소나 과일을 심는 텃밭)를 고르고, 식사를 하고 돌아온다. 28일, 東嶽誕辰(동악이 태어난 날)에는 民間에서는 香會를 성대하게 연다.
4월	1일에서 8일에 이르기까지 佛會로 齋戒한다. 민간에서는 소금과 콩을 뿌려서 인연을 맺는다. 10일에서 18일에 이르기까지, 碧霞元君(중국 동북부 山岳지방에서 널리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 東岳大帝: 山東省에 있는 泰山의 神의 딸이라고도 하고, 黃帝가 보낸 여자라고도 하나, 요컨대, 산악신의 명칭임에는 틀림없다. 예로부터 5嶽의 하나로서 신비와 위엄을 갖추고 있던 泰山과 道教 신앙이 결부되어 생겨난 것으로, 宋나라 때에는 이미 벽하원군이라는 이름의 신을 모신 廟가 타이산에 세워져 있었다.)의 탄생을 축하한다.
5월	5일, 집집마다 五雷符(다섯 천벌 또는 벼락 부적)를 매달고, 문에 축을 꽂아두고, 정오에는 角黍(주악, 웃기떡의 하나)를 마련하고, 菖蒲酒를 담궈서, 온가족이 그것을 먹고 마신다. 雄黃(石雄黃)으로 귀와 코를 씻어내서, 해충의 독을 피한다. 11일은 都城隍神(북경성의 호성하의 수호신)의 탄생일로 거주민은 향을 피워 東嶽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13일에는 모두 關帝에게 절하였다.
6월	6일, 民間에서는 의복과 기타 일용품들 모두 햇빛에 말린다. 이 달, 海澱에 연꽃이 많이 피면, 저갓 거리에서 성까지 사람이나 수레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7월	7일 正午에, 부녀자들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물에 삶은 막을 만드는데, 수놓은 비단조각과 바늘을 던져 띄운다. 바늘의 그림자가 물바닥에 보이면, 재수가 좋아 기쁘고 운이 나쁘면 탄식한다. 15일, 모두 사찰이 盂蘭會를 연다. 밤에는 水陸으로 등을 켜서 혼령을 기린다. 淸明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청소를 행할 때, ‘秋祭’라고 한다.
8월	15일 祭月에 제사용 과일과 떡을 마련하고, 연꽃과 같은 박과 채소나 과일(오이, 참외 등)을 가리며, 月光紙를 준비한다. 그리고 달을 향해 절을 하고, 종이를 태워서 제물을 바친다. 이때 온 가족에게 반드시 두로 미친다.
9월	9일 麥餅(보리떡)과 엮은 대추와 밤을 준비하는데, ‘花糕(화고, 떡의 한 가지)’라고 한다. 종류별로 (떡을) 들고 술잔을 들고, 높이 올라 흥을 낸다. 그 중의 여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려보낸다.
10월	1일, 五色紙를 잘라서 남녀 의복을 만드는데, ‘寒衣(동복, 방한복)’라고 한다.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紙錢을 태우는데, ‘送寒衣’라고 한다. 新喪(새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白紙를 태운다. 또는 墓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 달, 추위가 시작되면, 마을 안의 나이 많은 남자어른은 대부분 제물을 기부해서 가난한 이를 돕고 서로 부지런히 모은다. 이에 곧 사찰과 廟는 죽을 베풀고, 湯을 베풀고, 綿衣(솜옷)을 베준다.
11월	冬至에, 매화나무 1가지를 그리는 풍속이 있는데, 80조각이 하나가 되게 한다. 햇빛으로 한 조각을 염색해서, 조각이 아홉에 달하면, 봄은 깊어진다?
12월	8일, 저장고에 얼음을 저장하는데, 언덕 같이 만든다. 이 날, 臘祭(음력 12월의 제사) 드리는 풍속이 있다. 아침에 콩, 과일, 雜米로 죽을 끓여서 먹는데, ‘臘八粥(납팔죽)’이라고 한다. 24일, (길흉을 점치는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夏에서 지내는 제사와 같지 않다? 30일, 고인이 된 조상의 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모여서 서로 절을 하고 집안의 제일 어른에게 공경을 표하는데, ‘辭歲(天地, 祖宗, 尊長에 절하는 일)’이라고 한다. 桃符(마귀를 쫓기 위한 복숭아나무로 만든 나뭇조각)를 세우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시간을 지새우는데, ‘守歲(집안 구석구석을 밝히고 가족들이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이라고 한다.

汪輝祖 『病榻夢痕錄』을 통해서 본 지방재판의 판결원칙*

홍 성 화(성균관대 현대중국연구소)

目 次

서론

1. 『病榻夢痕錄』에서의 재판 안전
2. 戶絶財産의 처리과정
3. 판결 과정속의 특징

결론

서론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오랜 법률 편찬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이 점은 형법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그 역사적 결산 가운데 하나가 신라와 멀리 일본에까지 영향을 준 『唐律疏議』¹⁾이며, 다시 이를 후대에 계승한 것이 『大明律例』와 『大清律例』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唐律疏議』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조항이 사회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는 점을 고찰하려고 할 때, 현존하는 당대 문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반면 명청시대, 특히 청대의 경우, 방대한 지방공문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구체적인 역사상에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대 문헌의 경우, 지방관들이 자신들의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고

* 이 논문은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11-C02)

1) 『唐律疏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원칙』 아카넷, 2004. 참조.

(“判讀”혹은 “判語”)²⁾, 중앙정부에 보낸 판결문 보고서(『刑案匯覽』³⁾ 등)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대 재판 상황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위의 문서군들은 대체로 판결이 이미 끝난 상황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 어떤 재판사안이든 사람들에게 따라서 판결은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양한 견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 수렴해 가는가야 말로 그 당시 법률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의 자료들은 대체로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고, 다만 사안의 내용과 간략한 결과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떻게 판결이 결정되는가의 논의과정을 알 수가 없다는 커다란 난점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두드러지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바로 汪輝祖(1731-1807)⁴⁾가 남긴 저작물들일 것이다. 汪輝祖는 雍正8年(1730) 浙江省 소흥부에서 태어났다. 汪輝祖는 오랫동안 幕友 생활을 경험하였고, 나중에는 과거시험에 합격, 진사가 된 뒤 知縣까지 지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저작을 남겼는데 특히 그의 自傳年譜인 『病榻夢痕錄(病榻夢痕錄)』에서는 그의 일생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서 그가 재판을 幕友⁵⁾로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정작 지현이 돼서 재판에 임했을 때의 기록은 매우 소략한데 비해서 막우로서 겪은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지방관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저 지방관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른 관원들에게 설득시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서 더욱 기억이 뚜렷하였으며, 그 기록이 상세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그는 여기에서 재판에 관여된 다양한 지방관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이 어떻게 하나로 정리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汪輝祖가 남긴 『病榻夢痕錄』의 재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뒤에, 마지막에

2) 예를 들면 藍鼎元, 차혜원 역『녹주공안 - 청조 지방관의 재판기록』(이산, 2010)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宮崎市定, 『雍正時代地方政治の實狀-硃批諭旨と鹿洲公案』『宮崎市定全集 14卷』岩波書店, 1991(原刊, 1959年). 참조.

3) 나카무라 시게오, 임대희 역, 『판례를 통해서 본 청대 형법』서경문화사, 2004. 참조.

4) 汪輝祖 개인의 사적에 대해서는 鮑永軍, 『紹興師爺汪輝祖研究』人民出版社, 2006; 滋賀秀三, 「汪輝祖 : 人とその時代」『日本學士院紀要』64-1, 2009; 洪成和, 「관감서를 통해서 본 청대 막우와 법률운용 - 왕휘조의 사례를 중심으로」『東洋史學研究』115, 2012. 참조.

5) 閔斗基, 「清代的 幕友에 대하여 - 특히 乾隆朝를 전후한 -」『歷史學報』17, 1962(同, 『中國近代史研究』일조각, 1973. 수록).

6) 청대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滋賀秀三, 「清代的民事裁判について」同, 『續・清代中國の法と裁判』創文社, 2009; 洪成和, 「청대 민사재판의 성격에 관한 논쟁 - 필립 황과 滋賀秀三의 연구를 중심으로」『사림』28, 2007. 참조.

는 이들 사례 속에서 어떠한 일반적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대 재판이 어떤 기준으로서 판결이 이루어졌는가의 一端을 소개하고자 한다.

1. 『病榻夢痕錄』에서의 재판 안건

이하 아래에서는 『病榻夢痕錄』과 『夢痕餘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재판관련 사료를 가능한 한 최대한 모아서 하나 하나의 사례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례-1> 乾隆21年(1756)丙子. 27세.

胡公은 漕運監督으로 (山東省) 臨淸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나는 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여행이 불가능해서, 無錫縣 知縣인 魏廷夔 밑에서 막우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秦君이라는 (刑名)幕友의 차석으로서 (나 역시) 刑名을 담당하게 되었다.

秦君은 法(『淸律』)의 전문가로서 律書를 숙지하고 있었다. 縣民 浦四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童養妻(민머느리)인 王氏가 浦四의 숙부인 浦經과 간통을 한 것이 발각되었다. 秦君은 ‘服制’로 논하여 充軍으로서 擬律하였다. 나는 “童養이므로 凡論으로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는데 秦君은 이에 반대하였다. 知縣인 魏廷夔는 나에게 (판결문의) 기초를 맡겼는데, 나는 凡論으로 (常州府에) 상신하였다. 常州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服制를 인용하여 却下하였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였다.

나는 이 사안을 의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服制라는 것은 남편에 따라서 따지는 것입니다. 王氏는 童養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夫婦의 명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남편의) 방계인 남편 숙부까지 따져서 (服制를) 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江蘇省 按察司(臬司)는 (내가 기초한 판결문에 대해서) “王氏가 浦四의 아버지를 翁(아버지)이라고 불렀는데, 翁의 동생은 바로 叔翁이 되는 것”이라고 또 다시 (내 판결문을) 기각하고 정정하도록 하였다. 나는 논의하여 말하기를 “翁이라는 것은 婦(머느리)의 대칭입니다. 王氏는 아직 머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翁(아버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호칭 가운데 翁이라는 것은 鄉例에 따라서 尊卑를 나누어서 나이 드신 사람에 대한 通稱이며, 따라서 翁媼(할아버지 할머니)할 때의 할아버지(翁)라는 뜻이며, ‘아버지와 머느리’라고 할 때의 翁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江蘇巡撫는 (이 사건에 대해서) “王氏는 浦四의 처가 되어서 浦氏 집안에서 민머느리 살이를 하였으므로 만약 凡論으로 논하게 될 때는 浦四 역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논하였다. “童養妻라는 것은 虛名일 따름입니다. 王氏는 습관적으로 浦四를 오빠라고 불렀고, 浦

四는 王氏를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夫婦의 사례로서 논죄할 수 없습니다. 浦四가 남편이 될 수 없다면 浦四의 삼촌도 역시 작은 아버지(叔翁)가 될 수 없습니다.”

江蘇巡撫는 이는 (三綱五倫의) 명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다시 기각하여 수정하도록 하였다.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禮記』에도 廟堂을 보지 못한 며느리가 죽으면 여자 측의 黨에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는 (정식의) 며느리가 아닌 까닭입니다. 또한 『禮記』에 이르기를 附하는 것은 가벼운 것을 따른다(『禮記』『王制篇』)고 하고, 사람의 죄를 附할 때는 가벼운 것으로 比한다고 합니다. 『書經』(『大禹謨』)도 역시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다만 가벼운 것으로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민며느리라는 것은 (일반) 며느리와 같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王氏가 이미 浦氏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凡論으로 논하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凡論보다 약간 더 중하게 벌을 내리는 것은 가합니다만, 服制로서 죄를 논하는 것은 ‘가벼운 것을 따른다’라는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설령 (일반) 간통한 자보다 중하게 벌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成婚한 것과 같은 것으로 논한다면 그 차이가 클 것입니다. 청컨대 무거운 쪽을 따르게 하여 (浦經에게는) 枷號3개월을 내리고 王氏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浦經은 浦四를 위하여 따로 처를 내리게 한다면, 아마도 (일방적으로 그 처벌이) 가벼운 것만을 따르는 경우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江蘇巡撫의) 재가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내 이름은 江蘇巡撫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江蘇巡撫는 (廣東省) 番禺縣 출신인 滋圃 莊有恭 선생이다.

이 <사례-1>에서 말하는 ‘童養’이라는 것은 이른바 ‘민며느리’이다. 이런 관행이 생기는 것은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이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사회에 남자가 결혼할 때는 신부에게 고액의 ‘聘財’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童養’을 맞이함으로써 빙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신부의 가족들은 신부가 결혼적령기까지의 양육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사례1>에서의 논점은 ‘童養’을 실제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만약 童養을 정식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大清律例』『刑律』『犯姦』『親屬相姦』에 따르면 “總麻 이상의 친척 및 總麻 이상의 친척의 처, 처의 전남편의 딸 및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는 다른 자매와 간통을 했다면, 淸律에 따라 죄를 논해야 하고, 姦夫는 부근 衛所에 充軍시켜야 한다”라고 매우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여기에 ‘服制’로서 논해야 한다는 의견은 童養妻를 정식 결혼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남편의 친척과 간통한 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汪輝祖가 ‘凡論’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童養妻를 정식 妻가 아니라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童養을 既婚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淸律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논거로서 『書經』이나 『禮記』를 들어서 자신의 논거로 삼았던 것이다.⁸⁾

<사례-2> 乾隆23年(1758) 戊寅. 29歲.

常熟에 虞山이라는 곳이 있다. 虞仲과 言子の 묘가 여기 있다. 虞仲의 묘는 위에 있고 言子の 묘지는 아래에 있다. 虞仲 자손의 성씨는 仲氏라고 한다. 자손들이 성묘를 할 때면 반드시 言氏의 묘를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言氏들은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마다 다툼이 있어서, 縣을 거쳐서 知府, 나아가 巡撫까지 이르렀는데, 10여년 동안 해결이 나지 않았다. 江蘇巡撫는 胡公에게 조사·심의하도록 맡겼다. 仲氏들은 言氏의 묘가 虞氏墓의 禁地 내에 있으며, 言氏는 그 墓道를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言氏의 譜牒에 따르면 그 경계는 이미 漢代에 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墓道 왼쪽에 10여장 떨어진 곳에 가시덩굴이 우거진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言氏들은 仲氏들이 이 길을 열어서 여기로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仲氏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 사안은 미결상태로 지속되었다.

나는 (『大清律例』와 같은) 법률로서는 이 사안이 끝나지 않으리라 여겼다(“余以爲非可例定也”).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墓 앞에 禁地가 있다는 설은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고, 仲氏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言氏들의 족보에서 墓道가 이미 漢代에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 황당무계하다. 虞氏 집안은 선배이고 言氏 집안은 후배이고 그 사이에 수 백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다. 虞氏는 나라를 양보해서 (남쪽으로) 망명한 분인데 이 작은 땅에 연연할 리가 있겠는가. 言氏는 (북쪽 지방의) 學文을 남쪽 지방으로 전파한 분으로서, 예의와 양보를 가장 앞서 세우는 분인데, 先賢과 길을 놓고서 다툴 리가 만무하다. 虞氏와 言氏가 서로 다투는 것은 祖宗의 분의라고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正道를 버리고 다른 가시밭길로 (仲氏들이) 다니게 된다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례를 모시는 자의) 예의도 아니게 될 것이다. 마땅히 仲氏로 하여금 매년 성묘할 때에 虞氏의 墓道를 따라서 올라가게 끔하고, 墓道 이외에 (가시밭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幽魂을 높이고 소송남발(囂風)의 풍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안은 마침내 해결되었다.

7) 한편 薛允升의 『讀例存疑』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讀例存疑』卷32『刑律之八』,『人命之一』,『殺死姦夫』, “一, 凡童養未婚之妻, 與人通姦, 本夫及夫之祖父母, 父母並有服親屬捉姦, 殺死姦夫姦婦者, 均照已婚妻例問擬. 此條係嘉慶六年, 安徽按察使恩長條奏, 未婚妻本夫之父母, 伯叔, 兄弟有服親屬捉姦, 殺死姦夫, 請定條例一摺, 奏准定例. 謹按. 未婚妻係已聘定, 尚未迎娶者. 童養妻係送至夫家, 尚未完婚者. 童養之名不見於古, 民間貧乏之家安於簡陋, 遂至相習成風, 到處皆然, 舍禮從俗, 蓋亦不得已之意也.” 이에 따르면 嘉慶6年(1801), 安徽按察使 恩長(?-1853)의 상주로 인해서 童養을 ‘已婚妻例’로 논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薛允升은 童養慣行에 대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已婚妻例’로 논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病榻夢痕錄』의 <사례1>은 1756년의 사례이므로, 童養未婚을 ‘已婚妻例’로 논한다는 조례의 변경 이전이고, 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8) 清代 재판에서 유교경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滋賀秀三, 『法源としての經義と禮、および慣習』, 同, 『清代中國の法と裁判』 創文社, 1984,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虞仲은 周나라의 시조인 古公亶父의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라를 물려 주고자 하는 후계자는 막내아들 季歷임을 알고, 荊蠻의 땅으로 망명하였다는 전설상의 인물이다.⁹⁾ 그리고 言子(B.C.506-B.C.443)는 孔子의 제자로서 常熟 출신으로서 유일한 南方人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文學을 남쪽 지방으로 전파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래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묘지 분쟁을 史書에 의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사례-3> 乾隆25年(1760) 庚辰. 31歲.

(蘇州府) 長州縣에 周氏 집에 시집을 간 張氏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집이 부유하였다. (그녀는) 19세에 과부가 되어서 유복자인 周繼郎을 낳았는데, 周繼郎이 18세가 되어서 8월에 장차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7월에 병을 앓다가 요절하고 말았다. 주씨 집안은 繼郎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張氏의 남편의 양자를 세우려고 하였고, 장씨는 (아들) 繼郎의 후사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 분쟁이 점점 엄혀서 마침내 소송까지 이르렀고, 전임 지현들은 모두 房族들에게 公議로서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2월에 知縣 鄭君이 소송장을 수리하였다. 장씨가 (재판정에 나와) 아뢰기를 “(아들) 계량을 잃은 고통은 유복자를 홀로 키울 때보다 백배는 더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죽으려고 하였으나 죽는 것이 무어에 아깝겠습니까. 단지 후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올해 이미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으니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 다. 다만 (후사가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남편과 아들의 귀신이 (제사를 받지 못해서) 굶주릴 것이 두려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이 매우 애통하였다. 내가 관련문건 전부를 꺼내서 (일일이) 조사하기 위하여 (서류를 쌓아 놓으니) 그 두께가 몇 척이 될 정도로 많았다. 죽인이 후계를 세우도록 張氏가 소송을 하였고, 장씨가 후계를 세우도록 죽인이 고소하였다. (지현이 쓴) 명령서는 房族에게 (매번) 돌아가긴 했으나 지방관은 별 다른 정해진 대책이 없었다. 乾隆19年 장씨가 한 사람을 지목하여 후손을 세웠고, 房族은 말하기를 그 아이가 포대기에 막 떨어져서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서, 후에 다른 異見이 생겨서 끝내 질질 끌어서 해결이 나지 않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판결문의 초안을 기초하였다. 장씨가 유복자 계량을 길렀으나 혼사를 앞두고 죽었으니, 그 상심은 필시 보통 사람의 몇 배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 만약 후사를 세우지 않는다면, 繼郎은 끝내 (후사가) 끊어지고 마니, 18년동안 (고아를) 기른 고충은 끝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후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실로 人情에 가까운 것이다. 죽인이 계량이 결혼하지 않아서, (양자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엄마가 없는 셈

9) 『史記』『周本紀』“古公有長子曰太伯, 次曰虞仲. 太姜生少子季歷 … 長子太伯・虞仲知古公欲立季歷以傳昌, 乃二人亡如荊蠻, 文身斷髮, 以讓季歷.”

이 된다고 하는데, 천하에 엄마가 없는 아이는 없는 법이다. 이런 주장은 (儒敎) 經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일찍 죽은 자의 후사가 된 자는 원래 입어야 될 服으로서 服喪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禮記』(『喪服小記』)에 분명히 나온다. 요절한 자에게 과연 후사가 없다면 누가 후사가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淸律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禮記』에 따라서 융통하면 될 것이다. 후사를 끊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후사를 이어서 貞婦의 뜻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나으리라. 乾隆19年 장씨가 손자로서 후사로 삼고자 하는 자는 현재 16세로서, (사당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인) 昭穆도 합당하다. 바로 논의를 정할 수 있으니, 어찌 피차 서로 싸워서 소송문건으로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막우를 하고 있는 동료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갓집에 관련된 사안에서 律例를 버리고 『禮記』를 인용하는 (내가 처리한) 사안은 매우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향차 여러 번 房族에게 판결을 낸 안건의 경우, 지방관이 홀로 터무니 없는 판결(臆斷)을 내린다면 틀림없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鄭知縣은 (내가 기초한) 판결문을 보고 크게 놀라서 여러 번 다시 쓰기를 부탁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房族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백성의 부모(=지방관)가 되어서 절부(節婦)에게 한을 품고 생을 마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주인(=지방관)을 대신해서 붓을 잡아서, 주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해서는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사안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오로지 사리를 논할 따름입니다. 판결문(批)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 판결문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판결문을 기초하는) 막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여 鄭君에게 사직을 청하였으나, 그는 억지로 내가 기초한 판결문을 (정식 판결문으로) 사용하였으나, 기꺼워하는 낫빛은 아니었다. 張氏 부인이 후사로 삼고 싶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후사를 세우는 것에 관한 遵依結狀을 써서 (제출하여서) 사안이 완결되었다. 후에 불초한 族人들이 여러 번 불복하였으나, 모두 송장수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5월5일 오찬만찬에, 巡撫께서 朱單을 손에 쥐고, 현에 (앞서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오찬에 참석한) 손님들은 모두 놀랐다. 나는 “저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하늘이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하물며 상관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라고 하였다. (巡撫는 소송문건을) 4일 동안 살폈는데, 鄭知縣이 巡撫를 만나 뵈었는데, “(왕취조가 쓴) 판결서는 적절한 것”이라고 매우 칭찬하였다고 돌아와서 (나에게) 전해 주었다. 비로소 (族中에) 생원이 있어서 上控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蘇州府知府가 친히 심리를 벌여서 (生員의) 나쁜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였다. 정지현은 상관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크게 기뻐하였다. 巡撫는 (廣東省) 桂林 사람인 陳宏謀로서 재판은 모두 친히 심리하였다. 모든 上控의 안건을 모두 (하급기관에 다시 내려 보내서) 조사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먼저 朱單으로 소송문건을 열람하도록 한 뒤에, 어떤 경우 (판결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 지방관과 막우를 훈계하였다. 이로서 한 때 吏治가 숙연해졌는데, 이는 陳宏謀 때문이다.

사안의 내용은 매우 길지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이른바 ‘戶絕財産’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3>의 마지막에는 乾隆年間の 유명한 관리인 陳宏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경우 江蘇巡撫가 모든 ‘上控’의 안건을 일일이 심의할 정도로 매우 열성적으로 행정에 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례-4> 乾隆26年(1761) 辛巳. 32歲.

縣民 (가운데) 許天若이라는 자가 있어서 1월5일 황혼에 술에 취해서 이웃집 蔣氏의 부인인 虞氏와 마주치게 되어서 손으로 (자신의) 돈 주머니를 치면서 입으로 돈이 있으니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였다. 虞氏는 (여기에 성희롱의 뜻이 있으니) 욕을 한 뒤에 서로 헤어졌다. 그 다음 날 虞氏는 (관아에) 소송을 접수했지만, (知縣의) 심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2월1일 縣衙門으로 와서 심리를 독촉하였다. (虞氏가) 돌아가는 길에 許天若과 서로 마주쳤는데, 許天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며 꾸짖었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다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2월2일 밤에 虞氏가 목을 매어 자진하였는데, 孫師가 임명을 받고서 바로 검시를 하러 왔다. 이 때 松江府에서는 張圻逢과 나는 지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었다. 虞氏가 살 던 곳은 張幕友가 맡은 곳이었는데, 張幕友는 이 안건이 內結을 거처야 되는 것이라고 하여서 許天若을 구금하여 (刑部에) 통보하려고 하였다. 나는 (『清律』에서 말하는 부녀에 대한 강간미수로) 부끄럽고 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外結(外結)이면 가하다고 하였으나, 장막우는 크게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孫師는 나에게 (張幕友를)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나는 杖刑과 枷號로 기초하여 通詳으로 보고하였다.

순무는 許天若을 구금하였고, 아울러서 먼저 律例를 찾아서 의논하여 詳文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만 희롱을 겪은 경우 본디 부녀가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서 자진을 하는 경우, 律例에 따라 마땅히 교형으로 판결을 해야 되지만, 본래 희롱하거나 강간하려는 의도가 없고, 다만 버릇없는 말이 튀어나와서 부녀가 이를 듣자마자 삶을 가볍게 여긴 것이니, 律例에 따르면 유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수치스러움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해소되는 것이니, 율례에서는 “행위가 있”은 뒤에 “바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했을 때는 바로 희롱과 모욕의 말을 들었을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虞氏가 생명을 버리는 날은 許天若이 술을 마시자고 한 날에서 이미 28일이나 지난 것입니다. 만약 수치스럽고 분노 때문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날과 자살한 날이)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1월6일부터 2월1일까지 이웃들은 평안하게 살았고 예전의 모욕은 거의 잊은 상태입니다. 그 (虞氏가) 죽은 이유는 虞氏가 재판을 독촉하였는데, 許天若이 그를 향해 욕을 하여서 분한 마음에 자살한 것이지 부끄럽고 분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기초한 판결대로) 장형과 枷號에 처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蘇州府와 按察使는 이를 전달하였으나, 순무가 이를 다시 반박하였다. 따라서 流罪의 규정에서 減一等하여 杖一百 徒罪3년에 처해졌다.

이 일은 竝進 정월에 병을 앓고 있던 꿈속에 虞氏가 나타나서 나를 가르켜서 (冥府에) 고소하였다. 冥司가 말하기를 “왕휘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許天若이 (絞刑에) 해당되지는 않긴 하지만, 虞氏 역시 請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冥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니, (이를 보아도) 정의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冥府에서도 역시 (이 사건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건으로서 (冥府의) 현안이 되었던 것 같다. 刑名을 담당한 사람들이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律例는 『大清律例』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條例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강간이 성공하지 못하고, 희롱을 겪은 경우 그 남편이나 부모 친족 및 당사자 부인이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서 自盡을 하는 경우, (해당 범인을) 絞刑監候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항목의 條例를 보면 “村野의 愚民이 본래 강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강제로 욕을 보이려고 하는 情狀이 없었는데, 다만 희롱하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 부인이 그 희롱하는 말을 듣고 바로 자진하였다면, ‘強姦未成本婦羞忿自盡例’에 비추어서 減一等하여 杖一百流三千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사안이 과연 자진한 虞氏를 어떤 條例에 비추어서 판결할 것인가, 즉 許天若의 행위를 강간으로 볼 것이냐 성희롱으로 볼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었다. 결국 성희롱으로 판결되어 ‘杖一百 徒罪3年’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꿈에 虞氏가 나타나서 冥界에 고소를 하였고, 거기에는 현실의 裁判官 처럼 冥司가 다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여러 단계의 재판단계가 있듯이, 죽은 자는 저승에서 다시 이승의 판관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여기에서 ‘請旌’이라는 것은 忠孝節義의 사람들이 조정에 이를 표창해 줄 것을 청하는 것으로, 왕휘조의 판결에 따라서 虞氏는 가벼이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請旌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례-5> 乾隆26(1761) 辛巳. 32歲.

浙江省 秀水縣 가운데 陶世侃이라는 貢生이 있었는데, 매우 부유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 아버지인 陶惠先은 장방(長房)의 외아들이면서 叔父의 양자가 되어서 世侃을 비롯한 5 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長子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자, 例에 따라서 차자의 아들 陶璋이 후사가 되었다. 세간은 셋째아들로서 자신의 아들로서 큰 형의 후사를 삼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유언을 날조하여 遺命이라고 하여서 陶璋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 후사로 잇게 하였다. 次房이 된 자가 말하기를 “(陶世侃의 주장대로 한다면)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후사를 잇게 되는 것이니, 例로서는 후사를 이을 수 없는 것이다. 三房을 맡은 자가 말하기를

本生은 자식이 있으나 후손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인정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다. 양자로 삼게 한다는 설도 불가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송이 按察使와 巡撫까지 도달하였으나, 錢文端公(陳羣), 諸宮詹(錦) 및 紳士 여러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모여서 토론하였으나 (논의만) 분분할 뿐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 때 孫師는 河南省 開封府 同知로 승진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절강) 순무인 莊公은 이 사안이 富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秀水縣에서 논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다. 나는 절충을 할 수가 없어서 밤새 생각을 하다가, 홀연 『禮記』에서 요절한 사람과 후사가 없는 자는 조부에게 耐食한다는 구절이 기억났다. 여기에 孫師를 도아서 斷案을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제사지내는 것은 반드시 안되는 일이다. 陶惠先이 숙부의 후사로서 나왔기 때문에 단언코 다신의 차자를 本宗(陶惠先의 實父)을 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實父가) 아들이 있으면서 제사가 끊어지는 것은 人情으로서 편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컨대 그 실부의 위패를 그 아버지(陶惠先)으로부터 보면 祖父)인 愛泉이라는 一支에 耐食하여서 惠先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라. 유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莊公에게 크게 상을 받았다. (이 판결문을 쓴 막우가) 누구인가 물어보셔서 내 이름을 아신 뒤에, “이 사람은 내가 강남에 와서 오랜만에 알게 된 참다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뒤에 나를 불러서 접견하셨다. 일시에 허명이 생겨서, 錢塘江 주변의 嘉興府 海鹽(縣)이나 平湖(縣) 등에서 다투어 關聘(초빙하는 서신)을 보내 왔다.

여기에서 ‘本生’이라는 것은 양자가 자기의 생가(生家)를 이르는 것이고, ‘耐食’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을 그 조상의 사당에 후사가 없는 사람의 신주를 같이 모셔서 제사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례-6> (乾隆) 28년 癸未, 34세.

(浙江省 嘉興府) 平湖縣에서 막우를 할 때의 일이다. 예전에 (浙江省 湖州府) 孝豐縣民인 莊氏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물건을 강탈당하였다. (孝豐縣에서는) 通詳으로 범인의 수배를 널리 알렸다. 연말연초의 휴가(封篆)를 맞아서 나는 고향에 돌아와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였다. 군대에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온 ‘성대(盛大)’라는 자가 匪徒를 모아서 搶奪을 했다고 하여서 (체포하여) 심문하니, 강도사건의 진범이었다. (平湖縣) 知縣인 劉君께서는 (고향에 머물고 있는) 나를 부르시어 바로 관아에 돌아와서 供招를 살펴 보게 되었다. (供招에서는 범죄를) 계획하고 무리를 모으고, 강도짓을 하여 (물건의) 주인을 해하며,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 등에 관한 조항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바로 강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탈되었던) 藍布綿被가 피해자의 확인까지 거친 상태였다. 그날 밤 劉君에게 부탁하여서 다시 조사를 하시도록 하였다. 나는 (劉君께서 다시 조사하시는 것을 관아의) 正堂 뒤에서 이를 듣고 있었다. 하나 하나 자백

할 때마다 두려운 기색이 없었고, 진술하는 범인의 모습을 보아하니, (진술이) 매우 숙련되어서 마치 책을 외는 것 같았다. 또한 수괴와 종범 등 8명의 진술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나는 이 점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다음 날 劉君에게 도착하여서 고의로 사안을 더하고 뻔 정황이 있다고 하고, (수괴와 종범을) 따로 따로 떼어 놓고 심문을 하게 하니, 어떤 자는 범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부인하기도 하여 8명이 각각 (진술 내용이) 달랐다. 심지어 어떤 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자도 있었다. 드디어 심문을 끝내게 하였다. (나는) 현의 서리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藍布綿被를 새 것과 현 것으로 20여장 사도록 하였다. 나는 몰래 (藍布綿被 위에) 표시를 해 놓고서, 섞어 놓은 뒤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잃어 버린 원래) 藍布綿被를 찾도록 하였다. 劉君께서는 正堂에 서서 다시금 확인토록 하였으나, 끝내 (피해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판별할 수 없었다. 이에 각 범인들은 모두 (이미 자백한 것을) 부인하였다. (내가) 그 연유를 세세히 캐물으니, 盛大가 (逃軍한 죄로 체포되어) 관아에 압송되었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逃軍해서 강도질까지 범하였으니 더욱 살 수 없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심문을 받게 되었을 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벌이지도 않은) 강도사안까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여서 거짓 자백하였고, 그를 따르는 무리 역시 부화뇌동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장물이라고 하였던 것은 자신의 물건이며, 이 옷감을 만든 이도 있었다. 설사 (그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죄는 사형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알려주니) 드디어 그 혐의를 (스스로) 벗게 되었다.

2년이 지나서 劉君이 保舉로서 知府로 승진하여 (황제를) 인견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 이 사건의 범인이 (江蘇省 蘇州府) 元和縣에서 검거되었고, 피해자 역시 (빼앗긴) 장물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劉君은) 임지로 돌아간 뒤에 (다시) 蘇州府로 와서 이 사건을 (蘇州府 知府와 함께) 會審하여 사안을 끝내게 되었다.

이 사례는 판결 그 자체에 주목할만한 점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지만,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수괴와 종범 등 8명의 진술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점이 의심스러워서 철저히 밝혀서 자백을 한 자들이 무죄라는 점을 밝혀 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汪輝祖의 개인에 해당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일지도 모르나, 앞서 <사례-3> 陳宏謀의 사례와 아울러서 생각한다면, 청대의 재판이나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2. 戶絶財産의 처리과정

그 다음 사례는 매우 긴 내용을 지닌 두 가지 사건으로 모두 戶絶財産의 귀속문제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戶絶財産, 특히 南宋時代의 사례에 관해서는 仁井田陞과 滋賀秀三의 논쟁 이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南宋時代의 판결문인 『後村先生大全集』에 “법률에, 부모사망 후, 남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자는 남자의 반을 취득해야 한다(在法, 父母已亡, 兒女分産, 女合得男之半)”라는 구절을 仁井田陞은 이는 여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남송시대 특히 화남지방의 고유한 지역색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¹⁰⁾

이에 대해서 滋賀秀三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였다.¹¹⁾ 그의 주장의 핵심은 “父子一體, 分形同氣”의 원리에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제사를 이어받는 주체는 오로지 남성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이어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은 제사의 상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고로 제사를 이어받을 수 없는 여성은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논리의 골자이다. 다만 장래 아직 미혼인 딸을 위하여 혼인준비자금(‘嫁奩’)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가능하며, 아직 과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생존 당시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다만 시집간 딸의 경우(嫁女), 유산은 절대로 분배되지 않으며, 그리고 과부가 아직 수절을 유지하고 있는 한에서만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과부의 사후에 亡夫의 친족들이 戶絶의 재산을 종족의 宗祠나, 친척 등에 귀속시키는 조치는 관청이 개입하는 일 없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바탕으로 하여 南宋時代, 재산권에서 婦女의 지위나 戶絶財産¹³⁾에 대한 논쟁과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이러한 남송시대에 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明清時代 裁判에서 戶絶財産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상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¹⁴⁾ 그렇다면 실제로 清代 戶絶財産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해서 「乾隆31年條」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7> 乾隆31年(1766) 丙戌 37세.

10) 仁井田陞, 「宋代の家産法における女子の地位」 同, 『中國法制史研究 奴隸農奴法・家族村落法』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62.

11) 滋賀秀三, 「中國家族法補考」(1) 『國家學會雜誌』 67-5.

12)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創文社, 1967.

13) 戶絶財産의 정의에 대해서는 滋賀秀三, 1967, 제3장 제3절 「承繼人の不存在 - 「戶絶」」 참조.

14) 明清時代 婦女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는 앞서 滋賀秀三의 포괄적인 논의 이외에도, Kathryn Bernhardt, *Women and Property in China: 960-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阿風, 『明清時代婦女의地位與權利』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夫馬進, 「中國明清時代における寡婦の地位と強制再婚の風習」 前川和也編 『家族・世帯・家門 : 工業化以前の世界から』 ミネルヴァ書房, 1993; 岸本美緒, 「妻を賣ってはいけないか-明清時代の賣妻・典妻慣行」 『中國史學』 8, 1998. 참조.

(浙江省 嘉興府) 平湖縣에서 막우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平湖縣에는 富室이 많아서 연달아서 소송을 벌이는 일이 날로 심해졌다.房族들은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관리들은 이를 핑계로 하여 수단을 부려 부정한 짓을 하곤 하였다. 나는 평소부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平湖縣 知縣인) 劉君과 나는 (종족과 관련된) 소송한 자를 막론하고 처리할 때에 房族에게 명령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인지의 여부, 그리고 應繼者는 반드시 同父의 자손이며 昭穆相當¹⁵⁾에 관한 繪圖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까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혹 그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妻가 應繼者를 고르도록 하였고, 夫婦가 모두 사망한 경우, “無後 祔食於祖之禮”를 원용하여서, 祔産으로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두 承繼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을 몇 년 동안 시행하니 소송 남발의 풍조가 조금 잦아들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無後 祔食於祖之禮”라는 것은 『禮記』에서 후사가 없는 경우 宗祀에 合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¹⁶⁾을 말한다. 또한 ‘祔産’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戶絶된 재산을 宗産으로 귀속시켜서 이를 祔食하는데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과연 寡婦가 생존하는 경우의 재산분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같은 「乾隆31年條」의 구절을 살펴 보기로 하자.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戔球’)에 대해서 교활한 자가 있어서, 總服의 숙부인 鳳于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을 틈타서, 자신이 마땅히 承繼할 순서라고 주장하였다.房族의 소송장에 근거하면, 鳳于의 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예에 따르면 (獨子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 없는 것이다. 鳳于가 살아 있을 때에 아직 분가를 하지 않아서, 죽은 뒤에 처가 죽고 딸이 시집을 갈 때, 그 딸에게 재산으로서 270畝를 주기로 (형과) 약속하였다고 한다. 나는 판결문으로서 유산을 나누어서 100畝를 시집갈 딸에게 주고, 20畝를 (팔아서) 장례비용으로 삼았고, 150畝를 祭産으로 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아버지를 장례지내고 제사를 잇는 것,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아에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재산 승계에 관해서 蘇州府에 고소를 하자, (蘇州府 지부인) 鄒公께서는 鳳于가 이미 유산이 있고, 스스로 재산을 상속할 자를 두었으니, 과연 (참된) 應繼者이며 만약 (이 문제) 때문에 앞 다투어 서로 소송을 하더라도 誣告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는 딸로부터 많은 자산을 내게끔 하고, 亡魂은 祔食만 하게하는 것은 올바른 승계방법이 아니라고 하고, 이는 矯枉過正이며 공평한 판결은 아니라고 (知府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였다.

15) 立繼 가운데 ‘昭穆相當’에 관해서는 『大清律例』 「戶律」 「戶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凡無子者, 許令同宗昭穆相當之侄承繼, 先盡同父周親, 次及大功, 小功, 總麻. 如俱無, 方許擇立遠房及同姓爲嗣.”

16) 『禮記』 「喪服小記」 “庶子不祭殤與無後者, 殤與無後者從祖祔食.”

여기에서 “예에 따르면 (獨子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戶部則例』등의 규정으로 獨子를 타인의 집에 양자로 들이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⁷⁾ 물론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원래 鳳于의 유언으로 딸에게 270畝를 주기로 하였다는 점인데, 이 유언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耐産으로 宗産으로 합쳐질 뻔 하였다. 전통적으로 재산에 관한 遺言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 滋賀秀三의 주장인데¹⁸⁾, 과연 봉우의 경우 그 주장대로 이러한 유언은 실제적으로는 그다지 효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滋賀秀三의 논의와는 달리, 汪輝祖는 鳳于가 지녔던 270무의 재산을 3등분하여서 ① 100畝를 시집갈 딸에게, ② 20畝를 장례비용으로, ③ 150畝를 祭産(=耐産)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가 시집갈 딸에게 상속된 것은 아니지만 150畝를 유산으로 상속하라는 논의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汪輝祖는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기초하였던 것일까. 계속해서 그 다음의 논의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예의 뜻을 조사하게끔 한 뒤에 詳文을 기초하였다. 나는 이 문제를 논의하여 말하기를 “... 예의 뜻을 세밀히 해석하면 (어떤 자를) 승계인으로 하든 아니든 이것은 아들이 없는 자가 모두 결정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직 立繼(후계자를 세우는 것)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결코 이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대저 승계란 承桃(제사를 이어 받는 것)을 중요시 할 뿐, 承産(재산을 이어 받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봉양을 하고 돌아가실 때 상복을 입는 것을 承桃라고 합니다. 반드시 繼子와 양부모는 恩義가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鳳于 부부는 생전에 결코 立繼를 하지 않았는데, 죽은 뒤에 그 승계자를 다투는 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繼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繼子는 오로지 탐욕스럽기만 하고, 죽은 자에게는 유산이 있는데, 은혜를 준 바도 없고 의로서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承桃가 아니라 承産일 따름입니다. 가족 중에서는 부자관계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例’라고 하는 것은 『大清律例』 가운데 ‘戶絶財産’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大清律例』 『戶律』 『戶役』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17) 『戶部則例』 卷3 『民人繼嗣』 “民人無子云云... 凡繼立不以同姓, 及尊卑失序者, 貪圖財産, 將獨子出繼與人者, 獨子藉稱已經出繼, 不顧本生者, 本生父母有子, 所後之親無子, 而捨去者, 均照律治罪.”

18)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제2장1절 가운데 『父の機能の制約』 참조.

戶絶財産의 경우, 同宗에서 應繼者가 없는 경우 모든 親女가 戶絶財産을 계승하며, 親女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관이 上司에게 보고하여 酌撥充公하게 한다.¹⁹⁾

“아들이 없어서 후사를 정하는 경우, 만약 應繼人과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先有嫌隙’), 昭穆相當의 친족 내에서 현명하거나 마음에 드는 자를 고를 수 있으며, 그 편한 바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만약 族中에 재산을 노리고 억지로 승계하도록 하거나 (자신을) 선택하도록 종용하여 소송을 거는 자가 있다면, 지방관은 바로 이를 懲治하도록 하며, (과부가) 현명하거나 아끼는 자를 골라서 (지방관의) 명령으로 立繼하도록 한다.”

일단 부친이 죽으면 그 재산을 딸이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부가 죽거나 그 딸이 시집을 가면(‘嫁女’) 그 재산을 ‘充公’하도록 되어 있었다(‘俟其妻死女嫁之後, 始行入官’).²⁰⁾ 그 ‘充公’의 형식은 승계인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耐食을 이유로 하여, 族長의 주도하에 宗祠의 재산(‘宗産’)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같은 『戶役』의 구절에는 첫 번째 구절을 근거로 하여 族中에서 ‘억지로 승계’시켜서 재산을 빼앗고자 할 때, 과부 역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汪輝祖는 두 번째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寡婦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汪輝祖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하였던 것일까.

두 달이 지나서 (浙江巡撫에게) 批准을 받은 뒤에 鄒公은 劉君에게 말하기를 “汪幕友의 의견은 내가 세밀하게 이를 살펴 보았는데 확실히 매우 경탄할만 합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결국 절강순무로부터 왕휘조의 기초(‘擬批’)대로 판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었고, 浙江巡撫 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와 지현 모두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서 매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사례-8> 乾隆31年(1766) 丙戌 37세.

얼마 뒤에 이 안건을 援用할 만한 사안이 있었는데, 과부로서 黃氏 집안으로 시집간 俞氏(黃俞氏)는 30여세로 아들이 없고 두 딸만 있었는데, 과부가 된지 4년이 되었다고 한다. 族長은 耐食之例로서, 그 남편이 경지 42畝를 남겼는데, 이를 모두 宗祠에 맡겨서 祭産으

19) 『大明令』 『戶令』에는 “凡戶絶財産, 果無同宗應繼者, 所生親女承分, 無女者入官”라고 되어 있는데, 청대에 들어와서는 마지막 ‘入官’이라는 구절이 ‘酌撥充公’으로 乾隆5年(1740)에 바뀐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酌撥充公’이라는 것은 관이 몰수하는 것이라기보다도, 宗祠 등의 공역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滋賀秀三, 1967, p.409. 참조.

20) 『例案續增全集』 卷41 『戮傷服兄冒風身死不准未減』(滋賀秀三, p.407 재인용).

로 하고자 관아에 청하였고, 房長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과부에게 田産의) 소작료를 줌으로써 (과부가 田産을 다른 곳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나는 크게 의아해서 批(명령서)를 작성하면서 말하였다. 耐食之說이라는 것은 불초한 자들이 承繼를 다투는 풍습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房族이 (이를 빙자하여) 재산을 빼앗는 풍조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불초한 자들이 예전 사안을 멋대로 인용하여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 族長이 知縣署理인 劉君에게 임기내에 (죽은 황씨의) 제사를 宗廟에 부식하도록 청한 것에 대해서 (과부인) 俞氏가 호소하였다. 劉君은 재산을 黃祀의 祭戶로서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로서 族長이 소작료를 거두어서 俞氏에게 주고, 소작료 30여석은 黃祀로 귀속시켜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黃氏 집안에서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하였고, (황씨는) 이러한 판결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서 각 전호는 (과부인) 俞氏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俞氏 역시) 판결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부인이 아들이 없는데 수절을 하고 있다면 例로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戶絶의 財産인 경우, 同宗應繼人이 없는 경우에는 例로서 親女가 상속해야 합니다. 지금 俞氏가 과부로 지낸지 4년이나 되었는데,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아버리지 않았으니, 가정을 어떻게 돌봐 왔는지를 족히 알 수 있습니다. 고아가 된 두 딸을 길러 왔는데, (언젠가는) 시집 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능력 범위 밖을 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친척을 접대해야 할 용도 등 매사에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 30석의 소작료 정도로 그 한계를 정할 수 있겠는가. 例로서 남편의 재산을 (누가) 승계할 것인가 본다면, 과부가 絶産을 마땅히 승계해야 하는 것이다. 親女를 돌보지 않으면서 도리어 아무런 관련없는 족장이 이를 좌지우지해서 결국 재산을 빼앗게 된다면 과부가 원한을 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의) 유혼도 눈물을 삼키게 될 것이니 이렇게 (무리한) 정치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풍속도 없을 것이다. 俞氏가 소유하고 있는 田産42畝 가운데 5畝로 黃祀祭戶로 하고, 俞氏의 딸이 시집을 가거나 (俞氏가) 죽은 뒤에는 (그 소유권을 완전히 黃氏) 사당으로 돌리고, 소작료를 거두어서 그 부부를 함께 합사하여 제사지낸다(耐祭). 그 나머지 37畝로는 俞氏의 소유로 하는 것을 허락하고, 살림을 하거나 딸을 시집보내고 장례비로 하게 한다. 어떤 경우 (俞氏의 田産이) 계속 남아 있거나 혹은 (俞氏가 타인에게 팔거나 다른 곳으로 재가하여) 없어지더라도 房族이 (그 田産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분규를 방지하도록 한다. 知縣署理 劉君이 세운 祠戶는 俞氏의 것으로 바꾸도록 하고, 각 전호들은 俞氏에게 소작료를 내도록 명령한다. 원래 (黃氏 房族과 俞氏가 작성하여) 보냈던 서약서(遵依)는 도중에 취소시키고 사건을 매듭짓게 되었다(完案).

鳳于와 俞氏의 사안에 대한 汪輝祖의 판결이 지닌 공통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게 유산이 상속되었다는 점이다. 鳳于의 경우, 전체 재산인 270무 가운데서 ① 100畝를 시집갈 딸에게, ② 20畝를 장례비용으로, ③ 150畝를 祭産(=耐産)으로 했지만, 俞氏의 경우 전체42무 가운데 37畝를 俞氏와 딸들에게 주도록 하였고, 나머지 5畝를 宗産으로 하였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모두 딸들과 宗産으로 분배되는 비율은 각각 달랐다.

아마도 분배 방식에 특정한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과부나 딸들이 생계를 적절히 꾸려갈 수 있는 정도(‘私’)와 죽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宗産의 유지(‘公’)를 모두 고려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죽은 黃氏에 대한 제사는 결코 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해서 宗祠로 얼마간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 俞氏의 사안에서 맨 처음 知縣인 劉君의 판결에서 “재산을 黃祀의 祭戶로서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로서 族長이 소작료를 거두어서 俞氏에게 주고, 소작료 30여석은 黃祀로 귀속시켜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黃氏 집안에서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하였고, (황씨는) 이러한 판결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서 각 전호는 (과부인) 俞氏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俞氏 역시) 판결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딸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 풍조도 상당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맨 처음에 俞氏 역시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 고아로 남은 딸들에게 생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汪輝祖의 견해가 받아들여졌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耐食之說이라는 것은 불초한 자들이 承繼를 다투는 풍습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房族이 (이를 빙자하여) 재산을 빼앗는 풍조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 (俞氏의 田産이) 계속 남아 있거나 혹은 (俞氏가 타인에게 팔거나 다른 곳으로 재가하여) 없어지더라도 房族이 (그 田産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분규를 방지하도록 한다”는 판결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과부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종족이 간섭할 수 없다는 왕휘조의 문제제기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령 俞氏가 再嫁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고스란히 俞氏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니, 과부가 재가를 하면 그 재산은 종족의 소유로 된다고 하는 『大清律例』의 규정²¹⁾과도 다른 점이다.

참고로 天啓7年 徽州 休寧地域의 계약문서 가운데 典商이 남긴 어느 유산 상속의 관한 문서(‘合同’)의 경우, 죽은 남편의 재산 전체 6,000여냥 가운데, 두 딸의 지참금으로서 1,100餘兩(전체의 18%)을 지급하고, 과부의 생활비로 1,300兩(22%)을, 나머지 60%를 宗祠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²²⁾

『大明令』 등에서는 戶絶財産의 경우, “無女者入官”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은 『大清律

21) 『大清律例』「戶律」「戶令」, “凡婦人夫亡無子守志者, 合承夫分. 須憑族長擇昭穆相當之人繼嗣. 其改嫁者, 夫家財產及原有妝奩, 并聽前夫之家爲主.”

22) 阿風, 2009, p.83.

例』卷8「戶律」「戶役」「卑幼私擅用財」에도 “無女者，聽地方官詳明上司，酌撥充公”이라는 구절로 마찬가지로 ‘入官’하거나 ‘充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薛允升의 『讀例存疑』(光緒31年刊)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삼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양자(義男)와 사위(女壻)가 모두 家産을 상속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淸律』의) 「立嫡子違法」를 보면 (戶絶財産을) 酌撥充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법규대로) 행하기는 어렵다”²³⁾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戶絶財産을 酌撥充公해서 宗産 등으로 삼는 것이 법제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亡夫나 寡婦가 선택한 養子나 사위에게 승계되었고, 법조문대로 실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지 않았나 생각된다.

남송시대나 명청시대에도 제사를 이어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나, 공식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액의 지참금(‘嫁奩’)을 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딸이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몇몇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되고 있다.²⁴⁾ 『病榻夢痕錄』의 경우에는 이에 더 나가서 寡婦나 아직 시집가지 않은 親女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戶絶財産에 한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大明令』 이래 관이 몰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조목을 『大清律例』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으로 볼 때 戶絶財産에 관해서 규정 자체가 변화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 규정이 사회현실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遺囑’이라는 형태이든 ‘지참금(妝奩)’의 형태이든, 현실적으로는 戶絶財産을 딸에게 상속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였다. 그리고 『病榻夢痕錄』의 사례처럼 특별한 遺囑이나 지참금이 아니더라도 홀로 남은 과부나 어린 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유산을 상속하게 하는 사회의 흐름도 그 저변에 분명히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에게 승계되는 것과는 분명히 그 관행이 달랐다. 당시 중국사회에서 딸들은 제사를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宗祠에 합사(祔食)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얼마간은 宗祠에 기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분명히 과부와 딸들에게 상속되기도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문으로 되어 있는 “入官”이나 “酌撥充公” 등은 薛允升이 서술한대로 이제 점차 행해지 어렵게 되었다. 즉 청대 사회에서 여성의 재산권 행사는 법조문과는 달리 점차 그 현실성을 띠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讀例存疑』卷9「戶律」「戶役」「卑幼私擅用財」“謹按，義男女壻均准承受家産，見立嫡子違法門，酌撥充公，似乎難行。”

24) 柳田節子, 『宋代女子の財産權』, 同, 『宋代庶民の女たち』, 汲古書院, 2003; 육정임, 「송대 딸들의 재산 상속권한」,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엮음, 『중국 여성, 산회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阿風, 2009, p.35.

3. 판결 과정속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病榻夢痕錄』의 판결사례가 8가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대 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결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아래에서는 소수의 사례일지라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판결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재판의 판결문을 기초(‘擬’)하는 사람은 知縣이 아니라 막우라는 사실이 분명하다.²⁵⁾ <사례-1>을 보면 刑名幕友가 여럿 있는 경우, 일단 관할 구역을 나누었고,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막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면, 知縣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설령 막우가 판결문을 기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식판원이 아닌 막우가 직접 심문과정을 주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사례-6>에서 보듯이 “그날 밤 劉君에게 부탁하여서 다시 조사를 하시도록 하였다. 나는 (劉君께서 다시 조사하시는 것을 관아의) 正堂 뒤에서 이를 듣고 있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문에서 심문과정이 있을 때 막우들은 뒤에서 이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인 <사례-6>을 제외하면 대체로 오늘날 민사재판에 해당하는 ‘戶婚田土’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8가지 사례 가운데 4개(사례-3,5,7,8)가 모두 戶絶財産을 비롯한 유산상속에 관한 것으로서, 그만큼 당시에는 유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이는 점은 滋賀秀三이 지적하였듯이 “판결의 확정이라는 관념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²⁶⁾ <사례-3>를 보면 “전임 지현들은 모두 房族들에게 公議로서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前令皆批, 房族公議. 歷十八年未結)”는 구절을 보면 지현이 판결을 내려도 오늘날과 같은 확정성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확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로지 上控할 수 있는 여력과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富家들에만 한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송이 按察使와 巡撫까지 도달하였으나, 錢文端公(陳羣), 諸宮詹(錦) 및 紳士 여러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모여서 토론하였으나 (논의만) 분분할 뿐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는 <사례-5>의 경우를 보면 최종판결에 관리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紳士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청시대 신사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알 수 있고, 신사들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이에 대해서는 洪成和, 2011. 참조.

26) 滋賀秀三, 1984, 第3章 「判決の確定力觀念の不存在 - とくに民事裁判の實態」. 참조.

또한 역시 같은 <사례-3>의 마지막 부분에 “이로 인해서 후사를 세우는 것에 관한 遵依結狀을 써서 (제출하여서) 사안이 완결되었다(因立繼書遵依完案.)”는 구절을 보면 분쟁 당사자 간에 遵依結狀을 써서 제출함으로서 비로소 사안이 완결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기존에 滋賀秀三이 지적한 바대로이다.²⁷⁾ 앞서 서술하였듯이 清代 지방관이 자신의 판단을 선포하는 문서형식으로서, 고소장에 적는 ‘批’와, 법정을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堂諭’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재판이 완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에서 보는 한 清代 재판의 최종적인 끝맺음은 재판관이 일방적인 승소를 선언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판관이 일방적인 승소를 내리더라도, 피고-원고(‘兩造’)가 이것을 수락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소송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滋賀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민사재판에서 지방관의 판결을 따른다는 ‘遵依結狀’이라는 서약서를 피고와 원고측이 동시에 제출하지 않는 한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 <사례-3>를 보더라도 ‘遵依結狀’ 자체를 반복하고 상소(=‘上控’)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遵依結狀’을 제출해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최상위의 심급으로 상고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遵依結狀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모든 재판의 결과를 승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즉 각 審級 단계에서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 기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경우, 清代의 民事裁判은 州縣自理라고 해서 살인 이상의 중범죄(‘命盜重案’)의 경우, 府省의 상급관청으로 이첩되었고, 死刑의 경우 황제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아야만 되었다(『內閣刑科題本』). 반면, ‘세사’(細事—이른바 ‘戶婚田土’)에 관한 사안은 이른바 ‘주현자리(州縣自理)’²⁸⁾로 州縣의 지방관에 그 처리가 위임되었다. 이처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 처리의 구분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命盜重案=府省處理=刑事法, 細事=州縣自理=民事法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대 중국의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위의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앞서 “판결의 확정이라는 관념의 不存在”와 맞물려서 민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지현의 판결이 확정적이지 않았고, 巡撫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1>을 보면 간통사건을 知府에게까지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4>는 자살사건인데도 刑部까지 가지 않고 巡撫가 결제하는 外結로 끝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病榻夢痕錄』의 서술을 보는 한, 최종판결의 주체에 대해서

27) 滋賀秀三, 『清代の民事裁判について』, 同, 『續・清代中國の法と裁判』, 創文社, 2009. 참조.

28) 『清史考』卷144 『刑法』三, “各省戶婚田土及笞, 杖輕罪, 由州縣完結, 例稱自理.”

29) 洪成和, 2007. 참조.

는 사안별로 앞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안이 끝나는 것은 언제일까. 첫 번째는 오늘날 고소를 기각하는 것처럼 소송장을 수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사례-3>에 “후에 불초한 族人들이 여러 번 불복하였으나, 모두 송장 수리를 허락하지 않았다(後有不肖族人反覆翻告, 皆不准理)”가 주목된다. 두 번째는 巡撫가 최종결정하는 경우 더 이상 불복이 없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하지만 순무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막우는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었다<사례-1>. 세 번째로는 앞서 <사례-2>의 경우에서 보듯이,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兩造(피고와 원고)가 모두 승복을 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합리적인 적용도 있지만, 청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유교경전에 근거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淸律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禮記』에 따라서 융통하면 될 것이다(律所未備, 可通於禮).”라고 하고 있다. 아마도 특히 가족문제에 관해서는 빈번하게 『禮記』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淸律』이 실정법이라면 『禮記』는 관습법이나 自然法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淸律』에 戶婚田土와 같은 細事에 대한 조문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현지 관습이라든가, 『禮記』와 같은 경전에 근거한다면 재판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판결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汪輝祖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4>을 보면 꿈속에서 冥府에 고소하는 일이 나온다. 문맥만으로 보면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사소한 에피소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부의 현안이라서 “刑名을 담당한 사람들이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그에게 冥府는 단순히 신화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평소 재판에서 부정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자손에게 남거나 심지어는 자손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病榻夢痕錄』 <乾隆55년 庚戌>에서 “至是善俗書一卷, 鑲版頒行, 士民稱便”이라는 구절이나, 『夢痕餘錄』 嘉慶2年 丁巳68歲 “三十年刑名餬口, 惟此一念可質鬼神.”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행을 쌓았는가 아닌가의 판단을 귀신이 하고 있었다. “善俗書”라고 하는 것은 勸善書를 지칭하는 것으로 매일 매일 자신의 행위를 善惡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겨서 이를 연말에 결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점수가 높으면 귀신이 그에게 복을 주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귀신이 벌을 준다고 하는 송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도교적인 관습이다.³⁰⁾ 이런 의미에서 재판

³⁰⁾ C.J.Brokaw, *The Ledgers of Merit and Demerit: Social Chang and Moral Order in Late Imperial China*(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Merit Accumulation in the Early Chinese Tradition」 참조.

관이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는 ‘보이는 현실세계’의 재판관 = 地方官, 幕友 등이 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가 있고 이를 지배하는 冥司나 鬼神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① 현실적인 관료와 재판의 세계, ② 도덕의 세계, ③ 귀신과 명부의 세계가 있었고, 각각 선악의 행위가 이 세 가지 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매우 성실하게 재판과 행정업무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법정에 출두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良心’이 있고, 양심을 자각하면 다시 도덕적인 세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은 비단 汪輝祖만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薛允升의 『讀例存疑』에서는 “어떤 사람인들 마음(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로(누구나) 그 天良을 느끼고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人孰無心, 固足感發其天良)”라는 給事中 程盛修의 상주문³¹⁾을 인용하고 있고, 그 밖의 판례집에서도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良心(=天良)을 깨닫게 되었다는 서술을 찾아 볼 수 있다.³²⁾ 흔히 청대 재판의 法源을 ‘法-情-理’라고 하지만, 그 기반에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情理’가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중국의 재판 법정은 비단 죄인을 처벌하고 인민들에게 그 결과를 각인시키는 장이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은 道德觀에 기초해서 그 도덕을 일깨우고 바른 도덕으로 복귀시킨다는 훈계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汪輝祖가 남긴 家訓書인 『雙節堂庸訓』에 서술된 흥미로운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公(왕휘조의 조부)의 품행은 향리에서도 신뢰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공께 중재를 구하였다(‘皆質正於公’). 공은 반복해서 화해를 시켰고 모두 마음 옹어리를 풀고 돌아갔다(‘公反覆理解, 率釋忿去’). 공께서 살아 계실 때는 (지방 아문의) 재판정에 가는 사람 없었다. 공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族人들의 분쟁이 많아졌다. (汪)輝祖가 40여세였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분쟁이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곤 하였다. “朝三翁께서 생존해 계셨다면 (분쟁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왕휘조의 조부인 汪之瀚는 浙江 紹興地域의 어떠한 관직도 지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네였지만, 마을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중재를 구하였고, 그의 판결은 매우 공평하였고 도리에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31) 『讀例存疑』「名例律上之二」『常赦所不原』

32) 李鈞『判語錄存』卷3『私嫁子妻事』“…而馬炳勃發天良, 以上各情, 俱爲本府垂涕泣而道 …”

마을 사람들은 衙門에 가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는 한, 근본적으로 ‘有德者’가 내리는 판단과 지방관의 판결 사이에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례-5>에서 紳士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으리라. 요컨대 전통 중국에서 재판이란 자격을 지닌 한정된 소수의 관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有德者’가 내리는 것이었으며, 이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분쟁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느냐가 청대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왕휘조가 남긴 『병답몽훈록』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지방 아문에서 벌어진 재판과정에서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지방관도 역임을 하긴 했지만 그의 대부분 경력은 幕友로서, 재판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 판결문만을 남겨 놓는 지방관과는 달리, 여기에서 재판에 관여된 다양한 지방관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이 어떻게 하나로 정리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판결과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지방관의 판결이라는 것이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은 대체로 富家들이 많다는 점에서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어쨌든 재판 당사자들이 항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료에서는 知縣의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知府나 巡撫와 같은 고위지방관이 내리는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찰할 여지도 물론 있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이들 사료에서는 巡撫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방관의 지위에 따라서 판결의 확정성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민사재판에서 『淸律』에서 인용할 만한 구절이 없는 경우 『禮記』를 인용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정법과는 다른 自然法 내지 慣習法이 충분히 청대 법률에서는 기능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淸律』 속에서 설령 법조문이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지의 관습이라든가, 유교경전 속에서 얼마든지 인용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대 재판을 『淸律』의 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선부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 ‘戶絕財産’에 관한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단 여성의 재산권이 점차 현실성을 띠면서 인정되어 가는 과정도 주목되지만, 그러한 현실을

‘이상적인’ 유교적 잣대로서 재단하여 이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적절히 수용하려고 했던 점도 주목된다. 물론 淸朝 정부가 법규상으로 여성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남성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유교의 근본이념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童養’을 기혼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 같은 문제 등은 지방 관의 상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단히 법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청대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얼마나 제대로 사안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재판 당사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청대 재판의 세계는 법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느냐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재판정 안에서 다양한 도덕적 권위들이 서로 병존하고, 그 가운데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법조문에 의한 판결처럼 확정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近代中国银行业领券发行制度的演进与变迁

— 以中国银行上海地名券领券业务为中心的考察 —

董 昕(요녕대, 서울대 방문교수)

摘要：领券制度是近代中国银行业特有的纸币发行制度。总的来看，领券制的发展与变化也经历了一个从不规范到形成业内惯例，因竞争而利弊突显后逐渐收缩的过程。中行上海地名券的领券活动开展得活跃而有特色，相关业务的发展变化和领用双方的互动大体上反映了近代中国银行业领券发行制度由兴至衰的演变历程和要件变化情况。以其业务的发展情况来看，1915年至1924年开放领券前为无序发展阶段；1924年开放领券后至1935年法币政策实施时为规范发展阶段，出现联行领券、十足现金领券等新的领用方式。就整体情况来看，1928年后领券发行制度进入成熟期。法币政策实施后，纸币的价值实际上已与金属货币脱钩，领用发行与回笼兑现的流通模式被强行终止，原有的领券活动也迅速收缩了。

关键词：领券发行制度 中国银行 上海地名券

领券制度，¹⁾ 即银行券领用发行制度，概而言之为没有发行权的银行或钱庄等金融机构，按照一定的条件，向有发行权的银行缴纳准备金（包括现金准备和保证准备两部分），领取钞票使用的制度。它是中国近代银行业在货币发行方面独有的制度，亦是我国近代货币发行方面的“基础”制度之一。领用的兑换券往往被发行行或领券行庄加印暗记，以代表领用者，因此，领

1) 关于领券活动或暗记券的定义描述不同，但大意一致，有如下几种：

(1)、领券云者：并无发行权之银行、钱庄及其他类似之金融机关，得于一定的条件之下，向发行银行领用定额之兑换券，加一暗记，代为发行也。〔谦益：《论领券制度》（1929年5月）。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编：《中华民国货币史资料》第一辑，上海人民出版社1986年版，第176页。〕

(2)、过去发行银行为了计算领券银行所领钞票的回笼数目，在钞票上加印了不同的单字或符号，通称暗记。有的表示地名，有的是领券银行的简称，数目和西文字母则是领券银行的顺序排列代号。这种印有暗记的钞票就称为“暗记券”，不同的暗记代表不同的领券单位。〔《交通银行暗记券》（上海市钱币学会郁祥桢同志访问录）。交通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交通银行史料（1907-1949）》第一卷下册，档案出版社1991年版，第885页。〕

(3)、所谓领券，即是无发行权的银行按照一定条件（一般是缴六成现金准备和四成公债与期票）向发行银行领用一定额度的兑换券，加印上一个暗记，代为发行。〔洪葭管：《上海中国银行反对停兑事件试析》，《档案与历史》，1985年第1期，第71页。〕

(4)、所谓领券制度，即在分权发行制的前提下，银行、钱庄或其他金融机构向发行纸币的银行领用定额的钞券，并在券面加有暗记代为发行的制度。〔潘连贵：《近代中国的领券制度》，《中国钱币》，2007年第1期，第31页。〕

用之券又被称为暗记券。中国银行上海分行开展的领券活动在近代中国银行业中颇有特色，影响很广。

近年来，随着中国近现代金融史在研究深度与广度上的推进，对于近代中国银行业领券发行制度的研究也受到学者们的重视，相关论著在叙述有关银行的发行业务时间或提及。²⁾ 由于领用活动进行中的主客体均为独立的金融机构，相关资料的分散琐碎及缺失为对于领券制度的研究深入下去并有所突破带来一定的困难。比较常见的资料是散见于各金融机构档案全宗中的领券合同及业务类函电和报表，但对于这些合同是如何订定的、各项要件在履行过程中的变动、制度化过程中外界因素的制约和影响等情况，则比较难于考察。要完整地展现出一个领券活动的个案，要对相关金融机构的存世档案资料进行比较阅读，方可展现出个中的原委曲折。一般认为，在我国近代金融业发展演进的历史过程中，领券制度是一项非常具有典型性和代表性的“本土”制度，在中国金融现代化进程中起到了集中货币发行权的积极作用。从清末领券活动的开始至法币政策实行前，领券合同的对象、条款及要件处于不断规范化和制度化的过程中，发券银行和领用行庄对于金融风险的规避和发行利益的追求等各项举措都时刻影响着领券活动的发展和变化。这需要在对于诸个案研究的基础上予以总结和厘清。

中国银行是我国近代重要的华资银行之一，其兑换券发行额在1935年法币政策施行前居有发行权的华商银行之首。它的上海分行（简称沪行），是全行最重要的分行和业务中心之一，所发行的上海地名券信誉卓著，流通地域广，也是中小行庄争相领用的对象。上海是近代中国毋庸置疑的金融中心，各类金融机构云集，向中国银行沪行领用上海地名券的行庄众多，领券活动开展得频繁而又富有特色。相对而言，可资考证的资料留存得比较集中而又丰富。本文以中国银行上海地名券的领券业务为考察中心对象，以中国第二历史档案馆和上海市档案馆藏档及其他有关史料为依据，探究近代中国银行业领券发行制度的演进与变迁。

²⁾ 已有研究成果包括：薛念文：《上海商业储蓄银行的领券发行》，《亚洲钱币》，2001年第2期；董昕：《民国时期上海地区的领券制》，《民国档案》，2004年第1期；潘连贵：《近代中国的领券制度》，《中国钱币》，2007年第1期。周祥：《中中交三行上海地名券上的暗记——兼述民国时期的银行领券制度》，《钱币博览》2006年第4期。另有马长林、董昕选编的《上海地区有关近代华资银行业领券的一组档案》，《档案与史学》2004年第6期。一些中国近现代经济史或金融史的专著中也有部分内容涉及到领券发行制度，如刘慧宇：《中国中央银行研究（1928～1949）》，中国经济出版社1998年版，第93页；杜恂诚主编《上海金融的制度、功能与变迁（1897～1997）》，上海人民出版社2002年版，第74、77、323页等。

一、

清末民初之际，我国的货币发行权是为分散制，不仅国家银行，诸多专业银行与商业银行也拥有特许的纸币发行权，发行银元券或银两券。分支机构众多的大银行，其在各地的分行依所在地的货币使用习惯发行兑换当地通用银元的地名券或以市平为单位的银两券，流通于一定范围内。领券活动产生的最初年代已无法考订。从现存的资料来看，在上海，最早的领用券行为是旧历年关时钱庄向中国通商银行的领券活动。其原因是旧历年终为商家结帐之期，市面上的货币需求量增多，洋厘高涨，钱庄因以庄票折成银两向行领取钞票使用，既增加了可支配的货币量，还可获得庄票兑现期限前的利息，一举两得。有的钱庄的领用钞票数额可达十万元以上。³⁾

根据领券使用的时间，领券方式可分为短期领券和长期领券。短期领券活动的时间多至七到十天，可以庄票或公债票等为抵押品，领用券多无暗记。从资料中可知，中国通商银行与交通银行都曾开展过短期领券发行活动。但这种领用方式因其操作的规范性不强，抵押品的种类与价值可能随时发生变化，没有被得以广泛推行，是领券活动开展初期时的方式。相对而言，长期领券活动的时间多在一年以上，需要双方签订合同，明订领用与兑现方式和其它相关条款，较为稳妥规范，是领券活动中的主体模式。

中国银行于1912年由前大清银行改组成立后，即被定位于国家银行，享有发行权，订定《中国银行兑换券章程》，⁴⁾ 各地的分行均可发行所在地的地名券，且所发钞券得随时兑现。当时，因各省纸币太滥且供过于求、国库未能统一、币制未能划一等原因，中国银行的兑换券未能被迅速推广使用。⁵⁾ 1915年时，中国银行的兑换券发行额只有3845万元。⁶⁾ 当时，《币制则例》刚刚颁布年余。为推进币制统一，开始由数家曾在晚清时发行过纸币的商业银行向作为国家银行的中交两行订立领用兑换券办法，分别缴纳一定成数的准备金，领取十成钞票使用；并将本行直接所发之券悉数收回。同年10月，《取缔纸币则例》亦经颁行，规定除中国银行外，凡新设的银钱行号或已设立向未发行者，均不得发行纸币。业经设立的银钱行号，有特别条例规定准其发行纸币的，于营业年限内仍准发行，期满后应即全数收回。兑换券的发行准备中现金至少占五成，余者可以公债或证券充保证准备。⁷⁾ 此后，作为国家银行的中交两行陆续

³⁾ 《陆书臣回忆》（1958年3月15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编：《上海钱庄史料》，上海人民出版社1960年版（1978年第3次印刷），第143页。

⁴⁾ 周学熙：《呈大总统文》（1912年12月16日），中国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中国银行行史资料汇编（1912-1949）》上编二，档案出版社1991年版，第911-912页。

⁵⁾ 沧水：《民国钞券史》，《银行周报》，8卷24期，1924年6月24日，第13页。

⁶⁾ 卜明主编：《中国银行行史（1912-1949）》，中国金融出版社1995年版，第58页或第911页（见兑换券准备金项的数据）。

与各金融机构签订合同，准其领券使用。

最早向中国银行领用兑换券的银行为浙江地方实业银行⁸⁾（以下简称为浙行）和浙江兴业银行（以下简称为兴行）。1915年5月，中国银行与浙行订约，后者于当年6月底前收回所发钞票，领用中行兑换券100万元，双方各加暗记。中国银行特为此事呈文财政部，财政部复函，认为此举有助于统一币制，故予同意。该行以现金六成、⁹⁾中央公债一成交付中行作为准备，中行对现金准备给予年息二厘半，空额由浙行自备保证存库。当年10月，浙行续向中行订约领券100万元，但缴纳准备的现金部分降至五成，中央公债部分增为二成半，准备空额仍由该行自备存库。备领的兑换券暂不规定使用区域，在领用时由浙行将准备领用发行的区域陈报中国银行。同年6月，兴行也与中国银行签订领券合同，领用总额为300万元，由该行总分各行在所在地领用；缴纳的准备为现金五成，中央公债二成半，中行对于现金准备亦给年息二厘半，其余二成半准备空额由该行自备。兴行原发钞票自领券使用之日起六个月内收回。在领用足额后，兴行可续领200万元。¹⁰⁾同月，广西巡按使拟请财政部准许广西银行与驻粤中国银行机构订立领用纸币合同，暂以50万元为限，所拟办法与浙行领用成案大致相同。中国银行原则上表示同意，因当时尚未在广西设立分号，请求将此事延后办理。¹¹⁾

此时，中国银行作为国家银行，对于以允许商业银行领券使用的方式逐渐统一发行权的办法持积极配合的态度。与浙行的第一次领券条款相比，兴行订约时的条件有所松动，交付准备中的现金部分由六成减至五成，改以中央公债一成半代替。浙行续约时亦照此条件办理。对于未设分支机构地点商业银行的领券请求，中国银行原则上也表示了同意。但是，如果逐条考查中国银行与浙行和兴行订立的领券合同，不难发现其中的某些条款还过于笼统，语焉不详。当时，浙行与兴行也分别拥有总分行数处，各行需要分别向中行的哪家分行领用，具体数额多少，都没有做出详尽的规定，日后可能出现纠葛。其次，领用者自备保证准备二成半，如遇金

7) 《取缔纸币则例》（1915年10月20日）。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编：《中华民国货币史资料》第一辑，第136页。

8) 该行原名浙江银行，1909年成立，由浙江地方政府与商人合资创办，1915年改称浙江地方实业银行(Chekiang Industrial Bank)，即本文第一部分中提到的浙行。由于官股专权，商股要求分开经营，于1923年达成协议，官商分家，各自经营。原官股称浙江地方银行(Chekiang Provincial Bank)，设总行于杭州；原商股称浙江实业银行(Chekiang Industrial Bank)，设总管理处于上海，由李铭（馥荪）任总经理，即是著名的“南三行”之一。

9) 成数指缴纳的占领用券总额几成的现金或保证准备。领券使用时可分期分批领用，缴纳的准备金成分不变。以下关于“几成”的意思相同。

10) 《浙江地方实业银行领用中国银行兑换券合同》（1915年），《浙江兴业银行领用中国银行兑换券合同》（1915年）。中国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中国银行行史资料汇编（1912-1949）》上编二，第1028-1034页。

11) 《财政总长周学熙至广西巡按使咨文》（1915年6月30日）。中国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中国银行行史资料汇编（1912-1949）》上编二，第1032页。

融紧急情形，中行方面要承担领用行自备准备部分钞票的兑现风险。再次，中行对于交付的准备有优先处理权，但没有与领用者约定应对市面银根紧急之时的“特别办法”与具体措施。同时，浙行与兴行的领券合约的有效期分别为三十年和四十二年，年限过长，其间很可能因发生种种意外而影响合约的履行，也难免产生纠纷。兴行在续领券的地点与数额分配上与中行发生的纠结与不快即是一例。

兴行的营运重心在沪。至1916年2月，该行已分两批将首次订约可用的300万元领用完毕，领用的上海地名券达150万之多。¹²⁾ 为扩充资力，进一步发展各项业务，兴行董事长叶景葵于同年4月间致函中国银行总管理处，要求续领200万元使用，并称前领之券“贵行加印地名，敝行加印暗记，南北转运，稽迟时日，动辄尽旬。当市面需用紧要之时，往往有不能供给之痛，是以不得不早日筹备，”¹³⁾ 以便在下半年能够顺利加领。当年5月，发生袁世凯政府密令中交两行停兑事件，酿成全国金融界的一场轩然大波，兴行续领中行券之议也暂时被搁置。

在此次金融风潮中，中国银行上海分行因毅然反抗政府行政命令对银行业务和金融秩序的侵扰，声名大振，所发钞券的信誉度也因而大大提升，在流通中无异于现洋。继之的几年中，中国银行的整体业务水平均有所下降，加以时局不靖，为确保发行稳健，由沪行副经理升任副总裁的张嘉璈有意收缩领券业务，以减少可能由此带来的风险。续领之议被搁置近两年后，1918年2月，兴行董事长叶景葵旧事重提，向中行总管理处请求按原约加领兑换券200万元。¹⁴⁾ 中行方面则以“刻下时局未定”为由，“拟请暂行从缓”。¹⁵⁾ 同月，冯耿光继王克敏任中行总裁，代表中行向兴行方面借款应急，叶景葵乘机要求领用兑换券，“以为交换条件”。张嘉璈才不得不答应兴行可先续领100万元。兴行初拟在上海领用70万元，在江苏¹⁶⁾领用30万元。¹⁷⁾ 对此，张嘉璈坚决不肯同意，认为在上海专领70万元为数过巨，要求由兴行各地的分行分领。兴行则认为，津汉两分行原领之券尚未用罄，且领券系为利益，不能兼顾感情；遂调停至上海领用60万元，江苏领用40万元。又因张嘉璈坚持在沪只能领用50万元，双方卒以沪50万、江苏40万、杭州10万定局。不料正式洽商具体事宜时，中行方面开出的领券分配额度又变为上海50

¹²⁾ 《浙江兴业银行领用中国银行钞券清单》（1916年2月）。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浙江兴业银行时在沪领用150万元，在杭领用50万元，在汉领用70万元，在津领用30万元，分别为上海地名券、浙江地名券、汉口地名券和天津地名券。

¹³⁾ 《浙江兴业银行董事长叶景葵致中国银行函》（1916年4月7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¹⁴⁾ 《浙江兴业银行董事长叶景葵致中国银行总管理处函》（1918年2月2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¹⁵⁾ 《浙江兴业银行董事长叶景葵致中国银行函》（1918年3月8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¹⁶⁾ 管理中行在江苏省内业务的是南京分行，简称宁行，发行江苏地名券。

¹⁷⁾ 《浙江兴业银行致中国银行函》（1918年4月24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万、江苏30万，津汉各10万，叶景葵只得又与张嘉璈面商。张嘉璈则称“津汉不领，沪中国（指中行上海分行）必多口舌。以后再领百万元，上海地点，势必为难。”在不得已的情形之下，兴行只得同意领额的分配为上海50万、江苏30万，杭州10万，津汉各5万。¹⁸⁾不意到实际领用之时，运沪备领之券只有50万元，¹⁹⁾为沪30万、杭10万、津汉各5万，兴行于1918年9月第三次领用。至于短少之券，冯耿光、张嘉璈以“印局业务较繁”为托词，²⁰⁾表示只能随后补交。

兴行加领的要求，本为合约所规定的条款，无可非议。中行上海地名券的信誉优厚，加以兴行的业务中心在沪，沪分行“处于总行地位，收解又较他处为多”，²¹⁾因而愿意多领沪券。但领券是以部分现金领用十成钞票，又由领用行自备准备若干，增加了发行行兑现的负担与风险。当时，上海分行已成为中国银行业务重振的基地，张嘉璈自不愿给沪行增加负担，暗损实力，遂不顾停兑令风潮时兴行襄助之情，仅让该行领用上海地名券30万元，与其原拟领用70万元的想法相距甚远。由于可领之券不敷使用，兴行只得采用变通之策，于5月间由兴行沪行订约领用中行南京分行发行的江苏地名券30万元使用了。²²⁾

对于中行方面在续领兑换券时的种种延诿，兴行董事长叶景葵极为不悦，致函责问。他认为，该行放弃发行纸币的特权，与中行订立领券合同实为“仰体统一（发行之）政策，原冀开诚相与，力践银行正轨。”但在履约时，中行对于浙行的“领券合同业已全数发付，且于向无发行权之他行之领券合同亦已陆续发付，而独于敝行相需孔殷之际，竟至靳而不与”，²³⁾颇感气愤。中国银行则复函表示因金融风潮迭起，现洋缺乏，而钞票仍需兑现，是以对于发行事务不得不进行收缩。此举为中国银行就全局而推行的计划，非仅对兴行而言。况兴行原定领用数目已较他行为多，实领数目又已不少，即浙行亦未将原订可领之券尽数领完，故兴行所请续领所余百万元一节只能从缓了。²⁴⁾此后，仅兴行津行于1920年1月向中行天津分行加领了兑换券

¹⁸⁾《叶景葵致项兰生等函》（1918年3月21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¹⁹⁾《冯耿光、张嘉璈致叶揆初（叶景葵的字）函》（1918年8月16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²⁰⁾《冯耿光、张嘉璈致叶揆初函》（1918年9月4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²¹⁾《浙江兴业银行总办事处致申行函》（1916年6月）。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326。

²²⁾《上海浙江兴业银行领用南京中国银行兑换券办法》（1918年5月20日，农历4月11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4。

²³⁾《浙江兴业银行董事长叶景葵复中国银行函》（1919年6月5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²⁴⁾《中国银行复浙江兴业银行函》（1919年6月14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15万元。²⁵⁾ 兴行因领券使用不能尽如其意，于1922年1月呈准币制局，重新取得发行权。1923年7月，双方商定将领用额度由实领的365万减为300万元，减少者为上海地名券35万元，江苏地名券30万元。²⁶⁾ 兴行领用中行券本为统一币制之举，并未以圆满的结局收场。

1922年，中国银行开始实行区域行制度，²⁷⁾ 沪行成为第一区的区域行，区内的沪宁浙三行归并发行上海地名券。区内各行处可与当地的金融机构签订领用上海地名券的合约，各种已领暗记券也均可由区内各行处代兑现币。区域行并非实体行处，也不对外营业，而是沟通总管理处与各分支行的桥梁和协调统一区内各行业务的中心。²⁸⁾ 此后，在对外处理有关中行上海地名券的问题上，如下文所述的准备金公开检查事宜等，由上海分行出面办理（时称上海中国银行）；在对内制定沪券在发行与流通中执行的方针及行处的考成标准等，则由第一区区域行管理委员会颁定，兼以协调本区内各行处的利益。

除浙行的个案外，上海商业储蓄银行（简称上行）向中国银行申领上海地名券过程中发生的曲折也耐人寻味。上行是由陈光甫于1915年创办的，总行在沪。成立后不久，该行也依照浙行与兴行的前例于1915年12月与中国银行订立了领用券50万元的合约，以现金五成，债券二成五为准备品，²⁹⁾ 但该合约在随后几年内并未得以履行。反观兴行，它与中行订约领券的时间仅比上行早了六个月，就在不到一年的时间内领足300万元使用。受停兑令事件的冲击，中行方面采用“稳健”的经营方针，对于领券发行业务有意收缩，对浙行续领之事能拖就拖，对于与上行已签就的合同也迫于执行。在向中行领券未果的情况下，上行在1917年与交通银行签订了领用券200万元的合同，至次年3月实领了50万元。³⁰⁾

1920年时，中行全行的业务水平已基本恢复到停兑令事件前的水平，上行旧事重提，继续向其要求领券使用。上行的创建者和总经理陈光甫与中行副总裁张嘉璈的私交甚好，而当上行在沪的负责人之一唐寿民就领券一事与他相商时，张嘉璈只允领用50万元，且二成半的保证准备

²⁵⁾ 《浙江兴业银行历次领用中券清单》（1920年）。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²⁶⁾ 《浙江兴业银行总办事处致中国银行总管理处函》（1923年7月26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04。

²⁷⁾ 中国银行总管理处将全国的行处划分为四个大区进行管理，沪宁浙皖为第一区，以上海分行为区域行；津鲁晋为第二区，以天津分行为区域行；汉赣渝黔为第三区，以汉口分行为区域行；粤闽为第四区，以香港分行为区域行。1928年，增设东北地区为第五区，以奉天分行为区域行。1929年，将第三区与第一区合并，将第四区、五区改为三区、四区。各区总理由区域行的经理兼充，区内其他分行经理兼任区行副总经理。

²⁸⁾ 卜明主编：《中国银行行史（1912-1949）》，第168页。

²⁹⁾ 《上海银行领用中国银行兑换券合同》（1915年12月3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6。

³⁰⁾ 《上海银行向交通银行领券合约》（1917年）。《上海银行致交通银行函》（1918年3月26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上海商业储蓄银行史料》，上海人民出版社1990年版，第251-252页。

必须以时价六折以上的公债抵充。在谈及领券条件时，唐寿民“当总司券³¹⁾面力争不允，视公权（张嘉璈的字）颇有难色。其原因不外乎令出不行，即虑各分行不允可耳。”后经唐寿民多方斡旋后，上行才准予次年向中行领用50万元，但不包括上海地名券。当时，唐寿民并未与中行总管理处相商在沪领用若干，并非不急需领用中行沪券，而是“上海暂时决计不领，以免与老宋（中行沪行经理宋汉章）交涉，且免公权为难。”但随着时局的发展，上行的“领券额非加增不可，上海（地名）券亦须领用”。³²⁾ 次年10月，上行向中行领用了首批江苏地名兑换券5万元，暗记为SB。³³⁾ 1923年，上行增领中行券共100万元，包括鲁券30万元，津券30万元，汉券40万元，仍未领用沪券。1924年4月，上行第三次要求增领150万元，中行方面由津行出面允许上行津行领用100万元，以现金六成，证券四成作为准备。中行对于六成现金准备月给息四厘。³⁴⁾ 此间，中行上海分行一直参与着上行领用中行券的兑现事宜，并隐隐起着中枢的作用。各地中行机构在兑付上行领用券后，将券运沪，由中行沪行向上行收现并转帐。³⁵⁾

在上行向中行的数次领用活动中，所缴纳的准备成分一直不断变化。1923年时，已领用的汉券共70万元以现金五成、证券两成半（按市价核算）为准备。而上行欲增领100万元时，中行方面曾要求增加现金准备至七成，上行初则表示可以商量，继则明确不愿照办，仍按现金五成、证券二成五交付准备，但允诺证券可按市价实足计算，先在天津、汉口、济南三处各领25万元。³⁶⁾ 当时，中国银行力求向领券者要求十足准备，领用者备现金七成，公债三成，向行领用十成钞票。³⁷⁾ 1924年，上行增领津券时，已缴足十成准备；续领鲁券时，就以现金七成、本票三成为准备；续领的一批宁券15万元也交付现金七成。中行沪行原负责上行领用券的收现与送券事务，因租界内“盗风甚炽，迭出拦路劫案”，³⁸⁾ 甚感负担太重，要求上行负责取券，双方分担责任。³⁹⁾

³¹⁾ 中国银行总管理处实行“五总”制时负责主管发行事务的人员。

³²⁾ 《唐寿民致陈光甫函》（1920年2月13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上海商业储蓄银行史料》，第243页。

³³⁾ 《南京中国银行致上海商业储蓄银行函》（1921年10月8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6。SB是Shanghai Bank的缩写。

³⁴⁾ 《中国银行总管理处致上海银行函》（1923年6月14日）。《1924年津上行向津中行领券100万元合同》（1924年4月10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上海商业储蓄银行史料》，第243-245页。

³⁵⁾ 《南京中国银行致上行函》（1921年9月13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69。

³⁶⁾ 《中国银行总管理处致陈光甫函》（1923年7月10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1。

³⁷⁾ 裕孙：《上海金融简史（二）》，《银行周报》，9卷20号，1925年6月2日。

³⁸⁾ 中行上海分行的行址在上海英租界内。

³⁹⁾ 《马寅初致陈光甫函》（1923年12月18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1。

上行要求领用中行上海地名券之事在1924年夏有了转机。同年春，沪上各钱庄自开优厚条件，申领中行上海地名券，中行上海分行与宁浙两行议定开放领券，上行遂于当年8月与其签订了领用上海、江苏地名券200万元的合同，以现金六成，保证二成作为准备，六成现金不计息。同时，上行自备现金二成作为准备，并照二成现金之数开具即期本票交存中行沪行收执。⁴⁰⁾ 与此前的上行领券条件相比较，此次合约在防范金融风险方面的条文更为具体规范：保证准备二成要以1921年整理案内的中央政府公债按照市价折合抵缴，市价如有变动必须随时补足，或以上海房产道契经行方认可后照估值七折抵缴，如估值低落亦需随时补足；上行照自备现金二成数开具的即期本票在每年阴历正月间掉换当年的即期本票，行方在遇有必要时可要求上行将之兑现并全数提存于中行沪行。⁴¹⁾

此外，在上行不断扩大的向中行领券使用的过程中，领券合约的条款还有内容具体化的趋势，主要体现在领券对象和准备内容这两方面，这也是领券活动逐渐制度化与规范化的反映和体现。在领券对象上，发行行与领用者在正式订约前已商订在何处领用及领额多少，上行在各地的分行可以独立地与中行的分行订立领用合同，并商定具体条件。1923年增领时，中行总管理处直接函告上行，领用津券和汉券时“请尊处直接与敝津汉两行接洽可也。”⁴²⁾ 1928年，上行在沪的分行与中行沪行订立领用上海地名券200万元的合同时，已更加明确的被称呼为“申上行”了。在准备内容上，有提高现金成数及缴付十成准备的发展趋向。领用者原可自备准备成数若干的条款渐被取消，发行行对于保证准备的内容也不断提出具体的要求，如证券的时价、房地产的估值折价等，其主要原因是发行行对相应的金融风险的规避。当时，没有发行权的银行或虽有发行权而不愿直接负担发行风险的银行，均备现金七成，公债三成，向中行领用十成钞票，由双方加印暗记后发行，浙江实业银行、聚兴诚银行等均按此条件领用，⁴³⁾ 因而，1923年上行增领时被要求增加现金准备至七成。同时，合约的有效期也相应地减至十年左右，并规定如遇金融紧迫之时，领用者应迅速以现金或暗记券抵取保证准备，俟市面平静后再恢复原约。

⁴⁰⁾ 《上海银行领用上海中国银行兑换券契约》（1924年8月13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5。

⁴¹⁾ 《中国银行沪行复上海银行函》（1924年8月10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上海商业储蓄银行史料》，第248页。

⁴²⁾ 《中国银行总管理处致上海银行函》（1923年6月14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上海商业储蓄银行史料》，第243页。

⁴³⁾ 《中国银行总管理处致上海银行函》（1923年7月16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1。

二、

从整体上考察兴行、上行等向中行的领券活动，可以看出，中行的上海分行在其中有着特殊的地位，既是所发地名券被领用的大户，也在领用券的流通与兑现过程中隐约起着中枢的作用。这也与领用者自身的因素有关。沪上云集了各类金融机构，为扩充资本，博得领券使用的收益，纷向有发行权的大银行请领。而其总部或营运中心在沪，在领发及收兑的过程中，中行上海分行必然居间联络。中行上海地名券的社会信誉度也在停兑令事件后大为提升，也注定了其领券发行活动要有大的发展，不会局限于一时的收束。

至1923年，向中国银行领券的还有中孚银行、大陆银行、五族商业银行、永亨银行、中国棉业银行、通易信托公司、山东工商银行等。⁴⁴⁾ 沪上钱庄仅可以五天期庄票换用中行上海地名券，并无其它领用办法，额度有限，期限亦短。交通银行较早地向钱庄开放了领券，上海各钱庄1918年时已向其领用暗记券。⁴⁵⁾ 1923年11月间，沪市银洋两荒，筹码不敷周转。沪埠各钱庄因之援照银行领用中行上海地名券的条件，拟向行领用钞票未果。1924年春，钱庄夏联合向行方要求领券使用，几经磋商后，由钱庄自开条件，经中行沪行同意后，陆续订立领用钞券合同。第一批向其领用钞票的钱庄共有14家，每家钱庄的领用额度为25万元或50万元，总额共为625万元。在领用限度内，各庄可随时分批向中行沪行领用上海地名的5元券及10元券。领用额度为50万元的有福源庄、福康庄、顺康庄、安裕庄、康裕庄、承裕庄、安康庄、永丰庄、信裕庄、滋康庄和恒祥庄共11家。领用额度为25万元的有兆丰庄、五丰庄、宝丰庄三家。⁴⁶⁾

向钱庄开放领券后，因此前诸领用者与行方所订的领券合同在条款上多有差异，中行沪宁浙三行遂酌定统一的领用上海地名券办法：即领券者不问其为银行、钱庄，须备现金六成（不计息），整理案内公债或上海房产道契三成，领券行庄期票一成，领用十成钞票。公债照市价计算；道契以有房屋建筑之地产为限，另由通和洋行估价后照七折核计，估价如有涨落，亦可随时增减；拟定的可领用总额为1500万元，陆续发行。⁴⁷⁾ 中孚银行和永亨银行原已领用过中行上海地名券，此次亦照此项新定办法改定领券条件。有资格向中行领用上海地名券的钱庄为钱业公会的入会钱庄，未入会的元、亨字号钱庄则没有资格与行方订立领用暗记券合同。⁴⁸⁾ 又如各该庄于领用原额外，倘不敷使用，可再商向行方续领钞票，但其数额不得超过原定额度，

44) 张家骥：《中华币制史》，民国大学出版社1925年版，第139页。

45) 《陆书臣回忆：钱庄最初用五天期庄票向银行领用钞券》（1958年3月15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编：《上海钱庄史料》，第144页。

46) 《银钱业领用上海中行券之原券》，《银行周报》，8卷18号，1924年5月13日。

47) 杨端六：《对于钱庄领用中行券之感想》，《银行周报》，8卷18号，1924年5月13日。

48) 《陆书臣回忆：元、亨字号钱庄用汇划钱庄庄票领券》（1958年3月）。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编：《上海钱庄史料》，第146页。

且续行领用钞票之保证品及条件仍悉照原合同办理。⁴⁹⁾ 中行第一区内（包括沪宁浙皖四地，以下同）各行处收进此项兑换券，可随时由沪行向各领用庄兑回现金。

自开放领券并与各行庄陆续签订领用合同后，外间不明真相，舆论有责中行不应滥发钞票，供给军费者。主管沪券发行事务的中国银行上海分行因于同年5月4日召集各行庄，开会议决将此次领券者所缴的准备金进行公开检查，以昭诚信。行方对于领券行庄所缴纳的准备金负有完全保管责任，与其签订检查准备金办法四条。内容如下：

- 一、各行领券所缴准备现金六成、公债票（或道契）三成、庄票一成，由中行专库存储。
- 二、发行准备金，或以生金银及外国现货币存在本库，或存出国外抵充，悉听中行之便。如遇银根紧急之时，应酌提一成，专做短期押款，以供调剂市面之用。但存出国外，以二成为限。
- 三、上项准备金，一律公开。专库所存现金、生金银、外国货币、公债票（或道契）、庄票及一切单据，各领券行庄每月得轮推代表来行检查。
- 四、本办法如有未尽事宜，得随时协商修改。⁵⁰⁾

当日，领用中行上海地名券者实为16家，领用券共计172.5万元。各行推举代表徐宝琪，各庄推举代表田祈原及盛筱珊，会同检查存储准备金的专门库房。其中，现金准备计洋103.5万元（正合六成），公债票及道契合洋51.75万元（正合三成），即期庄票洋17.25万元（正合一成），十足准备，丝毫不误。检查后，各代表立有公签，以作为检查无误的凭证。中国银行上海分行特发启事，请各大报将之登入来函栏内，告知与各行庄订立的领用上海地名券办法及将准备金专库存储，公开检查的情形；同时声明嗣后将由各领券行庄轮推代表，随时检查，以昭信实。⁵¹⁾ 当年6月，领券行庄已有22家，领券总额达614万元。⁵²⁾ 8月，江浙一带发生战事，中行上海地名券与其它各银行钞票同遭挤兑，因准备充足，应付得宜，旋归平静，亦表明此项领券办法已由试验阶段进入稳固阶段。

此次中国银行上海分行向钱庄开放领券之事有数点值得注意。其一、钱庄向行方请领钞券，表明中行上海地名券在社会上信誉极佳，超过钱庄本票，所以各钱庄才联合要求领券。如此，则可相应地减少钱庄发行庄票的数额，扩大中行沪券的发行与流通范围。其二、各钱庄可领钞券总额为625万元，如依合同第九条的规定，可续领同等额度的兑换券，则将来领用额度可达

⁴⁹⁾ 徐沧水：《民国钞券史》（1924年6月24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编：《上海钱庄史料》，第146页。

⁵⁰⁾ 裕孙：《上海金融简史（二）》，《银行周报》，9卷20号，1925年6月2日。

⁵¹⁾ 徐寄庾编：《最近上海金融史》，《民国丛书》第四编第33册，上海书店出版社1989年影印版（据1932年版），第302-304页。

⁵²⁾ 徐沧水：《民国钞券史》（1924年6月24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编：《上海钱庄史料》，146页。

1250万元，上海金融界即可增加数百万元的交易筹码，有利于商业与贸易的发展。⁵³⁾ 其三、钱庄平时可以保证准备换领的钞票流通生息，如遇挤兑时，各钱庄必须以现金或暗记券换回保证准备，但其余六成钞票的兑现之责则由行方负担。行方在扩大领券活动的同时，亦应随时注意相应的风险。中行沪行将各行庄的领券准备专库存储，公开检查，亦有保证领券准备完全之意。

自1924年至1927年，中国银行上海地名券的发行额由4133万元增至7033万元，增发70%；诸行庄的领用额则自1917万元增至2326万元，⁵⁴⁾ 增发21.3%，增幅小于前者甚多。行方如需要大批增加钞票的发行额时，以“直接发行”的方式来增发易收实效，这也是此时段内沪券的本行直接发行额增幅快于行庄领券额的主要原因。区域行制度的实行和领券对象的开放为中行上海地名券的进一步增发创造了良好的条件。但与直接发行的方式相比，以领券方式增加发行额颇费周折，需要双方签订合同，明订暗记及兑现方式，分批领用及缴付准备等等，往往牵延日久，不若直接发行者收发自如，易于控制，是以出现领券额增幅较小的现象。以时局论，此数年中，江浙一带的战事不断，先后发生两次江浙战争，北伐的战火也渐次燃至长江下游地区。各地银根不时吃紧，金融业久怀戒心，力趋稳健。而中行上海地名券的发行额却稳步提升，“近年额数愈增，准备愈足，推行愈远，信用愈坚”。⁵⁵⁾ 这也得益于领券准备公开后，社会民众认知度的提升。1927年时，虽然沪宁浙皖次第沦为兵区，但中行沪券“在长江流域取携行使方便，推行较广”，⁵⁶⁾ 也促进了发行额的攀升。4月间武汉国民政府集中现金事件发生后，汉口的申汇暴涨，汉汇有行无市，各行汉券信誉顿失，币值在停兑后呈直线趋势下降，而各行申钞在流通中最受欢迎，币值一度高过现洋20%。中行上海地名券的流通区域也扩展到长江中上游地区，即原第三区（包括汉赣渝黔四行）范围内。在兑现方式上，中行上海地名券实行“长江不兑现”方针，⁵⁷⁾ 即沪券在长江流域各地流通时不兑现币，行方在各主要商埠设立沪券汇兑处，对持券人兑给申汇汇票，可持之在沪兑取现款。同年起，中国银行上海分行在汉口、宜昌、重庆等地相继设立沪券汇兑处，兼办各项银行业务。

1928年，是中行上海地名券的发行额增长得最快的一年，发行总额由上年末的7034万元增至11195万元，其占中国银行全行发行额的百分比也由44.2%增至65%。⁵⁸⁾ 增发的主要原因有两

⁵³⁾ 杨端六：《对于钱庄领用中行券之感想》，《银行周报》，8卷18号，1924年5月13日。

⁵⁴⁾ 葛庐：《论上海中国银行之公开准备》，《银行周报》，12卷12号，1928年4月3日。

⁵⁵⁾ 《中国银行民国十四年营业报告》（1925年）。中国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中国银行行史资料汇编（1912-1949）》上编三，第1939页。

⁵⁶⁾ 《中国银行民国十六年营业报告》（1927年）。中国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中国银行行史资料汇编（1912-1949）》上编三，第1963页。

⁵⁷⁾ 《第一区区域行第六届全区会议议案第三案》（1929年10月3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2。

⁵⁸⁾ 中国银行上海国际金融研究所行史编写组：《中国银行上海分行史（1912-1949）》，经济科学出

点，一是中行上海地名券的流通范围扩展至长江中上游地区，远至津浦线、平汉线各城市，二是同年4月行方确立了沪券发行准备金全部公开检查的制度，社会民众深感其币值稳定且有保障，乐于储用。此时，上海地名券已经成为中国银行所发行的最重要的地名兑换券，流通亦广。中行的主要负责人及上海分行的经理层都认识到，上海地名券应保有充足的准备金，方可保证此种钞票信誉卓著，商民行使无虞，即“发行愈增，则中行之责任愈重”，⁵⁹⁾ 最收实效的方法就是确立准备金公开检查制度。如未将准备情况完全公开，难得社会上的完全信用。一旦发生风波，引起挤兑，势必影响社会及金融的稳定。因而，“沪分区行之准备完全公开，乃不可一日缓也”。⁶⁰⁾ 南京国民政府自成立后就着力加强对于金融机构的监管，中行上海分行因恐当局以发行数为借款依据，迅速着手将全部发行准备公开的事宜。中行副总裁张嘉璈在致董事王叔鲁和冯幼伟的信中谈到，准备金情况被完全公开后，“在消极方面，当局既不能以检查准备为要挟；而一经公共团体负检查之责，政府指此筹款，当亦有所顾虑。积极方面，则沪券正在推行长江一带，一经公开，不特信用昭著，推行顺利，而中行当局亦可大白于公众。”⁶¹⁾ 经迭向当局疏通并得到国民政府财政部的许可，中国银行上海分行于4月1日首次对上海地名券的全部准备进行公开检查，这是继1924年5月沪券领券行庄准备公开检查后其在发行准备方面做出的另一项重要举措。此项检查在此后的十年中每月进行一次，形成制度，成为确保中行上海地名券信誉的一项重要内容。

三、

在准备金公开检查报告中，中行上海地名券的发行被分为本行发行、联行⁶²⁾（即中国银行的其它分行）领用及各行庄领用三种，均备足现金六成，其余四成，以为准备。1928年4月公开检查的准备部分即为中国银行上海分行及联行发行的兑换券准备金。联行领用是一种新兴的特殊领券方式，即在有发行权的大银行内部，由他地的分支行向所发地名券信誉好的分行缴纳准备，领发本行其他分行地名券的发行方式，也是领券行为在实行分支行制度的大银行内部的变

版社1991年版，第22页。

⁵⁹⁾ 葛庐：《论上海中国银行之公开准备》。

⁶⁰⁾ 裕孙：《上海中国银行发行准备公开之成绩》，《银行周报》，13卷12号，1929年4月2日。

⁶¹⁾ 《张嘉璈致王叔鲁、冯幼伟函》（1928年3月24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2)－36。

⁶²⁾ 银行间在办理业务往来时称联行往来。中国银行上海分行发行的沪券信誉好，天津分行、广东分行等都曾向上海分行缴纳准备金，领发沪券，即为联行领用。但联行领用与各行庄领用在准备金的管理上是不同的。在统计中国银行的兑换券发行总额时，有时将两者并计，称为“本联行发行”。《中央银行月报》在统计各银行发券及准备金数目表时，亦将联行领用单列出。

通表现。中行上海地名券的流通区域也因而更加广泛了。当年5月末,中行沪券准备第三次公开检查时,已比两个月前增加发行1190余万元,足见民众对于“信用优良软币之需要”甚殷。从增发的类别来看,本行发行增加776万元,联行领用增加332万元,行庄领用只增加83万元,与此前数年间上海地名券的增发情况类似。此时,除直接发行外,联行领用在本期内于中国银行内部得以积极展开。1929年,粤行开始推行沪券,试办后颇见成效。一般商民一因领用关系,二因爱国思想,对于沪券颇为乐用。港行经理郑铁如对于在粤推行沪券一事也极为赞同,尽量设法推广。⁶³⁾ 次年,粤行领用沪券以十足现金作为准备,其中的四成由沪行给予月息三厘,以资贴补。⁶⁴⁾ 1935年,总管理处为扩大沪券的流通,嘱津行在陇海路沿线及平汉路南段试用。经沪津两行商妥后,由津行领用沪券500万元,包括一元券200万元,五元券300万元,上加暗记T或N,以资识别,运津发行;回笼券以南京、汉口、徐州三行为集中地点,以便津行随时设法运回。中国银行第一区内各行处在兑入该券时,在存入券科目下另立“津领沪券”子目记帐。⁶⁵⁾ 津行指定郑州、许昌、西安、渭南、陕州、灵宝、开封、归德八处于11月1日开始推行。⁶⁶⁾

除联行领用发行的方式外,以中行上海分行为首的各行处也注意在原有流通区域内以领券的方式推广上海地名券的使用。因与中南、中国实业等有发行权的银行在兑换券的使用上存在着竞争,自1930年起,中国银行第一区内各行处可在当地择殷实钱庄,给予利益,准其以迟期三、五天兑付的庄票领用上海地名券,以利发行。中行镇支行曾允许当地的晋生庄以此种方式领券使用。⁶⁷⁾ 以迟期兑现票据为准备领券的作法是将票据迟期兑现期限内资金使用所得的利润让与领用者,以吸引各地领户。但票据的迟期兑现则给发行行带来一定的风险,这种领用方式也没有得以广泛推行。自1932年起,中行第一区内各行处开始与江浙境内的钱庄签订小额领券合同,以期增进发行。⁶⁸⁾ 区行管理委员会制定了相应的办事原则:在领用方式上,为减少因缴纳保证准备若干而在金融紧张时带来的兑现风险,推行十足现金领券,由领用者向行方缴付十成现金,作为准备,行方对其中的四成准金付息,但年息不得超过七厘;在领用机构上,

⁶³⁾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致宁行函》(1930年3月3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2643。

⁶⁴⁾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1930年通函》(1930年3月24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2643。

⁶⁵⁾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1935年区字第十号通函》(1935年9月16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⁶⁶⁾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1935年区字第十一号通函》(1935年10月21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⁶⁷⁾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致宁行函》(1930年5月23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2643。迟期领券是以迟期兑现票据作为准备领用兑换券的方式。

⁶⁸⁾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第九届全区会议议案第一案》(1932年6月15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2。

各地的领券者不宜过多，如暗记过多，则分别更觉麻烦，徒增发行用费。⁶⁹⁾ 各领券行庄所缴准备金集中存于区行所在地上海，由沪行办理具体手续及出帐。其具体的作法是，领户先将十成现金交付行方，沪行以四成现金转作定期存款，以存单充保证准备；领券期满解约时，将存款与保证准备对转，并将利息算至满期日为止，迟期不计。⁷⁰⁾ 沪行用转作定存的四成现金购买债券，以公债的利息抵补付给领券行庄的四成现金利息。当时，公债的年息普遍在六厘以上，且市价常常仅为票面的几折，因而公债的实际年息高于六厘。行方付予十足现金领券户的四成准备年息多在五厘以下，足资抵补。四成现金应付利息和暗记券运费由各行处以“发行用费”名目出帐，运费为运券额的千分之一。⁷¹⁾ 1930年中行粤行领用沪券时，十成现金准备中的四成月给息三厘。⁷²⁾ 1934年徐州国民银行领用中行沪券时，请求对十成现金准备中的四成按长年八厘给息，第一区区域行管理委员会定议仅给年息五厘。同年，苏州鸿康、裕元、鸿盛等钱庄向中行苏支行领用上海地名券时，向行方交付十成现金，四成年给息亦为五厘。⁷³⁾

自允许江浙各地小钱庄领券使用后，领户日益增多，中行上海地名券的暗记券种类也大为增加，给暗记券的检理带来了诸多困难。为图方便，有的行处将各种暗记券混在一起运沪，为此，中行第一区区域行要求各行处必须将各种暗记券分别理清后就近转运，以便向领户兑回现币。⁷⁴⁾ 因领券户众多而给中行上海地名券在发行事务上带来的麻烦与不便引起了区域行管理委员会的注意。在推广发行有所收效后，各行处即于1934年起收束领券发行业务，暂停办理同业领用事宜，仅可在没有领户的地方与有特殊关系者且酌订一、二家，以资联络，对同业以迟期票据领券者，则酌量减做。⁷⁵⁾ 当时，白银外流问题严重，中交两行“对于发行钞券，均抑自销政策，不轻易给他行领用”。⁷⁶⁾ 同年的中行行务总会在讨论应如何处理他行领券发行与本行自身发行间的关系时也议定：各分行处对小额分散的领券户可不必过分限制，以资推广本券的

⁶⁹⁾ 《中国银行第一区1932年区字第三号通函》（1932年6月22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255。

⁷⁰⁾ 《上海商业储蓄银行南京分行呈总经理函》（1946年12月23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6。

⁷¹⁾ 《中国银行第一区1932年区字第四号通函》（1932年6月25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255。

⁷²⁾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致宁行函》（1930年3月24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2643。

⁷³⁾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夏徐支行函》（1934年3月5日）。《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致宁行函》（1934年5月1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0846。

⁷⁴⁾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1933年区字5号通函》（1933年）。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0846。

⁷⁵⁾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谈话会记录》（1934年9月25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10846。

⁷⁶⁾ 《浙江兴业银行总行复汉口管辖行函》（1934年9月21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使用,但对巨额领券户应“格外审慎”。⁷⁷⁾次年,中行第一区区内各行在上海地名券的领券业务方面商订了新的规则:即凡商领暗记券者,准备概以十足现金准备为原则,对于四成准备所给年息不得超过六厘;十足现金领户交来准备的四成可由行购置证券,抵补所付四成准金息;同业如储有债券,商请按照六四成例订领者,可酌量通融;上海同业可酌量搭配道契作为保证准备,但折扣须在五折以下。对同业领用暗记券者,应严加审择,如非真实推行,不能允订;前订各领户由区域行审查其推广沪券的情形与成绩,如仅为盘剥搬运图利者,应于合同期满时解约。⁷⁸⁾迟期票据领券方式因害多利少,已确定以不做为原则;前已做出者逐步缩减,未做者一律停止。⁷⁹⁾

从1928年至1935年中行上海地名券领券发行总额的整体变化趋势来看,呈一个小的波浪形状态。1928年4月至1930年7月间,沪券的领用发行额是稳中有升,从2432万元增至3333万元,增幅为37%;其后至1935年11月法币政策施行时,沪券的领用发行额呈缓慢的下降趋势,下降至1351万元,降幅为59%。同期,在不计季节性的增减因素外,中行上海地名券的整体发行额从9000万元左右增至11000至12000万元之间。⁸⁰⁾虽然总发行额增幅不大,仍可明显看出中国银行上海分行对于领券业务是进行收缩的。这表明,行方不再主要依靠领券的方式提高发行额,而是更多地把他作为一种推广本券使用的方式,并出现领用的新方法与新标准。行方在领券活动中既给予领券者一些利益,以便利用这种方式来推广沪券的使用,如推行以迟期兑现票据为准备的领券方法;还力求确保发行行利益,保证领用券兑现和发行准备安全的措施,如推行十成现金领券制等。同时,作为一种进入成熟阶段的制度,领券活动中的利弊并存已突显出来。据不完全统计,20世纪30年代前期,中行上海地名券上的暗记种类多达百种以上,⁸¹⁾剔理及运券以向领用者兑现的事务极为繁琐。为控制发行成本,行方自1934年起暂停办理同业领用,对联行领用则不加限制。

在早期订立的领券合同中,领户缴付的准备成分与1928年中行沪券准备公开检查时的规定或有所出入,且并未规定领户必须缴付十足准备。受沪券准备金公开检查的影响,前订此种合同的准备条件经双方协商后得以修改。兴行1915年与中行订立的领券合约在1929年及1933年各修订部分条款。1929年时改定中行停付该行五成现金准备的年息二厘半;1933年时改定现金准备

⁷⁷⁾《中国银行民国二十三年行务会议纪要》(1934年)。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2)-99(1)。

⁷⁸⁾《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管理委员会临时会议议事录》(1935年4月13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⁷⁹⁾《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第十二届区务会议议案第三案》(1935年2月25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⁸⁰⁾参见《银行周报》每月公布的中国银行上海分行1928年至1937年每月发行额统计报告。

⁸¹⁾关于暗记券上暗记的含义参见拙文《中国银行上海地名暗记券考》(《中国钱币》2009年第1期)。

部分增为六成，中行不付利息，兴行再备保证准备二成交与中行，其余二成准备空额由兴行自备，并由中行方面向上海中国银行发行准备检查委员会声明。此外，兴行如向中行掉换新券领用，其印刷费由该行负担。⁸²⁾ 1924年8月上行与中行沪行签订的领券合约原规定交付的准备为现金六成，保证二成；上行自备准备二成，开具等额即期本票交付中行沪行收执。该款1931年4月修订为上行再交道契或公债二成，合成十足准备之数，中行沪行将上行所交本票退回。⁸³⁾ 1928年6月，上行再次与中行沪行订约领用上海地名券200万元，在汉口行用，其准备为现金六成，整理案内公债二成，房地契据二成，十足交付。⁸⁴⁾ 上行不再被允许领用时自备准备若干成了。

1935年11月，国民政府正式布告实行法币政策，财政部指定以中中交三行发行的纸币为法币（次年2月中国农民银行所发钞票准与法币同样行使），其它发行银行的现金准备及银钱业的营业现金一律封存。同月，财政部发布训令，准银行、钱庄照原有领券办法，以营业部分现金及兑换法币收入的现金六成、政府公债四成，以二年为期，向中央、中国、交通三行订约领用法币。其中，六成现金不给息，公债按市价的八扣折充。⁸⁵⁾ 中中交三行会商订定了同业领券合约底稿，中行总管理处随后分函各行处洽照办理。中行第一区区域行援此合约底稿与请领者洽商领用法币事宜，在谈妥额度并陈报总管理处核准后，即以上海中国银行的名义与其订约。⁸⁶⁾ 中行所发钞券因被定为法币，社会需求量猛增，行库内所存的上海地名五元券在当年底已用罄，一时无法调剂。此前各地行庄请领兑换券时，有已印未领或退还的暗记券存库，未能用出者若干。为调盈剂需，行方将已印暗记的五元券分别加盖红色及黑色花朵记号（暗记有红色及黑色两种），作为本券使用。间有加盖花朵记号后，未将前印暗记完全遮蔽而稍出露出者，也视同本券使用。⁸⁷⁾

法币政策的实行，是我国货币发行制度由分散制向集中制过渡的重要一环。此后，有发行权的中中交农四行开始发行无地名的法币券，中国银行上海地名券的发行历史也至此终结了。在领用券业务方面，各法币发行行原拟将前与领用行庄所订立的合同一律取消，但各行庄因利益

⁸²⁾ 《浙江兴业银行领用中国银行兑换券合同附件》（1929年5月23日，1933年3月1日）。上海市档案馆藏，浙江兴业银行档案，档号Q268-1-616。

⁸³⁾ 《上海银行领用上海中国银行兑换券合同附件》（1931年4月22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5。

⁸⁴⁾ 《上海上海银行领用上海中国银行兑换券合同》（1928年6月）。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5。合同中的“上海上海银行”指上海商业储蓄银行在沪的分行。

⁸⁵⁾ 《法币领用办法》（《行史清稿》第6章第4节）。交通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交通银行史料（1907-1949）》第一卷下册，第889页。

⁸⁶⁾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1935年第15号通函》（1935年11月22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⁸⁷⁾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1935年区字第17号通函》（1935年12月31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关系，以领券合约未满足为由不愿照办。中中交三行为稳定金融、调剂市面起见，议定原已领用者可暂时维持原约，订而未领者一律止领。中行第一区区域行将此决定知照辖内，并嘱各行处趁此时机在内地尽量吸收现金备用。⁸⁸⁾ 在止领或洽商解约时，发行行往往多付给领用者一些准金利息，作为解约时给领用者造成损失的一种补偿。上行与中行沪行曾于1934年9月订立领用兑换券500万元的合约，十足现金准备，为期两年。在法币政策实施后双方解约时，中行沪行通融将四成现金准备利息算至1936年12月20日。⁸⁹⁾ 宁福、宁通等钱庄领用的暗记券在回笼后不再向原领户收兑，四成现金准备息也加算至1936年12月底，以后不再给息。⁹⁰⁾

四、

兑换券的发行与流通，一直是银行各项业务中的重中之重。兑换券，顾名思义，可以按票面金额与单位兑换相应的银质或铜质货币，是金属货币的代用品。兑换券由有发行权的银行发行，流通于市面上。发行行如能保持所发钞券的无限制兑现，则此种钞券的价格可保持稳定；如果滥发，则会造成纸币价格的大幅跌落，引起挤兑风潮。扩大兑换券的发行额，既是银行增加资力的优先方式，也可带动存放汇兑等项业务的发展。是以民国初年时，华资银行、中外合办银行、外商银行等，都争先取得发行兑换券的特权。因而，民初的纸币发行权极为分散，为时人所病诟不已。

在通货的实际使用过程中，拥有大量资本、在全国范围内信用度高的大银行所发银行券在流通中逐步排斥着小银行的银行券。为了逐步统一发行权和更好地推广本行兑换券的使用，领券制度应运而生，“以为发券制度之统一方策，殊易渐收实效也。”⁹¹⁾ 在领用活动中，发行行给予领券者一定的利益，领券者增加了可支配的货币资金和由增加货币资金投放所带来的收益。故“奖励领券之目的，实欲藉此为从多数发行制达到单一发行制之一过渡办法。”相应地，领券活动的实行促进发行权日益集中于少数大银行手中，所发钞券行用于乡里无虞。“自民国七、八年以至十二、三年间所产生之银行，莫不以获得发行权为急务”，因为领券活动日见发达，“利益虽微，立场极稳”，1925年以后，“不更闻有新发券银行之产生”。⁹²⁾ 相应地，领券

⁸⁸⁾ 《中国银行第一区区域行致宁行函》（1935年11月23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Q54-3-35。

⁸⁹⁾ 《上海商业储蓄银行南京分行呈总经理函》（1946年12月23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6。

⁹⁰⁾ 《中国银行宁行致第一区区域行函》（1937年2月10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中国银行档案，档号397-255。

⁹¹⁾ 沧水：《发券制度之变迁》，《银行周报》，6卷48号，1922年12月22日。

行数及领用总额都有所扩大。

领券活动在发展演进的过程中也经历了一个从无序到比较有序的过程。以中国银行上海地名券的领用活动来看,相关活动的发展和领用条款的细则经历了一个从粗犷到精细,从不太规范到比较规范的过程,逐步制度化,大体反映出了近代中国银行业领券发行制度的变迁历程。特别值得一提的是,行内对于领券条件的划一,是领券活动制度化发展过程中关键的一环,即1924年5月中国银行上海分行公开检查领券准备时对于领券准备成分的划一。以此为分界点,从1915年中行沪券开始被领用时起至此时为领券活动粗线条发展的无序阶段,从此时至1935年法币政策实行停发中行上海地名券时止,为领券活动有一定行内标准的有序发展阶段。在后者中,又可以1928年4月中行上海地名券全部准备金的公开检查为标志分为两个小的阶段,前者为领券活动制度化后的迅速发展阶段,后者为出现新标准、新方式的有序发展阶段。

清末及北洋政府时期,各发行行的领券发行活动都处于一种自我管理、自我约束的发展状态中。在社会经济大环境比较宽松的条件下,各主要发行行在开展领券发行活动时都对合约要件进行着调整和规范,以保证本行的利益最大化。以中行上海地名券的领用情况来看,集中体现在领券准备成分的变化上。中国银行在领券活动开展初期与各商业银行签订的领用合约中均规定仅缴现金准备五成,这也与1910年清政府公布的《兑换纸币则例》和1915年北京政府公布的《取缔纸币则例》中对于现金准备的规定相符。⁹³⁾ 发行行为了规避金融风险,渐趋要求领用时缴付十成准备,且提高现金准备的成数。1919年,北京政府财政部与币制局会拟了《兑换券暂行章程草案》,提出以中交两行为发行银行,兑换券的现款准备至少为发行额的七成,余者以政府公债、国库券或有价证券充保证准备。⁹⁴⁾ 这是一份较早的提出准备十成制的官方文件,表明发行行已渐趋要求领用者缴纳十成准备,即除现金准备若干成外,以证券票据充保证准备,以补足十成之数。从收益的角度出发,商业银行在领券使用时觉得现金准备为七成过高,要求减少。上行即有此明意。拥有发行权的中国实业银行在1922年致财政部的“关于确定兑换券发行额并附送发行规则函”中提出,在兑换券的准备方面,分行“得酌察情形,陈明总行,以有价证券充之,至多以四成为限,”⁹⁵⁾ 表明有发行权的银行开始以六成现金、四成保证

⁹²⁾ 谦益:《论领券制度》(1929年5月)。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编:《中华民国货币史资料》第一辑,第176页。这种说法不包括特种银行或中外合办银行获得的发行权,但反映了当时银行业一种大的趋势,即因领券有利可图,新成立的银行已不必非获得纸币发行权不可。

⁹³⁾ 《度支部尚书载泽等折——厘定〈兑换纸币则例〉》(宣统二年五月初十)。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金融史料组编:《中国近代货币史资料》第一辑下册,中华书局1964年版,第1053页。《取缔纸币则例》(1915年10月20日呈准公布)。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编:《中华民国货币史资料》第一辑,第136页。

⁹⁴⁾ 《财政部币制局会拟之兑换券暂行章程草案》(1919年5月)。中国第二历史档案馆、中国人民银行江苏省分行、江苏省金融志编委会合编:《中华民国金融法规选编》上册,档案出版社1989年版,第110页。

(即六四准备制)为准备成分。中行上海地名券的领用者也向行方提出过按此标准领用。其次,领券合约的签订对象也逐步具体化,多由发行行的分行代替总行或总管理处(总办事处)与具体的领用者,如某地的商业银行、信托公司或钱庄等,订立合约,允其按照一定的条件分批缴纳准备金,领券使用。与中行并驾齐驱的交通银行也拥有发行权,于1919年订立了《兑换券领用办法》,作为各行庄领用钞券时办理业务的依据。1923年2月,交行订定《同业领券办法》,向其领券者分为长期领用与短期领用两种,长期领户所缴纳的准备金成分有三种,但均为十成,⁹⁶⁾亦间接表明这种以足值领额的现金及债券等为准备的条件已为各发行行所认可及采纳。在十成准备制成为业内共识后,1924年中行沪行公开领券准备时明订的六四准备制,除成为本行的领用标准外,在业内也具有相当的示范作用。就徐沧水的分析,当时各银行在沪分行的资力通扯当在全行的二成上下。⁹⁷⁾1925年时,中交在沪分行分别拥有当时上海银行公会会员资力总和的41%和25%,⁹⁸⁾亦足以间接证明这两家银行的实力及其在华资银行业内的地位。所以,中行上海地名券的开放领用及明订准备成分、公开检查之举对当时的上海金融界而言意义颇深。此后,缴纳六成现金、四成保证的六四准备制开始在华资银行业内普遍适用。向交通银行领券者逐渐以交付六四准备成分者为多;四行准备库1922年成立时曾以十足现金准备相号召,为获取更多的领券利益,金城、盐业、大陆、中南四行自1926年起开始以六成现金、四成保证向准备库领取暗记券使用。⁹⁹⁾从数额来看,领券额约占各行发行总额的25%至28%之间,发行大权“渐次集中于此数大银行(指中行、交行、四行准备库等行)之手”。¹⁰⁰⁾

作为一种起着集中货币发行权的制度,领券者于其中所得收益比较丰厚。第一重利益可从所缴准备金中所得。发行行初对领户所交付的现金准备计息若干,继对十足现金准备者中的四成给年息若干(有的对全部现金准备计息,但利息较四成给息者低)。缴纳部分现金准备的领券者,保证准备中公债的中签本息仍归其所有;以迟期兑现票据作为准备者还可获得票据迟期兑现期限内的利息收益。第二重利益可从领用券的使用中获得,即货币资本在使用中所带来的利

⁹⁵⁾《中国实业银行关于确定兑换券发行额并附送发行规则函》(1922年5月26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中国人民银行江苏省分行、江苏省金融志编委会合编:《中华民国金融法规选编》上册,第130页。

⁹⁶⁾《兑换券领用办法》(《行史清稿》第6章第4节)。交通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交通银行史料(1907-1949)》第一卷下册,第882页。一种为六四制,六成现金不给息,四成为公债,公债中签本息均归领券户所有;第二种为十足制,领户缴纳十足现金,四成给息,六成不给息;第三种为八二制,领户缴纳八成现金不给息,二成为公债,公债本息为领券户为所有,并另存现金一成作为活期往来,照给利息。

⁹⁷⁾徐沧水:《我国各银行资力之分析及其利益之比较》,《银行周报》,3卷29号,1919年8月12日。

⁹⁸⁾徐寄庠:《最近上海金融史》,第2、45页。

⁹⁹⁾康金莉:《北四行研究(1915-1937)》,冶金工业出版社2010年版,第127-128页。许家骏等编:《周作民与金城银行》,中国文史出版社1993年版,第161页。

¹⁰⁰⁾谦益:《论领券制度》(1929年5月)。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编:《中华民国货币史资料》第一辑,第176页。

润。以道契、本票、汇票等作为保证准备者，等于将无法变现运用的契约与票据变成现金使用。领用券虽加暗记，各不相同，但人们在日常使用中仍把它作为发行行的兑换券，以发行行的信誉为准，领券者只保证将用出的暗记券兑现即可。领用时可以分批随时领用，随领随缴准备金，自然为领券者所乐从。第三重利益来自其它方面，如代兑发行行兑换券，可获得汇水上的收益及节省暗记券运送费。领券者将领用券设法兑成现洋后，可运至洋厘价格较高之处，获得现币兑换中的收益。领券者还可同时向多家发行行领用，参酌彼此可得利益。以上海商业储蓄银行为例，1926年以前，各行对于缴纳的六成现金准备给予一定的利息，上海商业储蓄银行在这方面的收益占总营业收入的18%。1927年以后，现金方面不计息，收益较前期略低，但仍占总收益的13%。上行每领用1000万元兑换券，一年就可获得约40万元的盈利。该行领券数额占存款总额的比重逐年上升。¹⁰¹⁾ 兴行的天津分行曾以领用的10万元中行钞票作为分庄的开办资本。¹⁰²⁾ 前述该行于1922年重获发行权后，因不愿放弃领用中行券的既得利益，不愿解约；中行上下则颇感不满，各分行纷纷要求停付兴行领券现金准备的利息。最终，双方商定将领券总额由500万元减至300万元，兴行继续领用。这说明，领用中行券对兴行来说是很利。浙江实业银行和浙江地方银行分开经营后，原领200万元额度中有70万元归后者使用。浙江实业银行为此多次与中行协商，要求补足70万元的缺额，得到中行的同意，浙实领用的中行券也得以“流通甚畅”。¹⁰³⁾ 1926年时，上海东方汇理银行帐房曾向上海中国实业银行领用过总额为35万元的钞票，备足十成现金，四成年给息七厘，¹⁰⁴⁾ 也是一个十分典型的个案。

中行上海地名券的领用活动进入到有序发展阶段后，领用额一度提高得很快。1927年南京国民政府成立后，采取了把政治中心和经济中心适当分离，把上海发展为最大的、最重要的金融中心的方针，¹⁰⁵⁾ 推行了一系列的政策与措施。中央银行1928年在沪成立后，公布了《中央银行兑换券章程》，特设发行局发行兑换券，按六四成数十足准备。¹⁰⁶⁾ 次年，领用者已甚众。该行先后制定了《中央银行长期领用兑换券规则》¹⁰⁷⁾ 和《中央银行同业长期领用兑换券规则》，¹⁰⁸⁾ 据此与各行庄签定领用合约，均规定各户领券时需缴纳六成现金准备，四成保证准

¹⁰¹⁾ 《前言》，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上海商业储蓄银行史料》，第13页。

¹⁰²⁾ 浙兴档，董事会议录（1916年3月13日），沪银档。转引自汪敬虞主编《中国近代经济史（1895-1927）》下册，北京经济管理出版社2007年版，第1727页。

¹⁰³⁾ 浙兴档，沪银档。转引自汪敬虞主编《中国近代经济史（1895-1927）》下册，第1727-1728页。

¹⁰⁴⁾ 《上海东方汇理银行帐房向上海中国实业银行领用兑换券合同》（1925年10月21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实业银行档案，档号Q276-1-403。

¹⁰⁵⁾ 吴景平：《近代中国金融中心的区域演变》，《中国社会科学》，1994年第2期，第180页。

¹⁰⁶⁾ 《中央银行兑换券章程》（1928年10月25日）。中国第二历史档案馆、中国人民银行江苏省分行、江苏省金融志编委会合编：《中华民国金融法规选编》上册，第363页。

¹⁰⁷⁾ 《中央银行长期领用兑换券规则》。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4。该规则原文并无时间，但据内容分析，制定时间应在后者之前。

¹⁰⁸⁾ 《中央银行同业长期领用兑换券规则》（1933年9月）。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

备，与1928年4月中国银行上海地名券全部发行准备公开检查时规定的准备内容相同。中行此举，系根据世界各国先例与我国实况，“自定一种准备制度，以确立发行之基础，维持国家之信用。”¹⁰⁹⁾ 两行之举皆表明，六四准备制已经完全得到业内认可，成为各家有发行权的大银行发行兑换券和领用者领券使用时必须提供的相应准备成分的通用标准。以此为标志，我国近代银行业的领券发行制度的发展从整体上进入了一个新的阶段，即成熟发展期，在方式和要件上已形成了一定的业内惯例。在前一阶段中，领券活动所起到的集中货币（纸币）发行权的作用十分明显，而在后一阶段中，货币（纸币）的发行权已经相对地集中到一些实力雄厚的大银行，尤其是中中交三行手中，各行在推广本行钞券的使用上存在着竞争，领券活动除了继续发挥着已有的作用外，发展成为推广本券使用的手段。

中央银行自成立后在兑换券的发行方面奋起直追，并享有一些独特的优惠。如铁道部为推广中央银行兑换券的流通，对经铁路向沪运送的该行暗记券免收运费。¹¹⁰⁾ 到20世纪30年代初，它与中交两行在兑换券发行方面的竞争已十分激烈。中国银行在长江各埠通用的上海地名券，均不能在当地兑取现洋，只能兑给申汇汇票。中央银行则在南通、九江等地以钞券能够兑现作为号召，且利用财政部的力量，壅断军队汇贻饷款，强制行用中央券。中行方面的竞争策略则是深入内地，利用中国银行的券信和众多分支机构，推广发行。¹¹¹⁾ 第一区区域行就适时地制定了允许江浙境内的小钱庄领券使用的策略。为厚储现金，中交两行推行十足现金领用的方式，而向四库准备库及中央银行领钞可缴六成现金准备，四成保证准备，¹¹²⁾ 条件较为优厚，吸引了一大批包括金城银行在内的领用者。此外，领券活动除中中交三行比较活跃外，其它有发行权的商业银行也积极推广自己发行的钞票。1926至1935年间，向中国实业银行领券的就有新华银行上海分行、通和银行上海分行、浦东银行上海分行、安徽银行上海分行、太平银行上海分行、国华银行、民信商业储蓄银行、大同商业银行通汇处、同新庄、元成庄、永兴钱庄、温州达东银号等，¹¹³⁾ 领用活动十分活跃。在领用数额上，一般说来，实力较弱的小银行和钱庄的领券数额较小，仅有几十万元，甚至几万元。1935年时，向中国通商银行苏州分行领券的十家钱庄中，就有五家的实领额不足十万元，四家实领额在十万至二十万元之间，只有一家的

案，档号Q275-1-870。

¹⁰⁹⁾ 张公权：《各国之发行准备制度与上海中国银行准备公开办法之比较》，《银行周报》，12卷16号，1928年5月1日。

¹¹⁰⁾ 《中央银行发行局致上海银行函》（1929年4月19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0。

¹¹¹⁾ 中国银行上海国际金融研究所行史编写组：《中国银行上海分行史（1912-1949）》，第84页。

¹¹²⁾ 《周作民致沪、青、汉、津行经副理密函》（1935年4月3日）。中国人民银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所编：《金城银行史料》，上海人民出版社1983年版，第326页。

¹¹³⁾ 《中国实业银行关于本外埠同业领用暗记券签订合同，调换保证品等事项的来文》（1926年~1935年）。上海市档案馆藏，中国实业银行档案，档号Q276-1-403。

实领额超过了二十万元。¹¹⁴⁾ 1934年,龙游地方银行向浙江兴业银行订领上海地名券仅20万,次年5月续领10万元,而该行在9月间即宣告停业清理。¹¹⁵⁾

此外,领券使用活动活跃的直接结果之一就是发行行领券户数额和暗记券种类的直线上升。中行上海地名暗记券的领用者分布于长江上中下游各市县,领用券的兑现活动琐碎而零乱,发行成本也随之提高。因而,中行上海地名券的行庄领用活动在有所收效后被渐次收缩,代之以联行领用行为的兴起;中行沪券的领用总额也在法币政策实行前较1932年高峰时下降了六成。同样地,交行在此时段中也对同业领券采取紧缩政策,1934年末其本行直接发行者约占十分之八。1935年时,因战事关系,交行上下对于同业领券“均极端收缩”。¹¹⁶⁾ 为了减少暗记券的种类和其在流通与兑现中的繁琐之处,领用者自身也进行着整合。1932年,沪上各庄合组上海钱业准备库,加入准备库的各庄均委托准备库代向中央银行领券,各庄的领用暗记多用单字加一个数字表示,简明实用好记。¹¹⁷⁾ 1932年至1933年间,上海钱业准备库代各庄领用中央银行兑换券二批,一批为2000万元,缴纳现金六成,保证四成,行方暗记为“超”字;一批为1000万元,十足现金领用,四成给息,行方暗记为“心”字。¹¹⁸⁾

以发展的眼光来看,领券活动的出现及其制度化、规范化的进程所起到的积极作用是主要的,领券活动也是在市场导向为主的机制下逐渐形成业内惯例的。在自由市场型的金融模式下,市场中的竞争是有序的和有限度的,参与的个体能够达成某种共识或妥协,以保证个别企业和整个行业的基本利益,同业间的合作倾向占居主导地位。领券活动出现后,发育过程相对缓慢,但市场定位明确,市场创意具有完全的可操作性,业规和惯例成为这一类行为制度化的规范性条款。财力雄厚的大银行发行的以“元”为单位的兑换券为商业银行、钱庄、典当、信托公司等金融机构领用,发行权日趋集中于少数大型银行手中,也带动了我国货币制度的近代化和金融市场的规范发展。就华资银行业内部的团结程度来看,领券制度的发展也使各华资商业银行被团结在中交两行周围,形成核心与外围的关系。¹¹⁹⁾ 向中交两行领用钞票成为各商业银

¹¹⁴⁾ 《中国通商银行苏州分行致总处函》(1936年4月27日)。上海市档案馆藏,中国通商银行档案,档号Q281-1-525。

¹¹⁵⁾ 《上海商业储蓄银行界路分行致总经理函》(1935年9月17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商业储蓄银行档案,档号Q275-1-875。

¹¹⁶⁾ 《民国二十二年至二十五年之发行状况》[《交通银行行务纪录汇编》(二)]。交通银行总行、中国第二历史档案馆合编:《交通银行史料(1907-1949)》第一卷下册,第817、819页。

¹¹⁷⁾ 《钱业准备库领用暗记券事与中央银行发行局往来文书》(1932年),上海市档案馆藏,上海市钱业联合准备库档案,档号S178-2-19。已知的暗记有“钱1”、“钱2”、“钱3”、“钱6”、“钱7”、“钱9”、“钱14”、“超钱”、“超10”、“心”等。

¹¹⁸⁾ 《中央银行发行局总发行致上海钱业联合准备库函》(1932年11月2日)。上海市档案馆藏,上海市钱业联合准备库档案,档号S178-2-19

¹¹⁹⁾ 汪敬虞主编:《中国近代经济史(1895-1927)》下册,第1727-1729页。

行扩充资力的重要手段，同时，它们也借用中交两行的信用扩展了自己的业务。领券活动加强了华资银行业间的联系及同业往来，亦有助于华资银行业整体实力的增长。

与北洋时期的自由市场型金融模式不同，国民政府时期的金融制度是属于壟断型的。政府作为制度的推进源，制度的推进主要不再取决于基础的形成和发展，而是取决于政治需要和行政性的操作程序。当然，在其前期，尤其是1935年法币政策实施以前，其壟断型金融制度的特征，如政府起决定作用，产生中央银行制度，商业银行官办化，对自由市场加以限制、管制或取缔，滥发纸币成为全局性的必然现象，国内外市场分裂等等，¹²⁰⁾ 还不十分明显，仅初现端倪而已。在此阶段中，由于银行券的发行权已经相对集中，领券活动在已经规范化和制度化的基础上有了新的发展，如领用方式和准备条款等。与前一阶段相比，领券发行已不再是发行行增加本行银行券发行额的主要方式，而是更多地成为了推广本券使用的手段之一，在领用对象、领用条件等方面都有所放宽。同时，经过多年的领用活动的推动，分散发行的状况已大为改观，有了进行集中发行货币与集中准备的基础。

1935年11月4日，新的法币政策以国民政府财政部布告的名义通令执行，银本位制被彻底废除，开始实行金汇兑本位制。相应地，领券制原来所有的基础也将被打破。这项政策的施行切断了纸币与流通中的金属货币（主要指银元）的直接联系，资金开始松动，金融市场渐趋平稳。法币政策的一项主要内容是集中发行和集中准备，这对于统一当时我国混乱的货币制度也有着积极的意义。在法币政策施行之初，四行曾允许各地的金融机构以六成现金、四成保证向其分支行订约领用法币，但此种领用活动只能“领”而不能“兑”，即流通中的纸币无法再兑换成金属现币，只是利用领券的方式达到推广法币发行的目的，已与银本位制下的领券活动截然不同了。从整体上看，领券制度作为一种有效的相对集中货币发行权的“本土”制度，其收效是明显而积极向上的，而其存在的社会历史基础仍是学者们剖析这一独特的金融制度和中国近现代金融史的基本切入点。领券活动在发行权的相对集中有所收效后而逐渐收束衰减，也是一种发展中的必然了。

¹²⁰⁾ 杜恂诚：《中国近代两种金融制度的比较》，《中国社会科学》，2000年第2期，第183页。

<Abstract>

Possessing and issuing banknotes system was the peculiar system and the basic system in banking in modern China, taking a special position in paper money issuing history. Overall, possessing and issuing banknotes system experienced a process from unsound to form usual practice, shrinking after competition and manifest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lative activities on possessing and issuing banknotes with the place name Shanghai had distinguishing feature in banking at that time. Possessing and issuing activities on banknotes with the place name Shanghai by both sides, Bank of China and native financial constitution, reflected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he evolution course and requirements on the system from upsurge to decline in general. With the insight on the business development situation, it is a disorder development stage from 1915 to 1924 when a restriction was lifted, and it is a regulate development stage from 1924 to 1935 when Fabi policy implemented. In the latter stage, new possessing and issuing methods emerged, such like banknotes taken by other branches of Bank of China and handed in the whole reserved money. Judging from the whole, this system entered the mature stage from 1928. After Fabi policy put in practice, the value of banknotes decoupled whit metal money, so the circulation pattern of issuing and cashing was terminated forcibly, and relative activities also rapidly shrink.

Key words: possessing and issuing banknotes system, Bank of China, banknotes with the place name Shanghai

대만과 조선에서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

배 성 준(동북아역사재단)

目 次

1. 들어가며
2. 식민지 중앙은행의 형성
 - (1) 최초의 식민지 중앙은행, 대만은행의 설립
 - (2) 한국은행의 설립과 조선은행으로의 변경
3.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
 - (1) 대만에서의 화폐정리와 ‘대만은행권역’의 출현
 - (2) 조선에서의 화폐정리와 ‘조선은행권역’의 출현
4. 나가며: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과 모순

1. 들어가며

근대화의 식민지 기원론과 더불어 식민지에서의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시 식민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식민지 인식틀이었던 ‘지배-저항’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근대화론의 식민지 인식, 즉 식민지시기에 경제성장의 제도적 조건(사유재산, 시장경제)이 형성되고 이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식민지시기 근대화의 조건과 경험이 60-70년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인식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경제적 근대화에 대한 비교사적 분석을 제기하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식민지에서의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국주의자본이 운동하는 영역과 분리된 ‘민족경제’ 영역을 설정하는 민족주의의 식민지 인식이나 식민지·종속국에서 자본주의의 ‘저발전’(underdevelopment)을 상정하는 종속이론의 주변부 인식을 비판하고 식민지 지배와 자본주의 발전이 양립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에 대한 강조는 경제성장의 요인들(초기 조건, 관료, 투자 등)에 주목하거나 식민지관계를 상품·자본·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통합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식민지관계 또는 식민지라는 규정은 부차적

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정치적인 관계에 국한되어 버렸다. 즉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구분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을 비교하거나, 정치적 측면에서 식민지는 차별과 억압의 장소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식민지는 하나의 국민경제 또는 제국주의 경제에 통합된 지역경제(지방경제)로 상정하게 된다. 식민지에서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에 대한 주목이 식민지관계 또는 식민지라는 규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사라지게 하는 현상에 직면하여 다시금 식민지, 식민지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동화’ 이데올로기의 효력은 식민지가 도달해야 할 모델로서 식민지 본국을 위치시키고 식민지 본국의 제도와 문화에 이르는 과정 속에 식민지를 위치시킨다. 이때 식민지의 경제상황과 주민의 民度는 본국과 식민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하였으며, 제도의 이식과 적응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식민 지배가 장기화되고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긴밀하게 됨에 따라 ‘동화’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갔지만 식민지 일상에서 부딪치는 식민지와 본국의 ‘차이’, 제국신민 내부의 ‘차이’는 ‘동화’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식민지 본국은 식민지를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식민지는 식민지 본국과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없으며, 동화라는 의미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식민지관계를 최초로 정식화한 것은 1920년대에 출현한 ‘内地-外地’ 개념이었다. 내지에 대비되는 ‘외지’ 개념은 ‘外地法’이라는 용어에서 보이듯이 제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행해지지 않는 지역을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었으며,¹⁾ 共通法 제정을 계기로 조선, 대만, 관동주는 내지와 구별되는 외지로서 각기 이법지역(‘法域’)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법률상의 내지/외지 구분은 호적상의 내지/외지 구분 및 화폐상의 내지/외지 구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식민지 화폐영역이란 화폐상의 ‘외지’를 개념화한 것이다. ‘식민지 화폐영역’이란 일본은행권의 유통영역과 구분되는, 식민지에 존재하였던 식민지 중앙은행권의 유통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대만의 대만은행권 유통영역 및 조선의 조선은행권(제일은행권/한국은행권) 유통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律令을 통한 대만 법제의 형성 경험이 制令을 통한 조선 법제의 형성 과정에 도입, 변용되었듯이 대만은행권 유통영역의 형성이 조선은행권 유통영역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야마자키 탄쇼(山崎丹照)는 ‘外地’를 “우리의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이지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국가 전체를 위하여 제정된 법규가 원칙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규가 개별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행해지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研究』, 高山書院, 1943.

2. 식민지 중앙은행의 형성

일본이 최초로 세운 식민지은행인 대만은행과 통감부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은행은 관할지역이나 설립시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臺灣銀行法』(법률 제38호, 1897.3.30)과 『韓國銀行條例』(법률 제22호 1909.7.26)를 비교해 본다면, 대만은행의 감독권자가 '주무대신'(대장대신)이고 한국은행의 감독권자가 '정부'(대한제국 정부)라는 점, 『한국은행조례』의 42개 조항 중 한국은행 설립과 관련된 7개의 조항이 부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대만은행법』과 『한국은행조례』는 체계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²⁾ 이는 『한국은행조례』가 『대만은행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은행을 대만은행과 유사한 식민지 은행으로 삼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상이한 지역과 조건에서 설립되는 식민지 은행의 형성과정은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로만 국한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1) 최초의 식민지 중앙은행, 대만은행의 설립

· 일본의 대만 점령 초기부터 대만에 독자적인 중앙은행을 두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장대신이었던 마쓰가타 요사부로(松方正義)는 은행권 발행이 가능한 식민지 중앙은행의 설립을 제기하였고, 대만총독부에서도 대만의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대만은행 설립에 동조하였다. 일본은행도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만에서의 업무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만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³⁾ 일본 정부는 1897년 2월 칙령으로 『대만에서의 화폐 및 은행에 관한 사무주관의 건』을 제정하여 대만의 화폐 및 은행에 관한 政務를 大藏大臣의 관리하에 두었다. 이는 '63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비껴가면서 대장성 주도하에 대만의 화폐·금융제도를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곧이어 3월에 '대만은행법안'이 제출되었고, 별다른 이견 없이 제국의회를 통과하여 『대만은행법』이 공포되었다.

대만은행이 어떠한 은행을 모델로 하였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내각에서 제국의회에 제출한 '대만은행법안'에는 『일본은행조례』 및 『대환은행권조례』, 『横浜正金은행조례』, 『일본권업은행조례』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대장성에서 내각에 제출한 이유서에

2) 부가된 조항은 '일한양국인으로 주식소유의 제한'(제5조), '정부의 주식 3만주 인수'(6조), '규정 외 일본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7조),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의 변경'(제17조), '은행권 위조·변조의 처벌'(제27조), '정부의 영업비 보조'(제40조), '과료의 명령 및 항고'(제42조)이다.

3) 波形昭一,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1985, 61-62쪽.

는 “대만의 개발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의 개발을 속히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할 특별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대만은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⁴⁾ 또한 『대만은행법』을 공포하면서 일본정부는 ①상공업 및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 융통 ②南淸지방 및 南洋諸島와의 상업·무역 기관 ③일본인 사업의 대만 유치 ④幣制 정리 등을 대만은행 설립의 취지로서 제시하였다.⁵⁾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만은행은 일본은행, 橫浜正金은행, 일본권업은행을 참조하여 대만의 개발을 위한 특수은행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행권 발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본은행 사례, 일본과 남중국, 남양군도를 연결하는 국제금융업무와 관련해서는 요코하마쇼우킨은행 사례, 산업자금 융통과 관련해서는 일본권업은행 사례를 종합하여 ‘대만은행법안’이 작성되었다.⁶⁾

대만통치의 불안정 및 본국의 재정위기, 주식 모집 저조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던 대만은행은 1898년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민정장관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고토 민정장관은 1899년 3월 본국 정부로부터 대만은행 주식 100만주 인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본국 정부로부터 은행권 발행을 위한 은화 500만원을 대부받는 등 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 모집은 성황을 이루어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대만은행은 발권 기능을 가진 특수은행으로서, 발권 업무와 외환 업무 및 보통은행 업무를 겸하였다. 식민지 개발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행권을 발행하는 한편, 외환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까지 아울러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지금 대만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 불만한 것 매우 미미한 景況으로 금융소통의 길이 없”⁷⁾다는 상황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다양한 업무를 겸한 특수은행으로 대만은행이 설립된 것은 대만경제를 일본경제권으로 포섭하고 나아가 이를 남중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만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금을 취급하는 대만의 중앙은행으로 설립되었지만, 본국으로부터 발권 업무와 외환 업무 같은 특권을 부여받는 대신 본국 대장대신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상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근본적으로 대만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은 대만의 경제적 독립이

4) 『台灣銀行法ヲ定ム』, 『公文類聚』第二十一編・明治三十年・第二十四卷.(아시아역사자료센터 검색)

5) 臺灣銀行, 『臺灣銀行二十年誌』, 1919, 14-15쪽.

6) 『일본권업은행조례』는 정부의 감독 및 벌칙 부분만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토지조사를 통한 토지의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산업금융기관으로서 농업·부동산금융을 담당하는 일본권업은행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참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7) 『臺灣銀行二十年誌』, 15쪽.

유사시 본국 경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였다. 대만은행 설립 당시 “대만은 우리 본토와 멀리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상 同島(대만)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一朝 유사시에도 능히 경제상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책을 시설함을 要”⁸⁾한다고 대만의 경제적 독립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적 독립이 대만의 독자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10회 제국의회에서 ‘대만은행법안’ 심의 중에 대장성 監督局長 소에다 토시카즈(添田壽一)는 “특히 대만은 우리 본토와 떨어져 있어서 경제상의 독립이라는 것도 크게 고려하여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곧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국의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본국의 도움을 그다지 빌리지 않고서 대만 경제의 독립이 유지 가능하다고 할만한 방책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⁹⁾하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대만의 경제적 독립은 일본 화폐·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대만은행 또한 일본은행의 안정이라는 목적 아래 존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만은행은 설립과 더불어 대만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였다. 대만은행이 대만총독부에 재정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는 政府貸上金과 대만사업공채였다. 1899년 3월 제정된 「대만사업공채법」에는 대만은행의 정부 차입금 제공(1개년→3개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회 제국의회에서 대만사업공채 모집금액 3,500만엔이 심의, 결정되면서 내무성·대장성과 대만총독부 사이에 대만사업공채는 대만은행이 전담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은행의 초기 업무는 정부에 대한 재정자금 대출과 대만사업공채 인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대만은행의 정부사업 자금공급(천엔)

연도	政府貸上金 (정부대상/총대출)	臺灣事業公債 보유액
1899 말	2,500 (74.1)	-
1900	6,200 (80.8)	2,211
1901	5,200 (74.4)	2,207
1902	6,850 (68.6)	2,205
1903	3,978 (42.4)	2,203
1904	3,552 (34.6)	-
1905	1,610 (15.1)	204

비고: 波形昭一,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72쪽에서 작성

8) 臺灣銀行, 『臺灣銀行二十年誌』, 1919, 15쪽.

9) 『第10會帝國議會 貴族院本會議議事速記録』, 1897.3.8.(羽鳥敬彦, 『朝鮮における植民地幣制の形成』, 未來社, 1986, 151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금력의 한계가 이내 드러났다. 대만은행은 신용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주력하였으나, 대만은행권의 민간유통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재정자금 공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입금의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고, 대만사업공채도 1901년부터 대장성 예금부가 인수하게 되었다.¹⁰⁾

또한 대만은행은 남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만은행은 개점 직후 푸젠성 시아멘(廈門)에 직원을 파견하여 지점 개설에 착수하였으며, 1900년 5월 대만은행 시아멘지점을 개설하여 무역, 외환 업무를 개시하였다. 시아멘은 대만의 대안에 위치한 중국 진출 관문으로서, 대만은행 시아멘지점은 대만은행권의 남중국 유통을 위한 거점일 뿐 아니라 일본의 남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다.¹¹⁾ 1900년 8월 열강의 의화단사건 진압을 틈탄 일본군의 시아멘점령은 이러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후 대만은행은 남중국에서 약속어음 발행을 통한 일본 은화의 유포에 주력하였다. 1905년에 시아멘에서 약속어음 발행을 시작한 이래, 푸젠(1906), 산터우(1909), 주장(1914), 한커우(1915) 등지로 확대하였다.

(2) 한국은행의 설립과 조선은행으로의 변경

1907년 7월 정미조약 체결로 통감부가 한국 내정을 장악하고, 대장성 주계국장 아라이 켄타로(荒井賢太郎)가 탁지부차관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에서의 중앙은행 설립을 검토하였다. 중앙은행 설립안은 통감부에서 ‘大韓銀行’ 설립안으로 제기되었고 대장성과의 협의를 거쳐, 1908년 2월 이토 통감이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제일은행장에게 중앙은행 설립안과 인계조건을 제시하였다.¹³⁾ 통감부가 제일은행을 대신하여 중앙은행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일본에 본점을 둔 일개 사립은행으로서는 국책 수행이 어려우며, 제일은행 업무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입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¹⁴⁾

중앙은행 설립과정에 대한 자료는 이미 자세하게 검토되었다.¹⁵⁾ 여기에서는 중앙은행

10) 『臺灣銀行二十年誌』, 115-121쪽.

11) 後藤新平은 1899년 가을에 제출한 『臺灣銀行廈門支店設置意見』에서 시아멘지점을 “제국남진의 前驅”라고 불렀다.

12) 청일전쟁 직후 일본의 北守南進論과 의화단사건 과정에서 일본의 시아멘점령에 대해서는 조 명철,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일본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9, 2002. 참조.

13) 朝鮮銀行史研究會,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1987, 33-36쪽.

14) 『韓國中央金融機關設置案』, 『第一勸業銀行所藏資料』

15) 『朝鮮銀行史』(朝鮮銀行史研究會, 1987)에서는 1907년 8월 통감부에서 작성한 『韓國中央銀行設立ニ關スル方法ノ綱要』에서 1909년 7월 정부가 공포한 『한국은행조례』까지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다.

설립안에서 드러난 쟁점을 간추려 보자면, ①한국법으로 설립할 것인가, 일본법으로 설립할 것인가 ②중앙은행을 설립할 것인가, 일본은행 지점을 설치할 것인가 ③중앙은행 업무만을 수행할 것인가, 보통은행 업무를 겸영할 것인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①과 관련하여 한국법으로 할 경우 일본정부의 감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일본법으로 할 경우 대한제국의 인민을 대상으로 설립되는 중앙은행을 일본법으로 규율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한국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조례』를 제정하되 규정 외에는 일본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통감부와 대장성의 협의 당시 ‘한국중앙은행 설립안’과 ‘일본은행지점 설치안’이 동시에 제출되었고, 대장성은 중앙은행 설립에 부정적이었다.¹⁶⁾ 그러나 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하여 식민지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통감부의 적극적인 시도로 제일은행과의 인계조건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었다.¹⁷⁾ ③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중앙은행 업무만을 행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중앙은행 업무와 보통은행 업무를 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중앙은행 설립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 중앙은행 설립이 대만은행과 비교되고 있다는 점이다. 1908년 하반기 대장성에서 작성된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건』에서 중앙은행을 신설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대만은행 처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를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에 유비하면서 “폐제통일을 목적으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한국 중앙은행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대만에서 대만은행을 폐지하고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중앙은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대만에서 대만은행의 존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⁸⁾라고 한국의 중앙은행과 대만의 대만은행을 동일한 위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설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효력을 상실한 『한국은행조례』를 대체할 ‘조선은행법안’을 입안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은행조례』의 틀과 내용을 그대로 둔 채, 감독권을 ‘정부’에서 ‘조선총독’으로 고치고, 규정 외 일본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7조), 은행권 위조·변조의 처벌(제27조), 정부의 영업비 보조(제40조) 같은 조항을 제외한 ‘조선은행법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제국의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1911년 3월 『조선은행법』(법률 제48호, 1911.3.29)이 공포되었고, ‘조선은행’으로 11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16) 통감부가 제출한 2개의 안에 대하여 대장차관은 대장대신에게 “중앙은행 관련 부분은 제1안도 실행하기 자못 곤란함은 물론, 연구의 결과는 혹은 현상유지(물론 개혁을 가하여) 만약 엄중한 조건을 정하여 일본은행출장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韓國銀行ニ關スル件』, 『阪谷芳郎文書』(朝鮮銀行史研究會, 앞의 책, 892쪽에서 재인용)

17) 波形昭一, 앞의 책, 223-227쪽.

18) 『韓國中央銀行ニ關スル件』, 『水町家文書』 第7号.

대장성과의 협의 및 제27회 제국의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조선은행에 대한 조선총독의 감독권이였다. 이에 대하여 대장대신과 조선총독의 협의를 거쳐 ‘정부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라는 원칙 아래 세부사항에 대한 감독권은 조선총독이 장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⁹⁾ 대장대신의 감독을 규정한 대만은행과 비교하면 조선은행에 대한 조선총독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는 ‘천황에 直隸하는’ 조선총독의 위상에 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행법안’ 심의과정에서 조선에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권을 발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라이 켄타로 정부위원은 “조선의 경제情態는 지금 일본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이른바 은행의 은행인 순연한 신용기관으로서 그대로 조선에서 영업하는 것은 어쨌든 조선의 정태에 적합하지 않고 …… 대만은행과 유사한 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조선 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 일본은행과 다른 하나의 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일본은행은 태환권의 기초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되며, 태환권의 기초에 동요를 미치는 것은 가능한 막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조선의 정태를 본다면 내지와 달라서 경제의 기초가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동요를 면할 수 없고 …… 조선에 특별한 은행을 세우고 특별한 태환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쨌든 조선의 경제정태가 어떤 사정 때문에 동요되어도 그것이 일본의 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²⁰⁾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아라이 정부위원의 답변은 조선은행의 설립이 대만은행과 동일한 논리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경우 본토와 식민지의 거리를 이유로 대만의 경제적 독립이 표방되었다면, 본토와 가까운 조선의 경우 일본은행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한국은행(조선은행)의 초기 활동은 통감부/총독부의 재정 지원에 치중하였다. 한국은행은 화폐정리를 위한 정부대출이 많아서 정부대상금과 일반대출금의 비율이 7:3 정도였다.²¹⁾ 총독부는 화폐정리가 마무리되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자금의 융통이 시급하게 되자 우선 조선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였고, 1911년 3월 『조선사업공채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선은행이 조선사업공채를 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대출이 총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12년에는 70%를 상회하였고, “은행권의 발행에 의하여 얻는 자금의 전부를 정부에 貸上하여 오히려 얼마간 부족하다고 하”²²⁾는 실정이었다. 입초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선은행은 부족한 자금을

19) 조명근, 『조선은행법에 내재된 식민지 중앙은행제도의 모순-감독권의 소재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4, 2009.2, 214-219쪽.

20) 朝鮮銀行史研究會, 앞의 책, 76-77쪽.

21) 朝鮮銀行史研究會, 앞의 책, 61-62쪽.

22) 『朝鮮銀行ノ過去及ヒ將來』, 『勝田家文書』 57-3 (朝鮮銀行史研究會, 앞의 책, 919쪽에서 재인용)

일본은행과 대장성 예금부에서 차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표] 조선은행의 정부대부금과 소유 국채

연도	政府貸上金	국채			합계
		導掌賜金 公債	恩賜公債	조선사업 國庫債券	
1910. 6	-	117	-	-	117
1910.12	155	117	180	-	452
1911. 6	2,095	117	3,776	-	5,988
1911.12	4,595	117	5,158	-	9,870
1912. 6	12,095	117	5,307	-	17,518
1912.12	10,095	117	5,326	-	15,538
1913. 6	10,500	-	5,501	1,841	17,842
1913.12	7,500	-	5,574	1,841	14,915

비고 : 羽鳥敬彦, 『朝鮮における植民地幣制の形成』, 164쪽에서 작성

이러한 자금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조선은행의 만주 진출이었다. 정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융통도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正貨(일본은행권)를 획득할 수 있는 貿易出超지역인 만주로의 영업 확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조선은행의 만주 진출은 조선총독부와 군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鮮滿一體化’ 구상에 뒷받침되면서 현실화되었다. 조선은행의 ‘해외은행화’ 구상은 “무릇 南滿의 경제계가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권을 사용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우리 경제적 세력의 남만 정복을 의미하는 것, 즉 우리 조선이 경제적으로 만주를 병합하는 것”²³⁾이라는 언급에서 보이듯이 ‘선만일체화’ 정책의 첨병을 자처하는 것이었다. 조선은행은 1913년 만주에 봉천, 대련, 장춘 지점을 설치하였고, 만주진출을 허가받는 대신 만주에서 요코하마쇼우킨은행의 금태환 은행권 발행을 인정함으로써 만주지역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었다.

3.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

(1) 대만에서의 화폐정리와 ‘대만은행권역’의 출현

대만의 식민지 화폐제도는 식민지 중앙은행인 대만은행의 설립으로 기반이 마련되었으

23) 『朝鮮銀行ノ過去及ヒ將來』

며, 대만은행에 의한 은행권 발행 및 화폐정리를 거치면서 기본틀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구화폐를 대만은행권이 대체하면서 대만지역을 유통권으로 하는 ‘대만은행권역’이 출현하였다. 대만에서 식민지 화폐제도가 성립하는 시기는 일본에서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비축한 금을 토대로 금본위제로 이행하던 시기와 중첩되기 때문에 식민지 화폐제도의 성립과정은 많은 혼란과 논란을 낳았다. 그 중심에는 대만에 금본위제를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은본위제를 시행할 것인가라는 본위제 문제, 일본은행권을 대만에 통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대만은행권이라는 별도의 은행권을 통용시킬 것인가라는 은행권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일본이 대만을 점령할 당시 대만에는 馬蹄銀을 비롯하여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주조된 각종 銀貨, 멕시코 은화, 일본은화 등 각종 외국 은화 및 소액 거래에 사용되는 각종 銅貨 등 백수십종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다. 어음 같은 신용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총독부는 각지에 은화와 지폐를 바꾸는 교환소를 설치하여 일본은행권의 유통을 확대하였다. 1895년에 오오사카츄리츠은행(大阪中立銀行) 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896년 12월에 일본은행 출장소가 설치되어 국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1897년 10월 일본에서 금본위제를 근간으로 하는 「화폐법」이 시행되고 1898년 4월부터는 은화 유통이 금지됨에 따라 「화폐법」의 대만 시행 여부가 초점이 되었다. 대만총독부는 은화 유통의 현실을 참작하되 본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화폐법을 대만에 시행하고 실제 유통화폐는 은화와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화폐법의 대만 시행을 연기하고 정부 각인이 찍힌 은화(‘刻印付一円銀貨’)를 금 시가에 따른 공정가격으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²⁴⁾ 이러한 과도기적 화폐제도의 시행은 대만이 중국 본토의 은화 유통과 결합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각인 은화를 보급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본의 금본위제 시행에 대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금본위제 시행을 앞둔 일본정부로서는 각인 은화 유통을 통하여 일본에서의 금화 유출을 방지하고 유통에서 배제된 은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각인 은화와 일본은행권의 유통 범위가 협소하여 공납과 무

24) 일본 정부는 대만에서도 본국과 마찬가지로 금본위제를 시행하고 일본은행권으로 화폐제도를 통일한다는 방침에서 화폐법의 대만 시행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1897년 9월 대장성 화폐회의에서 ‘貨幣法施行勅令案’과 ‘極印銀貨使用勅令案’이 동시에 검토되었고, 1898년 3월 대장성 대만 화폐조사회에서 화폐법의 즉시 시행 여부가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波形昭一, 앞의 책, 82-85쪽.

25) 天野爲之는 特別銀貨策과 金貨策을 비교하면서 특별은화책의 장점으로 ①일본 금화제도의 기초를 동요시킬 우려가 없고 ②대만을 은화의 추방지·매장지로 할 수 있으며 ③지금화폐의 시대에서 법정화폐의 시대로 이행하기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臺灣幣制問題』, 『東洋經濟新報』 61, 1897.7.

역에 장애를 초래함에 따라 1898년 7월부터 은화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하였다.

각인 은화의 통용이 실패하자 각인 은화를 통한 화폐정리 방침은 대만은행권 발행을 통한 화폐정리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1899년 3월 『대만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5원 이상의 무기명 일람불 어음’의 발행을 ‘은화 1원 이상의 은행권 발행’으로 변경하였고,²⁶⁾ 9월 영업 개시와 더불어 은태환 대만은행권(銀券)을 발행하였다. 대만은행권의 발행은 ‘정화준비+보증준비+제한외발행’이라는 일본은행권과 동일한 발권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은행권의 확장일 수 있지만 대만은행권이라는 별개의 은행권을 탄생시킴으로써 일본은행권 유통영역과 분리된 대만은행권의 유통영역을 성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의 재계에서는 대만은행권의 발행이 일본제국의 지폐통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국과 동일한 금본위제도의 시행을 주장하였으며,²⁷⁾ 미츠이물산의 설립자이자 화폐제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마스다 타카시(益田孝)는 대만은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일종의 지극히 애매한 화폐제도”와 대만은행의 무리한 설립 및 은행권 발행에 있다고 비판하고, 금본위제의 시행 및 대만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통한 제국 영토내의 화폐제도의 통일을 역설하였다.²⁸⁾ 이러한 재계의 여론에 대하여 대장성에서 대만은행 설립을 담당했던 소에다 쥬이치(添田壽一)는 “대만은행으로서도 목적은 조만간 금태환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달성하기까지 우선 銀을 정리해야 하고 은의 정리에는 먼저 銀券을 발행하는 방법에 依하지 않을 수 없다”²⁹⁾고 은태환 대만은행권을 통한 화폐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대만이 중국무역을 통하여 은통화권에 깊이 결합되어 있었고 당시 일본의 경제력으로는 대만에 금본위제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은태환 대만은행권의 발행을 통하여 화폐정리를 단행한 이후에 금본위제의 실시를 통하여 본국과 화폐제도 통일에 이르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부득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선택의 이면에는 대만의 경제적 위기가 본국에 파급되어 일본은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대만은행 설립과 동일한 논리가 내장되어 있었으며, 일본은행권과 별개의 은행권 발행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다.³⁰⁾

26) 은행권이란 ‘일정화폐액을 지참인에게 지불한다는 은행의 약속을 어음의 형식으로 나타낸 증서’(『경제학사전』, 풀빛, 1988, 445-446쪽)이기 때문에 ‘무기명 일람불 어음’은 은행권과 동일한 형식을 가진다. 그러나 당시의 어음은 ①신용거래의 결제 같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고 ②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③『手形法』의 규제(발행금액, 지불기한 등)를 받는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일반적 유통에 투입되고 중앙은행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발행되는 은행권과 구별되었다.

27) 『臺灣銀行銀券發行』, 『東洋經濟新報』 115, 1899.2.

28) 『益田孝氏の臺灣幣制談』, 『東洋經濟新報』 207, 1901.9.

29) 『台灣銀行意見』, 『銀行通信錄』 161, 1899.4. (波形昭一, 앞의 책, 89쪽에서 재인용)

30) 松方正義는 대만은행 창립 10주년 기념회 석상에서 “대만은행도 역시 일본은행과 동일한 주

금시세에 따른 공정가격에 의한 은화 유통이라는 과도기적 화폐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만은행권(은태환권)의 통용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대만 원주민은 은행권에 익숙하지 못하고 은행권의 사용을 기피하였고, 의화단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빈발하였기 때문에 금태환권이 발행되기 직전인 1903년에도 발행고 400만엔, 시장유통고 340만엔에 불과하였다.³¹⁾ 더구나 빈번한 공정가격의 변동으로 투기가 발생하여 대만의 재정과 금융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금화를 정화준비로 하는 대만은행의 경우 은시세의 격변에 따른 투기적인 예금출입과 외환거래로 인하여 정화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³²⁾

1902년 이래 은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투기적인 은화의 유통입과 은행거래로 인하여 금융계 전체가 위기에 처하면서 대만은행과 대만총독부를 중심으로 금본위제로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대만의 무역구조가 중국무역 중심에서 일본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금본위제로 이행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³³⁾ 러일전쟁 개전이 임박하여 대만은행에 대한 은화 교환 청구가 증가하였고, 만한 경영에 거액의 은화를 필요로 하는 대장성도 대만은행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만은행의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결국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6월 응급조치로서 「대만은행권 발행에 관한 율령」(율령 제8호, 1904.6.4.)을 공포하여 금태환 대만은행권(金卷)을 발행하였다.³⁴⁾

금태환 대만은행권의 발행이 1906년 2월 대만은행법의 개정으로 공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화폐정리에 착수하였다. 이미 1903년 9월 품질이 조악한 ‘歹錢’(銅錢의 일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량이 많은 ‘粗銀’(멕시코은화)의 수입에 중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였으며, 법화인 일본 은화도 1904년 6월부터 공납에만 사용이 제한된 결과 1907년 경에는 은화가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 한편 1907년 10월 이래 은시세 폭락으로 은화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대만총독부는 1908년 10월 일본은화, 외국은화 및 粗銀의 수

義입니다만 각기 다른 장소에 세워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것은 식민지은행 또는 내가 문득 微意를 생각한 것은 대만은 어쨌든 떨어진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 어떠한 외국과의 變을 야기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되어 內地와 교통을 차단하는 일이 없ed다고는 할 수 없으니, 만약 그러한 시기에 이르른 때의 각오는 금일부터 마련해 두지 않으면 그때가 되어도 어떻게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디만 대만은행은 일종의 다른 장소에 만드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준비금으로써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를 세움이 마땅하고 그것은 비상한 시기를 맞은 때 재정도 돕고 또한 경제도 진전시키는 각오로 이 은행은 하나의 토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議論을 가지고 있어서 마침내 대만은행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대만은행의 설립 이유를 설명하였다. 『台灣銀行創立十週年紀念宴會』, 『銀行通信錄』 303호.(波形昭一, 앞의 책, 76-77쪽에서 재인용)

31) 『臺灣銀行二十年誌』, 65쪽.

32) 『臺灣の幣制及金融概況』, 『東洋經濟新報』 187, 1901.2.

33) 1898년 대만무역 중에서 金貨圈에 대한 수출입의 비중이 39.5%였지만 1902년에는 62.9%로 증가하였고, 1903년 상반기에는 70%에 달하였다. 『臺灣銀行二十年誌』, 52, 56쪽.

34) 『臺灣銀行二十年誌』, 52-58쪽.

이입을 금지하였고, 일본은화의 공급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교환기간을 1909년 4월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은화의 정리는 일단락되었다.³⁵⁾

[표] 대만은행 은태환권·금태환권의 발행액·유통액 (천엔)

연도	은태환권		금태환권	
	발행액	시장유통액	발행액	시장유통액
1900	3,607	1,716	-	-
1901	3,221	2,246	-	-
1902	3,711	2,720	-	-
1903	4,042	3,404	-	-
1904	3,859	2,673	4,756	3,514
1905	1,225	318	7,179	5,356
1906	850	47	8,500	7,350
1907	30	27	10,060	8,874
1908	26	23	9,237	8,144
1909	20	20	11,864	10,556
1910	-	-	13,929	12,583
1911	-	-	16,494	15,411

비고 : 臺灣銀行, 『臺灣銀行二十年誌』, 65-66, 80-81쪽에서 작성

금태환권의 유통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태환권을 발행한 첫해인 1904년에 금태환권의 시장유통액은 이미 은태환권을 넘어섰다. 금태환권 발행 초기 금태환권의 유통이 순조롭게 확대되었던 것은 은시세 급등으로 인한 은화 유출에 기인한 것이었지만,³⁶⁾ 미츠이물산, 스즈키상점, 유아사(湯淺)상점 등 일본자본의 대만 진출에 따라 대일본무역은 1904년부터 이입초과에서 이출초과로 전환하였다.³⁷⁾ 은태환권은 1906년 4월에 발행이 중단됨으로써 유통액이 격감하였으며, 1908년 12월 은태환권의 통용기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되고 교환기간은 1909년 말까지로 결정되었다. 이후 1911년 4월 『화폐법』을 대만에 시행함으로써 금본위제로 이행이 마무리되고 대만은행권역이 출현하였다.

(2) 조선에서의 화폐정리와 '조선은행권역'의 출현

대만 할양으로 식민지 지배체제와 더불어 식민지 화폐제도의 구축이 급속하게 진행된 대만에 비하여 조선에서 식민지 화폐제도의 구축은 많은 시간과 격렬한 갈등을 수반하였

35) 『臺灣銀行二十年誌』, 83-85쪽.

36) 波形昭一, 앞의 책, 256쪽

37) 『臺灣銀行二十年誌』, ? 쪽.

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한 한국의 재정·금융 장악 및 화폐제도의 재편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재정·금융 장악 및 화폐제도 재편의 핵심에는 일본의 일개 상업은행인 제일은행이 일본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 있었다.

개항 무렵 상평통보, 당오전 같은 銅貨가 주로 유통되던 상황에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淸商과 日商의 무역결제를 위하여 중국 馬蹄銀, 멕시코 은화, 일본 은화 등의 외국 은화가 유입되었다. 第一銀行의 지점 설치 및 해관세 취급으로 일본화폐의 유통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개항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일본식 화폐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된 것은 「신식화폐발행장정」의 제정이었다. 일본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군사비 공급을 위하여 다량의 일본화폐를 살포하였으며, 「신식화폐발행장정」으로 일본화폐의 무제한 통용이 공인됨으로써 일본화폐의 유통이 합법화되었다. 본위화폐인 5兩 은화는 일본의 1엔 은화와 量目, 重目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본위화폐의 부족을 틈타 1엔 은화가 본위화폐의 구실을 하였다.³⁸⁾

1897년 일본이 금본위제로 이행함에 따라 한국에서 유통되던 일본 은화 및 일본은행권을 회수해야 했지만, 일본정부는 해관세를 정부 각인이 찍힌 은화(‘刻印付一円銀貨’)로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은화의 유통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에서 각인 은화의 유통과 연동되는 것으로, 조선에서 일본 은화의 유통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과 조선을 유통에서 배제된 은화의 처분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각인 은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본위화폐를 주조하여 백동화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의정부에서 금본위제 채용을 결정하고 금화 제조를 위하여 용산전환국을 건립하였으며, 1901년 2월 「貨幣條例」(칙령 제4호)를 공포하여 금본위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폐개혁 자금조달을 위한 차관교섭에 나섰다.³⁹⁾ 「화폐조례」는 일본의 「화폐법」을 모방한 것이지만, 정부의 화폐 주조권과 발행권을 규정(제1조)하여 貨幣高權(coinage prerogative)을 확립하였고, 사주화폐의 통용금지를 규정(제8조)하여 일본 각인 은화의 통용을 금지하였다.

1900년 의화단사건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은화 유출로 무역통화가 부족하게 되고 해관세의 수납이 곤란하게 되자 제일은행은 통화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권 발행에 나섰다.⁴⁰⁾ 제일은행의 은행권 발행 계획은 「신식화폐발행장정」 직후부터 제기되었지만, 현실화되는 계기는 정부의 화폐개혁 자금조달을 위한 차관교섭 과정에서였다.⁴¹⁾ 제일은행은

38) 島崎久彌, 『円の侵略史』, 日本經濟評論社, 1989, 39-40쪽.

39) 나애자, 「이용익의 화폐개혁론과 일본제일은행권」, 『한국사연구』 45, 1984, 62-63쪽.

40) 第一銀行,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1908,

차관의 일부를 '海關紙幣'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차관교섭이 무산되자 대장대신에게 '무기명 일람불 은행권'의 발행을 제안하였고, 1901년 11월 대장대신은 한국내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제일은행의 '무기명 일람불 약속어음(約束手形)'의 발행을 허가하였다.⁴²⁾ 『貨幣條例』가 공포된 이상 은행권의 발행은 대한제국 정부의 소관이지만 제일은행측은 “강제적 통용의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신용만으로 임의통용하는 일종의 신용증권에 불과하다면 한국의 국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⁴³⁾

제일은행은 1902년 5월 『주식회사제일은행권 규칙』을 제정하고 은행권 발행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제일은행권 규칙』에는 제일은행 은행권과 동액의 일본통화와의 교환(제3조), 발행고와 동액의 일본통화를 引換準備로 할 것(제5조)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일은행은 정부의 『貨幣條例』 공포를 빌미로 1902년 1월부터 해관세를 금화로 징수하도록 하여 제일은행권으로 해관세를 수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일은행권이 “금화를 표준으로 하는 어음”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⁴⁴⁾

제일은행의 은행권 발행에 대하여 상인들은 즉각 제일은행권 거부에 나섰고 정부도 제일은행권 통용을 금지시켰다. 일본정부의 금지령 철회 요구와 군함을 파견하는 위협적 시위로 정부는 1903년 2월 제일은행권 금지령을 취소하고 제일은행권의 통용을 '백성의 신용 여부'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본의 방해로 차관 도입에 실패하자 1903년 3월 정부는 『中央銀行條例』와 『兌換金券條例』를 공포하여 차관 교섭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독자적인 중앙은행 설립을 도모하였다.⁴⁵⁾ 정부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모방하여 중앙은행 제도를 마련하고 금태환 은행권의 발행을 시도하였지만 러일전쟁의 발발로 좌절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및 '제1차 한일협약' 체결로 대장성 주세국장 메카다(目賀田種太郎)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정리에 착수하였다. 메카다가 주도하는 화폐정리사업은 ①『화폐조례』 시행에 의한 금본위제의 실질적 도입 ②백동화와 엽전의 회수 및 은행권과 新硬貨의 유통 ③은행권의 교체(한국은행권→조선은행권) 및 일본 보조화 도입에 의한 신

41) 1894년 12월 제일은행은 와타나베(渡辺) 대장대신의 자문에 대하여 제일은행에게 은행권 발행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최선책이라고 답신하였다. 波形昭一, 앞의 책, 97쪽

42) 일람불 약속어음의 발행을 제안한 것은 林權助公使였다. 그는 코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의견서(『第一銀行ニ於ケル一覽拂約束手形發行ノ件』(1901.10.17.))에서 “본 공사는 지폐 발행의 계획에 대신하여 일람불 약속어음 발행 계획이 편의한 일로써 동시에 香港上海銀行이 청국에서 발행하는 일람불 약속어음 및 모 淸商이 당국(한국-필자)에서 발행하는 어음의 사례를 보아 이들을 비교 연구한 위에 일정의 계획을 정하였다”고 서술하였다.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184쪽.

43) 『澁澤榮一傳記資料』 16, 133쪽.(나애자, 앞의 글, 78쪽에서 재인용)

44)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187-188쪽.

45) 나애자, 앞의 글, 79-83쪽.

경화의 정리라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1905년 1월 탁지부와 제일은행 사이에 제일은행권 공인과 화폐정리사업 담당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3월에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한국에서의 업무에 관한 건』(칙령 제73호)이 공포됨에 따라 제일은행권이 양국 정부의 공인을 획득하고 화폐정리의 중심기관으로 승격하였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한국에서의 업무에 관한 건』에서 주목할 점은 외무대신과 대장대신의 감독(제1조)과 동액의 금화·금은지금·일본은행권에 의한引換準備 및 보증준비 발행과 제한외 발행(제9조)이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제일은행이 한국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대만은행 및 일본의 특수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주무대신의 감독권이 규정되었다.⁴⁶⁾ 그러나 통감부 설치 이후 제일은행 감독권이 통감으로 이관되는데, 이는 강제병합 이후 총독이 조선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는 기원이 되었다.

또한 은행권 발행에서 대만은행과 마찬가지로 ‘정화준비+보증준비+제한외발행’이라는 발권 방식을 채택한 반면, 대만은행과 달리 일본통화를 정화준비로 하였던 『주식회사제일은행권 규칙』이 계승되었다. 제일은행권이 일본은행권을 정화준비로 삼은 것은 한편으로는 제일은행권을 일본은행권에 종속시킴으로써 제일은행권의 발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생산된 금을 유출하여 일본은행의 정화 준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일은행의 일본은행권 정화준비는 러일전쟁에서 거액의 군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다량의 금화, 은화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정화유지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⁴⁷⁾ 제일은행은 이미 1899년부터 일본은행과 한국 산금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자금을 대여받아 산금을 공급하고 있었다.⁴⁸⁾

1909년 7월 『한국은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일본측의 주도로 한국은행 창립에 착수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창립총회를 거쳐 11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이 담당하던 화폐정리사업은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으며, 1910년 12월부터 한국은행권이 발행되었다.⁴⁹⁾

46) 첨부된 명령서에는 제일은행이 한국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한국 중앙은행이라는 마음가짐을 본분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정부는 제일은행을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目賀田種太郎가 한국에 오기 직전인 1904년 5월에 총리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취임전협상사항’으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한국폐제 및 그 실시 방법 요령』에는 본위화폐의 주조를 연기할 것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서 ‘태환권의 발행 및 발행권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朝鮮銀行史研究會, 앞의 책, 26-27쪽.

47) 『韓國中央銀行ニ關スル件』, 『水町家文書』 第7号.

48)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377-378쪽.

49) ‘한국은행권’이라고 인쇄된 은행권은 1910년 12월부터 발행되었으며, ‘조선은행권’이라고 인쇄된 은행권은 1914년 9월부터 발행되었다.

[표] 제일은행권 발행고 및 백동화·엽전 회수액(천엔)

연도	제일은행권 발행고	백동화회수액	엽전회수액 (+수출액)
1902	626	-	-
1903	830	-	-
1904	3,372	-	-
1905	8,125	4,971	108
1906	9,224	1,550	570
1907	12,805	692	1,136
1908	10,386	1,497	302
1909	13,440	728	2,096
1910	20,164	170	1,311
1911.2		53	413

비고 : 朝鮮銀行史研究會, 『朝鮮銀行史』, 29-30쪽에서 작성.

참조 : (1)1911년 분은 한국은행권 발행고임

백동화는 1908년까지 회수가 마무리되고 1911년 2월 말에는 사용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엽전의 회수는 여의치 않아서 新硬貨의 보급을 통한 엽전의 정리를 추진하였다. 1910년 조선에서 유통되는 화폐별 유통 비중을 보면 한국은행권 67%, 일본은행권 1%, 백동화 2%, 엽전 8%, 신화 13% 등으로,⁵⁰⁾ 한국은행권이 중심통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2월 한국은행 화폐정리부를 폐쇄함으로써 화폐정리사업을 종결하였다.

일본의 조선 강점 및 화폐정리사업의 완수를 통하여 출현하는 ‘한국은행권역’(조선은행권역)은 일본은행권을 정화준비로 한다는 점에서 ‘대만은행권역’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제일은행의 은행권 발행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거둬 논의되었다. 한국은행 설립과정에서 대장성에서 중앙은행 신설의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정화의 절약’ 문제가 거론되었다. 즉 제일은행 때부터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정화준비를 한 것은 ‘정화의 절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한국 중앙은행을 겸할 경우 정화준비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¹⁾ 또한 ‘조선은행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정화준비에 일본은행권을 포함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라이 정부위원은 “그 조선의 産金은 일본은행 금고에 쌓여 있는 것이어서, 실제 금괴는 일본은행 쪽에 쌓아 두기 때문에 조선은행은 차라리 태환권으로써 준비를 갖추는 편이 마땅하다”⁵²⁾고 조선의 산금이 일본은행의 정화준비

50) 『朝鮮金融事項參考書』

51) 『韓國中央銀行ニ關スル件』, 『水町家文書』 第7号.

52) 朝鮮銀行史研究會, 앞의 책, 79-80쪽.

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선은행의 정화준비는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4. 나가며: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과 모순

일본이 식민지에서 직면한 것은 다종다양한 화폐제도였다. 일본은 식민지 경계를 일본 경제권에 통합하기 위하여 일본과 동일한 화폐제도를 도입하여 화폐제도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국과 동일한 화폐제도를 식민지에 이식하여 단일한 엔통화권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는 본국의 중앙은행과는 다른 종합적 기능을 가진 식민지 중앙은행이 요구되었고, 식민지 통화증발이 본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국의 중앙은행권과 상이한 별도의 식민지 은행권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식민지 중앙은행을 매개로 본국의 중앙은행권의 유통영역과 분리된 식민지 은행권의 유통영역이 형성되었다. 대만은행의 설립과 대만은행권역의 형성, 그리고 한국은행(조선은행)의 설립과 한국은행권역(조선은행권역)의 형성은 곧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식민지 화폐영역은 본국의 중앙은행권 유통영역과 식민지 은행권 유통영역, 그리고 식민지 은행권 사이의 유통영역을 분리시킴으로써 개별 식민지의 조건에 적합한 운영과 유사시에 독립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중앙은행을 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한편 본국의 중앙은행권과 식민지 은행권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함으로써 본국의 중앙은행권 유통영역과 식민지 은행권 유통영역의 연계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 또한 식민지 총독의 독립성, 정화준비 또는 보증준비에 따른 제약 때문에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식민지 화폐영역의 형성과정에서 기인하는 식민지 화폐영역 사이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대만은행권 유통영역의 경우 자유로운 금화/은화 태환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은행권 발행에서 독립성은 강하지만 대만은행에 대한 대장대신의 감독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취약하였다. 한국은행권 유통영역의 경우 일본은행권을 정화준비로 하였기 때문에 은행권 발행에서 독립성은 취약하지만 한국은행에 대한 통감/총독의 감독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강하였다. 또한 대륙으로의 거점 역할에서도 조선은행의 경우 정화준비의 취약성 때문에 정화 획득을 위한 만주 진출이 필연적인 요구로 나타나는 반면 대만은행의 경우 정화준비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남중국 진출은 가변적인 요소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식민지의 조건이 변화한다면 식민지 화폐영역의 해소는 가능한 것인가? 조선

은행의 경우 조선은행을 폐지하고 일본은행으로 통합하자는 조선은행 폐지론은 주기적으로 등장하였다. 1930년대 중반 “조선통치의 당초에는 혹 특수발권은행을 필요로 했지만 이미 시정 20년이 지나고 그후 교통, 통신, 산업의 발달이 현저한 바가 있고 금융상에도 일선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도를 더하는 금일 의연히 일선 별개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선은행측은 “일본과 식민지를 준별하지 않고 일선을 본질상 일체로 보는 데에서 오는 형식적 통제론이어서 반박의 가치도 없다”⁵³⁾고 논박하고 있는 점에서 식민지 화폐영역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⁵³⁾ 『朝鮮銀行券問題ニ關スル意見書』, 『昭和財政史資料』 6-36.

만주사변 전후 조선 화교문제의 양상

— 在韓中國領事館과 朝鮮總督府 간 교섭을 중심으로 —

강 진 아(경북대)

目次

머리말

1. 朝鮮總督府의 在韓中國領事館 관리
 2. 萬寶山事件 以前 在韓華僑 문제의 심화
 - 1) 형사 사건의 사례
 - 2) 교민 탄원의 사례
 3. 1931년 배화폭동과 만주사변 이후의 양측 교섭
- 맺음말

머리말

화교는 동아시아 무역구조의 해명에 있어서도 키워드적인 존재이지만, 근대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역사해석에도 적합한 소재이다. 민족주의적 경계가 형성되고 동시에 인적 교류의 폭발적인 확대로 “超境的” (따라서 지역적regional) 공간이 확대해 간 근대 동아시아역사에 있어서 “이주민” 연구가 최근 왕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분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재한 화교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일본 및 대만에서도 재일화교, 대만화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사에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연구가 늘어난 것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다.¹⁾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노동 및 자본 이동이란 관점에서 비교사적 연구까지 다수 출간되었다.²⁾

1) 최근의 조선화교연구에 대해서는 李正熙『韓國華僑研究の現在と今後の課題』『京都創世大學紀要』3, 2003 및 강진아『동순태호-동아시아화교자본과 근대조선』경북대출판부, 2011 뒤의 조선화교 문헌 목록 참조.

2) 山脇啓造『近代日本と外國人労働者——一八九〇年代後半と一九二〇年代前半に於ける中國人・朝鮮人労働者問題』明石書店, 1994; 安井三吉『帝國日本と華僑—日本・臺灣・朝鮮』青木書店, 2005.

연구의 활성화에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 역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대만 중앙연구원 중국근대사연구소가 공개한 『駐朝鮮使館檔』(1882-1943) 및 재한화상 同順泰號의 장부와 상업서신(同順泰文書)의 발굴 등은 좋은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駐朝鮮使館檔』을 이용해 화교 상인과 조선인 상인 간의 소송 및 분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중국의 재한외교기관에 대한 연구 역시 많아지면서, 노동 및 자본의 동아시아적 이동에 따른 보다 직접적인 접촉과 갈등에 관해서도 점차 규명되고 있음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³⁾ 다만 이들 실증연구가 대체로 한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화교 문제에 관해서도 일찍이 萬寶山事件으로 촉발된 1931년 배화폭동에 관해서 화교 관점에 선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⁴⁾, 滿洲國 시기의 재한화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⁵⁾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관한 지역 화교 연구나 사회사적 연구 역시 점차 많아졌다.⁶⁾ 하지만 한말의 화교와 한국인 간의 분쟁 연구처럼 구체적인 사례 연구의 축적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總督府 外事課 문서를 통해 1931년 만보산사건, 배화폭동 그리고 만주사변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시기의 조선화교사회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S15-2/CJA0002323, 各國領事館往復: 中華民國領事館, 總督官方 外事課, 1929-1932, 78건(총839쪽)이다. 이 자료는 중국 측 자료와 달리, 조선 내의 각 관련 관청 문서와 일본 본국과의 교환 문서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총독부 측이 어떻게 화교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화교와 한국인 사이의 갈등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쟁점과 그에 대한 상이한

3) 石川亮太『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争-『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年報朝鮮學』10, 2007; 이은자, 『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중국근현대사연구』38, 2008; 이은자, 『清末 駐韓 商務署 組織과 그 位相』『명청사연구』30, 2008; 이은자, 『한국 개항기(1876-1910) 중국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 한중간 조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92, 2008;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중국근현대사연구』45, 2010 등, 이외에도 다수 논문이 있다. 중국의 재한외교기관에 관해서는 이은자『청말(清末) 주한(駐韓) 상무서(商務署) 조직(組織)과 그 위상(位相)』『명청사연구』2008; 김희신, 『주조선사관(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청일전쟁 이전 한성(漢城), 인천(仁川)을 중심으로-』『명청사연구』34, 2010.

4) 강진아『中日 무역마찰의 전개와 朝中關係의 변화-1920-30년대를 중심으로-』『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손승희, 1931년 식민지조선(植民地朝鮮)의 배화폭동(排華暴動)과 화교(華僑),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이상경『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만주연구』11, 2011.

5) 楊韻平,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以領事館爲中心的觀察』臺灣中央研究院碩士學位論文, 2006.

6) 김승욱, 『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중국근현대사연구』47, 2010;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35, 2007;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대구사학』80, 2005.

해석, 이를 중개하는 중국총영사관에 대한 일본의 관리 방식까지 엿볼 수 있다.

발표자는 앞선 연구에서 기존 만보산연구와 배화폭동 연구에서 강조하는 일본의 개입, 특히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이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조선에서 대 중무역 규제에 따라 재한화교사회의 인적 구성이 변화하고 민중레벨의 민족 갈등이 커졌 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 재한중국영사관과 조선 총독부의 관계, 재한화교 사회를 둘러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31년 배화 폭동이 萬寶山事件에 의해 우연히 촉발된 사건이 아니며 조선사회 내에 축적된 민족갈등의 폭발이었음을 재확인하도록 하겠다.⁷⁾

1. 朝鮮總督府의 在韓中國領事館 관리

朝鮮總督府 官房外事課(이하 외사과로 약칭)와 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이하 경성총영 사관으로 약칭) 사이에는 양국 사이의 정치 현안, 경제 쟁점, 문화 교류, 재한화교의 민 원 관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서가 오가고 교섭을 행하고 있었지만, 문서 중 가장 많은 건수는 경성총영사관 및 각지 영사관의 인사 변동에 관한 사항이었다. 전체 78건 중에 34건이나 차지하여 거의 절반에 이른다. 그만큼 조선총독부는 재한중국영사관의 총체적 동향 파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공식 적인 라인을 통한 인원 교체에 대한 통고 및 통첩에 그치고 있지만 파일에는 인사이동 및 조직 개편을 감시하는 조선총독부 내의 보고 역시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조선에서 화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위의 자료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재한중국영사관과 교섭하고 이를 관리했는지 살펴보겠다.

문서 파일의 첫 페이지는 張維城 신임 總領事の 부임에 관한 것이다. 장유성은 1929년 11월 23일 조선에 부임하여 1931년 10월 1일 폴란드 대리공사로 임명되어 조선을 떠나 기 전까지 약 2년 간 만보산사건과 배화폭동 및 만주사변의 격변기에 조선에서 대일교섭 을 담당했다. 파일은 盧春芳이 신임 총영사로 부임한 후부터 1932년 2월경까지 다섯 달 정도 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마도 滿洲國의 성립으로 인한 공문 체계의 혼란으로 마 지막 건수는 마무리가 덜 된 채 파일이 종결되고 있다. 따라서 만주사변 이전 조선에서 중일 양측의 교섭을 주로 담당할 것은 外事課長 穗積眞六郎과 총영사 張維城이다. 그렇

7) 이러한 시각에서 쓴 발표자의 글은 『中日 무역마찰의 전개와 朝中關係의 변화-1920-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인데,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지만 문서 속에는 양자뿐만 아니라 警務局長, 各道 知事, 各道 警察部長을 비롯해 일본 본토 각 기관까지 등장하여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재한중국영사관 기구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총영사가 새로 부임하면 먼저 조선총독에게 보고하고 외사과에도 부임을 알리며, 동시에 東京에 주재하는 中國公使가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에게 轉報를 전하면 외무성에서 다시 조선총독부(政務總監)로 연락이 간다(잠시 중간에 拓務省을 재경유하는 시기가 있었음). 영사 이하는 총영사가 외사과장에게 인사 변동을 전하는데 그치지만, 재일공사를 통해 외무성에서 다시 조선총독부로 통첩이 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총영사 및 영사의 인사이동은 곧이어 외사과장이 관계 기관에 통첩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라인 이외에 재한중국영사관 관리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경찰과 지방 당국이었다. 특히 그 관리체계가 노출되는 것은 영사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인데 1930년 초 부산영사관의 인사변동이 좋은 사례이다.

釜山駐在中國領事 蔣道南은 1930년 4월 8일 자로 이임하여 북보르네오 영사로 발령을 받고 부영사 蔡威章이 영사대리로 취임하였다.⁸⁾ 경성주재 총영사 장유성이 외과과장 穗積에게 이를 알린 것은 1930년 4월 25일이고⁹⁾, 외사과에서 통지를 잘 받았으며 이상의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첩하겠다는 의례적 답신을 보낸 것은 5월 5일이었다.¹⁰⁾ 보통 답신이 일주일 안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답신이 늦은 편인데, 그것은 일본 본국으로부터 통첩이 안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일공사의 통지를 외무대신이 받아 다시 외무차관이 이를 拓務次官에게 보냈고, 탁무차관 小村欣一이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兒玉秀雄에게 보낸 같은 내용의 통첩이 도착한 것이 5월 5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사과장은 본국의 공식 통보가 도착한 후 총영사관에 답신을 보냈다고 보아 무방하다.¹¹⁾

그런데 외사과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장도남의 전임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외사과에 알려 온 것은 慶尙南道 警察局長이었다. 경남 경찰국장은 1월 8일에 경성의 警務局長과 외사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부산주재 수습영사인 袁家達의 출국 예정을 전하면서 그 배경으로 영사 장도남과의 불화설을 전하였다. 이 보고에

8) 장도남은 1928년 2월에 부산 영사로 부임하였다(外務次官 出淵勝次郎→朝鮮總督府 政務總監 池上四郎, 1928년 2월 9일, CJA0002309『各國領事館往復』-(11)『釜山駐在支那國領事承認通知ノ件』, p. 57).

9)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4월 25일, CJA0002323-(23)『釜山駐在中華民國領事更迭ノ件』, pp. 1227.

10) 외사과장은 경무국장에게 5월 1일자로 이 사항을 통첩하고 있다. 외사과장→경무국장, 1930년 5월 1일, CJA0002323-(15)『在京城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p. 1154-1155.

11) 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 1930년 5월 5일, CJA0002323-(23)『釜山駐在中華民國領事更迭ノ件』, p. 1222.

따르면 袁家達은 1929년 4월 6일에 부임한 이래 재류 화상과도 양호한 관계를 구축했으나, 領事 장도남과 부산 주재 화교들의 사이가 좋지 않고 장도남과 원가달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釜山華商公會 副會長 姜芝亭이 남경의 외교부에 영사 경질을 수차례 전보로 요청했고, 경성총영사관에서도 조사가 이뤄졌었다. 경무국장은 수습영사 후임에는 현재 버마 랑군 주재 수습영사인 蔡威章이라는 인물이 부임할 예정이며, 부산영사 장도남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전근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다.¹²⁾ 경남 경찰국장은 원가달이 가족을 동반하여 平安丸 배편으로 부산을 떠난 1월 15일의 모습을 익일 자세히 보고하고 있으며¹³⁾, 이때는 蔣道南이 보르네오로 전보될 것임도 알리고 있다.

1930년 4월 17일 경남 경찰부장 보고는 새로 중화민국 駐釜山代理領事로 부임한 蔡威章의 근황을 자세히 신고 있다. 보고에는 채함장이 4월 7일 입항 연락선으로 가족 동반으로 부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의 나이, 본적, 가족 성명 및 사항까지 대단히 세밀하게 적혀있다. 특히 채함장이 부임 후 한 행동과 발언까지 면밀히 채집하고 있어 놀랍다. 보고서는 그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여행도 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支那 본국은 혁명 개조 이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는 혼정시대이나 하루라도 안녕이 없으니, 실로 유감이다.”며, “빨리 帝政시대와 같은 保境安民의 實을 거두고 日支 친선을 꾀하고 大아시아주의 아래에 양국이 협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蔡에게서 1921년 “北京中國大學” 졸업 후 전임 장도남과 中俄交涉公署籌辦으로 약 3년 간 집무한 것,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인 중등학교 교사로 4년 간 교편을 잡고, 그 후 남경정부의 명으로 미얀마 랑군 중화민국 수습영사에 부임하여 2년 간 근무한 것 등 상세한 이력을 얻어내 보고하였다. 같은 보고에서는 4월 13일 부산출항 연락선으로 떠난 장도남의 출국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데 배웅에 참가한 인원 및 정황을 세세히 보고하였다.¹⁴⁾

이 경과를 보면 공식적 외교라인보다 조선 내 경찰조직이 한발 앞서서 재한영사관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영사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보통 부임하면 2년가량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에 반해, 蔡威章은 4월 부임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교체되었다. 1930년 7월 19일에 경성총영사 張維城은 외사과장 穗積에게 남경 외교부의 명령에 따라 代理駐釜山領事 蔡威章은 署駐巨港(수마트라)領事로

¹²⁾ 慶尙南道 警察部長→警務局長, 外事課長, 1930년 1월 8일, CJA0002323-(4)『釜山駐在中國領事更迭ニ關スル件』, p. 1088.

¹³⁾ 慶尙南道 警察部長→警務局長, 外事課長, 1930년 1월 16일, CJA0002323-(4)『釜山駐在中國領事更迭ニ關スル件』, p. 1087.

¹⁴⁾ 경상남도 경찰부장→경무국장, 외사과장, 각 도 경찰부장, 1930년 4월 17일, CJA0002323-(13)『中華民國駐釜山領事更迭ニ關スル件』, p. 1150.

전근하고, 陳祖備를 7월 12일자로 署駐釜山領事로 파견한다고 통보하였다. 또 7월 23일에는 1월에 귀국한 부산주재 수습영사 袁家達을 대신해 陳祖備와 같은 7월 12일자로 朱旭을 부산주재 수습영사로 임명한다고 통보했다.¹⁵⁾ 7월 24일에 외사과장은 총영사에게 알았다는 답신을 보내고, 동시에 경무국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첩하였다.¹⁶⁾

그런데 이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경남 경찰부장의 보고가 더 앞섰다. 경상남도 경찰부장은 경무국장, 외사과장, 각 도 경찰부장 및 관하 각 경찰서장에 보내는 7월 14일자 공문에서 영사 陳祖品(40세), 수습영사 朱旭(30세)가 함께 가족을 동반하여 상해에서 門司(일본 북 큐슈 도시)를 경유하여 關釜連絡船으로 7월 12일 오전 8시 부산에 입항했음을 알렸다. 또 문서에 “警務가 貴局에 이미 전화로 통보함”이라고 하여 입항과 동시에 경남 경찰부장이 경성의 경무국장에게 바로 전화로 연락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부장 보고에는 陳祖品이 영사는 종래 “南方政府”(남경국민정부를 남방정부라고 부름) 외교부 정보국 과장으로, 부영사는 동 과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번 부산주재를 명령 받아 부임한 것으로 적고 있다. 또 이들이 부산 입항 시에, 부산 거주 부산 中華商會 집행위원 주식 姜芝亭을 비롯해 회원 중 주요 인물 28명이 釜山棧橋에 마중을 나가 자동차로 영사관에 들어갔다고 적고 있어, 입항부터 영사관까지 이동 경로를 줄곧 감시하고 있었다. 또한 대리영사 채함장은 7월 17일 오후 9시 30분 관부연락선으로 부산을 출발하여 門司를 경유하여 우선 귀국한 뒤 남양 수마트라주재영사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하여 외교라인으로 채함장의 공식 이임과 전보가 조선총독부에 통보되기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미리 경찰라인으로 공람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⁷⁾

한편 다른 사례에서는 경성에 정보를 공급하는 라인으로 道知事 경유의 행정라인이 주요하게 등장한다. 이 경우는 道の 경찰부장이 올린 보고를 知事が 경성의 경무국장과 외사과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평안북도, 함경도, 평안남도 등 북부 지역은 주로 知事が 주로 외사과와 경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일례로 新義州 領事 陸兆鵬의 神戸 전보와 신임 朱芾의 발령을 살펴보자. 경성총영사관에서 외사과로 공식 통보가 간 것은 1930년 5월 1일, 외사과가 확인과 관계 기관에 통첩을 약속하는 공식 답신을 보낸 것이 5월 3일이었다. 내용은 1930년 4월 27일 자로 신의주 영사 陸兆鵬을 署駐神戸總領事로 파견하

15)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7월 19일, CJA0002323-(23)「釜山駐在中華民國領事更迭ノ件」, p. 1220;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7월 23일, CJA0002323-(21)「釜山元山支那領事館員更迭ニ關スル件」, p. 1201.

16)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7월 24일, CJA0002323-(23)「釜山駐在中華民國領事更迭ノ件」, pp. 1216-1217; 外事課長 穗積眞六郎→경무국장, 1930년 7월 24일, CJA0002323-(23)「釜山駐在中華民國領事更迭ノ件」, pp. 1218-1219.

17) 경상남도 경찰부장→경무국장, 외사과장, 각 도 경찰부장 및 관하 각 경찰서장, 1930년 7월 14일, CJA0002323-(23)「釜山駐在中華民國領事更迭ノ件」, p. 1221.

며, 朱芾를 署駐新義洲領事로 부임했다는 내용이다.¹⁸⁾ 일본 본국에서 조선총독부로 공식 연락이 온 것은 오히려 한참 늦어서 1930년 5월 16일이었다. 여기에서는 주일공사가 외무대신에게 인사이동을 통지한 것이 5월 6일이라고 하므로, 본국 외교라인이 현지 상황보다 늦게 움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⁹⁾

평안북도 지사는 이 보다 한 달 전인 4월 5일과 7일에 경성 경무국장과 외사과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의주 영사 육조곤의 고배 총영사 전보와 함께 후임은 남경정부 編管課 朱芾이 될 것이라며, 4월 8일 오후 8시 45분 신의주역에서 출발하여 열차로 南京으로 가서 인수인계 문제를 의논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²⁰⁾ 아울러 부산영사관의 사례와 달리, 신임 신의주영사 朱芾이 4월 27일 오전 9시 열차로 신의주에 도착한 것에 관해서도 평안북도 경찰부장이 아니라 평안북도 지사가 경무국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있다.²¹⁾

재한영사관 관리에 있어서 지방 경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은 외사과의 오류를 바로 잡는 사례까지 등장시켰다. 1930년 6월 10일에 총영사 張維城은 외사과장 穗積眞六郎에게 元山副領事 임명에 대해 6월 1일자 “楊佑를 원산부영사로 승진하여 署駐하게 한다(楊佑升署駐元山副領事)”고 통보하였다.²²⁾ 그런데 외사과장은 17일에 총영사에 대한 공식 답신과 경무국장, 함경남도 지사에 보내는 공식 통첩을 보내면서 “楊佑升氏”를 원산주차부영사로 임명한다고 이름을 잘못 쓰고 있다.²³⁾ 그 원인은 외사과 타 기관 통첩 문서에 첨부된 총영사 서신의 번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외사과에서 공문을 번역하는 과정에 楊佑升으로 오역이 발생한 것이다.²⁴⁾ 그러자 함경남도 지사는 곧 6월 30일 외사과에 보낸 공문에서 외사과 통첩 중의 부영사 楊佑升은 원래 원산영사관에 수습영사로 있

18)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5월 1일, CJA0002323-(16)『在新義洲中華民國領事更迭ニ關スル件』, p. 1160;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5월 3일, CJA0002323-(16)『在新義洲中華民國領事更迭ニ關スル件』, pp. 1158-1159.

19) 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 1930년 5월 16일, CJA0002323-(16)『在新義洲中華民國領事更迭ニ關スル件』, p. 1161.

20) 평안북도 지사→경무국장, 외사과장, 1930년 4월 5일, CJA0002323-(12)『在新義洲中國領事轉任ニ關スル件』, p. 1149; 평안북도 지사→외사과장, 1930년 4월 7일, CJA0002323-(12)『在新義洲中國領事轉任ニ關スル件』, p. 1148.

21) 평안북도 지사→경무국장, 1930년 4월 28일, 외사과장, CJA0002323-(14)『支那領事赴任ノ件』, p. 1152.

22)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6월 10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 1168.

23)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6월 17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p. 1165-1166; 外事課長 穗積眞六郎→경무국장, 함경남도 지사, 1930년 6월 17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p. 1166-1167.

24) 外事課長 穗積眞六郎→경무국장, 함경남도 지사, 1930년 6월 17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 1169.

다가 영사로 승진한 양우의 誤聞으로 추측된다며 조사 후 회신을 요구했다.²⁵⁾ 결국 7월 4일에 외사과는 오류를 인정하는 답신을 함경남도 지사에 보냈다.²⁶⁾

이상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비록 1930년까지 일견 큰 사건이 없는 동아시아였지만, 재만조선 문제, 재한화교 문제 등 갈등이 잠복해있고 만주를 둘러싼 중일의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재한중국영사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었다. 상호 신뢰의 부족과 긴장은 결국 외교라인의 형식적 문제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데 바로 1930년 11월부터 본격화된 경성총영사관의 仁川分駐辦事處 설치문제였다.

앞의 신의주 영사 발령 건에서 조선 주재 외교관의 현지 발령이 재일공사-외무성을 거쳐 일본 본국에서 조선총독부로 공식 승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조선총독부 외사과는 중국 정부의 정식 외교라인을 통한 통지가 현지 발령보다 번번이 지체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이러한 불만이 교민 관리를 위한 영사관 추가 설치 문제와 결부되어 경성총영사관과 조선총독부 외사과 사이에 쟁점이 된 것이, 정부 간 교섭 없이 인천에 分駐辦事處를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인천은 가장 먼저 중국영사관이 설치된 곳이었지만(1884년 商務署), 1930년 5월에 인천영사관은 폐쇄되었다. 경성총영사 張維城은 외사과장에게 남경 외교부의 명령으로 1930년 5월 30일로 仁川駐劄領事 黃承壽를 해임하여 귀국하도록 하여 인천영사는 없애고, 대신 인천 해관 업무를 총영사관 합병하여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상세한 검토 후에 (인천에) 관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하겠다(俟酌量派員再行備函奉達)”고 하고 있어, 문면으로 판단하건데 중국 측과 경성총영사관에서는 이 시점에 인천에 출장기구를 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 시기 인천영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조선에 소금을 수출하는 중국 鹽船(정크선)이 인천에 입항할 때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할 증명서[證明單, 帆船証單]를 발급하는 것으로, 수수료 은원 2元을 받고 있었다. 이 자금은 인천 공립소학교의 경비로 충당되었다. 1930년 7월 18일에 총영사관은 이 업무를 총영사관 업무로 통합하겠다고 외사처에 통고하였다.²⁸⁾ 이 통고와 거의 시일을 같이 하여 총영사관은 원래 元山副領事館 主事로 임명

25) 함경남도 지사→외사과장, 1930년 6월 30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p. 1173-1174. 경성총영사관의 외사과에 대한 수습영사 호계천 신임 통고는 같은 날 6월 30일에 발송되었다(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6월 30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 1181).

26) 외사과장→함경남도 지사, 1930년 7월 4일, CJA0002323-(18)「在元山中華民國副領事ニ關スル件」, pp. 1171-1172.

27)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5월 30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 1385.

된 蔣文鶴을 시한부로 朝鮮總領事館 辦事로 전근 파견하여, 1930년 7월 22일부터 경성총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외사과에 통지하였다.²⁹⁾ 이 두 사안은 모두 총영사관 관할로 통지만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외사과 역시 잘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유관기관에 통첩을 하는 외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인천영사 폐쇄 약 석 달 뒤 8월 28일에 경성총영사관에서 남경 외교부의 명령으로 仁川僑務를 경성총영사관에서 관원을 파견해 “分駐辦理”하도록 하여, 主事 蔣文鶴을 “本館 分駐仁川辦事處 主任”으로 보내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통지하자, 외사과는 일본 본국으로부터 정식 외교라인을 통한 어떤 통지도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외사과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통해 8월 30일, 9월 3일, 9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일본 拓務省에 이 문제에 관해 재일공사로부터 외무성에 통지가 있었는지 빨리 회답해 달라고 전보를 보내고³⁰⁾, 9월 1일에는 외사과장이 재무국장과 인천세관장에게 인천분주 관사처 설치와 주임 蔣文鶴의 발령은 현안으로 아직 일본에게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것을 주지시켰다.³¹⁾

본국과의 교섭에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탁무성 차관에게 보낸 전보 내용은 모두 외사과가 기초한 것인데, 9월 3일 전보는 외사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전보는 “(경성총영사) 張維城에 따르면, 그 설치 목적은 인천거류민 사무 처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염전이 인천에 입항할 때 발급하는 증명서 발행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이 증명서는 중국 측이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인천입항의 자국 염전에 수수료 징수의 편의적 수단으로 임의로 발급해 온 것으로, 굳이 우리 세관으로서 이 발급을 요구하거나 원조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세관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분주관사처 설치가 당면의 목적은 이 증명서 발급이라고 해도, “자연히 널리 일반 거류민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를 것이므로, 통상의 출장소 혹은 분관과 다를 바

28)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7월 18일, CJA0002323-(22)「中國鹽船仁川入港ノ證明書ノ件」, p. 1211. 선박증명서의 건본은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9월 1일, CJA0002323-(22)「中國鹽船仁川入港ノ證明書ノ件」, p. 1213 참조.

29)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7월 23일, CJA0002323-(21)「釜山元山支那領事館員更迭ニ關スル件」, p. 1203.

30)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兒玉秀雄→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 1930년 8월 30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73-1374;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 1930년 9월 3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63-1369.;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 1930년 9월 5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61-1362.

31) 외사과장→재무국장, 1930년 9월 1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75-1377.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외사처는 “인천영사관을 철폐하고 그 대신 淸津領事館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분주판사처 설치에 명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³²⁾

쉽게 설명하자면 1930년 당시 청진 등 북부 지역에 거류민이 늘어나 중국은 영사관을 추가 설치하고 싶지만 조선총독부가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영사관을 폐쇄하는 대신 청진영사관을 추가 설치하도록 장래에 요구하려는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다만 인천영사관 업무 중에 재정적으로 중요한 염선 증명서 발급은 현지에서 처리할 기관이 필요하므로 총영사관은 판사처를 세워 관원을 파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총영사가 말하듯이 교민 업무까지 처리한다면 판사처와 영사관이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조선 내 영사급 기관의 증설에 다른 아니게 된다는 주장이다.

탁무성은 외무성의 답변을 기다려 9월 6일에 조선총독부에 재일공사가 5월 19일부로 인천영사관 철폐 및 경성총영사관의 업무 합병처리를 말한 바는 있지만 인천분주판사처 설치에 중국정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통보해왔다.³³⁾ 이 최종 답변을 기다려, 외사과는 9월 11일 총영사 張維城에게 인천영사관 철폐와 경성총영사관의 업무 합병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이미 승인된 바이지만 그때 인천분주판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섭이 없었다면서 총영사에게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³⁴⁾

그러나 총영사관은 별도의 통보 없이 인천영사관 仁川分駐辦事處를 설치하고 파견된 辦事 蔣文鶴, 主事 李映西는 9월 30일부터 사무 처리를 개시하였다.³⁵⁾ 경찰라인의 보고를 받은 외사과장은 곧 각 관계 기관장에게 통첩을 보내 판사처 설치에 아직 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³⁶⁾

경성총영사관의 입장은 결국 공식 외교라인의 절차를 밟기로 한 중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일공사 汪榮寶이 10월 7일에 日本外務大臣 幣原喜重郎에게 보낸 공문에서 알 수 있

32)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 1930년 9월 3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63-1369.

33) 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 1930년 9월 6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58-1359.

34)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9월 11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54-1357;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9월 15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50-1351.

35) 경기도 경찰부장→경무국장, 1930년 10월 4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 1349.

36) 외사과장→경무국장, 재무국장, 인천세관장, 인천부윤, 경기도 지사, 1930년 10월 11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46-1348.

다. 제일공사 왕영보는 경성주재 조선총영사 張維城의 공문을 인용하여 인천분주판사처 설치에 대해 “외사과장이 非正式 통지이므로 외무성의 답변 전문을 보내달라고” 하나 “총영사관이 인천에 판사처를 설치하여 관원을 파견해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총영사관 관원이 하는 일이므로 영사관 업무의 합병 처리의 일환이지 따로 영사분관을 설치하는 성질의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주재국에서 조금도 불편할 일이 없으니 본국에서 조선총독에게 통첩하여 신속히 승인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³⁷⁾ 이 문면을 보면 중국 측은 인천 업무를 총영사관이 통합 관리한다고 이미 공지한 이상, 인천의 관원 파견과 판사처 설치의 어디까지나 총영사관 내부 관할의 일처리이므로 기본적으로 외교라인의 승인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결국 외사과의 요구대로 중국 정부는 외무대신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외무부가 “이견이 없다”고 통지함에 따라 비로소 조선총독부는 인천분주판사처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외사과가 총영사관에게 공식 답변을 보내고 유관 기관 통첩을 한 것은 조선총독부로 본국의 승인 전보가 전달된 11월 7일에서도 한 주일이 지난 11월 13일이었다.³⁸⁾

결국 석 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공문에서 중국 측은 8월 28일을 인천분주판사처의 설치 시점으로 잡고, 조선총독부는 본국 승인이 도착한 11월 7일로 주장하는 모순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만주사변 직전 조선총독부와 재한중국영사관 사이에는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견제와 불신의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재한화교 문제를 둘러싼 교섭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긴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2. 萬寶山事件 以前 在韓華僑 문제의 심화

1) 형사 사건의 사례

만보산사건과 배화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도 조선 내의 민족 간 긴장의 고조를 보여주는

³⁷⁾ 中華民國特命全權公使 汪榮寶→日本外務大臣 男爵 幣原喜重郎, 1930년, 10월 7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40-1341.

³⁸⁾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11월 13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26-1327; 外事課長 穗積眞六郎→재정국장, 경무국장, 경기도지사, 인천세관장, 인천부윤, 인천상업회의소 會頭, 1930년 11월 13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27-1329; 拓務次官 侯爵 小村欣一→朝鮮總督府 政務總監 伯爵 兒玉秀雄, 1930년 10월 29일, CJA0002323-(3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仁川分駐辦事處主任ニ關スル件』, pp. 1339-1341.

사안들은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총영사관이 처리한 중국인이 관련된 제반 안건 중에서 형사 사건과 탄원 및 진정 안건을 구분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총영사관 측과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시선이 달라지는 형사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³⁹⁾

1929년 11월 11일에 咸鏡北道 咸興郡 雲田面에서 朝鮮窒素肥料會社 職工 日本人 關克已가 중국인 잡화상 중국인 張慶雲을 단도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처 薛氏 및 龐克禮, 位玉中 등 3명의 중국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咸興地方法院의 判決文에 따르면, 關克已는 4명의 일본인과 음주 후 同面 天機里의 九州屋에서 묵기 위해 가던 중 龐克禮, 位玉中 2인을 만나 이유 없이 방극례를 구타하여 휴대한 단도로 찔러 전치 2주의 자상을 입혔다. 關克已는 이후 九州屋으로 향하나 만원으로 사절 당하자 분격하여 거리로 나온 뒤, 오후 11시 30분 경 張慶雲의 집 앞을 통과하는 중에 장경운, 처 설씨와 그 아들 張學詩 및 앞서 위옥중, 방극례 등이 앞서 당한 일을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자기에 대한 복수를 모의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칼을 휘둘러 張慶雲을 살해하고 설씨, 방극례, 위옥중에게 중상을 입혔다.⁴⁰⁾

함경남도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범인을 체포하여 함흥지방법원으로 송치하는 한편 중국 측의 동향 탐지에 나섰다. 함남 경찰부장의 경성 경무국장에 보낸 “지나인 피살사건에 대한 支那領事の 동정에 관한 건”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11월 12일에 사건을 원산영사관에 보고하였고, 원산영사 馬永發은 다음 날 13일 오후 9시 33분에 함흥에 도착하여 자동차로 天機里의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다. 마영발은 다시 관할 흥남경찰관주재소에 출두하여 범인 처치를 묻고 금후 재류지나인의 보호를 의뢰하고, 오후 2시에 함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함경남도 지사를 방문한 뒤 오후 8시 10분 함흥을 출발하여 원산으로 돌아갔다.⁴¹⁾ 경찰은 별다른 의심할만한 언동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마영발은 이틀 뒤 11월 15일에 함경남도 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 처리를 위한 4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공문을 보면 일본경찰과 법원의 공문과 차이가 있다.⁴²⁾ 우선 중국 영사의 공문에는 중국 측 신원이 보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사망한 張慶雲이 泉盛湧라는 상점의 점주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 이름 역시 魏玉忠, 龐克禮로 되어 있어, 판결문의 “位玉忠”은 “魏玉忠”의 誤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은 피해자

39) No. 39의 「陳義財殺人事件ニ關スル件」은 조선에서 발생한 중국인 간의 살인 사건에서 중국 안東으로 도피한 범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40) 昭和四年刑公第70號 咸興地方法院長 判決文, 1929년 12월 23일, CJA0002323-(6)「内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16-1121.

41) 함경남도 경찰부장→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1929년 11월 14일, CJA0002323-(6)「内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30-1132.

42) 在元山中華民國領事 馬永發→함경남도 지사, 1929년 11월 15일, CJA0002323-(6)「内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25-1127.

이름조차 틀릴 정도로 중국인 정보에 허술한 반면 피고인인 일본인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자세했는데(熊本縣 출신 및 기타 이력 사항), 마영발의 문서에는 “성명 불명의 일본인”으로 써 있어 체포한 범인에 대한 정보가 아직 중국 측에 전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 판결문에는 첫 구타에 대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있어 이유 없이” 방극례를 구타하고 자상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張慶雲의 泉盛湧에서 나와 바로 4명의 일본인을 만났는데 (일본인이) 그들에게 성냥을 요구했으나 응할 수 없어 곤란해 하자 일본인이 구타했다”고 되어 있었다. 즉 판결문은 피고자의 진술에 입각하여 만취 상태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사 공문에 명확하게 있는 중국인 측 진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영사관 보고에는 변을 당한 두 사람이 놀라서 다시 泉盛湧 점내로 도망쳐 張씨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일본인들이 뒤를 쫓아 칼을 휘둘렀다”고 되어 있다. 반면 판결문에는 일본인 피고인 입장에서 거리에 중국인 여러 명이 서서 뭔가를 모의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복수를 획책하는 것으로 그릇된 의심을 하여” 공격했다고 쓰고 있다. 사건을 진술하는 미묘한 시선의 차를 느낄 수 있다.

마영발은 1) 가해자 엄벌, 2) 사망자 유족의 위로와 장례비 보증, 3) 사상자의 치료비 및 가료 중에 일을 할 수 없는 손해의 보상, 부상으로 죽음에 이를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와 장례비 보증, 4) 장래 중국인 거류민에 확실한 보호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⁴³⁾ 이에 대해 함경남도 지사 馬野精一은 “가해자는 체포되어 우리 국법에 따라 공명한 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므로 불공정한 재판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망자 유족의 구출 및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기타 청구에 대해서는 본방 법률이 명시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응을 한 뒤 사실상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⁴⁴⁾

약 한 달이 지난 12월 27일에 마영발은 다시 흥남지방법원에 법원에 해송된 후 계속 연락이 없다고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⁴⁵⁾ 이미 23일에 징역 7년의 판결이 났는데도 유족이나 중국 측에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⁴⁶⁾ 해가 바뀌어 1930년 1월 1일에

43) 在元山中華民國領事 馬永發→함경남도 지사, 1929년 11월 15일, CJA0002323-(6)『内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25-1127.

44) 함경남도 지사 馬野精一→在元山中華民國領事 馬永發, 1929년 11월 19일, CJA0002323-(6)『内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28-1129. 함경남도 지사는 이상의 대응을 경무국장과 외사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

45) 在元山中華民國領事 馬永發→咸興地方法院, 1929년 12월 27일, CJA0002323-(6)『内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 1122.

46) 이러한 정보의 미공개는 다른 사건에서도 보인다. 1931년 3월 16일 오후 11시 30분 경 京城竹添町 중국인 빵집에서 조선인 李在鉉이 점원 孫鴻正에게 만두를 산 뒤 외상을 하려다 거절당하면서 싸움이 일어나, 李在鉉이 주인 吳興長의 복부를 발로 차 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한 사

함흥지방법원은 총독부 문서과장에게 원산영사관에게 판결 사본을 제공하고 상소권 포기 결과 판결 확정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요청했는데.⁴⁷⁾ 외사과에서 1월 17일 원산영사 마영발에게 판결문 및 확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⁴⁸⁾ 판결이 확정되자 중국 측은 배상 문제에 집중하여 조선총독부에 요구했다. 원산영사의 보고를 받은 경성총영사관은 총영사가 직접 외사과장을 면담하는 한편, 1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외사과에 공문을 보내 사망자 유족의 상황이 비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원산영사 판법 중 2)와 3)의 장례비 및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⁴⁹⁾ 그러나 결국 외사과는 2월 8일 답신에서 유족에 동정을 표한다면서도 범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고 사망자 유족 구출 및 피해자 치료 등은 법률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며 원산영사에 대한 함경남도 지사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같은 날 외사과는 함경남도 지사에게도 교섭 내용을 통첩했다.⁵⁰⁾

이 함흥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 상황이 역력하기 때문에, 영사관과 총독부의 입장 차는 미묘하게만 드러나지만, 피해 정도와 경과가 경찰보고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일수록 양자의 문제를 보는 시선과 입장 차는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1930년 2월 3일 忠淸南道 瑞山郡 海美面 邑內里 시장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 사건을 보자. 먼저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忠淸南道 瑞山郡 瑞山面 邑內里 시장 행상인 曹大鉉(당 23세)과 같은 서산군 音岩面 塔谷里 시장의 행상인 申模聲(당 28세)은 당일 오후 5시 경 읍내리 시장 음식점에서 다른 조선인

건이다(京城地方法院判決文, 1931년, CJA0002323-(50)『在留支那人傷害致死事件ニ關スル件』, pp. 1542-1548). 오홍장은 며칠 뒤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재현은 바로 체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총영사관이 직접 관원을 파견하여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3월 24일 가해자를 체포하여 법원에 이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총영사관은 두 달이 지났는데도 판결을 알 수 없다고 유족에게 알려주기 위해 판결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中華民國駐朝鮮總領事館 代理館務 季達→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5월 27일, CJA0002323-(50)『在留支那人傷害致死事件ニ關スル件』, pp. 1553-1554.)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총영사관은 가해자 조선인의 이름을 李龍源으로 잘못 알고 있고,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가해자의 판결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李在鉉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47) 咸興地方法院長→朝鮮總督 官房文書課長, 「刑事判決通知ノ件」, 1930년 1월 1일, CJA0002323-(6)『內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 1115.

48) 朝鮮總督府 外事課長 穗積眞六郎→在元山中華民國領事 馬永發, 1930년 1월 17일, CJA0002323-(6)『內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13-1114.

49) 中華民國駐朝鮮總領事 記名公使 張維城→朝鮮總督府 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1월 31일, CJA0002323-(6)『內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 1112.

50) 朝鮮總督府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華民國駐朝鮮總領事 記名公使 張維城, 1930년 2월 8일, CJA0002323-(6)『內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p. 1104-1106; 朝鮮總督府 外事課長 穗積眞六郎→咸鏡南道知事, 1930년 2월 8일, CJA0002323-(6)『內地人ノ支那人殺傷事件ニ關スル件』, p. 1107.

남자 3명과 음주를 한 뒤, 이 시장의 중국인 陳守璿 및 刁繼周의 가게 앞에 이르러 상품을 어지럽히고 길거리에 버리는 등 장난을 하였다. 刁繼周는 두 사람을 쫓아 상품 값을 청구하고 분노한 나머지 질책하고 욕을 해 싸움이 났는데, 조대현은 주먹으로 그를 구타하여 가벼운 타박상을 입혔다. 관할 서산경찰서 해미경찰관주재소 수석순사 西澤慶次郎이 현장에 오니, 陳守璿의 가게 앞과 도로에 밀감 약 20여 개가 흩어져 있었다. 가해자들은 이미 흩어졌으나, 부근을 수사하여 가해자 두 사람을 발견하여, 주재소에 동행한 뒤, 취조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만취해 있고, 중국인도 자신을 구타했다고 강변했다. 刁繼周와 대질하니 쌍방이 큰 소리를 냈다. 그날 밤 가해자를 다시 취조하니, 만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다만 죄를 뉘우친다고 진술하여, 오후 12시에 일시 귀가 조치시키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주재소에 출두하도록 했다. 이튿날 4일 아침 두 사람은 출두했고, 경관은 엄중 훈계하여 돌려보냈다. 그런데 같은 날 刁繼周이 두 사람에 대한 상해죄의 고소장을 동 주재소에 제출하여, 다시 관계자의 취조에 착수했는데, 조대현은 이미 행방을 감춘 후였다. 신모성을 취조하니 그는 刁繼周를 구타한 것은 조대현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에 서산경찰서에서 조대현의 소재를 계속 수사하여도 발견 못하자, 2월 24일 해미주재소로부터 본건 서류를 서산경찰서에 송치하여, 경찰서 지휘하에 엄중 수사를 속행하여도 의연히 소재가 불명하여 어쩔 수 없었다. 이에 5월 31일 기소 중지 의견을 붙여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검사분국에 송치하고, 6월 4일 분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서산경찰서에서 조대현의 소재를 계속 수사하던 중, 그가 철도피의사건으로 충청남도 溫陽警察署에 검거된 것이 판명되었다. 서산경찰서는 이를 서산지청 검사분국에 보고하고 분국에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 公州地方法院에서 6월 19일 조대현을 철도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한편, 예의 상해죄에 대해 6월 24일에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20원을 언도하였다. 또 서산경찰서는 조대현이 취조에서 신모성도 함께 刁繼周 폭행에 가담했다고 공술했으므로 곧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서산지청 검사분국에 관계 서류를 이송하여 신모성을 기소할 예정이라는 것이다.⁵¹⁾

위와 같이 보자면 지극히 경미한 폭행사건에 불과하다. 이 사건이 외사과와 총영사관이 개입하는 복잡한 사안이 된 것은 인천중화상회가 忠淸南道 瑞山 華商代表 華盛和(號)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총영사관에 넘기면서이다. 忠淸南道 瑞山 華商代表는 탄원서 첫머리에 “우리 화교들이 조선 각도에서 조선인의 압박을 누차 받고도 왕왕 이유도 없이 사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고 구타를 당하니,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도 도

51) 경무국장→외사과장, 1930년 7월 15일, CJA0002323-(24)『在鮮民國商人ニ對スル暴行事件ニ關スル件』, pp. 1239-1244.

중에 구타를 당하기 다반사이고, 지역에 비록 보호할 경찰이 있어도 늘 성의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화교들과 조선인은 모두 경찰서에 기소를 해도 조선인 경찰이 통역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기가 더욱 심하여 어려움을 당하니,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양보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조선인은 양보를 할수록 더욱 의기양양하여 우리 화교상인에게 더욱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운을 떼고 있다. 在韓華商은 서산의 사건을 일상화된 차별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해미시장에서의 상황 진술 역시 경찰조사와는 사뭇 다르다. 화상 측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판매행상 5명이 돌연 화교 상점에게 횡포를 부리고 연속해서 4곳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마지막에 元泰盛號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 상품의 훼손도 약간 있었고, 점원 刁繼周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이 조선인 두 사람을 체포했으나 조금 질책한 뒤 바로 석방해버렸다. 이에 刁繼周는 억울하여 서산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선인을 기소하였다. 조선인은 소식을 듣고 도망갔다가 5월 21일 경찰서가 그중 한 명을 체포하여 대질 심문을 했는데, 刁繼周는 조선어를 못하므로 조선어를 잘하는 자를 통역으로 데리고 경찰서에 갔다. 이때 “조선경관은 통역인을 보고 소송을 교사하여 부추긴다고 심문하여 질책하여 내쫓고, 다시 刁繼周에게 괜히 일을 만든다고 명령하여 안건을 끝내게 했다(適朝鮮警官訊問喝責通譯之人爲架訟即令退出次又斥責刁繼周格外生事迫令和息鎖案)”는 것이다. 刁繼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경찰서는 이 조선인을 석방하고 조금도 죄를 징벌하지 않았다. 그러니 “화교를 멸시하고 公理를 살피지 않음이 가히 극단에 달했다 할 만하다(蔑視華僑不顧公理可謂已極)”며, 경찰서가 화교를 차별하고 조선인의 폭행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평등대우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⁵²⁾

화상 측의 진술을 참고하면 피해 규모도 더 크고, 경찰서가 신모성을 체포한 것도 2월 4일 고소장이 접수한 뒤 훨씬 후인 5월이고 그때에 대질신문에서도 명백히 화상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꾸로 화상에 대해 민족적인 차별만을 했다면 이렇게 경미한 사안으로 수배와 체포를 성실히 했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화상단체와 총영사관의 경찰 비판에 대한 경찰 측의 의견을 들어보자. 경찰 측은 사건 송치와 수배 과정을 면밀히 서술하면서 본건에 대한 경찰의 처치는 전혀 유감스러워할 만한 점이 없다고 못을 막았다. 또 사법처분의 결과도 가해자 1인이 이미 벌금 20엔에 처해졌고, 다른 한 사람도 곧 검사에 기소될 예정인데, 보통 이 정도 경미한 상해사건은

⁵²⁾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6월 16일, CJA0002323-(24)『在鮮民國商人ニ對スル暴行事件ニ關スル件』, pp. 1253-1256.

훈방에 그치거나 좀 중해도 기소유예처분을 하므로, 이번 사례는 “오히려 너무 과중하게 처벌을 논했다고 할 만하다(寧口嚴ニ過グル程度ノ處置ヲ講ゼラシツツアルモノナリ)”며 손해배상에서도 刁繼周가 말하는 상품피해인 과자 10錢, 밀감 4개 4錢, 합계 14錢 및 타박상을 입은 손해는 주범인 조대현이 수감 중인데다 이 정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을 표명했다.⁵³⁾ 외사과도 이 의견과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 총영사관에 회신하고 있다.⁵⁴⁾ 종합해보자면 경찰은 고소가 들어온 이상 법률적 절차를 다 수행하지만, 사안의 경미성에 비해 집요하게 소송과 탄원을 거듭하는 화상의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점이 대질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서산의 사례처럼 경미한 사안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경성화교소학생 폭행사건이다. 이 사건은 1931년 7월의 만보산사건과 배화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넉 달 전쯤에 일어났다. 1931년 1월 27일 총영사관은 외사과에 3일 전인 1월 24일 조선인 학생들이 화교 소학생을 공격한 사건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총영사는 冒頭에서 총영사관 부설 漢城華僑小學校 학생들의 통행길이 비교적 외진 시가지에 있는데, “조선의 불량청년들이 왕왕 도로를 가로막고 싸움을 건 것이 이미 수차례였다(朝鮮不良青年往往攔路尋毆已有數次)”고 하여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총영사에 따르면, 1월 24일 오후 4시 소학생 夏廷蘭 외 1인이 蓬萊町橋 부근을 지나갈 때, 5-6명의 이러한 조선 불량 학생 무리들이 길을 막고 夏廷蘭을 구타하여, 夏廷蘭은 앞니를 다쳤고, 다른 소학생 1인은 다행히 도망쳐 피해자 가족에게 달려가 함께 蓬萊町 2丁目の 귀 경찰관으로 달려가 신고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아직 한 사람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는데, 경찰관이 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가해자를 도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총영사는 이런 류의 사건이 빈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조선총독부 각 파출소의 조선인 경찰관이 우리 국민이 달려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매번 그 직책을 제대로 다하지 않으니,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貴府內各處派出所鮮警, 對於敝國僑民馳報事件, 每不本其職責, 迅爲持平處理, 良爲感事)”고 말하며 주무관청에 화민 단속과 보호를 통첩하여 나중에 “중대 사건을 빚어내는 일이 없도록以免釀成巨大事件)”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⁵⁾

이에 대해 3월 31일 총영사관에 회신을 보내면서 경무국장과 외사과장은 경찰기록을

53) 경무국장→외사과장, 1930년 7월 15일, CJA0002323-(24)『在鮮民國商人ニ對スル暴行事件ニ關スル件』, pp. 1239-1244.

54)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0년 7월 25일, CJA0002323-(24)『在鮮民國商人ニ對スル暴行事件ニ關スル件』, pp. 1228-1238.

55)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1월 27일, CJA0002323-(44)『在京城支那人小學生徒毆打事件ニ關スル件』, pp. 1477-1475.

자세히 전하면서 사건을 전혀 다르게 파악했다.⁵⁶⁾ 즉 하정란의 공술에 따르면, 1월 24일 (토요일) 화교소학교 2학년 夏廷蘭(15세)과 韓增慶(15세)은 방과 후 귀가하는 도중 龍江面 阿峴里 노상에서 15, 16세의 조선인 7, 8명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와, 西大門署 竹添町派出所에 신고했고, 순사는 다른 도로로 귀가하라고 지시하여, 西小門町으로 물러가 그 町의 지나인 町總代에게 보호를 구하나 부재하여 길을 바꾸어 義州通 2丁目 소재 蓬萊橋로 가는데, 앞서 불량 조선인 아동이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을 하였다. 하정란은 부근 조선인 음식점 金春植에게 달려가 난을 면하고, 동반한 한증경은 하정란의 형인 夏廷梅(35세)에게 연락하여 한증경, 하정매, 지인 韓順泰가 함께 현장에 달려갔다. 도중에 조선인 음식점주의 호의로 보호자로서 함께 길을 오던 하정란과 만나, 형제가 함께 오후 4시경 관하 봉래정파출소에 폭행생도의 체포원을 제출했다, 이 파출소원은 조선어를 아는 파출소 부근 거주 중국인 林從運(24세)과 함께 불량생도의 퇴로로 보이는 中林洞 184번지에 도착하나, 먼저 그 지역 부근에서 가해생도의 동향을 감시하던 한순태가 이미 가해자들이 흩어졌다고 하여 그냥 철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정란 등은 2차례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의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이 철수한 것은 피해자 일행의 말 때문이었다.

경찰은 봉래정파출소에서 사건을 최급한 조선인 李奉天 순사의 보고와 중국인 생도의 공술이 합치하며, 어떤 취급상에 지체나 불친절도 없었다고 주장한 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즉 피해 중국인 아동 하정란은 처음 싸움 직후 竹添町派出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당시 당번 근무자인 洪淳泰, 柳寅顯, 安基承의 세 순사에 대해 취조해도 신고를 접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오히려 날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정란이 앞니를 구타당했다고 하지만, 당시 출혈 및 전치 손상의 외부적 상해를 입은 흔적이 없어 이 점도 의심스럽다. 총체적으로 총영사의 조회문에서 “가해자가 아직 한 사람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운운은 완전히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⁵⁷⁾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 모두 총영사관이 비판한 “鮮警”, 즉 조선인 경찰관의 증언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아야할까.

2) 교민 탄원의 사례

56) 외사과장→경무국장, 1931년 2월 10일, CJA0002323-(44)「在京城支那人小學生徒毆打事件ニ關スル件」, pp. 1472-1473; 外事課長 穂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1년 3월 31일, CJA0002323-(44)「在京城支那人小學生徒毆打事件ニ關スル件」, pp. 1463-1467.

57) 경무국장→외사과장, 1931년 3월 16일, CJA0002323-(44)「在京城支那人小學生徒毆打事件ニ關スル件」, pp. 1468-1471.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나 행정에 관련되는 재한화교의 탄원 및 진정 역시 수가 적지 않았다. 그 중에는 화교공동체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노동 및 세금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분석 기간에 중요했던 쟁점들을 한 번 정리해보겠다.

CJA0002323 문서에서 가장 오래되고 미해결된 진정은 평양중화상회의 공동묘지 등기 요청 건이다. 平壤中華商會는 1902년(光武6年)에 大同郡 西川面 仁興里에 중국인 거류민을 위한 공동묘지 1곳(면적 총 2段 9畝)을 설치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잃어버려 1924년 7월 11일에 실측하여 그림을 그려 36번지2로 편입하고 묘지 이외의 공지는 金成淳에게 팔아 36번지의 3으로 편입하였다. 이때 토지의 무수와 소재지의 緣故 등을 緣故林野申請用紙에 기입하여 平安南道 道廳 林野係 및 大同郡 西川面 面所에 올렸다. 그런데 1929년 7월 22일 평안남도 林野係 書記 金秉璘이 서천면 사무소에서 緣故林 증거를 조사하면서 계약서만이 증명서로 유효하다며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평양중화상회는 비문을 비롯해 각종 부수 자료를 제출했으나 산림계 담당자가 인정을 해주지 않자 총영사관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⁵⁸⁾ 그러나 외사과에서 산림과로 조회가 간 뒤로도 계속 조사 중으로 1931년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인 공유지 문제는 평양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논란이 되었다.

1931년 5월과 6월에 걸쳐서는 경기도 일대의 華農, 華工 단속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仁川, 鐵原 등지에서 경찰관이 華工과 華農에게 거주허가증의 발급을 거부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구금, 벌금, 강제출국을 실시하여 총영사관과 외사과 사이에 쟁점이 된 것이다. 경성총영사관은 이 사건을“中華禁工被壓事件”으로 부르고 있다. 총영사 張維城의 일시 귀국으로 대리를 맡고 있던 부영사 季達이 외사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⁵⁹⁾, 仁川, 鐵原 등지에서 조선경찰은 신규로 거주허가증을 청구한 華工과 華農에게 모두 발급을 거부하고 현재 허가증을 소유한 중국인도 만기가 되면 재발급을 안해 줄 것이라고 공포했다. 이어진 단속으로 出境 당한 자를 제외하고 구속되거나 벌금을 징수 당한 화공, 화농이 인천 방면에는 畢俊榮 등 10인이며, 개성 방면에는 기술자 牛鳳閣 등 14명이었다. 季達은 화교가 조선에 오는 것은 생계를 위함이고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서는 거주를 불허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돈이 있는 자는 벌금을, 돈이 없는 자는 구속과 고문, 구타, 능욕을 도처에서 하니 人道와 中日親善을 감안할 때 빨리 교섭하여 단속을 중

⁵⁸⁾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0년 6월 21일, CJA0002323-(42)「支那人共同墓地ニ關スル件」, pp. 1451-1456.

⁵⁹⁾ 1931년 3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季達이 대리하였다(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3월 11일, CJA0002323-(41)「總領事張維城賜暇歸國ニ關スル件」, p. 1417;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6월 22일, CJA0002323-(47)「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歸任ノ件」, p. 1500).

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총영사관에 탄원을 올린 중국인 중 하나로 보이는 姜文煥(35세, 山東省)의 사례를 보자. 그는 水原에서 7년 간 채소농장을 경영하며 고용인 7명에 30여 무의 경지를 경작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姜의 청원에 따르면 “작년(1930년) (수원) 경찰서는 사용인 허가증을 귀국할 때에 반납하라고 하고, 봄에 다시 조선에 들어올 때를 기다려 다시 영수하라고 명령하였다. 대체로 3월 중에 허가장 발급을 신청했는데 경찰서는 일절 발급을 안 해준다. 게다가 허가가 없으면 거주 및 경작을 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다.”⁶¹⁾ 위를 보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姜文煥 자신이기보다는 그의 고용인들이다. 위의 문면을 보아 강문환은 중국, 아마도 고향인 山東省에서 동향 출신의 계절성 노동자를 들여와 농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기 지역이 문제가 된 것도 경기 지역에서 채소 농장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화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1899년 일본의 내지잡거령이⁶²⁾ 1910년 8월 25일 통감부령 제52호와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에 의해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⁶³⁾ 외국인으로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종전의 거류지 이외에서 거주 또는 업무를 행할 수 없고,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1931년 5-6월의 상황은 경기도에서부터 단속을 실질화함으로서 생겨난 것이었다. 1931년이 되면 일본과 조선 모두 세계대공황으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쟁도 치열해졌다. 강문환의 사례처럼 재한화교는 상점이든 농장이든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동향인을 데려와 썼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해 조선 내에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주의가 반갑지 않았다.

한편, 과세 가중을 집단 민원하는 사례도 보인다. 1931년 4월에는 화교에 대한 부당 과세를 둘러싸고 민원이 제기되었다. 우선 경성총독부가 외사과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驪州郡 邑內面 華商代表 劉逢鈺이 京城中華商會에 찾아와 탄원하기를, 읍내면에는 華商이 義盛東 등 3家が 있는데, 1931년 戶稅가 1930년 대비 1배 내지 4배까지 급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니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화상의 주장에 따르면 화상들은 누차 면장

60) 中華民國駐朝鮮總領事館 代理館務 季達→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6월 13일, CJA0002323-(48)「支那人労働者居留ニ關スル件」, pp. 1503-1504.

61) 朝鮮總督府 官房外事課 參考資料, 1931년 5월 18일, CJA0002323-(48)「支那人労働者居留ニ關スル件」, pp. 1511-1512.

62) 安井三吉『帝國日本と華僑—日本・臺灣・朝鮮』青木書店, 2005, pp. 63-67.

63) 參考「外國人労働従事者取締方」, 明治43년 8월 25일, CJA0002323-(48)「支那人労働者居留ニ關スル件」, pp. 1513-1514 ; 參考「外國人労働従事ノ種類及許可方」, 明治43年 10월 1일, CJA0002323-(48)「支那人労働者居留ニ關スル件」, pp. 1515-1516.

을 만나 감핵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중에 1家は 작년 영업 손실로 일찍이 면장이 절대로 증세하지 않겠다고 한 바도 있는데 결과는 1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상인들이 제출한 증가비교표는 아래와 같다.⁶⁴⁾

驪州郡 邑內面 華商 戶稅年度比較表

상호	1930년(圓)		1931년(圓)		
義盛東	戶稅	2.26	戶稅	10.32	약4배
	戶別割	2.00	戶別割	9.27	
	합계	4.26	합계	19.59	
芳林園	戶稅	5.78	戶稅	10.32	약1배
	戶別割	5.13	戶別割	9.27	
	합계	10.91	합계	19.59	
中和園	戶稅	5.79	戶稅	10.32	약1배
	戶別割	5.14	戶別割	9.27	
	합계	10.93	합계	19.59	

그런데 교섭이 진행되는 도중에 여주군 읍내면의 화상들은 결국 세금을 납부하였다. 여주군의 화상들이 주장하기로는, 읍내면 면장과 면 세무서기 申弼壽, 군청재무과원 韓聲振 등이 함께 상점에 와서 모두 약속하기를 내년에는 호세를 줄여준다고 약속하여 할 수 없이 억지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납부 후 5월 10일에 다시 총영사관에 약속의 확인을 부탁했고 경성총영사 역시 내년도부터의 감세를 굳게 믿겠다고 외사과에 공문을 보냈다.⁶⁵⁾

이에 대해 내무국장과 외사과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과세총액 및 납세의무자 총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多額의 戶稅納稅義務는 他府面 轉出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둘째, 이의 제기자 중 2명에 대해서는 본년 토지 등의 소득 있음을 발견하여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1931년도에 부담을 한층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 등급을 고친 결과 부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화상이 조세를 납부한 것은 면의 지도에 따라 양해하고 납세하도록 한 것이지, 내년도부터 감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납세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⁶⁶⁾

64)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4월 30일, CJA0002323-(53)「課稅ニ關シ支那人ヨリ申出ノ件」, pp. 1587-1589.

65) 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外事課長 穗積眞六郎, 1931년 5월 15일, CJA0002323-(53)「課稅ニ關シ支那人ヨリ申出ノ件」, p. 1582.

66) 外事課長 穗積眞六郎→中國駐朝鮮總領事 張維城, 1931년 7월 21일, CJA0002323-(53)「課稅ニ

앞서의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례 역시 사실 관계에 대한 양쪽의 증언이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경우는 왕복 문서만 보아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화상에게 세금을 부가하고 징수하며 교섭하는 말단 관료는 조선인이었고, 형사사건에서 증언이 어긋나는 말단 순사역시 조선인이었다. 형식논리로 하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반복만 하는 조선총독부 외사과와 일본인 고급 관료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중국인에게 차별을 느끼게 한 주체는 주로는 조선인 하급관료였다고 보인다. 형사사건에서처럼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는 사례도 대부분 조선인과 중국인이었지만, 일본인 상급관료와 조선인 하급관료라는 조선총독부의 통치구조 자체도 구조적 차별 구조 속에서 주로 부딪히고 반목을 하는 것이 조선인과 중국인이 되도록 만든 한 원인이었다.

3. 1931년 배화폭동과 만주사변 이후의 양측 교섭

- 당일 발표로 대체함.

맺음말

關シ支那人ヨリ申出ノ件」, pp. 1574-1577; 내무국장→외사과장, 1931년 5월 6일, CJA0002323-(53)「課税ニ關シ支那人ヨリ申出ノ件」, p. 1578.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1949-1958)

인구정책과 여성의 출산 조절

유 연 실(전남대)

目次

- I. 머리말
- II. 1950년대 중국 인구정책의 추이
- III. 여성의 노동성 확보와 출산의 관리
- IV. 맺음말

I. 머리말

1949년 10월 1일 성립된 中華人民共和國은 사회·경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을 통해 시급히 사회주의 국가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잔여 세력의 숙청과 사회주의 정치 개혁, 전식 경제체제의 부활을 통한 경제의 재건,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¹⁾ 이러한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산당은 토지개혁·반혁명분자 진압 및 三反·五反운동, 抗美援朝의 대중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1949년부터 1953년 중반까지 인구증식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출산 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1953년 진행된 인구조사 결과 급격한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과 더불어 피임과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1955년 「인구억제 문제에 관한 지시(關於控制人口問題的指示)」가 내려지면서 산아제한에 대한 광범위한 선전과 피임교육이 실시되었지만, 1957년 진행된 反右派鬭爭 속에서 인구억제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맬서스주의자 혹은 反사회주의자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인구정책은 다시 한 번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1) 김경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논형, 2005, 256쪽.

고는 이러한 인구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피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인구를 국가 권력의 통제 하에 두기위해 경쟁했던 광범위한 담론적인 힘들(discursive forces)의 경합과 충돌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주의 권력이 인구 혹은 개인의 생식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불러내어 ‘일 하는 여성’을 이상적 여국민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속에서 여성은 혁명의 아이콘으로서 정치·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재화해갔다. 民國時期 신여성의 해방을 맛보았지만 대부분 가정의 영역에 머물렀던 여성이 1949년 이후 노동과 사회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국가는 신식 조산술과 탁아소의 설치를 통해 여성의 분만의 고통과 육아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임신이라는 생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은 재생산 노동과 임금 노동이라는 이중의 착취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949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노동과 출산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충돌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53년 이후 대대적으로 실시된 산아제한과 피임 선전 속에서 여성의 신체가 어떻게 국가적 통제와 억압을 받게 되며, 여성이 얻게 된 생리적 해방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후, 사회주의 중국에서 출산과 국가 권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가의 통치술이 생식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1950년대 중국 인구정책의 추이

1949년 8월 국·공내전의 국면이 공산당의 승리로 기울어져 갈 무렵 발표된 미국의 『中國白書』²⁾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향후 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문건이었다. 이 문서에서 미국의 애치슨(Acheson, D. G.)은 국·공 양당의 타협을 추진시켜 내전을 피하고,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국내 영향력 확대하려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국민당 지원 정책에 대하여 공산당은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이 친미적 경향이 있는 ‘민주개인주의’ 분자를 책동하여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전복시

2) 미국무성이 1949년 8월 5일 발표한 1944~1949년의 미국의 對중국정책에 관한 문서로서, 정식명칭은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 특히 1944~1949년의 시기에 관하여(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1949)”이다.

키려 한다고 비난하였다.³⁾ 특히 애치슨의 “중국의 인구는 18·19세기 동안 2배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토지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정부는 없다”⁴⁾라는 언급은 毛澤東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에 대해 毛澤東은 1949년 9월 16일 「유심주의적 역사관의 파산(唯心歷史觀的破產)」이라는 논설을 발표하여, 중국의 인구증가에 대한 낙관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의 인구가 많은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인구가 몇 배 더 증가하더라도 완전히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은 곧 생산이다. 서방 자본계급 경제학자 예를 들어 맬서스 같은 무리들이 식량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따를 수 없다고 한 황당무계한 논리는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일찍이 이론적으로 철저히 반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혁명후의 소련과 중국 해방구의 사실을 통해서도 완전히 반박을 당했다. …… 세상의 모든 사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고귀하다. 공산당의 영도 하에 단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들은 애치슨의 반혁명이론의 반박자이며, 혁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인구가 많고, 물산 풍부하고, 생활이 풍족하며, 문화가 번창한 新中國이 머지않아 곧 도래할 것이다.⁵⁾

이처럼 毛澤東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反마르크스주의적 자산계급의 논리로 치부하며, 혁명과 생산을 통해 인구증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다. 그는 인구를 자원의 소비와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맬서스주의적 경제관을 비판하고, 인구를 혁명과 생산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毛澤東의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균분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인구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사회주의 이상론과 인구를 생산력 혹은 노동력의 원천으로 보는 유물론적 경제관이 깔려 있었다. 그 결과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는 毛澤東의 인구자본설은 신생중국의 인구정책에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피임과 낙태를 제한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실시되었다.

1950년 3월 20일 北京市 衛生局에서는 「북경시 소속 각 단위 부녀 간부 낙태 제한 방

3) 당시 중국 공산당은 ‘구민주주의분자’·‘민주개인의주의’ 등 중간과 세력을 흡수한 연합정권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소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毛澤東은 그들이 내부에서 혁명을 파괴하는 반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늘 염려하였다. 특히 애치슨의 보고는 그들의 친미적 성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우려를 자극하였다. 때문에 毛澤東은 ‘민주개인의주의’와의 親美·崇美·恐美의 반동사상을 제거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주의·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楊奎松, 『新中國成立初期清除美國文化影響的經過』, 『中共黨史研究』 2010년 제 10기, 23-33쪽).

4)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四卷, 人民出版社, 1991, 1510쪽.

5)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四卷, 人民出版社, 1991, 1511-1512쪽.

법(北京市·屬各單位婦女幹部打胎限制辦法)』(草案)을 공포하여 비합법적인 낙태를 금지하였다.⁶⁾ 北京市 衛生局에서는 ① 중증 폐결핵·심장병·신장병·악성 빈혈 혹은 기타 임신부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유산 현상이 발생하여 태아를 안정시켜도 효과가 없는 경우, ③ 임신부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 혹은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④ 골반이 좁아서 난산을 겪거나 제왕절개 2차례 이상인 경우, ⑤ 출산경험이 있는 임신부의 신체가 허약하여 아동의 양육에 영향이 있는 경우, ⑥ 정신병을 앓고 있어 태아에게 유전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낙태를 금지하였다. 또한 위의 여섯 종류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남편의 동의, 소속 기관장의 승인, 공립의원 산부인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衛生局의 심의를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었다. 이후 4월 20일 中央人民政府 衛生部和 中央軍委 衛生部에서는 「기관과 군대 간부 부녀의 낙태 제한 방법(機關部隊幹部婦女打胎限制的辦法)』을 공포하였다.⁷⁾ 그리고 이 규정을 일반 부녀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낙태가 엄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951년 12월 31일 中央人民政府 衛生部에서는 「절육 및 인공유산을 제한하는 잠시 조치(限制節育及人工流產暫行辦法)』를 발표하여, 불임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3가지로 제한하였다. 불임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① 부녀가 중증 폐결핵·심장병·신장병·악성빈혈 혹은 기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부녀가 골반 협소·기형으로 인하여 난산을 겪거나 기타 원인으로 2차례 이상 제왕절개를 한 경우, ③ 35세 이상의 기혼 부녀가 친생자녀가 6명 이상 있으며, 그중 가장 어린 아이가 10세 이상으로 만약 다시 출산을 하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⁸⁾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했다. 인공유산의 조건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병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수술도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법규에는 피임도구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승인을 받은 상점에서만 피임 도구와 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피임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이후 피임약품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해져서 1953년 1월 14일 中央衛生部는 「절육 도구 및 약품의 등기 관리 규칙(節育用具及藥品之登記管理規則)』을 제정하고, 1월 20일에는 피임약품의 수입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였다.⁹⁾

⁶⁾ 北京市檔案館 135-001-00069 本局關於婦女幹部打胎、難產、種痘免費和婦幼保健工作網施行辦法的請示、批復、通知(1950年 3月 20日)

⁷⁾ 楊魁孚·梁濟民·張凡 編, 『中國人口與計劃生育大事要覽』, 中國人口出版社, 2001, 2쪽.

⁸⁾ 彭珮雲, 『中國計劃生育全書』, 中國人口出版社, 1997, 59쪽.

⁹⁾ 上海市檔案館 B242-1-560-60, 上海市人民政府衛生局關於節育藥品及用具管理問題請示市文

이외에도 1951년 北京市衛生局은 피임·낙태·인공유산을 선전하는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켰다. 이 당시 北京市 衛生局에서 출판 금지 명령을 내린 서적은 『實用避孕法』·『婚姻生活指導』·『婦女生理常識』 등 세 책에 불과 했지만, 이후 피임·산아제한·유전이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은 반동서적으로 치부되어 출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上海 家出版社에서 출판한 『實用避孕法』·『婚姻生活指導』·『婦女生理常識』의 세 책은 내용에 심각한 착오가 있다. 『實用避孕法』은 그 내용이 서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피임 상식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가의 인구증가 장려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책 중에는 또한 남존여비의 반동 논술이 있다. 『婚姻生活指導』도 피임과 節育을 선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아울러 유전을 언급하는 부분에 반동적 멘델(Mendel)과 모건(Morgan)의 유전이론을 선전하고, “性愛의 藝術” 가운데 음란에 가까운 서술이 있다. 『婦女生理常識』의 “나는 수란관을 절제했다”부분도 피임 선전에 속한다. “월경이 멈춘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부분도 역시 부분적으로 피임을 선전하는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부분도 자본주의 국가가 범죄행위를 유전 탓으로 돌리는 반동이론을 답습하였다. …… 피임과 節育의 문제는 개별적 유전 요소에서 설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학의 전문적 문제로 일반서적과 출판물에서 선전해서는 안 되며, 더욱 맹목적으로 제창해서는 안 된다. 맬서스의 반동적 인구론과 마거릿 생어의 산아제한론 등에 관해서도 맹목적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¹⁰⁾

사실상 『實用避孕法』은 1947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50년까지 제 7판이 발행되고 총 발행부수도 30,000부에 달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각광받는 피임지침서 가운데 하나였다.¹¹⁾ 그 내용에는 여성의 생식기해부와 피임법의 원리, 각종 피임약품 및 도구의 사용법,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피임법의 선택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일반 여성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피임법을 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맬서스의 인구론·마거릿 생어의 산아제한론·멘델의 유전 법칙 등을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반동이론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하였다. 이들 서적이외에도 『實用兒科學』이 “제국주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용하는 반동적 맬서스 인구론에 근거하여 산아제한을 제창했다”¹²⁾는 이유로 내용의 수정조

委的報告(1953年). 이 보고에서는 “피임약품은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이 약품이 필요할 때는 국내 제약공장에서 제조할 수 있다. 그 구매자는 반드시 공립의원 혹은 當地의 의사허가증이 있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비로소 피임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폐단을 두절한다”라고 하여 피임약품의 수입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¹⁰⁾ 北京市檔案館 008-002-00318, 出版總署關於上海“家”出版社出版之“實用避孕法”·“婚姻生活指導”·“婦女生理常識”及“明清八義三俠劍”·“七殺碑”兩書等查禁的通報(1951年 1月 1日).

¹¹⁾ 郭泉清 著, 『實用避孕法』, 上海: 家雜誌社, 1950.

치가 가해졌다. 또한 『做母親的準備』도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공통 강령인 부녀는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생활 방면에서 모두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¹³⁾는 규정에 위배되는 미국 자산계급의 남성 중심주의를 선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판이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사상의 통제에는 미국의 문화와 사상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투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로 피임·임신·육아에 관한 서적이 검열과 출판제한을 받게 되면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성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대중적 경로는 더욱 협소해 졌다.

중국 공산당은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의료적 제한이외에도 출산에 대한 장려를 통해 인구의 증식을 도모하였다. 1949년 9월 12일 『石家莊日報』에는 “新絳良記鐵工廠 노동자 李玉亭의 아내 李愛菊이 8월 15일 딸 세쌍둥이를 출산하여, 정부에서 보리 一石을 상여하였다”¹⁴⁾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9월 14일 靑島 『膠東日報』에도 嶗山の 네쌍둥이를 낳은 여성과 煙臺의 2남 1녀의 이란성 쌍둥이를 낳은 여성에게 정부에서 각각 양식 100斤과 50斤을 장려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¹⁵⁾ 이에 대해 李玉亭의 모친은 “인민정부는 정말로 모든 일에 백성들을 고려한다. 구사회의 관료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썼는가”¹⁶⁾라고 하며, 중국 공산당의 부녀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시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1951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보험 조례(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를 공포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생육 우대의 규정’을 두어 남성 노동자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및 여성 노동자와 여성 직원이 출산을 했을 때 勞動保險基金에서 출산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¹⁷⁾ 각 기업에서도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쌍둥이와 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게는 특별한 장려금을 지급하였다.¹⁸⁾ 이처럼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라는 毛澤東의 정치적 발언하에 인구는 사회주의의 국민에 대한 자본의 균분과 무산계급에 대한 평균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1949년에서 1.6%에서 1953년 2.3%로 급증하였으며, 총인구수도 5억 4167만 명에서 5억 8769만 명으로 400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1949년에서 1953년까지의 인구변동 추이를 표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實用兒科學』不應提倡節制生育』, 『人民日報』 1951년 6월 25일 6면.

13) 陳心, 『“做母親的準備”一書含有毒素應停止發行』, 『人民日報』 1951년 9월 28일 2면.

14) 『好消息』, 『新中國婦女』 第4期, 1949年 10月 20日, 38쪽.

15) 同上注.

16) 同上注.

17) 『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 『人民日報』 1951년 2월 27일 2면.

18) 孫沐寒, 『中國計劃生育史稿』, 長春: 北方婦女兒童出版社, 1987, 59쪽.

<표 1> 1949~1953년 인구변동 추이¹⁹⁾>

년도	출생율‰	사망률‰	자연증가률‰	총인구수(만명)
1949	36.00	20.00	16.00	54167
1950	37.00	18.00	19.00	55196
1951	37.80	17.80	20.00	56300
1952	37.00	17.00	20.00	57482
1953	37.00	14.00	23.00	58769

특히 1953년 6월에 진행된 인구조사는 250만 명의 통계원·기록원·조사원·감찰원을 동원하여 진행한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과학적 조사로서, 총인구수·성별·연령·민족 구성·인구분포·인구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중국 대륙의 총인구수가 5억 8260만 명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대만·홍콩·마카오·국외화교 및 유학생을 포함한 전국 총인구수가 6억 19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²⁰⁾ 이와 같은 인구의 급증은 노동밀집으로 인한 생산력감소, 도시의 실업문제 및 주택난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임과 인공유산에 대한 엄격한 금지도 여성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여성이 개별적으로 낙태를 실시하다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였다.²¹⁾ 때문에 1953년 上海市衛生局에서는 피임용품의 제조 금지 조치에 대한 완화와 피임약품 및 도구의 자유판매를 허가해주도록 中央人民政府衛生部に 요구하였다.²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부득이하게 인구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 8월 中央人民政府衛生部에서는 政務院에 “3년에서 5년 내에 위생기관의 지도하에 피임도구의 공개 제조·판매·사용을 승인하고, 아울러 적절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인공유산의 범위를 적절히 완화시킨다”²³⁾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政務院 부총리였던 鄧小平은 피임도구 및 약품의 수입 금지 조치의 개정과 「피임 및 인공유산 방법(避孕及人工遺產辦法)」의 수정을 승인하였다. 또한 衛生部에서는 1954년 7월 28일 「피임 및 인공유산 문제의 개선에 관한 통보(關於改進避孕及人工流產問題的通報)」를 각 省·市の 衛生廳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하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中國統計年鑑』, 1984년

20)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關於全國人口調查登記結果的公報」, 『人民日報』 1954년 11월 1일 1면.

21) 孫沐寒, 앞의 책, 85-86쪽.

22) 上海市檔案館 B242-1-560-60, 上海市人民政府衛生局關於節育藥品及用具管理問題請示市委的報告(1953년 11월).

23) 楊子慧, 『計劃生育在中國』,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7, 29쪽.

一. 피임·산아제한은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선전하지는 않는다. 피임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의료·위생기관에서 정확한 산아제한 지도를 제공한다.

二. 피임도구와 피임약품의 제조·관리는 이미 輕工業部와 상의하여, 이 부서에서 생산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 피임약품은 생산조건을 갖춘 국영 제약공장에서 제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임도구 및 약품의 판매는 中國醫藥公司에서 주관한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피임약품과 도구는 中國醫藥公司에서 수입을 총괄적으로 처리한다. 피임도구 및 약품의 품질은 위생기관에서 엄격히 심사·감독한다. …… 모든 피임 도구와 약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三. 인공유산 문제는 의학적으로 임신이 부적절하고 혹은 자녀의 출산간격이 조밀하며, 수유기간 4개월 이내에 또 임신을 하여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부쌍방의 동의하에 의사의 증명과 소속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수술을 할 수 있다. 만약 특수한 업무 관계 혹은 학습 임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수술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주관기관 책임자의 동의와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四. 수관관절제는 엄격하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 만역 여성이 심각한 폐결핵·심장병·신장병·악성빈혈·골반 혹은 產道의 협소 및 기형·제왕절개 2차례 이상, 혹은 6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임신으로 인하여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부부쌍방의 동의와 의사의 증명, 주관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²⁴⁾

이처럼 피임과 산아제한의 공개적 선전은 여전히 제한되었지만, 의료기관에 의한 피임 지도와 피임약품의 구매는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인공유산 또한 출산간격이 조밀한 여성, 학습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여성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피임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피임을 장려하여, 영구적 불임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다. 아울러 남성의 정관시술 및 피임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불임수술은 여성의 몸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당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산아제한과 피임방법의 대중화에 대한 일련의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일찍이 1922년 『婦女評論』에 「生育節制釋疑」²⁵⁾라는 글을 써서 과학적 피임법의 개발을 호소했던 邵力子는 1954년 9월 全國人民代

24) 「(中央人民政府衛生部) 關於改進避孕及人工流產問題的通報(1954年 7月 28日)」, 『中國人口和計劃生育史』, 북경: 中國人口出版社, 2007, 20쪽; 上海市檔案館 B242-1-692 中央衛生部關於改建避孕及人工流產的通報與上海市衛生局擬定上海市施行管理人工流產及結紮輸卵管手續辦法的報告·通知(1954년 8월-1954년 12월).

25) 力子, 「生育節制釋疑」, 『婦女評論』 第39期 “生育節制問題號”, 1922년 5월 3일. 1922년 마거릿 생어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上海 『民國日報』의 副刊이었던 『婦女評論』에서는 39기와 40기 2차례에 걸쳐 산아제한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당시 『民國日報』의 편집장이었던 邵力子는 산아제한 이론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방법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였다. 그는 마거릿 생어가 제시한 질세척법 등의 피임방법이 일부 기관지에 ‘외설’로 취급되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태를 비판하고,

表大會第一次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인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매우 많은 환경에서는 또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헌법은 모친과 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또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모친이 매년 한 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심지어 신체가 이미 쇠약해지고 부담이 매우 무거운데도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다면 국가는 그들을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받는 고통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낙태문제는 논하지 않더라도, 피임의 의학이론 등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확실히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피임 방법과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공급해야 한다.²⁶⁾

이처럼 邵力子는 毛澤東의 인구자원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헌법의 여성 권익 보호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여성의 피임권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1954년 12월 『光明日報』에 「피임 상식의 전파에 관한 문제(關於傳播避孕常識問題)」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였다.²⁷⁾ 이 사설에서 그는 먼저 피임 상식을 전파하는 것은 신멜서스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邵力子는 멜서스주의=자본주의=반과학이라 주장하며, 멜서스주의가 자본가의 착취나 억압을 은폐하고 인구과잉을 빈곤의 원인으로 부각시켜 계급투쟁을 완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인류사회는 영원히 인구과잉의 위협에 직면에 있다는 “절대적 인구과잉의 법칙”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근대의학의 피임이론과 방법은 과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근대 과학으로서의 피임을 대중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남녀 공민이 자각적으로 자발적으로 필요한 상황 하에 피임상식을 응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생육권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邵力子는 “현대인류는 어떠한 일이든 자신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자녀의 출산과 같은 大事도 실제로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근대 가족계획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피임상식의 전파는 모친 심신의 건강과 청년남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도, “피임상식의 전파와 피임 용품의 공급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라는 과도시기의 총임무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피임상식의 보급이 ‘절약’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국가주의적 목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후 邵力子는 1955년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會議에

반드시 과학적 노력을 기울여 피임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²⁶⁾ 邵力子, 「在第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發言」, 『邵力子文集』下策, 北京: 中華書局, 1985, 1068쪽.

²⁷⁾ 邵力子, 「關於傳播避孕常識問題」, 『光明日報』1954년 12월 19일.

『피임 상식의 선전 강화와 산아제한 기술의 제한 완화 요청안(請加強避孕常識的宣傳和放寬節育技術的限制案)』을 제출하였다. 그는 피임약품의 공급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하고, 수정관과 수란관절제술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특히 영구 불임 수술을 통해 피임약품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의료적으로 간편하고 위험성이 낮은 남성의 수정관절제술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또한 邵力子는 1956년 6월 全國人民代表大會 第3次會議에서도 피임상식의 선전과 불임수술의 제한 완화를 재차 강조하며, 의료인들 특히 중의학 종사자들의 피임약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독려했다.²⁹⁾

1954년 邵力子の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의 발언에 자극을 받은 全國人大常委會委員長 劉少奇는 12월 27일 北京에서 제 1차 節育問題座談會를 개최하였다. 劉少奇는 좌담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산아제한에 찬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천명하고, 출산을 많이 한 여성에게 “英雄母親”의 칭호를 주는 식의 출산장려 정책도 영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에 육박하는 인구성장률로 인해 의·식·의약·학교 등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부모와 가정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빈곤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였다.³⁰⁾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당 기관지에 산아제한을 선전하는 것과 口頭로 선전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 신문에 공개적으로 산아제한을 선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산아제한의 선전 동원운동을 진행하는 것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당 간부의 입장은 1956년 6월 周恩來가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전국적 범위의 계획생육의 선전 방침을 호소하면서 점차 전환되었다.³¹⁾ 이후 1956년 6월 15일 『健康報』에서는 『피임지식의 선과 지도의 진행(進行避孕知識的宣傳和指導)』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피임이 인민의 권리이며, “피임선전 공작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공개적 선전 방법을 바꾸어, 적극적·공개적으로 과학적 피임지식을 군중들에게 보급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매체와 서적을 통해 공개적으로 산아제한과 피임상식을 선전하였다.

1955년 3월 중공 중앙은 『인구억제 문제에 관한 지시(關於控制人口問題的指示)』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산아제한과 인구억제에 관한 문건이었다.

28) 『在第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上的提案』, 『邵力子文集』下策, 北京: 中華書局, 1985, 1088-1090쪽.

29) 『在第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上的發言』, 『邵力子文集』下策, 北京: 中華書局, 1985, 1094-1097쪽.

30) 劉少奇, 『提倡節育』, 『劉少奇選集』下, 人民出版社, 1985, 171-173쪽.

31) 楊子慧, 앞의 책, 31쪽.

산아제한은 광대한 인민의 생활과 관계된 매우 중대한 政策性的 문제이다. 현재의 역사 조건 하에서 국가·가정·새로운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당은 적절하게 출산을 억제하는 것에 찬성한다. 각지 공산당 위원회는 응당 간부와 인민군중(소수민족지역은 제외)에게 적절하게 당의 이 정책을 선전하여, 인민군중으로 하여금 산아제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³²⁾

이처럼 중국 공산당 내부의 산아제한에 대한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고, 대중에 대한 산아제한의 선전방침이 명확하게 결정되자 위생부는 피임상식 선전과 기술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각급 위생부문에 하달하였다. 위생부는 우선 의료종사에게 피임정책을 관철시키고, 이후 婦聯·工會·科普及紅十字會 등의 민간단체와 결합하여 도시와 농촌의 남녀주민·기관간부·공인·학교 교직원에게 광범위한 선전을 진행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³³⁾ 선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체생리구조·생리지식·피임원리·피임의 장점·과학적 피임법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위생부는 『避孕常識』·『談談避孕問題』 등의 서적을 발행하고, 이외에도 그림 이야기책과 슬라이드를 만들어 피임지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임의 선전 절차와 단계 이외에도 각급 의료보건기관의 피임 진료과 설치, 피임기술 요원의 훈련, 피임좌담회의 개최, 피임약품의 공급과 질량 검사, 중의학적 피임법을 포함한 새로운 피임 기술의 개발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1957년 4월 中華醫學會의 總會는 節育技術指導委員會를 설립하는데, 그 중심 인물은 林巧稚·楊崇瑞·王歷耕·嚴仁英 등이었다. 節育技術指導委員會는 “節育 기술의 연구와 실험을 제창하고, 節育 기술의 경험 교류와 선전을 협조하며, 節育 기술의 창조와 발명에 의견을 제공한다”³⁴⁾는 것을 설립 취지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北京市 公共衛生局 衛生教育所는 1957년 3월 피임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전람회의 주요 내용은 ① 피임을 해야 하는 이유, ② 피임의 장점, ③ 연령과 출산 상황에 따른 산아제한 방법의 선택, ④ 조혼의 단점, ⑤ 각종 피임방법의 소개와 구체적 응용 방법, ⑥ 영구피임 시술의 소개, ⑥ 인공유산의 폐해와 피임과의 차이 등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³⁵⁾ 北京市의 이러한 적극적인 피임 선전의 결과 1957년 8월까지 약 83만 명(北京市 成人人口의 40%)이 피임교육을 받았다. 피임도구의 판매량도 급증하여, 폐서리의

32) 楊子慧, 앞의 책, 30쪽.

33) 『中華人民共和國衛生部關於避孕工作的指示』(1956년 8월 6일), 『中國計劃生育全書』, 中國人口出版社, 1997, 891-892쪽.

34) 『中華醫學會總會節育技術指導委員會成立』, 『人民日報』 1957년 4월 1일 1면.

35) 北京市公共衛生局衛生教育所, 『避孕畫冊』, 北京: 北京出版社, 1957. 이 『避孕畫冊』은 피임전람회의 전시 내용을 다시 대중들이 알기 쉽게 그림 이야기책으로 구성하여 출판한 것이다.

경우 1분기 3,900개에서 2분기에는 5,900개로 증가하였다. 콘돔은 1분기 38만 개에서 2분기에는 51만 개로 증가하였다. 좌약식의 연고형 피임약품의 경우에는 1분기 13,000개에서 2분기에는 23,000로 증가하였다.³⁶⁾ 福建省의 경우에는 1957년 한 해 동안 전성의 2/3 이상의 지역에서 산아제한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대략 70만 명 이상의 민중들이 전람회를 참관하였으며, 福建省의 피임약품과 도구의 판매량이 1분기의 7만 7300여 건에서 2분기에는 18만 2200건으로, 3분기에는 약 3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³⁷⁾

또한 인공유산의 제한도 완화하여, 질병이 있는 여성 외에 경제상황 곤란한 여성·자녀의 출산간격이 조밀한 여성·특수한 업무와 학습 임무가 과중한 여성도 인공유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임수술도 신체적 질병이 있는 여성 외에, 기존의 6명의 자녀 기준을 4명으로 축소하여, 이들 여성 가운데 건강하지 않거나 학습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는 모두 불임수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⁸⁾ 1957년에 이르면, 불임수술은 자격 제한이 완전히 사라져 부부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공유산도 여성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임신을 지속하기를 원치 않으면, 임신 3개월 내에 유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⁹⁾ 그러나 中華醫學會는 이러한 衛生部の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5월 29일 中華醫學院 節育技術指導委員會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불임수술과 인공유산의 완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衛生部に 요구하였다. 이러한 中華醫學會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衛生部는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는 1950년대 피임약품과 도구의 공급부족을 인공유산과 불임수술로 대체하려 했던 그들의 교육지책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당시 피임약품과 도구의 피임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영구적 피임과 인공유산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임수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공유산의 제한을 완화시킨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낙태를 통한 산아제한을 용인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1957년 5월 中華全國總工會는 노동자의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따른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國務院에 요청하였다. 國務院에서는 같은 해 10월 12일 전국의 노동자가 불임수술과 질병으로 인해 인공유산을 실시할 경우, 그 수술비와 의료비용 및 수술 후 휴식 기간 동안의 월급을 노동보험조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수술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인공유산의 수술비와 의

36) 『北京受到避孕宣傳的達八十三萬人次』, 『人民日報』 1957년 8월 21일 4면.

37) 『福建積極宣傳節育: 全省三分之二以上地區舉辦過展覽會』, 『人民日報』 1957년 12월 17일 7면.

38) 『中華人民共和國衛生部關於人工流產及節育手術的通知』(1956년 3월 30일), 『中國計劃生育全書』, 中國人口出版社, 1997, 891-892쪽.

39) 『中華人民共和國衛生部關於人工流產及節育手術的通知』(1957년 5월 15일), 『中國計劃生育全書』, 中國人口出版社, 1997, 893-894쪽.

료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 휴식기간도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⁰⁾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의 완화 조치와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上海의 경우 1957년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이 3~6월 1,192명에서 7~12월에는 2,230명으로 증가하였다. 수란관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3~6월 2,775명에서 7~12월에는 6,3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정관절제술을 받은 남성은 3~6월 5,564명에서 7~12월 3,48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⁴¹⁾ 이는 산아제한과 피임방법에 대한 선전이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 중점을 두고 행해졌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남성 불임수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완고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4월에서 1957년 5월까지의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雙百運動이 전개되던 시기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인구문제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1957년 3월에 열린 全國政協二屆三次會議에서 李德全·王寶楹·王歷耕·鍾惠瀾·鄧季惺·全慰天 등은 인구문제와 경제발전의 관계, 계획생육의 실천 방안, 조혼금지과 만혼의 제창 등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⁴²⁾ 이후 『文匯報』의 편집진은 3월 30일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빙하여 “산아제한을 선전하는 것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저촉되는가”, “텔서스의 인구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인구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⁴³⁾ 등의 문제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의 참가자는 대부분 중국의 인구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계획생육을 통한 출생율의 감소를 통해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학자·경제학자·의학자들이 인구문제에 관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하여, 인구문제 대토론 국면이 조성되었다. 당시 中央勞動幹部學校의 교수로 있었던 陳達은 “산아제한이 부모와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인구증가 속도를 지연시킨다”⁴⁴⁾고 주장하며, 晚婚을 통한 인구억제를 주장하였다.⁴⁵⁾ 南京大學校의 陳長蘅 교수는 2%의 인구증

40) 『國務院關於職工節育·因病施行人工流產的醫藥費和休息期間工資待遇問題的通知』(1957년 10월 12일), 『中國計劃生育全書』, 中國人口出版社, 1997, 60쪽.

41) 小濱正子, 『計劃生育的開端: 1950-1960年代的上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68期, 2010.6, 137쪽.

42) 『節育是一件艱巨複雜的工作: 李德全的發言』, 『人民日報』 1957년 3월 8일 3면; 『早婚會給青年男女帶來什麼不好影響? 王寶楹的發言』, 『人民日報』 1957년 3월 14일 3면; 『廣泛宣傳遲婚和計劃生育』, 『人民日報』 1957년 3월 15일 4면; 『必須有計劃地節制生育: 鍾惠瀾的發言』, 『人民日報』 1957년 3월 17일 2면; 『計劃生育符合社會主義利益: 鄧季惺的發言』, 1957년 3월 19일; 『全慰天: 社會主義經濟規律與中國人口問題』, 『大公報』 1957년 3월 22일 2면.

43) 湯兆雲, 『1957年關於人口問題的大討論』,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9卷 第5期, 2005年 5月, 113쪽.

44) 陳達, 『節育·晚婚與新中國人口問題』, 『新建設』, 1957年 第5期.

45) 陳長蘅, 『關於我國過渡時期的人口問題』, 『文彙報』 1957년 5월 4일 3면.

가율이 공업화와 농업현대화 속도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晩婚을 통한 인구억제를 주장하였다. 南京大學의 孫本文 교수는 인구의 자연증가율과 생활물자·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8억 인구가 중국에 가장 적합한 인구 수량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⁶⁾ 이와 같은 토론을 거쳐 중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출생률을 통제해야 한다는 ‘계획생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에는 인구과잉이 있을 수 없다’는 관념을 타파하고, 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계획생육의 방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晩婚과 같은 소극적 방법을 통해 출산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임을 통한 계획생육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일시적 피임을 옹호하고, 불임수술과 같은 영구적 피임법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식인의 인구문제에 대한 고무적 발언 분위기 속에서, 1957년 6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인구학자였던 馬寅初는 全國人大一屆四次會議에서 『新人口論』을 발표하였다. 그는 의학과 위생환경의 진보 및 사망률의 저하로 중국의 인구증가율이 2.3%로 증가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인구 발전 추이를 예측하여, 자연증가율 2%로 계산하면 15년 뒤에는 인구가 8억이 될 것이고, 3%로 계산하면 15년 뒤에는 9억 3천만이 되며, 50년 뒤에는 거의 26억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이러한 예측을 통해 중국 정부가 신중하게 인구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전면적인 산아제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맬서스의 인구론은 자산계급 정부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인구론은 농민의 노동 생산율을 제고하고, 농민의 문화와 물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맬서스의 인구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馬寅初는 인구의 수적 통제와 질적 향상을 위해 세 가지를 건의하였다. 첫째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인구통계 자료를 만들어,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둘째 대중에게 산아제한을 선전하여 전통적 생육관념과 조혼의 풍습을 타파한다. 셋째, 계획생육을 실행하는 것이 인구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피임을 선전하고, 인공유산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⁴⁷⁾ 이처럼 馬寅初의 신 인구론은 현대 중국의 계획생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인구억제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57년 6월 이후 진행된 反右派鬭爭의 격랑속에서 馬寅初는 맬서스주의자로 낙인찍혀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된다. 雙百運動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정치적 비판이 거세지자, 毛澤東은 1957년 5월 중순 『事情正在起變化』라는 글을 써서, 공산당 내부에 대한

46) 孫本文, 『八億人口是我國最適宜的人口數量』, 『文彙報』 1957년 5월 11일 3면.

47) 『新人口論馬寅初的書面發言』, 『人民日報』 1957년 7월 5일 11면.

整風運動을 우파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6월 8일 중국 공산당은 反右派鬭爭에 관한 당내지시를 하달하고, 『人民日報』에 「這是爲什麼？」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 사실에서는 “공산당 整風을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소수의 우파분자가 공산당과 노동자 계급의 영도권에 도전하고 있다”⁴⁸⁾고 비판하며, 그들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자산계급 독재를 실현하려 한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10월 14일에는 李普가 『人民日報』에 「不許右派利用人口問題進行政治陰謀」라는 사실을 발표하여, 인구억제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였다.

현재 보아하니 매우 분명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인구문제·산아제한 문제를 이용하여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자산계급 사회학을 회복하려는 구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자본주의 復辟을 실현하려는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명실상부한 계급투쟁의 배태량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첨예한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의 차원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 費孝通·吳景超·陳達·李景漢 등 우파분자는 바로 이 장기 계급투쟁 가운데 양성되었다.⁴⁹⁾

이처럼 인구억제와 산아제한의 주장이 반공산당과 반사회주의의 자산계급 이데올로기로 치부되면서, 인구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던 분위기는 일순간 경색되었다. 1958년 1월 28일 毛澤東은 最高國務會議에서 “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적은 것이 좋은가? 현재는 여전히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⁵⁰⁾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산아제한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3월 23일 成都會議에 참석하여 인구증가의 비관적인 측면만을 선전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인구가 7-8억이 될 때 다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劉少奇도 1958년 5월 5일 第八屆全國代表大會第二次會議에서 인구학자들이 중국의 농업과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 속도에 대해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이는 중국의 혁명적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1958년 농업 생산 건설의 대약진은 인구학자들의 농업발전의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람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간주하여, 사람이 많아야 생산이 증가하고 저축이 증가한다고 역설하였다.⁵²⁾ 이와 같은 毛澤東을 비롯한 당 간부의 발언은 “전근대적인 인해 전술을 바탕으로 한 총력전”⁵³⁾의 발상 정도에 지나지 않는,

48) 「這是爲什麼？」, 『人民日報』 1957년 6월 8일 1면.

49) 李普, 「不許右派利用人口問題進行政治陰謀」, 『人民日報』 1957년 10월 14일 7면.

50) 中國計劃生育全書編輯部 編, 『黨和國家領導人關於人口與計劃生育的論述』, 中國人口出版社, 1997, 6쪽

51) 中國計劃生育全書編輯部 編, 앞의 책, 쪽

52) 劉少奇,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向第八屆全國代表大會第二次會議的工作報告(一九五八年 五月五日)」, 『人民日報』 1958년 5월 27일 1면.

인구=국력이라는 인식들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1958년 이후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극단적인 인력 동원이 행해지면서, 인구통제 정책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산아제한의 선전 활동도 중지된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의 변화 추이 속에서 1954년에서 1958년까지 중국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인구변화를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53-1958년 인구자연변동⁵⁴⁾

년도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율‰	합계출산율(명)	총인구(만명)
1954	37.97	13.18	24.78	6.278	60266
1955	32.60	12.28	20.32	6.261	61645
1956	31.90	11.40	20.52	5.854	62828
1957	34.03	10.80	23.23	6.405	64653
1958	29.22	11.98	17.24	6.697	65994

이처럼 1954년에서 1957년 중반까지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1957년 중반이후 인구문제가 정치적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산아제한 정책이 중단되면서, 출산율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또한 표에서 1958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농촌에서 2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경제적 파국의 결과였다. 때문에 1958년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오히려 감소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결부된 것이었다.

Ⅲ. 여성의 노동성 확보와 출산의 관리

民國時期까지 중국 여성은 國民母와 현모양처로 호명되며,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 설립이후 毛澤東은 ‘여성도 하늘의 절반을 받치고 있다(婦女頂着半邊天)’는 말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발언의 이면에는

⁵³⁾ 오쿠무라 사토시(奥村哲) 지음, 박선영 옮김,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소나무, 2000, 168쪽.

⁵⁴⁾ 姚新武·尹華, 『中國常用人口數據集』, 中國人口出版社, 1994.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숨겨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노동 주체성을 내면화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주의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또한 1950년 5월에 반포된 婚姻法은 근대적 가족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남녀의 혼인자유·일부일처·남녀의 권리평등·부녀자와 자녀의 합법적인 이익 보호 원칙을 천명하였다.⁵⁵⁾ 특히 이는 매매혼·조혼·축첩과 이혼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던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혼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모범가정의 정착에 있었다.⁵⁶⁾ 즉 중국 공산당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적 간여를 통해 젊은층의 성적 방종과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를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적 퇴폐문화를 바로잡으려 했다. 또한 거기에는 사회주의적 금욕주의를 통해 개인의 노동력을 중시하고, 남편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가정주부와 출산을 거부하는 독신여성을 ‘비정상’ 혹은 ‘비국민’으로 배제하여 여성에 대한 생산·재생산을 강요하려 했던 국가적 의도가 숨겨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대표적 성과는 여성의 법적 평등과 노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 지향점은 여성을 노동자화하여 여성의 생산력을 동원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생중국은 여성해방을 프롤레타리아해방과 일치시키고, 노동을 통해 여성의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지에 工農婦女識字班·야학·半日校 등을 조직하고, 각 학교의 교과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工農婦女常識課本』을 보급하였다. 이 교과서의 내용은 ① 계급투쟁의 지식과 부녀해방 지식, ②혁명 인생관 및 新婦女 수양, ③ 새로운 노동 관념과 노동 태도, ④ 부녀생산 지식, ⑤ 부녀 생활 지식⁵⁷⁾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교과서의 제 1과에는 ‘노동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노래가 실렸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농민은 적극적으로 생산한다.
노동자와 농민 두 형제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매우 공이 많다.
과거 우리들은 소나 말처럼 종속적인 존재였으나, 현재는 주인공으로 바뀌었다.
여성 노동자와 농업 부녀가 함께 노동하니, 남녀평등이 가장 영광스럽다.⁵⁸⁾

55)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 『現代婦女』 1950년 7期.

56) 김미란, 「중국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의 안과 밖: 관철방식과 냉전하 문화적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99-132쪽.

57) 『工農婦女常識課本(前言)』, 『新中國婦女』 創刊號, 1949년 7월, 48쪽.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여성에게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 계급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종래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이룩하라고 호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각급 생산단위에 참여하는 여성 노동자의 생산경쟁(生産競賽)과 여성 농민의 농업경진대회(銀華賽)를 열어 여성의 생산을 부추기고, 그 우승자에게 ‘생산모범’·‘농업노동 영웅’이라는 영예를 부여하였다. 1950년대 여성 노동영웅은 ‘무쇠처녀(鐵姑娘)’로 불리며, 사회주의 여성 국민의 모범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와 사회진출은 가정이라는 영역을 고수하려했던 남성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 경우 국가는 “부녀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는 국가의 주인이므로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혹은 “그녀는 공장업무로 몹시 힘들기 때문에 보호해주어야 한다”⁵⁹⁾는 권고를 통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고 인정해 주었다. 즉 노동을 통해 여성은 여성에게 강요되어온 전통적 성별 역할과 젠더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국민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일하는 노동 여성 이외의 가정주부, 혹은 여성의 재생산의 책임을 방기한 독신주의 여성에 대한 비난은 국가에 의해 호명된 사회주의 여성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의 가사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주부는 남편의 노동에 기생하는 기생충 혹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부르주아적 퇴폐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때문에 1949년 8월에 설립된 上海家庭婦女聯合會는 가정주부를 종속적 지위에서 해방시켜 사회노동에 참여시키고, 여성의 기층 사회조직을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여성의 일상적 시공간을 공적영역으로 재편하였다. 특히 가정주부는 기층 여성조직에 편입되어 여성 노동자의 특수 요구인 건강·위생·육아·식자반·직업훈련반 운영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간과된 여성 복지와 후생의 협조자 역할을 담당하였다.⁶⁰⁾ 또한 독신을 고집하는 여성도 자아비판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개조해야 했다. 方黛라는 한 여성은 어머니가 출산과 축첩으로 인해 육체적·심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독신을 결심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성공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성하며, 긴강한 육체를 무시한 관념론자가 아니라 2세의 재생산을 통해 진정한 유물론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⁶¹⁾ 당시 아들은 ‘미래의 노동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을 통

58) 『第一課勞動創造世界』, 『新中國婦女』 創刊號, 1949년 7월, 49쪽.

59) 女工幹部學習班通訊組, 『解決女工切身問題推動與工作的幾個實例』, 『現代婦女』 1951년 5기.

60) Wang Zheng, “‘State Feminism’? Gender and Socialist State Formation in Maoist China”, *Feminist Studies*, vol 31, no 3 (Fall 2005), pp.519-551.

61) 方黛, 『我怎樣改變了‘獨身主義’的觀點』, 『현대부녀』 1951년 3기.

한 지속적 노동력의 확보가 중시되고 여성의 다산이 장려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출산이라는 재생산 노동과 임금노동이 국가적으로 중시되면서, 가정주부와 독신여성은 비국민으로 배제되거나 부르주아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특수문제로서, 여전히 여성의 노동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때문에 1949년에서 1953년 중반까지 중국 정부가 인구증식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주로 신식 조산술과 탁아사업을 통해 여성의 생식문제와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식 產婆를 助產士로 개조하여 출산을 국가적 의료·위생 시스템 하에 통제하려 했던 노력은 1928년 南京政府 衛生部가 『助產士條例』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⁶²⁾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후 1950년 全國衛生行政會議에서는 모자보건위생의 중심 임무를 구식 산파의 개조와 신식 조산술의 보급으로 확정하고, 산욕열과 파상풍 예방을 중심으로 위생 지도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⁶³⁾ 또한 衛生部 婦幼衛生司가 신식 조산술과 모자보건위생의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中華全國民主婦女聯合會(이하 婦聯으로 약칭)가 선전과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중 시스템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자보건위생과 신식 조산술의 보급은 아동과 산모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외에도 여성 노동자의 생산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목적이 투영되어 있었다. 上海市總工會女工部에서 발표한 『공장에 신식 조산술을 보급하면, 여공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工廠裏推行新法接生, 可以提高女工生產效率)』라는 글에서,

上海國棉七廠은 1950년 11월 모자보건위생 업무를 중점적으로 펼쳐, 1년 동안 현저한 성과를 올렸다. 작년(1951년-인용자) 8월말 이 공장의 여공 중 신식 조산술로 출산을 한 자가 이미 92%에 달했고, 產前 검진을 받은 자가 100%에 달했다. 이 숫자로 보자면 7공장은 기본적으로 구식 조산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장내 신식 조산을 실시한 이후 생산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여공의 출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7공장에 의무실에 產科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 여공이 紡健醫院에 가서 한 번 검사를 하게 되면 4시간을 소비하고, 또 차비도 낭비해야 했다. …… 현재 공장 안에 완비된 의무실이 있고, 產科가 있으니 여공들은 모두 產前 검사와 신식 조산을 원한다. 현재 산전 검사를 한 번 받으면, 단지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니 예전에 紡健醫院에 가는 것보다 3시간이 절약된다. 한 임신부가 출산전에 5차례의 검진을 받는다면, 한 여공이 한 아이를 낳는데 과거에 비해서 15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7공장에서 작년 8개월 동안 모두 171명의 아이를 낳

⁶²⁾ 신규환, 『助產士의 制度化와 近代의 生育管理: 1930年代 北平市政府의 衛生行政과 出產統制』, 『中國史研究』 42, 2006.6, 199-232쪽.

⁶³⁾ Lim, Kahti, “Obstertrics and Gynecology in Past Ten Years”, Chinese Medical Journal, Vol. 9 No. 5 (Nov.1959); p.375.

았으니, 절약된 생산시간은 곧 2,565시간이고, 이를 합하면 256일 하고도 반나절의 노동일 (노동일은 매일 한사람의 노동시간으로 10시간을 한 勞動日로 계산함-인용자)이다. 搖紉(실을 돌려 실타래에 감는 것-인용자) 여공을 예로 들면, 만약 한 노동일에 80개의 실타래를 만든다면, 8개월의 생산시간을 절약한 결과이고, 20,520개의 실타래를 증산할 수 있다.⁶⁴⁾

라고 하여, 공장내의 산부인과 진료실의 설치와 이를 통한 產前 검사가 직접적으로 공장의 생산 시간 절감과 생산량 증가로 이어짐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衛生部에서는 女工이 많은 공장과 작업장의 의무실에 產科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전 검사와 신식 분만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하는 신체로서의 여성의 몸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국가 복지의 이미지가 임신한 여성의 신체에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衛生部는 임신한 공장 여성 노동자가 야근을 할 경우 밤에 계란 2개를 지급하여 영양을 보충하도록 한편, 임산부 식당과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1952년에는 소련에서 도입한 無痛分娩法을 보급하여, 출산을 고통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⁶⁵⁾

婦聯 휘하의 각 지역 婦聯에서는 兒童福利部를 설치하여 1949년 중반부터 탁아와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서는 공장탁아소·기관 간부 탁아소·기관 학교 수유실 및 居民委 차원의 자발적 託兒站·託兒組 등을 설립하고, 농촌에서는 농번기의 여성들을 돕기 위한 農忙託兒所 등이 설립되었다.⁶⁶⁾ 사실상 탁아소가 설립되기 이전의 女工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아이를 집에 둔 채 출근하거나 어린아이를 공장에 데리고 출근하여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女工들은 “임신한 이후로 아이를 낳으면 업무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낳자마자 죽으면 좋겠다”⁶⁷⁾고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노동과 출산을 병행하는 것이 당시 여성들에게 얼마나 고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天津市 婦聯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탁아소 운영을 시도함으로써 女工의 육아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들은 각종 유형의 탁아실 건립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후 기타 각 공장의 아이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⁶⁴⁾ 上海市總工會女工部, 「工廠裏推行新法接生, 可以提高女工生產效率」, 『新中國婦女』 1952년 2월호, 27쪽.

⁶⁵⁾ 于文, 「生育與國家: 1950年代中國婦嬰優生運動中的政治·科學與性別」, 復旦大學歷史學系碩士學位論文, 2008, 27-32쪽.

⁶⁶⁾ 김민서, 「中華人民共和國 건설기 兒童福利事業 研究: 1949~1958년 上海市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8-28쪽.

⁶⁷⁾ 天津市民主婦聯, 「採用多種多樣方式爲女工解決孩子問題」, 『新中國婦女』 1952년 8월호, 10쪽.

託兒室의 건립 후 여공의 생산 효율이 현격히 제고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예를들어 華南三廠 여공 馬尹氏·馬秀之는 託兒室 설립 전에는 생산량이 14點 5다발(20 타래 실)였으나, 託兒室 설립 이후에는 17點 5다발(20 타래 실)로 증가하였다. 또한 再生製袋廠 여공 郭月華는 아이문제로 인해 5개월 동안 실업 상태였는데, 현재는 다시 공장에 다닌다. 그녀는 기뻐서 “공산당은 정말로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해준다. 나의 아이문제를 해결해 주어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과거 國民黨시기에 여공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라고 말했다.⁶⁸⁾

이처럼 中華人民共和國 건설 초기 중국 정부는 인구증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이탈시켜 생산노동에 참여시키고, 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탁아소를 설립하여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목표를 알리 없는 女工들은 이를 共產黨의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며, 國民黨과의 차별화를 통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출산과 생산노동의 이중 동원 속에서, 자신의 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해 준 은사의 주체가 곧 억압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1953년 중반 이후 산아제한과 인구억제의 정책이 실시되면서, 위생부에서는 각 공장의 여공의 출산율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임지식의 선전을 지시하였다. 사실상 1953년 전까지 엄격한 피임과 인공유산의 제한 때문에 여공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잦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婦科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았다. 1953년에서 1957년 7월까지의 上海國綿二廠의 女工의 출산 상황을 간략히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1953-1957년 7월 上海國綿二廠 女工의 출산 상황⁶⁹⁾

년도	여공수(명)	여공의 비율(%)	출산수(명)
1953	3,022	63.08	658
1954	2,946	61.58	774
1955	2,835	60.27	619
1956	2,896	62.45	616
1957(7월까지)	3,023		382

이처럼 1953년에서 1957년 5월까지, 上海國綿二廠의 女工은 3,049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이는 당시 전 공장의 여공 총수와 유사한 숫자였다. 1956년의 출산율은 1946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었다. 1957년 3,023명의 여공 가운데 1명의 아이를

68) 同上注.

69) 樓葆華, 『從住宅和工資問題看節育的必要』, 『人民日報』 1957년 10월 9일 4면.

출산한 여성은 266명, 2명은 302명, 3명은 350명, 4명은 326명, 5명은 272명, 6명 이상은 845명이었다. 대부분의 여공이 3년 안에 두 아이를 출산하는 등 출산 간격 또한 매우 조밀하였다. 1957년 衛生部の 조사에 따르면 上海國綿十七廠의 609명의 임신한 경험에 있는 여공 가운데, 53%가 2년에 2차례 임신했으며, 22%가 3년에 2차례 임신을 했다.⁷⁰⁾ 임신부의 보호를 위해 공장에서 별도의 임신부 식당과 임신부 휴게실을 운영하였지만, 대부분의 여공이 잦은 임신과 노동의 병행으로 인하여 빈혈과 신경쇠약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신부 가운데 고혈압과 하되 정맥류의 질병에 걸린 이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女工은 민간처방으로 피임과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輕粉(Calomelas) · 奎寧(Quinine) · 痧藥水(콜레라와 유사한 급성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⁷¹⁾ 이러한 여공의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6년부터 적지 않은 방직공장에서는 사내 방송 · 사진 · 슬라이드 · 전람회 형식을 통해 여공에게 피임을 선전하거나, 衛生室의 婦女保健員을 통해 개별 피임 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적지 않은 女工들이 결혼과 출산을 ‘비밀스런’ 사적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개별지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피임교육이 女工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남성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피임도구의 가격이 높아서, 값싸고 간편한 피임을 원하는 여성도 적지 않았다.⁷²⁾

그러나 피임교육과 선전이 결코 쉽게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1956년 12월 上海市婦聯福利部는 「피임 선전에 관한 업무 보고(關於避孕宣傳工作的報告)」를 통해 上海市의 피임 선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956년 上海市 婦聯은 婦女基本知識講座 · 婦女代表者大會 월례회 · 전람회 등의 피임 선전을 개최었는데, 제 2분기까지 전 상해시의 15개 구에서 45차례의 婦女知識講座를 열었으며, 청중이 19,426명에 달했다. 虹口區에서는 광범위한 피임지식의 선전이후 婦女衛生所의 피임진료과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5월에 20명에서 8월에는 91명으로 증가하였다.⁷³⁾ 일부 여성들은 이에 대해 “共產黨, 毛主席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부녀자가 어린

⁷⁰⁾ 高潔, 「生育過多過密影響母子健康: 上海紡織女工迫切要求避孕」, 『人民日報』 1957년 3월 4일 4면.

⁷¹⁾ 同上注.

⁷²⁾ 당시 국산 남성용 콘돔의 가격은 한 개당 一角二分이었으며, 국산 子宮帽(페서리) 가격은 한 개당 一元五角이었다. 당시 일반 職工의 월급이 5~8元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콘돔은 한 달 월급의 1/40에서 1/60이었으나 페서리는 한 달 월급의 1/3에서 1/5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이었다. 1957년 4월 商業部和 衛生部에서는 대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콘돔은 五分으로 子宮帽(페서리)는 一元으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商業部衛生部等單位發出聯合指示: 擴大供應避孕藥具並降低價格」, 『人民日報』 1957년 3월 29일 4면).

⁷³⁾ 上海市檔案館 B3-2-75-27 關於避孕宣傳工作的報告(1956년 12월 13일).

아이를 기르는 것조차도 보살피 준다”⁷⁴⁾고 국가의 은사에 감사를 표하였다. 하지만 반면에 피임 선전은 각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여성들의 피임 도구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다.

(1) 사상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아, 어떤 선전원은 단지 피임 방법만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산아제한의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일부 잘못된 생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人民政府가 쌀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서 남녀관계를 간섭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비록 피임의 의의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封建思想에 대한 비판을 흘리며,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을 음란하게 여기고 품행이 올바른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婦女所에 와서 피임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자궁의) 사이즈를 재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지 피임 방법만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다 보니 일부 생겨날 수 있는 생각과 우려에 대해서는 지도하지 않아, 일부 여성은 콘돔과 페서리가 복부에 끼면 빼낼 수 없어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페서리를 착용하면 소변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하기도 하였다.

(2) 선전 이후 구체적 지도 업무가 부족하여 선전 효과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부 피임을 절실히 요구하던 부녀는 선전을 들은 이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멋대로 중의약을 복용하였다. 예를 들어 虹口區 虬三 婦代會의 한 부녀는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번에 5첩의 중의약을 먹어 두통·복통·요통·월경 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정확한 피임도구의 사용법을 몰라 페서리를 잘 못 삽입하거나, 콘돔의 덧씌우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한 보관을 잘 못해서 자궁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백대하가 많아지기도 하였다. 도구도 쉽게 파손되어 심지어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소문이 떠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피임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돈들이고 고생스럽게 피임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돈을 그대로 두었다가 맛있는 것이나 사먹자”라는 반응이 생겨나기도 했다.

(3) 남자에 대한 선전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부부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남자에 대한 선전이 비교적 적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선전을 듣기는 하지만 귀찮거나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쾌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아내가 피임 지식을 알게 되면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될까봐 아내와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예를 들어 普陀區 瞿家廊의 한 부녀는 선전을 들은 후 콘돔을 2개 사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그녀의 뺨을 두 대나 때리며 낯짝도 두껍다고 욕을 했다. 각 區에 모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⁷⁵⁾

이처럼 上海市 婦聯은 피임에 대한 각종 오해를 산아제한에 대한 의의와 봉건사상에 대한 지도의 부족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피임 선전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즉 일부 사람들은 1953년 중반까지 여성의 출산을 장려

⁷⁴⁾ 同上注

⁷⁵⁾ 同上注.

하며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에게 출산보조비와 곡식까지 지급해 주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식을 많이 낳지 말라고 선전하자 국가가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의 성문제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性문제는 여성의 생식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피임 교육에 대해 음란하다고 생각하거나 외설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피임도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적지 않아서, 일부 여성은 페서리를 구입하기 위해 피임진료소에서 자궁 입구의 크기를 재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임 도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임 효과 자체를 의문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임 선전 자체가 여성 위주로 진행되어, 남성들의 오해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여성이 몰래 피임을 하거나, 피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피임도구와 약품의 효과는 어떠했을까? 1950년대 衛生部에서 널리 보급한 피임도구와 약품에는 중의약 피임처방, 페서리, 콘돔, 연고형 좌약식 피임약 등이 있었다. 1956년 上海市 婦聯의 피임 선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이들 약품과 도구의 단점과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피임도구와 약물에 대한 의견은 신문과 衛生局에서 중의학 피임 처방을 공개한 후, 중의약이 경제적이고 간편하여 상당히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부녀들이 2첩을 복용하고 더 이상 중의약을 구입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중단하였다. 또한 복용법도 통일되지 않아, 어떤 곳에서는 분만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월경이 끝난 후 3개월 동안 복용하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매월 3첩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 무엇을 따라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한 후에도 임신을 했으며, 어떤 사람은 먹은 후 예를 들어 월경이 연장되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요통·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때문에 대부분이 중의약 처방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위생부문에 믿을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중의약을 연구하여 공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페서리는 신뢰할 만하나 부녀들이 사이즈를 재고 검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먼저 자궁에 삽입한 후 기다렸다 성교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사용 후 8-12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빼낼 수 있고, 몸에 착용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며, 게다가 가격이 비싸고 질량이 나빠서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고무가 너무 딱딱하여, 사용할 때 불편하고, 종종 쉽게 염증을 일으키거나 백태하가 많아진다. 어떤 때는 페서리를 사서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파손된 경우도 있거나, 페서리에 바르는 유연제도 늘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 職工 가정은 방이 비좁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방에 침대를 놓고 자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 때문에 모두 불편해서 사용을 원치 않으며, 사용하더라도 지속할 수가 없다. 만약 부부가 협력한다면 현재 콘돔이 비교적 간편하고 신뢰할 만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콘돔은 때때로 너무 작거나 너무 짧고, 두께가 고르지 않아 쉽게 손상되거나 정액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좌약

식 연고형 피임약은 늘 구매할 수가 없으며, 사용할 때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있다. 그러므로 질량이 시급히 제고되고, 공급도 개선되기를 바란다.⁷⁶⁾

이처럼 당시 중국 국내에서 제조된 피임도구의 질량은 매우 형편없어서, 고무의 착용감이 좋지 않거나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여성의 생식기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자궁내 분비물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피임약품의 경우에도 중의약 처방은 복용법이 일치하지 않거나 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좌약식 피임연고의 경우 생식기에 바를 경우 자궁이 건조해지거나 따끔거리는 자극이 느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임약품과 도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55년 7월 上海市 衛生局的 보고에 따르면, 10개의 병원에 피임진료과를 열고, 각 區의 婦女保健所에 節育指導所를 설치했으나 피임 도구와 약품의 생산과 공급 부족으로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했다. 때문에 진료소의 진료 시간을 제한하거나 환자수를 제한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으며, 피임약품과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⁷⁷⁾ 때문에 1955년 7월부터 邵力子和 같은 당 간부는 불임수술 제한 조치를 완화해 피임도구와 약품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⁸⁾ 위생부도 1956년 3월 30일과 1957년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인공유산 및 불임수술에 관한 통지(關於人工流產及節育手術的通知)』를 발표하고, 불임수술의 경우는 부부쌍방이 원하는 경우 의사의 동의를 거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다. 인공유산도 임신 3개월 이내에 여성이 임신의 지속을 원치 않을 경우 의사의 승인을 거쳐 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피임약품과 도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기 위해 낙태와 불임수술을 장려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피임도구와 약품의 생산과 공급 부족의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감수해야 했으며, 그 가운데도 피임의 주요 실천자였던 여성이 피해를 자신의 신체에 불임수술과 인공유산을 행함으로써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76) 同上注.

77) 上海市檔案館 B242-1-836-66, 上海市人民政府衛生局關於適當節制生育問題的報告(1955).

78) 『在第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上的提案(1955년 7월)』, 『邵力子文集』下策, 北京: 中華書局, 1985, 1088-1090쪽.

IV. 맺음말

1949년부터 1953년 중반까지 중국은 전시 물자와 인력 동원이라는 사회주의 총동원 체제하에서 인구증식을 기본적 정책기조로 유지하며 출산을 장려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 유산과 불임수술이 엄격히 통제되고, 피임서적이 출판 금지되었으며, 피임도구와 약품의 수입도 전면적으로 중지되었다. 그러나 1953년 진행된 인구조사 결과 급격한 인구증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실업과 주택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피임과 산아제한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였다. 1953년 8월 피임도구의 판매와 사용을 허가한 것을 필두로, 불임수술과 인공 유산의 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1955년 3월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인구억제 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면서, 衛生部에서 대중적인 피임선전과 피임방법 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하여 피임선전원의 교육, 피임서적의 발간, 전람회 개최, 피임강연 등이 도시와 농촌에서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에 피임진료과가 개설되었다. 피임 도구와 약품에 대한 개발 및 생산도 활발해져 중의약 피임처방을 전국적으로 하달하는 한편, 국산용 콘돔과 페서리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57년 6월 馬寅初의 「新人口論」의 발표를 계기로 反右派鬭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구억제와 관련된 언설은 모두 맬서스주의·反공산당·反사회주의로 정치적 탄압을 받게되었다. 이후 인구정책의 기조가 다시 변화하면서, 1958년까지 산아제한의 선전이 일부 도시와 농촌에서 지속되기는 하지만 1959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정지된다. 이처럼 중국의 인구문제는 공산당의 정치적 투쟁과 결부되어, 인구증식과 인구억제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었다. 인구증식의 정책기조에는 인구=노동력=생산력=경제발전이라는 유물주의적 경제관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인구억제의 정책기조에는 인구=소비=저축절감=경제침체라는 맬서스주의적 경제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인구억제를 주장하는 당간부와 지식인들은 인구억제가 맬서스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들은 인구억제가 과학적 피임법에 근거한 것이며, 노동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무산계급의 생활개선에 유익한 것임을 이론적으로 설득시켜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毛澤東식의 사회주의 우월론 앞에서 인구억제의 주장은 지식인과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었다.

中華人民共和國는 ‘여성도 하늘의 절반을 받치고 있다’는 구호아래 광범위한 여성을 정치·경제·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불러냈다. 이 속에서 여성은 노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받고, 국가의 권위를 빌어 기존의 젠더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게되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조산술의 보급, 무통분만법의 실시,

임산부에 대한 영양 공급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성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려 하였다. 또한 탁아소의 설치를 통해 여성의 양육의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했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의 신체는 재생산 노동과 임금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국가의 경제 발전이란 미명하에 노동력(인구)을 생산하는 신체와 상품을 생산하는 신체로 기능해야 했다. 1953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피임 선전과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피임 의료가 보급되면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고충도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즉 여성은 재생산 노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지만, 피임 도구와 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질도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에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통제를 통해 획득한 재생산 노동으로 부터의 일정한 해방이란, 은사의 주체가 억압의 주체란 면에서 진정한 생리적 해방의 획득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978년 이후 ‘한 자녀 낳기 정책’이 실시되고 현재까지 그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생육권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국굴기 시대의 앞날

—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임 상 범(성신여대)

目 次

1. 표현
2. 재구성
3. 읽기

1. 표현

1)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부시정부의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의 실패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이 결합된 결과, ‘중국모델’은 학계의 가장 뜨거운 주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외국학자뿐만 아니라 중국학자들도 생각(이론)이 급변하는 현실(사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3년 이상 가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자체 계획 하에 무수히 많은 일을 벌이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중국은 지금 대격변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도 애를 먹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니 외국학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조영남 2009) 더군다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앞으로 전개되어갈 중국의 상황을 관측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아리기 2009) 비록 필자도 이러한 중국학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본고에서 나름대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할 하나의 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조영남, 전성홍, 백승욱, 이희옥, 이욱연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노력하는 중국학 연구자들이다. 이희옥 같이 비판적 태도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지배적 중국담론이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을 옹호하면서 친사회주의적 중국연구자로 변신했다고 지적하며, 신자유주의에 노출된 민중생활의 위기나 개발독재적 유혹에 빠져

있는 중국의 지배전략과 일반민주주의의 지체에 대한 비판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희옥 2004) 백승욱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노동, 동아시아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해서 중국이 쏟아내고 있는 문제와 쟁점을 구체화하고, 그 속에서 더 넓은 지역과 주제를 포괄하는 함의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는 중국이 점점 더 신자유주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와 공유할 문제의식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함께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을 공동으로 전유하고 그 한계점을 함께 넘어서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백승욱 2008)

그들을 포함한 한국의 중국학 연구자들은 “급변하는 중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이때 “기존이론이나 개념을 가지고 선부르게 중국정치를 재단하기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정치의 특정한 유형과 특징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현재의 중국정치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특수성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나아가 중국정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한다.(조영남 2009) 이희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학문간 연구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한국적 중국담론을 생산하는 일을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이때 학문간 연구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분과학문을 선택하고 있는가보다 어떤 방법론과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인문학적 사색과 사회과학적 방법을 결합해 중국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싶어 한다.(이희옥 2004)

2) 나는 왜 그것을 쓰고 싶은가?

고 민두기 교수는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야 역사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은 오늘날의 중국을 연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역사의 첫 번째 작업인 ‘기억하기’란 ‘먼지를 가라앉히기’이며, 역사의 두 번째 작업인 ‘상기하기’란 ‘먼지를 일으키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억’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무엇을 ‘상기’시킬지도 선택해야 한다.

최근 유장근은 중국근현대사 연구가 국민국가 건설에 집중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저자 자신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부딪친 보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개별적인 인간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가 해방되고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서의 인간은 간데없고 국가의 수단으로만 남아있는 듯하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이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자기반성 과정에서 이른바 변두리 사회나 주변부 계층은 정말로 능동적인 변화 없이 외부의 충격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유장근

2004)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의식은 백영서에게서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일상생활의 욕구에 기반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중요하며, 새로운 문명은 지식인의 담론보다는 일상생활의 변화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게 된다.(백영서 1999) 필자 또한 최근 ‘삶’의 현실성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연구에서 ‘삶’에 대해 강조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구도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중국근현대사학자로서의 ‘삶’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포스트모던 역사학이 소개되면서부터 다양한 역사상과 방법론이 각축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어떤 역사도 주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달릭 2005) 필자가 자신의 연구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예기』에서 “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이라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와 교육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교과목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교과목의 위치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역사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학의 교육과정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교육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 과정으로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오병수 2005) 그리고 이것은 교육자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교수인 역사연구자가 ‘무엇을, 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자, 필자는 작년과 똑같이 전공과 교양 수업을 시작했다. 이때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우칸춘 시위, 보시라이 사건에서 출발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전자가 ‘帝國’ 중국의 굴기를 상징한다면, 후자는 중국이 어디로 가려하는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고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각 시대를 다루는 수업마다 마지막 생각하기는 이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발표와 직결된다.

3) 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브로텔은 그의 대작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학은 사건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단기적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소란을 떠는 행위자들만이 가장 진정한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에는 그들 말고 침묵을 지키는 행위자들

도 있다.” “半不動의 역사, 그것은 계속되는 반복들과 끊임없이 다시 시작되는 주기들로 만들어진, 서서히 흘러가고 서서히 변형되는 역사이다. 이 반부동의 역사 위에 사회사, 집단 형성의 역사가 있다. 마지막은 전통적인 역사학의 역사, 인간 일반 차원의 역사보다 개인의 역사이다. 그것은 짧고 급격하고 힘찬 진동을 띤 역사이다. 반향을 일으키는 이 사건들은 순간들에 불과하며, 그 거대한 운명의 표상물에 불과하고 그 거대한 운명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거대한 역사학이 다시 부활되기를!” 그것을 위해서는, “역사학은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다양한 사회과학들이 인간 생활이라는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이룩해낸 모든 발견들을 수용해야만 한다.”(브로텔, 1990) 하지만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거대한 역사’도 ‘사회사’나 ‘집단 형성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사건사’도 없다.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도 오리무중이다.

필자가 하려고 하는 역사 연구는 사건이 벌어진 구조 속에서 참여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제시하는 ‘열린 결말’이며, 이것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임상범 2012.5.)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각에 입각해서 사건들을 읽어내고,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해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의 역사 연구에서는 우선 사람들의 삶이라는 일상성과 사건이라는 우연성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변화하는 공간에서 전개되었던 일상생활과 그 속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때 한 주체가 다른 주체들을 진리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흡수하거나 배척하려 하면, 그에 저항하고 대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의 전략·전술·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저항에 관심을 기울인다.(임상범 2012.3.)

2. 재구성

오늘날의 중국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것과도 같다.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학 연구자들은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라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여 검토한 뒤, 사례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동반한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의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의 지속, 민생문제의 해결, 제도건설의 효과 면에 있어서 어떤 집권능력을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전성홍 2010, 조영남 2009) 이렇게 어디로 귀결될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미래적 계기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연구자는 중국의 과도기적 양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특징적 양상을 도출시키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이옥연 2009)

필자는 현재 우국에 대한 접근을 사회과학적 틀이나 브로텔이 주장하는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사건과 인물이라는 표면의 시끄러운 일들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현재사는 무엇을 기억할지, 그리고 무엇을 상기시킬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사건과 인물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위해 차용될 것이다. 일단 본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2장 사건 : 왕리권과 우칸춘

3장 중국모델 : 광둥의 왕양과 청두의 보시라이

4장 논쟁 : 『오유지향』과 『염황춘추』

3. 읽기

1) 방법

본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완료가 된 것이라도 당분간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될 자료들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다. 공식문건, 각자의 욕망이 날것으로 담겨있는 텍스트들,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물론 학술적 검토를 거친 연구들도 이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자료에서 읽고자 하는 것은 주로 사건 관련자들의 욕망과 의도이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자신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들인 것이다.

2) 내용

2장 사건 : 왕리쥔과 우칸쑤

왕리쥔

쉐진보의 딸

1) 왕리쥔(王立軍) 사건¹⁾

왕리쥔(1959- , 몽고족)은 1976년부터 78년까지 내몽고자치구의天池 임업장에서 지식 청년으로 지냈고, 이후 경찰에 투신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부시장 겸 공안국 국장을 역임했다. 2008년 6월 보시라이를 따라 충칭시로 와서 공안국 부국장을 거쳐 국장이 되었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충칭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일찍이 동북지역에서 공안으로 활동하면서 몸에 20여군데의 상처를 입고 ‘打黑局長’이라는 호칭을 얻었는데, 흑사회에서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문도 있다. 그는 드라마 『철혈경혼(鐵血警魂)』(1999)에서 위엄과 정의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는 충칭으로 부임한 뒤, ‘打黑英雄’으로 불리면서 많은 치적을 자랑했다.²⁾

그런 그가 2012년 2월 8일 돌연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휴직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왕리쥔 부시장이 청두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14일에 이르러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宝)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년간 충칭시는 많은 노력 끝에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지만, 현 충칭 市委와 시정부는 심사숙고해서 왕리쥔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1) 왕리쥔과 사건의 전모는 다음을 참고. 『百度百科:王立軍』 <http://baike.baidu.com/view/689642.htm>

2) 첫째, 종합적인 치안 대책의 확립을 통해 ‘충칭의 평화’를 이룩했다. 둘째, 무기 밀매 소탕. 셋째, 미해결 사건과 범인의 처리. 넷째, 시내에 3000개의 陽光警務平台 설치. 다섯째, 강패 퇴치. 여섯째, 교통경찰의 개혁. 일곱째, 문화 살롱 설치. 여덟째, 경찰 구호 기금 설치. 아홉째, ‘학교경찰’ 설치.

그리고 다음 날 중공중앙은 왕리쥔을 해임했다.

이후 왕리쥔 사건을 둘러싼 소문이 전세계적으로 난무하기 시작했다. 처음 등장한 사람은 2011년 11월 충칭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영국인 사업가 네일 헤이우드였고, 곧 충칭시 당서기이자 차기 상무위원으로 유력했던 보시라이(薄熙來) 가족이었다.³⁾ 왕리쥔은 공안국장으로 재직했던 1월 28일 보 전 서기에게 “마피아 소탕을 위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당신 가족이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왕은 보 전 서기의 아내이자 유명 변호사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지인인 마피아 관계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보 전 서기는 2월1일 충칭시 최고지도기관인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왕 전 국장의 면직을 결정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 사건을 중대 사안이라 판단하고 2월 9일 당 중앙의 최고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문 조사팀을 구성했고, 보 전 서기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⁴⁾

이후 인터넷에는 『왕리쥔의 자술서(立軍自白：爆大量惊人内幕)』라는 문건이 널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 보시라이와 같은 ‘유망주(大气候)’를 업고 생사와 영욕을 함께 하리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보시라이 집단은 후진타오는 미이라 같고, 원자바오는 백치 같으며, 나머지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웃으면서, 반면 보시라이는 180의 키에, 위풍당당하며, 청산유수에 영어도 뛰어나니 한 나라의 지존이 될 만하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언론과 지식인들을 매수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전인대 대표들을 한편으로 삼아 보시라이를 부총리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충칭에서 다시 한 번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唱紅打黑’을 시작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허귀창(賀國強)과 왕양(汪洋)을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인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⁵⁾

이렇게 중국의 각종 인터넷 매체는 왕리쥔 사건으로 소란스러웠는데, 과거와 달리 수많은 소식이 자유롭게 전파되었다. 이제 정치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민중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이것을 중국 정치의 진보로 읽을 수 있을까?

3) 우칸촌(烏坎村) 사건

“이것은 승리의 시작이다.” 광둥성 루핑시 우칸촌 농민들의 대표 린주완(林祖鑾)은

3) 『보시라이 사건, 英 사업가 사망이 발단?』 『연합뉴스』 2012.3.26.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326211310117&cateid=1046&RIGHT_COMM=R7

4) 『보시라이 해임, 부인 마피아 연루서 촉발』 『세계일보』 2012.3.23.

5) 『王立軍自白：爆大量惊人内幕(轉)』 <http://www.jue9.com/thread-509-1-1.html>

2011년 12월 21일 오후 주민들 앞에서 석달간의 투쟁이 열매를 맺었다고 선언했다. 주밍궈(朱明國) 광둥성 부서기는 체포된 마을 대표 3명을 석방하고 구금 중 숨진 마을 대표의 주검을 가족한테 인도하고 사인을 재조사하기로 했으며, 특히 촌민들이 직접 민주선거로 뽑은 시위 지도부를 합법적 촌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양보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협상 결과를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시위 중단을 결정하고 공안의 진입을 막으려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도 치웠다. 우칸촌 농민들은 마을 당 간부들이 주민들의 집단소유로 돼 있는 마을 토지를 부동산회사에 몰래 매각하고, 보상금도 주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데 분노해 지난 9월부터 시위를 벌여왔다. 이달 초 공안에 붙잡혀간 마을 대표가 의문사하자, 분노한 주민들은 지난 12일 마을에서 당·정부·공안 관계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열흘 동안 마을 대표들이 통치하는 ‘해방구’를 이뤘다. 주민들은 시위 기간 내내 강력한 조직력과 단결력을 보였고, 인터넷과 국외 언론을 이용해 상황을 외부에 전달하며 중국 농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는 군중이 아님을 선언했다.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이번 사태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쌓인 모순을 무시한 결과”라고 인정했다.⁶⁾

우칸촌은 과거 모범 지역이었다. 이곳은 ‘전국 문명촌’으로 선정되었고, 촌 당지부는 ‘선진기층 당조직’으로 평가받았으며, 촌 당지부서기 쉘창(薛昌)은 44년간 기층공작을 수행하면서 광둥성 당대표이자 전국 노동모범으로 선발되었다.⁷⁾ 그러나 이제 중국 사회운동가들은 우칸촌을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기원으로 주목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83년생인 장례홍(庄烈宏)은 2009년 봄에 인터넷에서 우칸촌 열혈청년단이라는 카페(QQ群)를 방문하게 되었다. 카페지기는 자칭 애국자 1호였다. 애국자 1호는 실명을 사용했다가 촌간부의 공격을 받고 익명으로 돌아섰지만, 애국자 5호 장례홍은 동네에 일가친척이 넘쳐났고 부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고구마서리라던가 수영하며 놀던 옛 추억을 함께 나눴고, 현재 땅도 없고 고구마 심는 사람도 적으며 양돈장의 폐수와 어선 기름으로 오염된 해변가에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마을의 토지, 재정, 간부 문제를 성토했다.

2009년 6월 21일 카페에서는 청원운동을 조직했고, 100여명의 동조자가 생겼다. 그렇지만 막상 모인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했고, 준비한 표어조차 보이지 못하고 종이쥘거리기에 서명을 했다. 이후 2011년 9월 21일까지 카페에서는 모두 십여 차례 청원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80后’와 ‘90后’들은 주로 외지로 일하러 나갔고, 부자들은 회피하거나 무

6) 『중국 ‘우칸촌 해방구’ 승리했다』 『한겨레』 2011.12.22. ; 『廣東省委副書記：烏坎事件挑頭者如繼續對抗必當追究』 『汕尾党政信息网』 2011.12.20., http://news.ifeng.com/mainland/detail_2011_12/20/1453989_0.shtml

7) 賀燕, 「打造全國文明村的領路人——記陸丰市東海鎮烏坎村黨支部書記薛昌」 『汕尾日報』 2009.5.11.

관심하거나 방관했으며, 유학생이나 상인들도 마을 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가난뱅이들은 생각은 있었지만 매일 일하느라 바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청원운동에 나선 것은 주로 마을의 중산층이었다. 핵심지도부의 한 사람인 양씨마오(楊色茂)는 과거 선전의 강재회사의 부총경리로 6-7만위안의 연봉을 받았다. 그는 봄에 시내를 나갔다가 춘 위원회와 대표대회의 민주선거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문서를 보고 핸드폰에 저장해가지 돌아와 주위 사람들에게 문자로 알리기 시작했다. 9월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청원운동을 벌이자고 대자보를 붙였다. 21일 새벽 드디어 팽과리를 두드리며 모인 촌민들은 마을의 45개 성씨에서 매달 1000위안의 보조금을 주는 13명의 대표를 뽑았다. 양씨마오가 제일 표를 많이 받아 이사장이 되었고, 나이도 적고 배분도 낮지만 열심히 활약한 쉰진보(薛錦波)가 2등으로 부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촌민들은 젊은이들로 질서유지대를 조직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했지만,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고 뤼핑시 당서기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리고 쉰진보가 잡혀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최초의 공산당 농민운동이 일어났던 뤼핑에서 공권력이 주민들에게 쫓겨나고 서로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제 촌민들은 전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했고, 린주완은 기자들을 이용해서 선전전에 나섰다. QQ공간과 트윗(微博)은 그들의 주요 무대였다. 4시간 만에 4000여명이, 이틀만에 7000명이 동참했다. 결국 광둥성의 고급 간부들이 우칸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공작조가 파견되었다.⁸⁾

특히 산웨이(汕尾) 시위 서기는 상급 당조직뿐 아니라 이 지역 출신 화교들에게도 신경이 쓰였다. 거액의 투자금이 걸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청원은 완전 정상적이며, 대다수 촌민과 위법행위는 무관하며, 다만 유언비어와 선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들은 시대가 바뀌어 2000년대 초반 일어난 쑤즈강(孫志剛) 사건과 같이 유야무야 처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정상에는 광둥성 서기 왕양이 있었다.⁹⁾

우칸촌 사건은 뤼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00년대 초반 토지세가 철폐되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토지수용문제였다. 우한(武漢)의 농민들은 토지수용반대 단체를 만들어 베이징 호텔로 올라왔고, 장시의 이황(宜黃)에서는 집단 분신 사

8) 楊璐, 「一座村庄的利益訴求, 以及轉機」, 『三聯生活周刊』 2012.2.6., <http://www.lifeweek.com.cn/2012/0206/36382.shtml>

9) 鄭雁雄, 「向潮汕人民敬禮! 不愧爲澎湃的故里後人。官不B人人會反? 星星之火, 可以燎原」, 2011. 12.18.

건이 일어났다. 따라서 광둥에서 발생한 대중시위는 한 둘 관리의 잘못이 아니며,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경제발전에 따른 불균형과 정치 상황의 악화. 2 기층정부의 이익집단화. 3 촌민 선거를 둘러싼 권력욕. 4 민원의 불통. 5 종족제도에 기반한 응집력. 6 남방언론의 발전으로 인한 공민정신의 제고. 7 북방과 달리 남방에서 정부 권위의 미흡. 8. 이익분규의 복잡함. 9. 광둥의 개방정신. 10. 새로운 매체의 도움으로 정보 유통의 통제 곤란함. 나아가 광둥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3-5년 뒤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미봉책으로는 더욱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⁰⁾ 2009년말에서 2010년 초 중국에서 상영된 ‘디스트릭트 9’이나 ‘아바타’를 보는 중국 관객들은 ‘토지수용과 철거(拆遷)’를 상상했다고 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민간여론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시작하지만, 일단 정부가 사태에 개입하면 여론은 무조건 비판적으로 돌변했다.¹¹⁾ 따라서 우칸촌의 사건에서 전통 종족세력이 기층 민주선거를 장악해서 새로운 세력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주장하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¹²⁾

3장 중국모델 : 광둥의 왕양과 청두의 보시라이

왕양



보시라이



10) 『群体性事件該如何解讀?』『天涯觀察』475, 2011.12.22.

11) 楊早, 『2010:人而無信, 不知其可』『話題2010』, 三聯書店, 2011, p.

12) 『群体性事件該如何解讀?』『天涯觀察』475, 2011.12.22.

1) 왕양과 광둥모델

충칭 모델이 중국을 뜨겁게 달구던 2011년에 광둥의 우칸에서는 광둥 모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농민조차 스스로 주체가 되어 관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주제도가 시도되었다.¹³⁾ 그리고 여기에서 왕양이라는 인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왕양(汪洋, 1955-)은 안후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1972년부터 76년까지 식품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1975년에 공산당에 가입한 그는 1979년에 중앙당교에서 학습한 뒤 공청단에서 활동했으며, 1989년부터 퉁링(銅陵)시 시장으로 활약하면서 중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당시 최연소 안후이성 부성장이 되었고, 1999년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부주임을 담당하면서 주룽지(朱鎔基)에게 인정받았으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충칭시 당서기를 거친 뒤, 광둥성 당서기이자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¹⁴⁾

왕양이 전국적인 인사로 떠올랐던 것은 당시 충칭시에서 발생했던 재개발 구역 내의 알박기(最牛釘戶)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사건의 주인공인 양우(楊武)가 왕양을 만고 싶다고 외치자, 그가 사건 해결에 직접 나섰던 것이다.¹⁵⁾ 이후 광둥으로 옮긴 그는 광둥성 당 11기 2차전회에서 무려 22차례나 ‘사상해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지식인들은 광둥의 사례가 선진적이지만, 진정한 광둥의 모델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광둥의 경제건설이 선두를 달리지만 민생문제는 심각하고, 특히 제도화된 공민사회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도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¹⁶⁾

그런 그가 우칸촌 사건이 발생하자, 우칸의 민주선거는 법에 따라 진행된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칸의 경험에서 배우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¹⁷⁾ 그리고 이것은 2012년 중국이 ‘양회(兩會)’가 개최되는 정치의 해인 것과 관련이 된다. 왕양은 이제 개혁자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민감한 말도 거리낌 없이 내뱉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커다란 정부이다. GDP가 행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용기 있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인민의 행복은 당과 정부

13)

『幸福廣東不如民主廣東』2012.5.10., <http://club.kdnet.net/dispbbs.asp?page=1&boardid=1&id=8306465>14) 『百度百科:汪洋』 <http://baike.baidu.com/view/46356.htm>15) 『媒体称汪洋力推改革動搖既得利益 有官員到中央告狀20』 『華夏時報』 2012.5.12. <http://club.kdnet.net/dispbbs.asp?page=1&boardid=1&id=8311395>16) 蔡霞, 『廣東和重慶都沒有模式』 『中國改革網』 2011.8.15. http://www.chinareform.net/special_detail.php?id=11817) 『百度百科:汪洋』 <http://baike.baidu.com/view/46356.htm>

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 스스로 행복한 광둥을 건설하는 주체성과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좋은 제도는 좋은 지도자보다 더욱 중요하다.”¹⁸⁾ 나아가 광둥성 제11기 당대회에서, 왕양은 광둥이 개혁개방의 선두 지구로 나아가려한다고 밝히면서 언론매체가 광둥성위의 사업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¹⁹⁾

이러한 왕양을 중앙에서 후원하고 있는 주요 세력은 원자바오이다. 후진타오가 최고지도자에 올랐지만, 집단지도체제에서 원의 주장은 자주 부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원은 중국에 ‘봉건제도의 잔재’와 ‘문화대혁명의 폐해’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중국사회는 사상과 문화의 다원시대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국민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정치개혁’과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원자바오와 함께 하는 것이 남방계 신문들이다. 그들은 최근 후술할 ‘리쥘(李莊)사건’과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법치를 강조하며, 마오쩌둥이 다시 중국에 재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시라이로 대표되는 좌파를 격렬히 비난했다.²¹⁾

2) 보시라이와 청두모델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견제했던 보시라이(1949-)는 대표적인 태자당의 일원으로 아버지는 중공 북방세력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보이보이다. 그는 문혁 때 ‘학습반’으로 노동에 참가했는데, 1979년에 북경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부터 중앙서기처에서 근무했다. 1984년부터는 랴오닝성에서 당 간부로 활약했고,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다롄(大連) 시장을 역임하고, 다시 랴오닝성 성장이 되었다. 2004년부터 상무부 부장을 담당했지만, 17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2007년부터 충칭시 당서기로 있다가 2012년 3월 15일 해임되었다.²²⁾

보시라이는 중앙 정치무대로 올라오자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 그는 끊임없이 일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좌절하고 있는 많은 일반 구간부들을 위로하고, 삶에 힘들어하는 대중들을 위해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²³⁾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작업이 실패해서 충칭으로 내려가게 된 보시라이는 2008년 3월 5일 중경대표단 앞에서 ‘5가지 더욱 중시할 일’을 제시한다. 그리고 민생, 농촌건설, ‘新庫區 건설’을

18) 『媒体称汪洋力推改革動搖既得利益 有官員到中央告狀20』, 『華夏時報』 2012.5.12. <http://club.kdnet.net/dispbbs.asp?page=1&boardid=1&id=8311395>

19) 汪洋, 『權力是人民賦予的 只能用來為人民謀利』, 『廣州日報』 2012.5.14.

20) 蘇仁彥, 『重慶模式真相和中國趨勢』, 『開放雜誌』 2011.6.8.

21) 蘇仁彥, 『重慶模式真相和中國趨勢』, 『開放雜誌』 2011.6.8.

22) 『百度百科:薄熙來』 <http://baike.baidu.com/view/5779.htm>

23) 『關於理想·信念和黨的先進性』, 『求是』 2005.6.

특별히 강조한다.²⁴⁾ 1년 뒤 보시라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충칭의 오래된 사회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타흑(打黑)’운동을 시작한다. 동시에 그의 나팔수들도 ‘타흑’이 혁명적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한다. 흑사회의 타도는 기층정권의 건설을 공고히 하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회복하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바로 이것이 ‘화해(和諧)의 경찰과 공민 관계’이며, 사람을 본위로 하는 과학발전관의 체현이라는 것이다. 선전 활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공산당 서남국(西南局) 제1서기가 된 뒤, 덩은 이 지역의 토비진압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덩샤오핑과 동급이 되었다.²⁵⁾

그런 보시라이가 돌연 서기직에서 해임되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보시라이의 행동 패턴은 중국 정계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특별히 튀는 신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며, 조금 말하고 많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보시라이는 자신을 정통파로 자처하며 지나치게 요란스럽고 급진적이었다. 그는 일하는 스타일, 언어체계, 서체, 행동거지까지 마오쩌둥을 모방했다. 더군다나 왕리권 사건 이후에도 계속 나뒀으니, 사람들의 집중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²⁶⁾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은 15일 해임 사실을 발표하면서 "왕리권 사건이 불러온 엄중한 정치적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바오는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 보 서기의 홍색문화운동(唱紅)이 중요한 해임 사유임을 시사했다. 보 서기는 지난 2010년부터 대대적인 홍가(紅歌·중국혁명가요) 부르기 운동을 벌이고, 관료들을 농촌으로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홍색문화운동을 펼쳐왔다. 또 임대주택 건설, 도·농 통합 등 분배 중심 정책과 이 운동을 결합해 ‘충칭모델’이라는 좌파 정치노선도 만들어냈다. 이것은 2012년 10월 18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선출을 노린 노골적인 업적 쌓기였다. 후 주석과 원 총리는 정치국원인 보 서기가 정치국회의라는 내부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 차원에서 대중운동을 벌인 데 대해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을 동원해 정상적인 당·정 기구를 마비시킨 문화대혁명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보시라이의 해임은 중국의 이너서클이 마오쩌둥 식의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²⁷⁾

이른바 ‘충칭모델’의 핵심은 ‘唱紅打黑’이었다. ‘창홍’은 당과 조국과 지도자와 위대한 성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타흑’은 흑사회의 범죄집단 및 흑사회와 연결된

24) 『薄熙來:以科學發展觀指導落實‘314’總體部署』『重慶日報』2008.3.7.

25) 『薄熙來打黑十大爲什麼』『人民網』2009.8.28. <http://opinion.people.com.cn/GB/52655/9949529.html>

26) 『薄熙來被免職:紅歌一曲繞空梁』2012.5.10., <http://www.iyokv.com/news/50.html>

27) 『보시라이의 8일 前 회견이 해임의 도화선됐다』『조선일보』2012.3.17.

부패인사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물질문명의 건설과 함께 정신문명의 건설도 이룩해야 하며, GDP만을 추구하면 사회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부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타후’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²⁸⁾

중국화상창홍단 : <http://baike.baidu.com/view/4049402.htm>

‘타후’는 일견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리쥔 사건’은 청두 모델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2009년 11월 충칭 인강(銀鋼)그룹 총경리 궁강모(龔剛模)의 가족들이 베이징 캉다(康達)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리쥔을 방문했다. 궁은 캉패에게 무기밀매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달여 동안 변호 활동을 진행하던 리쥔은 12월 10일 위증교사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쓰촨의 법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선고를 받은 뒤 2011년 6월 11일 만기 출소했다.²⁹⁾ 리쥔의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다. 캉다는 베이징의 유명한 법률사무소로 최고 사법권력과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이 소송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권력과 법률계의 다툼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을 다툼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법률이 정치를 위해 대신 일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법치, 사법독립, 인권 등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중국 사회에 엄청난 논쟁을 야기했다.

당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리쥔의 변호로 불법적인 ‘타후’ 활동이 드러나서 보시라이의 명성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한 당사자인 왕리권은 2010년 말, ‘사실을 왜곡 보도’한 신문사는 공안기관에서 신문기자는 민경(民警)에서 기소하겠다는 이른바 ‘双起論’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과거 경찰은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경찰은 언론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에 호소하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우리도 많이 들었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왕의 발언은 전국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놓았지만, 충칭의 매체들은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침묵의 자유조차 없었다. 충칭의 대표적인 법대인 서남정법대학의 교수들도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하는 상황이었다.³¹⁾

이제 ‘창홍타후’ 자체가 본격적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2010년 10대 행복도시 선발에서 충칭이 선발되었을 때, 조직위원회는 ‘창홍타후’를 핵심 이유로 거론했다. 12월 초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충칭을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밝혔다. 인터넷에서 비난

28) 『百度百科 : 唱紅打黑』 <http://baike.baidu.com/view/4049402.htm>

29) 『百度百科 : 李庄案』 <http://baike.baidu.com/view/3126844.htm?subLemmaId=3126844&fromenter=%C0%E7%D7%AF%B0%B8%BC%FE>

30) 薩支山, 『月份觀察』, 『話題2010』, 三聯書店, 2011, pp.

31) 蘇仁彥, 『重慶模式真相和中國趨勢』, 『開放雜誌』 2011.6.8.

의 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찬양의 소리는 날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2010년 충칭은 GDP가 14.5% 성장했고, 일인당 GDP는 3000달러를 초과했다. 다원화사회에서 ‘창홍’은 주류 선진문화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었고, 베이징의 모 대학교수는 ‘창홍타흑’이 충칭의 지구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했다. 충칭은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물질적, 사상적 기초를 갖추었다.³²⁾ 보시라이는 독립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좌파 지식인들을 동원했다. 쓰마난(司馬南), 쿵칭둥(孔慶東), 판징강(范景剛), 장이우(張頤武), 추이즈위안(崔之元), 왕샤오광(王紹光) 등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특히 홍콩의 왕샤오광은 『중국식 사회주의 3.0 : 충칭 경험』을 발표했다.³³⁾

보시라이 입장에서는 충칭모델을 당 중앙에 자신이 들어가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었던 것 같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창홍타흑’을 따라한 곳은 없었다. 홍색 가요는 현재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충칭에서는 민영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타흑’ 활동이 가능했지만, 저장같은 곳에서 일어났다면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다.³⁴⁾ 또한 노동자들이 7-8년의 임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충칭의 대규모 공공건설은 대중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그러나 과연 그때에 이르러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선언인 것이다.³⁵⁾ 물론 농민의 복지, 사회조방, 빈부격차의 축소,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좋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칭모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강권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고,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특히 ‘창홍’은 사람들의 심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반대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인민이 당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당이 인민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칭모델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 『충칭모델(重慶模式)』을 출간한 양판(楊帆)에 따르면, 충칭의 경험은 보시라이의 지도아래 성취한 것으로 개인의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는데, 이것은 초창기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민주 법제에 의지해서 부패와 흑사회가 권토중래하지

32) 馮創志, 『從“唱紅打黑”到“最具幸福感城市”』, 『新華網』 2010.12.28. http://news.xinhuanet.com/comments/2010-12/28/c_12924168.htm

33) 『薄推“重慶模式”鬧獨立 收買200多左派』, 2012.3.29. <http://big5.soundofhope.org/programs/162/213698-1.asp>

34) 梁亮, 『唱紅打黑: 十八大詭異前奏』, 『開放雜誌』 2011.6.8. <http://www.open.com.hk/content.php?id=285>

35) 梁亮, 『唱紅打黑: 十八大詭異前奏』, 『開放雜誌』 2011.6.8. <http://www.open.com.hk/content.php?id=285>

36) 蔡霞, 『廣東和重慶都沒有模式』, 『中國改革網』 2011.8.15. http://www.chinareform.net/special_detail.php?id=118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공산당의 주도 아래 민주를 실험해야 하는 것이지 서구의 주장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³⁷⁾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언론계 일부에서는 왕리쥔 사건을 바라보면서, 황제와 측근들의 비밀스러운 궁중 암투나 <삼국지>의 세계처럼 다루었다. 그 가운데에서 생성된 수많은 유언비어는 현재 그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며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 보인다. 오히려 보시라이 사건을 둘러싼 자욱한 안개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둘러싼 중국의 치열한 고민이다. 중국이 휘황찬란한 경제적 성공을 자랑하지만, 빈부격차가 무섭게 벌어지고, 농민과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부정부패 등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끓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좌파와 우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시장의 부작용을 청산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게 신좌파였다. 2007년 충칭 서기로 부임한 보시라이는 공평했던 과거에 대한 대중의 향수를 읽어냈고 신좌파의 이론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국유기업의 수익을 사회로 돌리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충칭 모델’은 보시라이를 만나 생명력을 얻은 듯했지만, 결국은 보시라이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이와 대척점에 선 자유주의자들의 청사진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힘을 키우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는 개혁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영기업 발전, 노동자 임금 인상, 농민들의 토지권리 보호 등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발전모델을 실행하려면 기존 기득권 세력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고 국민과 사회가 권리와 감독권을 가지게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³⁸⁾

4장 논쟁 : 『오유지향(烏有之鄉)』과 『염황춘추(炎黃春秋)』

여기에서는 신좌파와 신자유주의자들의 보다 통속적인 논쟁을 『오유지향』과 『염황춘추』의 사이트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오유지향』은 2003년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의 교사 한더창(韓德強)이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주요 활동인물은 양판 등이었는데, 한동안 마오 좌파의 대표적인 거점으로 인정받다가 18차 당대회와 관련된 기사 때문에 4월 12일 폐쇄되었다.³⁹⁾ 『오유지향』의 후원자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전문가, 통계국, 선전계통,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과 개혁

37) 楊帆, 「2011年初我是怎樣積極幫助重慶划清唱紅與文革界限的?」2012.2.18. <http://yangfan.21ccom.net/?p=1339>

38) 「삼국지와 정치개혁」 『한겨레』 2012.3.22.

39) 「維基百科:烏有之鄉」2012.5.10., http://zh.wikipedia.org/wiki/%E4%B9%8C%E6%9C%89%E4%B9%8B%E4%B9%A1#cite_note-9

위원회 등의 퇴직 간부들이 있었다. 이들은 애국주의, 사회주의와 진보사상을 선전한다고 자임했다. 그러나 일부 홍콩의 인사들은 최근 『오유지향』의 핵심 활동가인 판정강(范景剛)이 2001년 자유주의 활동을 선언했던 신청년학회의 핵심 회원이었는데 국가전복죄로 체포된 뒤에 위증해서 풀려난 판얼권(范二軍)인데, 이후 좌파로 전향한 사람이라고 한다.⁴⁰⁾ 심지어는 국가가 좌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에 불과하다는 음모론도 존재한다.⁴¹⁾ 한편 『오유지향』과 충칭모델과의 관계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⁴²⁾

한편 『염황춘추』는 역사를 주로한 종합월간지이다. 또한 ‘炎黃春秋網’, ‘염황논단’과 ‘민주논단’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대중적으로 발휘한다. 이들은 1991년 지금은 사망한 해방군 원로 샤오커(蕭克)와 장아이핑(張愛萍)의 도움으로 시작했으며, 출판 책임자는 광저우 지역을 통괄했던 중국공산당 중남국(中南局)의 기관지 『양성만보(羊城晚報)』와 상하이의 대표적인 신문인 『광명일보』의 총편집을 담당했었던 두다오정(杜導正)이고 부책임자는 우쓰(吳思)이다.⁴³⁾ 이들은 자오즈양이나 후야오방(胡耀邦) 등과 관련된 민감한 소식들을 게재하고 있다.⁴⁴⁾ 마오 좌파들은 『염황춘추』가 반 마오쩌둥, 반 공산주의를 중지로 삼는다고 한다.⁴⁵⁾

40) 『烏有之鄉:烏鴉亂叫之鄉의 一點來龍去脉』2011.6.8., <http://bbs.meyet.com/archiver/tid-254035.html?page=1>

41) 『對烏有之鄉的擔憂』2012.4.4., http://blog.tianya.cn/blogger/blog_main.asp?BlogID=1811761&page=3

42) 『維基百科:烏有之鄉』2012.5.10., http://zh.wikipedia.org/wiki/%E4%B9%8C%E6%9C%89%E4%B9%8B%E4%B9%A1#cite_note-9

43) 『百度百科:炎黃春秋』<http://baike.baidu.com/view/570990.htm>

44) 『維基百科:炎黃春秋』2012.5.25. <http://zh.wikipedia.org/wiki/%E7%82%8E%E9%BB%84%E6%98%A5%E7%A7%8B>

45) 『誰是『炎黃春秋』雜誌的后台?』『中華論壇』2010.8.23.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16/96/70/2_1.html

- 白永瑞, 「20世紀型 東亞文明과 國民國家를 넘어서」 『창작과비평』 106, 1999.12.
- 오병수, 「中國의 危險한 民族受難史 敎育」 『歷史敎育論集』 34, 2005.
- 임상범, 「1919년 5-6월에 베이징인의 대사와 세고」 『역사학보』 213, 2012.3.
- 임상범, 「덩정라이(鄧正來)와 사회과학논쟁 - 중국(법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총』 76, 2012.5.
-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2008.
- 俞長根, 『近代中國의 地域社會와 國家權力』, 신서원, 2004.
- 이욱연,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강대학교, 2009.
-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창비, 2004.
-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에버리치홀딩스, 2010.
-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2009.
- 아리프 딜릭 지음, 황동연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과거』, 창비, 2005.
- 조반니 아리기 지음, 강진아 옮김,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길, 2009.
-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 논고』, 민음사, 1990.

게가레관을 통해서 본 平安時代

— 전개와 변용을 중심으로 —

최 상 은(고려대)

目 次

- I. 들어가며
- II. 게가레관의 성립과 전개
- III. 게가레관의 변용
- IV. 攝關政治와 게가레관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전후 일본 민속학계는 연구의 기본적인 틀로 柳田國男가 주창한 하레(晴)·게(藝)개념을 중시해왔으나, 두 가지 대립 개념만으로는 일본 민속양상의 다양성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반론들이 제기, 兩者의 中間段階 혹은 복합 개념으로써 ‘게가레’개념에 주목하였다.¹⁾ 같은 시기 역사학에서도 게가레관이 中世身分制의 형성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게가레관 관련 연구가 민속학, 종교학, 역사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게가레관에 주목한 선구적 연구는 민속학과 종교학에서 이뤄졌다.²⁾ 두 영역의 선행 연구들은 ‘死穢를 기피하고 두려워한 古來의 氣風’이라는 柳田國男의 지적에서³⁾ 단적으로 엿볼 수 있듯이 記紀神話의 皇天國訪問談에 나타난 穢를 신도의 淨穢觀念의 원형으로 파악하여, 神話에서 神道로의 영속적인 게가레관을 주장했다. 하지만 ‘죽음을 汚穢로 보고, 葬儀를 凶禮로 보는 관념’을 ‘고대 신앙, 신도의 고유성’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의문이 제

1) 新谷尙紀, 『분석개념으로서의‘게가레’』,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2』, 국립민속박물관, 2006.

2) 波平恵美子, 『ケガレの構造』, 青土社, 1984 ; 近藤直也, 『ハライとケガレの構造』, 創元社, 1986 ; 辻本正教, 『ケガレ意識と部落差別を考える』, 解放出版社, 1999 ; 服藤早苗, 『ケガレの文化史』, 森話社, 2005 ; 礪川全次 編, 『穢れと差別の民俗學』, 批評社, 2007 外.

3) 柳田國男, 『葬制の沿革について』, 『定本 柳田國男集 第十五卷』, 筑摩書房, 1969.(발표는 1929)

기되어, 계가레관의 불연속성을 지적한 연구들이 점차 활발화되기 시작했다. 이 관점은 高取正男에 의해 계승·보강되었으며 현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 高取正男은 ‘記紀神話의 皇天國訪問談에 보이는 인간의 원초적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료 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계가레이나 이후 이를 구체화한 ‘계가레관’과는 다르며, 계가레관의 사상적 기반으로 외래종교인 불교의 淨穢思想’을 지적하고 있다. 그가 제기한 記紀神話의 계가레와 고대의 계가레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가 수용되어 이후 계가레관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역사학에서의 계가레관 연구는 70년대 활발화된 중세 신분제 연구에서 촉발되었다.⁵⁾ 横井清, 黒田俊雄, 大山喬平, 丹生谷哲一, 網野善彦, 村井章介 등에 의해 차별과 신분제, 天皇權, 도시공간, 경계 등 중세 제영역에 걸쳐 계가레관의 영향이 지적되었다. 高取, 大山喬平이 지적한 ‘9세기에서 연원해, 10세기를 확기로 차츰 비대화’되었다는 계가레관 전개과정은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高取의 전개 도식을 기반으로 계가레관이 점차 비대화되어 중세에는 제영역에 침투해나갔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편 平安時代の 계가레관에 있어 주목되는 연구로는 山本幸司와 三橋正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⁶⁾ 山本幸司는 향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한 연구로,⁷⁾ 사료에 나타나는 계가레 사례를 종합하여 ‘(사회를) 교란하는 사상에 대해 사회성원이 갖는 불안과 공포감이 그러한 사상을 기피한 결과, 그러한 기피가 계가레라는 사회적인 관념으로 정착된 것’이라는 계가레의 종합적 정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는 관련 사료를 종합하고 각각의 계가레를 분류하여 정의하였으며 天皇權이 유지하고자 했던 체제를 지탱해주는 사상이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⁸⁾

한편 三橋正은 계가레를 결정하는 定穢를 중심 소재로 삼아, 계가레관의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天皇・攝關에게 있었으며 계가레관의 전개에 정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정치적 역관계가 定穢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 점에 연구의 탁월성이 있

4) 高取正男, 앞의 책.

5) 横井清, 『中世の触穢思想—民衆史からみた—』, 『中世民衆の生活文化』, 東京大學出版會, 1975. (초판은 1968)

大山喬平, 『日本中世農村史の研究』, 岩波書店, 1978 ; 丹生谷哲一, 『檢非違使 : 中世のけがれと權力』, 平凡社, 2008. (초판은 1986) ; 黒田日出男, 『王の身體 王の肖像』, 平凡社, 1993. (초판은 1990) ; 村井章介,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 『思想』, 1995.

6) 이 외에도 高松百香, 『院政期攝關家と上東門院故實』, 『日本史研究』, 日本史研究會, 2005 ; 尾留川方孝,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 『日本思想史學』, 2009 ;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多元性』, 『日本思想史學』, 2011 등이 주목된다.

7) 山本幸司, 『貴族社會に於ける穢と秩序』, 『日本史研究』, 1986 ; 『穢と大祓』, 平凡社, 1992.

8) 山本幸司, 앞의 책, pp. 14~39.

다고 생각된다. 다만 攝關政治에서 院政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서 定穢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상을 그리고 있고, 그의 정치적 측면보다는 귀족사회의 일원으로서 道長의 신앙·종교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⁹⁾

본고는 平安時代, 그 중에서도 道長이 활약한 시기 전후를 대상으로 게가례관의 전개를 그려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이 10세기를 劃期로 이후 단순히 확대일로로 게가례관의 전개를 그리고 있어, 10세기 초 『延喜式』 성립과 급속도로 제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산해나간 중세의 게가례관과 미묘한 단절감이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이른바 10세기 전환론으로 상징되는 고대·중세간의 전환이 논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¹⁰⁾ 때문에 이 시기 고대의 게가례관이 중세적 게가례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을 바라보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고를 통해 10~11세기를 대상으로 게가례관의 성립과 전개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게가례관의 성립과 전개

1. 『延喜式』과 게가례관의 의의

905년(延喜5) 藤原時平등이 醍醐天皇의 명에 따라 편찬에 착수한 『延喜式』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한편, 가장 정비된 게가례관을 보여주고 있어 게가례관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사료이다. 한편, 『延喜式』이후 기록에 등장하는 게가례 관련 기사들을 일괄해볼 때, 통시적인 게가례관의 정의를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개별 게가례를 당시 기록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 게가례관의 시기별 변천과 平安時代에 있어 게가례관의 의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1) 게가례관의 정의

(1) 人死穢 産穢 : 人死限卅日. 自葬日始計. 産七日

死穢는 인간의 死에 의해 발생하는 게가례로 근신 기간은 30일이다. 게가례 중 가장

9) 三橋正, 「『延喜式』穢規定と穢意識-」, 『延喜式研究』, 延喜式研究會, 1989 ; 「攝關期における定穢の変遷-『西宮記』「定穢事」から三條朝まで」, 『大倉山論集』, 大倉山文化科學研究所, 1999 ; 「攝關末・院政期における定穢について」, 『駒澤史學』, 2003.

10) 佐藤全敏, 「攝關期と律令制-後期律令國家論をめぐって」, 『日本史研究』, 2000 ; 森田悌, 『王朝政治』, 講談社, 2004.

긴 근신 기간을 가지고 있어 諸穢 중 가장 중한 계가례이다. 반면 産穢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출산에서 기인하는 계가례로 7일간의 근신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死穢와 유사한 사례로는 服喪과 五體不具穢가 있다. 五體不具穢는 死穢의 일종으로 사체의 일부만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계가례로, 『延喜式』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同時期 기록에 散見되며 0일, 7일, 30일로 일정한 근신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았다.¹¹⁾ 한편 服喪은 인간의 死에 의한다는 점에서 死穢와 종종 혼재되나 服喪이 혈연의 친소를 기준으로 그 기간이 설정됨에 반해, 死穢는 혈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접촉·왕래로도 전염되며 기간도 30일로 고정되어 있다.¹²⁾

계가례가 발생하는 有穢事件의 경우, 계가례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접촉과 왕래로 인해 他所·他者로 전염되며 개인의 계가례와 해당인의 諸祭奉仕가 상충할 경우, 계가례 발생을 알리고 해당 근신 기간의 暇文을 제출하여 他者로 使者가 改替되는 점은 모든 계가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¹³⁾ 한편 死穢와 産穢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계가례로, 至極한 天皇의 生死 역시 계가례로 여겨져 전염이 불가피하였다. 때문에 정국의 불안 가능성을 내포하는 天皇의 死穢문제는 天下觸穢로 표현되는 중세와 근세의 觸穢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¹⁴⁾

(2) 六畜死·産穢 -六畜死五日. 産三日. 鶏非忌限

개, 돼지, 말, 양, 소, 닭 등 六畜의 死産에 의한 계가례로, 그 가운데 닭은 계가례에 해당되지 않으며, 때에 따라 여우, 멧돼지 등에 대한 규정도 있다.¹⁵⁾ 六畜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개였다. 六畜의 死·産穢를 개괄해볼 때, 『日本三代實錄』에 보이는 100여회의 有穢事件 중 약 1/3인 30여회가 犬死·産穢이고,¹⁶⁾ 『御堂關白記』에서 보이는 9회의 六畜産穢가 전부 犬産穢이며, 『貞信公記』에서 파악되는 六畜穢 16회 중 牛死穢 단 2회를 제외하면, 14회가 모두 犬로 인한 계가례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는 통제가 불

11) 五體不具穢의 성립시기와 『延喜式』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椎原晩聲는 오체불구에는 延喜式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나 그 경중과 근신일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延喜式에 누락되었다고 보고 있다. (椎原晩聲, 「五體不具穢と『延喜式』平安朝に頻發する穢の『式』不記載理由について」, 『國學院雜誌』, 2005 참조.)

12) 勝田至에 따르면 服喪은 혈연관계로 이뤄진 死者와 死葬集團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반면, 死穢는 死者와 死葬集團을 외부에서 바라본 관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勝田至, 「中世民衆の葬制と死穢-特に死体遺棄について」, 『史林』, 1987, pp.370-378)

13) 失火穢의 경우만 전염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中川學, 「近世における觸穢觀念と政治秩序-爲政者の死と穢」, 『歴史學研究』, 2005 ; 青島 史敏, 「平安時代の天下觸穢について」, 『三重大史學』, 2009.

15) 山本幸司, 『穢と大祓』, 平凡社, 1992.

16) 森野宗明, 「平安時代における觸穢觀と犬」, 『文藝言語研究. 文藝篇』, 1977.

가능할 정도로 平安宮内外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조정의 의례 운영에 종종 차질을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로 야기되는 게가레는 한층 복잡한 상황을 유발하기에 이른다.¹⁷⁾ 개는 內裏에서 그 자신의 死穢·産穢사건을 야기함에 그치지 않고 宮外에서 발견된 사체를 물어 나뉘으로써 宮内外 死穢 轉移의 매개 역할까지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延喜式』에서는 개의 왕래처럼 예측과 통제가 모두 불가능한 영역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六畜의 행위, 일상의 영역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가레관의 근본적인 한계가 개의 왕래와 死穢의 이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게가레관의 한계는 이후 게가레관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충돌하여 이후 게가레관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게가레의 확산 : 甲乙丙丁穢와 觸穢

凡甲處有穢. 其處. [謂著座. 下亦同.]乙及同處人皆爲穢. 丙入乙處. 只丙一身爲穢. 同處人不爲穢. 乙入丙處. 人皆爲穢. 丁入丙處不爲穢. 其觸死葬之人. 雖非神事月.

甲乙丙丁穢란 他者·他所의 게가레가 전염되는 것으로, 觸穢와 일면 유사하다. 『延喜式』은 게가레의 전염경로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전하고 있다. 우선 게가레 발생원인 甲은 본인과 발생처[甲處] 모두 전염성을 가지며, 甲 혹은 甲處의 게가레에 전염된 乙도 본인과 본인의 처소[乙處] 모두 게가레이며 전염성을 가진다. 2차 전염인 丙으로부터는 전염성이 약해져, 丙은 乙穢[乙·乙處]에 전염될 수는 있지만 丙 본인은 전염성이 없어 3차로 전염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역으로 乙이 丙의 처소에 들어가면 丙處는 게가레가 되어 丙穢의 사람 역시 모두 게가레에 해당된다. 마지막 丙穢에 3차로 접촉하여 전염된 丁의 경우, 丁 본인은 물론 그의 처소도 게가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전염이 거듭되면서 전염성은 점점 약화된다. 게가레의 전염에 관해 한 가지 지적해둘 점은 전염성과 전염 경로를 아무리 자세히 式文에 규정해둔다 하더라도, 게가레를 전염시키는 人間·六畜의 往來를 법으로 규정해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육식[喫肉穢], 喪葬과 관련된 弔喪[弔喪]·問疾[問疾]·改葬[改葬穢], 여성의 月經[月事穢]·妊娠[懷妊]·流産[傷態穢], 失火[失火穢] 등 다양한 게가레가 게가레관의 범주에 속해있으며 발생 시기·장소·관련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게가레 여부[或穢, 或不可爲穢]를 결정하는 出血[流血]·殺人[死穢]·懷妊이 穢와 非穢의 경계선에 존재해, 게가레관의 유동성을 암시하고 있다.

17) 勝田至는 당시의 장법인 풍장, 유기로 인해 방치된 사체들을 개가 물어 나뉘으로써, 五體不具穢가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도시 특유의 현상이라 지적하고 있다. (勝田至, 『講座--都市と埋葬中世京都の葬送』, p.58)

종합해보면 『延喜式』에 규정된 계가레관이란, 인간의 死穢, 産穢, 六畜의 産穢, 死穢와 계가레가 타소로 전염된 觸穢, 육식, 弔喪・問疾・改葬, 여성의 月經・妊娠・流産, 失火 등 인간의 生老病死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괄한 추상적인 관념 체계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결한 계가레로 규정하여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자를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때문에 계가레관으로 표현되나 이는 관념 체계라기보다는 계가레 범주에 속한 일들을 不淨視하는 관념에 기반한, 당대의 행동 양식으로 준수된 일종의 질서체제라 할 수 있다.¹⁸⁾

2) 『延喜式』 계가레관 규정의 의의

그렇다면 『延喜式』이 계가레관을 규정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있는 의도와 배경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계가레관 규정이 『延喜式』의 ‘臨時祭’와 ‘齋宮條’에 편제되어있다는 점이다.¹⁹⁾ 兩條는 국가적 祭儀와 祭儀를 담당하는 齋宮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하고 있어 계가레의 규정도 祭儀를 위한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²⁰⁾ 제의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계가레[不淨]를 배제하고자 한 시도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니다. 『律令』神祇令散齋條의 규정[不預穢惡之事]이 『唐律疏議』의 해당 규정[皆不得習穢惡之事]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은 고대 일본이 중국 율령의 영향을 받아 제의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을 배제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제의에 부정을 배제하고 청정성을 유지하고자 한 시도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延喜式』의 계가레관을 제의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계가레[부정]의 배제라는 설명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계가레관 규정의 시대적 배경인 平安時代의 특수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선행 연구들은 계가레관의 사상적 배경으로 불교라는 외래 사상의 전래와 신도라는 고유 사상을 지적해왔다.²¹⁾ 그러나 계가레관

18) 横井清은 계가레관을 단순한 관념보다는 강력한 지배 사상이었다는 견해를 보인다. 반면, 高取正男은 死穢 기피가 전계층에 일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으며, 吉田徳夫도 계가레관은 신사집행과의 연관선상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료상에 보이는 계가레관은 이미 平安官人の 일상생활까지 침투했기 때문에, 관념보다는 지배 사상이라고 본 横井清의 지적은 계가레관의 성격에 관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19) 三橋正, 「『延喜式』穢規定と穢意識-」; 尾留川方孝,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외.

20) 三橋正, 앞의 논문 참조.

21) 예를 들어 横井清는 음양도의 영향을 지적하였으며, 高取正男은 불교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을 규정하고 강화되어 나간 平安時代와 동시기에 보여지는 재이사상의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일본의 재이관은 중국 율령과 함께 유입된 유교적인 재이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재이의 발생은 위정자의 不德과 失政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점차 재이의 원인을 怨靈 혹은 게가레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²²⁾ 이에 따르면, 재이가 발생하면 원인에 대해 卜占하고 게가레나 부정한 기운이 결과에 나타나면, 그 실질적 원인이 되는 게가레를 처리하고 이에 대해 天皇이 사죄하는 형식을 취했다. 仁明朝부터 崇이 재이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 정치적 비관 회피를 가능하게 하였으며²³⁾ 이 시기부터는 재이관은 재이=천황의 不德으로 본 종래의 재이관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재이관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게가레로 재이관의 변화로 인해 게가레관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平安京의 성립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수도가 종종 이전되던 전시기와는 달리 고정화된 단일 수도인 平安京과 사체를 비매장하는 당시 장법을 염두에 두고, 게가레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平安京 위생의 일 단면을 사체를 비매장하는, 이른바 風葬, 放置[死體遺棄]라는 당시의 장법에서 비롯된 상황이었다. 平安貴族은 주로 埋葬・薄葬 등의 장법을 취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일반 민중들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장법은 비매장, 放棄[遺棄] 혹은 風葬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어느 설을 취하든, 당시 平安京에 비매장된 채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이전 시기 취해진 複都制와는 달리²⁴⁾ 단일화된 수도 平安京은 당면한 도시 위생 문제를 피할 길이 없었는데, 平城京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임에 비해 平安初期 平安京의 인구는 2~3만이 증가한 약 12~13만 명 정도로 수도 平安에 급증한 인구가 밀집되었다. 한편 朝廷의 大事인 首都 造營이 10년 만에 재차 이뤄져 平安京은 천도 후에도 한동안은 미완성의 수도였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게가레 전염 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高取正男, 『神道の成立』, 平凡社, 1995. (초판은 1979) ; 横井清, 『中世の触穢思想—民衆史からみた—』, 『中世民衆の生活文化』, 東京大學出版會, 1975. (초판은 1968))

22) 松本卓哉, 『律令國家における災異思想その政治批判の要素の分析』, 『古代王權と祭儀』, 吉川弘文館, 1990 ; 五味文彦, 『御靈信仰』, 『平安時代の信仰と生活』, 至文堂, 1992 ; 谷口美樹, 『轉轍期として空海』, 『日本史における公と私』, 青木書店, 1996, pp.25-26 ; 山下克明, 『災害・怪異と天皇』, 『天皇と王權を考える 8』, 岩波書店, 2000, p. 185 ; 片岡耕平, 『中世の穢觀念について』, 『歴史』, 2004.

23) 松本卓哉, 『律令國家における災異思想その政治批判の要素の分析』, 『古代王權と祭儀』, 吉川弘文館, 1990

24) 瀧川政次郎, 『京制並に都城制の研究』, 角川書店, 1967 ; 岸俊男, 『日本の古代宮都』, 岩波書店, 1988.

이러한 상황 속에 규정된 계가레관은 死穢를 부정시하여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전염을 막는 등, 죽음을 야기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관리한, 그 일종의 도시 위생관리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延喜式』 이후 계가레관의 전개

이 절에서는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延喜式』의 계가레관이 이후 어떠한 전개를 보이는지를 당시 왕성하게 편찬된 諸儀式書を 통해 그려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官撰儀式書인 『新儀式』와 私撰儀式書인 『西宮記』와 『九條年中行事』, 『小野宮年中行事』, 『北山抄』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나머지 4개의 기록들과 달리 源高明의 『西宮記』에 계가레관은 ‘定穢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가레가 발생한 사건[有穢事件]의 전말과 이후의 처리 과정 등을 전하는 일종의 판례 모음집으로 볼 수 있다. 『西宮記』에 甲乙丙丁穢와 五體不具穢에 관련된 전례를 모아두고 있다는 점에서 계가레관을 운용하기 위한 보조 자료라 할 수 있다. 『西宮記』가 定穢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해놓은 사실은 그만큼 五體不具穢나 전염에 대한 규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定穢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한편, 『延喜式』 규정 외에 별도로 定穢가 빈번하게 행해졌음을 암시한다.

有穢事件의 前例를 모아둔 『西宮記』와 달리 『九條年中行事』, 『小野宮年中行事』, 『北山抄』는 『延喜式』처럼 ‘雜穢事’항목으로 계가레관을 규정해두고 있다. 세 기록은 해당 항목명,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각각에서 특징적인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藤原師輔가 저술한 『九條年中行事』(이하『九條』로 약칭)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內裏 이외의 장소에 적용되는 계가레관을 별도로 기재해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九條』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계가레관의 규제 범위를 內裏에서 일상의 생활공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시도로 이해된다.²⁵⁾ 또한 御膳時 규정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藤原實資의 『小野宮年中行事』에서도 ‘雜穢事’항목에 계가레관에 대해 적고 있으며 특기할 사항으로는 死穢의 일종으로 五體不具穢를 적시한 점과 傷胎穢의 해당 근신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4개월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사실로 유추해보면, 『小野宮』은 『延喜式』의 식문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뒤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보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小野宮』과 함께 小野宮流에 속하는 藤原公任의 『北山抄』도 『小野宮』와 항목명, 내용이 대부분

25) 尾留川方孝,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 『日本思想史學 41』, 2009.

유사하며, 六畜의 落胎를 계가레로 보아, 3일간의 근신일을 정해둔 점, 계가레의 발생 시점, 전염의 기준에 대해 보충이 이뤄진 점을 미루어보아, 『小野宮』의 계가레관을 수용하고, 큰 틀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村上朝에 편찬된 『新儀式』은 의식서 중 가장 간단한 기록만 남기고 있으며 계가레의 발생시점, 전염 조건 등에 대해서 침언하고 있어 이 역시도 『延喜式』을 보완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의식서들이 『延喜式』의 큰 틀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과 보완을 행하였으나, 하나의 단독 항목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계가레관은 점차 神事에서 분리·독립되었으며 『西宮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定儀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九條』에서 보이듯이 神事の 무대인 内裏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일상적 공간에도 규제를 가하며 그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²⁶⁾

3. 계가레관의 모순과 절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가레관이 점차 신사에서 독립해나간 배경에는 변화를 야기하는 계가레관의 근본적 한계와 수정·보완을 통해 계가레관을 유지하려는 시도간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자의 충돌은 관인들을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며 이와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양자를 절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가레관의 운용 과정상에서 엿보이기 시작한다.

계가레는 특성상 그 발생이 매우 우연적으로 예측·방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有穢事件이 발생하면 사전 방지보다는 사후 수습에 포인트가 맞춰지며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대응과 개인적 차원의 대응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계가레가 발생하면 해당자와 장소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정은 예정된 의례를 정지해야만 하며 개인은 他所로의 전염을 방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조정으로서는 의례의 원활한 진행을, 개인은 청정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계가레관의 모순에 대한 절충 역시도 양측에서 여러 방법이 모색되었다.²⁷⁾

먼저, 국가적 레벨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절충 방식을 살펴보자. 계가레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되어 의례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조정으로서는 의례의 원활한 진행이

26) 尾留川方孝는 계가레관의 분리시기를 『延喜式』성립 이전, 忠平 시기에 분리가 시작되어 賴通 시대에는 분리가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다.(尾留川方孝, 앞의 논문, pp.66-68)

27) 山本幸司는 이를 ‘便法’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延喜式』에도 이미 착석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편법이라기보다는 절충이라는 관점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山本幸司, 『穢れ觀と中世社會』, 『日本史講座 第3卷 中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2004)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된다. 때문에 국가적 절충은 발생한 계가례로 인해 부정된 상태가 된 모든 것을 의례의 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은 계가례로부터 의례 그 자체를 보호하는, 의례 일정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사료에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의례의 구성요소 중 계가례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의례로부터 배제하고 그 공석은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체할만한 인적 자원이나 공간적 자원을 복수로 가진 조정이기에 가능한 방식으로, 계가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에 전염을 엄금하고 의례의 장소를 계가례가 아닌 장소로 변경하거나,²⁸⁾ 의례에 供奉하는 사자를 타자로 교체하는 방법²⁹⁾이다.

조정이 계가례로 인해 부정해진 물건·장소·사람을 배제하고 배제된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있던 반면, 자기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근신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他所로의 전염을 방지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책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절충 시도는 일정 정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계가례의 근신은 최대 한 달에 걸친 장기간도 존재했음을 감안해볼 때, 근신일수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료상으로 근신일 그 자체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해보기는 어렵다. 다만 근신의 본의는 계가례로 부정해진 자기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他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전염만 막을 수 있다면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延喜式』에 보이는 전염의 성립 조건인 着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延喜式』에서는 着座, 이후 『北山抄』에서는 着席과 飲食을 전염 성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두고 있는데 역으로 이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전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착석하지 않는 방법[不着·乍立]을 통해 전염 가능성을 제거한다면 근신 기간 중임에도 他所 出入이 엄금된 것은 아니었다.³⁰⁾

28) 『貞信公記』 911년(延喜11) 10월 28일조, 『貞信公記』 926년(延長4) 12월 11일조, 『御堂關白記』 1009년(寛弘6) 4월 6일조.

29) 『御堂關白記』 1007년(寛弘4) 10월 26일조, 『御堂關白記』 1008년(寛弘5) 2월 1일조, 『御堂關白記』 1011년(寛弘8) 2월 10일조.

30) 山本幸司, 『穢と大祓』, pp. 81-83.

III. 게가레관의 변용

1. 有穢事件 처리와 게가레관의 운용

『延喜式』 이후 게가레관은 諸儀式書を 거치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平安官人이 근신 일수를 준수하고 전염을 기피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게가레관이 실제 운용되었으며 平安官人이 게가레관과 실제 운용간의 충돌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게가레가 발생한 有穢事件이 실제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有穢事件 발생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은 어떠한 게가레가 어디에서 발생하였으며, 누가 관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건의 진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특히 五體不具穢처럼 발견되는 사체의 상태가 제각각이며 그 결과가 死穢, 五體不具穢, 혹은 非穢로 분리되어 근신 일수가 상이해지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향후 有穢事件의 처리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어 보고받은 사항이 人間の 死産穢, 六畜死産穢처럼 게가레 여부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게가레가 결정되는 반면, 『西宮記』에서 보이듯이 다소 논의가 필요한 전염이나 五體不具穢는 상황을 보고받아 상황을 숙지한 다음에 1차적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1차로 결정이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諸卿이 모여 의논한 다음 결정[相定]하였다. 게가레 여부를 결정하는 定穢는 神祇官의 勘文, 조사된 先例를 전거로³¹⁾ 공경들이 의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天皇 혹은 攝關에게 결정을 얻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定穢의 결과는 先例로 남아 다음에 행해질 유사한 사례에서 전거로 활용될 수 있다.³²⁾

定穢를 통해 게가레의 종류와 근신 기간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게가레 결정의 집행이 행해진다. 조정은 해당 기간에 예정된 의례 일정을 재조정하고 개인은 규정된 근신 기간에 해당하는 暇文을 제출하고 외출을 삼가며 觸穢札[簡·札]을 세우고 자택에서 근신함을 끝으로 의례의 조정·개인의 근신이 끝나고 게가레 기간이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조정은 祓을 행하여 그간 정지된 의례에 대한 사죄의 뜻을 神佛에 전하고,³³⁾ 근신 기간이 끝난 개인은 다시 청정성을 회복하고 조정에 복귀한다.³⁴⁾ 이 과정에서 조정은 게가레관을 위반한 자에 대해 大祓 비용 부담,³⁵⁾ 시말서인 過狀제출,³⁶⁾ 근신³⁷⁾, 끝내는

31) 『西宮記』 952년(天曆6) 12월 9일조, 『御堂關白記』 1013년(長和2) 2월 24일조.

32) 道長이 有穢事件 중에 창자를 입내시킨 사실은 이후 忠實가 長男이 忠通와 白河法皇의 養女인 璋子の 혼인추진시에 전거로 사용되었다. (高松百香, 『院政期攝關家と上東門院故實』, 『日本史研究』, 日本史研究會, 2005)

33) 山本幸司, 『穢と大祓』, pp.164-185.

34)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祓은 강제된 것은 아니어서, 근신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청정한 상태로 회복된다. (尾留川方孝,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多元性』, pp.66-67)

해임까지³⁸⁾ 이뤄지는 등 직접적인 처벌을 가한다. 계가레관 준수의 당위성은 단순히 신앙이나 관념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조정의 적극적인 제재가 존재했던 것이다.

2. 定穢와 세속 정치로의 이전

본래 제의 청정성 유지를 위해 설정된 계가레관은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순과 한계를 노출하여 定穢의 활발화를 야기했다. 요컨대, 有穢事件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계가레의 종류와 근신 일수, 향후의 대응을 公卿들이 모여 의정하는 定穢가 중시되었는데, 定穢는 神祇官의 勘文, 조사된 先例를 전거로 공경들이 의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天皇·攝關 등 최고 권력자에게 결정을 얻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계가레관의 운용에 대한 논의[定穢]의 활발화는 곧 계가레관을 신기제사영역에서 세속 정치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³⁹⁾

定穢의 계가레 결정에 참고 되는 주요 전거로는 불확실성을 전제한 神祇官의 卜占 혹은 先例가 있으며 이 중 先例가 우선 한다.⁴⁰⁾ 그러나 상반되는 先例가 발견되면, 결정은 어디까지나 先例를 취사선택하는 定穢의 결정권자인, 당대 권력자의 의사에 따른다.⁴¹⁾ 계가레관에서 神祀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神祇官 勘文보다 先例가 중시되었으며, 상반되는 先例가 발견될 때 그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定穢의 결정권자, 즉 당대 권력자인 天皇 혹은 攝關이 행사했다는 사실은 계가레관이 세속 정치로 그 영역을 옮겨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계가레관의 세속정치화는 神事を 담당하는 주체는 人間이라는 점과 계가레관의

35) 『日本後紀』 816년(弘仁7) 6월 丙辰조, 『日本三代實錄』 865년(貞觀7) 8월 11일조.

36) 『貞信公記』 927년(延長5) 5년 12월조, 『御堂關白記』 1011년(寛弘8) 9월 14일조.

37) 『御堂關白記』 1016년(長和5) 7월 20일조.

38) 『御堂關白記』 1010년(寛弘7) 11월 11일조.

39) 본래 공경들의 의정이었던 陣定은 攝關期에 들어 점차 천황과 父院·母后, 그리고 攝關에 의해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되었다. (倉本一宏, 「一條朝における陣定について : 攝關政治像再構築のための一試論」, 『Cultura antiqua』, 1987.) 議定の 일종이었던 定穢역시 정치 중핵에 의해 결정이 이뤄졌다. (三橋正, 「攝關期における定穢の変遷」, 『攝關末・院政期における定穢について』)

40) 『西宮記』 935년(承平5) 4월 1일 기사는 定穢가 神祇官의 勘文과 先例 중, 결정의 근거로 先例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과 이 시기부터 계가레관이 神祇官의 영향력에서 탈각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尾留川方孝,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 pp.62-63.)

41) 醍醐·朱雀·村上天皇의 이른바 天皇親政時期에 定穢의 결정권이 天皇에게 있던 반면, 道長이 활발한 활동을 보인 一條時期에 서서히 道長이 定穢의 전면에 나섰다. 三橋正의 지적은 定穢와 정치권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三橋正, 「攝關期における定穢の変遷-『西宮記』「定穢事」から三條朝まで」, pp.135-151 ; 尾留川方孝, 「平安時代における穢れ觀念の変容--神祇祭祀からの分離」, 『日本思想史學』 41, 2009.)

애매성과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개가 야기하는 빈번한 五體不具穢의 발생과 같이 법으로써 六畜・人間の 행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계가례의 발생이란 본래 예측이 불가능하며, 『西宮記』가 별도의 定穢 관례를 모아놓은 것과 같이 개별 有穢事件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와 수정・보완이 요구된 점 등, 계가례관의 여러 한계들은 계가례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으나, 이와 동시에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계가례관을 지키려는 시도도 거듭되어 계가례관의 운용에 대한 논의[定穢]를 점차 활발하게 하였다. 그 결과 계가례관은 祭祀 영역 탈피하였으며 定穢라는 정치적 영역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祭使忌避와 계가례관의 변용

한편 계가례관이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써 平安官人을 속박했으며 그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강조한 계가례관에 자승자박되었다는 기존의 시각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⁴²⁾ ‘사회적 관계 속에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사회적 규범을 자기네 목적에 알맞게 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일상 생활의 정치’⁴³⁾를 행하였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좁혀 平安官人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보면, 허위로 계가례를 고하고 피역하는, ‘자기 나름의 전략’으로 계가례관을 활용한 사례들이 발견된다.⁴⁴⁾ 이는 개개인이 알려오는 계가례의 진위여부를 전부 판별해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계가례를 구실로 피역하려는 시도가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가례관을 구실로 삼은 전례들에 비추어볼 때, 당시 사료에 빈번히 보이는 祭使改替 기사 역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御堂關白記』에서는 계가례로 인한 春日祭使의 改替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⁴⁵⁾ 계가례를 구실로 祭使를 기피한 움직임이 실재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특정 祭使가 계가례를 이유로 改替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春日祭가 기피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⁴⁶⁾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빈번한 祭使改替가 攝關에

42) 加納重文, 『藤原道長の禁忌生活』, 村井康彦 外『公家と武家 その比較文明史的考察』, 思文閣出版, 1995, pp.133-136.

43) 위르겐 슐름본,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 2001.

44) 『御堂關白記』 1004년(寬弘元) 8월 14일조, 『御堂關白記』 1012년(長和元) 12월 19일조, 『御堂關白記』 1017년(寬仁元) 4년 17일조

45) 『御堂關白記』 1006년(寬弘3)2월 7일조, 『御堂關白記』 1008년(寬弘5) 2월 2일조, 『御堂關白記』 1010년(寬弘7) 11월 7일조, 『御堂關白記』 1011년(寬弘8) 2월 4일조, 2월 10일조, 2월 14일조 등 매해 春日祭使는 계가례로 인한 교체에 교체를 거듭하였다.

46) 『御堂關白記』에서 春日祭에 쓸 물품들을 道長에게 빌리러 온 기사가 보여 혹,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다. 이 문제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게 있어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⁴⁷⁾ 매해 계가례로 인한 祭使改替가 반복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는 허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대목에서 행위를 규제하는 계가례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관인들도 계가례관을 활용하였음을 다시 한 번 유추해볼 수 있다.

IV. 攝關政治와 계가례관

앞서 3장에서는 계가례관이 운용되는 과정과 세속 정치로의 이전을 살펴보고 시야를 좁혀 개인들이 계가례관의 규제에 순응한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가례관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시야를 道長과 三條天皇으로 옮겨 관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양자는 定穢의 결정권 행사자인 동시에 정국의 운영자이므로 그들의 계가례관은 한 개인의 결정이나 신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 정국 운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道長과 三條가 有穢事件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攝關政治와 계가례관의 연관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新帝 三條와 계가례관의 도전

三條天皇은 1011년 先帝 一條의 讓位로 제위에 올랐지만, 4살이나 어린 一條天皇의 태자로 25년을 지냈으며 즉위와 동시에 先帝 一條와 道長の 장녀 彰子の 소생인 敦成를 태자로 삼아야 했다. 특히 三條는 藤原濟時의 장녀인 娥子와 동궁시절 혼인하여 4남 2녀를 두고 있었기에, 道長는 서둘러 차녀인 妍子を 입내시켰지만 즉위 후 皇女 하나 얻는데서 그치고 있었다.⁴⁸⁾ 즉위 이듬해인 1012년(長和元)에는 道長の 딸인 妍子와 자신이 총애하는 娥子 중 누구를 후궁의 우위에 앉힐 것인가를 두고 대립하던 시점으로, 三條가 道長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娥子の 立后를 강행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祭祀는 연기하거나 계가례에 전념된 處・者を 의례의 장으로부터 배제시킨 그간의 행동유형과는 사뭇 다른, 有穢事件 중에 賀茂祭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건

47) 攝關政治期에는 藤原氏를 중심으로 春日祭의 上卿이 구성되었으나 院政期가 될수록 上卿은 攝關家の 子弟로 한정되는 경향이 현저해진다는 지적, 1008년 觸穢로 인한 春日祭使改替에 道長이 바로 이전에 奉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남 教通를 재차 春日祭使에 추천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시기 攝關家に 있어 春日祭가 갖는 의미가 상당했다. (三橋正, 『攝關期の春日祭--特に祭使と出立儀・還饗について』, 『神道宗教』, 1985 ; 渡部史之, 『春日祭と攝關家』, 『九州史學』, 2010.)

48) 당시 天皇이 후사를 어떤 후궁에게서 얻는가하는 문제는 天皇과 해당 후궁간의 사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후궁의 후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倉本一宏, 『攝關政治と王朝貴族』, 吉川弘文館, 2000) 그러므로 三條가 妍子와의 사이에 황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주목해볼만하다.

두 차례나 발생한다. 1012년 3월 25일과 5월 1일, 2차례 觸穢가 발생하였으나 實資가 賀茂祭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여 예정대로 행해진 사건이었다. 觸穢 중 賀茂祭의 진행에는 진행한 선례를 근거로 한 實資의 주장이 보인다. 有穢事件 중 賀茂祭를 연기가 많았던 사실을 볼 때 實資가 주장한 선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⁴⁹⁾ 實資가 당시 娥子立后를 실현시키는 등 三條의 정치의사를 대변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⁵⁰⁾ 이번 賀茂祭 강행은 道長과 거리를 두고 친정을 꾀하며 강한 정치 의사를 밝힌 즉위 초 三條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⁵¹⁾

2. 三條 讓位와 게가레관에의 순응

1012년 賀茂祭 진행에 三條의 의사가 반영됐다면, 1015년 일련의 伊勢使사건은 그와는 정반대로 퇴위 직전인 三條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眼病을 앓고 있던 三條는 4월 眼病平癒를 위해 伊勢使를 發遣하고자 하였으나 7차례의 有穢事件으로 누차 연기된 끝에 9월에 겨우 伊勢使가 發遣된 사건으로, 즉위 초기 有穢事件시 제사를 강행했던 三條가 이 시기에는 게가레관에 순응하고 있으며 누차 반복된 有穢事件에서 三條系皇統을 비판하는 근거로 道長이 내세운 것이 바로 게가레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다.

4월 三條의 명으로 伊勢使 發遣이 예정된 윤6월 4일로부터 3일전 발생한 1차 有穢事件은 道長이 아뢰 犬死穢이며 2차는 5일 道長이 아뢰 觸穢로, 자세한 사항은 불명확하다. 윤6월 25일로 예정된 3차 연기일로부터 2일 전인 23일 公信이 아뢰 丙穢로, 그대로 강행할 것을 지시한 三條에 대해 齊信가 三條에게 청하여 연기 지시를 얻었다. 3차 有穢事件

49) 有穢事件 중에 賀茂祭를 진행한 先例로는 958년의 『九曆』기사와 實資가 언급한 1009년의 先例를 들 수 있으며 有穢事件 중에 賀茂祭가 연기된 先例들로는 시기는 올라가지만 朱雀天皇과 攝政 忠平이 활약했던 938년의 선례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1004년과 1016년의 先例를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3~8일전에 발생한 게가레나 物忌에도 연기된 것에 반해, 불과 하루 전에 발생한 이해의 賀茂祭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남는다.

50) 三條는 道長, 道綱, 隆家, 教通으로 구성된 정국 운영을 구상하였으며 道長과의 불협화음이 보이며 道長을 대신할 정국 운영의 파트너로 實資를 상징하고 道長을 배제한 親政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三條의 정치적 이해자이자 三條와 道長의 의견차가 발생할 때, 天皇의 상담역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實資였다. (倉本一宏, 『三條天皇 : 心にもあらでうき世に長らへば』, pp. 99-119)

51) 倉本一宏, 『三條天皇 : 心にもあらでうき世に長らへば』, pp. 99-100. 保立道久도 즉위 초기 三條가 정치 전면에서 道長을 배제하고 강력한 정치 의지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三條는 道長의 라이벌인 中關白家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의욕적인 정치 의사를 보인 三條에 대해 道長이 면중복배의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한다. (保立道久, 『平安時代』, 岩波書店, 1999, pp.59-68 ; 大津透, 앞의 책, pp.340-343)

의 관련자인 齊信과 公信은 모두 道長과는 가까운 인물로, 齊信은 道長의 정국 운영을 보조한 ‘寬弘의 四納言’ 중 한 사람으로 敦成·敦良親王의 春宮大夫를 역임했으며, 公信 역시도 敦成·敦良親王의 春宮權大夫를 역임하였고 그의 처 光子는 彰子와 妍子の 女方으로 활약한 인물로 양자 모두 道長과 가까운 관계였다. 한편 道長은 三條의 有機事件 중의 伊勢使 강행 의지를 '公의 道理'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6월 26일에 발생한 4차 有機事件은 通任家の 死穢에서 출발, 敦明이 이를 전염시켜 결국 內裏까지 확산된 사건으로 伊勢使 延期에 일조한 이들을 兼隆와 奉親로, 兼隆는 부친 道兼의 사후 元服의 加冠 역을 맡은 숙부 道長의 비호를 받았으며 이후 1017년(寬仁元)에 太子 敦明에게 사퇴를 권하였으며 그 이후 敦良親王의 立太子를 공작한 인물로도 지목된다. 奉親도 道長의 家司로 양자 모두 道長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반면 전염의 책임자인 通任은 황후 娥子の 弟이자 三條의 春宮亮, 敦明의 春宮權大夫등을 역임한, 三條·敦明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계가레관을 돌파하고자 한 三條를 비판했던 道長은 이번에는 敦明을 일련의 계가레 전염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덧붙여 通任은 이번 有機事件의 책임을 지고 근신에 처해지는데, 그가 아뢰 계가레는 伊勢使를 避役하기 위한 허위로 추정되며, 30일간의 死穢로 伊勢使는 한 달가량 정지된다.

한편, 5차와 6차의 有機事件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7월 27일 5차 有機事件에서는 발견된 두개골을 두고, 근래 발생한 사체로, 五體不具穢라는 道長측과 백골에 가깝기 때문에 계가레가 아니라는 實資측이 대립한 끝에 道長이 주장한대로 五體不具穢로 결정되었으며, 다시 8월 2일 6차에는 五體不具穢라는 實資측과 死穢라는 道長측이 대립하여 30일간의 死穢로 결정된다. 5차와 6차에는 계가레 결정이 애매한 경우 행해지는 卜占까지 동원하였으나 끝내 조금 더 장기간의 근신을 주장한 道長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연기는 복합적으로 발생한 犬死穢와 傷胎穢를 끝으로 일련의 有機事件으로 인해, 伊勢使 연기사건은 막을 내린다.

伊勢使를 강행하려던 三條와 實資측과 이를 계가레를 방패삼아 저지하려는 道長측의 힘겨루기는 일련의 有機事件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다. 道長은 三條의 伊勢使 發遣 시도를 계가레관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차례에 걸쳐 방해하였으며 三條 역시도 계가레관으로 道長에 대응하려 하였으나 거듭 실패로 돌아갔다. 道長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三條와 敦明의 非違를 비판하는 근거로써 계가레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3. 攝關政治와 계가레관

본래 제의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계가레관은 점차 제의로부터 분리 독립되

어 세속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앞서 1012년 즉위 초에는 게가레관을 위반하면서까지 賀茂祭를 강행했던 三條였지만, 퇴위 직전인 1015년에는 道長이 내세운 게가레관에 의해 伊勢使 發遣은 6개월이나 연기되었다. 양측 모두 게가레관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순응 혹은 돌파라는 게가레관에의 대응은, 정치적 역관계와 논리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다.

三條가 의도한 伊勢使 發遣은 7번이나 되는 有穢事件을 모두 자신의 의도대로 관철했던 道長이지만, 그 역시도 1011년(寬弘8) 2달간 준비한 金峯山 參詣가 有穢事件으로 인해 단념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道長이 1월부터 金峯山 參詣를 위한 長齋 중이던 3월 1일 犬産穢가 발생, 다시 2일에도 犬死穢가 발생했지만 道長은 게가레관에 순응하지 않고, 參詣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6일도 怪異事件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不可派가 여론을 장악한 듯, 9일 參詣가 불가하다는 여론에 의해 결과 道長은 끝내 參詣를 단념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道長·光榮을 위시한 參詣 支持派와 實資·吉平과 같은 參詣不可派의 대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參詣不可가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9일 參詣不可派는 道長에게 參詣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며, 道長 역시 완전히 단념하지 않고 12일 陰陽師나 代理 參詣 등 대안을 고민했지만, 그들 역시 道長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 끝내 道長의 의사가 좌절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三條가 의도한 伊勢使 發遣은 7번이나 되는 有穢事件을 모두 자신의 의도대로 관철했던 道長이지만, 그 역시도 1월 8일부터 준비한 金峯山 參詣를 有穢事件 중에도 강행하려 했으나 끝내 불가하다는 여론에 압도되어 단념하고 말았던 것이다.

道長이 金峯山을 參詣한 전례는, 彰子の 회임을 빌었던 1004년의 參詣로, 彰子の 회임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道長이 이 시점에 金峯山을 參詣하려 했던 사실은 道長에게 무언가 심각한 고민 혹은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발생한 사건이 1012년의 賀茂祭 진행이라는 사실과 종합해 볼때, 兩統迭立이라는 상황 속에 一條系와의 관계 구축에만 성공한 道長이 一條의 퇴위와 三條의 즉위라는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에 약간 위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이 시기 道長의 주위에 공경들과의 불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개월간 준비해온 參詣가 道長의 강행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해 끝내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는 一條의 敦康에 대한 애정, 동궁인 居貞(三條)측의 탄탄한 후계구도 등 道長의 불안요소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道長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參詣不可派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대의 실세인 道長도 불안한 정국 속에서는 게가레관에 순응하였고, 자신이 유리한 시점에는 게가레관을 명분으로 天皇權마저 압박하는 등,

게가레관의 대응에는 당시의 정세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게가레관의 의의에 대해서 덧붙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山本幸司는 게가레관의 중세적 전개에 대해 논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정확히 언제 게가레관이 중세적인 전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나, 중세적 게가레관의 특징으로 서국에서 동국으로의 지역적 확산, 게가레관의 애매성과 그 범주의 확대, 편법의 사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⁵²⁾ 게가레관이 神祇祭祀영역에서 이탈하는 10세기는 이른바 10세기 전환론으로 일컬어지는, 고대와 중세간의 이행기로도 지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⁵³⁾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게가레관의 전개를 정리해보면, 平安初期 弘仁・貞觀格式을 거쳐 延喜式 단계에 정리된 게가레관은,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점차 神祇祭祀를 탈피하여 세속 정치로 그 영역을 옮겨왔다. 그 과정 중에 개개인이 게가레관을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三條나 道長과 같은 당대의 권력자들도 게가레관을 적극 활용하였다. 천황과 섭관의 힘겨루기에 게가레관이 적극 활용되는 등 세속 정치에서 한층 더 적극 활용되기 시작해, 게가레관의 정치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게가레관은 10세기에는 神祇祭祀로부터 이탈하였으며, 늦어도 11세기 초반에는 세속 정치 영역으로 완전히 이전, 섭관과 천황의 대립 한가운데에 게가레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세에 접어들며 게가레관이 제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시기에 나타난 게가레관의 정치화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V. 나가며

지금까지 平安 攝關時期, 게가레관의 전개와 변용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死穢, 産穢, 六畜死産穢를 비롯해, 여성의 月經[月事穢]・妊娠[懷妊]・流産[傷態穢], 전염되는 觸穢, 肉食, 弔喪, 問疾, 改葬, 失火[失火穢] 등 인간의 生老病死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괄한 추상적인 관념 체계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결한 게가레로 규정하여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자를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하는 게가레관은 본래 제의로부터 부정을 배제하여 청정을 유지하고자

⁵²⁾ 山本幸司, 『穢れ觀と中世社會』, 日本史講座 第3卷 中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2004.

⁵³⁾ 石母田正가 제기한 이래 고대사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은 10세기 전환론은, 현재 9세기 말~10세기초를 劃期로 본 견해, 10세기 후반~11세기 후반을 후기율령국가로 보는 견해와 10세기 후반이래의 후기 섭관정치를 초기권문정치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佐藤全敏, 『攝關期と律令制-後期律令國家論をめぐって』, 『日本史研究』, 2000 ; 森田悌, 『王朝政治』, 講談社, 2004 외.)

설정되었지만, 이후 平安京의 성립, 사체를 그대로 방치하는 葬法으로 인한 위생상태의 악화, 게가레관을 이용한 재이관의 변화 등으로 당시 국가 위기 관리책의 일환으로 중시되었다. 이후 『延喜式』, 儀式書들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지만 人間六畜의 행위 전반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가레관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게가레관을 유지하려는 측과 충돌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국가 의례 진행과 게가레관 준수간의 모순을 절충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나타났다.

게가레관의 실질적 운용과정을 살펴보면, 有穢事件이 발생하면 먼저 그 상황을 보고하고 게가레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의례 일정을 조정하거나 근신한다. 이 때 국가가 게가레관 위반자를 처벌하여, 게가레관 준수의 당위성을 국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게가레 여부가 애매한 경우, 공경들이 모여 의논하는 定穢의 과정을 거치는데, 定穢에서 참고하는 先例는 취사선택될 수 있었으며 定穢의 결정권은 결국, 天皇과 攝關에 의해 향유되었다. 이로 인해 게가레관은 신기제사 영역에서 탈피하여 세속 정치로 그 영역을 옮겨, 祭祀의 避役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게가레관의 활용은, 천황과 섭관에게서도 보여 三條의 경우 有穢事件 중에 賀茂祭를 강행하였으나 강력히 추진하였던 伊勢使의 경우, 게가레관을 활용하여 三條측을 비난하고, 伊勢使를 누차 연기시킨 道長의 게가레관에 압도되어 6개월만에 伊勢使를 파견한 사실이 보이며, 道長 역시 일관적으로 게가레관을 준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有穢事件 중에 金峯山 參詣를 강행하려다, 끝내 參詣不可측의 여론에 눌려 參詣를 단념하는 등, 각자 게가레관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순응과 돌파로 상반된 대응을 보였던 것이다. 게가레관의 대응에는 당시의 정세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게가레관은 10세기, 神祇祭祀로부터 이탈하였으며 세속 정치로 그 활동 무대를 옮겨왔으며, 11세기 초반에는 섭관과 천황의 대립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이어 중세에 게가레관이 제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산해나가는 그 배경에는 게가레관의 정치화가 있었던 것이다.

민중사관을 가장한 식민사관

— 일본 왜구 연구의 허구와 실체 —

이 영(방송대)

目次

서론

1. 일본 왜구 연구의 문제점과 ‘한반도 멸시관’
2. 일본 왜구 연구 속의 식민사관과 민중사관
3. 남북조 정운문제와 왜구 연구
4. <삼도 해민설>과 <바다를 건넌 남북조 내란설>

결론

서론

14세기 후반 - 임진왜란(1592년) 이전까지 동 아시아 국제관계에 관한 역사상(歷史像)의 뼈대는 일본 연구자들이 구축(構築)해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왜구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 명치시대(1868년-1912년) 이래, 일본의 왜구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학설을 제기해왔다.¹⁾ 그리고 일본 측 왜구 연구의 성과를 한국학계도 구체적인 검토나 별다른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학설들 중에는 일본 사회에 뿌리 깊은 ‘한반도 멸시관’에 입각한 것, 또는 한국사에 대한 무지(無知)와 오해(誤解)에서 비롯된 오류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왜구의 역사적 역할이 과소평가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해당 시대의 전체적인 역사상(歷史像)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왜구 학설 중, 가장 고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소위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실체=삼도(쓰시마·이키·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이다.²⁾ 이 학설은 2010

1)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吉川弘文館, 2003년)을 참조.

2) 이하, <삼도 해민설>이라고 하자.

년도에 종료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에서 양국이 합의(合意)한 유일한 성과물로, 언론지상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설의 오류와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별고에서 지적한 바 있다.³⁾

본고에서는 <삼도 해민설>이 제기되게 된 배경과 원인을, ‘한반도 멸시관’과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역사학 연구 및 역사교육이 겪어야했던 정치와의 갈등, 이라고 하는 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삼도 해민설>이 이후 왜구 연구의 전개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일본인들이 왜곡한 왜구상(倭寇像)을 바로 잡고 또 그러한 왜곡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그 결과 왜구 연구가 비단 한국사 또는 일본사 라는 일국사(一國史)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왜구 연구가 근대 이후 일본 국내의 정치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1. 일본 왜구 연구의 문제점과 ‘한반도 멸시관’

일본의 왜구 연구가 지금까지 제시해 온, 왜구의 발생 배경 및 주체에 관한 제(諸) 학설의 오류는, 단순히 연구방법상의 문제나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무지’ 내지는 ‘몰이해’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속단(速斷)하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다.⁴⁾ 이하, 왜구의 주체 및 발생 배경에 관한 일본의 기존 학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일본 측이 제시한 왜구 주체 및 발생 배경에 관한 기존 학설

	연도	학 설	연구자
①	1915	<왜구=남조(南朝)의 수군>	후지타 아키라(藤田明) ⁵⁾
②	1948	<왜구=무장 상인단>	모리 가쓰미(森克己) ⁶⁾
③	1955	<왜구=몽고의 일본 침공에 대한 복수>	아오야마 고료(青山公亮) ⁷⁾
④	1955	<왜구=對馬 · 壹岐 지역의 경제적 빈곤>	아오야마 고료 ⁸⁾

3) 이영『<고려 말 · 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 · 이키 · 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일본문화연구』제38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2011년 4월).

4) 필자는 이미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즉 현재 일본의 고려 및 조선 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자들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수년간의 유학 경험은 물론,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읽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연구 방법은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중에서 ‘일본’ 또는 ‘왜’ ‘왜구’라는 글자가 보이는 사료에만 주목한 다음, 자신들의 단편적인 한국 관련 지식(대부분의 경우, 식민사관에 기반을 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해석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영『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의 문제점』(『동 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下) 제이앤씨, 2010년).

⑤	1959	<왜구=삼도 지역 해민설>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⁹⁾
⑥	1967	<왜구=남조의 전력 보급 및 증강>	사토 신이치(佐藤進一) ¹⁰⁾
⑦	1967	<왜구=九州 지역의 경제 성장>	가와이 마사하루(河合正治) ¹¹⁾
⑧	1967	<왜구 발생원인=고려 토지제도의 문란>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 ¹²⁾
⑨	1967	<왜구 발생원인=고려 측의 무역 제한>	다무라 히로유키 ¹³⁾
⑩	1987	<왜구=남조의, 瀬戸内海 - 九州 지역의 해적>	미야모토 쓰네히치(宮本常一) ¹⁴⁾
⑪	1987	<왜구=고려 · 조선인 주체>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¹⁵⁾
		<왜구=고려 · 일본인 연합>	다카하시 고메이(高橋公明) ¹⁶⁾
⑫	1988	<왜구=악당인(惡党人)>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¹⁷⁾
⑬	1998	<왜구=다민족 · 복합적 해적>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 ¹⁸⁾

이를 다시 정리하면, 왜구의 발생 및 실체에 관해 고려(조선) 책임론과 일본 책임론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일본 책임론은 남북조 내란기라는 특수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짓는 견해와 단순히 지역적 특성(한반도와 인접하면서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 그리고 사회적 특성(해민·해적·무장상인)에서 그 원인과 실체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¹⁹⁾ 이처럼 왜구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난무(亂舞)하는 이유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진 왜구들, 시대별로 세분(細分)해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5) 藤田明『征西將軍宮』(東京宝文館, 1915년).

6) 森克己『日宋貿易の研究』(国立書院, 1948년).

7) 青山公亮『日麗交渉史の研究』(明治大学文学部文学研究所, 1955년).

8) 앞의 주(7) 青山 연구서.

9) 田中健夫『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59년).

10) 佐藤進一『南北朝の動乱』(中央公論社, 1965년).

11) 河合正治『瀬戸内海の歴史』(至文堂, 1967년).

12) 田村洋幸『中世日朝貿易の研究』(三和書房, 1967년).

13) 앞의 주(12) 田村 연구서.

14) 宮本常一 編著『旅の民俗と歴史7. 海と日本人』(八坂書房, 1987년).

15)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交通圏』(『日本の社会史』제1권, 列島内外の交通と国家, 岩波書店, 1987년).

16)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33, 1987년).

17) 村井章介『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東京, 1988년).

18) 藤田明良 『東アジアにおける海域と国家, 一四〜一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歴史評論』 575, 1998년).

19) 이상의 학설은 왜구 발호의 원인을 고려 내부에서 구하는 것(⑧·⑨), 그리고 왜구의 실체가 고려(조선)인 또는 고려(조선)인과 일본인 연합이었다는 것(⑪·⑬))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본 내부에서 찾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류하면, 소위 ‘남북조 내란’이라고 하는 일본 국내 정세와 결부시킨 견해(①·⑥·⑩)가 있고, 또 단순히 ‘규슈’ 또는 ‘삼도’라는 식으로 지역만 제시한 견해(①·④·⑤·⑦)가 있다. 또한 사회적 계층을 제시한 것(②·⑤·⑩·⑫·⑬)이 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왜구 연구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고려 말 왜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다나카 다케오로 대표되는 일본의 왜구 연구는 『고려사』에 보이는 수많은 왜구 관련 기사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료적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무시(無視)해왔다.²⁰⁾ 그리고 그나마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고려사』에서 ‘일본’ 또는 ‘왜’ ‘왜구’라는 글자가 보이는 사료에만 주목한 다음, 자신들의 단편적인 한국사 인식(대부분, 식민사관에 기반을 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이러한 연구 태도에는 다분히 고의성(故意性)이 엿보인다. 그들은 고려 말 왜구를 적극적으로 고찰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그들이 고려 말 왜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한반도 멸시관蔑視觀’)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멸시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공황후(神功皇后) 전설’이다.

남북조 내란 기간 중(1335-92)에 해당하는 1370년 무렵에 쓰여진, 군기모노가타리(軍記物語)²¹⁾ 『태평기(太平記)』의 『神功皇后、新羅を攻めたまふ事(신공황후, 신라를 공격하다)』라는 장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²²⁾

1. 스와(諏訪) · 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을 부장군(副將軍)과 비장군(裨將軍)으로 삼고 다른 크고 작은 여러 신들은 누각이 있는 큰 배(樓船) 3000여척을 나란히 저으면서 고려국으로 몰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오랑캐들은 병선 1만 여 척을 나누어 타고 싸우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 ㉔전투의 승패가 아직 결정되기 전에 신공황후가 우선 간주(干珠)를 바다 속으로 던지자 조수가 갑자기 밀려가서 바다가 육지로 변하였다. 삼한(三韓)의 병사들은 하늘이 우리 편을 들고 있다고 기뻐하여 모두 배에서 내려서서 싸웠다.

이 때 또 황후가 만주(滿珠)를 잡아서 던지자 조수가 사방에서 몰려와 수 만 명의 오랑캐들이 한 놈도 남지 않고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 ㉕이것을 본 삼한 오랑캐의 왕이 스스로 사죄하기 위하여 항복하러 오자 황후는 가지고 있던 활 끝으로 “고려왕은 우리 일본의 개(犬)다”라고 석벽(石壁)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였다.

20) 다나카는 “왜구라는 단어는 원래 조선인과 중국인이 만든 것으로, 사료는 당연히 조선과 중국 등의 외국 사료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사료는 부차적인 의의밖에 없다” “이들 사료에 보이는 왜구상에는 외국 사료라고 하는 베일과 조선 왕조 시대의 사료라고 하는 베일이 이중으로 씌워져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다나카의 신뢰성 의문 제기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영 『고려 말기 왜구의 실상과 전개 - 『고려사』의 재검토를 통한 기존 학설의 비판 -』(『倭寇と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99년). 2011년에 해안 출판사에서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번역 출판.

21) ‘군기모노가타리’란 무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이야기, 라는 의미이다.

22) 『太平記』 권제39, 『神功皇后、新羅を攻めたまふ事(신공황후, 신라를 공격하다)』.

일본의 여러 신(神)들을 장군으로 앞세워 삼한(三韓)을 침공, 병력의 열세 속에서도 신공황후가 간주(干珠)와 만주(滿珠)라는 신비로운 구슬을 바다에 던져서 이겼다, 고 하는 황당한 전설을 늘어놓고 있으며, ‘고려왕은 일본의 개’라고 조롱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전국 각지에 수만 개나 있는 신사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소위 ‘고마이누(狛犬)’ 즉 ‘고려(高麗)의 개’는 이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²³⁾

똑같은 『태평기』에서 몽고군의 침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일본 전국의 귀천(貴賤)과 상하(上下)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였다”²⁴⁾며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것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국(일본)은 ‘무위(武威)의 나라’인데 반해 고려는 ‘문약(文弱)’하다는 식의 ‘한반도 멸시관’은 뒷날 조선을 보호국(保護國)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민지화(植民地化)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한반도 멸시관’은 ‘식민사관’의 전제(前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멸시관이 왜구 연구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일본의 왜구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왜구 금압과 피로인 송환에 협조적이었던 규슈 탐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대(對) 고려 및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의 대명(對明) 교섭을 한결같이, ‘상행위’ 또는 ‘중국 무역의 이익 획득’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대한 멸시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었던 중국에 대해, 이 두 사람이 취했던 외교적인 저자세(低姿勢)라는 사실(史實)을 심정적(心情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²⁵⁾

이러한 신공황후 전설은 비단 『태평기(太平記)』가 쓰여진 14세기 후반이 아니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고대(古代)의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된다.²⁶⁾ 그리고 거기에 입각한 ‘한반도 멸시관’은 지금까지도 연면(連續)히 이어져 내려오

23) ‘고려(高麗)’를 일본인들은 ‘고마’라고 읽는다. 따라서 ‘고마이누(狛犬)’는 ‘高麗의 개’와 같은 의미이다.

24) 앞의 주(22) 사료 참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영『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공민왕15년(1366)의 금왜사절(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26집, 2007년)을 참조.

25)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36집, 2010년 8월)을 참조.

26)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담은, 고대에 형성된 전설적 이야기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승되면서 일본인의 대외사상으로 정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라와의 적대적 시기에 형성된 이 가공의 이야기는 일본의 대외적 긴장이 높아가는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게 된다. 8세기 신라와의 경쟁관계에 있을 때 일본은 신공황후전설을 거론하며 외교의 장에서 일본의 대(對)신라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몽고의 침략기에도 신공황후는 신앙화되어 외적의 격퇴를 비는 의식이 행해졌다. 임진왜란 때에도 조선에 출병한 무사들 세계에서도 신공황후전설은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였다. 일본의 한국 지배기에는 이를 현실교육의 장에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의 <표1> 다나카의 ⑪, <고려·조선인 주체>설 내지는 <고려·일본인 연합>설이다.

왜구의 실체가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에서 건너간 일본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고려(조선)인이었다, 고 하는 것이 전자(前者)이고, 왜구의 실체는 고려인과 일본인의 연합, 이라고 하는 것이 후자(後者)에 해당한다.

다나카는, 구체적으로 고려(조선)의 왜구 구성원 및 일본인들과 연합한 사람들은 (1)화척(禾尺=揚水尺) · 재인(才人) (2)일반농민 (3)제주도인들이라고 했다. 이 학설의 허구성과 그것이 지닌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므로²⁷⁾ 여기서 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또는 『목은시고(牧隱詩稿)』²⁸⁾ 등 많은 왜구 관련 사료에 다나카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기사는 단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나카는 40여 년 동안 이런 사실을 단 한 차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고려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었다, 고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연구는 ‘신공황후 전설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왜구 연구가 <고려 말 왜구>를 적극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과 한반도 멸시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고려사』에 왜구가 고려군과 싸워서 백전백승(百戰百勝)한 것이 아니라, 패한 기사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2. 강주원수(江州元帥) 배극렴이 또 왜와 더불어 싸우매 적괴(賊魁) 패가대만호(霸家臺萬戶)가 큰 쇠 투구를 쓰고 수족(手足)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옷을 입고 보졸(步卒)로 하여금 좌우익(左右翼)으로 하여 말을 달려 전진하다가 말이 흙탕 속에 빠져 멈추므로 아군이 영격(迎擊)하여 이를 참(斬)하였다.²⁹⁾

여기서 ‘패가대’란 하카타(博多)를 의미한다. 따라서 ‘패가대만호’는 그 정확한 신원을 추려내기는 어렵지만, 하카타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만호’ 즉 높은 지위(高位)의 무장(武

신공황후 전설은 역사적 계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본인의 대한(對韓) 우월적 사고의 형성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실체이다. 특히 현실의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 재일 한국인에 대한 멸시관은 근대 이후의 역사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계승된 신공황후의 전설에 기인한 바 적지 않다. 이상의 내용은 연민수『신공황후 전설과 일본인의 대한관(對韓觀)』(『한일관계사연구』 24권, 2006년)에 의한.

27) 『고려말기 왜구 구성원에 관한 고찰-‘고려, 일본인 연합론’ 또는 ‘고려, 조선인 주체론의 비판적 검토-』(『한일관계사연구』 제5집, 1996년). 『倭寇と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99년, 저서 단독.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년으로 번역 출판).

28) 고려 말의 고관이며 학자인 목은 이색의 시집에는 왜구와 관련된 시가 50여수 확인된다.

29) 『고려사』 권제116. 열전 권제 29. 박위 전.

將)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점은 그의 무장 형태나 ‘좌우익’을 거느렸다, 고 하는 묘사에서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고려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패가대’라고 하는 용어를 당시 왜구 대장에게 사용했을 리가 없다.

특히 이성계가 남원시 운봉읍 인월리에서 무찌른 왜구 집단³⁰⁾의 청년 대장 아지발도는, 아주 신분이 고귀한 일본 무사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아지발도는 나이가 불과 15-6세 정도에 불과한데도, 경신년(1380년) 왜구의 총대장으로서 500척의 대 선단을 이끌고 있었으며, 또 당시 왜구 집단 내의 여러 두목들이 매번 아지발도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고 하는 점, 그리고 백마를 탄 외모가 단아하며 뛰어난 무예를 갖춘 총 대장이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³¹⁾ 아지발도의, 집단 내부의 다른 왜구 두목들과는 현격하게 구별되는 그의 높은 지위는, 전공(戰功)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출생의 신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지발도가 예상롭지 않은 고귀한 신분임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케가미 유코(池上裕子)는 <경인년(1350년) 이후의 왜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고려의 군대를 물리치고 약탈을 마음대로 한 왜구의 강력한 전력(戰力)은 고려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선박과 충실한 무기(武器) 무기(武具)와 전투경험으로 단련된 전투력과 뛰어난 조직, 그리고 지휘자의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 해도 좋다.³²⁾

『고려사』의 왜구 관련 사료를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솔직하게 읽는다면, 누구라도 이케가미 유코 처럼, 왜구가 전투에 숙련된 전문적인 전투 집단, 즉 남북조 내란기의 무사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케가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일본의 무사들이 고려군과 싸워 패퇴했다, 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신공황후 전설>의 내용과 모순되며, 그들의 ‘한반도 멸시관’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일본 국영방송인 NHK가 방송한 ‘일한교류(日韓交流) 2천년’이란 프로그램에서는 『고려사』에서 분명히 왜구의 청년대장이라고 한, 아지발도(阿只拔都)를, 몽골계의 제주도 목자(牧子) 출신이라고 하면서 몽고의 갑옷과 투구

30) 이를 ‘경신년(1380) 왜구’라고 한다. 이 경신년 왜구에 관해서는 이영『경신년 왜구의 이동과 전투』, 동『손자병법을 통해 살펴본 왜구사 최대의 격전(황산전투)』, (둘 다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피스테메, 2007년). 동『고려 말의 왜구와 남조, - 경신년(1380) 왜구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30집, 2008년 12월)을 참조.

31) 『고려사』 권제126. 열전 권제 39. 변안렬 전.

32) 『倭寇-その戦力源は何か』〔佐藤和彦 編『日本史の謎と発見』南朝と北朝,毎日新聞社,1979年〕200~201쪽).

를 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일본 왜구 연구 속의 식민사관과 민중사관

이상과 같은 이유가 『고려사』의 왜구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고려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후대에 편찬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³³⁾ 고 하면서 『고려사』를 배제하고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조선 전기는 물론, 고려 말 왜구까지 유추(類推)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도출해낸 것이 바로 <삼도 해민설>이다. 그런데 이 설을 가지고 고려시대의 왜구를 연구하려고 하니, 『고려사』에는 ‘삼도의 해민들’만 가지고서는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왜구 침구 기사가 있고 또 왜구들의 선단도 수십 척에서 최고 500척이나 되는 규모였다. 그래서 다나카는 이들 왜구가 다 대마도에서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無理), 라고 하면서³⁴⁾ <고려(조선)인 주체설> 또는 <고려(일본)일 연합설>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 설은 또 다시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설>로 발전한다.

그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려 말 왜구의 실체가 일본인만이 아니라, 고려인은 물론 중국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설의 허구성에 관해서도 이미 별도로 검토한 바 있다.³⁵⁾

그런데 이들 <고려(조선)인 주체설><고려(일본)일 연합설><다민족·복합적 해적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일본 역사학계를 지배했던 마르크스 사관, 다시 말해 ‘민중사관’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다. 즉 2차 대전 이후, 일본 역사학계는 일본 사회와 국민들을 전쟁이라는 불행으로 몰고 간 이유 중 하나로, 전전(戰前)의 황국사관(皇國史觀)에 입각한 역사 연구와 교육을 들었다. 따라서 전후에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마르크스 사관에 입각한 역사 연구와 교육이 대세를 이루었다.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당해 온 민중들이 역사 발전의 주체, 로 보는 것이 마르크스 사관이라 할 수 있는데, 다나카를 비롯한 일본의 왜구 연구는 고려(조선)의 억압받는 민중, 예를 들면 양수척·재인·농민·제주도

33) 田中健夫『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日本の社會史(1)-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岩波書店, 1987년) 141쪽.

34) 앞의 주(33) 田中 논문 146쪽.

35) 이영『왜구 다민족, 복합적 해적설의 허구와 문제점-식민사관과 관련하여』(『동북아역사논총』 28집. 2010년 6월). 동『<여말-선초의 한반도 연해도서=다민족 잡거 지역>설의 비판적 검토』(『동북아문화연구』제29집. 2011년 12월)을 참조.

인들과 일본의 변경 지역의 해민들이 연합해 국가권력의 지배에 저항하고 도전한 것이,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실체였던 것처럼 분식(粉飾)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나카의, ‘민중사관’을 가장한 ‘식민사관’이 남북조 내란기 당시의 왜구 인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 사례이다. 현재 남북조 내란사의 전문 연구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모리 시게아키(森茂曉)는 최근에 발간한 『戰争の日本史8 南北朝の動亂』중의 「日朝・日琉關係の諸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³⁶⁾.

다음은 조선과의 관계이다. 14세기말까지 존속했던 고려와, 일본과의 정식 통교관계는 없었지만 교류 그 자체는 있었다. (중략) 거꾸로 생각하자면, 당시 다자이후를 거점으로 하여 규슈 전역에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정서부와 왜구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기타가타 겐조(北方謙三)씨의 역사소설 『무왕의 문(武王の門)』(上・下, 新潮社, 1993년)은, 규슈 왕국을 수립한 정서부의 주사(主師) 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이 자신이 속한 남조(南朝)라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무역, 교역이라고 하는 인적 교류를 매개로 하여, 고려와 결합함으로써 규슈의 독립을 지향한다고 하는 장대한 구상에 서있다.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현실화(現實化)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구상이었다.

모리는 자신의 책에서 ‘왜구’라는 역사현상을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역사소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조 내란과 고려 말 왜구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전무(全無)한 것도 아니다.³⁷⁾

어쨌든 남북조 시대의 전문 연구자인 모리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기에,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무왕의 문(武王の門)』은 1993년에 출간된 이후 11년이 지난 2004년 현재 11쇄나 발간된 책이다. 소수의 제한적인 연구자들이 읽는 논문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모리가 “무역, 교역이라고 하는 인적 교류를 매개로 하여, 고려와 결합함으로써 규슈의 독립을 지향 한다”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소설에 인용된 다음 문장들을 보기로 하자.

36) 吉川弘文館. 2007년. 이하, 모리 시게아키와 기타가타 겐조에 대한 비판은, 이영『왜구 다민족, 복합적 해적설의 허구와 문제점 - 식민사관과 관련하여』(『동북아역사논총』 28집, 2010년 6월)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전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37) 예를 들어 이영『庚寅年以降の倭寇と内亂期の日本社會』(『倭寇と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99년). 2011년에 해안 출판사에서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로 번역 출판.

(가네요시 왕자) - 대륙 연안과 고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일본의 수군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아쿠리: 가네요시 왕자의 여자, 역자 주)-㉠오히려 고려 수군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들도 역시 고려 왕조를 타도하려고 합니다만, 일본 수군의 힘이 필요합니다³⁸⁾.

당시의 왜구가 원나라 말기에 반기(叛旗)를 든 한인군웅(漢人群雄) 중 한 사람으로 뒤에 주원장(朱元璋)에게 토벌되는 장사성(張士誠) 휘하의 수군과 고려의 수군(해적) 그리고 일본의 규슈 남조 세력인 정서부(征西府)의 수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 하는 작가의 설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후지타 아키요시의 <왜구=다민족, 복합적 해적>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후지타는 “(난 수산의)반란군에는 주산열도(舟山列島)의 다른 섬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나 고려 연안의 해상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기타가타의 소설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고려 수군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들도 역시 고려 왕조를 타도하려고 합니다만, 일본 수군의 힘이 필요합니다”에서 보듯이, 중국과 고려 연안에서 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왜구’들이, 사실은 일본인들보다도 고려 수군이 더 많다고 서술함으로써 <일본인의 해적 행위>를 <고려인의 소행>으로 전가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들 고려 수군이 고려 왕조를 타도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일본 수군의 힘이 필요하다, 고 하는 ‘침략의 명분’을 슬그머니 복선으로 깔고 있다. 이는 고려를 침구한 왜구가, 고려 백성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식의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堀田安秋(가네요시 왕자의 부하) - 이 집 주인은 고려 왕조의 일족입니다만, 왕조 내에서의 지위는 높지 않습니다. 몰래 고려 수군과 손잡고 원나라의 영해(寧海)나 교주(膠州)를 침구하고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약탈해 온 물건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병(私兵)은 이 천 명 정도 거느리고 있어서 고려 왕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³⁹⁾.

여기서는 중국과 고려 연해 지방을 침구하고 있는 고려 수군의 배후 조종인물로 고려 왕족인 서포(西浦)라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불과 2천 명 정도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려 왕조가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였다 고 서술하고 있다. 즉 작가의 인식에 따르면, 고려 조정은 백성들도 이미 등을 돌렸고 겨우 사

38) 기타가타 겐조(北方謙三)『무왕의 문(武王の門)』新潮社, 1993년. 142쪽.

39) 앞의 주(38) 책. 152쪽.

병 2천명을 거느린 왕족 내부의 배신자가 고려 수군을 조종해 ‘왜구’행위를 저지르고 있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서포(西浦)라고 불러주십시오, 남포(南浦)님의 이름을 본 따서 지은 일본 이름입니다. (가네요시 왕자)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西浦) -㉢일본 수군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려는 항상 대륙의 속국이었습니다. 원나라든 송나라든 항상 속국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조는 아무 말없이 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작아도 나라는 나라입니다. 고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를 떼땀하게 자기 다리로 서야 합니다⁴⁰⁾.

위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연상시키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단지 ‘서포’라는 친일적(親日的)인 인물이 일본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이야기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한 것은, 일제 강점기 당시의 창씨개명이 결코 일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과 친해지고자,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다”, 라는 식의 민족적인 우월감에 입각해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

작가의 고려사(高麗史)와 전근대 동 아시아 국가간의 국제 질서에 관한 무지(無知)함과 왜곡된 인식은, “㉣고려는 항상 대륙의 속국이었습니다. 원나라든 송나라든 항상 속국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조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근대 동 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중원에 위치한 대륙 국가와 주변 국가 사이의 소위 ‘책봉관계’를 매개로 하여 성립되어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책봉질서 속에 편입됨으로써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를 실현하고 또 책봉국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였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국제관계였다. ‘속국’이라 함은, 근대 이후의 소위 ‘식민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었다.

작가의 이러한 대(對) 한반도 인식은 소위 ‘식민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다음을 보자.

40) 앞의 주(38) 책. 153쪽.

41) 식민사관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소위 ‘타율성론’으로 한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 한반도 지역의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다. 즉 한반도의 역사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중국, 만주, 일본 등 주변 민족의 자극과 지배에 의해서만 유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일본의 ‘남한 경영설’과 ‘임나일본부설’을 조작하여 한반도의 일부가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 고 하고 중세에는 당(唐), 명(明), 청(淸) 등 중국의 역

㉔(西浦)-원나라는 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왕조도.....왕족인 제가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백성을 불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소 가난해도 좋지만.... (고려) 왕조가 원나라에 이부하는 한, 백성은 불쌍해집니다. (중략) - 고맙습니다. ㉕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대륙에서 독립한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속국 상태로는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부유해집니다. 대륙에서부터 독립해도 이 나라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습니다. 힘을 합칠 상대가 필요합니다.

㉖서포(西浦)가 가네요시를 응시하고 있다. 어디까지 규슈 정세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힘을 합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⁴²⁾.

원나라와 고려 왕조를 타도해야 한다(㉗)고 하면서, 우선은 “대륙에서 독립한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하고(㉔)”, 또 “대륙에서부터 독립해도 이 나라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며, 힘을 합칠 상대가 필요하다(㉕)”고 서포(西浦)라는 작가가 설정한 가공의 인물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 “가네요시는 서포(西浦)가 힘을 합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㉖)고 하고 있다.

이처럼 기타가타(北方)는, 왕조 내부에 반역을 꾀하는 서포(西浦)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고려가 송(宋)이나 원(元)과 같은, 대륙 국가에 맹목적인 사대주의(事大主義) 정책으로 일관하는 허약한 국가이며 백성들을 불쌍하게 하는 왕조라고 매도한다. 그리고 원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 왕조를 타도해야 하고, 또 일본(정서부)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정서부는 그러한 고려 내부의 원조 요청에 응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다음을 보자.

상해 앞 바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보통 바다로 돌아와 있었다. 이미 현해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황해다. (중략) ㉘고려의 세키부네(關船)는 하구에 있는 항구를 습격할 것이다. 약탈한 물건도 배에 싣고 있다. 그것을, 명나라 세키부네가 추격해온다. 상해 앞 바다를 침구 지역으로 정한 것은 양측의 배의 속도를 계산해서 고려의 고참 수군대장이 결정한 것이다. (중략) 이 해역에서는 장사성의 휘하에 있는 수군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언젠가 500척의 세키부네(關船)가 되었다⁴³⁾.

러 왕조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 하려는 시도가 ‘타율성론’의 실체이다.

42) 앞의 주(38) 책. 170쪽.

43) 앞의 주(38) 책. 184쪽.

고려에 원정 간 수군은 희생은 컸지만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다. (중략) 그러나 주 원장은 수군의 주력 대부분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㉔장사성의 잔당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 일본과 고려 수군과 연합해 원나라에 대신한 명나라를 크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⁴⁴⁾

㉕지도 위에는 이키, 쓰시마가 있고 더 위에 고려의 남쪽 지방까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니 고려까지가 마치 하나의 국가 같다.⁴⁵⁾

작가에게 있어서 왜구는 ‘장사성의 잔당인 해적들과 고려와 일본 수군의 연합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규슈와 고려가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것(㉕)’이다. 그것도 고려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면적을 지닌 규슈 지역의 정서부 권력이 주체가 되고 고려는 그의 보호를 받는 국가인 것이다.

이상의 단편적인 문장들을 통해, 이 소설이 일본의 전통적인 침략논리에 입각해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친일파(西浦)의 등장 -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전(前) 단계로서 청나라로부터의 형식적인 독립(청일전쟁) - 조선의 식민지화(조선 왕조의 멸망) 등, 마치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을, 소설 줄거리로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을 단순히 작가 개인의 허황된 망상(妄想)이라고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대 역사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임을 자부하는 모리 시게아키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현실화(現實化)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구상이었다”고 한 점이다. 물론 모리가 고려사는 물론, 이 시대의 대외관계사 연구자도 아니지만, 일본의 역사학계에 아직도 식민사관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한국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對) 한반도 인식의 문제는 비단 모리(森)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구 관련 사료의 자의적 해적과 의도적인 왜곡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동경대학의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고려사』공민왕 14(1357)년 3월 기사일 조의 “왜구가 창릉(昌陵)에 침구하여 세조의 진영(眞影)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세조’를 원의 세조, 즉 ‘쿠빌라이’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 사료에 보이는 왜구의 실체를 고려인 또는 일본인과 연합한 고려인으로 추정했다.⁴⁶⁾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릉(현재 북한의 개풍군 창릉리 소재)은

44) 앞의 주(38) 책. 259쪽.

45) 앞의 주(38) 책. 346쪽.

46)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해 이미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공민왕 14(1357)년 9월 26일에 홍천사에 침구한 왜구가, 대마도의 영주 쇼니 요리히사의 휘하 세력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1357년 9월 26일에 홍천사에 침구했는데, 같은 해 10월 16일에 오오쿠라 쓰네다네(大藏經種)라는 인물이,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의 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사료의 오독(誤讀)을 필자는 이미 다른 기회에 지적한 바 있었다.⁴⁷⁾ 또한 무라이 본인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⁴⁸⁾ 그런데 이후 또 다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357년에는 바다에서 개경으로 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승천부 홍천사에 침입하여 충정
정왕의 조부 충선왕과 그 정실 한국공주(원의 황족 출신)의 진영(초상화)를 가지고 왔다.
(중략) 왕가의 선조의 초상화가 지니는 종교적 권위와 그것을 가지고 가는 행위의 반국가
성(反國家性)을 엿볼 수 있다⁴⁹⁾.

여기서도 명확하게 당시 홍천사에 침구한 왜구가 일본인이 아니라 고려인이었다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하게 ‘반국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왜구가 사실은 고려인이었다, 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무라이(村井)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본래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해야 할 조선·중국의 연해 주민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왜
구라고 하는 것은 동포(同胞)이기는커녕 악귀(惡鬼)와 같은 집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
다, 고 하는 심각한 사실이다. (중략) 지역에 대한 왜구의 이러한 이면적(二面的)인 관계를

대마도의 쫄쫄 마을의 다구쓰다마 신사에 고려의 진양부(晉陽府)에서 제조하게 한 청동제 반자를 기증하고 있으며(『쓰시마 쫄쫄 다구쓰다마 신사 소재 고려 청동제 반자와 왜구』 『한국중세사연구』 제25호, 2008년 10월). 또 같은 12월에는 당시 왜구의 배후 조종 인물인 쇼니 요리히사가 규슈의 덴만구(天満宮)에 『금자묘법연화경』을 기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¹⁾. 이 두 가지 고려의 불교 문화재는 모두 승천부 홍천사에서 왜구들이 약탈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가현립(佐賀縣立)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카가미(鏡) 신사의 ‘고려 수월관음도’ 역시 승천부 홍천사에서 약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가라쓰 카가미 신사 소재 고려 수월관음도의 유래』(『한일관계사연구』 제34집, 2009년 12월) 참조.

47) 이영『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앞의 주(27) 연구서 참조.

48) 2003년도 9월 24, 25일 이들 동안 『海をかける人・モノ・情報 - 8~17世紀の東アジア -』라는 제목으로 동경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본인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무라이씨는 ‘자신이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음.

49) 村井章介『倭寇とはだれか-十四世紀~十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東方學』 제119집, 東方學會, 2009년).

50) 이 사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구들은 승천부 홍천사와 창릉이라는 고려 왕실의 조상을 모신 중요한 곳을 약탈하였는데, 그 때 약탈당한 물건들 중 고려 왕실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충선왕과 한국공주, 그리고 고려 왕가의 조상인 세조의 초상이었고 그래서 『고려사』에 남게 되었다. 앞의 주(27) 이영 연구서 참조.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이 무역의 국가 관리에 대한 반역이었음을 언급해야만 한다. 여기에 국가는, 인적(人的)·경제적으로 결합을 강화해가고 있었던 환(還) 중국해 지역을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권력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 연해 인민에 대해 가해진 왜구의 퇴폐적인 행동은, 국가와 지역의 모순·상극(相剋)이 낳은 도깨비(鬼子)라고도 해야 할 그들의 본질에 근거하고 있었다.”⁵¹⁾

무라이는, 고려(조선)인들을 약탈하고 납치한 왜구는 사실은 ‘동포’ 즉 같은 고려(조선)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무라이 주장의 요점을 말하자면, 왜구(고려인)들이 자기 동포들을 괴롭힌 이유는, 한·중·일 삼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무역을 방해하자, 세 나라 백성들이 상호 연대해 국가 권력에 저항했다고 하는 것이다.

무라이의 주 연구 대상 시기는 15-16세기이므로 본고에서 그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비평할 지면(紙面)의 여유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 아시아 해역세계에 대한 그의 연구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87년 봄, 전라남도 손죽도에 왜구가 침략해 김개동이라는 수병(水兵)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가 탈출해 조선으로 귀국해서 보고한 내용의 <사료3-1>을, 16세기 말 동 아시아 해역세계에 대한 자기 학설의 근거로 삼고 있다.⁵²⁾

3-1. 전라도 좌수영 진무(鎭撫) 김개동과 이언세 등이 지난해 봄 손죽도 싸움에서 왜노(倭奴)에게 잡혀가 남번국(南蕃國)에 팔려 갔다가 중국 지역으로 도망쳐 조사를 받고 북경으로 이송되었는데, 이번에 사은사(謝恩使) 유전이 돌아오는 길에 달려 보냈다. 김개동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화동이란 자는 우리나라 진도 사람으로 왜노에게 잡혀가 온갖 충성을 다한 자인데, 저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풍속과 인심이 매우 좋아서 거주할 만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선은 부역이 매우 고되고 크고 작은 전복을 한정 없이 징수하여 감당할 길이 없으니, 이곳에 그대로 거주해라. 지난 연초에 마도와 가리포를 침범하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손죽도에 정박하였는데, 이는 내가 인도해 준 것이다’ 하였습시다. 그가 거주하는 섬 이름은 오도(五島)로 둘레가 며칠 길이 되고 인구가 꼭 들어차 하나의 큰 고을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포된 자들이 많았고 배 5백 여척이 있었습시다.(선조 21년 11월 병인)

무라이는, <사료3-1>의 『선조실록』 21년 11월 병인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사화동은 (중략) 처음 왜구의 포로가 되었으나, 마침내 적극적으로 왜에 충성을 다하게

51) 村井章介『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東京, 1988년) .

52) 『中世倭人伝』소화사에서 1998년에 이영『중세 왜인의 세계』로 번역 출간됨. 228쪽-230쪽 참조.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부역이 너무 무거워 전복을 채취해도 전부 수탈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래서 사화동은 왜를 선도하여 한반도 남쪽에서 해적 행위를 행하게 되어 손죽도에서 김개동과 만나게 된 것이다.

사화동의 경우처럼, 왜구의 포로가 된 뒤, 왜구의 길 안내나 첩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기사는 『고려사』등에서도 확인된다.⁵³⁾ 그런데 그가 처음 오도에 가게 된 계기는, 왜구에게 잡혀갔기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단 잡혀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왜구들에게 협조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화동이 말한 ‘조선의 부역이 너무 무겁다’고 한 것은 잡혀간 이후, 왜구들에게 협조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合理化)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양반들조차도 생존하기 위해 왜구의 길 안내를 했던 상황 속에,⁵⁴⁾ 사화동과 같은 하층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요는 그가 스스로 원해서 왜구의 소굴로 간 것이 아니며,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수 있어서 집단적으로 왜구에 투신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무라이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 사화동이라는 조선인 해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무거운 부역을 꺼려서 ‘왜구 세력’에게 몸을 맡겨, 오도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거기에는 해민에게는 이상향과 같은 곳으로, 인구가 많고 조선인도 상당수 있으며, 500척이나 되는 배가 있다. 국가 지배에 대항하는 해역 세계가, 자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무라이의 해석에 따르면, 일본의 오도(五島)에는 국가(조선)의 지배에 대항하는 다수의 조선인들이 500척이나 되는 배를 가지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 처

53) 우왕이 다음 내용의 교서를 도당에 내렸다. “이제 듣건대 변방 주민들이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요행히 도망쳐서 귀환해도 모두 적의 간첩으로 지목하여 덮어 놓고 죽인다는데, 이것은 심히 옳지 않은 이리안. 고향 떠난 사람마다 제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인정에 당연한 일이다. 하물며 부모 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나 돌아 올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다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적을 따라 갔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제 부터는 적에게서 도망쳐 온 사람은 반드시 표창할 것이며, 비록 실지로 간첩행위를 한 자라 할지라도 죽이지 말고 관청에서 금품과 식량을 주어 그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만약 왜놈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상을 주고 등수를 올려주라. 그리고 이 지시를 변방고을들로 하여금 계시하게 하라. 그리고 만약 이 지시를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 『고려사』 권제133. 우왕 3년 6월 경신일 조.

54) “지금을 말한다면, 왜구의 걱정이 30년이 가까워서, 양반집의 자녀들도 많이 그들에게 포로가 되면 노예와 첩 노릇을 달갑게 여기고 사양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첩자가 되어 길을 인도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소위는 개돼지만 못한테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정침(鄭沈)전』(『삼봉집』 제4권).

림 보인다. 그런데 위의 <사료3-1>의 원문, 『선조실록』 21년 11월 병인조는 무라이가 인용한 대로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의 <사료3-2>와 같다.

3-2. 전라도 좌수영 진무 김개동과 이언세 등이 지난 해 봄 손죽도 싸움에서 왜노에게 잡혀가 (중략) 김개동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화동(沙火洞)이란 자는 (중략)⁵⁵⁾ 그가 거주하는 섬 이름은 오도(五島)로 둘레가 며칠 길이 되고 인구가 꼭 들어차 하나의 큰 고을(州)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포된 자들이 많았고 배 5백여 척이 있었는데 전라우도(全羅右道)의 복병선(伏兵船) 전부를 나포하였기 때문에 궁전(弓箭)과 총통(銃筒)까지 다 가져갔으나 쌓아 두기만 하고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하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될 뿐이었습니다.”⁵⁶⁾

<사료3-2>와 <사료3-1> 중 <중략>을 포함한, 내용의 대부분은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무라이가 “배 5백 여척이 있었습니다”로 끝맺은 부분은 그 뒤에 “(배 5백여 척이 있었는데, 전라우도(全羅右道)의 복병선(伏兵船) 전부를 나포하였기 때문에 궁전(弓箭)과 총통(銃筒)까지 다 가져갔으나 쌓아 두기만 하고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하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더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가 “조선인도 상당수 있으며, 500척이나 되는 배가 있다. 국가 지배에 대항하는 해역 세계가, 자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 한 ‘배 500척’은 사실은 오도(五島)의 왜구들이 약탈해간 전라우도의 복병선이었던 것이다.⁵⁷⁾

<사료3-1>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포된 자들이 많았고 배 5백 여척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 뒤, 자신의 해석 부분에 가서는 그냥 ‘조선인도 상당수 있으며’ 그리고 ‘국가 지배에 대항하는 해역 세계가, 자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마치 자발적·집단적으로 이주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라이는 자기 학설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사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다, 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그가 ‘세조’를 원의 세조, 즉 ‘쿠빌라이’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것이며, 필자가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라이의 사료 왜곡은 ‘한반도 남쪽 해안의 다도해나 제주도가 왜구 활동의 근원지였다’ 고 하는 또 하나의 엉뚱한 비약으로 이어진다.

55) (중략) 부분의 내용은 <3-1>과 일치.

56) 『선조실록』 21년 11월 병인조.

57) 이 보고를 한 김개동이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전라도 좌수영 진무’였기 때문에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이처럼 왕직(王直)이 터전을 잡은 오도(五島)나 히라도(平戶)라는 장소는, 아질(피난처) - 그 안으로 도망가면 죄를 추궁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영역 -의 성격을 띤 왜구 활동의 근원지가 되고 있었다. 쌍도(雙島)나 역항(歷港)과 같은 강남(江南)의 다도해 지역의 항구 도시에 대해 동일하게 말할 수 있으며, 한반도 남쪽 해안의 다도해나 제주도에도 같은 장소가 있었다. ‘환중국해(環中國海) 지역’이라는 것은, 이러한 몇몇 거점을 연결하는 인간 활동의 네트워크에 주어진 명칭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라이나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는 ‘제주도 사람’과 ‘다도해 지역 주민들’을 왜구로 둔갑시켰던 것이다.⁵⁸⁾ 필자는 무라이씨와의 개인적인, 오랜 교류 경험에 입각해, 그가 결코 ‘한반도 멸시관’이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연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생각이 ‘식민사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다나카의 <삼도 해민설><고려(조선)인 주체설><고려(일본)일 연합설>에 입각하고 있는 한, 그도 역시 “황당무계한 신공황후 전설에 근거하는 ‘한반도 멸시관’을 ‘민중사관’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3. 남북조 정운문제와 왜구 연구

제1장에서 일본의 왜구 연구가, 고려 말 왜구에 관해 소극적인 연구 자세를 취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소극적 자세’에는 보다 더 복잡한 배경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황국사관과, 거기에서 파생된 남북조정운(南北朝正閏)문제이다. 명치 44(1911)년에 역사교육을 더욱 왜곡시키게 되는 남북조 정운 문제가 일어났다.⁵⁹⁾ 이것은 남북조 시대, 교토에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옹립한 북조의 천황이 정통인가, 아니면 요시노(吉野)로 도주한 고다이코(後醍醐) 천황의 계통(남조)이 정통인가, 라고 하는 권력의 정통성의 문제이다.

약 50여 년간이나 두 사람의 천황이 교토와 요시노에 존재하게 되어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결국, 1392년에 남조의 고가메야마(後龜山) 천황이 북조의 고코마쓰(後小松) 천황에게 천황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양자가 합체하지만 둘로 나뉘어져 있을 동안은 어느 쪽이 정통인가, 하는 것이 정운문제이다.

⁵⁸⁾ 후지타 설에 대한 비판은 이영『<여말-선초의 한반도 연해도서=다민족 잡거 지역>설의 비판적 검토』(『동북아문화연구』제29집, 2011년)을 참조.

⁵⁹⁾ 이하의 내용은 다치바나 류(立花流)의 『천황과 동경대학(天皇と東大)』, 文芸春秋, 2005년.

혈통으로 따진다면, 그 뒤의 황위는 북조의 자손에게 계승되어져 지금의 천황 가문도 북조의 후예이다. 따라서 남조가 옳다고 하면 현재의 천황은 가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때때로 자기야말로 남조의 후예로 진짜 천황이며 지금 천황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나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남조정통론자 쪽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점이다.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닛타 요시사다(新田義貞) 등, 『태평기』에 등장하는 대중적인 영웅들은 모두 남조의 충신이다. 남조 정통론에 입각한 미토 가쿠(水戸學)⁶⁰⁾의 영향 등으로 인해, 막부의 근왕파의 지사(志士)들은 거의 대부분 남조파(南朝派)였다. 그래서 명치 신정부의 사람들에게는 남조파가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명치 천황 자신이 남조파였다. 그래서 당시 각급학교의カリキュラ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칙강령(敎則綱領)』에서도 남조의 충신들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충성심의 모델로 삼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남북조 정운문제는 쇼와(昭和) 시대(1926년 12월 25일-1989년 1월 7일)에 들어와서도 일어났다.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나카지마가 고다이코 천황을 교토에서 몰아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將軍)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그를 사직(辭職)으로 몰아갔던 것이다.⁶¹⁾ 그가 운이 나빴던 것은, 이 쇼와 9년이 고다이코(後醍醐) 천황의 건무 신정, 즉 건무(建武) 중흥(1334년)의 600 주년에 해당하는 해였기 때문이다. 즉, 일부 군인·신사 관련자·역사가들이 고다이코(後醍醐) 천황과 남조(南朝) 및 그 ‘충신’의 사적을 ‘현창(顯彰)’해 천황제 옹호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건무 중흥 600년 기념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이렇게 되자 역사가들은 남북조(南北朝) 역사의 연구 발표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연히 남북조 시대사의 학문적인 매력은 상실되어버리고 역사가들은 이 시대의 연구를 경원(敬遠)하게끔 되었다.⁶²⁾

이처럼 남북조 시대의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순수한 학문 연구의 차원을 벗어나 언제든지 민감한 정치문제화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학 강단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고⁶³⁾ 나카지마 상공장관처럼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다. 또

⁶⁰⁾ 에도 시대의 미토 번(水戸藩, 현재의 茨城縣 북부)에서 형성된 학문. 전국의 여러 번에 설치된 번교(藩校)에서 가르쳐졌다. 『애민(愛民)』, 『경천애인(敬天愛人)』 등과 같은 사상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을 위시한 많은 막부 말기의 지사(志士)들에게 큰 감화를 주어 명치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은, 미토학에 입각한 준왕양이사상(尊皇攘夷思想等)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토학은 아주 폭넓은 학문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⁶¹⁾ 사토 신이치(佐藤進一) 『남북조의 동란(南北朝の動亂)』(中央公論社, 1965년).

⁶²⁾ 앞의 주(61) 사토 신이치 책.

국회의원의 관련 발언을 막기 위해 내각 수상이 직접 나서서 항응과 뇌물을 제공해야 할 정도였다.⁶⁴⁾

그런데 1장의 <표>에서 보듯이, 후지타 아키라(藤田明)가 이미 1915년에 <왜구=남조 수군설>을 제기했다. 그리고 1967년에 사토 신이치가 <왜구=남조의 전력 보급 및 증강>을 위해 침구했다 고 했으며, 1987년에 미야모토 쓰네히치(宮本常一)가 <왜구=남조에 속한, 瀬戸内海에서 九州에 이르는 지역의 해적>설을 피력했다. 이처럼 고려 말의 왜구를 남조의 군사력으로 추정하는 것은 대외관계사를 전공하지 않는, 일본사 연구자(藤田와 佐藤)는 물론 역사학자가 아닌 민속학자인 미야모토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⁶⁵⁾

그리고 『고려사』를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왜구가 남조의 무사, 엮음을 의미하는 사료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로마치 막부가 파견한 덴류지(天龍寺)의 주지 토구소 슈사(德叟周佐)의 편지가 고려에 와서 당시 왜구의 실체를 ‘난신(亂臣)’과 ‘완민(頑民)’이라고 한 것 등이다.⁶⁶⁾ 다음의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3(1377)년의 기사를 보자.

4. (나홍유가 가지고 온, 귀국(일본)의 서신에 의하면, (고려를) 침구하고 있는 해적들은 우리 서해 일로 규슈의 난신(亂臣)들이 서쪽 섬에 할거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소행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 감히 즉시로 금지시킬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없다⁶⁷⁾,

막부(=북조)가 ‘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조 세력을 의미함은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남조의 무사=천황에 충성을 다한 군대, 라는 사회적 통념(通念)이 확고한 가운데, 왜구가 남조의 무사들이었다, 고 하면 천황의 군대가 바다 건너 고려와 중국에서 살인·약탈·강간·방화·납치 등을 저지른 패륜(悖倫) 집단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왜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각지에서 온갖 만행(蠻行)을 자행한 소위 ‘황군(皇軍)’의

63) 동경대학 국사학과 교수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와 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 교수는 『태평기』의 사료적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남조정통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학에서 추방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앞의 주(59) 다치바나 책 참조.

64) 이에 관해서는 앞의 주(59) 다치바나 책 참조.

65) 이들 세 사람 모두 확실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해 <남조 수군설>을 제기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대구사학』제91집. 2008년 5월)을 참조.

66)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우왕2년 10월.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3년 6월 을묘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2년(1376)의 왜구를 중심으로-』(『일본 역사연구』 24집. 2006년)을 참조.

67) 「去後據羅興儒賣來貴國回文言稱, 此寇因我西海一路九州亂臣, 割據西島, 頑然作寇, 實非我所爲, 未敢即許禁約」,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3년 6월 을묘조.

원조(元祖)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왜구(=남조의 군사력)가 현지에서 고려군과 싸워 패하는 『고려사』의 기록까지 존재하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 점이 다나카 다케오로 하여금 고려 말 왜구에 관한 연구를 회피하게 하고 그 대신에 조선시대에 침구한 왜구를 연구해 이를 고려시대까지 소급시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근대 이후, 일본 역사학이 경험한 신산(辛酸)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 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친근성과 호오(好惡)의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역사적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크기 마련이다. 그런데 다나카는 『왕조실록』을 가지고 고려 말의 왜구를 유추함으로써 역사적 판단을 그르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후 왜구 연구는 ‘왜곡과 오류’가 상승작용(相乗作用)을 일으키면서 그것의 확대재생산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4. <삼도 해민설>과 <바다를 건너 남북조 내란설>

일본 역사학계에서 동경대학 교수의 주장 내지 동경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된 연구서는, 해당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959년에 동경대 출판부에서 나온 다나카 다케오의 『중세대외관계사』는, 왜구 연구의 패러다임을 세웠고, 이후 일본의 왜구 연구는 다나카 설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그 때 그가 제시한 <삼도 해민설>은 이후,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실체에 관해 제시된 다양한 학설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위치를 점해왔으며, 이후의 왜구 연구는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삼도해민설>이 기재되어 있다.⁶⁸⁾

이 학설은 고려 말 왜구의 실체를, 규슈 최고의 명문 호족(豪族)인 쇼니씨(少貳氏) 일족 및 그 휘하의 대마도 세력, 규슈 서북부 지역의 중소 무사단의 연합체인 마쓰라토(松浦党), 그리고 기쿠치씨(菊池氏)를 중심으로 한 정서부(征西府)의 무사단 등, 규슈 지역 남북조 내란의 주역(主役)들⁶⁹⁾이 아니며, 쓰시마(對馬)처럼 일본 변경의 작은 섬에 거주

⁶⁸⁾ 즉 “주로 쓰시마 및 규슈 서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고려에서 약탈하고자 자주 고려 해안에 침입하였고,” 하여 남북조 내란이라고 하는 일본 국내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식량 부족을 왜구 침구의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고등학교 국사』 210쪽.

⁶⁹⁾ 고려 말 왜구의 실체에 관해서는 이영『정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우왕 2년(1376)의 왜구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24집, 2006년)을 참조.

하는 해민, 즉 어업과 교역과 약탈을 겸하고 있던 어민⁷⁰⁾들, 다시 말하자면 전투 행위에 숙달된 전문적인 집단도 아니며, 또한 제대로 조직화(組織化)되지도 않은 아마추어(amateur) 무장민(武裝民)들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조정은, 이러한 수준의 침구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이었으며, 결국 이들의 침구가 고려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식민사관의 주요 전제인 ‘한반도 멸시관’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도해민설>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나카 다케오 등은 고려 말 왜구의 실체를 쓰시마 등 변경의 도서 연해 지역 주민으로 한정 한 뒤, 『고려사』에 보이는 수많은 왜구의 침구기사를 전부 일본인들의 소행으로만 볼 수 없다, 고 하며 <고려(조선)인 주체설>과 <고려·일본인 연합설>을 내놓은 것이다.

다나카의 주장은 일본의 도서 연해 지역 주민들이 고려의 억압받고 있던 천민(賤民)·농민·제주도 인 들과 연합해서 행한 것이 고려 말 왜구의 실체라고 한 것으로, 앞에서 본 기타가타의 소설 중에,

(南浦: 富山浦에 거주하는 왜인)-㉠고려와 규슈 사이에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백성(海の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고려와 규슈를 하나로 묶은 존재입니다.

(가네요시 왕자) - 나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 배를 탔네.... ㉡어쩌면 바다의 백성(海の民)들이 두 나라를 연결해 줄지 모른다고....⁷¹⁾

라고 한 부분은 다나카의 학설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나카의 주장은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의 <왜구=다국적·복합적 해적설>로 이어졌다. 따라서 <삼도해민설>은 <고려(조선)인 주체설> 또는 <고려·일본인 연합설>로, 그리고 <왜구=다국적·복합적 해적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후(戰後)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의 태두(泰斗)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다나카는 『대외관계사 연구의 추이(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⁷²⁾에서 이 분야의 연구사(研究史)를 정

70) 해민이란, 아미노 요시히코의 정의에 의하면 “호수(湖)·늪(沼)·강(河)·바다(海)를 불문하고 수면(水面)을 주요한 생활 장소로 삼고 어업, 염업, 수운업, 상업에서 약탈에 이르는 생업을, 아직 완전히 구분하지 않은 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아미노 요시히코(網野義彦)『日本中世における海民の存在形態』(『社會經濟史學』 36-5, 1971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영『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우왕 2년(1376)의 왜구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24집, 2006년)을 참조.

71) 앞의 주(38) 책, 148쪽.

72)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吉川弘文館, 2003년.

리해 1951년 이후 2002년에 이르기까지 간행된 주요한 연구서 및 논문들을 소개하고 서평도 곁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日鮮關係史の研究』(길천홍문관, 1969년)과 아오야마 고료(青山公亮)의 『日鮮交渉史の研究』(明治大學出版部, 1955년)도 실려 있다.

또 한국에서 출간된 책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일문화연구소 편 『慶南의 倭城址』(1961년), 김정주 편 『韓來文化의 後榮』(1962년), 김병하 저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1969년), 한국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전28권, 등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성과로 2001년도에 요시카와고분칸(吉川弘文館)에서 출간된 『日本史總合年表』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나카 스스로 “학문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혹평한 이나무라(稻村賢數)의 『琉球諸島における倭寇史跡の研究』(吉川弘文館, 1957년)까지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즉 그는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왜구와 일명무역(日明貿易)과 일류관계(日琉關係)에 관한 수많은 선행 논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인용 사료도 『이칭일본전(異稱日本伝)』에서 인용한 책(書物)의 내용을 재인용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대백과사전』이나 『고지루이엔(古事類苑)』의 기사가 인용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정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은 사료의 비판과 선택을 엄중하게 하고 그 구성 위에 서서 사실(史實)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가(史家)에게 있어서 실로 참을 수 없는 결함으로 생각 된다.”⁷³⁾

이런 책까지 소개하면서 1999년도에 동경대학 출판부에서 소개된 필자의 『倭寇と日麗關係史』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비평이 학술잡지 및 연구서에서 제기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⁷⁴⁾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연구회(歴史學研究會)와 일본사연구회(日本史研究會)가 공통으로 집필하는 『일본사강좌(日本史講座)』시리즈는, 과거 10년 동안 발표된 연구 성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책이다. 이런 책에서, 일본 중세사 전공의 가이즈 이치로(海津一朗)는 본인의 연구를 <바다를 건너 ‘남북조 내란’설>(‘李領の海を越えた南

73)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吉川弘文館, 2003년.

74) ①高橋公明『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日本の歴史, 14, 講談社, 2001년). ②橋本雄, 書評『李領著『倭寇と日麗關係史』(『歴史學研究』758号, 2002年1月). ③村井章介 編『南北朝の動亂』(日本の時代史 10, 吉川弘文館, 2003年3月). ④同『分裂する王權と社會』(日本の中世 10) 中央公論新社, 2003年5月). ⑤ 海津一朗『元寇・倭寇・日本國王』『日本史講座, 第4卷, 中世社會の構造』(歴史學研究會, 日本史研究會, 東京大學出版會 2004年). ⑥ 橋本雄『肥後地域の國際交流と僞使問題』『中世日本の國際關係, 東アジア交通圈と僞使問題』(吉川弘文館, 2005年). ⑦森茂曉『南朝全史-大覺寺統から後南朝へ』(講談社, 2005年). ⑧橋本雄/米谷均, 倭寇論のゆくえ,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년.

北朝內亂說')라고 하면서, “일본의 남북조 내란과 해역세계의 왜구문제와의 연관구조를,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기한 작업은 지금까지 없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⁷⁵⁾ 다나카가 『倭寇と日麗關係史』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단순한 누락(漏落)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중세사학계의 평가와는 달리, 중세대외관계사 분야에서는 무라이 쇼스케가 “이 영 씨는 북 규슈의 전란 상황 속에서 쇼니씨(少貳氏)의 지휘 하에 있는 무사가 병량미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간 것이 왜구의 실체라고 한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1357년에 승천부 홍천사에 난입하여 충선왕 등의 초상화를 약탈하거나, 1365년에도 창릉을 침범하여 쿠빌라이의 초상화를 가져갔다는 행동은 정치성이 뚜렷하며 병량미를 목적으로 하는 무사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행동이 규슈에서 사용할 병량미 획득의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적일까 의심스럽다”⁷⁶⁾고 한 이후,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라이의 지적이 잘못된 것임은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⁷⁷⁾

그리고 일본 측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은 <삼도 해민설>을 가지고 한일 역사 공동회의 한국 측 파트너를 기만했다. 다음의 2010년도에 종료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 연구 보고서>를 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14-15세기 한반도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기왜구의 근거지는 소위 삼도(三島, 對馬, 壹岐, 松浦)지역이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삼도의 경제적 궁핍과 남북조 말기 구주(九州) 지역의 정치상황이 연계되었다고 보여 진다⁷⁸⁾.

이에 화답(和答)이라도 하듯이, 일본 측 대표인 규슈대학교의 사에키 고지(佐伯弘次)는

75) 海津一朗『元寇・倭寇・日本國王』『日本史講座, 第4卷, 中世社會の構造』(歴史學研究會, 日本史研究會, 東京大學出版會 2004年).

76) 村井章介 編『南北朝の動亂』(日本の時代史 10, 吉川弘文館, 2003年3月). ④同『分裂する王權と社會』(日本の中世 10) 中央公論新社, 2003年5月).

77) 『고려사』에서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가지고 갔다, 고 사료를 마치 왜구들이 초상화를 목적으로 침구했다, 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구들은 곡식을 포함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자를 약탈하러 침구한 것인데, 약탈당한 물자들 중에서 고려 왕실 또는 조정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였다, 라고 해석되어야 옳다. 또한 남북조 내란기 당시 ‘바사라(婆娑羅)’라고 해서 소위 ‘당물(唐物)’ 즉 외국의 박래품이 값비싸게 여겨졌으며 이러한 ‘바사라’ 중에는 중국산의 비단을 위시해, 외국산 도자기와 그림 등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시 왜구들이 홍천사에서 초상화를 약탈한 왜구들의 행동에서 ‘반국가성’을 지목하기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노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78) 손 승철『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권, 2010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번의 하나의 큰 주제인 왜구의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카 다 선생님, 김보한 선생님이 연구사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논문 그리고 사료를 본 결과, 일본에서의 오래된 견해, 즉 전후의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선생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선생님의 전기 왜구의 견해, 즉 그 주요한 구성원은 역시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마쓰우라(松浦) 지방의 해민들이라는 이해가 가장 옳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당시 해민들이 왜구를 가장하여 왜구가 되는 형태도 있었습니 다만, 그것이 왜구의 주류는 아니라는 것은 사료상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⁷⁹⁾.

사에키 역시, 고려 말 조선 초에 침구해온 왜구의 실체를, 소위 삼도(三島) 즉,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마쓰우라(松浦) 지방의 해민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치 큰 양보라도 하듯이, “물론 한국의 당시 해민들이 왜구를 가장하여 왜구가 되는 형태도 있었습니 다만, 그것이 왜구의 주류(主流)는 아니라는 것은 사료상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한국 측 대표 손 승철은 논의의 최종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래의 “고려인, 조선인이 왜구에 포함이 되었고 또 제주도 해민도 왜구에 포함시키는 학설이 있었지만, 그것이 왜구 구성의 주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왜구와 관련해서 연구사 정리나 주제 논문을 통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공동으로 표출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⁸⁰⁾.

손 승철이 이상과 같이 언급한 것은, 고려인·조선인과 제주도 사람들이 “왜구의 주류는 아니지만, 왜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는 의미로,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그는 “왜구와 관련해서 연구사 정리나 주제 논문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고려 말 왜구의 실체에 관한 <고려 말 왜구=남북조 내란기의, 쇼니씨와 정서부 등 규슈 지역의 전문적인 무장집단>설 등, 다년간에 걸쳐 발표된 많은, 연구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논문들을 간과(看過) 내지 누락시키고 있다.⁸¹⁾ 그리고 사에키(佐伯) 자신이 “일본에서의 오래된 견해”라고 했듯이, 반세기 이전에 나온 <삼도 해민설>로 회귀(回歸)해 일본 측과 합의를 본

79) 『좌담회 토론문』(『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권, 2010년).

80) 앞의 주(78) 자료.

81) 대표적인 예로 『倭寇と日麗關係史』를 들 수 있다.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려(조선)인 주체설> <고려(일본)일 연합설>은, <삼도 해민설>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삼도 해민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미 별고⁸²⁾에서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이,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왔던 이 주장 역시 엄청난 허구(虛構)였음이 드러났다.

일본의 <삼도 해민설>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다음 기록에 의거하고 있다.⁸³⁾

5. 히젠주(肥前州)에는 가미마쓰우라(上松浦) · 시모마쓰우라(下松浦)가 있는데, 해적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고려 조 말기에 우리나라 변방에 입구(入寇)한 자는 마쓰우라와 이키(一岐) · 쓰시마 사람이 많다. 또 오도(五島)가 있는데 일본인들이 중국을 갈 때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다.

신숙주는 『해동제국기』에서 마쓰우라 · 이키 · 쓰시마 사람들이 고려 말에 많이 침구해 왔다, 고 했지 이들 지역이 ‘삼도’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사료를 보면 확실하다.

6. 영의정 신숙주가 아뢰기를, “전에는 왜인의 왕래에 정한 수가 있는데도 또한 정한 수 이외에 나오는 자가 있었으나, 금년은 도주(島主)의 보낸 바가 50척도 되지 않고, 여러 섬의 사선(使船)도 또한 그러합니다. 생각건대 대마도, 삼도가 소이전(小二殿)이 (세력을) 회복함으로써 박다(博多)와의 사이에서 싸우게 되어 오지 않는 것인지, 이에 앞서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사선이 미처 돌아와 보고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인지, 혹은 박다(博多)가 부요(富饒)해서 거기서 먹고 사느라고 오지 않는 것인지, 근래에 왜인이 자기를 끼리 서로 싸우는데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하는 자가 있을 것이므로, 만일 분주하게 해산하여 흩어지면 기갈(飢渴)에 곤(困)해서 좀도둑처럼 우리 변방에 출몰할지 모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⁸⁴⁾. (후략)

82) 이영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실체=삼도(쓰시마, 이키, 마쓰우라)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일본문화연구』제38집, 2011년 4월, 동 아시아 일본학회).

83) 『서해도 구주(西海道九州) 비전주(肥前州)』.

84) 領議政申叔舟啓曰: “前此, 倭人往來有定數, 而又有數外出來者, 今年則島主所送, 不滿五十隻, 諸島使船亦然. 意者, 對馬三島因復小二殿, 從戎於博多之間, 故不來歟; 前此貞國特送使船未及歸報, 故不來歟; 抑博多富饒, 故就食於彼而不來歟? 邇來, 倭人自相攻伐, 兵革之際, 必有敗績者, 若奔走渙散, 困於飢渴, 則鼠竊狗偷, 出沒我邊陲, 未可知也, 不可不爲之備. 『성종실록』 23권. 성종 3년 10월 24일조.

이 <사료6>은, <사료5>의 『해동제국기』가 만들어진 바로 다음 해인 성종 3년(1472)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사료6>의 “대마도, 삼도가 소이전(小二殿)이 (세력을)회복함으로써 박다(博多)와의 사이에서 싸우게 되어 오지 않는 것인지(對馬三島因復小二殿, 從戎於博多之間, 故不來歟)”에서 보듯이,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마도’를 ‘삼도’와 구별하고 있다⁸⁵⁾. 그리고 대마도, 삼도가 소이전(小二殿, =少貳氏)의 휘하 세력으로, 박다(博多, =쇼군의 부하 大內氏의 세력 거점)와 대립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왜구의 발생 원인을, ‘왜인들끼리 전쟁을 해서 패한 측의 무리가 기갈(飢渴)에 곤(困)해서 침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신숙주는 쇼니씨(少貳氏) 휘하의 대마도와 삼도 세력 대(對) 하카타(博多)와의 전쟁이 왜구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료5>의 발언자가 바로 『해동제국기』의 저자 신숙주이며, 또 그가 발언한 시점이 『해동제국기』가 완성된 1471년의 바로 다음 해인 1472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실수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마도는 확실하게 ‘삼도’에 속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해동제국기』를 완성한 당시, 신 숙주는 결코 ‘쓰시마, 이키, 마쓰우라’를 ‘삼도’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삼도’의 구체적인 용례(用例)를 통해, ‘삼도’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⁸⁶⁾

첫째, ‘삼도’라고 해서 ‘3 곳의 섬’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둘째, ‘삼도’는 다케마 ·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주장대로, 쓰시마 · 이키 · 마쓰우라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대표적인 왜구의 소굴로 생각되고 있던 쓰시마(對馬島)조차, 삼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즉 삼도는 ① 규슈 ② 쓰시마, 이키 ③ 이키, 가미마쓰우라(上松浦), 시모마쓰우라(下松浦) ④ 이키 의 4 가지 구체적인 용례(用例)가 확인된다.

⁸⁵⁾ 물론 이 사료를 “대마도와 같은 삼도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정종실록』 2권. 정종 원년(1399) 7월 10일조의 기사를 보면, “比年以來, 對馬等三島頑民,”으로 기록하고 있다. ‘對馬等三島’는 대마도가 삼도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對馬三島’는 대마도와 삼도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인식하고 있다, 고 해야할 것이다.

⁸⁶⁾ 이영『<고려 말 · 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 · 이키 · 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일본문화연구』제38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2011년 4월).

넷째, 특히 조선 초에 삼도에 포함되었던 대마도가, 시대가 내려와 15세기 후반 경, 조선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삼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섯째, 삼도는 하카타(博多=쇼군의 부하 大内氏의 거점)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섯째, 삼도는 일본에 속하면서도, 야인(野人)·유구국·일본과 더불어 ‘사이(四夷)’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일본에 속하면서 ‘일본과 구별되는 정치적 주체’가 지배하는 영역,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곱째, ‘삼도’를 최종적으로 정의하자면, ‘대장군의 통치와 지배에 저항하는 규슈의 토착 호족들의 근거지이면서, 동시에 왜구로 침구해울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말-조선 초의 왜구의 실체를 ‘삼도’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쓰시마, 이키, 마쓰우라 지역의 해민’이 아니라, ‘막부의 규슈 통치에 저항하는 쇼니씨(少貳氏)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규슈(九州)의 토착 호족 세력의 휘하 병력’이라 해야 한다.

<삼도 해민설>의 골자(骨子)인 ‘삼도=쓰시마·이키·마쓰우라’에서 쓰시마가 확실하게 삼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마쓰우라는 섬이 아니라, 규슈 지방의 서북부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삼도’가 쓰시마·이키·마쓰우라 지역을 가리킨다, 고 하는 기존의 일본 측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오류가 명백한 <삼도 해민설>에 입각해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에서 또 다음과 같은 논의를 했다. 다음 대화 내용을 보자.

스카와(須川):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손 선생님의 보고 가운데 고려 말기에 이미 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남쪽에 말이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고려사》였던가 《고려사절요》였던가 기록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시기에 특히 왜구가 날뛰고 있던 시기에 고려 정부가 왜 왜인인 그런 것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까, 혹은 고려 정부의 국토의식이라고 할까 영토의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나? 아마 북방 쪽으로 가면 여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법한 지역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자신들의 그 국가를 복수의 민족 집단에 걸친 제국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왜인이 남쪽에 슬쩍 들어와 살고 있거나 하는 것도 허용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만, 저로써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⁸⁷⁾

87) 앞의 주(78) 자료.

이에 대해 손승철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손승철: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근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쿄 대학의 무라이 쇼스케 선생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널 맨(marginal man)’ 소위 말해서 ‘경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제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은 상당히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4-15세기의 영토의식, 국경의식 이런 것은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생활 거주 공간이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일부 섬에 사실은 왜인들의 주거 흔적도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왜인들의 주거, 거주 흔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인 것인지 그런 것은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그 시기는 왜구들이 동아시아 해역을 여기저기 약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인 거주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어떤 거점으로서, 그때그때 약탈의 거점으로서 이용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⁸⁸⁾

스가와와 질문 중, “손 선생님의 보고 가운데 고려 말기에 이미 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남쪽에 말이지요”라고 한 것은, 다음의 두 사료와 관련된 것이다.

7. (가을 7월) 신축일(9일). 거제 · 남해현에 있는 투화(投化)한 왜인들이 배반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⁸⁹⁾

8. 11월 27일(무오) 왜적이 영주(寧州) · 온수(溫水) · 예산(禮山) · 면주(沔州)의 양곡 운송선을 약탈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왜인들이 거제도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화친 관계를 맺고자 하므로 조정에서 그것을 믿고 허락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도적이 되어 침입한 것이다.⁹⁰⁾

이 두 사료의, 거제와 남해현에서의 왜인들의 거주에 관해서는 이미 필자가 별고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일부 전재(轉載)하자면, 다음과 같다.⁹¹⁾

공민왕 15(1366)년에 고려의 금왜요구 사절 파견에 자극받은 무로마치 막부가, 고려 및 원(元)의 금왜요구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교토(京都) 체재(滞在) 중이던 쇼니요리히

88) 앞의 주(78) 자료.

89) 『고려사』 권제41. 공민왕 18년 가을 7월 신축일조.

90) 『고려사』 권제41. 공민왕 18년 11월 무오일조.

91) 『원명의 교체와 왜구-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일본사학회』 2011년 6월).

사(少貳賴尙)를 통해 대마도에 금왜압력을 가한다. 그 결과, 이에 대응해 대마도 만호 소쓰네시게(宗經茂)는 1368년 7월 11일, 고려에 사자를 파견, 이에 고려도 호응해 양자 사이에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때 고려는 대마도에 쌀 천석과 거제도와 남해도에 왜인들의 거주를 허락해, 그들이 1369년 7월 9일에 대마도로 돌아갈 때까지 거주한 것을 의미한다.

손승철은 또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일부 섬에 사실은 왜인들의 주거 흔적도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 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라이의 소위 <경계인> 설 또한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고려·일본인 연합설>의 변용(變容)임을 생각한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상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나카는 또한 고려를, 겨우 국경지대의 조그마한 도서 연해지역 주민들의 산발적인 침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 내지는 정권으로 만들었다. 그는 고려 말 왜구는, 일본 중앙의 정변에 연계된 규슈 지역의 내전 상황이 왜구 발생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쓰시마·이키·마쓰우라, 라고 하는 ‘지역적 문제’로 축소시켜 버렸다. 그러나 ‘삼도’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인 것이다.

『왕조실록』의 ‘삼도(三島=쇼군의 규슈 통치에 반항하면서 왜구로 침입해 올 위험성이 있는 세력)’는, 고려(조선) 조정이 일본의 무가정권(막부)을 외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고려사』의 ‘난신(亂臣)’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1959년 이후, 일본의 왜구 연구는 <삼도 해민설>이라는 대전제(大前提) 위에 진행되어져 왔는데, 그것이 허구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의 왜구 인식은 완전히 지워져 버려야 한다.

결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경제·외교·군사·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나날이 긴밀한 관련 속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의 글로벌 화(化)는 ‘교통과 통신의 혁명적 발달’에 의해 더욱 가속(加速)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 속에서 역사학도 ‘일국사(一國史)’의 범주를 초월해, 주변의 복수 국가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자국사회의 변천과 발전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근현대사 만이 아니라, 전근대사(前近代史)도 마찬가지이다. 중세

프랑스 역사 연구자가 동(同)시대의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전공하는 시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세 유럽 역사 못지않게, 중세 동 아시아 삼국(三國)도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따라서 고려(조선) 시대사 연구자는 동(同) 시대의 중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며,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 시대사 연구자 역시 송·원·명의 역사는 물론 고려(조선)시대사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요구 된다, 고 하겠다.

13세기 후반 이후 1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횡(橫)으로 연결하는 역사적 사건이 <여몽 연합군의 일본 침공>과 <왜구>라 할 수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세 나라의 문헌사료에 의거한 활발한 연구의 결과,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왜구에 관해서는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침공이 아니라, 단순한 약탈 목적의 침구였기에 일본 국내에 왜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가해자(加害者)의 입장에 있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주로 연구해왔던 것, 그들 일본의 왜구 연구가 ‘한반도 멸시관’과 거기에 입각한 식민사관(植民史觀) 속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고려 말 왜구>가, 근대 이후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북조 내란기의 역사현상이란 것, 등등의 문제로 인해 일본의 왜구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제한이 가해졌고 그 결과 오류와 왜곡으로 집철된 왜구상(倭寇像)이 형성되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학설이 소위 <삼도 해민설>이요, 더 나아가 <고려·조선인 실체설>과 <고려·일본인 연합설>이다. 이상과 같은 학설에 의존해 14세기 후반의 동 아시아 국제 관계를 조망(眺望)해왔기 때문에, 자국의 국내정세를 국제정세와 연동(連動)시켜 고찰한다, 고 하는 대외관계사연구(對外關係史研究)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다, 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왜구 인식으로는 14세기 후반에 일어난 동 아시아 삼국 내부에 전개된 큰 변동(원명의 교체·고려-조선의 교체·남북조 내란의 합일 등)의 상호 인과관계 및 유기적인 관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의 합의에 의해, 사료의 오독(誤讀)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백해진, 낡은 <삼도 해민설>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유효한 학설로, 고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 역사학계는 <삼도 해민설>이 지닌 허구와 그 배후에 깔려있는 일본의 ‘한반도 멸시관’과 ‘식민사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해, 역사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서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海賊禁止令과 朝鮮被虜人 沙火同刷還事件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 승 하(나고야대)

目次

1. 머리말
2.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
 - 1) 일본 국내의 해상권장악
 - 2) ‘刀狩令’성격의 ‘兵漁分離’에 의한 신분제확립
 - 3) 海賊衆의 水軍化와 대륙침략
3. 조선피로인 沙火同송환사건
 - 1) 損竹島사건과 사화동
 - 2) 조일 양국의 沙火同 쇄환사건
4. 맺음말

1. 머리말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조정(朝廷)으로부터 관백(關白)에 임명 된지 3년 후, 즉 1588년(선조21, 天正16)7월8일, 해적취체령(海賊取締令)을 주인장(朱印狀)의 형식으로 발포(發布)하는데, 바로 이것이 왜구 등의 해적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소위 해적금지령(海賊禁止令)이다.

定

- 一 諸國於海上賊船之儀、堅被成御停止之處、今度備後伊与兩國之間伊津喜嶋にて盜船仕之族在之由被聞食、曲事ニ思食事。
- 一 國々浦々船頭獵師、舟いつれもつかひ候者、其所之地頭代官として速相改、由向後聊以海賊仕ましき、誓紙申付、連判をさせ、其國主とりあつめ可上申事。
- 一 自今以後給人領主致由斷、海賊之輩於在之者、被加御成敗、曲事之在所、知行以下末代

可被召上事。右條々堅可申付、若違背之族在之者、怒可被處罪科者也。

○豊臣秀吉

天正十六年七月八日(朱印)¹⁾

위에 해적금지령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備後國과 伊与(予)國사이에 있는 伊津喜嶋(伊都喜島、現 廣縣縣豊田郡)에서 발생한 盜船事件을 지적하며, 이러한 盜船행위, 즉 해적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명(命)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船頭와 獵師 등 배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 지역의 地頭代官이 조사하여 이후에는 절대로 해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連判의 誓紙(紙)를 작성하게 하여 그것을 國主(領主)가 모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만약, 이후에도 해적중에 의한 해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각될 시에는 그 지역을 통제하는 영주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영주의 所領(領地)을 몰수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적금지령에 대한 선행연구는 가장 먼저 쓰지젠노스케(辻善之助)氏에 의하여, 1587년(선조20, 天正15)6월에 秀吉가 博多에서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추방을 명하고, 九州大名의 처분을 결정하는 가운데 최초의 해적금지령이 발포되었다고 추정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²⁾. 이 연구가 선행연구사적으로는 중요한 지적을 한 연구라고는 생각되나 다른 연구자들로부터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후, 다나카다케오(田中健夫)氏에 의하여, 중세의 해적중(海賊衆)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중이, 각지의 연안도서(沿岸島嶼)를 근거지로 부근을 통행하는 배(船)로부터 태별전(駄別錢) 또는 관전(關錢)등을 징수하며, 막부 그리고 권문세가와 결탁하여 경고역(警固役)으로 활동하는 바다의 무사단(武士團)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세의 해적중은 해적금지령에 의하여 해체되었으며, 병농분리(兵農分離)·병어분리(兵漁分離)가 진행되었다는 논점으로 정리하고 있다³⁾.

다음으로, 꾸와하타고우(桑波田興)씨는, 島津領內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豊臣정권은 해적금지령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외교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쓰지젠노스케(辻善之助)氏의

1) 三鬼清一郎 「海賊禁止令をめぐって」(『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通号125 1996년). 三鬼氏は加藤清正(가토우 기요마사)에게 준 ‘秀吉朱印狀’인 ‘尊經閣所藏’의 「加藤文書」를 참고함.

2) 辻善之助 「元明交通と倭寇」(『増訂海外交通史話』東京 内外書籍, 1930년5월) 262쪽.

3) 田中健夫 「日本中世海賊史研究の動向」(『史學雜誌』68(2), 1959년).

논지인, 즉 秀吉가 博多에서 해적금지령을 발포하였다는 설을 부정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⁴⁾.

그리고, 우다가와다케히사(宇田川武久)氏は 주로 瀬戸内海지방을 중심으로 중세 해적중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며 해적금지령을 통하여 근세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하고 있으며⁵⁾, 후지키히사시(藤木久志)氏에 의하여, 해적금지령에 내재하는 논리가 豊臣정권에 의하여 동아시아외교의 장에서 어떤 식으로 원용(援用)되었는가에 대하여 검토된, 즉 해적금지령이 일본 국내에 한하여 적용된 정책이 아니며, 국외(대외)에 적용된 정책이었다는 논지의 연구가 발표되었다⁶⁾.

또한, 가쓰마타시즈오(勝俣鎮夫)氏は, 중세의 해적중이 사무라이(侍)신분이며, 神人과 商人 등의 다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다가와(宇田川)氏와 같이 해적금지령으로 인하여 해적중이 소멸하는 가운데 중세사회에서 근세사회로 전환하는 모습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⁷⁾, 미키세이이치로(三鬼清一郎)氏は, 전국기(戰國期)에 있어서 해적중의 해체과정에 내재하는 문제와 해적금지령이 발포되어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국내해상의 장악과 더불어 국내통일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논지의 연구가 발표되었다⁸⁾. 아울러, 미키세이이치로(三鬼清一郎)氏は 해적금지령에 대한 법령의 성격과 기능에 관하여서는, 개별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됨을 새로운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네타니사토시(米谷 均)氏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일본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외교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까지 해명된 것은 사실이나, 해적금압(海賊禁壓)의 성과가 어떤 식으로 외교상 전개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豊臣정권의 외교상의 전개를 조선인 해적 사화동(沙火同)의 인도(引渡)사건을 통하여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⁹⁾.

따라서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미키세이이치로(三鬼清一郎)氏が 연구과제로 제시한, 해적금지령에 대한 법령의 성격과 기능에 관하여서는 개별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논지에 대하여서 깊은 동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인 해적 사

4) 桑波田興 「天正16年 秀吉法度について」(鹿児島大学教育学部社会科研究室編『鹿児島の歴史と社会』, 1979년).

5) 宇田川武久 『瀬戸内水軍』(教育社歴史新書, 1981년).

6) 藤木久志 『豊臣平和令と戦国社会』(東京大学出版會, 1985년).

7) 勝俣鎮夫 「中世の海賊とその終焉」(帝京大学山梨文化研究所シンポジウム 『「中世」から「近世」へ』, 1994년).

8) 三鬼清一郎 「海賊禁止令をめぐる」(『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通号125 1996년).

9) 米谷 均 「豊臣政權期における海賊の引き渡しと日朝関係」(『日本歴史』(650) 2002년).

화동(沙火同)의 인도(引渡)사건을 해적금지령이 발포된 이래 당시의 조일 관계에 있어서 큰 성과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요네타니사토시(米谷 均)氏에 의한 연구에 다소 이견(異見)을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적금지령에 대한 법령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재확인 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해적금지령과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사화동(沙火同)의 쇄환(刷還)사건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 요네타니(米谷)氏의 논지(論旨)에 대한 이견(異見)을 개진(開陣)해 보고자한다.

2.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

1) 일본 국내의 해상권장악

해적금지령 제1조에(밑줄 친 곳) 備後國(現, 廣島縣)과 伊予國(現, 愛媛縣) 사이에 있는 伊津喜島(伊都喜島, 現 廣島縣)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이 해적중의 활발한 행동 근거지(行動根據地)임을 암시(暗示)하고 있다. 그 이유는 伊津喜島가 瀬戸内海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瀬戸内海지역은 廣島縣 尾都(오노미찌)근처에서부터 愛媛縣今治(이마바리)에 걸쳐 크고 작은 섬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류(潮流)도 복잡하고, 급류도 잘 일어나는 만큼 항해하는 배로써는 무척 어려움이 따르는 해역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해적중이 이러한 지리적 이점(利點)을 충분히 활용하므로 은닉(隱匿)하기 쉬운 거점으로 확보함에 따라 통일권력으로부터 통제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상식적 판단이다.

실제로 11세기 이전 이 지역에는 ‘수선안내인(水先案内人)’이 해적행위의 원형으로 등장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속학자인 미야모토즈네이찌(宮本常一)氏에 연구에 의하면, 「범선(帆船)이 來島(쿠루시마)¹⁰⁾ 등에 위험한 지역인 瀬戸内海 들어서면, 섬에서 작은 배를 타고나와 수선(水先)을 하겠다고 말하며 접근한다. 또한, 大崎上島(오오사카가미시마, 廣島에 속한 섬)에서 忽那(구즈나, 愛媛縣 동부에 위치한 섬)의 사이에서 일용품과 야채 등을 싣고 장사를 하는 배가 때로는 약탈행위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해적으로써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 이러한 미야모토(宮本)氏에 연구를 참고해 보자면 11세기 이 전부터 이 지역에서 해적행위를 행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0) 愛媛縣今治市の 來濁海峽 서측에 위치한 섬.

11) 村上護 『日本の海賊』(講談社、1982年)234~235쪽.

아울러, 이러한 해적행위의 원형이 더욱 해적화된 집단이 출현하게 된 것은 11세기 때부터 모습을 드러낸 무라카미(村上)一族이다. 이 무라카미해적은 단순한 해적중이 아니라 瀬戸内海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鎌倉時代부터 室町時代를 통하여 중앙권력과 九州일대의 호족들과 정치적으로 규합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는 호족과는 싸우는 과정에서 戰國시대에는 그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瀬戸内海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무라카미해적은 瀬戸内海에서의 해상권을 장악하려고 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해상호송권(海上護送權)의 획득이다. 무라카미해적의 수입원은, 瀬戸内海를 항해하는 선박의 하주(荷主)로부터 의뢰 받아 해상호송이라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즉 무라카미 해적에 의하여 안전하게 해상 호송되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하주(荷主)가 태별역전(駄別役錢)이라는 것을 무라카미해적에게 지급하였다¹²⁾ 이렇듯, 무라카미해적에게 있어서 해상호송권(海上護送權)의 획득은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둘째로, 해상교통의 요충지확보이다. 당시에 무라카미해적이 본거지로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 能島(노시마)・綾島(인노시마)・來島(쿠루시마)¹³⁾등의 瀬戸内海에 위치하고 있는 제도(諸島)인데, 이 세 섬은 동서해상권의 요충지이다. 이것은, 무라카미해적에 의한 瀬戸内海의 지배는 四國지방은 물론, 九州지방까지의 해상권장악이라는 아주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무라카미해적에 의한 瀬戸内海의 지배는 四國지방과 九州지방이라는 양 방면의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중국, 남양제도(南洋諸島)까지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곳에 접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하여 막대한 재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무라카미해적이 瀬戸内海에서의 해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伊津喜島를 중심으로 하는 瀬戸内海지역에 한하여 지정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많은 시사성(時事性)을 주고 있다. 즉, 秀吉에게 있어서도 瀬戸内海에서의 해상권장악은 군수물자의 안전한 수송로확보와 군사적 공략의 해상로확보라는 것으로 직결되므로, 당시에 국내통일과정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었다.

이것을 조금 부연설명 해보면, 해적금지령이 발포되기 2년 전인 1586년(선조19, 天正14) 8월경에 秀吉는 九州征伐(島津征伐)을 위하여 대규모의 군세(軍勢)를 보낼 필요가 있었다. 즉, 近畿지방 내에서 瀬戸内海지역을 경유하여 九州에 이르는 해상로의 확보는 곧

12) 村上護의 앞의 책. 260~261쪽.

13) 能島(노시마)는 瀬戸内海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因島(인노시마)는 廣島縣尾都(오노미찌)에 속한 섬이다. 來島(쿠루시마)는 註10을 참조.

군수물자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로 연결되었던 것 만큼 九州征伐(島津征伐)때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九州征伐(島津征伐)후에도 伊津喜島를 중심으로 하는 瀬戸内海 지역의 해상로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면에서 해적을 절멸(絶滅)시키는 것에 의하여, 바다의 평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그 당시에 瀬戸内海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무라카미一族(해적)을 금압(禁壓)하는 것으로 秀吉에 있어서 국내의 중요 해상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매우 필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2) ‘刀狩令’성격의 ‘兵漁分離’에 의한 신분제확립

秀吉는 1588년(선조21, 天正16)에 해적금지령만이 아닌 또 하나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刀狩令’이다. 이 ‘刀狩令’은 해적금지령과 같은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刀狩の令

條々

一諸國ノ百姓、刀、脇指、弓、やり(槍)、てつはう(鐵砲)、其外武具之たくひ所持候事、堅御停止候、其子細者、不入道具をあひたくはへ、年貢所当を令難澁、自然一發を企、給人にたいし非儀の動をなすやから、勿論可有御成敗、然者、其所之田畠令不作、知行ついえになり候之間、其國主、給人、代官として、右武具悉ク取あつめ、可致進上事。

一右取をかるへき刀脇指、ついえにさせらるべき儀にあらず候之間、今度大仏御建立の釘かすかひに可シ被仰付、然者、今生之儀者不及申二、來世迄も百姓たすかる儀に候事。

一百姓は農具さえもち、耕作專に仕候へは、子々孫々迄長久に候、百姓御あはれみをもつて、如此被仰出候、誠國土安全万民快樂之基也、異國にては唐堯のそのかみ、天下を鎮撫せしめ、宝劍利刀を農具にもちいと也、本朝にてはためしあるへからず、此旨を守り、各其趣を存知、百姓は農桑を精に入へき事。

右道具急度取集、可有進上候也。

天正十六年七月八日 ○秀吉朱印¹⁴⁾

위에 언급한 ‘刀狩令’의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백성(百姓)이 소지하고 있는 武具類(刀, 脇指, 弓, 槍, 鐵砲)의 소지를 금하며 그 武具類를 몰수하는 것을 大名, 給人, 代官에게 명하여, 그것을 거두어들여 奉行人에게 인도(引渡)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¹⁴⁾ 『荻野研究室収集文書』(早稲田大学図書館所蔵貴重資料)

제2조에서는, 거두어들인 武具類는 方廣寺 大仏殿의 釘(못), 鋌(끼쇠, 연결고리)에 이용하기 때문에 백성은 現世만이 아닌 來世까지도 佛恩을 받는다.

제3조에서는, 백성은 농경(農耕)에 전념하는 것에 의하여 자자손손(子子孫孫)영원한 安寧(安寧)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즉, ‘刀狩令’은 ‘太閤檢地’와 더불어 對農民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무장해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方廣寺의 大仏造營에 釘(못), 鋌(끼쇠, 연결고리)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목을 만들어 농민으로부터 무기를 압수하므로 농민들에 의한 무력행사를 포함한 저항 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병농분리(兵農分離)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여 신분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¹⁵⁾.

그러나,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舟持商人, 船頭, 獵師 등의 통제, 특히 해적중의 통제는 ‘刀狩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금지령을 발포하는 것으로 해상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刀狩令’은 농민의 무기를 압수하고 농민을 경작에만 전념시켜, 농민과 무사(武士)와의 신분적 관계를 분리하므로 신분체계를 확립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다. 그렇듯이 해적금지령 또한 해적중을 해체시켜 大名의 수군 무사(水軍武士)와 어민(漁民)으로 분리하여 신분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엿보인다.

따라서, 해적금지령을 통하여 신분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내정치를 안정시켜,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秀吉의 정치적 의도임을 알 수 있다.

3) 海賊衆의 水軍化와 대륙침략

주지한 바대로 秀吉에 의한 瀬戸内海에서의 해상권장악이 군수물자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와 군사적 공략의 해상로 확보라는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秀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瀬戸内海를 지배하는 해적중의 지배와 통제는 결국 수군화의 전환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해적금지령의 발포를 통하여 해적중의 재원인 통과상선(商船)의 유상경호(有償警護)를 포함한 해상에서의 약탈행위를 금압(禁壓)하면서 해적중의 권력중심부인 토호세력(무라카미一族)에게 영주(大名)의 지배체제에 편입시킨다. 그런 후에 秀吉에게 직접 복속(服屬)시켜 秀吉직속의 大名로 기용하여 결국은 秀吉을 정점(頂点)으로 하는 大名권력의 수군으

15) 藤木久志 『刀狩り武器を封印した民衆』(岩波書店、2005年)48~49쪽.

로 재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이러한 통일권력이나 지방권력에 의하여 해적중이 수군화된 전례가 秀吉에 의한 해적금지령의 발포 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 중 몇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 보겠다.

첫 번째 인물은 ‘海賊大名’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쿠키요시타카(九鬼嘉隆)이다. 요시타카는 1560년(명종15, 永祿3)에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에게 기용(起用)된 이래, 1569년(선조2, 永祿12)노부나가陣營의 수군을 인솔하여 기타바다케도모노리(北畠具教)의 지성(支城)인 오오요도성(大淀城)을 공략하여 함락시키는 등의 전공(戰功)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활약으로 요시타카는 정식으로 노부나가의 가신단의 일원이 된다¹⁶⁾,

두 번째 인물은 무라카미다케요시(村上武吉, 노시마다케요시(能島武慶)라고도 함)이다. 다케요시는 1555년(명종10, 弘治元), 오기노쿠니(安芸國)이즈쿠시마(嚴島, 現 廣島縣廿日市市)에서 모리모토나리(毛利元就)와 수에하루카타(陶晴賢)사이에 일어난 ‘嚴島合戰’에서 모토나리陣營에 가담한 이래, 모토나리의 수오우(周防), 나가도(長門)평정에 협력하며 瀬戸内海에서 강한 수군세력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었다¹⁷⁾.

세 번째 인물은 무라카미미찌야스(村上通康)이다. 미찌야스는 무라카미다케요시(村上武吉)와 함께 ‘嚴島合戰’에서 이요수군(伊予水軍)을 인솔하여 모리모토나리(毛利元就)陣營에 원군으로 참전하였다. 그 후에도 모토나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對오오우찌(大内), 오오도모(大友)와의 전쟁에서도 수군을 인솔하여 많은 활약을 보였으나 1567년(명종22, 永祿10)에 유즈끼성(湯築城)에서 병사(病死)한다¹⁸⁾.

이렇듯 해적금지령이 발포되기 전에도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陣營의 수군으로써, 또는 모리(毛利家)의 수군으로써 활약한 점 등으로 미루어 통일권력이나 지방권력에 의하여 해적중이 수군화되는 것은 하나의 통상적인 방법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秀吉가 해적중의 수군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은 무엇이며 이러한 전략적 이익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秀吉가 해적중의 수군화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군사력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수군전력의 극대화이다. 당시에 일반수군의 해상에서의 기술과 실전력(實戰力)보다, 해적중이 갖고 있는 해상에서의 기술과 실전력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이 자연적인 발상일 것이다. 그 이유는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그리고 조류(潮流)가 복잡하고 험난한 지리적 특징이 있는 瀬戸内海에서 해민(海民)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적

16) 藤岡豊之『伊勢志摩の海賊大名九鬼嘉隆』(『歴史研究』498, 2002年).

17) 黒部亨『村上武吉『毛利輝元軍』』(『歴史讀本』41, 1996年).

18) 宇田川武久『戰國末期における伊予海賊衆』(『国学院雑誌』74, 1973年).

중의 해양기술(海洋技術), 즉 선박의 항해술과 선박의 조선(造船)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⁹⁾. 또한 이런 해양기술(海洋技術)과 더불어 실전경험이 풍부한 해상에서의 전투능력도 보유한 해적중을 秀吉陣營이 자신들의 수군으로 편입시킨다면 더욱 더 강력한 수군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곧바로 수군전력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지(戰地)에서의 군량미(軍糧米)와 무기류(武器類) 등의 군수물자수송(軍需物資輸送)일 것이다. 이 또한 해적중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해양기술의 접목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²⁰⁾.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이익의 최종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인데 그것은 수군화된 해상세력인 해적중이 국내통일전쟁은 물론 대륙침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秀吉가 국내를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대륙침략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그것은 秀吉가 關白에 취임한 1585년(선조18, 天正13), 즉 해적금지령을 발포하기 3년전에 추진한 정책이 명출병(明出兵)과 大名들과의 영토분쟁 등의 사투(私鬪)를禁한 惣無事令이다. 그 때는 秀吉가 국내통일을 달성하기 전이었기에 국내의 완전한 통일이 급선무이기도 하며 가장 큰 과제였다. 같은 해에 四國의 조우소가베(長宗我部)氏를 평정하고 惣無事令을 거절한 九州의 시마즈(島津)氏도 평정한다. 그런 후 1588년(선조21, 天正16)에 해적금지령을 발포하고 해적중을 秀吉陣營의 수군으로 재편하고, 1590년(선조23, 天正18)에 後北條의 거성인 小田原城을 함락하며 평정한다. 그 후 같은 해에 奥州를 귀복(歸服)시키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게 된다. 국내통일을 이룬 秀吉가 맨 처음 취한 조치가 일본 국내를 國・郡・村 라는 단위로 나누어 석고제(石高制)에 기초하여 지배하는 지배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국내의 지배시스템인

19) 해적중의 해양기술, 즉 선박의 항해술 등이 뛰어나다는 것은 『선조실록』선조25년6월26일(甲寅)條에 잘 표현되어 있다. 冬至使李裕仁이 왜구의 실정에 대하여 선조에게 告하는 내용이다. “臣竊念, 小邦與伊國, 雖曰竝居東瀛之塹, 茫無際畔, 島嶼交錯, 窟穴險遠, 此乃天地所以區別醜種也。彼以舟楫爲家, 寇抄爲業, 飄往來無常。而小邦之人, 則短於柁 不習下洋, 爲邊吏者, 惟守備是圖 ” 즉, 신이 생각하건대, 소방과 일본국이 비록 동쪽 바다에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가 아득히 멀고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그들의 소굴이 험하고 요원하니 이것은 바로 천지(天地)가 추악한 종족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저들은 배를 집으로 삼고 침입하여 약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바람에 돛을 달고서 신속하게 움직여 정처없이 왕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배타는 데 서툴고 바다로 다니는 일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변방의 관리가 된 사람들은 오직 수비(守備)만을 도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20) 전지(戰地)에서의 군량미(軍糧米) 등의 수송은 舟持商人에게도 의존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三鬼清一郎의 앞의 논문.

國・郡・村 라는 단위조성을 일본 국내에 한정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외, 즉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도 평정하여 패권을 잡은 일본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효지배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²¹⁾.

이것은 秀吉가 일본 국내통일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국가로써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려고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에 秀吉가 갖고 있는 대외관(對外觀)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夫吾國百有余年，群國爭雄，車書不同軌文予也。際誕生之時，以有可治天下之奇瑞，自壯歲，領國家不歷十年而不遺彈丸黑子之地，域中悉統一也。繇之三韓琉球遠邦異域款塞來享，今也欲征大明國蓋非吾所爲，天所授也。如其國者，未通聘禮，故先雖欲使群卒討其地，原田孫七郎以商船之便，時來往，此故紹介干近臣曰，某早々到其國，而備可說本朝發船之趣，然則可解弁獻筐云々，不出帷幄，而決勝千里者，古人至言也，故聽褐夫言也，而暫不命將士來春可營九州肥前，不移時日，可偃降幡而來服，若匍匐膝行於遲延者，速可加征伐者必矣，勿悔，不宣

天正十九年秋季十五日

日本國關白

小琉球²²⁾

위의 사료는 秀吉가 국내통일을 이루고 1년 후인 1591년(선조24, 天正19)에, 즉 조선침략을 1년 앞두고 하라다마고시치로(原田孫七郎)를 시켜 필리핀총독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서간(書簡)을 발송한다. 이 서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밑줄 친 부분)곳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 秀吉가 태어났을 때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길조, 즉 신기한 조짐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둘째로, 三韓(조선)과 琉球 등의 他遠國을 강복(降服)시키고, 明을 정복하는 것은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받는 곳이 필리핀총독 앞으로 되어 있는데 ‘小琉球’라고 표현한 것은 필리핀총독을 밑으로 보고 있는 멸시관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 할 수가 있다.

이에 秀吉는 국내통일의 달성과 동시에 朝鮮, 琉球, 그리고 최종적인 정복지를 明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재편성을 노리는 대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것은 秀吉에 의하여 명출병(明出兵)이라는 대륙침략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21) 紙屋敦之 『大君外交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1997년)110~112쪽.

22) 『朝鮮征伐記』異國嚴書, 異國往復書簡集. 29쪽.

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明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일본열도에서 대륙까지 도해(渡海)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해양기술, 즉 선박의 항해술과 선박의 조선(造船)능력이 뛰어난 정예수군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다²³⁾.

따라서 秀吉를 정점(頂点)으로 하는 大名권력의 수군으로 재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해수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본다.

3. 조선피로인 沙火同송환사건

1) 損竹島사건과 사화동

전라도남양해상의 손죽도(損竹島, 현재全羅南道麗水市巽竹島)에 왜구가 침입하여 조선 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 녹도보장(鹿島堡將)이대원이 전사하게 된다²⁴⁾. 그런 후, 같은 해 2월27일에 또 다시 왜구가 가리포(加里浦)에 침범하여 병선(兵船)4척을 빼앗기고, 첨사(僉使) 이필(李耆)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²⁵⁾.

또한 사화동(沙火同)이란 인물이 손죽도사건과 연관되었다는 보고가 경상도암행어사((暗行御史) 이정립(李廷立)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금의 왜변(倭變)은 우연히 변경을 침범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선(戰船)을 넉넉히 준비하여 대거 침입했습니다. 고풍손(高風孫)이 전한 대로 사을화동(沙乙火同)의 소행이란 것이 이미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교전하고서 선박을 불태우고 장수를 죽였으니 곧바로 침범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²⁶⁾

²³⁾ 1592년(선조25)에 勃發한 임진왜란 때에 일본은 1番(軍)에서 9番(軍)까지 15만8천7백 명이라는 16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였다. 16만에 가까운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잘 건조된 병선(兵船)과 군수물자를 담당할 보급선(補給船)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목적지까지의 안전한 도착 또한 필수였기에 선박의 항해술과 선박의 조선(造船)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해적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²⁴⁾ 『선조수정실록』 선조20년2월1일(庚申)條. “倭船寇興陽, 鹿島堡將李大元, 拒戰敗死. 先是, 倭船數隻犯近島, 大元不及報主將而擊之, 有斬級, 水使沈巖惡其自功. 未久倭船犯損竹島, 巖以大元爲斥候, 而不肯繼援, 衆寡不敵而敗.”

²⁵⁾ 『선조실록』 선조20년2월27일(丙戌)條. “全羅右水使馳啓, 倭賊犯加里浦伏兵處, 兵船四艘被掠. 僉使李耆 左目中矢, 退走事.”

²⁶⁾ 『선조실록』 선조20년3월2일(辛卯)條. “今茲倭變, 非偶然犯境之比. 多備戰船, 大舉而來. 高風

즉, 고평손(高風孫)이란자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사화동(沙火同)이라는 인물이 손죽도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화동(沙火同)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일까?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전라도 좌수영 진무(全羅道左水營鎮撫) 김개동(金介同)과 이언세(李彦世) 등이 지난해 봄 손죽도(損竹島) 싸움에서 왜노(倭奴)에게 잡혀가 남蕃國(南蕃國)에 전매(轉賣)되었다가 중국 지역으로 도망쳐 조사를 받고 북경(北京)으로 이송(移送)되었는데, 이번에 사은사 유전(柳堧)이 돌아오는 길에 달려 보내왔다. 김개동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화동(沙火同)이란 자는 우리나라 진도(珍島) 사람으로 왜노에게 잡혀가 온갖 충성을 다 한 자인데 저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풍속과 인심이 매우 좋아서 거주(居住)할 만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선은 부역(賦役)이 매우 고되고 대소(大小)의 전복(全鰓)을 한정 없이 징수(徵收)하여 감당할 길이 없으니, 이곳에 그대로 거주하라. 지난 연초(年初)에 마도(馬島) 가리포(加里浦)를 침범하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손죽도(損竹島)에 정박하였는데, 이는 내가 인도해 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섬 이름은 오도(五島)로 돌레가 며칠 길이 되고 인구가 꼭 들어차 하나의 큰 고을(州)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포된 자들이 많았고 배 5백여 척이 있었는데 전라우도(全羅右道)의 복병선(伏兵船) 전부를 나포 하였기 때문에 궁전(弓箭)과 총통(銃筒)까지 다 가져갔으나 쌓아 두기만 하고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하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될 뿐이었습니다.²⁷⁾

위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밑줄 친 부분) 사화동이 전라남도 진도(珍島)출신으로 왜구에게 피로(被虜)되었다는 사실이며, 손죽도사건 때에 선도역(先導役)으로 왜구의 길 안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사화동같이 왜구에게 피로(被虜)된 조선인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사화동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화동이 자발적으로 왜구를 하겠다고 자처한 것이 아닌 왜구에게 피로(被虜)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왜구로 전향(轉向)한 것이 아니라, 왜구에게 피로(被虜)된 후에 사화동

孫所傳沙乙火同之所爲，已非虛矣。一番交鋒，燒船殺將，直搗無難。본 사료에는 사을화동(沙乙火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인물이 사화동(沙火同)과 동일인물이다.

27) 『선조실록』 선조21년11월17일(丙寅)條. “全羅道左水營鎮撫金介同、李彦世等，於去年春損竹島之戰，爲倭擄去，轉賣南蕃國，因逃入中國地界，盤問解送北京，謝恩使柳堧等之還也，順付以來。介同等之言曰“有沙火同者，我國珍島人也。被擄而去，因効忠於倭奴，謂介同曰‘此地，風俗人心甚好，可居也，汝可無懼。朝鮮則賦役甚苦，大小全鰓，無限徵出，不勝支當，因留居此。前年初，欲犯馬島加里浦，風候不順，泊于損竹島，此乃我之所嚮導也。’云云。其島名曰五島，周回數日程，人居稠密，若一大州，我國人被擄者居多，有船五百餘艘，全羅右道伏兵船全數虜去，故弓箭銳筒，亦皆輸去，而徒爲積置，不知試用，只兒童爲戲具而已。”

이 손죽도까지 선도역(先導役)으로써 왜구에게 협조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동이 조국의 반역자로서 조선측에 많은 피해를 안겨준 죄인신분인 것은 사실이나, 그를 왜구로 보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으며, 한명의 조선피로인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 조일 양국의 沙火同 쇄환사건

손죽도사건이후 1587년(선조20, 天正15)6월15일, 秀吉는 쓰시마에서 건너 온 소우요시 시게(宗義調)와 소우요시토시(宗義智)를 만난자리에서 조선국왕의 입공(入貢)교섭을 엄명(嚴命)한다. 秀吉의 엄명을 받은 소우(宗)氏は 특송사(特送使)와 위일본국왕사(僞日本國王使)를 번갈아가며 파견하여 교섭에 임한다. 그러나 조선은 秀吉가 국왕찬탈자(國王篡奪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통신사파견을 거절 한다²⁸⁾.

그런 후에 1588년(선조21, 天正16)에 동·서반 2품과 육조의 참의(參議) 이상이 중추부(中樞府)에 회합하여, 일본에 보낼 통신사(通信使) 문제에 대해 모두가 그들의 청을 쉽게 받아들여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중론이 모아져 선조가 의결에 따라 그대로 시행 하라고 명한다²⁹⁾.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秀吉는 1589년(선조22, 天正17)에 소우(宗)氏에게 다시 엄명을 내린다. 엄명을 받은 소우요시토시(宗義智)는 조선으로 건너가 동년7월16일에 한양(漢陽)에 도착하여 8월4일에 예조연(禮曹宴)을 받는다. 같은 날 선조(宣祖)는 일본과의 교린책(交隣策)에 관한 교지(教旨)를 도승지(都承旨)조인후(趙仁後)에게 내린다.

‘귀국(貴國)의 오도 도주(五途島主)와 피난 도주(避難島主)가 우리 나라 반적(叛賊) 사을 포동(沙乙蒲洞)의 죄를 받아들여 무리를 모아 작폐(作弊)했다.’고 하였는데 그 말들이 다 한결같으며, 또 그 얼굴을 직접 보았거나 그 성명을 환히 아는 자도 있었다. 대왕이 만약 신의(信義)로써 인호(隣好)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이 일은 본시 나의 좌우(左右)에서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당 두 도주 및 사을포동과 작폐 당시에 가세한 적괴(賊魁) 4~5명을 묶어 보내고 또 전후(前後)에 포로가 된 백성을 모두 되돌려 보내 폐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 대왕의 처사가 광명正大(光明正大)하여 매우 훌륭함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과인(寡人)이 의당 한 사신에게 척서(尺書)를 주어 보내 성의를 표할 것이고 파도의 험악함과 도로의 어려움을 사양치 않겠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 어찌 성신(誠信)이 상호 교부

28) 『선조실록』 선조20년10월20일(乙亥)條. 日本國, 廢放其國王, 而立新君, 乃篡弑之國, 不可接待其來使。當以大義開諭入送。

29) 『선조실록』 선조21년3월4일(丁亥)條. 東西班二品, 六曹參議以上, 會于中樞府, 日本國通信使議得, 皆以爲不可遽從其請而遣使。上命依議施行。

(交孚)되어 영원히 만세에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다면, 말이 정당하고 의리가 장엄하여, 저들이 스스로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은 물론, 우리 사신을 유치시키는데 급급하여 반드시 전일의 도적들을 묶어 보내고 잠깐 백성들을 되돌려 보낼 것이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위명(威名)이 어떠하겠는가. 우리 또한 즉시 사신을 보내 사례해야 할 터인데, 이는 그 후의에 사례하고 정성에 보답하는 것이고, 이유없이 사신을 보내 역적의 뜰에서 이마를 조아리며 조공(朝貢)하는 것이 아니다. 사신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이나 그 의의는 같지 않으니 어찌 홀륭하지 않은가. 저들이 만약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는 얼마든지 구실을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신·비변사·예조는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³⁰⁾

즉, 선조(宣祖)가 내린 일본과의 교린책(交隣策)에 관한 교지(教旨)의 내용은 손죽도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과 사화동을 결박하여 송환할 것과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들의 쇄환이 이루어지면 통신사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 후에 선조(宣祖)는 동년9월9일에 대제학(大提學)유성룡(柳成龍)과 통신사파견에 대한 논의를 하고³¹⁾ 9월21일에는 좌의정李山海와 우의정鄭彦信과 마지막으로 논의 한 후에³²⁾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 한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 드디어 1590년(선조23, 天正18)에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에서 선조(宣祖)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부례(獻俘禮)를 거행하므로 사화동의 쇄환과 함께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이 송환(送還)되었다³³⁾.

결국, 조선피로인 사화동은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 등과 함께 한양의 외곽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30) 『선조실록』 선조22년8월4일(己卯)條. 貴國之五途島主, 與避難島主, 納我國叛賊沙乙蒲同之謀, 嘯聚作耗’云云, 如一出口, 而亦有親見其面目, 而明知其姓字者。大王如欲以信義, 敦結隣好, 而謂此事本非吾左右之所知者, 則宜縛送二島之主, 及沙乙蒲同, 與夫作耗時出來賊魁四五人, 仍盡還其前後被擄之民, 使弊邦大小之人, 皆知大王之所作, 爲光明正大, 出尋常萬萬。則寡人便當馳一介使臣, 使奉(咫)尺書, 以謝卑忱, 壽之險, 道途之艱, 有不辭矣。夫如是, 則兩國之間, 豈不誠信交孚, 而永有辭於萬世也哉 云爾, 則辭宜而義壯, 渠且自反之不暇矣, 日本急於專致我使, 未必不縛送刷還。萬一縛送刷還, 則其有光於我國, 爲如何哉 而我即遣使謝之, 是謝其厚意, 而答其誠款也, 非無端遣使, 稽顙獻琛於逆賊之庭也遣使一也, 而其所以遣使之義, 則不可同日而語矣, 豈不韙哉? 渠若不從我言, 則是曲在於彼, 而我得以爲辭矣。大臣、備邊司、禮曹熟議, 以啓。”

31) 『선조실록』 선조22년9월9일(癸丑)條. 成龍曰 “彼禮曹宴享時, 或於宣慰使相接時, 言於客使曰, ‘通信使, 初非朝廷之所不會也。自前海寇出沒, 風濤阻梗, 故久廢不舉矣, 頃日亦有海寇犯我南邊, 且我國逋逃之民, 貴國一不刷還。如是而曰海寇寧靜可乎 今若縛送賊魁, 而我民逋逃者, 無遣刷還, 則通信使方可議處矣。” 上曰 “注書詳書之, 當言于該曹矣。” 啓訖, 以次退。

32) 『선조실록』 선조22년9월21일(乙丑)條. 左相李山海, 右相鄭彦信, 詣闕請面對, 卽引見, 以通信于日本事也。上命召從二品以上引見, 各陳所見, 以爲通信爲便, 獨李山甫以爲不可, 上從廷議, 命遣通信使。

33) 『선조실록』 선조23년2월28일(庚子)條. 玆島居沙乙火同, 投入倭國, 嚮導作賊, 至是日本刷還。上御仁政殿, 行獻俘之禮

그리고 동년 3월1일에 침지(僉知) 황윤길(黃允吉)을 통신사(通信使)로, 사성(司成) 김성일(金誠一)을 부사로, 전적(典籍) 허성(許箴)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소우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일본으로 향하였고, 약 1년이 지난 1591년(선조24, 天正19)3월1일에 귀국하였다.

그런 후, 통신사가 귀국한지 약 1년 후에, 즉 1592년(선조25, 天正20), 秀吉은 조선출병을 위하여 동년 1월에 전국각지의 大名들에게 병력동원령을 내리고 동년3월에는 일본군의 전투주력부대를 쓰시마에 집결시킨 후에 동년4월14일 부산에 상륙하므로 조선과의 대전쟁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손죽도사건이 후, 조일 양국이 통신사파견문제를 가지고 교섭하는 가운데 조일 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치적 흐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검토해본 결과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秀吉로부터 조선국왕의 입공(入貢)이라는 엄명을 받은 소우요시시게(宗義調)와 소우요시토시(宗義智)의 외교적 대응이다. 사실은 秀吉가 소우요시시게(宗義調)에게 조선국왕이 일본에 종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섭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선출병을 강행한다는 취지의 무리한 난제를 안겨 주었다. 이에 요시시게는 조선출병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하여 노력하지만, 1588년(선조21, 天正16)에 급사(急死)하고 만다. 가독(家督)을 이어받은 소우요시토시(宗義智)도 부친요시시게에 이어 조선출병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한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조선정부가요구하는 사화동을 비롯한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의 송환(送還)이었다. 소우요시토시(宗義智)는 사화동을 비롯한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의 송환(送還)을 성립시키게 되었고, 秀吉가 원하는 대로 조선통신사 파견이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더욱더 흥미로운 것이 소우요시토시(宗義智)는 秀吉에게 황윤길등의 조선통신사를 복속사(服屬使)라는 칭호로 만나게 해주었으며, 황윤길 등의 조선통신사일행에게는 秀吉에 의한 전국통일에 축하사절로 파견한다는 거짓된 취지로 설득하여 어렵게 파견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화동을 비롯한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의 송환(送還)과 황윤길 등의 조선통신사파견은 쓰시마의 소우요시시게(宗義調)와 소우요시토시(宗義智)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秀吉가 발포한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조선,중국 등에서 광범위하

게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던 해적중 또는 왜구의 활동을 금압(禁壓)하기 위하여 발포하였다는 것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한, 瀬戸内海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무라카미一族(해적)을 금압(禁壓)하는 것으로 秀吉에 있어서 국내의 중요 해상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매우 필요한 요소였던 것과 해적금지령을 통하여 신분제를 확립시키므로 국내정치를 안정시켜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秀吉의 정치적 의도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秀吉을 정점(頂点)으로 하는 大名권력의 수군으로 재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해적중의 수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본다. 이는 결국 해적중의 수군화를 통하여 정예수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일본군의 전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므로 국내통일을 달성함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 심적 논지(論旨)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사화동(沙火同)의 쇄환(刷還)사건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요네타니(米谷)氏의 논지(論旨), 즉 조선인 해적 사화동(沙火同)의 인도(引渡)사건을 해적금지령이 발포된 이래 당시의 조일 관계에 있어서 큰 성과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견(異見)을 다음의 세 가지로 개진(開陣)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미키세이이치로(三鬼清一郎)氏가 연구과제로 제시한, 해적금지령에 대한 법령의 성격과 기능에 관하여서는 개별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논지에 대하여 동감하며 그 논지에 부합되는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 결과, 秀吉가 발포한 해적금지령의 성격과 기능이 해적중의 수군화를 통하여 정예수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일본군의 전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므로 국내통일을 달성함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네타니(米谷)氏의 논지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던 해적중 또는 왜구의 활동을 금압(禁壓)하기 위하여 발포하였다는 일반적인 논지에 불과하며 더욱 다양한 범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둘째로, 요네타니(米谷)氏는 일본의 역사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왜구의 인적구성에 대한 고정된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사화동을 조선인해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사화동을 조선인 왜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화동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왜구를 하겠다고 자처하여서 왜구에 투항한 것이 아니라 왜구에게 피로(被虜)되어서 왜구의 선도역(先導役)이 되었던 것만큼 그를 왜구로 보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으며, 한명의 조선피로인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셋째로, 요네타니(米谷)氏의 가장 핵심적인 논지, 즉 조선인 해적 사화동(沙火同)의 인

도(引渡)사건을 해적금지령이 발포된 이래 당시의 조일 관계에 있어서 큰 성과물이었다고 하는 논지이다. 결국 이 논지는 秀吉에 의한 해적금지령의 발포로 조선정부가 요구하는 사화동을 비롯한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의 송환(送還)이 이루어지므로 조선통신사의 파견을 성립시키게 하였던 것만큼 당시의 조일 관계에 있어서 큰 성과였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사화동을 비롯한 五島島主와 平戶島主, 그리고 적괴(賊魁) 4~5명의 송환(送還)과 조선통신사의 파견이 성립된 것은 秀吉에 의한 해적금지령의 발포의 효력이 아니라 조선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하여 활발한 교역을 바라던 쓰시마의 소우요시시게(宗義調)와 소우요시토시(宗義智)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립되었던 것이기에 이러한 요네타니(米谷)氏의 논지는 당시의 조일 관계에 있어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高麗陣供養碑의 流轉

이 세 연(동경대)

目次

1. 머리말
2. 고려진공양비의 건립경위
3.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싼 근세인의 시각
4.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문명'의 '전통'과 고려진공양비
5.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의 중·근세사회에는 전후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전사자일반을 공양하는 관행이 있었다.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사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데 있어서, 피아전사자공양은 필수불가결한 통과 의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첨부 표를 참조).

피아전사자공양은 대체로 불교적 감화에 의해 형성된 일본사회의 미풍양속, 전통문화라는 시각에서 해석되어 왔다¹⁾. 환언하자면, 피아전사자공양은 일본사회에 뿌리내린 불교적 자비심을 배경으로 거행된 것이라 설명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피아전사자공양=자비>라는 통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이론(異論)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다마무로 다이쥬(玉室諦成)는 전승자(戰勝者)들이 원령(怨靈)의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아전사자공양을 거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²⁾, 최근에 다치바나 모토이(立花基)는 전승자에 의한 전후의 정치라는 시각을 제시했다³⁾.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통설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1) 鷲尾順敬, 『國史と仏教(七)』, 『正法輪』 273, 1910, 5~7쪽; 橋川正, 『怨親平等の思想』, 『大谷學報』 10(4), 1929; 辻善之助, 『日本人の博愛』, 金港堂, 1932; テレンクト・アイトル, 『一三世紀『蒙古襲來』と『蒙古の碑』—日本の死生觀における鎮魂と怨親平等をめぐって—』, 『現代宗教』, 東京堂出版, 2006; 山田雄司, 『跋扈する怨靈—崇りと鎮魂の日本史—』, 吉川弘文館, 2007, 174쪽 이하 등.

2) 『葬式仏教(オンデマンド版)』, 大法輪閣, 2004(초판은 1963), 199쪽 이하.

3) 『戰國期島津氏の彼我戰沒者供養』, 『日本歴史』 762, 2011.

마무로와 모토이의 가설은 피아전사자공양의 실태 분석에 근거한 것인데,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은 피아전사자공양을 둘러싼 역사인식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대에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을 구축해 간 자들은 당대의 일급 사학자들로, 이들이 다마무로나 모토이가 읽어낸 원령 등의 요소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그들은 사료 상에 보이는 원령 등의 요소를 자각적으로 배제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피아전사자공양을 자비로 읽어내야 했던 근대일본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요컨대,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피아전사자공양에 대한 동시대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동시대적인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고려진공양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직후 시마즈(島津)씨에 의해 세워진 고려진공양비는 피아전사자공양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혀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재고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고려진공양비의 건립경위

고려진공양비는 1599년 6월, 구카이(空海) 입정(入定)의 성지인 고야산(高野山) 오쿠노인(奥の院)에 건립되었다. 고려진공양비는 처음에 '食堂路傍'에 세워졌지만, 훗날 현재의 소재지(시마즈가 묘역)로 이전되었다. 이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야산의 고지도를 참조하면, 대략 1800년 전후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공양비의 높이는 약 4미터, 폭은 약 80센티이며, 석재는 시마즈씨가 조선에서 실어 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상의 기초지식을 전제로 비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게이쵸(慶長) 2년 8월 15일, 전라도 남원에서 전사한 대명국(大明國) 군병 수 천기 가운데, 시마즈군에 의해 토벌된 것은 420명이다.

같은 해 10월 1일, 경상도 사천에서 대명인(大明人) 8만 여의 군병이 전사했다.

양크⁴⁾ 고려국에 진주했을 때 전사한 피아군병을 불도로 이끌기 위해 비를 세운다.

상기, 곳곳의 전장에서 아군 사졸로서 궁전도장(弓箭刀杖)에 희생된 자 3천여 명, 해륙 간에 횡사, 병사한 자는 상세하게 기술하기 어렵다.

4) 태장계대일여래(胎藏界大日如來)를 의미하는 종자(種子).

살주(薩州) 시마즈 효고노카미(嶋津兵庫頭) 후지와라 아손(藤原朝臣) 요시히로(義弘)
 慶長第四己亥歲六月上漸 同子息 少將 다다쓰네(忠恒)
 이를 세움

고려진공양비의 건립 의도는 우선 종자(種字) 앙크 이하의 주문(主文)에 응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문장에서는 전사자에 대한 공양주체의 자비가 읽혀진다. 그러나 주문 위의 문장(실제로는 주문 우측의 문장)에 주목해보면, 고려진공양비를 세운 시마즈씨의 심증은 자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위의 문장에 따르면, 남원전투와 사천전투는 일본군과 '대명' 군병의 전투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史實)에 어긋난 주장으로, 남원전투와 사천전투는 일본군과 조명(朝明)연합군의 전투였다. 물론 사천전투의 경우, 명군이 절대다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조선군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남원전투의 경우, 방어군의 인적구성은 연합군의 명칭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시마즈씨가 실제로 조선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선군 전사자의 존재는 의도적으로 망각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선군 전사자에 대한 망각은 자신의 전공을 현창하고자 하는 시마즈씨의 의도를 시사하는 듯하다. 즉, 전공을 보다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명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설명보다는 어디까지나 대명국의 군병을 격파했다는 설명이 효과적인 것으로, 시마즈씨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경상도 사천에서 대명인 8만 여의 군병이 전사했다'라는 구절이다.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에 따르면, 사천전투에서 시마즈씨가 실제로 무찌른 적병은 30,817명이었다⁵⁾. 고려진공양비의 '8만 여'라는 숫자는 가공의 숫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조선군 전사자의 존재가 망각되었다는 사실과 사천전투에서 무찌른 적병의 숫자가 크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해 볼 때, 고려진공양비에는 전승기념비로서의 의미



<그림 1> 고려진공양비의 탁본(『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 4, 1915에서 전재)

5) 『島津史料からみた泗川の戦い—大名領國の近世化にふれて—』, 『歴史學研究』 736, 2000, 16~17쪽.

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고려진공양비는 건립 당초, 자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복수성(複數性)은 근세에도 계승되었다.

3.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싼 근세인의 시각

근세에 있어서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기술은 18세기 이후에 보이기 시작한다. 고야산의 고지도에 고려진공양비의 소재지가 확인되는 한편, 몇 가지 연대기와 풍토기에 관련 사료가 등장하는 것이다.

1719년에 편찬된 『高野春秋編年輯錄』 권제13 게이쵸 4년(1599)조에는 '살우(薩隅) 양주(兩州)의 태수인 시마즈 효고노카미(兵庫頭) 요시히로, 자식 소장 다다쓰네가 석비를 오쿠노인[食堂路傍]에 세웠다. 이 석비는 조선에 진주하던 중에 희생된 피아전사자의 보제(菩提)를 빌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비문이 인용되어 있다. 이 기술로부터는 자비의 시각에서 고려진공양비를 바라보는 근세인의 존재가 추측된다.

한편 1839년에 편찬된 『紀伊續風土記』에는 '고로(古老)의 전승에 따르면, 이 비석은 조선에서 개선했을 때 운반하여 이 산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토속에 이르러 와전되어, 이 석탑의 분말을 복용하면 여러 병이 치유된다는 유언비어에 따라, (석탑이) 손톱에 긁혀 마모되었다. 그 석재는 부드러워서 하층 사각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라고 보여, 근세에 이르러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싸고 민간신앙이 발생했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근세의 고야산 참배를 기술한 여행기 가운데 고려진공양비를 특기한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숭앙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민간신앙은 고야산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근세인의 인식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1838년에 편찬된 『紀伊國名所圖會』 三編의 기술이다. 이 책에는 고려진공양비를 방문한 여행자의 모습을 묘사한 삽화에 이어, 회덕당(懷德堂) 4대 학주(學主)인 나카이 치쿠산(中井竹山)의 '紀新塞之捷'이라는 기록과 기주번사(紀州藩士) 출신으로 국학자이기도 했던 다테 치히로(伊達千廣)의 와카 다섯 수가 게재되어 있다.

'紀新塞之捷'의 경우, 그 주안점은 사천전투에서 일본군이 거둔 전공에 있었다. '3만 여급을 참수하였다'라는 구절로 글이 마무리되는 등, 나카이의 기록은 전사자공양과 무관한 것이었다.

한편, 다테의 와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고야산에서 시마즈 요시히로 아손이 세운 신 한군(韓軍)의 비를 보고 비문에 보이는 옛 사적은 불후의 귀감이어라. 말에 쓰는 빗과 채찍의 조공이 끊긴 분함도 잊을 만한 비문이야말로 이것이라. 해 저무는 나라에도 시마즈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던 것이리라. 장구한 세월이 이끼가 낀다 해도 비문에 아로새겨진 이름은 잊히지 않으리. 옛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이처럼 실로 시마즈의 이름을 두려워했으리라.

후지와라 치히로



<그림 2> 고려진공양비를 살펴보는 여행자(『紀伊國名所圖會』三篇 수록)

대략 훑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들 노래는 모두 시마즈씨의 전공을 현창하는 내용이다. 명군이 두려워하여

마지않던 '시마즈의 명성'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칭송되고 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말에 쓰는 빗과 채찍의 조공이 끊긴 분함도 잊을 만한 비문이야말로 이것이라'는 노래이다. 모두에 보이는 '말에 쓰는 빗과 채찍의 조공'이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 전설에 근거한 표현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복했을 때, 신라왕은 황후에 대해 말에 쓰는 빗과 채찍의 조공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요컨대, 다테는 임진왜란기 시마즈씨의 군사행동을 신공황후의 군사행동에 빗대고, 신라로부터 조공이 끊긴 예전의 '분함'도 시마즈씨의 전공을 통해 잊힌다고 노래했던 것이다. 다테의 주안점이 '420명', '3만 여'의 적군을 무찌른 시마즈씨의 전공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다테와 『紀伊國名所圖會』의 편자는 고려진공양비를 전승기념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점을 근거로, 근세에 고려진공양비가 오로지 전승기념비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싸고 있는 공양주체의 자비를 상상케 하는 기술 혹은 기묘한 민간신앙의 전승도 존재했다. 요컨대,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근세인의 인식은 결코 일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려진공양비의 건립에 관련된 복수성을 전제로,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세인의 다양한 인식은 근대라는 필터를 통과하며 굴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일본이 처한 국제환경을 배경으로,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싸고 있는 점차 일정한 상(像)이 굳어져 갔다.

4.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문명'의 '전통'과 고려진공양비

(1) 『赤十字と武士道』의 등장배경

근대에 들어서면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언설이 다수 등장한다. 그 최초의 논고는, 1902년 10월 22일자 오사카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니시무라 텐쥬(西村天囚)의 『赤十字と武士道』였다.

니시무라는 '적십자사의 정신 같은 것은 결코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를 실행해 왔다'라고 하며, 무사도의 존재는 이 점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피아전사자공양, 구스노키 마사쓰라(楠木正行)의 적군 구원과 함께 시마즈씨의 고려진공양비 건립을 들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러한 언설의 배경에는 '문명'사회로의 진입을 둘러싼 근대일본의 모색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적십자사의 창설경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생 메이지정부가 짊어진 부채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서구열강과의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의 개정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지정부는, 일본이 상호 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을 서구열강에 인식시켜야 했다. 환언하자면 메이지정부는, 일본이 서구열강의 문명·가치기준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떠오른 것이 적십자조약이었다⁶⁾. 당시 대부분의 서구열강이 '전쟁의 문명화'를 제창하는 적십자조약에 가입하고 있었던 까닭에, 근대일본에 있어서 적십자조약 가입은 일본이 '문명국'임을 증명해 보이는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메이지정부가 서구의 적십자운동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게 된 계기는 187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였다. 이 박람회에는 훗날 박애사(일본적십자사의 전신)를 창립하고 일본적십자사 사장에도 취임하는 사노 조민(佐野常民)이 파견되었는데, 사노는 서구 각국의 적십자사에서 출품한 의료도구 등을 목격하게 된다. 말년의 사노는 '적십자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통해 문명의 증빙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회고한 바 있는데⁸⁾, 그 밖에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오규 유즈루(大給恒),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 하시모토 쓰나쓰네(橋本綱常),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恵) 등이 적십자운동에 대한

6) 喜多義人, 『日本によるジュネーヴ條約の普及と適用』, 『日本法學』 74(2), 2008, 64쪽.

7) 黒澤文貴, 『近代日本と赤十字』, 『日本赤十字社と人道援助』, 東京大學出版會, 2009, 5~6쪽을 참조.

8) 吉川龍子, 『日赤の創始者佐野常民』, 吉川弘文館, 2001, 106~107쪽.

이해를 바탕으로 크게 활약하여, 일본은 1886년 적십자조약에 가입한다. 이에 따라 이듬해에는 서남전쟁 때에 창설되었던 박애사를 계승하는 형태로 일본적십자사가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메이지시대의 일본에 있어서 적십자는 '문명'에 직결되는 키워드로 통용되었지만, 한편으로 '문명'에 대한 근대일본사회의 시각 자체는 대략 메이지 20년대를 경계로 하여 크게 전환된다. 즉, 서구식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메이지 초기의 경우, 서양 문명이 절대적 가치기준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메이지 20년대에 이르러 일본사회의 전통을 새로이 조망하며 서양문명을 상대화하려는 시각이 부상하였다⁹⁾. 서양의 적십자정신에 대응하는 일본사회의 전통이 존재한다는 언설도 이 무렵부터 확인된다. 예컨대, 청일 전쟁의 발발에 즈음해서는 적십자정신에 상응하는 일본불교의 전통적인 '박애인혜' 정신을 구현하자는 언설이 확인되는가 하면¹⁰⁾, 비슷한 시기에 일본적십자사의 기관지인 『일본적십자』에는 신대(神代) 이래의 '일본혼(야마토다마시)'를 적십자정신에 빗대는 언설이 보인다¹¹⁾.

이상의 맥락을 감안하면, 니시무라의 언설이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니시무라의 언설 속에는 '문명'을 둘러싼 근대일본사회의 모색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피아전사자공양, 고려진공양비가 '문명'의 증빙자료로 예시되었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2) '문명' 전쟁의 전개와 '전통'의 발굴

니시무라의 『赤十字と武士道』가 발표된 지 1년 여 만에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계기로 부상한 황화론을 재삼 주창하며 러일전쟁을 <기독교국/백인종⇔비기독교국/황인종>의 구도로 몰아가려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전쟁비용의 상당부분을 영국과 미국에서 조달해야 했던 사정도 있어서, 러시아의 주장을 부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기독교 문명에 대해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에 비해 보다 '문명적'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에 부심했다¹²⁾.

9) 吉田久一, 「文明開化期から國粹主義勃興期へ—島地默雷を中心に—」, 『日本近代仏教社會史研究(吉田久一著作集6, 改訂増補版)』, 川島書店, 1991; 佐藤能丸, 『明治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政教社の成立とその周辺—』, 芙蓉書房出版, 1998 등을 참조.

10) 『清韓の危機に對する日本仏教徒』(『明教新誌』 3454, 1894).

11) 『日本人の特性を論して赤十字事業に及ぶ』(『日本赤十字』 51, 1897).

12) 이상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 松村正義, 『日露戦争と金子堅太郎—廣報外交の研究—』, 新有堂, 1980; 二村宮國, 「ジェイコブ・H・シフと日露戦争—アメリカのユダヤ人銀行家はなぜ日本を助けたか—」, 『帝京國際文化』 19, 2006; 飯倉章, 『日露戦争中の黄禍論』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미풍'이 '문명'의 증거로 재확인되거나 새로이 발굴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진공양비도 재삼 주목받았다. 예컨대,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1905년에 출판된 『弘安文祿征戰偉績』(史學會編, 富山房)에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高野山朝鮮陣の供養碑」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는 '누가 박애는 그 유래를 특히 서양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한 번 고야산에 올라, 무수한 오륜탑(五輪塔), 보협탑(寶篋塔) 사이에서 조선진공양비가 이채를 띠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비슷한 무렵에 도쿄제국대학 교수 미카미 산지(三上參次)도, 러시아 해군중장 슈테판 마카로프(Stepan Osipovich Makarov)의 전사를 애도하고 러시아 포로를 우대하는 일본인의 태도가 예로부터 이어져 온 '예의인에 정신'의 발로라고 하는 한편, 이 정신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진공양비를 들었다¹³⁾. 미카미의 언설이 일본적십자사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의인에 정신'은 '문명' 정신이라 환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려진공양비는 일본사회의 '문명' 정신을 상징하는 사적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한국 장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졌다고 오인되고 있다는 점은 아울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양문명에 대한 대응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피아전사자공양이라는 형식자체가 중시되고 그 내용은 도외시되었던 것이다.

고려진공양비를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은 메이지 40년대에도 이어졌다. 예컨대, 이시구로 다다노리는 「赤十字事業」(『開國五十年史』, 開國五十年史發行所, 1908)에서, 적십자정신에 일맥상통하는 일본 역사상의 '문명' 사례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눈 후, '(적의) 사자의 영혼에 대해 명복을 기원한 사례의 하나로 고려진공양비를 제시했다. 또한 이시구로의 「赤十字事業」보다 조금 뒤늦게 발표된 가큐(何休)의 「仏教と赤十字思想(上)」(『正法輪』 275, 1910)에도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엇비슷한 해설이 보이는 등, 메이지 40년대에 이르러 니시무라 식의 언설은 정설화 되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1910년에는 일본의 적십자정신, 인도주의에 관한 52가지 역사적 사례를 망라한 『忠愛』라는 서적이 일본적십자사 교토지부에서 출판되어, 고려진공양비도 관련 사례의 하나로 예시되었다.

또한 일본적십자사의 정사(正史)라 할 수 있는 『日本赤十字社史稿』가 1911년에 간행되어, 고려진공양비는 일본국민이 '용무 속에 인애의 지극한 정을 드러내 보인' 증거의 하나로 예시되었다. 니시무라의 「赤十字と武士道」로부터 10년 남짓하여, 고려진공양비는 일

の宣伝に對する日本側の對應」, 『國際文化研究所紀要』 11, 2006; 平間洋一, 「日露プロパガンダの戦い」, 『日露戦争を世界はどう報じたか』, 芙蓉書房出版, 2010 등.

13) 「三上文學博士演說一節」(丹靈源編, 『戰時布教材料集』, 顯道書院, 1905에 수록).

본의 적십자정신, 인도주의 전통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적십자조약 가입과 고려진공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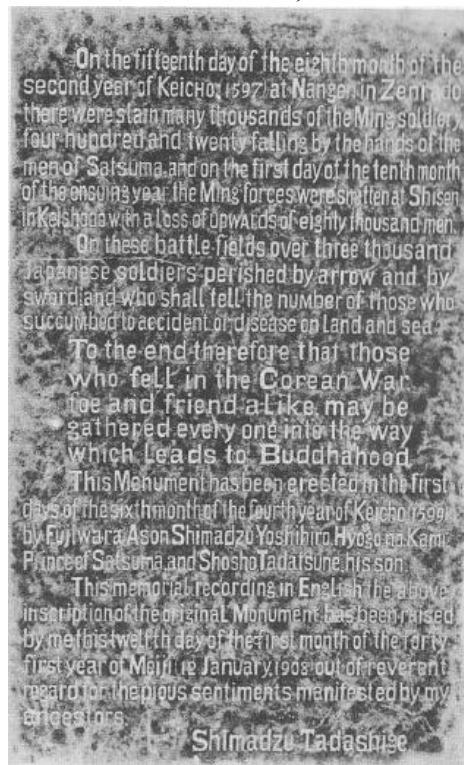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진공양비는 메이지시대에 박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갔다. 그 영향인지, 이 시기 이후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싸고는 한 가지 흥미로운 설이 유포되어 갔다. 즉, 고려진공양비가 일본의 적십자조약 가입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이 유포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와시오 준쿄(鷲尾順敬)는 1909년 효고(兵庫)현 카이바라(柏原)정(町)에서 개최된 불교강습회에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적십자사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언제나 우쭐대기 좋아하는 서양인들은, 일본인 같은 미개인에게는 박애라든가 평등과 같은 숭고한 사

상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고야산의 고려진 석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었던 바, 서양인들조차 크게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¹⁴⁾. 단, 정보의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다.

가토 겐치(加藤玄智) 역시 「古より我邦に充實せる赤十字の精神」(『博愛』 334, 1915)에서, '일본 적십자사가 만국적십자에 가맹할 때, 이 세 가지 사례(구스노키 마사쓰라의 적병구원, 유교지(遊行寺)의 피아전사자공양비, 고려진공양비=인용자)를 통해 예로부터 일본에 적십자정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한 덕분에 곧바로 만국적십자사에 가맹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가토 역시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은 1921년 4월 28일부 윌리엄 메리 클로저(William Mary Crozier) 수신의 서한에서, '이총(耳塚)과는 다른 종류의 비의 존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 3> 1914년에 조성된 고려진공양비 영역비의 탁본(『水原堯榮全集』第六卷에서 전재)

¹⁴⁾ 『國史と仏教(七)』.

이것은 히데요시의 한 부하장수가 조선정벌 직후에 교토로부터 남쪽으로 약 60리 떨어진, 고찰의 소재지로 유명한 고야산에 세운 것입니다. (중략) 이 비는 1885년 일본이 적십자사에 가입할 당시 그 자격의 유력한 증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¹⁵⁾. 사이토는 미국 유학 중이던 1884년, 스위스에서 일본의 적십자조약 가입문제를 조정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미국에 들른 오오야마 이와오, 하시모토 쓰나쓰네 일행의 안내역을 맡은 바가 있어서, 이 때 무언가 관련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적십자조약 가입에 관련된 세 가지 언설을 살펴보았는데, 와시오의 설에서도 추측되듯이 일본의 적십자조약 가입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구주(歐洲) 각국과 종교를 달리 하고, 도덕관념이 일치하지 않는 일본이 적십자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간단히 수긍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⁶⁾. 만국적십자사는 적십자조약 가입조건으로 일본 측에 몇 가지 사실증명을 요구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적십자정신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례의 제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893년 무렵의 이시구로 다다노리·사노조민의 회고담, 하시모토 쓰나쓰네의 전기에 상세한 내용이 보이는데¹⁷⁾, 고려진공양비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가입을 추진한 적십자조약이란, '傷病者の 상태개선에 관한 제1회 적십자조약'이었으며, 가입조건으로 전사자의 취급이 화제가 될 리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진공양비가 거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담으로서의 가능성이며, 공식적인 효력에 관련된 가능성은 아니다. 요컨대, 고려진공양비와 일본의 적십자조약 가입과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를 직결시키는 언설은 메이지~다이쇼시대에 <고려진공양비=박애=적십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결과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십자조약 가입과 관련하여 고려진공양비를 제시하는 언설은 쇼와 전전기(戰前期)에도 보이는데¹⁸⁾, 실은 현재도 야사로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근대를 통해 구축된,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싼 강렬한 박애의 이미지는 오늘날에도 건재한 것이다.

15) 國立國會図書館(일본)藏,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一 수록(リール番号110, 246~247コマ).

16) 日本赤十字病院編, 『橋本綱常先生(複製版)』, 大空社, 1994(초판은 1936), 46쪽.

17) 『日本赤十字』 2, 1892, 4~12쪽; 『日本赤十字』 17, 1893, 6~11쪽; 『橋本綱常先生』, 41쪽 이하.

18) すみ岡生, 『怨親平等の思想と其の事蹟』, 『大日』 246, 1941, 56쪽.

19) 2007년 9월 4일자 『中外日報』의 사설을 참조.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을 재고하기 위해, 피아전사자공양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혀 온 고려진공양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다.

고려진공양비 건립경위의 경우, 비문 분석을 통해 전사자에 대한 자비와 함께 자신의 전공을 현창하고자 하는 공양주체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려진공양비에는 자비 일변도로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다.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싼 복수성은 근세에도 이어져, 근세인은 고려진공양비를 자비·영험·전승기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자 근세까지의 복수성은 사라지고, 고려진공양비를 둘러싸고는 일정한 상이 굳어져 갔다. 자비가 '문명'의 의미로 해석되고 추구되었던 근대일본의 시공 하에서, 고려진공양비는 일본사회의 '미풍'을 상징하는 사적으로 위치 지어졌다.

이상의 검토결과로부터,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이 앞으로 재점검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 논문의 내용이 시사하듯, <피아전사자공양=자비>설을 재점검하는 작업의 중심축은 근대에 두어져야 할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메이지시대에는 고려진공양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아전사자공양의 사례들이 일본사회의 인애·자비·박애='문명'이라는 이름하에 발굴되어갔다. 고려진공양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일련의 '전통화과정'은, 아마도 이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화과정'의 확대재생산 속에서 개개의 피아전사자공양은 '개성'을 잃어버린 채, 총체로서의 피아전사자공양=자비라는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아전사자공양은 몇 해 전부터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사자의 제사·공양에 대한 일본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배경의 하나로 이른바 야스쿠니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의 문제제기²⁰⁾ 이후, 피아전사자공양은 아군 전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제사방식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종종 제시되어왔다²¹⁾. 최근 이에 대한 재비판²²⁾이 시도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스쿠니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는 한

20) 村上重良, 『慰靈と招魂—靖國の思想—』, 岩波書店, 1974, 51~55쪽.

21) 奈倉哲三, 『招魂—戊辰戦争から靖國を考える—』, 『現代思想』 33(9), 2005; 高橋哲哉, 『靖國問題』, 筑摩書房, 2005, 166쪽 이하; 今井昭彦, 『近代日本と戦死者祭祀』, 東洋書林, 2005, 57쪽 등.

22) 小堀桂一郎, 『靖國信仰に見る日本人の靈魂觀』, 『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 44, 2007, 85~89쪽;

피아전사자공양을 둘러싼 언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아전사자공양의 실태, 그리고 피아전사공양을 둘러싼 후대의 인식을 재점검하는 작업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각 시대의 특질에 주의하며 일본사회의 피아전사자공양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藤田大誠, 「近代日本における『怨親平等』觀の系譜」, 『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 44, 2007.

<표> 선행연구를 통해 본 피아전사자공양의 사례

	내용	驚	橋	辻	長	村	高	山
770년	쇼토쿠(稱徳) 천황, 후지와라노 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난 후에 백만탑(百萬塔)을 사원에 안치하다.							○
947~49년	스자쿠(朱雀) 상황, 관군과 적군 전사자의 명복을 빌다.			○	○			○
1064년경	미나모토노 요리요시(源頼義), 적군 전사자의 귀를 안치하는 이납당(耳納堂)을 세우다.			○				
1170년경	다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 호라쿠지(法樂寺)에서 겐페이(源平) 전사자의 명복을 기원하다.						○	
1186년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 곤고부지(金剛峯寺)의 근본대탑을 중흥하고 헤이케(平家)의 명복을 빌다.			○	○			
1187년	고시라카와인, 호겐(保元)의 난 이래 전쟁사자의 명복을 빌다.			○	○			○
1190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헤이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등회를 개최하다.	○		○	○			
1189~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오슈(奥州) 후지와라씨와 요시쓰네(義経) 등의 원령을 달래기 위해 요후쿠지(永福寺)를 세우다.		○	○	○			
1197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호겐의 난 이래의 전쟁사자, 특히 헤이케의 희생자를 위해 팔만사천탑을 조성하다.	○	○	○				○
1209년	가마쿠라 막부에서 가지와라 가게도키(梶原景時)의 명복을 비는 불사가 거행되다.			○				
1281년경	몽고습래의 전적지에서 원군(元軍) 전사자의 명복이 빌어지다.			○		○		
1282년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 몽고습래에서 희생된 전쟁사자의 명복을 빌 요량으로 엔가쿠지(円覺寺)를 세우다.	○	○	○	○		○	○
1282년경	'몽고의 비'(현 겐노지[善應寺] 소재), 세워지다.							○
1335년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호조씨 등의 원령을 달래기 위해 고후쿠지(光福寺)에 기진을 하다.	○						
1335년	고다이고(後醍醐) 천황과 다카우지, 호카이지(宝戒寺)를 세우고, 호조 다카도키(北條高	○		○	○			

	時)의 명복을 빌다.							
1335년경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요세테즈카(寄手塚)와 미카타즈카(身方塚)를 조성하다.			○	○			○
1338~45년	안코쿠지(安國寺)와 리쇼토(利生塔)가 설립, 건립되다.		○	○	○	○	○	○
1345년	북조(北朝)와 무로마치막부, 고다이코 천황의 명복을 비는 텐류지(天龍寺)를 건립하다.		○	○	○		○	○
1354년	다카우지, 전사자의 명복을 빌며 일체경을 서사(書寫)하다.		○	○	○			
1356년	사사키 도요(佐々木道譽), 피아전사자 공양을 위해 저택 부지를 사조도랑(四條道場)에 기진하다.			○	○			○
1359년	오오하라(大原)의 전투 후, 아군과 적군이 협동하여 전사자 일반의 명복을 기원하다.			○	○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메이토쿠(明德)의 난에서 희생된 자들을 위해 불사를 거행하다.		○	○	○			○
1401년~	기타노 만부경회(北野萬部經會) 거행되다.				○			○
1417년	우에스기 노리모토(上杉憲基), 피아전사자공양을 위해 엔가쿠지에 기진을 행하다.							○
1418년	우에스기 젠슈(上杉禪秀)의 난 후, 피아전사자 등을 위한 공양비가 쇼조코지(清淨光寺)에 세워지다.	○	○	○	○		○	○
1475년	마쓰다이라 치카타다(松平親忠), 피아전사자의 보제를 위해 다이쥬지(大樹寺)를 세우다.			○	○			
1526년경	호조 우지도키(北條氏時), 사토미(里見) 군과의 전투 후, 피아전사자를 위해 수총(首塚)을 조성하다.						○	
1542년	소마 아키타네(相馬顯胤), 피아전사자를 위해 수총을 축조하다.			○	○			
1549년	시마즈 다카히사(島津貴久)의 군병, 적군 전사자의 명복을 빌다.			○				
1560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오케하자마(桶狭間)의 전투 후, 이마가와(今川) 군 전사자를 위한 무덤을 만들다.		○	○	○			
1572년	시마즈 다다히라(島津忠平), 이토(伊藤)측 전사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휴가(日向) 기자키바루(木崎原)에 육지장(六地藏)을 세우다.			○	○			
1575년	시노하라(篠原)·시다라하라(設樂原)의 전투			○				

	후, 신겐즈카(信玄塚) 세워지다.							
1578년	시마즈 요시히사(島津義久), 미미가와(耳川)의 전투 후, 오오토모(大友)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붕고즈카(豊後塚)를 세우고 대시아귀를 행하다.			○	○			
1584년	시마즈 요시히사, 시마바라(島原)의 전투 후, 피아전사자의 명복을 빌다.			○	○			
1586년	시마즈씨, 이와야(岩屋)성 함락 후, 피아전사자의 명복을 빌다.			○	○			
1589년	미나모토 아리노부(源有信), 미미가와 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 일반을 위해 공양비를 세우다.		○	○				
1597년	이충 조성되다.		○	○				○
1599년	시마즈씨, 고려진공양비를 세우다.	○	○	○	○	○	○	○
1600년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오오야 요시쓰구(大谷吉継)를 위해 무덤을 조성하다.			○				
1634년	호소가와 다다오키(細川忠興)의 가신 사와무라 요시시게(澤村吉重), 비를 세워 적군 전사자의 보제를 기원하다.			○				
1648년	아마쿠사(天草) 대관(代官) 스즈키 시게나리(鈴木重成), 시마바라의 난에서 희생된 기리시탄을 위해 불사를 행하고 공양비를 세우다.			○				

* 약기한 선행연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鷲=鷲尾順敬, 『國史と仏教(上)』, 『正法輪』 273, 1910

橋=橋川正, 『怨親平等の思想』, 『大谷學報』 10(4), 1929

辻=辻善之助, 『日本人の博愛』, 金港堂, 1932

長=長谷川伸, 『日本捕虜志』(『長谷川伸全集(第九卷)』, 朝日新聞社, 1971에 수록)

村=村上重良, 『慰靈と招魂—靖國の思想—』, 岩波書店, 1974

高=高橋哲哉, 『靖國問題』, 筑摩書房, 2005

山=山田雄司, 『跋扈する怨靈—崇りと鎮魂の日本史—』, 吉川弘文館, 2007

* 위의 표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모든 사례가 문헌사료 등을 통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수평사와 일본기독교계의 상호인식

— ‘해방의 복음’과 ‘증오의 복음’을 중심으로 —

최 경 순(연세대)

目 次

1. 들어가며
2. 전국수평사의 기독교 인식 : “해방의 복음”
3. 기독교계의 전국수평사 인식 : “증오의 복음”
4. 나가며

1. 들어가며

1871년 메이지(明治) 정부의 태정관(太政官) 포고(布告)-이른바 ‘천민해방령’-이후 일본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피차별부락(被差別部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각종 정책과 운동을 전개했다.¹⁾ 이 과정에서 언로(言路)를 통해 발표된 부락관련 언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논리는 부락(민)에 대한 ‘인도주의(人道主義)’였는데, 부락민의 단결과 자주적 부락해방을 기치로 1922년 3월 3일 교토(京都)에서 창립된 전국수평사(全國水平社)도 강령(綱領)에서 강렬한 인간주의를 선언했다.²⁾ 전국수평사에 결집한 구성원들의 사상적 스펙트럼은 사회주의·무정부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 등 다양했지만,³⁾ 근세

1) 부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락 내외의 움직임은 이미 전국수평사의 창립 이전부터 끊임없이 전개된 바 있다. 1880년대 후반 자유민권운동의 고양과 함께 각 지역 부락 내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산가·소지주·엘리트 집단 등이 부락개선을 꾀했던 ‘부락개선운동(部落改善運動)’, 1900년대 초 러일전쟁으로 부락개선운동이 침체된 가운데 전쟁 이후 일본정부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경제적·인적 기반의 창출을 도모했던 지방개량운동(地方改良運動)의 일환으로 ‘부락개선정책(部落改善政策)’, 1918년 일본 전역에서 발생했던 쌀소동(米騒動) 이후 천황주의에 입각해 국가주의적 경향을 강화한 ‘융화운동(融和運動)’ 등이 있다.

2) 전국수평사 강령의 출처는 『水平』 1922.7, 第1卷 第1號 (部落問題研究所 編, 『水平運動史の研究』 第2卷,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1981, 143쪽에 수록).

— 우리 특수부락민은 부락민 자신의 행동으로 절대적인 해방을 기약한다
— 우리 특수부락민은 절대적으로 경제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사회에 요구한다
— 우리들은 인간성의 원리에 각성하고 인류최고의 완성에 향해 돌진한다

이래 부락(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불교 특히 정토진종이었다. 따라서 전국수평사는 창립 초기부터 부락(민)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억압하던 정토진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⁴⁾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순교자로서의 예수상(像)’에 친화성을 보이며 부락해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기독교의 성서나 교리를 자주 인용했다. 전국수평사나 지방수평사에서 발행된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에는 ‘인간’, ‘인도주의’, ‘인류애’, ‘사랑(愛)’ 등의 용어가 자주 눈에 띄고, 그 중에는 기독교적 박애주의와 인간평등의 교리를 적극 주창하며 마치 신학 논문을 연상케 하는 글도 있었다. 부락해방운동의 참여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가시관을 쓴 자신들의 고난으로 감정이입해 ‘해방의 복음(福音)’을 전하는 메신저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기독교계에서는 당시 전국수평사 나아가 부락(민)과 부락해방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신(神) 앞에서 ‘인간의 평등’을 설파한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일본 사회의 모순이자 뿌리 깊은 사회악인 차별문제에 대해 전국수평사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할 터였다. 하지만 일본기독교계는 전국수평사측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고 결국 두 진영의 친화관계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점에 주목해 본고는 두 진영의 상호인식이 엇갈리게 된 주요한 요인을 ‘해방의 복음’과 ‘증오의 복음’이란 키워드로 해명해보고자 한다.

2. 전국수평사의 기독교 인식 : “해방의 복음”

다이쇼(大正) 초기 일본기독교계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사회풍조에 힘입어 도시를 중심으로 교세를 늘려갔다. 신자들은 주로 중소상공업자, 회사원, 공무원, 학생, 도시중산층,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기독교의 각 교파들도 지역별로 연합회를 조직해

3) 상세한 사항은 藤野豊, 『水平運動の社會思想史的研究』, 東京: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98. 참조.

4) 전국수평사측은 창립대회의 결의 항목 가운데 하나로 “수평운동에 대해 동서 혼간지(東西兩本願寺)의 의견을 듣고 행동할 것”을 과제로 삼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부락개선·융화단체에 못지 않게 불교문제를 중시했다. 이 결의에 따라 전국수평사 집행부는 창립대회 바로 다음날, 중앙집행위원장 미나미 우메키치(南梅吉) 등 5명의 대표단으로 진종교단을 방문해 전국수평사 창립에 대한 교단 측의 의향을 물었다. 部落問題研究所 編, 『水平運動史の研究』 第2卷,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1981, 163~164쪽 ; 전국수평사 집행부의 진종교단 방문과 질의, 그에 대한 교단측의 반응 등 상세 경과는 朝治武, 『水平社の原像 : 部落差別 解放 運動 組織 人間』, 大阪: 解放出版社, 2001, 101~103쪽 ; 藤野豊, 『全國水平社の創立と浄土眞宗思想』, 京都部落問題研究所 編, 『京都部落史研究所紀要』 8, 1988.3 참조.

활동하고 있었다.⁵⁾ 이러한 시기에 전국수평사의 창립멤버나 지방수평사에서 수평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인으로 사회운동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⁶⁾가 있었다.

가와와의 회고적 자전소설에 따르면,⁷⁾ 1919년 가가와가 고베(神戸)에서 시작한 소비조합운동(消費組合運動)의 소식을 듣고 훗날 전국수평사를 창립하는 나라현(奈良縣) 가시와라(柏原) 부락의 청년들이 그를 방문해 소비조합운동을 배웠다고 한다. 이 만남을 계기로 가가와는 전국수평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전국수평사창립 준비를 보도한 기사에 전국부락민대회의 개최소식과 함께 대회의 총재에 가가와를 추대하라는 요청이 높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⁸⁾ 전국수평사의 창립에 이르기까지 가가와가 나라현 부락청년들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수평사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상적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전국수평사의 전신인 제비회(燕會) 시절 작성된 수평사창립취지서 『좋은 날을 위하여(よき日の爲めに)』⁹⁾의 곳곳에 기독교 성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가 하면, 전국수평사의 창립과 함께 등장해 전국수평사가 해산하는 날까지 수평운동의 정신을 상징했던 깃발이 ‘형관기(荊冠旗)’였던 점도 눈길을 끈다.¹⁰⁾ 형관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국수평사의 창립멤버

5) 도히 아키오 지음·김수진 옮김, 『일본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1, 216쪽.

6)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1888~1960)는 고베(神戸) 태생의 개신교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이다. 신학생 때부터 고베의 슬럼가였던 니가와(新川)에 들어가 살며 기독교 전도활동을 했다. 미국 유학 후에도 니가와로 돌아왔는데, 당시 니가와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농촌으로부터 유입해 온 부락민이었다. 니가와에서의 활동을 자전적으로 기록한 『사선을 넘어(死線を越えて)』(1920)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부락의 청년들도 애독했다. 高橋貞樹 著・沖浦和光 校注, 『被差別部落一千年史』, 東京: 岩波文庫, 1992, 323쪽 참조.

7) 가가와의 자전소설 『돌베개를 돌우고(石の枕を立てて)』(1939) 가운데 묘사된 나라 부락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의견대립 등에 대해서는 工藤英一, 『社會運動とキリスト教-天皇制・部落差別・鑛毒との闘い』, 東京: 日本YMCA同盟出版社, 1972, 112~113쪽; 도히 아키오 지음·서정민 옮김, 『일본기독교의 사론적 이해』,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150쪽 참조.

8) 『大阪朝日新聞』 1922.1.13 京都附録 “1만의 수난자가 모여 교토에서 수평사를 조직”. 기사에 따르면 “2월 중순에 교토에서 ‘전국부락민대회(全國部落民大會)’가 열리고, 교토부 하의 각종 단체,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시가현(滋賀縣), 나라현 등에서 약 1만명이 모일 예정”이며, “대회의 총재로서 가가와 도요히코의 추대를 요청하는 소리가 높다”고 한다. (鈴木 良, 『水平社創立の研究』,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2005, 195쪽 재인용)

9) 제비회(燕會) 시절 작성된 수평사창립취지서 『좋은 날을 위하여(よき日の爲めに)』는 일본 공산당 이론가 사노 마나부(佐野 學)·영국의 작가이자 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프랑스의 극작가 로맹 롤랑(Romain Rolland)·러시아의 작가 고리키(Maksim Gor'ki) 등 각종 사상가의 문헌과 기독교의 성서(聖書)·정토진중 개조 신란(親鸞)의 저작 등 종교적 문헌을 인용해 수평사 창립의 당위를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텍스트 비판은 鈴木 良, 앞의 책, 第2章 참조.

10) 형관기의 상징과 의미 변화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朝治 武, 『水平社の原像: 部落差別解放運動組織人間』, 大阪: 解放出版社, 2001, <第6章 荊冠旗-水平運動の象徴> 참조.

버이자 형관기의 도안자인 사이코 만키치(西光万吉) 자신이 전국수평사 창립30주년(1952)에 쓴 회상기에 잘 나타나 있다.

형관기(荊冠旗)는 내가 발안(發案)했다. 검은 바탕에 붉은 가시관(荊冠)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깃대는 앞을 날카롭게 기울여 자른 청죽(靑竹)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느낌이었다. 검은 바탕에 흰 해골을 물들은 해적기(海賊旗) 이외에 이런 깃발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다. 게다가 깃대는 꼭 생생한 청죽의 죽창이어야 한다. 이것은 당시 우리들의 음침한 수난과 순교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 깃발을 보지 않고 수평운동을 말할 수 없다. 분명히 작은 별 하나조차 없는 이 깃발은 절망적으로까지 보이지만, 피투성이 인간이 아직 죽지 않고 일어나 살아온 것 같은 기분으로 이 깃발과 깃대를 고안했던 것이다.¹¹⁾



도안자가 스스로 디자인의 동기와 의미를 설명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형관기의 검은 바탕은 암흑과 같은 차별사회를, 형관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될 때 찢던 것으로 수난과 순교를, 형관의 붉은 색은 핏빛으로서 부락해방을 위한 순교적 정신을, 끝이 날카로운 청죽의 깃대는 부락해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¹²⁾ 이것은 부락(민)이 가혹한 차별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대내외에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부락(민)들의 처지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의 순교와 오버랩시킨 것이라 하겠다.

사이코는 형관기의 도안과 아울러 형관기의 의미를 담은 노래(‘荊冠旗の歌’)도 만들었다.¹³⁾ 사이코의 곡 외에도 ‘형관기의 노래’는 다른 지방수평사에서 여러 곡 작성되었는

11) 西光万吉, 『靑竹の荊冠旗』 『部落』 第31號, 1952.3

12) 朝治 武, 앞의 책, 256쪽.

13) 형관기의 노래(荊冠旗の歌) 朝治 武, 앞의 책, 265쪽.

(一) 검은 바탕에 붉게 그린 / 가시관 그대 보지 않는가
수난순교 나타내는 / 우리들의 깃발을 그대 알라

(二) 우리들의 과거 어둡고 / 악몽의 밤 길고
인간 세상 우리에게 냉정해 / 불타는 것은 저주의 불꽃 뿐

(三) 저 만물 유전(流轉)하고 / 우리들의 목숨 되살아나
지금 선택된 백성(民)으로서 / 높이 들어라 형관기

(四) 참으로 인간에 빛 있으라 / 짙어진 십자가는 무거워도
바벨탑은 높아도 / 우리는 꼭 갈 것이다

데, 그 가사 가운데 기독교 사상을 내포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¹⁴⁾ 이처럼 깃발이나 노래 등에서 기독교적 뉘앙스를 느낄 수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예수의 사례를 언급한 글을 살펴보자.

1923년 2월 17일 각 지방수평사의 대표는 오사카(大阪)에 모여 제2회 전국수평사대회 준비협의회를 열고 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격문을 전국 각 지방수평사에 발송했다.

다이쇼(大正) 1년 3월 3일은 기념해야 할 전국수평사창립대회 날이었다. 속박된 우리들 3백만 형제의, 해방의 과정에 대해 기억해야 할 날이다. 마치 이집트에서 천민이 그 질곡에서 벗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되어 홍해의 광야를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게 한다.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해 바야흐로 우리들이 기념해야 할, 3월 3일 제2회 전국수평사대회의 날은 오고 있다. 광야는 구름이 계속 되어 서약의 성지(聖地) 가나안은 멀지만, 우리들의 행진곡은 더욱 용감히 고조되니, 역사는 해방의 과정이다.

6천 부락, 3백만의 형제여. 형관기 아래 단결하라. 우리들의 운동은 단순한 사랑(愛)과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한 인간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양성되어 온 힘과 빛 자체인 것이다. 짙은 검정색 가운데 펴빛으로 물든 가시관(형관)의 기치야말로, 실로 우리들의 수난과 순교의 표징(表徵)이 아니면 안 된다. 지하에 신음하는 수천만의 조령(祖靈)을 제사하는 제단 앞에 참가하라. 예전에 우리들은 천민(賤民)이었다.

바야흐로 우리들은 선민(選民)이다.

‘좋은 날’을 위해 그리운 3백만의 형제여. 단결하라.¹⁵⁾

이 격문에서는 구약성서를 인용해 전국수평사 창립대회에 결집했던 부락대중을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성지(聖地) 가나안에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견주고 있다.¹⁶⁾

「編輯室より」

표지의 사진은 제군(諸君)들 곧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렸을 텐데, 그렇다.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는 당시 노예를 해방하려 한 자유인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노예의 철쇄를 끊으려고 도리어 자신이 스스로 권력자 때문에 십자가상에 피를 흘렸다.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실었다.

(五) 아아, 참담한 국가 파괴하라 / 황성(荒城)의 달 선명한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 일어나 노래하는 것은 누구의 자식인가

14) 防長水平出版部, “共生光り 荊冠旗の歌” 『防長水平』 第1巻第2號, 1924.12. 가사 중에 “동아(東亞)의 천지평등(天地平等)의 / 개가(凱歌)의 소리를 합하면 // 전사(戰士)의 영혼은 영원히 / 에덴동산에 미소 지으리라”와 같은 구절이 있다. (朝治 武, 앞의 책, 268쪽에도 게재됨.)

15) 部落問題研究所 編, 『水平運動史の研究』 第2巻, 173쪽. 1923年 第二回全國水平社大會

16)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기사 출처는 『성서』 『출애굽기』 13:21~22.

그러나 우리들은 기독교도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澤口忠藏)

『奴隷より 自由人へ』

옛날 인간 사회는 자유라는 자연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포학한 자는 없었다. (생략) 우리들은 천년 동안 시련당한 고뇌의 밑바닥으로부터 비약해 자유를 위해, 가시로 장식한 인간의 깃발을 높이 나부끼며 행진한다. 우리들은 주어진 자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빼앗긴 자유를 우리들 가운데 거두어들여야 한다. 우리들은 자유의 그림자를 바라지 않고 자유의 본태(本態)를 요구한다. 탈환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자유를 위해, 그렇다. 우리들의 사명은 거기에 있다. 시대는 분명 활약무대로 직면해 왔다. 불타는 신념과 타오르는 우애의 정조로써 우리들의 일체를 받들어 약진할 것을 맹세한다. -編輯同人-¹⁷⁾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간토수평사(關東水平社)의 기관지 『자유(自由)』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표지로 내세웠는데, 오늘날 잡지의 데스크 칼럼 성격을 띠는 글에서 표지의 사진에 예수상(像)을 게재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편집인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인간 예수를 ‘노예를 해방하려 한 자유인’이자 ‘노예 해방을 위해 희생한 선각자’로 상징함으로써 부락해방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모델로 내세운 것이다.

森 勇一, 『解放の福音』

예수는 선언만이 아닌, 몸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이 해방운동의 희생에 바친 위대한 존재가 아닐까. 예수의 해방선언은 무엇이라 말할까. “주의 영(靈)에 거한다. 따라서 ‘가난한 자’에 복음을 선전하는 것에 힘쓰고, 마음이 애통한 자를 치유하고 또 간힌 사람을 해방하는 것, 맹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압제된 자를 풀어주고, 주의 ‘기뻐하는 해’를 선전하기 위해 나를 보냈다”(신약성서 누가전 4장 18,19절)

예수는 이 선언과 동시에 일체 중생은 조물주를 천부(天父)로 받들고 평등한 신의 아



關東水平社聯盟, 『自由』 第1卷第1號, 1924.7 表紙.

17) 『編輯室より』 郡馬縣 新田郡 關東水平社聯盟, 『自由』 第1卷第1號, 1924.7. 渡部 徹 監修, 『水平運動・部落史研究資料3(復刻版)初期水平運動資料集』 第4卷, 東京: 不二出版, 1996.

들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거기서 예수 자신은 이 천부의 사랑하는 아들(愛子)이라고 하는 자각에 들어감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각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라는 것을 보였다. (생략) 지옥의 아들을 대신해 존귀한 신의 아들(神子)의 영광을 꿈꾸게 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각하고 나면 형극의 관을 쓴 예수와 같이 번뇌구속의 감옥에서 해탈해 개인적 심령의 최대자유를 얻고 뛰어난 인격자가 되고, 외부 아니, 우리들 동포에 인류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략)¹⁸⁾

전국수평사 중앙본부에서는 노선투쟁 과정에서 맑스주의에 입각한 전수청년동맹(全水靑年同盟)이 대두해 1924년 중앙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종교적 투쟁방식을 배격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예수의 혁명가적 이미지를 강조한 글이 발표되기도 했지만,¹⁹⁾ 지방수평사 혹은 전수조직 이외의 단체에서는 초기 수평운동이 상징했던 예수상(像),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인류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한 선각자로서의 이미지가 여전했다. 부락차별을 온존시키는 주체로서 진종(眞宗)교단이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수난 당하는 예수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기독교는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분명 강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3. 기독교계의 전국수평사 인식 : “증오의 복음”

근대 일본의 사회운동에 기독교의 박애주의와 인간평등 사상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각종 사회운동에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한 기독교계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부락(민) 차별문제에 대해서만은 비판의 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계의 활동가로 부락개선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있었지만,²⁰⁾ 그나마도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부터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뿐이다.²¹⁾ 당시 기독교계의 부락문제와 부락해방운동에 대한 인식은 앞

18) 森 勇一, 『解放の福音』, 岡馬縣 平等新聞社, 『平等新聞』第8號, 1926.1. 渡部 徹 監修, 『水平運動・部落史研究資料3(復刻版)初期水平運動資料集』第5卷, 東京: 不二出版, 1996.

19) 沖田松石, 『解放戦線』, 郡馬県 新田郡 関東水平社聯盟, 『自由』第1卷第3号, 1924.10. 渡部 徹 監修, 『水平運動・部落史研究資料3(復刻版)初期水平運動資料集』第4卷, 東京: 不二出版, 1996.

20) 다케바 도라이치로(竹葉寅一郎)는 기독교인으로 전국수평사의 결성 이전 부락개선사업에서 활약한 저명한 사회사업가이다. 그는 1905년 미에현(三重縣) 지사(知事)의 초청을 받아 촉탁으로서 현내 부락개선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각종 사회구제사업을 진행해 많은 성과를 냈다. 다케바의 활동에 관해서는 黒川 みどり, 『地域史のなかの部落問題 - 近代三重の場合』, 大阪: 解放出版社, 2003 참조.

21) 工藤英一, 앞의 책. 72쪽

서 소개한 기독교 사회운동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가 명명한 ‘증오의 복음’이란 용어에 잘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가가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기독교계가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와가는 전국수평사와 부락해방운동을 접하기 전에 고베(新戸)의 빈민가였던 니가와(新川)에서 기독교적 사회사업으로서 빈민구제 활동에 종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옷한 장마저도 벗어주는’ 순교자적 자세로 5년여에 걸쳐 니가와 빈민굴에서 실제 거주했고 그곳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비롯해 여러 저술을 완성했다. 특히 1915년 출간된 『빈민심리의 연구(貧民心理の研究)』는 제목 그대로 빈민들의 심리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정리한 연구서로 가가와의 명성을 드높인 저작이었다.²²⁾

그러나 이 책은 저자의 체험과 열정이 빚어낸 나름의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가가와와 부락문제 인식이 얼마나 일천한가를 여실히 드러낸 문제작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가가와는 이 책에서 ‘특수부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미 1912년 11월에 부당한 차별용어라는 이유로 내무성에서 폐기한 용어였다.²³⁾ 아울러 그는 부락의 기원에 대해서도 학문적 근거 없이 인상적 사례만으로 이인종기원설(異人種起源說)²⁴⁾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주로 인종설(人種說)을 취한다. 그것은 그들이 지나어(支那語) 악센트를 내고 있는 자도 있고, (생략) 어느 특종민(特種民)은 조선어(朝鮮語)를 (생략) 갖고 있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특히 그들의 피부를 연구하면 에타(穢多)에게는 특별한 인종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생략)²⁵⁾

이밖에도 가가와와 부락민에 범죄가 많은 것도 그들이 이인종(異人種)의 자손인 증거라거나, 부락민은 ‘일본제국 중의 범죄종족’이라 주장하는 등 부락과 부락민을 근원적으

22) 工藤英一, 앞의 책. 106쪽

23) 1910년 5월 발생한 대역사건(大逆事件)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된 피고들 가운데는 부락출신자들 또는 부락민들과 친교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계기로 내무성은 촉탁을 파견해 전국의 부락조사를 실시하고 1912년 11월 ‘전국세민부락개선협의회(全國細民部落改善協議會)’를 개최했다. 개선협의회는 정부와 내무성이 전국의 부락개선사업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첫 시도로서, 본래의 명칭은 ‘특수부락개선협의회’였으나, 부락개선단체인 야마토동지회(大和同志會)에서 부당한 차별용어라고 항의한 결과, ‘특수’를 폐기하고 ‘세민’을 사용했다. 白石正明, 『明治末期における部落改善運動の二つの道-京都柳原を中心に-』, 京都部落史研究所 編, 『京都部落史研究所紀要』 1号, 1981.3. 31~32쪽.

24) ‘이민족(異民族)/이인종(異人種)기원설’은 부락민의 기원을 귀화인이나 포로의 자손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중세말기부터 메이지 시기까지도 공공연하게 제창되었다. 부락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적인 연결 관계를 이민족에서 찾는 배외주의적 민족주의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25) 賀川豊彦, 『貧民心理の研究』, 東京: 警醒社書店, 1915. 98쪽.

로 폄하하는 차별의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가가와의 부락(민)인식은 훗날 전국수평사의 규탄 대상이 되었고, 가가와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사과와 함께 저작물의 절판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²⁶⁾

전국수평사는 결성 초부터 부락문제 해결을 도모한 다양한 선행 흐름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부락개선운동은 부락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부락을 단지 ‘동정’하는 시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가가와로서는 동지적 유대감을 가졌던 이들의 개인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순교의 심정으로 빈민구제와 사회사업에 힘써왔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온건한 기독교도로서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적 복음을 신조로 삼았던 가가와에게 전국수평사의 차별 규탄투쟁은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결코 동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가가와도 전국수평사의 차별규탄투쟁과 부락해방운동 전술을 차별자에 대한 ‘증오의 복음’으로 규정하기에 이르고 전국수평사와의 이별을 예감한다. 이 때의 사정은 그의 회고적 자전소설에 잘 나타난다.²⁷⁾

니미(新見)가 오사카(大阪)에서 소비조합운동을 시작했을 때, 고보(御坊)의 동지 4명이 소비조합을 가르쳐 달라고 고베(新戸) 니가와(新川)의 집까지 찾아왔다. 이 4명은 야마토(大和)의 수평운동을 외치고 니미가 생각하는 것 같은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을 답답하다고 말하며, 압박자에 대한 증오의 복음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 증오의 복음이 니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생략) 몇 백 년 동안 사회적 모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속죄애(贖罪愛)의 복음은 너무 연약할 뿐이었던 것이었다. 니미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해방은 사랑(愛)과 봉사(奉仕) 외에 없다는 것을 되풀이해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슬프게 했다.

가가와의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국수평사의 ‘철저한 차별규탄투쟁’은 차별사건의 가해자를 향해 일말의 용서 없는 규탄과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종용함으로써 차츰 곳곳에서 반발과 충돌을 일으켰다.²⁸⁾ 차별자에게 강압적으로 느낄 만큼 사과를 압

26) 工藤英一, 앞의 책, 110쪽.

27) 賀川豊彦, 『石の枕を立てて』, 東京: 實業之日本社, 1939.

28) 1922년 5월 나라현 다이쇼촌(大正村) 심상고등소학교(尋常高等小學校)에서 일반촌민 아동이 같은 학급의 부락아동에 가한 차별발언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의 고바야시수평사(小林水平社)가 전면에 나서 학교당국의 차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했다. 수평사원들이 차별발언을 한 촌회의원은 물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교장과 교사에게도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규탄투쟁이 더욱 고조되자 관할 고세(御所)경찰서는 현하(縣下) 각 지서에 협조를 요청해,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100여명의 부락민을 체포하고 3명을 소요죄로 투옥했다. 이와 같은 전국수평사 창립 이후의 첫 규탄투쟁 결과는 향후 전국으로 확산된 차별규탄투쟁의 전형이 되었다. 部落問題研究所 編, 『部落の歴史と

박하는 전국수평사의 차별규탄 전술에 대한 부락 외부인의 반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부락민과 부락 외부인의 알력은 곳곳에서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부락외부의 반발과 우려를 인식한 듯 야마구치현수평사(山口縣水平社)의 기관지 『보초수평(防長水平)』 제2권제5호 권두언에는 세상 사람들이 수평운동을 ‘폭력’이라든가, ‘과격한 사회주의’로 평가하는 것이 편견이며 오해임을 역설하고, 수평운동이 인류애에 입각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卷頭言] 『盲人と像』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 맹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한 마리의 코끼리가 왔다. 그 관정에 나선 맹인 모두 각기 말이 달랐다. (그들은) 코끼리의 한 부분만 보고 말했다.

세인(世人)이 수평운동을 평해 말하기를 “수평운동은 부락민이 박해압박의 수평선 아래로부터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자 하는 운동이다”라거나, “그들은 단결하여 폭력으로 복벽(復辟)하려는 것이다”라거나, 혹은 “그들의 운동은 과격주의 사회주의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편견(僻見)이고 좁은 식견(局識)이다. 맹인들의 거짓말과 같은 종류인 것이다. 우리들의 수평운동은 존귀한 인류애에 입각해, 정의(正義)의 길로 돌진하는 신(神)의 운동이다. 차별을 철폐하라, 인간을 예찬하라, 그것은 수평운동을 이해한 사람의 찬탄의 소리이다.²⁹⁾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이 끝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상황을 보면서 가가와는 결별의 결심을 굳혔던 것 같다.

니미(新見)는, 불상(不詳)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참에, 야마토(大和)의 수평사소동이 폭발해, 수천 명의 국수회원과 수천 명의 수평사원이 며칠에 걸쳐 전쟁소동을 일으켰다.³⁰⁾ 그리고 1919년 처음 니미의 집을 방문했던 T군이 주모자로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T군은 귀족적인 모습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증오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버렸다. (생략)

解放運動-現代編』, 大阪: 解放出版社, 1997, 59~60쪽.

29) 防長水平出版部, 『卷頭言-盲人と像』 『防長水平』(第1次)第2卷第5号, 1924.6. 渡部 徹 監修, 『水平運動・部落史研究資料3(復刻版)初期水平運動資料集』第2卷, 東京: 不二出版, 1996.

30) 1923년 3월 나라현 내 일반 촌민의 차별언행에 대해 지역의 수평사 동인들이 가해자가 사는 지구(地區)로 몰려가 규탄했다. 사건의 확대를 우려한 지역 주재소는 합의를 주선했지만, 여기에 국수주의 단체 국수회(國粹會) 간부가 끼어들어 중재가 결렬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지방수평사와 국수회의 대립으로 전환되었고 양측이 무장 충돌에 이르자 현 당국은 경찰과 군대까지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나라현 당국은 현 경찰부장의 명의로 ‘규탄행위단속’을 현하 각 경찰서장에 하달해 수평사측의 규탄투쟁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것이 이른바 ‘수국쟁투사건(水國爭鬪事件)’이다. 部落問題研究所 編, 앞의 책, 60~61쪽.

가가와를 비롯한 당시 일본기독교인들은 부락외부의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수평사의 격렬한 차별규탄투쟁에 대해 대부분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가가와와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기독교 사회사업가 도메오카 고스케(留岡幸助)³¹⁾의 부락(민)문제·부락해방운동 인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메오카는 본래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의 감화교육에서 출발했고, 그의 부락(민)인식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는 일반사회와 구별되는 하층민을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화교육 대상의 자발적인 개선가능성을 부정했다. 행정적인 차원의 가부장적 개입 즉 강제력을 수반한 지도나 때에 따라서는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³²⁾ 도메오카의 사회사업에서 주안점은 범죄의 가능성을 지닌 하층사회의 교화를 통해 제국일본의 사회질서를 공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그가 내무성 촉탁으로 지방개량사업의 일환인 부락개선사업이나 융화운동에 적극 관여한 것은 그러한 의견 합치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메오카의 논리는 국가주의적 융화단체인 제국공도회(帝國公道會)의 간판 활동가 오에 다쿠(大江 卓)³³⁾의 언설과 매우 유사하다. 오에는 메이지 ‘해방령(解放令)’의 발의자로 메이지 천황의 사망을 계기로 제국공도회에 가담해 활동한 인물이다. 그에게 부락차별 문제는 천황의 성지(聖旨)에 어긋나는 불충(不忠)이자 제국일본의 커다란 오점이었다. 부락차별을 남겨두면 끝내 부락민이 천황제국가권력의 지배체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오에의 관심은 오로지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있었다.³⁴⁾

³¹⁾ 도메오카 고스케(1864~1934)는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도시사(同志社)대학 신학과에 수학해 목사가 되었다. 1891년부터 홋카이도(北海道)의 감옥교회사(監獄敎誨師)로 일한 것을 계기로,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자나 창부, 비행청소년의 교육이나 감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2년간 미국에서의 사회사업을 공부한 후 귀국한 후, 목사로 일하는 한편 감옥교회사와 경찰감옥학교(警察監獄學校)교수로서 내무성의 정책수행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1899년에는 기독교주의에 입각해 비행청소년의 감화교육을 목표로 한 가정학교(家庭學校)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 후 다이쇼기에 들어 내무성촉탁으로 가쓰라(桂)내각의 지방개량과 감화구제사업 강사로 전국을 순회했다. 田中和男, 『キリスト者と水平社- 留岡幸助の部落問題論』, 『秋定嘉和・朝治武 編著, 『近代日本と水平社』, 大阪: 解放出版社, 2002. 433~432쪽 참조.

³²⁾ 田中和男, 앞의 글, 444쪽.

³³⁾ 오에 다쿠(大江 卓, 1847~1921)는 도사(土佐) 출생으로 메이지유신 때 도막운동(倒幕運動)에 참가해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등과 친교를 맺었다. 그 후 세이난전쟁(西南戰爭) 때는 반정부 봉기로 무쓰와 함께 거병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천황특사로 출옥했다. 1890년 제1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중의원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다 1892년 정계를 떠나 실업계로 전향했다. 1912년 제국공도회(帝國公道會)를 설립하고 동정융화운동에 매진하다 돌연 1914년 출가해 승려가 되었고, 만년에는 검은 가사를 걸치고 전국 각지의 부락을 순회하며 부락개선에 헌신했다. 部落問題研究所 編, 『部落の歴史と解放運動-近代編』, 202쪽.

³⁴⁾ 大江卓, 『穢多非人稱號廢止の顛末を述べて穢多の起源に及ぶ』, 『民族と歴史』 第2巻 第1号, 1919.7 (部落問題研究所 編, 앞의 책, 203쪽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다이쇼 시기 일본기독교계의 사회사업 분야에서 활약한 가가와나 도메오카는 목사로서의 ‘지도자의식’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한다는 인도주의적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문명화의 사명’을 천명했다. 그런데도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에 대해서는 차별규탄투쟁의 과격함에 대한 거부감으로 끝내 관심의 끈을 놓아버렸던 것이다. 이들에게 부락문제는 제국일본의 위상에 흠집을 내는 외면하고픈 사회문제 중 하나였고,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에 불과했다. 이러한 부락(민)인식은 기독교적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형태로 나타난 부락상(像)으로, 달리 말하면 가가와나 도메오카로 대표되는 일본기독교계도 ‘형식적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가주의적 융화사상의 의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4. 나가며

전국수평사나 일본기독교계는 ‘부락차별의 철폐’라는 대의에 기본적으로 공감했고, 부락차별철폐의 당위성으로 인도주의에 호소하고 있었다. 전국수평사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해방의 복음’을 찾아 부락해방운동의 사상적 근거로까지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기독교계는 전국수평사측의 열렬한 짝사랑이 무색하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전국수평사측의 부락해방운동과 차별규탄투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증오의 복음’이라고 명명한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의 부락(민)인식은 이처럼 서로 다른 지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두 진영의 엇갈린 상호인식은 어디까지나 부락차별철폐의 방법론상에 나타나는 이견일 뿐, 차별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차원에서는 한 치도 다를 바가 없었다. 메이지 해방령으로 상징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평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서의 ‘실질적 인도주의’에 따르면, 일본의 부락차별과 천황제는 불합리한 억압기제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전국수평사나 일본기독교계는 도리어 천황제를 옹호하고 천황의 이름하에 부락차별을 해소하려는 모순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였던 것이다.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은 천황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제국일본과 천황제 지배질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락(민)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오래도록 사회적으로 방치되어온 차별적 언행을 명백히 정치적인 문제로 부락 내외에 환기한 상징적 사건으로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³⁵⁾ 그렇지만 전국수평사를 비롯해 부락해방운동을 전개한 여타의 운동주체들은 본질적으로 천황의 적자(赤子)이자 신민(臣民)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전국수평사의 사상적 다양성을 한 몸에 구현한 상징적 인물로 ‘수평의 행자(行者)’로 불렸던 쿠리스 시치로(栗須七郎)는 정토진종의 가르침을 설파한 종교가이자 구도자, 하층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설파한 운동가로 활동했지만, 러일전쟁에 중군해 무공훈장을 받은 용사로서 ‘메이지천황의 후덕한 마음’을 설파한 존황가(尊皇家)였다.³⁶⁾

그렇다면 일본기독교계는 어떠했는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불경사건(不敬事件)’ 같은 에피소드는 특이한 사례일 뿐, ‘신(神) 앞에서 인간의 평등’이란 기독교 교리에 익숙한 이들은 일군만민(一君萬民) 즉 ‘천황 아래 만민의 평등’이란 구호를 ‘신(神)=천황(天皇)’으로 바꾸어 이해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것 아닐까. 앞서 소개한 전국수평사의 쿠리스의 행보는 재미있게도 일본기독교의 양심이자 ‘빈민가의 성자(聖者)’로 존경받았던 가가와의 역정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 가가와는 목사이자 사회사업가, 노동운동가 등으로 활약하면서 전후에는 열렬한 천황주의자로 히가시쿠니(東久邇) 내각에 참여해 일본과 천황의 전쟁책임을 국민의 패전책임으로 대체한 ‘1억총참회운동’을 진행했던 것이다.³⁷⁾

다이쇼 시대에 등장했던 각종 사회운동은 일본정부나 사회와 불화하기 십상이었고, 그 대결의 최종 귀결점은 천황을 정점으로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에 의해 일본사회를 틀 지운 ‘천황제 지배질서’였다. 전국수평사와 기독교계의 엇갈린 상호인식에도 불구하고 ‘수평의 행자’와 ‘빈민의 성자’가 존황가와 천황주의자로 수렴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 진영 역시 시대패색의 억압적 상황에서 사회운동 자체가 존속하기 위해 천황제와의 대결을 회피해야만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5) 關口寛, 『改善運動と水平運動の理論的連關(特集 第36回部落問題研究者全國集會報告)』, 部落問題研究所 編, 『部落問題研究』 147號, 1999.5 ;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지배권력층의 부락문제대책이 변화되면서 등장한 부락개선·융화단체들이 지배정책에 포섭되는 것과는 달리, 전국수평사측이 부락민의 단결과 해방을 외친 것을 두 운동 진영의 결정적 갈림길로 파악하는 연구로 竹永三男, 『報告 第一次大戦期前後の支配政策と部落問題-水平運動と融和運動の分岐點 (第15回部落問題研究者全國集會報告)-(歴史2(近代)分科會)』, 京都部落問題研究所 編, 『部落問題研究』(通號 57), 部落問題研究所, 1978.6 참조.

36) 쿠리스 시치로(栗須七郎)는 와카야마현 부락 출생으로 소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일하다가 러일전쟁에 중군해 10발의 총탄을 맞고도 살아나 무공훈장을 받았다. 제대 후 1922년 5월 와카야마 시내에서 열린 수평사연설회에 참가해 전국수평사 창립멤버와 친하게 되고 곧 수평운동에 가담했다. 宮崎學, 『近代の奈落』, 東京: 幻冬舎, 2005, 77쪽·190~193쪽. 쿠리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鄭承博, 『水平の人-栗須七郎先生と私』, 神戸: みずのわ出版, 2001 ; 廣畑研二, 『水平の行者-栗須七郎』, 東京: 新幹社, 2006 참조.

37) 部落解放・人権研究所 編, 『部落問題・人権事典』, 大阪: 解放出版社, 2001. 163쪽.

한일회담 반대 투쟁과 한반도 인식

—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

최 종 길(영남대)

目 次

1. 서론
2.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전개과정
3. 한일회담에 대한 전학련의 입장
4. 미일 군사동맹 반대
5. 일본자본의 해외 진출 반대
6. 가해자 의식(식민지 지배 책임)의 부재
7. 결론

1. 서론

패전 직후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반도에 대하여 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나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통설적으로는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멸시와 차별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담론은 일본의 우파 지식인이나 자유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어도 수궁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의 경우이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전전에 이루어진 각종의 정책과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 다양한 논의들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대한 논의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 직후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 한반도에 대하여 언급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패전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황과 당장 시급한 자신들의 일상의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타자에 대한 논의가 소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전 직후에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집단과 전학련 세대는 일본 사상사에서 이른바 전

중, 전후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들로 45년 이후 지금까지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발언을 해왔다. 따라서 이들이 패전 직후에 한반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전후 일본 사회사상사의 한 측면을 살펴보는 작업임과 동시에 이들 집단의 한반도 인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45년부터 60년대까지 한국(특히 남한)과 일본의 양국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나타난 전학련과 당시 진보적 지식인의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에게서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유추하고자 한다.

2.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전개과정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은 군사적으로는 비무장화, 정치 경제적으로는 미국화라는 기본 노선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러나 1949년 중국대륙에서 공산당 정권이 탄생하고 50년에는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창한 북한에 의한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정세는 급변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일본과는 51년 9월 8일에 ‘대일강화조약’과 더불어 ‘미일안전보장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51년 10월 20일에 GHQ의 중재로 한일 예비회담이 추진되었으며 마침내 52년 2월 15일 정식적인 제1차 한일회담이 시작되었다. 즉 한일회담은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필요에서 구상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원활한 관계를 필요로 했던 미국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¹⁾ 이러한 회담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본에서 이 회담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한 여러 집단들의 대응방식을 결정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안보투쟁의 정점을 이룬 60년 즉 미일신안보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몇몇의 단체나 개인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²⁾ 또한 58년 10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1) 최근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일회담 관련 연구에는 이러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일회담과 미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즉 한일회담을 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이 회담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한일간의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 결과 한일 간의 전후 처리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2) 畑田重夫, 『日韓會談反對闘争の展開とその歴史的役割』 『アジア・アフリカ講座Ⅲ 日本と朝鮮』

미일안보조약개정 교섭이 본격화되자 59년 3월에 좌파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가 중임이 된 안보개정저지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라 칭함)가 결성되고 전학련을 중심으로 한 안보투쟁은 정점으로 달려가지만 60년 6월 미일신안보조약이 발효되면서 운동은 하강국면으로 돌아선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투쟁의 고양기에서도 한일회담반대 주장은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일변한 것은 1961년 한국에서 박정희에 의한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이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의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빠른 시일내에 회복하여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과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고 유·무상의 차관을 제공받아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를 추진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였다. 여기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반공정권을 지지하여 동아시아 정치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발표와 발맞추어 미국은 7월 28일에 미국무장관 라스크가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반공정권이 “국가재건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채용하는 정권임을 인정하는 듯이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³⁾ 이러한 움직임에 이어 8월 8일에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열렸으며, 이후 8월 24일에는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郎) 외무성 아시아 국장과 이동환 주일한국대사 사이의 논의를 통해 9월 중에 도쿄에서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개최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한일회담이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출발한 것이고 61년 이후는 한국 정부의 회담타결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라스크 미국무장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중심과제이다. 남부 베트남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시기에 더욱이 남한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미국의 위신에도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 정세를 개선하는 것은 미일의 공동 목표이기 때문에 일본은 빨리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협력했으면 한다.⁴⁾

60년 6월 미일간의 신안보조약이 발효되자 지금까지의 안보투쟁은 하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민회의’와 전학련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의 주류는 주요한 투쟁목표를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법(政暴法 또는 政防法로 약칭) 분쇄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 상황 속에서 한일회담에 관한 내용이 슬로건의 하나로 제출된 대중 집회는 61년 10월 14일에

(勁草書房, 1965), 159쪽.

3) 같은 논문, 168쪽.

4) 같은 논문, 170쪽에서 재인용.

중앙청년학생공투회의(59년 10월 28일에 안보개정반대청년공투회의, 각 노동조합 청년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안보개정저지 조직)가 개최한 ‘안보과기, 정폭법 분쇄, 정책전환 요구, 한일회담 반대 중앙청년총궐기대회’였다. 그러나 당시 안보투쟁 과정에서 제시된 슬로건 가운데 한일회담에 관련된 것은 다른 주요한 안전과 관련되거나 이를 강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8일 한일회담대책연락회의가 히비야 음악당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사회당은 제35회 중앙위원회에서 한일회담 분쇄, 헌법옹호 국민운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한 11일에는 재일조선인총련합이 한일회담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공산당은 민주청년동맹과 공동으로 도쿄의 시바공원에서 ‘박정희 일본방문 반대, 한일회담분쇄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하여 ‘국민회의’는 11월 13일의 간부회의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각 정파들과 토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의에서 총평과 사회당은 ‘국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응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총평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우선 정당이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정당이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안보반대국민회의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취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⁵⁾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총평의 입장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을 조직운동의 중심으로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총평의 입장은 이후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본 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관철되고 있다. 한편 사회당은 “당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한일회담대책연락회의에서 추진하는 편이 좋다”⁶⁾는 애매한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국민회의’ 역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한일회담 반대운동 역시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한일회담 조기타결 요구가 일본에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62년 5월 8일에는 반공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자유연맹’ 제8회 대회 준비위원장에 키시 노부스케가 선출되었다. 이어서 5월 10일에는 서울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 참가한 ‘아시아 반공연맹’ 임시대회가 열려 이른바 NEATO(동북아시아 안보조약기구) 구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7월 18일에 이케다 내각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한일회담 추진을 중요 정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한일회담이 일본인의 일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겨우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베트남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63년 1월 24일 쿠로카네 야스미(黒金泰美) 관방장관

5) 같은 논문, 173쪽.

6) 같은 논문, 173쪽.

이 ‘미국이 자신들의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문제는 방사능에 민감한 일본인에게 자연히 중심적인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여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성명과 이 성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과 종교, 예술, 언론, 부인 등의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잠수함 반대집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민회의’ 역시 5월 20일에 이루어진 제9차 통일행동과 22일에 ‘국민회의’, 사회당, 공산당, 총평 등 10여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체한 집회 등에서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각종 집회의 투쟁 대상은 겨우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문제와 결합된 형태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일회담 반대 문제에서 점차 핵잠수함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3. 한일회담에 대한 전학련의 입장

전학련은 5월 말경에 안보투쟁은 패배했다고 하면서 ‘국민회의’가 주관하는 통일행동을 거부하였다. 안보투쟁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총괄 과정에서 전학련은 3개의 계파로 분열하게 된다. 60년 6월에 도쿄대학교 세포가 제출한 『안보투쟁의 좌절과 이케다내각의 성립』이라는 의견서는 안보투쟁 당시의 동맹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 의견서가 직접적인 시발점이 되어 전학련은 61년 7월 제17회 대회에서 마르학동 전학련, 반마르학동 3파 전학련, 공산당계 전학련으로 분열되었다.⁷⁾ 이러한 분열을 거치면서 전학련의 조직은 약화되었으며 운동 현장에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전학련은 62년 이후 안보투쟁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자신들의 조직과 연계한 형태로 인식하고 관계하기 시작한다. 62년 1월에 사학동 전국사무국은 “1962년은 일본에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해”⁸⁾라고 선언하면서 최근의 중요 정치정세 가운데 한일회담을 거론하였다. 여기서

7) 이러한 분열로 인하여 각 정파는 전학련 내부에서 서로 다른 전략 전술론을 제출하기도 하고 내부대립과 항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학련을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전학련 내 각 정파의 사상적 운동적 차이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학련 또는 당시의 학생운동 세력이 한일회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졌으며 이러한 입장의 바탕에 깔려있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학련 내 각 정파의 다양한 입장을 전학련이란 틀 내에서 취급한다.

8) 社學同全國事務局, 『1・25政防法再提出阻止・日韓會談粉碎の闘いに全力を注入せよ』(1962.1.14) 『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157쪽.

사학동은 한일회담이 이미 최종단계에 와있다고 인식하고 그 본질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즉 “한일회담은 일본 부르조아에게 있어 일본제국주의가 누적해온 모순의 탈출구로 다가온 과제”이며, “일본 부르조아의 금후 정책을 결정하는 극히 절실한 과제”⁹⁾이다.

전학련은 분열되고 약화된 조직을 재건하고 운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63년에 들어서면서 한일회담을 자신들의 투쟁이슈와 결합시킨다. 전학련의 일부 정파는 조직재건과 운동의 고양을 위해 한일회담을 이용하는 전술론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전학련 주류파는 안보투쟁 패배 이후 일련의 투쟁을 거치면서 분열된 조직 재건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5월에 싸워온 한일투쟁은 안보 이후의 분열과 혼란한 상황과는 달리 새로운 학생대중운동 고양의 맹아를 동반한 투쟁이었다.……투쟁적 학생운동은 도쿄도에서 도쿄대학C, 도쿄공업대학, 호세대학, 와세다대학 등에서 새로운 고양의 싹을 착실히 만들어내었다. 이 1년 반에 걸친 피로 얼룩진 통일행동의 전개 속에서 쟁취한 진정한 투쟁하는 동지의 투쟁하는 연대, 신뢰는 섹트주의적 대립을 척결하고 광대한 학생대중 속에서 투쟁을 실현하는 방향을 분명히 확립하였다. 이 학생대중과 활동가와의 살아있는 교류의 확대는 학생대중의 투쟁 에너지를 한발 한발 끌어내었다. 이 학생대중운동 고양의 징조야말로 도학련, 전학련 재건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현실이다.¹⁰⁾

전학련 주류파는 안보패배 이후 ‘국민회의’를 주축으로 하여 각종의 사회단체가 참가한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통한 학생동원과 조직정비를 거쳐 전학련의 일부 조직을 재건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3파 전학련으로 분열된 이후 “도학련의 재건은 분명히 한일회담 반대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¹¹⁾이었다. 즉, 전학련의 분열과 조직 붕괴 이후 도학련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조직을 재건하기 위하여 64년 12월에 ‘도학련재건준비회’를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의 일부로써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같은 자료, 159쪽.

10) 全學連(主流派)書記局, 「六」・一三都自代, 7月上旬都學連再建を決定, 更に全學連再建を確認(鬭爭速報), (1964.6.15)『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417쪽.

11) 같은 자료, 415쪽.

4. 미일 군사동맹 반대

앞에서 한일회담의 경과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명확히 한 것처럼 이 회담은 한일 양 당사자들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 대결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동맹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이를 통한 전쟁개입 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쟁개입에 대한 위기의식은 한일회담과 동일한 시기에 전개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이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조로 인하여 전 일본사회에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 정세 하에서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투쟁에서 전학련은 한일회담 반대를 주장할 경우 “③자위대의 해외파병의 필요성. ④NEATO결성에 의한 반공군사동맹적 성격. ⑤일제의 해외진출의 필연성”¹²⁾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일회담이 가지는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학련의 인식은 “현재 자민당 내에서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반공주의와 군정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일회담을 둘러싼 반공, 임전태세화한 아시아 정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선거구법 등을 준비하고 …… 일본제국주의는 내외로 반공화, ‘임전태세’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제1보가 한일회담이다!”¹³⁾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처럼 60년대 초 베트남에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 요충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학생운동의 구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등 각종의 사회단체가 주관한 운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 저지투쟁과 다른 나라의 핵실험 반대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도학련 재건 준비대회 보고’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통킹만 사건에 나타난 남베트남을 축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격동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와 보조를 맞추면서 부르조아의 공통적인 이해로써 인민의 억압에 착수하려는 일본제국주의는 현안으로 부상한 미원자력잠수함 일본기항승인을 8월 28일에 갑자기 행하였다. …… 군사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원자력 잠수함 일본기항에 대하여 도쿄에서 곧바로 항의 행진을 실행하고……원전투쟁의 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쿄에서 10월 19일에 원자력잠수함 저지 전도(全都)학생연락회의를 결성하고, ……도자대(都自代)를 개최하였다.¹⁴⁾

12) 社學同全國事務局, 「1・25政防法再提出阻止・日韓會談粉碎の闘いに全力を注入せよ」(1962.1.12)『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159쪽.

13) 社學同都委員會書記局, 「日韓會談阻止四・二六ゼネストへ全力をあげスト準備を強化せよ!」(1963.3.29)『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315쪽.

결국 미일 신안보조약의 체결과 베트남전쟁의 격화는 일본의 군사기지화 및 군전력 강화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사회 전반에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운동으로 환원된 위기의식은 다시금 반전운동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였다.

한일회담이 체결되고 난 이후 1965년 11월 27일 도쿄 오차노미즈 잡지회관에서 ‘한일 문제와 일본의 지식인-미래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 ‘국민문화회의 심포지움’에서 진행된 한일회담의 군사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우선 첫 발표자로 나선 히다카 로쿠로우(日高六郎)¹⁵⁾는 “안보조약이 이른바 강령적인 것이라면 한일조약은 그 세목과 같은 것”¹⁶⁾이라는 어느 노동조합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조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반식민주의 내셔널리즘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도전이라는 성격을 가진 점”¹⁷⁾이라고 강조한다. 히다카가 말하는 성격이란 바로 한일회담이 “반공 인터내셔널리즘이라는 형태로 반식민주의 내셔널리즘에 대립하는”¹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일회담은 미일신안보조약에 명시된 것처럼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이 일본의 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심포지움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에다 코이치로(上田耕一郎)¹⁹⁾는 안보반대 투쟁과 비교해서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부진했던 이유로 “일본인 자신의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반성이 미약했던 문제”²⁰⁾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다음 그는

14) 都學連(三派系)再建準備會, 『一・一八日韓會談再開に向けて闘いを組織せよ、全自治會は再建準備會に結集し七月再建を推進せよ』(1965.1.10)『資料 戦後學生運動 7』(三一書房, 1970), 3쪽.

15) 1917년 생. 전후에 도쿄대학 신문연구소 조교수, 교수를 거쳐『思想の科學』동인으로 비공산당계 맑스주의 진영의 한사람으로 60년 안보투쟁을 지도함. 1968년 김희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은 제일 조선인 차별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희로를 변호함. 1969년 도쿄대학 분쟁으로 기동대가 대학에 난입하자 이에 저항하여 교수직을 사임함. 여기서 이들 논자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당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당시 이들이 속한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을 통해서 당시 제도권 정당이 가진 한일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未來への模索—』『現代の眼』, 7卷2号, 1966年2月, 44쪽.

17) 같은 논문, 44쪽.

18) 같은 논문, 44쪽.

19) 1927년 생. 1946년에 일본공산당에 입당. 대학졸업 후 『中野新報』 기자로 지역에서 조직활동을 하였다. 1956년에『戦後革命論争史』로 문단에 등장한 뒤 구조개혁파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미야모토 겐치(宮本顯治)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공산당의 강령논쟁 과정에서 제8회 당 대회에서 확정된 반제반독점 민주주의혁명의 입장을 취하고 이전에 자신이 낸 저서『戦後革命論争史』를 절판하였다. 이후 일본공산당의 노선에 충실히 입각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20)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未來への模索—』『現代の眼』, 7卷2号, 1966年2月, 52쪽.

“이런 것에만 시선을 빼앗겨 실제로 한일조약에 대한 투쟁을 힘차게, 대담하게 내딛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²¹⁾고 보았다. 즉 그는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한일회담을 별도의 것으로 파악하고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미국의 커다란 전략 구상에 빠져들어 버리는” 한일회담이라는 “일본국민 자신의 이해관계의 문제, 그 생명과 안전의 문제, 이 문제, 특히 군사적으로 당면한 위험한 문제를 우리들은 힘을 모아 국민 전체에게 제기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다”²²⁾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나카하라 히로시(中原浩)²³⁾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는 하나의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맹점이란 “한일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너무 객관적 정세론만이 우세하고, 진정으로 우리들 인본인의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접근방식이 적었다”²⁴⁾고 지적한다. 즉 그가 말하는 “객관적 정세란 예를 들면, 미제국주의에 의한 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이라던가, 혹은 한국 대만 일본의 반공군사 동맹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등 세계정세에서 출발한 사고”²⁵⁾이다. 한편 그가 지적한 “일본민족의 주체적 책임”은 “조선인에 대한 식민지적 침략의 사실, 그리고 지금 다시 일본 제국주의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주의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다시금 민족의 주체적 책임을 지려고 한다. 역시 이러한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한다”²⁶⁾는 점이다. 일본민족이 해결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관점에 서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반대와 한일회담 반대를 무매개적으로 결합한 방식에 자신은 찬성할 수 없다”²⁷⁾고 단호하게 말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한일회담 반대의 목적은 “역사 속에서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민족의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식민지주의를 필연으로 한 그리고 지금도 필연으로 요구하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²⁸⁾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나카하라와 같은 입장을 취한 사람²⁹⁾은 소수에 불과했다.

21) 같은 논문, 52쪽.

22) 같은 논문, 52쪽.

23) 評論家. 나카하라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일본공산당과 사회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정파에 속하는 인물로 보인다.

24)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未來への模索—』『現代の眼』, 7卷2号, 1966年2月, 57-58쪽.

25) 같은 논문, 58쪽.

26) 같은 논문, 58쪽.

27) 같은 논문, 58쪽.

28) 같은 논문, 58쪽.

29) 당시의 것으로는 旗田巍, 『日韓會談の再認識—日本人の朝鮮觀』『世界』, 1963年12月; 編集部, 『日韓闘争の中間總括—その運動路線の盲点と限界—』『現代の理論』, 1966年1月; 佐藤勝巳, 『日朝中三國人民連帶の歴史と理論』への私の意見(1)』『朝鮮研究』 90号, 1969年가 있다. 이후 이러한 논의가

5. 일본자본의 해외 진출 반대

정치의 시대이기도 한 일본의 60년대는 경제의 시기이기도 하다. 60년 안보조약개정을 마친 키시 수상이 사의를 표명하고 뒤를 이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수상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경제성장의 결과를 활용하여 그 간의 ‘정치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시대 분위기를 ‘경제의 시대’로 돌리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소득배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맞물린 사회적 현실은 한일회담 반대운동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도학련은 61년 10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政防法을 ““급진좌익의 탄압=안보 뒤처리”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체제강화’로 위치지우”고 “제국주의적 체제강화 정책은 다음의 4개”³⁰⁾로 구성된다고 논한다. “첫째, 안보투쟁으로 고양된 반정부 의식은 소득배가를 간판으로 하는 이케다의 낮은 자세와 경기 상승 속에서 교묘하게 허무감으로 승화되어버렸다. 그러나 소득배가란 자본의 강제적 축적에 다름 아닌 이상 제국주의의 모순은 일년도 지나지 않아 현재화하여 소득배가가 아니라 물가폭등임을 국민들은 알게되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부르주아는 설비투자규제, 금융조치 등 고도의 국가경제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고 반정부 투쟁을 억압”³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분석은 “일본자본주의 계급은 현재 그 과잉 생산력의 처리 문제와 동시에 해외진출의 경제적 기초이자 더구나 일본에서 자본가적 재생산의 절대적 전체인 ‘엔의 강화’=외화, 금 달러의 준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일본자본가 계급의 모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³²⁾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본가계급은 기업의 “집중과 합병을 축으로 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제국주의적 ‘세계정책’의 개시”³³⁾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일회담이라고 사타케 시게루(佐竹茂, 필명 渚雪彦)는 보고 있다.

다시 등장한 것은 水原陽子編, 『「植民地責任」論』, 青木書店, 2009; 坂垣龍太, 『日韓會談反對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 『思想』No1029, 2010년1월을 통해서 이다. 이러한 연구사로 볼 때 한일회담 반대운동 당시에는 식민지 지배 책임론은 부차적이었으며 65년에 비준 조약 이후 운동에 대한 총괄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³⁰⁾ 都學連書記局, 『一二・一全都學生の政防法, 日韓, 核實驗反對の闘いの先頭に立て! (通達)』(1961.11.24)『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109-110쪽.

³¹⁾ 같은 자료, 110쪽.

³²⁾ 渚雪彦, 『帝國主義列強の抗爭の現局面—日韓闘争と革命闘争の勝利のために』, 『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者同盟理論機關誌』『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1964.2.15. 제2호)『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394쪽.

³³⁾ 같은 자료, 395쪽.

격화되는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급속하게 자본축적을 이루어야 하는 일본 자본주의는 자국 내의 임금과 생산비 인상에 대응하여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시장 확보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더하여 국내 자본과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진척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한일회담에 대하여 사학동은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일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정치투쟁을 노동자의 본대 속에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에 내포된 전쟁과 파시즘과 합리화에 대하여 강고하게 싸워나가는 혁명적 노동자 부대를 하나의 정치 조류로써 돌출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일본 혁명전략에서 한일(이 가지는-인용자) 위치이며 우리가 획득해야하는 것이다.³⁴⁾

이처럼 전학련에 속한 각각의 정파들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일본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전위적 노동자 대중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일회담을 일본자본주의의 경제상황에 연동된 노동운동의 현실과 연계하여 논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당과 그 관련 단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한일조약이 체결된 이후 사회당 관련 단체와 이에 속한 관계자들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한 총괄평가 과정에서 총평국민운동부장 이와다래 스기오(岩垂壽喜男)는 노동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총평의 지도에서 “한일회담과 합리화, 해고, 저임금 등 적들의 공격과의 관련, 그 외 당면한 다양한 정치과제와의 내적인 관련을 추구하는 작업이 불충분했으며 전체적인 정치토론이 부족했기”³⁵⁾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와다래는 평가한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한일조약을 체결하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일본의 임금이 내려가며……. 따라서 한일문제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견해가 제출되었다. 한일투쟁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에서 한일조약 반대를 주장”³⁶⁾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한국 민중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³⁷⁾

34) 社青同學生解放派理論機關誌 『解放』, 「日韓決戦をプロレタリア政治闘争として闘いぬけ」(1965.11월 임시호)『資料 戦後學生運動 7』(三一書房, 1970), 164쪽.

35) 같은 논문, 88쪽.

36)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未來への模索—』『現代の眼』, 7卷2号, 1966年2月, 81쪽.

37) 같은 논문, 81쪽.

6. 가해자 의식(식민지 지배 책임)의 부재

1964년에 전학련 서기국은 “우리들은 한국의 학생 데모를 신‘3파연합’계의 제군처럼 결코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다”³⁸⁾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생 데모 …… 전체에 얹혀있는 한국 민족주의를 현재로는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배일이라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입장 일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의 한일 교섭에는 반대하지만 민족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 아래서는 한일회담 추진이라는 동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⁹⁾

이처럼 전학련은 한국 측의 한일회담 반대논리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분석은 없다. 즉 전학련은 한국의 학생들이 제시한 한일회담 반대논리의 이면에 있는 역사적 기억을 살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단지 한국 측의 회담 반대론자들은 민족주의적인 흐름을 이용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한일회담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견한다. 전학련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한 한국인이 여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생략된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학련 주류파와 반대 입장에 있는 중핵파는 한일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후 자신들의 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행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인민이……한국 인민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는 입장을 스스로 갖추지 (국제주의 입장) 못하여 진정한 계급적 대결점을 정하지 못한 곳에 문제의 곤란함이 있었다.

이것 외에 사회 배외주의자, 모든 전투적 좌익과 우리들의 한일회담 파악에 대한 분열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

사회 배외주의로 전락한 사회당은 물론 전투적 좌익의 많은 부분은 기를 쓰고 ‘한국 민족주의자’라고 아우성쳤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레닌주의에서 더욱 멀어져갔다.

그리고 ‘일본 인민의 이해관계를 먼저 분명히 하자’고 외쳤다.⁴⁰⁾

38) 全學連書記局, 『日韓會談の粉碎をめざして 4・28全學連第一波統一行動をかちろれ』(1964.4.10) 『資料 戦後學生運動 6』(三一書房, 1969), 407쪽.

39) 같은 자료, 407쪽.

40) マル學同(中核派)中央書記局, 『プロレタリア帝國主義の旗高く、反植民地主義闘争の前進を一日

즉 중핵파는 전학련 주류파와 달리 한국 내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배경을 최소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핵파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중핵파가 전학련 주류파의 의견에 반대한 것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통해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금후의 공격 내용과 그 공격 방법”⁴¹⁾에 대한 인식의 차이, 즉 혁명운동의 전략 전술론의 차이에서 파생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중핵파 역시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인식은 미미했다고 보아 무방하다.

일본 신좌익의 한 분파를 이루는 구조개혁파는 “안보투쟁에서 보여주었던 광범위하고 높은 국민적 지지가 왜 이번의 한일투쟁에는 마지막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⁴²⁾라고 자기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이유를 한일회담 반대운동 그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들이 말하는 맹점이란 “이번 한일투쟁에서 결국 한국민족에 대한 역사적 책임,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국민적인 반성이 결여된”⁴³⁾ 사실이다. 구조개혁파는 그 결과 학생을 중심으로 장기에 걸쳐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진척시켜왔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민중 투쟁과의 연대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예를 들면 사회당의 반대에는 독도·이승만 라인 등에 대한 반응에 ‘해서는 안 되는 쇼비니즘적인 민족주의적 경향이 보였다’는 점”⁴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한일회담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회당이 현실적인 정치관계 속에서 일본의 국익에 반한다고 보이는 이슈들에 대해 자국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즉 국익=일본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정치선전을 통해 총평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선거)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당의 자세를 비판한 것이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가한 공산당의 태도 역시 사회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 본 공산당 계열의 평론가 우에다 코이치로는 국민문화회의 심포지움에서 나카하라 히로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론에 대하여 “이번의 한일투쟁이 미진하게 된 주요한 원인을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인민의 반성의 나약함에서 찾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⁴⁵⁾라고 하여 반대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우에다는 식민지 지

韓闘争の中間總括』マル學同中核派機關誌 『中核』(1965.11.30)『資料 戦後學生運動 7』(三一書房, 1970), 167쪽.

41) 같은 자료, 166쪽.

42) 編集部, 『日韓闘争の中間總括—その運動路線の盲点と限界』『現代の理論』1966年 1月号, 15쪽.

43) 같은 논문, 15쪽.

44) 같은 논문, 16쪽.

45) 『日韓問題と日本の知識人—未來への模索—』『現代の眼』7卷2号, 1966年2月, 69쪽.

배 책임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복잡한 부(負)의 유산을 남겨둔 것이지만, 주요한 책임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그 자체, 일본 지배계급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들이 져야할 책임 방식은 ……일본의 지배층과 투쟁하는 것 이것이 최대의 책임지는 방식이다”⁴⁶⁾고 한다. 즉 공산당 계열의 지식인들 역시 일본의 정치지형 속에서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46) 같은 논문, 69-71쪽.